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82-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8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8)

2012. 9.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 목 차 -

1. 고종실록 <1> 기사자료집 : 고종 즉위년 ~ 고종 27년 12월 ····· 1

1. 고 종 실 록 <1> 기 사 자 료 집

고종실록 <1> 기사자료집 : 고종 즉위년 ~ 고종 27년 12월

출처	내용	원문
고종 1권, 즉위년 (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11일(계미) 3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세 도감에 쓸 비용의 조달 방법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세 도감(都監)에 소용되는 물력(物力)을 우선 주소(鑄所)의 돈 5만 냥(兩)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쌀 1,000석(石)과 콩 200석, 훈련 도감(訓鍊都監)과 어영청(御營廳)의 무명 각각 25동(同)씩을 아울러 호조에 수송하여 적당히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윤허하였다.	備邊司啓: “三都監所入物力, 姑先以鑄所錢五萬兩、戶惠廳米一千石·太二百石、訓·御兩營木各二十五同, 竝輸送戶曹, 以爲量宜分排何如?” 大王大妃允之。
고종 1권, 즉위년 (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13일(을유) 15번째기사 대왕대비가 대원군 궁에 주는 토지와 저택을 예조에서 규례대로 정하라고 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대원군 궁(大院君宮)에 주는 결수(結數)와 제택(第宅)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大王大妃敎曰: “大院君宮結數第宅, 令該曹依例擧行。”
고종 1권, 즉위년 (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13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계(合啓)를 올려,【대사헌(大司憲) 임영수(林永洙), 대사간(大司諫) 정천화(鄭天和), 사간(司諫) 홍순학(洪淳學), 장령(掌令) 이운익(李雲翼)·조연우(趙然友), 지평(持平) 정한조(鄭漢朝)·신헌구	兩司合啓【大司憲林永洙, 大司諫鄭天和, 司諫洪淳學, 掌令李雲翼、趙然友, 持平鄭漢朝、申獻求, 獻納趙昌

일(을유) 17번째기사 양사에서 의관들을 신문하라고 아뢰다	(申獻求), 헌납(獻納) 조창화(趙昌和), 정언(正言) 황신묵(黃愼默)·정종학(鄭鍾學)이다.】'의관(醫官) 김홍남(金鴻男)·팽계술(彭繼述)·정재원(鄭在元)·이진하(李鎭夏)·김진(金瑨) 등을 모두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소서.'라고 하니, 대왕대비가 비답하기를, "하늘이 돌보지 않아 이런 망극한 슬픔을 당하였으니 인사(人事)와 천리(天理)가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의관들이 늘 의약(議藥)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삼가고 조심하지 못한 탓에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변을 당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의관 김홍남·팽계술·정재원·이진하·김진을 모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和, 正言黃愼獸、鄭鍾學】, 請醫官金鴻男、彭繼述、鄭在元、李鎭夏、金瑨等, 竝令王府設鞫得情, ?正典刑。大王大妃批曰: "皇天不弔, 降割此罔極之痛, 人事天理, 胡至此極? 顧醫官輩, 常在議藥之列, 不能審愼, 而遭此崩天之變, 安得無罪? 醫官金鴻男、彭繼述、鄭在元、李鎭夏、金瑨, 竝定配。"
고종 1권, 즉위년 (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15일(정해) 4번째기사 호조에서 대원군 궁에 토지와 궁장 값으로 쌀과 은과 콩을 보내줄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대원군궁(大院君宮)의 면세 전결(免稅田結) 1,000결(結)에 대한 토지 값으로 은 2,000냥(兩)을 실어 보내고, 궁장(宮庄)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본조(本曹)에서 콩 100석(石)과 선혜청(宣惠廳)에서 쌀 100석을 5년 동안만 실어 보내겠다.'고 아뢰었다.	戶曹以"大院君宮免稅結一千結, 田土價銀子二千兩輸送, 宮庄未備前, 本曹太一百石、惠廳米一百石, 限五年輸送"啓。
고종 1권, 즉위년 (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18일(경인) 2번째기사 대왕대비가 대원군이 토지 등을 사양하니 달마다 쌀과 돈을 보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대원군궁(大院君宮)의 전결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이미 명을 내렸는데 굳이 사양해 마지 않으니 부득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매달 쌀 10석(石)과 돈 100냥(兩)을 보내주게 하여 검소하고 소박하게 지내려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大院君宮田結等節, 依例擧行, 已有成命, 而固辭不已, 不得不勉從。 其令度支, 月送米十石、錢一百兩, 以副儉約之意。"

내 주라고 명하다		
고종 1권, 즉위년(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30일(임인) 1번째기사 빈전에 가서 조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三十日。 詣殯殿, 行朝上食。
高宗 1卷, 卽位年(1863 癸亥 / 청 동치(同治) 2年) 12月 30日(壬寅) 2번째기사 빈전에 가서 주다례를 행하다	詣殯殿, 行晝茶禮。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1권, 즉위년(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30일(임인) 8번째기사 서울 안의 각 관청과 군영에서 계해년의 회계 문건을 올리다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계해년(1863)의 회계부(會計簿)를 올렸다. 【호조(戶曹)의 양향청(糧餉廳)·선혜청(宣惠廳)과 병조(兵曹)의 훈련 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總戎廳)에 현재 남아 있는 금(金) 100냥(兩) 4전(錢) 6분(分), 은〔銀子〕 21만 4,898냥 3분 1리(厘), 돈〔錢文〕 46만 2냥 3전 9분, 무명〔木〕 2,063동(同) 20필(疋) 24척(尺) 1촌(寸) 1분(分), 베〔布〕 196동 40필 4척 8촌, 모시〔苧布〕 115동 1필 10척, 명주〔綿紬〕 54동 29필 18척, 쌀 9만 6,338석(石) 12두(斗) 4승(升) 9작(勺) 9리(厘), 콩〔太〕 9,582석 5두 6승 3합(合) 7작, 좁쌀〔田米〕 8,184석 6두 7합 9작, 겉잡곡〔皮雜穀〕 5만 4,090석 9두이다.】	京各司各營, 進癸亥會計簿。【戶曹餉廳、惠廳、兵曹訓局、禁營、御營、總戎廳時在黃金一百兩四錢六分、銀子二十一萬四千八百九十八兩三分一釐、錢文四十六萬二兩三錢九分、木二千六十三同二十疋二十四尺一寸一分、布一百九十六同四十疋四尺八寸、苧布一百十五同一疋十尺、綿紬五十四同二十九疋十八尺、米九萬六千三百三十八石十二斗四升九勺九釐、太九千五百八十二石五斗六升三

		合七勺、田米八千一百八十四石六斗七合九勺、皮雜穀五萬四千九十石九斗。】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일(계묘) 1번째기사 빈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권】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高宗太皇帝實錄卷之一】 初一日, 癸卯。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2일(갑진) 3번째기사 비변사에서 호조의 재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호조(戶曹)의 보고를 보니, 몇 해 전에 신우문(神佑門)에 불이 난 뒤와 휘경원(徽慶園)을 이장한 뒤에 여러 가지 명목의 공가(貢價)를 주지 못한 것이 15만 냥(兩)이나 되고, 이번 국휼(國恤) 때 꼭 사용할 각종의 물건을 먼저 받아쓰고 꼭 주어야 할 것이 10만 냥이나 되며, 쌀을 사들이는 값으로 내줄 것도 족히 15만 냥은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인가는 논할 것 없이 40만 냥을 한도로 곧 획하(劃下)해 달라는 것입니다. 갖가지의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그저 그 당장을 모면해 나가는 데 불과한 것으로, 그 수량이 대단히 많은데 각도(各道)의 곡식을 탕감해 준 다음에는 사실 어느 한 포대도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각영(各營)과 각사(各司), 함경 감영(咸鏡監營)에서 밀봉해 놓은 은자(銀子) 중에서 분수(分數)하여 구획(區劃)한 다음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備邊司啓: “卽見戶曹所報, 則以爲: ‘年前神佑門失火後, 及徽慶園遷奉後, 各樣貢價未下, 爲十五萬兩。 今此國恤時, 各項應用, 先受之不得不給者, 爲十萬兩, 貿米價之出給者, 恰爲十五萬兩。 毋論某樣, 限四十萬兩, ?卽劃下’爲辭矣。 各樣急需, 不過一時?過者, 數甚?多, 而諸路穀?蕩後, 實無一包著手之處, 姑先以各營各司咸鏡監營封?銀子中分數區劃, 使之取用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初四日。 備邊司啓: “卽見京畿監司韓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4일(병오)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경기도에 국상의 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보내 줄 것을 아뢰다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한정교(韓正敎)의 보고를 보니, 이번에 인산(因山)과 같은 큰일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소용되는 물품들을 지금 미리 준비해놓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2만 5,000냥(兩) 한도로 먼저 획하(劃下)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반의 공사 비용을 지금 마련해야 군색한 일이 없을 것이나 경기(京畿) 고을들의 형편으로서는 그런 준비를 결코 해내기 곤란할 것입니다. 대동미(大同米) 1,500석(石)과 결전(結錢) 3,000냥을 특별히 지방에 획급(劃給)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正敎所報, 則以爲: ‘當此因山大役, 各樣進排, 不容不及今措辦物力, 錢限二萬五千兩, 爲先劃下’爲辭矣。 諸般工役之費, 及今料理, 然後可無窘?之患, 而畿邑事勢, 萬難策應。 大同米一千五百石、結錢三千兩, 特爲外劃, 使之擧行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7일(기유) 1번째기사 산릉 도감에서 임금의 장사 때 나가는 관리들의 접대에 대한 문제를 아뢰다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아뢰기를, “이번 인산(因山) 때 명령을 받고 나가는 높고 낮은 관리들에 대한 지대(支待)를 경기(京畿)의 고을에 분정(分定)한다면 주전(廚傳)에 따른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의 전례에 따라 명령을 받고 나가는 승지(承旨) 이외에는 각각 그 관청에서 책임지게 할 것이며, 내시(內侍)가 왕래할 때에는 규례에 따라 사복시(司僕寺)의 말을 타고 다니고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식량과 반찬을 갖추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七日。 山陵都監啓: “今此因山時大小使客之支待, 若皆分定於畿邑, 則廚傳之弊, 不可不念。 依各年例, 奉命承旨外, 使各其司擧行, 而中使往來時則依例乘太僕馬, 糧饌令戶惠廳備給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0일(임자) 7번째기사 노인과 유현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과 유현(儒賢)에게 세찬(歲饌)을 하사하였다.	賜老人及儒賢歲饌。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1일(계축)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리기를, “이 해의 정월(正月)은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첫 해이다. 이제 하늘에서 지혜를 내리고 복을 내려 오랜 연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해부터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若曰: 是歲上春, 卽予嗣服一元之初也。 今天之命哲命吉命歷年, 寔肇基于玆, 而

3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전국에 내리다	시작되는 것이다. 변변치 못한 내가 더구나 어린 몸으로 외람되게 큰 위업을 물려받았으니, 나라의 근본은 어떻게 튼튼히 하며 하늘의 명에 어떻게 우러러 보답하겠는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정사를 하는 계책을 잘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가운데도 다행히 우리 자성(慈聖)께 명철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대를 본받아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신중하고 검소한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임금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모두 백성들의 고락과 관계되니, 내가 아무리 아둔하다 해도 어찌 거듭거듭 귀에다 대고 말하는 이 가르침을 정성껏 받들어 좋은 성과가 따르는 경사를 맞으려고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은 백성들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먹는 것이란 농사에 달린 것이고 농사란 철에 달린 것이니, 철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우리 열조(列朝)의 밝고 높은 정사에서는 이를 첫 번째 급선무로 삼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매년 첫 봄이면 반포문을 내려 농사에 힘쓰도록 이르는 것이 우리 왕조의 규례가 되어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 14년 간은 백성을 위하여 밤낮 걱정을 놓지 못했으므로 팔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화육(化育)의 은택을 받았고, 세상을 떠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 절절하다. 지금 내가 그 뒤를 물려받은 도리로서도 어찌 감히 거상(居喪) 기간이라고 해서 백성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더구나 나라의 형편이 이미 좋지 않게 되었고 백성의 생활도 점점 못해지는 형편에서 지탱해 나갈 방도란 오직 근본에 힘쓰는 일뿐이다. 지난 가을 농사에 들판은 홍수로 덮이고 산골은 이른 서리를 맞아, 풍년을 기대하던 것이 그만 흉년이 되고 말았다. 가엾게도 우리 백성들은 지금 춘궁기를 당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다 구렁	眇眇予幼沖人, 叨承丕緖, 邦本何以鞏固, 天命何以仰答? 其於治法政謨, 惟不克負荷是懼, 幸有我慈聖所明訓。 戒之以當法祖宗, 敬天愛民, 而謹愼節儉, 爲敬天愛民之本。 人主之一動一言, 皆係民生之苦樂。 予雖寡昧, 奉承諄複, 耳提之敎, 敢不慥慥服膺, 敉克圖功於攸受休乎? 君以民爲本; 民以食爲天。 食之足由乎農, 農之作在乎時。 授時所以敬天也, 劭農所以愛民也。 猗, 我列聖朝熙洽邦隆之治, 罔不以此爲第一先務。 每歲孟春, 誕宣十行溫綸, 董厥服田, 乃是我家成法, 而亦粤我大行大王御極十有四載, 憂民一念, 宵旰惓惓, 八域含生, 久囿化育之澤, 擧切沒世不忘之思。 在今予小子繼述之道, 豈敢以宅憂諒闇, 一切恭默於民事之切至者乎? 矧今國計已絀, 民生日瘁, 其所以藉手而維持者, 惟務本是已。 昨秋穡事, 野受巨浸, 峽被早霜, 大熟之望, 轉至歉荒。 哀我赤子, 際此窮春, 盻盻然塡於溝壑者, 勢所必至。 每一念到, 若恫在已, 寧不惕然恤然乎? 見今東作方始, 樂事興功, 亶由乎勸相有方, 簡其稼器; 修其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한번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내 몸이 아픈 것 같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지금 농사철이 시작되었으니 일을 즐기고 풍년을 일궈내는 것은 오직 권장하고 도와주는 데에서 말미암을 뿐이다. 농사짓는 기구를 갖춰놓고 농사일을 정비하며,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빌려주고 빌려씀으로써 서로를 구원하여 도랑을 정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까지 해야 할 것이다. 농사 채비를 빨리 서둘러 하여 곡식낟가리를 쌓아올리는 경사를 맞이하게 된다면, 하늘에 빌고 있는 내 소원도 이로써 성취되게 될 것이니 그 얼마나 좋겠는가? 이에 너희들 감사(監司)와 유수(留守)를 비롯한 신하들은 나의 이 간절한 뜻을 체득하여 각각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행 도승지(行都承旨) 유치선(兪致善)이 지었다.】	稼政, 竝力以相助; 假貸以相救。 以至整溝洫闢汙萊, 駿發爾私, 期底茨梁之慶, 用供我祈天永命, 曷不休哉? 咨, 爾方伯居留守牧之臣, 體予至意, 其各知悉。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7일(기미) 5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중국 사신을 위한 접대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우길(洪祐吉)의 보고를 보니, '중국 사신(使臣)의 접대를 위해서 당면한 준비를 허술하게 할 수 없으나 중국 사신을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총 8, 9만 냥(兩)이나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 중국 사신을 위한 접대 몫의 비용이란 것은 전부 포흠(逋欠)당하여 현존하는 각 고을의 잔액은 겨우 2만 7000여 냥이고 쓰다 남은 은(銀)도 700냥일 뿐이므로 모자라는 물건을 시가로 사들이자면 돈으로 5, 6만 냥은 더 있어야 배비(排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영(本營)에서 균역청(均役廳)에 바치는 모곡(耗穀)을 작전(作錢)하여 남은 돈 3만 2,600여 냥과 호조(戶曹)에 바치는 각종 명목의 돈 2만 1,300여 냥을 합한 돈 5만 3,900여 냥을 우선 임시로 추이(推移)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가을에 가서 보상한다면, 경사(京司)의 입장에서는 몇 달의 기한을 미루어 주는 것에 불과하고 본영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펼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備邊司啓: "卽見平安監司洪祐吉所報, 則以爲: '支?當頭, 經紀措劃, 不容虛徐, 一?所費, 統計爲八九萬兩。 而挽近?需, 盡入逋藪, 各邑時存, 僅爲二萬七千餘兩銀, 用餘爲七百兩。 不足之數, 以時價貿入, 則有錢五六萬兩然後, 可以排比。 本營所納均廳耗作錢零在三萬二千六百餘兩、戶曹納各樣錢二萬一千三百餘兩, 合五萬三千九百餘兩, 姑先推移備用, 待秋拮据, 則在京司不過幾月寬限, 在本營庶可一分?力爲辭矣。 客使供頓之費, 今方料理, 而所需之年逋歲欠, ?期收合, 萬無其

	사신의 접대를 위해서 지금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그 몫의 돈은 해마다 포흠되고 있으니 기한 내에 갚아낼 가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청한 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여 상납은 가을에 가서 일일이 보상하도록 하되 혹시라도 모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望。 依所請許施, 而上納待秋一一拮据, 毋或漫?事, 分付道臣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8일(경신) 8번째기사 봉상시에서 동쪽 적전에 파종할 시기를 문의하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동쪽 적전(?田)에서 임금이 직접 밭갈이를 하고 종자를 심는 아홉 가지 곡식은, 전례에 따르면 선농제(先農祭)를 지내고 나서 파종했으나, 올해에는 이미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니 원래 정했던 날짜가 지난 후에 곧 밭을 갈고 파종하겠습니다.’ 아뢰었다.	奉常寺以“東?親耕田所種九穀, 例於先農祭後付種, 而今年旣未行祭, 過元定日後, 卽爲起墾播種”啓。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19일(신유) 4번째기사 대왕대비가 고의적인 조운선 파손을 처벌할 것을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근래에 조세를 운반하는 폐단이 있지 않는 곳이 없는데 왜 고패(故敗)만을 의심스럽다고 하겠는가? 또 고폐를 보더라도 감사(監司)의 장계(狀啓)나 해당 관청의 회계(回啓)에서 언제나 법조문을 들어가면서 장황하게 늘어 놓지 않은 적이 있는가? 끝내 고폐를 규명하여 법령대로 처벌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침수되었던 곡식에 대한 보고만 전후로 계속 들어왔다. 그러니 법령대로 따른다는 말은 그저 형식을 차린 데서 나온 것이므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한데 늘 기강이 문란해진 것만을 탄식하고 있으니 이것 역시 조정의 수치이다. 묘당(廟堂)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충청 감사(忠淸監司)에게 분부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게 치패(致敗)한 정절(情節)을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고 속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大王大妃敎曰: “近來漕弊, 無所不有, 奚但故敗之爲可疑哉? 且以故敗言之, 道臣之論啓, 該廳之稟覆, 何嘗不據法張皇乎? 終未聞明其故敗, 依律行法。 但聞臭載之報, 前後相續, 無乃據法之說, 出於文具而然乎? 似此非難處之事, 每歎紀綱之廢弛, 亦爲朝廷之恥也。 廟堂以此意分付湖西道臣處, 在囚諸漢之致敗情節, 嚴?得情, 卽速馳啓。”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21일(계해) 3번째기사 대신들이 대왕대비, 왕대비에게 칭호를 올리는 의식을 실시할 것과 무역하는 삼을 1만 5천근으로 정할 것 등을 아뢰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연전에 경비가 모자라서 원래 정해놓은 포삼(包蔘) 8,000근(斤) 외에 5,000근을 더 정해 주어서 은(銀)으로 바꾸어 비용에 보탰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군색한 조건에서 2,000근을 증가시켜 준다면 7,000근이 되어 원래의 포삼량과 합해서 1만 5,000근이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적당히 마련하게 하여 비용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만약 나라의 경비에 유리하다면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변통하는 것도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통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포삼(包蔘)에 의거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21만 냥(兩)은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역원에서 공적으로 쓸 분량으로 6만 냥을 제외하고도 그 나머지인 15만 냥을 그 비용으로 보태 쓰게 될 것이니, 재용을 여유 있게 할 방도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응당 잘 헤아려 시행하되 포삼과 관련한 별장(別將)의 자리에는 옛 규례대로 의주(義州)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 명의 사신(使臣)이 앞으로 나왔다.【겸사(兼使) 이경재(李景在), 부사(副使) 임긍수(林肯洙), 서장관(書狀官) 홍필모(洪必謨)이다.】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서로(西路) 지역의 사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그 일대에 흉년이 들어 기근을 당하고 있고 중국 사신이 나올 시기도 임박하여 극히 딱한 형편이므로 꼭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각별히 신칙해서 조그마한 결함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左根曰: “聞象胥之言, 則包蔘收稅, 恰爲二十一萬兩, 而譯院公用條六萬兩除之, 其餘十五萬兩, 補用於某樣經費, 則其於裕財之道, 莫過於此矣。” 大王大妃曰: “當商量爲之, 而包蔘別將則依古例, 以義州人爲之可也。” 三使臣進前【兼使李景在、副使林肯洙、書狀官洪必謨。】。 大王大妃曰: “西路事勢, 誠難形言, 沿路饑荒, ?期又迫, 極爲憫然。 須各別飭諭于方伯、守令, 使之精白對揚可也。” 景在曰: “西路?需, 挽近以來, ?蕩無餘云。 如此大事, 將何以經紀乎? 不勝憂憫矣。” 大王大妃曰: “?需錢自來有定, 何至如是蕩竭乎?” 景在曰: “紀綱解弛, 法度頹廢, 列邑之蓄儲俱?, 一無留置云矣。” 大王大妃曰: “然則?需皆歸於何處乎?” 景在曰: “營邑公用窘?, 每爲?貸, 未卽充補, 且有監色輩之欠逋, 至於此境云矣。 經費之資, 必生於民, 而此若一切嚴防, 則亦恐難經紀大事, 誠甚憫迫矣。” 大王大妃曰: “當令廟堂商議爲之矣。 卿須平安往返可也。” 【원본】 5책 1권 24장 A면

	하니, 이경재가 아뢰기를, “서로 지역의 사신 접대를 위한 비용이 근래에 와서 다 탕진되어 남은 밑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큰일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근심스럽고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사신 접대에 필요한 돈이 종래부터 일정하게 저축되어 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탕진되는 것에 이르렀는가?” 하니, 이경재가 아뢰기를, “제도가 문란하고 법도 효력이 없는 탓에 각 고을의 저축이 모두 조금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사신 접대 몫의 돈은 전부 어디로 갔는가?” 하니, 이경재가 아뢰기를,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경비가 군색할 때마다 돌려쓰고는 즉시 보충하지 않고, 또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무리들이 포흠한 것도 있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비란 반드시 백성에게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것까지 일절 엄격히 막는다면 또한 큰일을 치르기도 어려울 듯하여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마땅히 묘당(廟堂)에서 상의하여 처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은 부디 편안히 다녀오라.” 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備邊司啓: “卽見水原留守南秉吉狀啓, 則以爲‘營屬支放不足, 每年爲三千

3년) 1월 21일(계해) 6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수원 군영의 관속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조달을 아뢰다	“지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남병길(南秉吉)의 장계(狀啓)를 보니, ‘감영(監營)의 관속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부족분이 매년 3,000냥(兩)이나 되니 무슨 항목의 돈이든지 1만 냥쯤 한도로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획하(劃下)해서 원금은 두고 이자를 불려 쓰게 하고, 동시에 외탕고(外帑庫)에 해마다 밀봉해 놓는 돈 1,600냥도 가져다 쓰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연례로 모곡(耗穀) 분을 돈으로 만들어 징수하던 것이 이미 탕감해 주는 항목 안에 들어간 것이니, 지조(支調)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은 형편상 응당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끌어다 메울 도리도 없습니다. 몇해 전에 본사(本司)에서 따로 둔 돈 가운데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다 꾸어준 돈 7,000냥(兩)을 이획(移劃)하도록 해영(該營)에 분부하고 외탕고에 밀봉해 놓은 돈 1,600냥도 가져다 쓰도록 허락하여 본전을 두고 분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兩。 某樣錢限一萬兩, ?卽劃下, 立本取殖, 外帑庫每年封?錢一千六百兩, 亦許取用事, 請令廟堂稟處’矣。 年例耗作, 旣入於蕩還之中, 則支調不繼, 勢固容然, 而且無從他彌縫之道。 年前本司別置錢中南漢山城貸下七千兩, 使之移劃之意, 分付該營, 外帑封?錢一千六百兩, 亦許取用, 以爲立本分排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22일(갑자) 4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조운선이 파손되는 원인을 파악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일전에 영암(靈巖)과 나주(羅州)에서 취재(臭載)한 일에 대해서 호서 도신(湖西道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여산(礪山) 등의 고을에서 또 어떻게 치패(致敗)로 하겠는가? 조법(漕法)이 모두 무너져서 이런 무리들이 도둑질하고 방납(防納)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도록 내버려 두어 잇속만 노리고 간사한 짓을 하는 무리들만 살찌게 하고 있다.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어질고 자애로운 정사가 이런 것인가? 이 조사 보고를 보니, 간사한 술책	大王大妃敎曰: “日前靈巖、羅州臭載事, 令湖西道臣嚴?馳啓矣。 今此礪山等邑, 又何以致敗論乎? 漕法盡廢, 一任此輩之偸竊防納, 無所不爲, 以肥牟利奸細之徒, 而國計之哀痛, 民生之殿屎, 置之度外, 則仁愛之政如此乎? 觀此査啓, 其爲作奸故敗, 不待更問。 此不可不依律處斷, 令廟堂稟處。”

	을 부려서 고의로 치패시켰다는 것을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법조문에 따라 처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23일(을축)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영암과 나주의 조운선이 파손된 사건의 문제점을 보고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영암(靈巖)과 나주(羅州)에서 취재(臭載)한 일로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라는 유지(有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취재된 데에는 의심스러운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선적(船積)한 곡식 수량에 대한 공술(供述)이 각기 차이 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모래톱에서 침몰된 것은 애당초 배가 통째로 물 속에서 뒤집힌 것이 아니니 설혹에 젖었더라도 석수(石數)는 그대로 있기 마련이므로 건져냈는지의 여부 애당초에 논할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수량이 이처럼 많은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싣지도 못하였다는 용안(龍安)의 곡식이 감합(勘合)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 세 번째이고, 7월에 선적하여 10월에 비로소 통진(通津)에 도착한 것이 그 네 번째입니다. 구구절절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니 농간을 부린 진짜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전의 하교가 준엄하고 조법(漕法)이 지극히 중하니, 그들을 징계하는 정사에 있어서 선주(船主)와 사공(沙工)은 응당 일률(一律)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김운천(金云千)과 채원서(蔡元西) 두 놈은 경기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잡아 올리게 해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형전을 시행하고 곁꾼〔格軍〕들은 모두 한 차례씩 엄히 형신하여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산(礪山)과 용안(龍安)의 색리(色吏)는 이름을 빌려 몰래 떠나 각각 엄히 한 차례 형신을 하여 정배(定配)하고, 여산의 색리로 뒤를 따라오면서 동정을 살피다가 뒤늦게 자수한 자는 공모한 자취가 뚜렷하게 있으	二十三日。 備邊司啓:“以靈巖、羅州臭載事, 有旨令廟堂稟處矣。 今此臭載, 可疑者甚多。 裝載穀數之各供相左, 一也。 沙嶼水沈, 初非全船覆敗, 設或霑?, 石數則當自在。 鉤拯與否, 初非可論, 則所謂未鉤拯之若是?多者, 二也。 龍安穀之稱以未載者, 勘合記則自在, 三也。 七月裝發之十月始到通津, 四也。 節節破綻, 事事訝惑, 作奸之眞贓, 不翅和盤託出。 慈敎截嚴, 漕法至重, 其在懲創之政, 船主及沙工之合施一律, 無容更議。 金云千、蔡元西兩漢, 令畿營捉上, 施以梟警之典, 格軍竝嚴刑一次懲勵。 礪山、龍安騎船色吏之借名替行者, 各嚴刑一次, 定配; 礪山色吏之?後觀望, 晩始自現, 顯有和應之跡, 嚴刑二次, 島配。 穀主官之不能操束, 地方官之不善檢察, 俱有其責, 礪山、金堤、臨陂、龍安?及通津前前?, 竝令該府拿

	니 엄히 두 차례 형신한 뒤에 도배(島配)해야 할 것입니다. 곡식을 맡은 관리들이 잘 단속하지 못한 것과 지방관(地方官)들이 잘 살피지 못한 것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여산·김제(金堤)·임피(臨陂)·용안(龍安)의 수령(守令)과 통진(通津)의 전전 수령도 모두 해부(該府)에서 나감(拿勘)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와 임피의 가색리(假色吏)들이 애당초 배를 타지 않은 것을 일이 매우 해괴하니, 문목(問目)에 이 첨가하여 공초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勘, 而金堤、臨陂之竝與假色吏而初不騎船, 事甚駭然, 添問目捧供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24일(병인) 4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여산 등의 고을에서 일어난 조운선 파손 사건의 처리를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여산(礪山) 등 네 고을의 대동선(大同船)의 선주(船主)와 사공(沙工)에게 해당 형률을 시행하는 데 대한 초기(草記)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법을 멸시하는 간악한 무리들이 아마 그칠 줄 알게 되겠지만, 이번의 사단을 인하여 또 단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주와 사공들이 경주인(京主人)에게 빚을 지는 문제입니다. 이 무리들은 공곡(公穀)을 처음 선적(船積)할 때에 이미 횡령하고는 마침내 서울에 와서 곡식을 바칠 때에 경주인에게 빚을 내는데, 경주인은 턱없이 높은 이자를 탐내고 선주와 사공은 제때에 상납하는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에 양편이 서로서로 호응하여 드디어는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이 폐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폐단의 근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집주선(執籌船)이 내려가기를 기다려서 삼남(三南)의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세를 실어 보내는 각읍(各邑)에 선주와 사공들에게 조사한 다음 경주인에게 갚은 이자가 이미 본전의 곱절에 이른 것은 빚 문서를 감영에 모아 놓고 모두 말소하게 해야 합니다. 설사 부득이하여 빚을 내어 마감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빚을 갚는 것은 본전의 곱절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절목(節目)을	備邊司啓: "礪山等四邑大同船船主及沙工, 施以當律之意, 草記啓下矣。 奸頑蔑法之徒, 庶或知?, 而因此事端, 有所操飭者, 船主、沙工輩之邸債是耳。 此輩旣乾沒公穀於裝載之初, 遂圖出邸債於上納之時。 爲京邸者, 利其滋殖之無厭, 爲船主、沙工者, 幸其勘納之?期, 便同和應, 遂成痼?。 此弊不祛, 則原竇自在矣。 待執籌船下去, 令三南道臣, 行關兩稅裝載各邑, 査問船主、沙工後, 邸債所報之已滿倍殖者, 本文記收聚營庭, 一竝爻周。 設有不得已出債磨勘之事故, 日後備報, 無過倍殖之意, 成節目, 報本司反貼施行事, 行會三道道臣處何如?" 允之。

	만들어 본사(本司)에 보고하고 반첩(反貼)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세 도(道)의 도신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일(신축) 5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삭제(朔祭)를 겸하여 지냈다.	詣殯殿, 行朝奠兼朔奠。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2일(임인) 4번째기사 강론을 계속할 날짜를 정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모레에 사찬(賜饌)할 것이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 전후 시강(侍講)에 참가한 강관(講官)들, 홍문관(弘文館)의 관리들, 승지(承旨)들, 사관(史官)들,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은 모두 들어와서 대령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어서 강론(講論)할 날짜를 7일로 정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再明日, 當賜饌矣。時原任大臣前後侍講之講官玉堂承史閣臣, 竝來待。” 又敎曰: “繼講日字, 以初七日爲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3일(계묘)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심이택 사건의 처리를 명하다	의주 암행어사(義州暗行御史) 이응하(李應夏)를 소견(召見)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심이택(沈履澤)의 일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지극히 통탄할 일이다.” 하니, 이응하(李應夏)가 아뢰기를, “서계(書啓)에 이미 자세히 써 올렸지만 그가 탐오한 수량은 심히 많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初三日。 召見義州暗行御史李應夏。大王大妃曰: “沈履澤事, 不料其若此之甚, 極爲痛歎。” 應夏曰: “書啓已爲備達, 而其所贓犯, 數甚?然矣。” 大王大妃曰: “灣尹之廉與不廉, 只認以包蔘一款矣。 其所犯之許多贓物, 又在此外, 尤不覺痛?矣。”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청렴한가 청렴하지 못한가는 그저 포삼(包蔘) 한 가지에만 달려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범한 허다한 장물(贓物)이 이밖에 또 있다고 하니, 더욱 나도 모르게 통탄하게 된다.” 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3일(계묘) 2번째기사 이응하가 뇌물질과 탐오죄를 범한 심이택의 죄상을 보고하다	의주 암행어사(義州暗行御史) 이응하(李應夏)가 올린 서계(書啓)에, “전 부윤(府尹) 심이택(沈履澤)은 그저 뇌물을 주고받는 것만 일삼고 순전히 재물을 거둬 들이는 것만 힘썼습니다. 크고 작은 정령(政令)은 뇌물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고, 크고 작은 읍무(邑務)는 곳곳마다 병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탐학한 짓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한 고을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임술년(1862)과 계해년(1863)에 부(府)에서 작미(作米)할 것을 작전(作錢)하면서 이익을 남겨 먹었고, 환곡(還穀)과 양향곡(糧餉穀)을 그대로 사용(私用)으로 돌렸으며, 변진(邊鎭)의 군적(軍籍)까지 제멋대로 삭감(削減)하여 제 뱃속만 채운 자취를 가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세 섬을 개방하고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국경에서의 신용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사상(私商)에게서 뇌물을 받고 몰래 국경을 넘겨주고, 포삼(包蔘)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여 강제로 받아먹었습니다. 매임(賣任)과 매과(賣科), 그리고 부민(富民)들로부터 재물을 강탈한 것이 도합 27만 3,700냥(兩)에 달합니다. 탐학스럽고 법을 어긴 행위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인산 첨사(麟山僉使) 김낙유(金洛裕)는 주진(主鎭)을 빙자하여 가로채고 강탈한 것이 2,500여 냥이나 되며, 법을 무시한 허다한 행위는 이루 다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범한 바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 그의 죄상을 유사(攸司)에게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義州府暗行御史李應夏書啓: “前府尹沈履澤, 徒事賄賂, 專務騙財。 大小政令, 非賄不成, 巨細邑務, 無處不病。 貪?三載, 一府蕩析。 壬戌、癸亥府作米之作錢取剩, 還穀、餉穀, 因歸私用, 邊鎭軍籍, 惟意削減, 莫掩肥己之跡。 國界三島, 許闢放賣, 不念交界之信, 私商之捧賂潛越, 包蔘之加稅勒捧。 賣任賣科及富民勒奪, 合爲二十七萬三千七百兩。 貪虐不法, 莫此爲甚。 其罪狀, 令攸司稟處。 麟山僉使金洛裕, 憑藉主鎭, 橫侵勒奪, 爲二千五百餘兩。 許多不法, 難以枚擧, 以若所犯, 不可仍置。 其罪狀, 令攸司稟處。”
고종 1권, 1년(1864		議政府啓: “殯殿都監物力, 前劃已盡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5일(을사)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빈전 도감의 비용을 조달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물력이 전에 나누어 준 것은 이미 다 떨어져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선혜청의 쌀 30석(石)과 어영청의 무명 3동(同)을 획급(劃給)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無餘, 惠廳米三十石、御廳木三同, 使之劃給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1일(신해) 1번째기사 공충 감사 이병문이 삼정 가운데 가장 폐단이 심한 환곡 문제를 거론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건대, 온 도 안에서 삼정(三政)이 폐단이 되고 있는데, 삼정 가운데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합니다. 재작년에 3분의 2를 탕감한 뒤에 그 당시에 보관하고 있는 실제의 수량을 계산해 보니, 임술년(1862) 여름과 겨울에 각 곡(各穀)을 합한 절미(折米)가 22만 6,683석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숫자와 탕감한 숫자를 이정(釐整)하여야 하는데 너무나 아주 용이하지 않아서 작년 8월에 와서야 전 도신 유장환(兪章煥)이 비로소 비변사에 보고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본도의 각읍(各邑)에 남아 있는 곡식의 수량은 본래부터 고르지 않아서 탕감한 뒤에 남아 있는 숫자가 많은 곳은 1만여 석이 되고 적은 곳은 혹 1, 200석밖에 안 되니, 많은 곳을 덜어서 적은 곳을 보태 주어 총량을 고르게 하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책(成冊) 중에서는 비록 옮겨 가고 옮겨 온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은 모두 허류(虛留)이거나 유망(流亡)한 사람들의 포흠(逋欠)입니다. 해당 연도의 이자 곡식도 오히려 백징(白徵)하게 될까 걱정인데, 다른 고을로 이송하는 것을 더욱 어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탕감해 준 거조도 이미 전에 없던 은택을 베푼 것이니, 지금 와서 참으로 감히 다시 그런 조처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곳에 도로 기록하	十一日。 公忠監司李秉文疏略:“第念一省之內, 三政爲弊, 三政之中, ?弊爲最, 而再昨年三分二?蕩之後, 計其時存實數, 則壬戌之夏秋各穀合折米, 爲二十二萬六千六百八十三石矣。 其存蕩釐整, 極不容易, 至昨年八月, 前道臣兪章煥。 始報籌司, 顧今本道各邑之所在穀數, 自來不均, 蕩後餘數, 多則爲萬餘石, 少或爲一二百石。 不得不?多益寡, 以圖均總, 而成冊中雖有移去移來之數, 其實則皆虛留流亡之逋也。 當年耗作, 尙患白徵, 他邑移送, 尤豈可辦? 前此蕩減之擧, 旣出於曠絶之澤, 則到今固不敢更有希?, 且欲還錄本處, 則京外已勘之簿, 亦難擅自還寢。 若不及今變通, 則湖西一省, 必將無邑乃已。 伏乞聖明仰稟東朝,

	려고 하니 이미 마감된 서울과 지방의 장부 역시 마음대로 도로 정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에 와서 변통하지 않는다면 호서 한 도는 반드시 남아나는 고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우러러 대왕대비전에 여쭙고 굽어 의정부에 하문한 다음 좋은 쪽으로 처분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俯詢廟堂, 從長處分焉。” 批曰: “疏辭, 令廟堂稟處。”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2일(임자)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의주부의 폐단을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부(義州府) 암행어사 이응하(李應夏)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본부에서 이른바 꾸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비용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는 먼저 양향곡(糧餉穀)을 꾼 것으로, 한갓 빈 장부만 남겨 둔 채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것은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첨향(添餉)했다고 하는 것은, 군영(軍營)의 곡식을 고을의 향곡에 보태어 넣고는 가을이 되어서 원래의 환곡(還穀)은 계산하지 않고 이자를 받는 것만을 이롭게 여겨, 수량을 늘려서 곡식을 풀어 군영의 곡식이 해마다 줄어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작전(作錢)했다고 하는 것은, 봄에 상정가(詳定價)로 나누어 주고는 가을에 시장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작년 가을에 조적(??)할 때 1석당 간색(看色)이나 축날 몫으로 더 받아들인 것이 8, 9냥이나 됩니다. 계해년(1863)의 총 수량으로 말하면 절미(折米)와 축날 몫으로 더 받아들인 것을 합할 경우 도합 3만 9,800여 석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군영과 의주부에서 각종 명목으로 꾼 것이 2만 5,600여 석이고 각반(各班)의 특별 환자곡이 3,100여 석이며, 의주부 창고에서 꾼 것이 600여 석이고 군영과 의주부의 각반의 지방(支放)한 것이 6,800여 석이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몫을 제외한 것이 3,400여 석입니다.	議政府啓: “卽見義州府暗行御史李應夏別單, 則‘其一, 本府所謂貸下云者, 稱以公用不贍, 先以餉穀?貸, 徒擁虛簿, 有出無入。 所謂添餉云者, 以營穀添付邑餉, 及其秋作, 不計元還, 利於取剩, 加數發賣, 以至營穀之歲縮。 所謂作錢云者, 春以詳定分給, 秋以市直捧納, 昨秋??時, 一石竝耗色落, 爲八九兩矣。 以癸亥總論之, 折米竝耗, 合爲三萬九千八百餘石內, 營府各樣貸下二萬五千六百餘石, 各班別還三千一百餘石, 灣庫貸下六百餘石, 營府各班支放六千八百餘石, 除民分條爲三千四百餘石。 每以放下之不足, 割本於元總, 以至倉?空虛之境, 年久貸下之督捧, 僅爲四千餘石。 其中三千石, 劃付山倉, 永作城餉, 而還總若不充數, 應放無以排比, 關飭該道該府, 別般措

	매번 내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곡의 총 숫자에서 본 밑천을 갉아먹어서 창고가 텅 비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꾼 것 가운데서 오래된 것을 독촉하여 받아들인 것은 겨우 4,000여 석이 되며, 그 가운데 3,000석은 산성의 창고에 획부(劃付)하여 영원히 성향(城餉)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곡의 총 수량이 만약 숫자를 다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응당 지출하여야 할 경비도 제대로 배비할 수가 없을 것이니, 해도와 해부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별도로 조처하는 일입니다. 변경 지방의 중요한 지역이어서 책응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은데, 이처럼 경비가 바닥나는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법의 뜻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양향곡을 꾸는 이런 못된 버릇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공적인 비용이라고 한 이상, 공적인 비용은 반드시 귀속되는 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향곡을 보탠다면서 고을의 양향에 뒤섞어 넣은 것은 이자를 받아먹자는 계책에 불과한 것으로 빈 장부만 남아 있게 만든 것이고, 곡식을 푼다는 명색은 백성들을 다 없애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따라서 상정가(詳定價)로 내주고 시장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상의 여러 조항들은 영읍(營邑)으로 하여금 끝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여 모두 다 추징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방도를 충분히 강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받아들였다는 4,000여 석 가운데 3,000석은 이미 영원히 산성의 양향으로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 나머지 1,000석 남짓은 지적하여 구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상세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향을 포흠한 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축낸 석수(石數)를 현록(懸錄)하여 크게 징계하는 거조로 삼아야 합니다. 1. 어의궁(於義宮)과 금위영(禁衛營)의 둔전(屯田)에서 경감(京監)들이 매년 세금을 거두면서 마음대로 더 거두어들여서 비싼 값으로 집전(執錢)하며 백성	劃事也。 以若邊上重地, 策應之繁, 乃有此?竭乃已之患, 言念法意, 萬萬寒心。 貸下之必以餉穀, 孰爲此?階, 而旣曰公用, 則公用必有歸屬。 添餉之混入邑穀, 不過取剩之計, 而致使徒擁虛簿, 發賣名色之爲, 無民乃已者也。 又從以詳定出給, 時價收捧乎右項諸條, 令營邑到底鉤考, 徵刷淸帳之方, 十分講究。 繡衣徵捧四千餘石中三千石, 旣曰永付山城, 而其餘一千石零, 無所指的區別。 此亦詳査登聞, 其中犯逋人, 以石數懸錄於各其名下, 以爲大懲創之擧, 其一, 於義宮、禁衛營屯土, 京監輩每年收稅, 恣意濫捧, 高價執錢, 民不堪苦。 從今以後, 宮差營監, 一竝革罷事也。 自今年一從實數, 使本府納于巡營, 巡營則納于該宮該營之意, 永爲定式。 其一, 私蔘潛越之弊, ?爲禁斷事也。 此有由來禁條, 伏況慈敎申複之下乎? 姑待造蔘時, 當有別般糾察之意, 行關營邑何如'"? 允之。

	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궁차(宮差)와 군영의 감색(監色)들을 일체 혁파하는 일입니다. 금년부터는 한결같이 실제 수량대로 본부에서 순영에 납부하고 순영에서 해당 궁과 해당 영에 납부하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사삼(私蔘)을 몰래 중국에 넘기는 폐단을 각별히 금단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터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전의 하교가 자세히 여러 번 내려졌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인삼을 만들 때를 기다려서 응당 각별히 규찰해야 한다는 뜻으로 영읍에 관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3일(계축)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환곡의 폐단을 진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이 상소를 올려 환곡(還穀)의 폐단을 진달한 데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8만여 석을 특별히 탕감해 준 것은 은혜가 지극히 융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2만 6,000석 남짓도 또 빈 장부라고 하니, 참으로 이와 같다면 전 도신이 애당초 사실대로 등문(登聞)하지 않고 돌아갈 때에 임박하여 고르게 배분해서 억지로 명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무슨 까닭입니까? 비록 현재의 도신으로 말하더라도, 감사의 직을 맡아서 이미 해를 넘겼고 철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안(會計案)의 마감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뒤늦게서야 비로소 나열하였으니, 아주 태만한 것입니다. 전 도신과 새 도신에게 모두 월봉(越俸) 1등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다만 생각건대, 환곡을 내주고 들이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계제가 되는 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호서와 관서 지방이 더욱 심하여 당장 무슨 변이 일어날 형편입니다. 대개 중외(中外)에서 각종 방법으로 이자를 놓아서 그 이자로 1년 경비를 쓰는 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	議政府啓: 公忠監司李秉文疏陳還弊, 有旨令廟堂稟處矣。 三十八萬餘石之特蕩, 恩至渥也, 而餘存二十二萬六千石零, 又曰虛簿者。 苟如是焉, 則前道臣之初不以實登聞, 臨歸均排, 强作名色, 誠何故也? 雖以今道臣言之, 按事旣踰年而閱數序矣。 今緣會案磨勘之愆拖, 晩始?列, 殊涉稽緩, 新舊道臣, 竝施越俸一等之典。 第念?與?之爲吾民?階, 八道均然, 而就中湖西、關西, 尤??有朝夕之憂。 蓋中外各樣耗作之爲一年應用, 不可闕焉, 而一包穀之不曾斂散, 厥惟久矣。 凡此耗殖, 將從何出

	는 것이지만, 한 포(包)의 곡식도 일찍이 나누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자를 어디에서 내겠습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백성들에게서 백징(白徵)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이것은 크게 경장(更張)하여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 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조처하고 어떻게 변통할지 도신으로 하여금 충분히 탐문하고 헤아리며 여러 차례 상의한 다음, 논리적으로 계문(啓聞)하게 하여 여쭈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也? 不過是逐年白徵, ?矣富人, ?困何罪? 此不可不大更張, 爲?焚拯溺之擧, 其如何措劃, 其如何變通? 令道臣爛漫探察, 屢存商確使之論理, 啓聞, 以爲稟施何如?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3일(계축) 3번째기사 방곡의 폐단을 엄하게 신칙하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지방의 열읍(列邑)에서 각자 곡식을 다른 고을로 실어보내지 못하게 막는 탓으로, 곡식의 유통이 막혀서 시가가 뛰어오르는 사태가 일어나는 데 대해 일찍이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을만 이롭게 하고자 하여 주위의 여러 고을에 해를 미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러러 조정의 똑같이 대해 주는 의리를 체득한 것이겠습니까? 그 동안 명령을 내려서 신칙한 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 크게 지방관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닙니다. 영남, 호서, 호남, 해서 네 도의 도신에게 급히 행회(行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명령을 삼가 준행하여 혹시라도 곡식의 유통을 막지 말게 하되, 만일 혹시라도 전과 같이 소홀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도신은 파직하고 수령은 먼저 파직한 뒤에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又啓: “近來外道列邑之各自防穀, 致令貿遷路阻, 市直日踊者, 嘗所痛歎。 欲私一邑, 害及遠近, 是豈仰體朝家一視之義哉? 前後令飭, 有同越視, 大非分憂者所忍爲也。 星火行會於嶺南、湖西、湖南、海西四道道臣, 使之恪遵朝令, 毋或?阻, 而若或如前稽忽, 則當該道臣罷職, 守令則先罷後拿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17일(정사) 3번째기사	또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가 조사하여 아뢴 것 가운데 면천군(沔川郡)의 대동미(大同米)가 관청 경비로 들어간 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면천 한 고을이 피폐되어서 버리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又啓: “以錦伯査啓中沔川郡大同入於官用事, 有令廟堂稟處之命矣。 沔川一邑, 弊敗爲棄局也久矣, 而藉公納而歸私用, 至於大同之乾沒而極矣。 道

의정부에서 대동미를 유용한 면천 군수 서경보를 처벌할 것을 아뢰다	공납(公納)을 빙자하여 결국 사사로이 썼으니 대동미가 건몰(乾沒)된 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도신의 계사(啓辭)에 나열해서 진달하면서 이와 같이 지적하였으니, 전 군수 서경보(徐慶輔)는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캐묻고, 도신의 계사가 해를 넘기면서 지체된 것은 아주 태만한 짓이니, 해당 도신에게 월봉(越俸) 1등의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啓?陳, 若是指的, 前郡守徐慶輔, 令該府拿問重究, 道啓之經歲悠汎, 甚涉稽忽。 該道臣施以越俸一等之典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23일(계해) 1번째기사 빈전에 가서 조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 二十三日。 詣殯殿, 行朝上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일(신미) 2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삭전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삭전(朔奠)을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詣殯殿, 行朝奠朔奠朝上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3일(계유)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관〔?宮〕을 여는 별제(別祭)를 겸하여 행하였다	初三日。 詣殯殿, 行晝茶禮, 兼啓?宮別奠。
고종 1권, 1년(1864		詣殯殿, 行夕上食。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3일(계유) 2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4일(갑술) 1번째기사 빈전에 가서 조상식을 올리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初四日。 詣殯殿, 行朝上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4일(갑술) 2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5일(을해)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조상식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으며, 조전(祖奠) 겸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행하였다.	初五日。 詣殯殿, 行朝奠、朝上食, 行祖奠兼夕上食、夕奠。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6일(병자) 1	빈전(殯殿)에 나아가 견전(遣奠)과 조전(朝奠)을 겸하여 지내고 조상식(朝上	初六日。 詣殯殿, 行遣奠兼朝奠、朝上食。

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견전과 조전을 겸하여 행하다	食)을 행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7일(정축) 3번째기사 철종 대왕의 묘지문	(전략) 은언군(恩彦君)의 사우(祠宇)를 세우고 익평군(益平君) 이희(李羲)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를 세우고 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풍계군(?溪君)을 은전군(恩全君)에게 입계(入繼)시켜 그 후사를 세우고 면세전(免稅田) 300결(結)을 제급(題給)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후략)	立恩彦君祠, 使益平君羲主其祀; 立全溪大院君祠, 使永平君昱主其祀; 以豐溪君入繼恩全君而立其後, 給免稅三百結, 以供祭祀。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8일(무인)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별다례(別茶禮)를 겸하여 행하였다.	初八日。詣孝文殿, 行晝茶禮兼別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3일(계미) 3번째기사 효문전에서 네 번째 우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서 네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行孝文殿四虞祭。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5일(을유)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다섯 번째 우제와 망제를 겸하여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다섯 번째 우제(虞祭)와 망제(望祭)를 겸하여 지냈다.	十五日。 詣孝文殿, 行五虞兼望祭。

행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5일(을유) 3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7일(정해) 2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여섯 번째 우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서 여섯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行孝文殿六虞祭。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7일(정해) 3번째기사 전라 감사 정건조가 보리 환곡의 폐단을 이용한 나주 목사 송정희의 처벌을 아뢰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올린 장계(狀啓)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송정희(宋正熙)가 재결(災結)에 대해 조세를 감면시켜 준 것을, 보리 환자의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미명 아래 그대로 놔두고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궁결(宮結)의 조세 징봉(徵捧)을 장차 장부에만 실려 있는 환곡(還穀)으로 입본(立本)하려고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여 백성들에게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아전(衙前)들이 그것을 기회로 농간을 부려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파출(罷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마땅히 동조(東朝)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나주 목사의 사건은 지극히 개탄스럽다. 재결의 조세를 면제해 주지 않은 것	全羅監司鄭健朝狀啓“羅州牧使宋正熙災結減俵, 謂以牟還矯弊, 執留不分; 宮結捧稅, 將欲虛還立本, 襲謬加執, 吏緣爲奸, 民受其害。 不得已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大王大妃敎曰: “羅牧事, 極爲慨歎矣。 災結之不俵, 宮結之加執, 事係田政, 法律至嚴。 行查現發, 旣有可據, 則按法抵罪, 豈可容貸乎? 然而該邑之前後襲謬者, 果皆出於矯弊措?而然乎? 今於該牧使所爲,

	과 궁결을 추가로 받아내려는 것은 사안이 전정(田政)에 관련되어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조사하여 적발된 것은 이미 근거가 있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니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해읍(該邑)에서 전후 계속된 오류가 과연 모두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느라 그렇게 된 것인가? 지금 해당 목사(牧使)의 소행에 대하여 도신(道臣)의 장계(狀啓)에서는 조치를 하다가 잘못된 것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다면 어찌 법을 무시하고 장오죄를 저지른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규모가 큰 고을의 재정난이 온 세상이 통탄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계책이 궁한 나머지 그런 구차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착오를 일으킨 것이 비록 사소하지 않은 것이다고는 하나, 그 본래의 실정을 따질 수 있고 또 이런 때에 이런 판국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려우며, 공을 가지고 죄를 대신하는 사례도 없지 않으니, 나주 목사 송정희를 특별히 그대로 유임시켜 죄명을 지닌 채로 거행하게 하라. 잔폐한 판국을 바로잡을 방도만 있다면 어찌 융통성 없이 상법(常法)만 지키겠는가? 감영과 고을이 충분히 헤아려 의논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도록 힘쓰게 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분부하게 하라. 이번의 이 처분은 특별히 상례(常例) 밖에서 나왔으니, 만약 또 일을 그르치는 날에는 다시는 법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신칙하라.” 하였다.	道啓謂以‘施措做錯, 非其入己’者, 是必明有可據, 無所致疑, 則豈可同歸於蔑法、贓?之科哉? 雄府之凋敗致此, 擧世之所歎, 則此必計無所出, 行此苟且之事也。 做錯雖云非細, 有可以原其本情。 此時此局, 難付生手, 將功贖罪, 非無其例。 羅州牧使宋正熙, 特爲仍任, 使之戴罪擧行。 弊局矯?, 苟有其方, 則何可膠守常法乎? 營邑爛漫商確, 務得其當事, 自廟堂措辭分付。 今此處分, 特出例外, 如有?誤, 更不曲貸三尺事, 竝爲申飭。”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18일(무자) 2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일곱 번째 우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서 일곱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行孝文殿七虞祭。
고종 1권, 1년(1864		二十日。 詣孝文殿, 行卒哭祭。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20일(경인)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졸곡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졸곡제(卒哭祭)를 지냈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4월 28일(무술) 3번째기사 효문전에서 하향 대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詣孝文殿, 行夏享大祭。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일(경자)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庚子。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5일(갑진) 2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命祈雨祭, 不卜日設行。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4일(계축) 3번째기사 날을 받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날을 받지 말고 기우제(祈雨祭)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4일(계축)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서원현의 세곡미를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폐단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의 보고를 보니, ‘서원현(西原縣)의 전세는 지난 신유년(1861)에 조운(漕運)을 파하고 돈으로 바치게 한 뒤로 선가(船價)를 마련하지 못하여 원래 배정된 납부량에 흠축이 생겨 나이(?移)하여 미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지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田稅)로 바치는 쌀과 콩 및 선가는 대동법(大同法)의 규례대로 계산해서 제할 것은 제하고서 상납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안에서 축난 것을 나이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품복(稟覆)하였고 전세로 납부하는 쌀과 콩 및 선가는 애초에 마련하지 않았으니, 실로 이것은 절반가량 하다가 만 것과 같은 정사입니다. 일체 대동법의 예에 의하여 계산해서 제할 것은 제하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公忠監司李秉文所報, 則‘西原縣田稅, 往在辛酉, 罷漕賃納之後, 船價不爲磨鍊, 欠縮於充納, 致有?移彌縫, 不可不及今歸正。 田稅米太船價, 依大同例, 計除上納’爲辭矣。 以內縮?移事, ?有所稟覆, 而田稅米太船價之初不磨鍊, 實是半上落下之政。 一依大同例計除之意, 行會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4일(계축) 7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장산 이북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의 장계(狀啓)를 보니, ‘장산(長山) 이북의 11개 고을에서 조세로 바치는 콩을 상정(詳定)하여 대납(代納)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본색(本色)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과	議政府啓: “卽見黃海監司洪淳穆狀啓, 則以爲: ‘長山以北十一邑稅太, 詳定代納, 厥有久矣。 近以本色徵納, 民邑俱困, 且京差輩之高價濫作, 較諸時直, 不啻倍蓰。 自今每年年分, 探察

고을에 조세로 바치는 콩의 상정가 문제, 경차인의 폐단을 아뢰다	고을이 모두 곤궁하고, 또 경차인(京差人)의 무리들이 높은 값으로 멋대로 책정하여 시가(市價)에 비해서 몇 곱절나마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매년마다 연분(年分)을 풍년인가 흉년인가를 살펴서 혹은 상정하거가 혹은 본색으로 할 때에 등급을 나누어 구별해서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본색으로 할 때에 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호조(戶曹)에 바치더라도, 만약 타사(他司)로 이획(移劃)한다면 즉시 정박한 곳으로 뒤쫓아 가서 이른바 경차인의 명색을 분정(分定)하여 금지시킬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각영(各營), 각사(各司)의 경차인의 명색을 지난번 특별히 판하를 받들었던 것으로 엄금하소서. 11개의 고을에서 조세로 바치는 콩은 이따금 본색으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비록 호조에서 형편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사 형편을 참고하여 수시로 조절해 주는 것은 매우 편리한 논의입니다. 봄이 시작되면 배를 세내어 바치는 것은 종전부터 이와 같았고, 경차인을 혁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엄금한다는 조정의 명령이 내렸으니, 지금 거듭 번거롭게 품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豐歉, 或詳定, 或本色, 分等區別, 以爲稟旨擧行。 而雖以本色磨鍊, 待開春賃, 納于戶曹, 如有移劃他司, 則趁到泊分定。 所謂京差人名色禁斷事, 請令廟堂稟處'矣。 戶惠廳與各營、各司京差名色, 向奉特判, 已爲嚴禁矣。十一邑稅太之往往以本色責納, 雖緣度支事勢之不得不爾, 而參互年形, 隨時闊狹, 甚方便之論也。 開春賃船之納, 前已如此。 京差革罷, 纔有嚴禁之朝令, 今不必疊煩稟覆, 以此行會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5일(갑인) 2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行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6일(을묘) 3번째기사 삼각산과 목멱산에 기우제를 행하다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19일(무오) 4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 두 번째로 기우제를 행하다	용산강(龍山江)의 저자도(楮子島)에서 재차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22일(신유) 8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高宗 1卷, 1年(1864 甲子 / 청 동치(同治) 3年) 5月 25日(甲子) 7번째기사 북쪽 교외와 사직단에 네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북쪽 교외와 사직단(社稷壇)에서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四次祈雨祭于北郊、社稷。
고종 1권, 1년(1864		行五次祈雨祭于宗廟。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5월 28일(정묘) 6번째기사 종묘에 다섯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일(경오) 3번째기사 삼각산과 목멱산, 한강에 여섯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六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일(경오) 4번째기사 일곱 번째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이미 여섯 차례나 지냈건만 비가 아직껏 내리지 않으니,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침식(寢食)이 편치 않다. 일곱 번째의 기우제(祈雨祭)를 내일 향(香)을 받아 숭품(崇品)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圭璧之擧, 已過六次, 而甘霈尙遲。 言念民事, 寢食靡安。 七次祈雨祭, 明日受香, 遣崇品, 虔誠設行。”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일(경오) 5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의주부(義州府)의 암행어사(暗行御史) 이응하(李應夏)의 별단(別單)	議政府啓: “頃因義州府暗行御史李應夏別單, 覆啓行會矣。 卽見該監司洪

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의주부의 환곡과 양향곡의 폐단에 대해 진술하다	으로 인하여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監司) 홍우길(洪祐吉)의 장계(狀啓)를 보니, 해당 부윤(府尹) 이정현(李正鉉)이 보고한 바를 낱낱이 거론하면서, '본부(本府)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은 오랫동안 허류(虛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체 응당 써야 할 것은 성향미(城餉米)를 나대(挪貸)했기 때문에 원래의 총량 1만 석(石)은 한갓 빈 장부만 끼고 있을 뿐 남아있는 것은 조사하여 사사로이 징수한 몫인 4,000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석은 칙사 대접을 위하여 획하(劃下)하고 1,500석은 그 수량대로 환자로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감영(監營)과 의주부의 환자와 향곡으로서 역참(驛站), 발참(撥站), 경저리(京邸吏), 영저리(營邸吏)에 대여한 각양의 조(條)는 이미 기한을 연기하여 완전히 채워 넣게 하였으므로 한꺼번에 장부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주(義州)의 창고와 운고(運庫)에서 요미(料米)로 내준 것과 군관(軍官)의 노자 등 여러 조목은 모두 공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애초에 포흠(逋欠)을 범했다고 지적할 만한 향장(鄕長)과 아전(衙前)이나 노비(奴婢)가 없었습니다. 어의궁(於義宮)과 금위영(禁衛營)의 둔전(屯田)에 대한 세금을 고을에서 상납하는 것은 규례를 새로 만드는 데 관계되니, 해궁(該宮)과 해영(該營)에 다시 감결(甘結)로 신칙하도록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공곡(公穀)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적으로 공곡을 대여할 때에 각 구관 아문(句管衙門)에서 증빙할 만한 자취를 문건으로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더구나 산성(山城)의 향곡은 회안(會案)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애당초 관유(關由)하지 않고 손에 닿는 대로 나이(挪移)하였으니, 이것은 우롱한 것입니다. 이른바 '오랫동안 허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랫동안 허류되었다는 말로 일필로 단정해 버린다면 공곡을 소중히 여기는 법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祐吉狀啓, 則枚擧該府尹李正鉉所報, 以爲: '本府還餉, 年久虛留。 凡係應用, 挪貸城餉, 故元總一萬石, 徒擁虛簿, 所存不過査徵條四千餘石。 而三千石勑需劃下, 一千五百石如數分還, 待秋捧糴。 營府還餉各樣貸下之驛、撥站、京營邸吏條, 旣有排限充完, 無以一齊淸帳。 灣庫運庫放料、軍官資送等諸條, 皆是因公貸下, 初無犯逋鄕長、吏、奴之可以指的者。 於義宮、禁衛營屯稅之自邑上納, 係是創例, 甘飭於該宮、該營事, 更請令廟堂稟旨'矣。 公穀非私物也。 今此因公下貸公穀, 其各有句管衙門文報可憑之蹟乎? 況山城餉穀, 會案所載, 而初不關由信手挪移, 是反弄也。 所謂'年久虛留云'者, 必有所以。 虛留之由, 苟以'年久虛留'四字, 一筆句斷, 則公穀所重, 法意安在? 今此挪貸也, 虛留也, 雖非今尹所知者, 而更令十分鉤覈, 年條久近, 逋數多少, 一一修成冊報府後, 刻期督捧, 以爲趁速立本。 導掌旣已革罷, 自本道上納事, 捧甘該宮、該營何如?" 允之。

	지금 이처럼 나대했다는 것과 허류되어 있는 것이 비록 지금의 부윤(府尹)이 알 바는 아니나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포흠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일이 성책(成冊)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게 한 뒤에 기한을 정해 놓고 독촉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시급히 입본(立本)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도장(導掌)은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본도(本道)에서 상납하라고 해궁과 해영에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3일(임신) 3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 일곱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용산강(龍山江)의 저자도(楮子島)에서 일곱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七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4일(계유) 3번째기사 예조에서 여덟 번째 기우제를 지낼 것을 문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한 치 남짓하게 내린 단비는 비록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목마르게 기다리던 즈음에 내린 것이므로 참으로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주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번거롭고 설만한 데 관계되니, 여덟 번째 기우제(祈雨祭)는 우선 형세를 보아가며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昨日寸餘甘霆, 雖未周洽, 得於渴望之際, 誠甚萬幸。 繼此沛然, 方切顒祝, 而屢薦圭璧, 亦係瀆褻。 八次祈雨祭, 姑爲觀勢擧行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8일(정축)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인삼을 몰래 유통시킨 손상준과 임흥철에 대한 처벌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영작(金永爵)의 보고를 보니, ‘인삼(人蔘)을 몰래 장사한 죄인 손상준(孫尙俊)과 임흥철(林興哲)은 부교(府校)와 경별장(京別將)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고인(雇人) 박근식(朴根植)과 뱃사람 장칠성(張七星)·신윤구(愼允九)는 본부(本府)에 잡아가두었는데, 신윤구의 공초에 김원보(金元甫)가 현재 배천(白川)에 있다고 하니 잡아다가 대질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해방(海防)의 중요한 지역에서 서슴지 않고 법을 범하였으니, 근수의 많고 적음은 따질 것이 못됩니다. 손상준과 임흥철은 유수(留守)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을 경계시키게 하며, 박근식과 장칠성도 모두 엄히 형신하고서 원배(遠配)시키소서. 신윤구는 토설한 말이 매우 교활하니 김원보를 잡아오게 하여 대질한 뒤에 보고하게 하소서. 현장에서 발각된 인삼과 그것을 실었던 배는 부교와 경별장에게 내주어 격려하고 권면하소서. 이것은 무식한 백성이 저희들끼리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소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겠지만 조사하여 보고할 적에 심히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유수에게 문비(問備)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응당 대왕대비의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金永爵所報, 則‘潛蔘罪人孫尙俊、林興哲, 現捉於府校、京別將處: 雇人朴根植、船人張七星·愼允九, 捉囚本府, 而允九所供金元甫, 方在白川云。 捉來對質計料’爲辭矣。 今於海防重地, 無難犯法, 斤數多少, 在所不計。 孫尙俊、林興哲, 令留守大會軍民, 梟首警衆; 朴根植、張七星, 竝嚴刑遠配。 愼允九吐呑之說, 甚涉?蹊, 金元甫捉來對質後報來。 現捉蔘與所載船, 出給府校及京別將處, 以爲激勸。 此非愚氓所獨辦, 必有窩窟, 而査報之際, 殊甚?虞。 請該留臣施以問備之典。”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해방(海防)이 이와 같이 엉망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범한 놈들은 법대로	大王大妃敎曰: “海防之如此蕩然, 寒心極矣。 犯漢依律, 斷難容貸。 而利

3년) 6월 8일(정축) 5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해안 방어의 허술함과 인삼 밀매에 대한 것은 개성유수부가 일임하도록 하라고 명하다	처벌해야지 결단코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잇속이 생기는 곳이라면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백성의 정상이니 어찌 가엾지 않겠는가?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말단만 가지런히 하고자 하면 법을 위반하는 폐단을 끝내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저 금삼(禁蔘)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어쩌면 그리 일의 권형이 한결같지 못한가? 유수(留守)라는 것이 어떤 지위와 명망인데 제대로 금지하지 못하고 반드시 경별장(京別將)과 경포교(京捕校) 등의 명색이 있은 뒤에 비로소 이 그 폐단을 금지할 수 있단 말인가? 뒤에서 조종하는 소굴이 반드시 있을 형세인데 이는 모두 명색이 함부로 뒤섞이고 일의 권한이 한결같지 못한 탓이다. 손상준과 임흥철 두 놈을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되, 군사와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조리를 돌린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엄하게 곤장 30도(度)를 친 다음 절도(絶島)에 유배하여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삼으라. 그 나머지 여러 놈들은 엄히 형신하고서 원배(遠配)하라. 아직 조사하지 못한 놈들은 끝까지 캐내어 엄히 다스리라. 유수는 조사하고 캐묻기를 끝내 명쾌하게 하지 못했으니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이른바 경별장과 경포교 등은 지금부터 영원히 혁파(革罷)하여 금삼에 대한 절목을 일체 송도 유영(松都留營)에 붙여 살피게 하라. 이렇게 한 뒤에도 다시 이런 폐단이 있다면 유수가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니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之所在, 性命爲輕, 愚氓之情, 寧不惻然乎? 不揣其本, 欲齊其末, 則冒犯之弊, 終難止息。 大抵禁蔘一事, 何其事權之不一乎? 居留之臣, 是何地望, 而不能禁絶, 必有京別將、捕校等名色, 然後始禁此弊乎? 指使根窩, 必有之勢, 則都是名色猥雜事權不一之致也。 孫、林兩漢, 特貸一縷, 大會軍民回示後, 限死嚴棍三十度, 絶島限己身爲奴; 其餘諸漢, 嚴刑遠配。 未査之漢, 窮覈嚴繩, 留臣盤覈鉤問, 終不明快, 姑先從重推考。 所謂京別將、京捕校等, 從今永爲革罷, 禁蔘之節, 一付松營照察。 如是之後, 復有此弊, 則留臣溺職, 斷不曲恕矣。 以此申飭可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9일(무인) 4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온양(溫陽) 임술년(1862) 조(條)에 선혜청(宣惠廳)에서 받아들일 위미(位米) 15석(石) 남짓과 지정된 몫의 콩 89석 남짓을 해당 아전(衙前)이 떼어먹고 달아났는데	議政府啓: “卽見公忠監司李秉文所報, 則‘溫陽壬戌條宣惠廳納位米十五石零、位太八十九石零, 該吏乾沒逃躲, 尙未捉得; 大同米四百七十石, 民間未

의정부에서 온양의 상납할 조세미납의 문제에 대해 아뢰다	아직까지 잡지 못하였고, 대동미(大同米) 470석을 민간에서 거두지 못하여 봉납한 것은 겨우 100석이 될 뿐입니다. 계해년(1863)의 대동미로 받아들인 것이 단지 670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 370석을 임술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양에 추이(推移)하여 채워 넣게 되면 남는 쌀은 300석에 불과하며 부족한 콩이 720여 석이나 됩니다. 지금 결역(結役)을 마땅히 봉납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봉납하지 않은 것이 8,000여 두(斗)이고 관속이 포흠(逋欠)한 것이 4,000여 두이니, 만일 이 수량을 다 받아들인다면 700여 석의 상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민(結民)과 관속(官屬)은 모두 몇 해 간에 그대로 인습해왔기 때문에 사망한 자들이 많아서 이 수량대로 채워 받아들일 가망이 실로 없습니다. 그러니 임술조 위미와 콩 및 계해년조의 대동미 미납분과 각 아문이 받아들일 쌀과 콩을 모두 대전(代錢)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청안(淸安)에서는 각항의 고을 경비를 모두 결전(結錢)으로 섞어서 썼는데, 제한되어 있는 결전을 가지고 한없는 경비에 응하니 결전에서 축나는 양이 해가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사에 상납할 것으로서 5년 간 적체되어 있는 쌀, 콩, 무명, 돈을 합하면 2만여 금(金)이나 되는데, 지금 만약 본색(本色)을 독촉하여 상납하게 하면 고을이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질 형세이니, 상정(詳定)하여 5년으로 기한하여서 나누어 상납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충주(忠州)와 서원(西原)에서 특별히 시행한 은전은 조정에서 임시방편으로 변통한 정사에서 나온 것인데, 열읍(列邑)이 이것을 보고 전례로 삼아 문득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 대전은 다반사가 될 것이고 본색은 쓸모없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두 고을에서 포흠한 우두머리는 몇 놈이나 되든지 간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등문하게 해서 일률(一律)을 시행한 다음에 격외(格外)의 혜택을 혹시라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收, 而捧納僅爲一百石。 癸亥大同所捧, 只爲六百七十石, 而其中三百七十石, 推移充納于壬戌舊未納, 則時在米不過三百石, 不足太爲七百二十餘石矣。 今以結役當捧言之, 民未捧八千餘斗, 官屬逋四千餘斗, 若準捧此數, 可完七百餘石上納。 而結民與官屬, 俱是年久疊仍, 死亡居多, 捧此充納, 實無其望。 壬戌條位米、太及癸亥條大同未納與各衙門納、米、太, 竝代錢上納。 淸安各項邑用, 皆以結錢混用, 以有限之結, 應無窮之用, 則結錢欠縮, 年加歲增, 各司上納五年積滯者, 米、太、木、錢, 合爲二萬餘金矣。 今若本色責納, 勢將無邑無民, 許令詳定, 限五年排納'爲辭矣。 忠州、西原特施之典, 出於朝家權宜之政, 而列邑視此爲例, 輒欲效嚬。 苟如是焉, 則代錢爲茶飯, 本色爲弁髦乃已矣。 兩邑逋魁, 無論幾漢, 令道臣一一盤覈登聞, 施以一律。 然後格外之澤, 容有倖望, 以此意行會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1일(경진) 1번째기사 효문전의 탄신일에 작헌례를 거행하겠다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17일은 효문전(孝文殿)의 탄신(誕辰)이니,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거행하겠다. 제문(祭文)은 전 대제학(前大提學) 김병학(金炳學)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今十七日, 孝文殿誕辰, 當親行酌獻禮矣。 祭文令前大提學金炳學製進。”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5일(갑신)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6월 17일(병술)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작헌례를 행할 때 수고한 관리들을 포상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찬례 이의익(李宜翼), 예방 승지(禮房承旨) 유석환(兪錫煥), 집례(執禮) 이경호(李京鎬), 대축(大祝) 송희정(宋熙正)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十七日。 詣孝文殿, 行酌獻禮。 贊禮以下, 施賞有差。 贊禮李宜翼、禮房承旨兪錫煥、執禮李京鎬、大祝宋熙正, 竝加資。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3년) 6월 18일(정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4일(임인) 1번째기사 조두순이 경과의 공정성과 호서와 호남의 환곡의 문제 등을 건의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이번 경과(慶科)는 팔도(八道)의 많은 선비들과 민심의 향배가 걸린 기회이니, 만일 사후에 들리는 소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난다면 단순히 임금의 명을 받드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리에 어긋날 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규찰해서 징벌하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단속하고 신칙하여 기어이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묘당에서 경시관(京試官)에게 발패(發牌)하여 하나하나 불러서 면대하고 신칙하여 삼가는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호서(湖西)와 관서(關西)의 환곡(還穀)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로 품의를 거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껏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두 도(道)의 도신(道臣)을 모두 엄하게 추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목별로 대책을 진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문(登聞)하라고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旌義)와 대정(大靜) 두 고을의 수령(守令)을 최근에는 대부분 제주(濟州) 출신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게 맡겼습니다. 대체로 그 고을에 살면서 그 지방 관원이 되는 것은 무릇 정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로 허다한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그 조상의 분묘나 전토(田土)가 있는 곳에 수령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 까닭입니다.	初四日。 次對。 領議政趙斗淳曰: “今番慶科, 爲八方多士人心向背之機。 萬一事後傳聞, 出於期望之外, 則不但非對揚、殫竭之義, 安得無糾逖、警罰之擧乎? 豫先操飭, 期有實效何如?” 大王大妃曰: “自廟堂京試官發牌, 面面申飭, 使之惕念擧行可也。” 斗淳曰: “頃以湖西、關西糴弊釐正事, 有所經稟行會, 而于今屢朔, 訖無動靜。 兩道道臣, 竝從重推考, 使之條陳方略, 不日登聞行會何如?” 允之。 又曰: “旌義、大靜兩守令, 挽近多屬濟州文武人, 夫居其鄕, 爲其官, 凡係爲治, 誠有許多窒礙。 此《通編》所以不許其墳墓、田土所在處者也。 臣意則此兩邑, 作爲邊地窠, 京外有聲績人, 擇差以送, 濟州文武之有守令階級者, 則以三南邑中, 隨其相當窠差送, 似好矣。” 允之。 又曰: “宗英中, 大王別子外, 世遷, 禮也。 而南延君祠版, 在今日事體有別, 不祧之典, 有不

	신의 생각에는 이 두 고을을 변지과(邊地窠)로 만들어 경외(京外)의 치적(治績)이 있는 사람을 가려 차임하고, 제주 출신 문관이나 무관 중에서 수령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남(三南)의 고을 가운데에서 상당과(相當窠)에 따라서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실 중에서 대왕의 별자(別子) 이외에는 세천(世遷)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그러나 남연군(南延君)의 사판(祠版)은 오늘날의 사체로 보아 특별하니, 부조(不祧)의 법을 세차(世次)가 오랜 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생전에 근신하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시종 성실하고 돈독해서 경사를 기르고 복을 쌓아 우리 종묘 사직의 억만년 아름다운 복에 이바지한 것을 생각하면 당시에 내린 시호(諡號)가 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한 의당 좋은 시호로 고쳐 정하여 성상의 생각에 부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으나 주상이 아직 어려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대신이 이렇게 아뢰니, 당연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증 영의정(贈領議政) 문숙공(文肅公) 이일상(李一相)이 척화(斥和)를 주장하는 말을 하여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끝내 절개를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때에 절의를 지켰던 신하들은 모두 대대로 제사 받는 은전〔世祀之典〕을 받았는데, 이 집의 사판(祠版)은 친진(親盡)하여 장차 묻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조를 허락하여 높이 권장하는 정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김상철(金尙喆)의 시호는 충정(忠靖)인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음이 같습니다.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조흥진(趙興鎭)은 의주(義	待世次悠久之後。 且念平昔愼謹晦默, 終始肫篤, 毓慶儲祉, 用供我宗社萬億之休, 當時節惠, 非不優渥, 而在今日, 亦宜改定美諡, 以寓聖思, 恐好矣。” 大王大妃曰: “予亦有是心久矣。 而主上方在沖年, 姑未及領會。 大臣所奏如此, 當有處分矣。” 斗淳曰: “贈上相文肅公李一相, 抗言斥和, 旋作質北之行, 畢竟全節而還。 同時節義之臣, 擧蒙世祀之典, 而此家祠版, 親盡將埋矣。 特許不祧, 以寓崇奬之政, 恐好矣。” 允之。 又曰: “故相臣金尙喆諡號忠靖, 與其祖名, 音相同。 贈吏判趙興鎭, 義州守城, 始終敵愾之功, 于今塗人耳目, 而節惠闕一‘忠’字, 似是欠典。 此兩諡, 竝令弘文館改定以入何如?” 允之。 又曰: “故生員閔致舜, 以故相臣文忠公鼎重、故相臣文孝公鎭長之後, 事所後母至孝, 于今五十餘年, 士友間稱述不衰。 似此至行, 宜施臺憲之贈, 以勖世敎, 故仰達矣。” 允之。

	州)에서 성(城)을 지키면서 시종 용감하게 싸운 공로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는데 시호에 '충(忠)'이라는 한 글자가 빠졌으니, 이것은 흠이 되는 일인 듯합니다. 이 두 시호를 모두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다시 정해서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생원 민치순(閔致舜)은 고 상신 문충공(文忠公) 민정중(閔鼎重)과 고 상신 문효공(文孝公) 민진장(閔鎭長)의 후손으로서 계모(繼母)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지금 50여 년이나 지나서까지 사우(士友) 사이에 칭찬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한 행실은 의당 대사헌을 추증해서 세상의 교화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7일(을사)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인삼 밀매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하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인삼(人蔘)을 밀매하는 문제에 대한 대왕대비의 하교가 정중하여 여간 엄격하지 않았는데, 금법을 설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권한이 분산될까 염려되어 특별히 송영(松營)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책임지고 완수하게 한 것은 순전히 근본을 맑게 하여 명령이 시행되고 금지시킬 수 있게 하자는 성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받드는 데에 응당 깨끗한 한 마음으로 법을 받들되 오직 삼가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다른 때보다 지녀야 합니다. 다만 잇속이 생기는 곳에는 폐단이 백방으로 생겨나서 육지로 달려가고 바다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여러 갈래이니, 교활한 군교(軍校)와 간사한 백성들의 정상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삼을 캐는 때가 점차 가까워오니 어떤 변괴가 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서는가 안 서	初七日。 議政府啓:"向以潛蔘事, 簾敎鄭重, 不翅截嚴, 而設禁之際, 慮或事權不一, 特令松營專任責成者, 亶出於淸源端本, 令行禁止之聖念矣。 其所對揚, 似當精白一心, 奉法惟謹, 警惕之意, 宜倍他時。 而第利之所在, 弊竇百出, 陸走、海越之蹊逕多岐, 奸校、細民之情狀叵測。 目今蔘節漸近, 不知何許變怪又出何地, 國綱之立不立, 全在於蔘禁之行不行。 主管旣專, 分謗無所, 今日留臣之責, 非往時之比矣。 更加提飭, 使之另立科條, 到底

	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삼금(蔘禁)이 시행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청이 이미 한 곳이라 비방을 나누어 들을 곳이 없으니, 지금 개성 유수(開城留守)의 책임은 지난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신칙하여 따로 과조(科條)를 세워 철저하게 살피게 해서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의 금령을 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綜察, 以爲奉朝令、申國禁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18일(병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26일(갑자)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환곡 폐단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관서의 환곡(還穀)에 대한 폐단을 제거할 방도를 도신(道臣)에게 널리 문의하여 등문(登聞)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연석에서 아뢰었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홍우길(洪祐吉)의 장계를 보니, ‘첫째는 환곡을 완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총 수량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값을 줄여서 입본(立本)하는 것이며, 셋째는 환곡을 거두는 것을 중지하고 급대(給代)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곡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입본하거나를 막론하고 원래의 수량을 다 채워 넣기 전에는 모곡(耗穀)을 취해서 경비로 쓰던 것을 우선 중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데에서 급대하는 방도는 오직 민호(民戶)나 전결(田結)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뿐입니다. 도내의 전결이 8만 4,000여 결이니 결당 쌀 5두(斗) 씩을 거두어들이면 도합 2만 8,000여 석(石)이 됩니다. 이것을 매년 환곡에서 이자로 나오는 수량인 8만 4,000석과 비교하면 모자라는 수량이 5만 5,000여 석입니다. 이를 다시 호적의 총수인 21만 호에 배비(排比)하여 호당 쌀 4	議政府啓: “頃以關西還弊矯捄之方, 令道臣博採登聞之意, 筵奏矣。 卽見該監司洪祐吉狀啓, 則以爲: ‘一曰, 完糴而減總; 二曰, 減價而立本; 三曰, 停還而給代。 毋論完糴與立本, 原數未完之前, 取耗經用, 不得不姑停, 則從他給代, 惟有敷斂於戶與結而已。 道內田結八萬四千餘結, 每結出米五斗, 共爲二萬八千餘石。 以此較準於年例還耗八萬四千石, 則餘數五萬五千餘石, 排比於籍總二十一萬戶, 戶收四斗米, 優可取盈。 而又自營邑, 課歲捐俸, 湊合幾千百石, 則戶排之數, 當

	두(斗) 씩 거두면 모자라는 숫자를 넉넉히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영읍(營邑)에서 해마다 녹봉의 일부를 내놓게 할 경우 합친 수량이 몇천 몇백 석은 될 것이니, 각 호당 배비하는 수량을 얼마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폐단을 일체 바로잡기에는 부족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임시 방편의 조처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곡과 양향곡(糧餉穀)을 그대로 두느냐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와 민호와 전결을 한 곳에만 배정하느냐 모두 거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 사이에서 망녕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결론지어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국가들에서 재용(財用)이 나오는 곳은 토지가 아니면 백성입니다. 환곡을 내어주었다가 받아들였다 하면서 모곡을 취하여 경비로 쓰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나기 마련으로 이 백성들이 이로 인해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폐단이 생기는 법을 고수하여 마침내는 빈 장부를 살피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정사를 행하면서도, 이것은 기본 제도이니 폐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과 실제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결에서 거두어들인다는 말과 민호에다 배비한다는 말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판으로 마구 징수하기 보다는 차라리 토지에서 거두고 민호에다 배정하여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게 해 꾸밈이 없게 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도신이 논한 바 민호에 배당시킨다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배당하는 것이고, 전결에다 배당시킨다는 것은 토지에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호 참작해 응당 써야 할 수를 모으고 거기에 영읍에서 덜어낸 녹봉으로 보충하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힘을 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곡에 이르러서는, 바로 나라의 불의의 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비축으로, 나라에 비축이 없다면 변란이 생겼을 때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크게 경장(更張)하는 시기에 만약 채워 넣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민호별로 납부하고	爲減却幾分。 此不足爲一切釐革, 猶可謂方便措處。 而至若還餉之仍貫、易轍, 戶結之單擧、竝行, 不可妄議於其間, 請令廟堂指一稟處'矣。 爲天下國家, 財用所出, 非土地則民人也。 糶糴之取耗經用, 其來已久, 而法久弊生, 致斯民於塗炭, 而墨守已弊之法, 畢竟按虛簿而行奪財之政, 而曰: '此, 經法也, 不可廢也', 名實不副矣。 與其避結斂戶排之名而爲此白地濫徵, 曷若出之於土地, 匯之於民人, 名正而言順, 無所遮飭也。 道臣所論戶排, 卽民人也, 結排, 卽土地也。 參互通均, 以湊應用之數, 而營邑捐補, 亦足以紓幾分民力。 至於糶糴, 卽有國不虞之儲蓄。 國無所蓄, 緩急奚恃? 而今當大更張之會, 若一切以充完爲事, 則彼戶納、結納之民, 疾首蹙頞, 從前糶糴之苦, 將一般矣。 姑待還政釐正, 更爲從長啓稟施行。 各山城餉穀, 此非一日可停之儲蓄, 使之如法斂散, 而各邑餘存還穀, 竝執錢留置各邑, 以待節次知委。 若是變通之後, 則救焚拯溺, 不容少緩者, 卽輕殖也, 添餉也。 無論可捧不可捧, 惟當一切蕩減, 以謝西

	전결당 납부하는 백성들이 잔뜩 상을 찡그리는 것이 종전에 환곡으로 인해 고통받던 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선 환곡에 대한 정사가 이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쪽으로 계품하여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각 산성(山城)의 양향곡은 하루라도 정지시키지 못할 저축이니 법대로 거두고 내어주게 하되, 각읍(各邑)에 남아 있는 환곡은 돈으로 바꾼 것까지 모두 각읍에 남겨두게 하고 절차가 정해지기를 기다려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통한 다음에 마치 불 속이나 물 속에서 사람을 구하듯이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자를 가볍게 하는 것과 양향곡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막론하고 일체 탕감해 주어 서쪽 지방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중에도 또한 수습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니, 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성책(成冊)하여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화전세(火田稅)도 상정가(詳定價)로 대전(代錢)하도록 하면 바로 또한 고질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대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뜻까지 절목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다시 수정해서 계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영작(金永爵)의 보고를 보니, ‘관서의 소미(小米) 2만 석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을 전례대로 급대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하는 것이 연례(年例)로 되었으니, 본사에서 구관하는, 해서(海西)에 있는 곡식 중에서 이 숫자만큼 획급(劃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民之心。 而第其中, 亦不無可以收拾者, 則築底査簿, 修成冊報來。 火稅之許以詳定代錢, 卽亦砭熵膏肓之一對投也。 請竝以此意, 使之成節目上送, 更加刪潤, 以爲啓下何如?” 允之。 又啓: “卽見開城留守金永爵所報, 則以爲: ‘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給代’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本司句管穀中, 準此數劃給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26일(갑자) 4번째기사 칠석제를 실시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設七夕製于泮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7월 28일(병인)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양주의 북한 산성 양향미를 다른 곳에서 보충해 주어 요미를 지급하게 해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총융청(總戎廳)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본청(本廳)에서 관할하고 있는, 양주(楊州)에 있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양향미(糧餉米)를 경술년(1850)에 탕감한 뒤 급대(給代)한 몫인 168석 남짓을 전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어 제때에 요미(料米)를 나누어주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軍需)에 관계되니 획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의 전례에 의거하여 경기에 있는 본부에서 구관하는 양곡을 회록(會錄)한 중에서 이 수량만큼을 가져다 쓰라는 뜻으로 해청(該廳)과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總戎廳所報, 則以爲: ‘本廳句管楊州所在北漢餉米, 庚戌蕩減後, 給代條一百六十八石零, 依例劃給, 以爲及時放料之地’爲辭矣。 係是軍需, 不可不劃給, 依近例, 以京畿所在本府句管穀會錄中, 準此數取用之意, 分付該廳及該道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1일(기사) 3번째기사 진전에 가서 작헌례를 행할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나 소자가 왕위를 계승한 뒤에 처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니, 추모하는 정이 미칠 바가 없다. 9일에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해야 하겠으니, 제문(祭文)은 전 대제학(前大提學)이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1일(기사) 3번째기사 진전에 가서 작헌례를 행할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5일(계유) 4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임금의 처음 행차를 준비하는 이유로 곡식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幸行)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다. 행차가 지나가는 곳에 온갖 곡식이 구름처럼 덮여 있을 것인데, 임금을 우러러보고 싶어하는 뭇 사람의 심정이야 누군들 기쁘지 않겠는가마는, 길을 닦을 때 만약 곡식을 상하게 한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임금의 본의에 매우 어긋난 것이다. 길의 형편에 따라서 하되 논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기영(畿營)에 신칙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今此幸行, 初元初擧也。 蹕路所過, 百穀如雲, 瞻旄群情, 孰不欣欣? 道路修治之際, 如有傷稼之歎, 則甚非聖主愛民、重農之意也。 隨其形便, 侵田畝事, 申飭畿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9일(정축) 3번째기사 진전에 가서 작헌례를 할 때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엄석정(嚴錫鼎), 집례(執禮) 박이도(朴履道), 대축(大祝) 홍헌종(洪軒鍾)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詣眞殿, 行酌獻禮。 贊禮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嚴錫鼎、執禮朴履道、大祝洪軒鍾, 竝加資。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10일(무인) 5번째기사 인삼을 밀매한 죄인을 처벌하다	잠삼 통화 죄인(潛蔘通貨罪人) 김정연(金正連)에 대해서는 효수(梟首)하고, 김순원(金順元) 등 5인(人)은 모두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에 원악도(遠惡島)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命潛蔘通貨罪人金正連梟首, 金順元等五人竝嚴刑一次, 遠惡島定配。 以政府啓也。
고종 1권, 1년(1864		十四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14일(임오)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15일(계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8월 24일(임진)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四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13일(신해) 1번째기사 호서의 장부에만 남아 있는 환곡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다	호서(湖西)에 허류(虛留)되어 있는 환곡(還穀) 19만여 석(石)은 탕감(蕩減)해 주고 탕감한 부분에 대해 매년 모곡(耗穀)으로 받던 9만여 냥(兩)은 연보전(捐補錢)이나 사결전(査結錢) 등을 취하여 사용하되, 예전에 각읍(各邑)에서 환곡과 모곡이 모자란다는 구실로 민결(民結)에서 나누어 거두었던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통렬히 개혁하라는 뜻으로 모두 절목(節目)을 만들어 낱낱이 보고한 다음에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한 것이다.	十三日。 命湖西虛留還穀十九萬餘石蕩減, 蕩減條每年耗下九萬餘兩, 以捐補、査結等錢取用, 而在前各邑之稱以還耗不足, 排斂於民結者, 嚴禁痛革, 竝令成節目枚報施。 因道臣狀請, 政府覆啓也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13일(신해) 3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詣眞殿, 行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15일(계축) 5번째기사 공납품 중 생전복과 생은어는 제외시키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각도(各道)의 6, 7월 물선(物膳) 중에서 생복(生鰒)과 생은구어(生銀口魚)가 백성들에게 큰 폐단을 끼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영구히 봉진(奉進)하지 말도록 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덜게 하라.”	敎曰: “各道六七月物膳中, 生鰒、生銀口魚, 大關民弊云。 自明年爲始, 永勿封進, 以除生民痼瘼。”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22일(경신) 3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詣眞殿, 行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22일(경신) 6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하납미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하납미(下納米)를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은 곧 간교한 이서(吏胥)들의 농간질로서 반드시 말썽이 일어나 나라의 체면을 크게 깎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환곡(還穀)을 포흠(逋欠)하는 것과도 다른 것인데, 영백(嶺	- 大王大妃敎曰: “下納米之中間乾沒, 卽奸吏輩之偸弄, 必有生梗, 大損國體, 寧不痛歎? 此與還逋有別, 則嶺伯

중간에 가로 챈 것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라고 명하다	伯)은 왜 일률(一律)을 적용하지 않고 어물어물 지나가려고 드는가? 아직 바치지 못한 여러 고을에는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할 것이며 만일 바치지 않았거나 착취한 고을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먼저 파직(罷職)하고 그 후에 붙잡아올 것이며 포흠죄를 범한 이서에게는 빨리 해당 형률을 적용하라. 다시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도백(道伯)이 먼저 참형(斬刑)에 처하고 나중에 아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胡不用一律而囫圇捱過乎? 未納諸邑, 自廟堂行會, 如有未納與乾沒之邑, 該守令先罷後拿, 犯逋之吏, 亟用當律, 復有此弊, 自道伯先斬後啓事, 分付。"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9월 23일(신유)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온양과 청안의 대동미와 상납분을 포흠한 자를 적발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온양(溫陽)과 청안(淸安)의 대동미(大同米)와 각 아문(衙門)의 상납(上納)이 적체된 사건과 관련하여 두 고을의 포흠(逋欠)한 두목을 철저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라는 뜻으로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감사(前監司) 이병문(李秉文)의 장계(狀啓)를 보니, '청안현(淸安縣)에서 신유년(1861) 조와 계해년(1863) 조의 관납미(官納米)를 포흠한 해당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감죄(勘罪)하여 정배(定配)하였으니 따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각 아문에서 아직 바치지 못한 미(米) 920여 석(石)과 태(太) 114석 남짓, 목(木) 16동(同) 30여 필(疋)은 앞서 보고한 것처럼 대전(代錢)하여 나누어 납부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미와 목의 수효가 적지 않음에도 포흠한 여러 놈들에 대해서는 시종 덮어주려고 하니 어디에 이런 법의(法意)가 있겠습니까? 포흠한 놈을 적발하지 못하면 상납하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없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다시 관문(關文)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議政府啓: "以溫陽、淸安大同與各衙門上納積滯事, 兩邑逋魁盤覈登聞之意, 啓稟行會矣。 頃見前監司李秉文狀啓, 則以爲: '淸安縣辛酉、癸亥條官納犯逋該吏, 已經勘配, 別無可論。 各衙門未納米九百二十餘石、太一百十四石零、木十六同三十餘疋, 依前報代錢排納事, 請令廟堂稟旨'矣。 米、木數爻不少, 而犯逋諸漢, 終始掩覆者, 安有如許法意乎? 逋漢不爲摘發, 則上納無以闊狹, 以此意請更爲行關。"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0월 15일(임오) 3번째기사 비변사에서 동래에 바치는 곡식을 지연시킨 고을의 수령을 질책하도록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하납(下納)을 연체한 고을을 적발하여 보고하라고 동래부에 관칙(關飭)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부사(府使) 강로(姜浩)의 보고를 보니, ‘성주(星州), 인동(仁同), 울산(蔚山) 등의 고을은 모두 전임 수령이 교체되고 새 수령이 오는 바람에 관리들이 포흠(逋欠)한 수량도 징발하여 보낼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을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 외에 포흠한 관리들은 먼저 참수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한 대왕대비의 지엄한 명령을 행회(行會)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세 수령은 모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일 파직시켜 잡아온다면 마침 수령을 영송하는 폐단만 더해질 뿐 수습하는 데에는 무익할 것입니다. 모두 우선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며 만약 동짓달 그믐 전이 되어도 여전히 지체시킨다면, 도신(道臣)이 그 사유를 갖추어 등문(登聞)하여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잡아온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備邊司啓: “頃以下納愆滯邑摘發修報之意, 關飭萊府矣。 卽見該府使姜浩所報, 則以爲: ‘星州、仁同、蔚山等邑, 俱値前後官之交替, 拔逋裝發, 杳無其望’云矣。 該倅重勘之外, 逋吏之先斬後啓, 向者慈敎, 截嚴行會。 而今此三倅, 赴任俱屬耳, 今若罷拿, 則適足以添迎送之弊, 無益於收刷之節。 竝姑令戴罪擧行, 若到至月晦前, 而依前愆拖, 則道臣具由登聞, 先罷後拿之意, 知委何如?” 允之。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0월 20일(정해) 7번째기사 사역원에서 인삼 밀매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개성 유수의 처벌	사역원(司譯院)에서 아뢰기를, “잠삼(潛蔘)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개성 유수영(開城留守營)의 포교를 붙잡아 보내라고 하였는데, 여러 차례 방보(防報)를 올리다가 결국에는 도망가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찮은 한 포교를 붙잡아 보내는 것이 무슨 큰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해당 유수(留守) 김영작(金永爵)에게 견삭(譴削)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司譯院啓: “以潛蔘査問事, 松都留營捕校, 有所推捉矣, 屢次防報, 末乃以逃躲爲說。 幺麽一捕校捉上, 有甚關係, 若是之漫漶也? 該留守金永爵, 請施以譴削之典。” 允之。

을 아뢰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2월 8일(을해)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연제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연제(練祭)를 행하였다.	初八日。 詣孝文殿, 行練祭。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2월 8일(을해) 2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2월 9일(병자)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호서와 관서 환곡의 폐단의 처리를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호서(湖西)와 관서(關西)의 환곡(還穀)을 이정(釐正)한 조처는 비록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기에 임시로 변통하기 위해 시행한 정사였으나 그 근원을 궁구하면 전적으로 방백과 수령이 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간교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흠(逋欠)했기 때문이다.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용납되었겠는가? 포리(逋吏)들을 조사하여 감처(勘處)하라는 뜻으로 이미 제칙(提飭)하였으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론조차 없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평안도(平安道)의 이른바 첨향(添餉)과 경식(輕殖) 및 군영(軍營)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하는 몫 등은 모두 환곡(還穀)이 새어나가는 구멍인 셈이다. 이것은 보통의 부포(負逋)와는 다르	初九日。 大王大妃敎曰:“湖西、關西釐還之擧, 雖是弊到極處, 一時權宜之政。 而苟究其源, 則專由於方伯、守令之不能擧其職也, 奸鄕、猾胥之偸弄欠逋故也。 國有紀綱, 豈容若是爲哉? 以逋吏査勘之意, 雖已提飭, 今至幾月, 尙無擧論, 未知何故。 而至若關西所謂添餉、輕殖及營各庫所逋排年條, 皆是還簿之尾閭也。 此異於尋常負逋, 則其可捧、不可捧之間, 宜有一番懲創。 添餉、輕殖, 秩秩區別, 營各庫排年條, 則溯考十年, 一竝査櫛,

	니,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간에 응당 한 차례 징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향과 경식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군영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한 몫은 10년 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성책(成冊)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條成冊報來, 以待處分之意, 自廟堂措辭行會。”
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2월 29일(병신)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九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월 1일(정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6+14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제2권】 진전(眞殿)에 가서 다례(茶禮)를 지냈다.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 初一日, 丁酉。 詣眞殿, 行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월 1일(정유) 2번째기사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文殿, 行晝茶禮。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월 30일(병인) 4번째기사 100살이 된 노인 46명에게 가자하다	100세 노인 46인에게 가자(加資)하고 곧바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초자(超資)하였다.【경기(京畿)는 김인득(金仁得), 공충도(公忠道)는 조정호(趙鼎鎬) 등 3인, 경상도(慶尙道)는 김령(金玲) 등 8인, 황해도(黃海道)는 조종건(趙宗建) 등 6인, 강원도(江原道)는 최광휘(崔光輝)와 김달정(金達鼎) 등 5인, 함경도(咸鏡道)는 박경천(朴京天) 등 13인, 평안도(平安道)는 김정숙(金正淑)과 정의규(鄭義奎) 등 10인이다.】	百歲老人四十六人加資, 直超崇政。【京畿, 金仁得; 公忠道, 趙鼎鎬等三人; 慶尙道, 金玲等八人; 黃海道, 趙宗建等六人; 江原道, 崔光輝、金達鼎等五人; 咸鏡道, 朴京天等十三人; 平安道, 金正淑、鄭義奎等十人。】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4월 8일(임신) 1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주다례를 지내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8일 날의 별다례(別茶禮)를 겸하여 행하였다.	初八日。 詣孝文殿, 行晝茶禮兼八日別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4월 9일(계유)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평안도의 오래된 포흠 곡식을 탕감하라고 명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우길(洪祐吉)이 장계(狀啓)를 올려, '도(道) 내의 각 고을에서 포흠(逋欠)한 환곡(還穀)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일은, 이번 전 도에 걸쳐 크게 변혁을 진행하는 시기와 상치하여 방대한 문서를 낱낱이 훑어보기가 쉽지 않아 지연되어서 특지(特旨)를 여러 번 받는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환곡이나 양향곡(糧餉穀)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어서 매년 배분하여 양향곡을 보탠다는 것이라든가 다른 곡식으로 대신	初九日。 平安監司洪祐吉狀啓, 以爲 "道內各邑還逋查實之擧, 値玆全省更張之時, 文簿浩穰, 搜剔未易, 以致稽遲, 至承特旨屢下, 惶懍靡措。 還餉之到底枵罄, 源委已久, 排年添餉、換作輕殖等, 虛留殆半, 流來舊逋, 都萃於平壤、江西等四五邑。 而雖是虛留, 亦非吏隷之偸弄也。 旣自營邑分俵排

	받아 이자를 가볍게 한다는 것들은 태반이 장부상에만 올라 있는 것이며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포흠한 수량은 모두 평양(平壤), 강서(江西) 등의 4, 5개 고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부상에만 올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전(衙前)이나 하인들이 농간질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군영(軍營)이나 고을에서 변상할 수량을 감해주고 배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니, 각자가 부담한 수량이 많건 적건 간에 대상을 지적할 수 없는 포흠 사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과 강서 등 고을의 경우에는 포흠을 시작한 해가 오래되어 시초의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뿐 아니라 혹 고을에서 포흠한 양을 메우기 위하여 변통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곳으로 넘겨버리기도 하고 혹 연전에 청사(廳舍)가 화재를 당했을 때에 타버려 더이상 근거할 문건이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새로 포흠한 것을 따로 조사관을 보내어 여러 차례 검열해 보았으나 4, 5년 전의 창고 문서가 모두 없어졌고 사망한 자도 많으며 더러 살아 있는 자가 있기는 하나 때리고 상하게 하여도 소용이 없거니와 또 그런 자들이 각기 부담하고 있는 수량도 많아야 수천에 불과합니다. 포흠한 양이 수십 만에 달하는 고을을 문서에 준해서 캐어내면 어찌 몇 명의 큰 괴수가 없겠습니까? 저들은 한낱 부차적인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조사 원칙을 논의해 보면 너무나 사실에 기초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하는 수 없이 그저 고을의 보고에만 근거하여 따로 성책(成冊)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올려 보냅니다. 이른바 매년 분배하여 양향곡을 보탠다는 것과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받아 이자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그 시초를 따져보면 각각 나름의 규정이 있었으나 나중에 와서 폐단이 되어 서로 엉켜서 몇천만이나 되는 환총(還總)을 다 없애는 동시에 40개 고을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강제로 빼앗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못살게 하고 고을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捧者, 則毋論各人所負多少, 有異指擬無處之逋案。 而至於平壤、江西等邑, 非但始逋根由之年久無稽, 或自邑補逋變通之際, 付之昧爽, 或年前公廨回祿時, 入於灰燼, 更無可據之文蹟。 至若新逋, 則別定査官, 屢回鉤覈, 而四五年以前倉簿, 都歸烏有, 死亡亦多。 雖或有生存者, 椎剝無益, 且各其所負, 多不過數千。 以若累十萬積逋之邑, 苟可以按簿, 則豈無幾個巨魁? 而此特其支流餘裔也。 論以査體, 極其沒實, 而不得不只憑邑報, 另成冊子, 上送議政府。 所謂排年添餉、輕殖, 原其創謬, 各自一規。 而末流爲弊, 相須互資, 消折幾千萬糴總, 豪奪四十州民産。 厲民病邑, 孰甚於此乎? 從今停還之後, 無以藉手, 弊源自塞。 惟有已俵而未勘者, 以錢以穀不下爲幾十萬, 而本是執契而排限, 不比於尋常債券。 論以可捧, 則均是可捧, 其躬犯自辨者, 十未一二, 率多移病於族戚無告之類。 謂之不可捧, 則無非不可捧。 虛實難卞, 取舍靡定, 故一通査括, 其始俵年條、排捧數爻、已捧未捧, 消詳開錄, 成冊上送。 而其中三

	지금 환곡을 정지해버린 후부터 자뢰(資賴)할 구실이 없어져 폐단의 근원이 자연히 막힌 셈이나 변상할 수량을 감해준 채 아직껏 마감을 하지 못한 것만도 돈으로 치거나 곡식으로 치거나 몇십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애초에 문건을 받아놓고 기한까지 정해놓은 것으로서 보통의 채권(債券)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려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스스로 손댄 것을 자기의 힘으로 마련하여 바칠 수 있는 자는 열에 한둘도 안 되고 거의 무고(無告)한 일가나 친척에게 고통을 넘겨야 할 형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기 어렵고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빼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진행하여 애초에 변상할 수량을 감해준 해의 몫과 배당하여 받기로 한 수량, 이미 받아들인 것과 못 받아들인 것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 성책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 가운데 삼마청(三馬廳)은 큰길 가여서 번잡한 역무(役務)가 많으므로 나라의 재산이 축난 채로 내려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무리들의 생활 밑천인 위토(位土)와 복결(復結), 매달의 돈과 요미(料米) 등은 전부 배정하여 바치는 것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형편이 더욱 군색해지고 중국 사신의 행차까지 박두하게 되면 배정하여 바치는 기한을 미루어주고 그것을 우선 빌려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해 치고 그렇지 않은 해가 없다 보니 처음에 10년으로 기한을 배정하여 채워넣도록 한 일이 지금 7, 80 년이나 밀려왔습니다. 이후에도 줄곧 그렇게 내려가면서 끝장이 나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 무리들의 형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재산이 중대하기는 하나 큰 일이 급하니 비록 기한 연기를 허락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미루어 준 해의 수량도 성책 중에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른바 본 감영(監營)의 각 창고에서 매년에 배당한다는 한 가지 문제를 말해	馬廳, 孔路役繁, 公貨積逋, 其來已久。 而其位土、復結、朔錢、月料等, 渠輩所哺者, 盡入於排納之中。 事力益窘, 使勅且迫, 則不免退排而挪用, 無歲不然。 始以十年排限者, 今則退至七八十年, 過此以往, 靡所止屆, 非但渠輩之勢使然也。 公貨雖重, 大役是急, 縱欲不許其展年, 而不可得矣。 其停退年條數爻, 亦爲區別於成冊中。 所謂本營各庫排年一款, 苟究其致逋之由, 則公用浩繁, 物價倍蓰, 各庫責應, 自多無利。 此所謂不食之逋, 雖未必全然歸罪於渠輩。 防逋排年, 一開倖路, 其所排年, 則渠輩之自辦無幾。 而還餉之外, 別有防逋穀名色, 割用元身, 少償其逋, 以其餘穀, 展年長耗, 以爲還本之地。 然課歲退排, 充完無期。 而今於停還之後, 更無可論。 自乙卯至甲子十年, 各庫防逋排年之數, 到底查實, 各人所逋數爻、姓名, 成冊修報。 但其所犯多數者, 始旣蕩析, 仍又轉而之他, 死亡居多, 雖其中見存者, 失業無依。 毋論所逋多寡, 無非刮毛出殺。 今番如干所捧, 卽是渠輩之死中求生, 盡力所至, 著手無術也。

	보겠습니다. 그 포흠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공적인 비용이 원래 방대한 데다가 물건값까지 몇 배로 올라가는 바람에 각 창고에서 공급할 적에 자연히 손해 보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떼어먹은 사람이 없이 축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 무리들에게만 죄를 모두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흠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곡(豫備穀)을 매년 배당하여 요행수를 바라는 길을 터놓는데 매년 배당해 놓는 데에서 그 무리들 자신이 마련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환곡이나 양향곡 이외에 축나는 데 대처하기 위한 예비곡이라는 명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에서 떼어내어 축난 것을 약간 보상하고 그 나머지 곡식은 해를 미루어 장리를 놓아 이자를 만들어 환곡의 본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매년 물어야 하는 것들을 배정한 기한을 미루어나가다가는 다 채울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환곡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다시 더 논할 것도 없지만 을묘년(1855)부터 갑자년(1864)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각 창고에서 포흠한 것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곡으로 매년마다 배당해 놓은 수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자 포흠한 수량과 성명을 성책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포흠죄를 범한 자들 중 수량이 많은 자는 애초에 고장을 떠났을 뿐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고장으로 떠나갔으며 이미 사망한 자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 있는 자라고 해도 직업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포흠한 수량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은 생억지를 쓰는 일이며 이번에 약간 바친 것도 그들이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수를 다 쓴 것입니다. 사실대로 대략 진술하오며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지금 기백(箕伯)의 사계(査啓)를 보니 환곡과 향식고(餉殖庫)에서 포흠한 것이 이렇게 문란하다. 앞서 두 번씩이나 특별히 하교하여 철저하게 검열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성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略陳事實, 恭俟處分。" 大王大妃敎曰: "卽見箕伯査啓, 則還穀及餉殖庫逋, 若是紊亂。 向所以再煩特敎, 欲其到底詳覈者, 良有以也。 而今於査簿成冊, 益知其所不知者。 以言乎還穀, 則虛留發賣, 半占會付之數, 倉簿散失, 至絶査考之階, 逋魁殆盡死亡, 支流略有生存。 是可曰'糴糴如法, 典守得宜?' 以言乎庫逋, 則取用無節, 不卽報償。 庫屬之稱以'公用自成不食之逋', 容或無怪, 而及其防逋之許排, 藉少爲多, 反致該掌輩之沾漑。 然則各庫之逋, 便同各等加下。 道啓中, 未必全然歸罪於渠輩云者, 正是著題語也。 先査之十年條, 旣如此, 則未査之幾年, 推可知矣。 兩項欠逋之櫛剔徵捧, 非無其道, 而還逋之虛實相蒙, 已爲久遠, 庫逋之盡非躬犯, 亦有可據。 則施以一切之法, 有違平允之道。 且況本道大更張之後, 庶有息肩之望, 今若徵督巨逋, 則蔓延無辜之民, 騷擾蕩析之患, 難保必無。 爲聖上初元之政, 宜以懷保爲先, 無寧竝付於昧爽, 以前道內還逋及營各庫所逋條, 一竝蕩減, 以示更始新化。 至若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환곡에 대해서 말해보더라도 장부에 올려놓고 팔아치운 것이 장부에 회록(會錄)한 총량의 반수를 차지하고 창고의 장부를 분실하여 조사할 근거조차 없어졌으며 포흠죄를 범한 우두머리들은 거의 다 죽고 더러 살아있는 자는 부차적인 나부랭이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환곡의 출납이 법대로 되었고 보관도 옳게 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창고에서 포흠한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무절제하게 가져다 쓰고는 제때에 보상하지도 않으니 창고의 관계자들이 공적인 비용이라 핑계대고 떼어먹은 사람도 없이 포흠으로 만드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하지만 포흠한 것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곡을 배당하는 것을 허락하자 작은 것을 핑계로 크게 만들어 도리어 맡아 보는 무리들이 점점 물들게 된다. 그렇다면 각 창고에서 포흠한 것이 매 회기의 가하(加下)와 같게 되니, 감사(監司)의 장계에서, '꼭 그 무리들에게만 죄를 모두 돌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실정에 들어맞는 말이다. 먼저 조사해낸 10년분이 이미 이와 같다면 아직 조사하지 못한 몇 년 분도 미루어 알 수 있다. 포흠한 두 가지를 참빗으로 훑듯 다 받아들일 방도가 없지는 않으나 환곡 포흠의 참과 거짓이 뒤섞여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창고 곡식의 포흠도 모두 그들 자신이 포흠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니 하나의 법을 적용하면 공정하게 해야 하는 도리에 어긋날 것이다. 더구나 그 도는 크게 개혁한 다음에 거의 숨을 돌리게 될 희망이 보이는 형편에서 이제 만일 포흠당한 거액을 징수하도록 독촉한다면 죄없는 백성들에게까지 번져서 소란을 피우고 고장을 떠나는 우환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임금이 왕위에 오른 첫 시기의 정사에서는 마땅히 쓰다듬고 보존해 주는 정책을 앞세워야 할 것이니 차라리 전부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앞서 이 도에서 환곡을 포흠당한 것과 감영의 각 창고에서 포	所逋各人之分等勘律, 令廟堂稟處。添餉中, 三馬廳之有停無捧, 雖曰事勢使然, 苟能早爲矯捄, 必無積小成大莫可收拾之境。 而因循抛置, 誰將任咎? 孔路繁役, 將有絶站之慮, 其排納條中, 三分二則蕩減, 三分一則除耗限十年排捧。”

	흠한 몫을 전부 탕감하여 새로운 교화를 다시 편다는 뜻을 보일 것이다. 포흠죄를 범한 매 사람들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감률(勘律)하는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양향곡을 늘린다는 것 중에 삼마청에서 정지시킨 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형편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바로잡았더라면 적은 것이 쌓여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럭저럭 내버려두고 지내왔으니 누구에게 그 책임을 지우겠는가? 큰길 가의 번잡한 역무로 장차 역참(驛站)이 끊어져버릴 우려도 있으니 배정하여 바치는 몫 중에서 3분의 2는 탕감하고 3분의 1은 이자 없이 10년에 배분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4월 17일(신사) 2번째기사 대왕대비가 농사철에는 백성을 동원하지 말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번 궁궐의 역사를 할 때에 성안과 성밖을 논할 것 없이 자원하여 역사(役事)에 나오는 자들이 마치 자식이 아비의 일에 달려오는 것처럼 하여 자기의 수고로움을 잊고 일을 하니, 사람들의 뜻을 볼 수 있으며 가상하기 그지없다. 다만 지금 한창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면, 이는 왕도 정치에서 백성들의 농사지을 때를 빼앗지 않는 도리에 흠이 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에 생각이 미치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한산인(閑散人)을 제외한 근교의 농민은 각자 돌아가서 먼저 농사일에 힘쓰도록 경조(京兆)의 낭관을 파견하여 일일이 전유(傳諭)하도록 하고, 다시 위문한 뒤에 들어오도록 하라."	大王大妃敎曰: "今此宮役時, 無論城內城外, 居民之願赴者, 有若子趨父事, 忘其勞苦, 輿情可見, 極庸嘉尙。但迨此方農之節, 民若因此失農, 則非但有欠於王政之不奪農時, 哀我赤子, 其何以仰事俯育乎? 念之及此, 誠不勝憂悶。 閒散人外, 近郊農民則各自歸去, 先爲務本事, 發遣京兆郎官, 一一傳諭, 更爲勞問以入。"

	하였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5월 3일(정유) 3번째기사 대왕대비가 경복궁 공사에 나오지 말고 농사를 짓는 것에 힘쓰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의 큰 일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백성을 부린다면 필시 농사철을 놓치게 하는 근심이 있게 될 것이므로 각기 돌아가 농사에 힘쓰라는 뜻으로 저번에 칙유(飭諭)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기읍(畿邑)에서 자원하여 부역(赴役)하는 자들이 계속 그치지 않으면서 마치 영대(靈臺)에 주(周) 나라 백성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하고 있다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 기쁘고 다행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식을 생산해 내는 것은 그 시기가 있는 만큼 그 시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만약 우리 적자(赤子)들로 하여금 그 시기를 잃어 먹을 것이 부족하게 한다면, 비록 아름다운 궁궐이 있은들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는가? 그리고 원납(願納)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백성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내게 해서 이 공사를 돕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기를, ‘함께 부역을 할 수 없다면 자장(資裝)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빈부(貧富)를 따지지도 않고 집집마다 거두어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고 보면 부역을 하는 자나 머물러 있는 자나 모두 피해를 받아서 경작할 여가도 없을 것이고 똑같이 소란스러운 결과를 빚고야 말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게 되면 참으로 근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근기(近畿) 지방에서 부역을 자원하는 백성들을 일체 모집하지 말도록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각읍(各邑)에	大王大妃敎曰: “使民務農, 乃王政之大者也。 迨此時役民, 則必致失農之患。 故以各歸務農之意, 向有所飭諭。 而近聞畿邑之自願赴役者, 一直不止, 有若靈臺之庶民子來。 民情如此, 非不慶幸, 而但食哉惟時, 時不可失。 今若使吾之赤子失其時而乏其食, 則雖有宮闕之美, 予將疇依而爲國乎? 且願納云者, 欲令饒民出義捐財, 以助是役之謂也。 而今乃稱之曰: ‘不能共赴, 則當出資裝’, 而不論貧富, 逐戶收斂。 然則行者居者, 竝受其害, 必無耕作之暇, 而同歸繹騷之境。 念之及此, 誠極憂悶。 自今爲始, 近畿願赴之民, 一切禁防, 以安意作農之意, 嚴飭各邑。 使之眞諺翻謄, 曉諭坊曲, 俾無一民不知之歎。 而外他諸路, 亦必有此弊, 自營建都監, 一體知委於四都、八道可也。”

	신칙하고, 이를 진언(眞諺)으로 번역해 베낀 다음 방곡(坊曲)에 효유하게 하여 백성 한 사람이라도 이를 몰랐다는 탄식이 없게끔 하라. 그리고 기타 제로(諸路) 역시 이런 폐단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니, 영건 도감에서 위와 똑같이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통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5월 4일(무술) 1번째기사 석경루 아래에서 나온 구리 그릇을 기념하는 의식을 마련하라고 명하다	진강(進講)을 마쳤다.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뚜껑을 덮은 구리 그릇 하나를 꺼내 와 보여 주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이것은 석경루(石瓊樓) 아래에서 발굴해 낸 것인데 보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그지없다. 효성을 바쳐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이 기쁨을 기록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내각 제학(內閣提學)과 오늘 입시한 강관(講官), 옥당 이하의 관원들은 명(銘)을 지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김태욱(金泰郁)이 무릎 꿇고 그릇을 받은 다음 뚜껑을 열어 보니 그 속에 나작(螺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뚜껑속에는 돌아가며 시(詩)가 쓰여져 있었는데, ‘화산(華山)의 도사(道士)가 소매 속에 간직한 보배를 동방의 국태공(國太公)에게 바치며 축수(祝壽)하노라. 푸른 소 한번 돌아 백사절(白巳節) 맞음에 개봉(開封)하는 사람은 옥천옹(玉泉翁)이라.’는 것이었으며, 또 중앙에 ‘수진보작(壽進寶酌)’이라는 네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그 그릇을 감상하였다. 강관(講官)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일이 우연치가 않으니, 삼가 물러가서 내각 제학과 함께 명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뜻을 살펴보면, 대원군에게 바쳐 축수하면서 태공(太公)에 비유한 듯한데, 대원군은 바로 전하의 사친(私親)이십니다. 또 당(唐)나라와 송(宋) 나라 사람들의 말을 보더라도 국가의 존속(尊屬)을 국태공이라	初四日。 勸講。 訖, 命內侍出示具蓋銅器一坐。 敎曰: “此是石瓊樓下所出者也。 見甚慶忭。 其在孝理, 不可無識喜。 內閣提學與今日入侍講官、玉堂以下, 撰銘以入。” 承旨金泰郁跪受器, 啓蓋視之, 則中有螺酌一坐, 蓋中環書, 有詩曰: “華山道士袖中寶, 獻壽東方國太公。 靑牛一廻白巳節, 開封人是玉泉翁。” 當中有‘壽進寶酌’四字。 諸臣以次奉玩訖, 講官朴珪壽曰: “事不偶然。 謹當退與內閣提學作銘以獻。 而審其詩意, 似是獻壽於大院君。 以太公比擬, 而大院君, 殿下之私親也。 唐、宋人語, 以國家之尊屬謂之國太公。 此詩語恐是獻壽於國太公之謂也。” 敎曰: “今日筵說, 頒諸

	하는데, 지금 이 시어(詩語)는 아마도 국태공에게 바치며 축수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오늘 경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지(朝紙)에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朝紙可也。”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5월 15일(기유)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윤5월 4일(정묘) 4번째기사 통제사 이봉주가 양향곡을 곡식으로 바칠 것을 아뢰다	통제사(統制使) 이봉주(李鳳周)가 장계(狀啓)를 올려, ‘신의 군영(軍營)은 농사가 안 되는 바닷가에 처하여 손바닥만한 땅에도 경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영 아래에 있는 5, 6천 호(戶)는 모두 여러 해에 걸쳐 모아놓은 백성·군교(軍校)·아전(衙前)·군사(軍士), 공장(工匠)들로서 순전히 군영에서 내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며, 오로지 의뢰하는 것은 지방(支放)입니다. 군영에서 1년치 지방으로 내주는 곡식을 통틀어 절피(折皮)로 계산하여 3만여 포(包)나 되며 해를 건너 윤달이 드는 해에 내주는 한 달 분도 2,000여 석(石)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간 고을과 해변 고을에 널려 있는 통영(統營)의 곡식은 산간 고을에서는 작전(作錢)하여 받아오고 해변 고을에서는 본색(本色)으로 가져다 바치게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규례였습니다. 지금 산간 고을이건 해변 고을이건 관계없이 전부 매 석당 5냥(兩)씩 작전하도록 한 것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統制使李鳳周狀啓以爲“臣營處於臨海不農之地, 無寸土墾闢。 轅門內五六千戶, 皆積年召募之民、校吏、士卒、工匠, 專恃仰哺而聊賴者, 支放也。 一年支放應下之穀, 通計折皮爲三萬餘包, 間年閏需, 亦不下二千餘石。 而統穀之散在山沿者, 山則作錢取來, 沿則本色轉輸, 卽撓改不得之事也。 今若無論山沿, 以每石五兩通同作錢, 實有不然者。 以此作錢, 勢將散四求貿, 貿山則擔負, 貿沿則船運。 而擔運之間, 靡費之弊, 有不可勝言。 古之積粟於塞、寓兵於農, 皆所以重關、固邊

	이렇게 작전하여 받은 다음에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곡식을 사들여야 할 형편인데 산간 고을에서 산 곡식은 사람이 져서 가져와야 하고 해변 고을에서 산 곡식은 배로 실어와야 하니, 지고 오거나 실어오거나 간에 비용이 낭비되는 폐단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요새지에 곡식을 쌓아놓은 것이나 군사들을 시켜 농사를 짓게 한 것은 모두 요새를 강화하여 변경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좋은 계책입니다. 그런데 온 군영(軍營)의 군사와 백성들이 산골이나 해변 할 것 없이 전부 5냥이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사방으로 흩어질 마음 밖에 없으니, 2백여 년 동안 모아 겨우 모양을 갖춰놓은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만 다 흩어져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산골과 연해(沿海) 고을의 곡식을 한결같이 5냥씩 돈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일을 특별히 정지시켜 주소서. 그리고 연해 고을은 본색으로 수운(輸運)하는 것을 전례대로 시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전(前) 영백(嶺伯)이 돌아와 아뢸 적에 통영(統營)의 향곡(餉穀) 가운데 연해 고을에 있는 것은 돈으로 대봉(代俸)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임시 변통해 주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안 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방금 통제사의 계본을 보건대, '본영(本營)이 산과 바다 사이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어 이미 곡식을 생산할 땅이 없는 데다가 미곡을 무역할 방법도 적습니다. 그런데 교리(校吏)와 군민(軍民)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창고의 곡식뿐인데, 지금 만약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한다면 대부분 식량이 결핍되어 뿔뿔이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세상 필연적인 일이다. 이처럼 막중한 관방(關防)이 그토록 소홀해질 염려가 있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 자꾸 바꾼다는 혐의 때문에 방편을 강구해 줄	之良籌。 而一營卒民聞此五兩錢通同之說, 擧懷東西南北之心, 二百餘年召募成樣者, 今爲一朝渙散之境。 則山沿郡五兩錢通同事, 特爲停寢; 沿海邑本色輸運, 依前施行之意, 請令廟堂稟處"事。 敎曰: "向於前嶺伯還奏, 有統營餉穀之在沿邑者以錢代捧之請, 而至有廟覆許施。 此皆出於權宜矯弊之意也, 非曰不可。 而卽見統使所啓, 則'本營處在山海間一隅, 旣無生穀之地, 又尠貿米之路。 校吏軍民之所仰哺者, 只恃倉儲, 而今若以錢代給, 則擧皆乏食, 將有渙散之慮'云。 此固事勢然矣。 以若莫重之關防, 致此疎虞之患者, 誠爲可悶。 何可以銷刻爲嫌, 不思所以方便之道乎? 更令本穀輸納, 依前施行。"

	도리를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다시 본곡(本穀)을 수납(輸納)하는 일을 예전대로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윤5월 10일(계유) 3번째기사 대왕대비가 각 시전의 공물 3분의 1을 탕감할 것과 화려한 옷과 그릇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각공(各貢)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도성 백성들을 애오라지 살려 보려는 은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듣건대 각 공인(貢人)과 각전(各廛)에서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 모두가 숫자에 미달되는 관계로 그야말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돌아보건대, 지금은 경비가 모두 고갈되었고 또 엄청난 궁궐 공사를 벌이고 있는 때인데, 만약 계산하여 제하지 않고 준획(準畫)한다면 사세상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요 계속 누락되어 적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값만 더 지급해야 할 것이니 도대체 이런 의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 번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옛날에 누락된 것들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차라리 법 규정을 위배한다는 뜻에 따라 특별히 탕감(蕩減)해 주고, 3분의 2에 대해서는 요즘 미곡 값이 비싸 본미(本米)로 제거(除去)하기는 과연 어려울 테니 10년을 기한으로 호조의 상정례(詳定例)에 따라 분배하여 바치게 함으로써 공인(貢人)들이 조금 힘을 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배하는 각 물종은 어디에서 쓰는 것인지를 막론하고 매월의 수요대로 일체 호조의 감합식(勘合式)에 따라 지출토록 하고, 이를 금석과 같은 정식(定式)으로 삼아 영구히 준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처분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상(貢上)에 따른 폐단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도 만약 각 해당 공인들이 단지 목전에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영을 어길 경우에는 일률(一律)을 적용해 시행할 것이니, 정부에	大王大妃敎曰: “國家之設置各貢, 專爲都民霑漑聊活之方。 而近聞各貢、各廛之進排物種, 皆有遺在, 其數誠難周計。 顧今經用匱罄之時, 又値莫大之宮役, 如不計除而準畫, 則非但事勢之末由, 遺在積滯之中, 添給其價, 抑有何義諦乎? 不可無一番更張。 自今爲始, 所謂舊遺在中, 三分一則以其寧失之義, 特爲蕩減; 二分則近來穀貴, 果難以本米除去, 限十年, 以戶曹詳定例排捧, 俾貢人輩得蒙舒力之澤。 而進排各種, 則無論某用, 隨其每朔需用, 一從戶曹勘合上下, 仍爲金石定式, 永久遵行。 而今此處分, 一爲國計之稍裕, 一爲貢弊之永革。 如是之後, 各該貢人輩, 只思目前不利, 或有違令, 則當用一律。 自政府, 以此嚴飭各司。” 又敎曰: “服飾器用之各有品制, 乃所以辨別貴賤之意也。 而挽近侈靡之風, 日盛月滋, 私門之紅絲飾馬、紅袱裹物, 已極礙眼。 而況酒具

	서 이런 내용으로 각사(各司)에 엄히 신칙토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복식(服飾)과 기용(器用)을 각각 신분에 따라 제한한 것은 바로 귀천(貴賤)을 구별하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치 풍조가 날로 성(盛)해지고 달로 불어나고 있다. 그중 사문(私門)에서 붉은 줄로 말［馬］을 장식하는 것이나 붉은 보자기로 물건을 싸는 것만 해도 무척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구(酒具)와 시저(匙箸) 등 물건들을 모두 은(銀)으로 만들어 예사로 쓰면서 외람된 일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렇게도 사치 풍조가 극심해졌단 말이냐? 이 모두가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근본으로서 정말 작은 일이 아니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일체 통렬하게 금지시켜 감히 예전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뒤에 만약 이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엄히 조처할 것이니, 이를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及匙箸等屬, 皆以銀造, 視若恒用, 不知踰濫。 是何奢麗之過度也? 此皆害國病民之本, 良非細故, 誠極慨歎。 自今以往, 一切痛禁, 俾無敢如前蹈襲。 而後若有犯科者, 當別般嚴處。 以此咸須知悉。”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윤5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기우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十六日。 詣仁政殿, 親傳祈雨祭香祝。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윤5월 19일(임오) 1번째기사 기우제에 쓸 향축을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十九日。 詣仁政殿, 親傳祈雨祭香祝。

전하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윤5월 21일(갑신)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종묘에 특별 기우제를 섭행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대역사(大役事)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이처럼 혹독하게 가뭄의 재앙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감히 알지 못하겠다. 재앙을 당해 자신을 책망해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주상이 직접 기도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재 나이가 어리시니 제사를 받들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대신을 보내 섭행(攝行)하는 것으로 하여 내일 향축(香祝)을 받게 하고,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할 것이며, 집사(執事)들 역시 신중하게 가리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一日。 大王大妃敎曰:“大役方此經始, 亢旱如是孔酷, 天意所在, 有未敢知也。 其在遇災責躬之道, 主上當爲親禱, 方在沖年, 有難將事。 宗廟別祈雨祭, 遣大臣攝行, 明日受香。 祭文令文任撰進, 諸執事亦爲愼擇事, 分付。”
高宗 2卷, 2年(1865 乙丑 / 청 동치(同治) 4年) 閏5月 22日(乙酉) 1번째기사 종묘의 기우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종묘의 기우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二十二日。 詣仁政殿, 親傳宗廟別祈雨祭香祝。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6월 1일(갑오)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삼해주를 담그는 것을 금지하라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곡식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인데 삼해주(三亥酒)는 이 곡식을 가장 많이 허비하는 것이니, 전부터 금령(禁令)을 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근래 듣건대 좌우변 포도청이 금하여 막을 방도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수속(收贖)하고서 판매를 허락하고 있다 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스스로 백성을 속여	初一日, 甲午。 大王大妃敎曰:“穀爲活民之本, 而三亥酒, 乃糜穀之最也。 自前設禁果何如? 而近聞左右捕廳, 不思所以禁防之道, 乃反受贖許賣。 苟

고 명하다	이익을 취한 죄과로 귀결되어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어찌 너무도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두 포장(捕將)을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금년의 경우,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필시 전에 빚어놓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 빚은 것도 아직 다 팔지 못했을 것인데 이러한 때에 모두 엄히 막는다면 또한 낭패하여 원통해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특별히 단속하여 통렬히 금하도록 하라. 그러나 지금 이 처분은 곧 일에 앞서 신칙하는 것이니,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률(一律)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포도청에 분부하라. 또한 경조(京兆)에서 먼저 방곡(坊曲)에 통지하라.” 하였다.	如是, 則自歸於罔民征利之科, 而法無可施之地, 豈不萬萬慨然? 兩捕將從重推考。 今年則以是爲業者, 必多。 舊釀、新醅之未及盡賣, 迨此時, 若一切嚴防, 則亦不無狼狽呼冤之端。 姑令行賣, 自明年爲始, 另加操束, 期於痛禁乃已。 而今此處分, 便是先事提飭。 如有犯科者, 則當用一律之意, 分付捕廳, 亦自京兆, 先爲知委於坊曲可也。”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6월 11일(갑진) 2번째기사 호조에서 영암군 소안도 진영의 장수와 군사의 요미 조달 방법을 보고하다	호조(戶曹)에서, ‘전라도(全羅道)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에 진영(鎭營)을 설치한 후에 장졸들의 요미(料米) 밑천을 해도(該島)에 있는 호조 원장부(元帳簿)의 것 외에 각처의 사패전결(賜牌田結) 중에서 100석(石)을 획부(劃付)하도록 의정부에서 품복(稟覆)한 데 대해 판하(判下)하셨습니다. 부근에 있는 정명 공주방(貞明公主房)의 조약도(助藥島) 면세 전답(免稅田畓) 가운데 40결(結), 연령군방(延齡君房)의 청산도(靑山島) 면세 전답 가운데 10결, 해남(海南)에 있는 인평 대군방(麟坪大君房)의 면세 전답 17결 97부(負), 도합 70결을 본진(本鎭)에 획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戶曹以“全羅道靈巖郡所安島設鎭後, 將卒料資, 以該島內戶曹元帳付外, 各處賜牌結數中百石劃付事, 有政府稟覆判下矣。 就附近所在貞明公主房助藥島免稅田畓中四十結、延齡君房靑山島免稅田畓中十結、海南所在麟坪大君房免稅田畓十七結九十七負, 合七十結, 劃付本鎭”啓。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6월 17일(경술)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종순(李鍾淳), 집례(執禮) 홍재	詣孝文殿, 行酌獻禮。 贊禮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李鍾淳、執禮洪在鉉、大祝趙秉鈺、左通禮吳德泳、右

2번째기사 효문전에서 작헌례를 하고 난 뒤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현(洪在鉉), 대축(大祝) 조병옥(趙秉鈺), 좌통례(左通禮) 오덕영(吳德泳), 우통례(右通禮) 이응하(李應夏)에게 모두 가자(加資) 하였다.	通禮李應夏, 竝加資。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6월 18일(신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7월 18일(경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7월 23일(을유) 1번째기사 남연군의 묘소에 행하는 다례는 공충 감사가 치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으로 행차할 때 남연군(南延君)의 묘소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릴 일을 금영(錦營)에서 마련하게 하여 도신(道臣)이 행사(行事)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흥완군(興完君)의 묘(墓)를 면례(緬禮)할 때에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敎曰: “大院君德山行次時, 南延君墓所別茶禮, 令錦營措備, 道臣行事。” 又敎曰: “興完君緬禮時, 遣公忠監司申檍致祭。”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8월 3일(을미)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경상도의 상납분을 곡식으로 받을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상소하여 도내(道內)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변통해 달라고 청한 일에 대해 하교(下敎)하신 대로 일찍이 도신(道臣)이나 수신(帥臣)을 지낸 사람들과 편리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곡식의 총 수효가 전 도신(前道臣)이 아뢴 것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문(關問)이 가고 오는 사이에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도신이 전(錢)과 미(米)를 절반으로 하되 1냥(兩)을 더 얹어 주자고 한 말은 전체를 두루 곡진히 살펴서 피차가 다 편리하게 하자는 데서 나왔으나 진실로 값을 보태는 것으로 말하면 전 도신이 5냥으로 하자는 주장이 더욱 온전합니다. 결단해서 시행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만 1냥이나 2냥을 논할 것 없이 그것이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므로 끝내 옛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여 거듭 밝히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지방(支放)은 본색(本色)의 곡물 이외에는 비록 1승(升), 1합(合)의 곡식이라도 절대로 더 획급(劃給)하거나 가벼이 옮기는 등 계속해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정사가 그대로 답습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폐단에 있어서는 주곤(主梱)이 되어서 하속(下屬)을 단속하지도 않고 독학(毒虐)한 짓을 자임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이 더없이 엄중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감영(監營)에서 구관(句管)하던 이 곡식을 해영(該營)에 이부(移付)하는 것은 오로지 아문(衙門)을 중하게 여기고 체통을 존중하자는 것이 이유이나 이미 300년 동안이나 계속해온 것은 전인(前人)이 아마 잘 타산해서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종전대로 도신이 구관하게 하되 고을의 크기를 헤아려 총수를 모두 균등하게 한다면 도신이 유	初三日。 議政府啓:“頃因慶尙監司李參鉉疏請, 道內所在統營穀變通事, 依下敎, 與曾經道帥臣, 會議便否。 而穀總數爻, 與前道臣所奏, 有相左處, 關問往復之際, 致此稽晩矣。 今道臣折半錢米添以一兩之說, 出於委曲周全彼此方便。 而苟以添價爲言, 則前道臣五兩之論, 尤爲完好, 斷而行之, 無所不可。 而勿論一兩二兩, 其爲定法之外則一也。 遽然創始, 在所難愼, 終不如仍舊制而申明之。 支放本色穀外, 雖升合穀, 毋或以加劃移俵等, 流來病民之政, 如前仍襲。 至於濫捧之弊, 身爲主梱, 不能操束下屬, 任其毒虐, 上下交征, 則其辜恩負國之罪, 關石莫嚴。 而第念此穀之自監營句管者, 移付於該營, 專由於重衙門, 尊體統也, 而垂三百年已行之事, 前人碩盡, 必有所以然而然矣。 依前令道臣句管, 而若其量邑大小, 通同均總, 道臣著意施措, 毋或有懸多懸少之患事, 消詳行會何如?”允之。

	념해서 시행하여 절대로 현저하게 많아지거나 현저하게 적어지는 근심이 생기지 말도록 소상(消詳)하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8월 9일(신축)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경기도에 장부에만 남아있는 환곡의 3분의 1을 탕감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상소한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유지(有旨)를 받았습니다. 빈 문서에 준해서 실제로 쓸 곡물을 물어 놓으라고 책임을 추궁하면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교묘히 빼앗거나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신(道臣)이 올린 상소 내용이 비록 곧바로 탕감(蕩減)해 달라고 청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약 면제하거나 탕감하지 않는다면 간교한 구멍만 더 늘어나게 하여 해(害)만 있고 익(益)은 없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15만 4,000여 석(石) 가운데 그 3분의 1에 한해서 특별히 면제해 주되 향후에 마련하여 보충할 방도는 도신으로 하여금 많은 곳에서 덜어 적은 데에 보태주게 하여 좋은 쪽으로 다시 등문(登聞)하고 품시(稟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京畿監司兪致善疏辭, 有旨令廟堂稟處矣。 按虛簿而責實用, 其究也不過巧徵豪奪於民而已。 道臣疏辭, 雖不直請蠲蕩, 而今若不蠲不蕩, 則徒令奸竇滋殖, 判知其有害無益。 虛留中十五萬四千餘石, 限三分一, 特許豁除。 向後措劃充補之方, 令道臣從長裒益, 更爲登聞稟施何如?” 允之。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8월 15일(정미)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례를 행하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9월 9일(신미)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겸하여 구일(九日)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孝文殿, 行晝茶禮兼九日別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9월 15일(정축) 1번째기사 선혜청에서 선혜청에 바칠 조세미를 실은 조운선이 침몰된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처벌을 아뢰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재응(趙在應)의 장계(狀啓)를 보니, ‘공충도(公忠道) 공주목(公州牧)에서 갑자년(1864) 분으로 선혜청(宣惠廳)에 바친 대동미(大同米) 1,000석(石)과 선가미(船價米) 150석,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바친 결작미(結作米) 44석과 선가미 6석 남짓, 역가미(役價米) 2석 남짓으로 도합 1,203석을 실은 배 1척이 6월 5일에 옥구(沃溝)의 비응도(飛鷹島)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으므로 해당 고을 및 만경(萬頃)·고군산(古群山)·서천(舒川)의 4개 고을에서 힘을 합하여 도로 건져내려고 하였으나 거의 두 달이 되도록 일찍이 한 포(包)의 곡식과 한 조각의 재목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감관(監官)·색리(色吏)·사공(沙工)·곁꾼［格軍］들에게 침몰된 경위를 신문해보니 쌀을 실어 놓고 많은 날짜를 지연시킨 것과 감관이 병으로 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민여성(閔汝成)이 논의를 내어 계책을 꾸민 것과 하화첨(河化添)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꾸며댄 것은 더구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감관과 색리, 사공, 곁꾼 등을 전부 현(縣)의 옥에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곡식을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침몰된 지방의 관원인 옥구 현감(沃溝縣監) 이창호(李昌鎬)와 장재관(裝載官)인 공주 판관(公州判官) 민치서(閔致序)의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十五日。 惠廳啓:“卽見全羅監司趙在應狀啓, 以爲‘公忠道公州牧甲子條惠廳納大同米一千石·船價米一百五十石、訓鍊都監納結作米四十四石·船價米六石零·役價米二石零, 合米一千二百三石零所載船一隻, 六月初五日, 致敗於沃溝飛鷹島前洋。 而該縣及萬頃、古群山、舒川四邑, 竝力遍鉤, 幾近兩朔, 初無一包穀、一片船材之所拯。 監色沙格等, 致敗委折, 反覆究詰, 則裝載後, 拖過多日, 監官之因病不騎, 已極可疑; 閔汝成之發論釀計, 河化添之以生爲死, 尤爲叵測。 監色沙格等, 竝牢囚縣獄, 以待處分矣。 穀物之分徵, 在所不已, 而地方官沃溝縣監李昌鎬、裝載官公州判官閔致序罪狀, 令攸司稟處’矣。 道啓旣詳且嚴, 請竝依狀請施行。” 敎曰:“觀此回啓, 許多設疑, 皆可見故敗之實狀。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가 이미 상세하고도 엄격하니, 모두 장계에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회계(回啓)를 보니 허다하게 제기한 의문점들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실상을 알 수 있다. 조법(漕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전에 없던 이런 행동을 하였으니 기강에 있어서 참으로 통분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해당 감영(監營)에서 철저히 다시 조사하여 기어코 진상을 밝히고 원곡(原穀)으로 꼭 받아내도록 하라. 곡주관(穀主官)과 침몰된 지방의 관원을 나처(拿處)하는 문제는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통지하라.” 하였다.	漕法固何等至重, 而致此無前之擧者, 紀綱所在, 寧不萬萬痛惋? 自該營到底更査, 期於得情, 必以原穀徵捧。 而穀主官與地方官拿處, 特爲分揀, 戴罪擧行事, 發關知委。”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9월 22일(갑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0월 15일(병오)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고종 2권, 2년(1865		初一日, 壬戌。 詣孝文殿, 行晝茶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1월 1일(임술)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1월 5일(병인)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 동지(冬至)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初五日。 詣孝文殿, 行晝茶禮, 兼冬至別茶禮。
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2월 7일(무술)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조상식을 올리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初七日。 詣孝文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1일(신유) 2번째기사 노인들과 유현에게 별세찬을 내리다	노인과 유현(儒賢)에게 별세찬(別歲饌)을 내렸다.	賜老人及儒賢別歲饌。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1일(신유) 3	전교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는 마땅히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이와 덕이 모두 높으며 건강하고 또한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이는 나라에서	敎曰: “領敦寧當入耆社矣。 齒德俱邵, 旣康且寧, 此卽邦家之上瑞也。 尊年優老之典, 已有古事之可按。 況

번째기사 영돈녕부사 김좌근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다	제일가는 상서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고 늙은이들을 우대하는 법은 이미 옛 사적에서도 상고할 수 있다. 하물며 이 대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미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하교를 받았으니 궤장(?杖)을 하사하는 예(禮)를 3월 안으로 길일(吉日)을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라. 궤장을 지수(祗受)하는 날 특별히 선온(宣?)하고 이어 일등악(一等樂)을 사악(賜樂)하라. 연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탁지(度支)에서 넉넉히 수송(輸送)하게 하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을 예우(禮遇)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다.】	此大臣處地之自別也乎? 旣承慈敎, ?杖之禮, 三月內擇吉擧行。 祗受日特爲宣?, 仍賜一等樂。 宴需, 令度支從優輸送, 以示倚毗禮遇之意。”【領敦寧金左根】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3일(계해) 2번째기사 제주목의 구환을 바치는 것을 연기하도록 하다	제주(濟州)의 구환(舊還)을 그대로 정지(停止) 하라고 명하였다. 목사(牧使) 양헌수(梁憲洙)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사(啓辭)를 올렸기 때문이다.	命濟州將舊還仍停。 因牧使梁憲洙狀請, 有廟啓也。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16일(병자)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가례(嘉禮) 시 별궁(別宮)을 운현궁(雲峴宮)으로 하라.”	十六日。 大王大妃敎曰: “嘉禮時別宮, 以雲峴宮爲之。”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혼인식을 할 때의 별궁으로 운현궁을 쓰도록 하라고 명하다	하였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17일(정축) 1번째기사 대왕대비가 별궁으로 흥인군의 궁을 쓰도록 명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별궁(別宮)은 운현궁(雲峴宮)으로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간택(揀擇) 이후에는 본가(本家)가 마땅히 별궁 근처로 이주(移住)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제때에 잘 수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흥인군(興寅君)의 궁궐을 〖별궁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十七日。 戶曹啓:“別宮以雲峴宮爲之事, 命下矣。 三揀後, 則本家當爲移住於別宮近處。 今亦趁時修補之意, 分付漢城府何如?”敎曰:“以興寅君宮爲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월 30일(경인)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전배를 행하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전배(展拜)를 행하였다.	三十日。 詣孝文殿, 行展拜。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효문전에 나아가 담제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담제(禫祭)를 지냈다.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辛卯。 詣孝文殿, 行禫祭, 仍行酌獻禮。

에 이어 작헌례를 행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9일(무진)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납채례를 행하다	인정전에 나아가 납채례(納采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仁政殿, 行納采禮。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11일(경오)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납징례를 행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납징례(納徵禮)를 행하였다.	十一日。 詣仁政殿, 行納徵禮。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17일(병자)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고기례를 행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고기례(告期禮)를 행하였다.	十七日。 詣仁政殿, 行告期禮。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0일(기묘)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책비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비례(冊妃禮)를 행하였다.	二十日。 詣仁政殿, 行冊妃禮。

례를 거행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1일(경진) 1번째기사 별궁에 나아가 친영례를 행하다	별궁(別宮)에 나아가 친영례(親迎禮)를 행하였다.【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저택에서 하였다.】	二十一日。 詣別宮, 行親迎禮。【興宣大院君邸】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1일(경진) 2번째기사 중희당에서 동뢰연을 행하다	중희당(重熙堂)에서 동뢰연(同牢宴)을 행하였다.	行同牢宴于重熙堂。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2일(신사) 1번째기사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가 왕비의 조현례를 받다	대왕대비(大王大妃)·왕대비(王大妃)·대비(大妃)가 왕비의 조현례(朝見禮)를 받았다.	二十二日。 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 受王妃朝見禮。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가례 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이하의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 서대순(徐戴淳)·조연창(趙然昌)·임백수(任百秀)·한계원(韓啓	二十三日。 嘉禮都監都提調以下, 施賞有差。 提調徐戴淳·趙然昌·任百秀·

5년) 3월 23일(임오) 1번째기사 가례도감 도제조 이하 사람들에게 시상하다	源)·이재원(李載元), 도청(都廳) 남상룡(南商龍)·이면광(李冕光), 문낭청(文郎廳) 이명응(李明應)·신도희(申道熙), 부사(副使) 민치구(閔致久), 좌통례(左通禮) 장석준(張錫駿), 우통례(右通禮) 김우휴(金羽休), 사옹원 정(司饔院正) 홍종학(洪鍾學), 선교관(宣敎官) 조강하(趙康夏), 진규 승지(進圭承旨) 조석원(曺錫元), 전교관(傳敎官) 남종순(南鍾順)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이정재(李鼎在), 종정경(宗正卿) 이경하(李景夏),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휘중(李彙重)에게 백관가(百官加)를 직접 주었다.	韓啓源·李載元、都廳南商龍·李冕光·文郎廳李明應·申道熙、副使閔致久、左通禮張錫駿、右通禮金羽休、司饔正洪鍾學、宣敎官趙康夏、進圭承旨曺錫元、傳敎官南鍾順, 竝加資。 大護軍李鼎在、宗正卿李景夏、安岳郡守李彙重, 百官加親授。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5일(갑신) 1번째기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咸興府燒戶恤典。
인정전에 나가 종묘의 하향 대제를 행하고 서계를 받다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6일(을유) 2번째기사 수도의 쌀값이 오른 것을 걱정하여 농간부리는 일이 없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도성 안에서 쌀값이 점점 뛰어올라 백성들의 형편이 급박하다고 한다. 비록 평년이라고 해도 이때가 되면 오히려 식량이 떨어져 곤란을 당하는 폐단이 있곤 하는데, 더구나 지금과 같이 흉년이 든 춘궁기(春窮期)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생각으로 비단옷과 쌀밥도 모두 맛이 없다. 조세를 바칠 때에 본미(本米)로 운반하여 바친다면 반드시 쌀값이 떨어지게 된다. 조정에서 방납(防納)을 금칙(禁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저 모리배들이 높은 가격으로 집전(執錢)하여 경강(京江)에서 쌀을 사다가 대납하는 자들이 전후에 계속 있다고 하는데 나라에 기강이 서 있다면 어찌 감히	敎曰: “近聞, 都下米直, 轉至翔貴, 民情遑汲。 雖在常年, 每當此時, 猶有艱食之患。 況今歉歲窮節, 尤何以圖生? 一念憧憧, 錦玉靡甘。 裝稅之時, 若以本米運納, 則必致穀價之低下。 故朝家之禁飭防納, 良由是也, 而惟彼牟利輩, 高價執錢, 貿米於京江以納者, 前後相續云。 國有紀綱, 何敢若是乎? 且再運三運之謂以氷泊, 無難經歲者, 亦由於舟司領將及該執吏, 符同幻弄之致。 自廟堂嚴飭兩捕廳, 所謂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운반에 대해서는 물이 얼어붙었다고 핑계대면서 거리낌 없이 해를 넘기니 이것은 주사(舟司)의 영장(領將)과 담당 아전(衙前)들이 한통속이 되어 농간을 부리는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묘당(廟堂)에서 두 포도청(捕盜廳)에 엄하게 신칙하여 소위 방납하는 놈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체포해서 즉시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게 하라. 그리고 집주읍(執籌邑 : 집주선이 있는 고을)에서 첫 번째 운반과 두 번째 운반 시일을 넘겨 지체시키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 영장(領將)과 집리(執吏)에게도 일률(一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防納諸漢, 一一詗捉, 亟施當律, 而至於執籌邑, 初再運如有過時愆納之弊, 各該掌領將及執吏, 亦施一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삼일제를 행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御春塘臺, 行三日製。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4월 기사는 1건 밖에 없음. 관련기관에 오류요청메일을 보낸 상태이며, 추가예정.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1일(기미) 1번째기사 하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一日, 己未。 詣仁政殿, 親傳景慕宮夏享大祭香祝。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6일(갑자) 3번째기사 영건 도감에서 공물을 바칠 때 농간을 부리지 않게 하도록 아뢰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올린 초기(抄記)에, “공인(貢人)의 무리들이 물건값을 오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각 공인들이 모두 그러하였겠습니까?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엄하게 거리낌없는 자들이 바로 수철계(水鐵契)입니다. 작년에 먼저 지급한 것이 이미 1만 5,000냥(兩)이나 되니, 공계(貢契)를 염려하시는 전하의 마음이 얼마나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극한 것입니까? 그런데 진배(進排)할 때에 가서는 각 물종(物種)을 회감(會減)한다 하여 오로지 증가시키는 데만 뜻을 두어 한 물건값이 4배도 넘게 만들었으니, 이는 사욕만 채우고 나라의 재산을 축낸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데가 있어 죄를 저지른 자를 형살(刑殺)하고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권장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으니, 해당 공계(貢契)의 세 소임을 군문(軍門)에 내붙여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이 무엄하고 거리낌 없이 날뛰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미 법을 스스로 어겼으니 그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았으므로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전의 뜻을 미루어 해당 공계의 세 소임을 각 군영의 장신(將臣)이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회좌(會座)하여 곤장 30대를 엄히 치고 풀어주도록 하라. 이 뒤로 각 공인들이 물종을 진배할 때 만약 고가(高價)로 회감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인뿐만 아니라 계사(計士)와 각 담당 아전까지도 다같이 일률(一律)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본】	營建都監草記: “貢人輩刁騰物價, 固已爲罔赦之罪, 而亦豈各貢各人之滔滔皆然? 特其中最無嚴無憚者, 水鐵契是耳。 昨年先授, 旣爲一萬五千兩, 則貢契軫念, 何等曠絶? 而及夫進排之際, 各種會減, 惟意增加, 一物之價, 洽過四倍, 徒濟己私, 致耗國財。 此而可爲, 孰不可爲也? 怙終賊刑, 懲一勵百, 不可仍置。 該貢三所任, 出付軍門梟警何如?” 敎曰: “此輩之無嚴無憚, 一至於此乎? 法旣自干, 罪固罔赦, 而旣承慈敎, 特推好生之義, 該貢三所任, 使各營將臣, 會坐於光化門外, 嚴棍三十度後放送。 此後各貢之物種進排, 如有高價會減之弊, 非但該貢人而止, 計士與各所掌執吏, 竝施一律可也。”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10일(무진) 1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첫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初十日。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10일(무진) 4번째기사 대왕대비가 돈 30만냥을 내려 보내어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게 하다	전교하기를, “우리 자성(慈聖)께서는 환곡(還穀)의 폐단으로 총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어공(御供)에 드는 비용을 아껴 저축하여 지금 30만 냥이 되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 내리니 묘당에서 알맞게 헤아려 각도에 분배하여 환곡을 복구해서 우리 자성께서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을 받들도록 하라. 이와 같이 경장(更張)한 뒤에 또 혹시 연줄을 통해 농간부리는 현상이 늘어나 점차 환곡이 줄어드는 폐단이 생긴다면 이는 방백(方伯)이나 수령(守令)들이 우리 자성의 성덕(聖德)을 저버리는 것이다. 억만년토록 영원히 이 뜻을 바꾸지 말아서, 우리나라를 공고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維我慈聖, 軫念還穀之弊, 年年減總, 御供日用, 撙節積儲, 今至三十萬兩矣。 特下廟堂, 自廟堂量宜分排於各道, 復舊糶糴, 仰體我慈聖爲國盛念。 如是更張之後, 又或有夤緣滋奸, 漸致耗縮之患, 是方伯守宰, 負我慈聖聖德, 萬億年永久勿替, 用鞏我家邦。”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0일(무인) 3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2일(경진) 2번째기사 전결에 관한 정사에 폐단이 없도록 공문을 띄우다	전교하기를, “국계(國計)의 남고 모자람과 민생(民生)의 편안함과 근심은 전적으로 세정(稅政)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진전(陳田)과 간전(墾田)이 이미 서로 많이 뒤바뀌었으며 전결(田結) 총수(總數)의 허실이 그에 따라 서로 섞이어, 드디어 쌓인 폐단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전(年前)에 묘당(廟堂)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비록 간혹 한두 도(道)에서 기전(起田)을 조사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그 이해와 득실은 어떠한지 아직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삼정(三政) 가운데 전결(田結)이 근래의 큰 폐단이 된 것은 내가 잠저(潛邸)때부터 또한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관서(關西) 및 관동과 북도(北道)는 밭은 많고 논이 적기 때문에 폐단이 약간 덜하나, 경기(京畿)와 삼남(三南)지방은 토지가 비옥해서 집총(執總)이 많다. 그러나 다시 측량한 지 해가 오래되어, 재상(災傷)이라 칭하여 여러 가지 면제조항에 혼입된 것이 곳곳에 서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만약 모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막중한 나라의 토지중에 장차 결수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각읍(各邑)의 상등(上等) 전토(田土)는 태반이 부호(富豪)들의 전장(田庄)이 되니 온갖 수단을 다해 면제로 기록되기를 꾀하여 끝내 조세를 줄인 곳도 있고, 간활(奸猾)한 이서(吏胥)들이 연줄을 타고 농간을 부려 스스로 은결(隱結)로 만든 것도 있으며, 심지어 경반(京班)이 전장을 둔 곳은 면제로 등록하는 허다한 명색들이 있으니 그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는 비록 전결에서 면제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빼앗아 납세를 어기는 일도 있었다. 이에 전결의 폐단이 거듭해 생겨나서 저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만 불쌍하게 그 해를 모두 뒤집어써서 늘 백징(白徵)의 걱정이 있게 되었다. 진실로 지방관으로 하여금 끝까지 찾아내고 각별히 단속하게 하였다면, 나라를 해치고	敎曰: “國計之贏絀, 民生之休戚, 專係稅政, 而土理之陳墾, 旣多互換, 結總之虛實, 隨以相雜, 遂至於積弊之莫可矯整矣。 年前因廟奏, 雖或有一二道査起之擧, 其利害得失, 姑未知何如, 而三政之中, 田結之爲挽近巨瘼。 予自潛邸時, 亦已聞之熟矣。 兩西及關東、北道則田多畓少, 其弊稍歇, 畿甸與三南, 則厥土沃饒, 執總居多。 然而以改量年久之致, 稱之曰災傷, 混入雜頉者, 在在相績。 今若一切任置, 則莫重公土, 其將無結乃已乎? 各邑之上等田土, 太半是富豪之庄, 而百般圖頉, 畢竟減稅者有之。 奸猾之吏胥, 夤緣偸弄, 自作隱結者有之。 甚至於京班置庄之處, 則懸頉之許多名色, 不一其端, 而其中雖有結條除給, 所謂幹事之人, 恣意乾沒, 以致愆納者有之。 於是乎結之爲弊, 層生疊出, 而哀彼無告之民, 偏被其害, 每有白徵之患。 苟使守土之臣, 到底査括, 另加操飭, 則害國病民, 豈其一至此哉? 每念及此, 誠極寒心。 其在令申之義, 有此提飭, 上自監留守宰, 下至班戶胥吏, 各別警惕, 卽於稅政攸關, 毋至依前伈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참으로 매우 한스럽다. 법령을 밝히려는 뜻에서 이와 같이 경계하노니, 위로는 감사(監司), 유수(留守), 수령(守令)으로부터 아래로는 양반집과 서리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경계하고 삼가서 세정(稅政)과 관계된 것을 전처럼 함부로 하지 말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 뒤에 다시 혹 관리가 살피기를 잊고 백성에게 폐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나도 역시 일일이 자세히 알 길이 있다. 도백(道伯)과 수령에게 처벌하는 경중은 따질 것도 없고 강포한 관리와 간활한 서리들도 죄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기 잘 알아서 스스로 행하도록 묘당에서는 우선 말을 만들어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泄。 而如是之後, 復或官有遺察, 民有作弊, 則予亦有一一詳知之道矣。 道伯守令之勘罪輕重, 且置勿論, 强班猾吏之隨犯用律, 在所難免。 其各知悉之意, 廟堂先爲措辭, 行會於八道四都。”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3일(신사) 2번째기사 종묘와 사직단에 기우제를 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규벽(圭璧)16) 을 여러 차례 바쳤는데 신령께서 응하심이 아직도 막연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모레 행하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복일(卜日)하지 않고 높은 품계의 각신(閣臣)과 유신(儒臣)을 보내어 지성으로 설행하게 하고, 집축(執祝)은 각신과 유신으로써 별겸(別兼)에 전차(塡差)하라.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그리고 향축(香祝)은 친히 전할 것이다.” 하였다.	敎曰: “圭璧屢薦, 靈應尙邈, 言念民事, 極爲渴悶。 再明日宗廟、社稷別祈雨祭, 不卜日。 遣崇品閣臣、儒臣, 虔誠設行, 執祝亦以閣臣、儒臣, 別兼塡差, 祭文令文任撰進。 香祝當親傳矣。”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3일(신사) 3번째기사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4일(임오) 1번째기사 종묘와 사직단에 기우제를 행할 때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稷壇)에 특별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데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二十四日。 詣仁政殿, 親傳宗廟、社稷別祈雨祭香祝。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5월 27일(을유) 4번째기사 지난번에 내탕금에서 특별히 나누어 준 환곡에 대한 이자를 면제시켜 주다	하교하기를, “전부터 내탕금(內帑金)으로 특별히 곡식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실로 나라를 위한 원대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여름철도 지금 이미 절반이나 지났는데, 이때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이 지난 뒤에 모곡(耗穀)을 받으면 그 기간이 불과 몇 달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올해 모조(耗條)17) 는 바치는 것을 면제시켜 주어 조금이나마 살림이 펴지게 하는 방도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나누어줄 때에 비록 얼마 안 되는 수량이라도 만약 허실(虛實)이 서로 섞이고 아래에서 횡령한다면 우선 방백(方伯)과 수령(守令)들부터 응당 특별한 조처를 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敎曰: “向來帑金之特令立穀, 實出於爲國家長遠之計也。 第念夏節, 今已過半, 而此時分俵, 秋後取耗, 計其間不過幾月日頃耳。 民事之艱難, 亦不可不軫念。 當年耗條, 使之除捧, 以爲一半分紓力之道。 至於派給之際, 雖分錢之微, 若或虛實相蒙, 自下乾沒, 則先自方伯守宰, 當有別般擧措。 以此意廟堂措辭行會。”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내렸는데 수심(水深)은 3촌(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우제(祈	禮曹啓: “昨日甘澍, 水深三寸。 祈雨

5년) 5월 29일(정해) 3번째기사 어제 비가 내려 기우제를 연기하도록 하다	雨祭)는 형편을 보아가며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祭姑爲觀勢擧行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6월 2일(기축) 1번째기사 군정과 전정의 폐단을 바로잡도록 공문을 내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군정(軍政)과 전결(田結)의 폐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도를 개혁하면서 일찍이 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정(軍政)으로 말하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보솔(保率)은 투탁(投託)해 들어가서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중요한 도피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전에 자전(慈殿)의 전교를 받들어 이미 규례를 정하여 놓았으니, 허다한 명목을 일체 혁파하여 모두 본래의 군역으로 되돌리고, 사칭하여 가탁(假託)한 무리들을 적발하여 군대에 충원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조정에서 모르게 감영과 고을에서 설치한 군대는 원래의 군사 정원 속에 이속시키게 할 것이며, 반드시 철저히 널리 찾아내어 군사 수가 비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망쳤거나 죽은 군사들을 보충하는 달이 멀지 않았으니, 새로 정한 군사의 수를 구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포(洞布)에 대하여 말하자면, 비록 이것이 임시변통으로 행해지는 제도이긴 하지만, 근래에 몇몇 고을에서 시행해 본 결과 폐단이 발생하지 않은 실례가 있으니, 여론을 참작하여 고르게 분담시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전정(田政)에 대해 말하자면, 기름진 옥토를 소유한 세력 있는 자들이나 재물을 많이 축적한 간활한 자들이 온갖 계책을 꾸며 세금을 면하려고 갖은 방법	初二日。 議政府啓: “軍田之弊久矣, 中間更張, 未始不嚴, 而編戶殘氓之受害, 今猶夫昔。 以言軍政, 則士夫墓村、邑屬契防、校院保率, 已是投托免役之要地也。 年前奉承慈敎, 已有著式, 許多名目, 一切革罷, 竝還本役, 冒稱假托, 摘發充定。 至於朝廷所不知營邑, 私設軍伍, 移屬元額, 而必須窮搜廣疤, 期無虛伍之患。 逃故充代之月, 行將不遠矣, 新定軍額, 區別登聞。 且以洞布言之, 雖是權時制宜之政, 間有若而邑行之無弊者, 則參量物情, 務歸平均。 以言田政, 則豪强之膏沃, 奸猾之碗囊, 百計圖免, 昨陳今起, 此落彼生, 卽理勢之必然。 而一入災傷, 便屬永陳, 使國結日減, 寧不痛惋? 常耕之冒頓, 新起之漏稅, 都吏之所匿, 邑況之所付, 另飭守宰, 躬行查櫛。 勿憚威勢, 勿較利害, 釐正執總, 先以查起之爲幾結, 消詳馳啓。 從其勤慢, 大行黜陟, 審覈虛實, 毋或

	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전(陳田)이었던 것이 올해는 기전(起田)이 되었는데도 이번에 기전에서 누락되었다면 다음번에는 등록되어야 함이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재해 입은 땅에 들기만 하면 곧 영구히 진전(陳田)으로 등록시켜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토지의 결수(結數)가 날이 갈수록 감소하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거짓으로 면제받는 행위, 새로 일군 땅을 조세 대장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이에 대한 도리(都吏)들의 은닉 행위 및 고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히 고을 수령들을 신칙하여 몸소 샅샅이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세를 두려워하거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총수를 바르게 파악하도록 하되, 우선 기전을 조사해낸 것이 몇 결이나 되는지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보고의 성실여부에 따라 승진과 강등을 대대적으로 행하소서.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혹시라도 백성들이 부당한 징수로 인한 원망을 품지 않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아뢰어 결정되고 난 후에 만에 하나라도 관리와 백성들 사이에 예전처럼 대강 처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장오(贓汚)의 형율과 무단죄를 적용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도신(道臣) 역시 제대로 잘 신칙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해야 할 것이니, 각자 경계하고 명심하라는 내용으로 팔도(八道)와 네 유수도(留守都)에 신칙하고 그 내용을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 써서 방방곡곡에 게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군정(軍政)은 각 고을에서 명파(名疤)와 동포(洞布) 사이에 적당히 나누어 배분하도록 하며, 새로 찾아내어 만든 문건은 별도의 대장으로 만들어 보고하	爲結民之冤徵。 如是稟定後, 萬有一官民之間, 依舊仏泄, 贓汚之律, 武斷之罪, 已無可論, 而道臣亦難免不飭之責。 各自警惕事, 申飭八道四都, 眞諺翻謄, 揭付坊曲何如?”允之。 仍敎曰: “軍政, 則各其邑名疤洞布間, 量宜分排, 新定刷案, 別具成冊以聞。 結總, 則先自京班之庄, 士豪之田, 一一捧稅, 其加起之數, 一體啓聞事, 行會各道。”

	라. 전결의 총수는 우선 경반(京班)의 전장(田庄)과 토호(土豪)들의 밭에서 일일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증가한 기전의 수를 모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각 도에 공문을 띄우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6월 18일(을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칙수은 1만 냥을 제련한 결과 양이 줄어들어 은 5,000냥을 더 보내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戶曹)에서 올린 보고를 보니, ‘칙수은(勅需銀) 1만 냥(兩)을 가져와 제련한 결과 많은 양이 줄어들어 장차 모자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8,000냥을 특별히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지급된 은도 이미 모자란 적이 있었으니, 지금 더 요청하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성(南城)에 있는 은 5,000냥을 다시 떼어 보내어 대략이나마 용도에 맞추어 지급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戶曹所報, 則以爲: ‘勅需銀一萬兩劃下者, 輸來吹鍊, 欠縮夥多, 將有不足之慮。 限八千兩, 特許加劃’爲辭矣。 前此區劃, 旣有不足之慮, 則今其加請, 事勢之容已也。 南城所在銀五千兩, 更爲劃送, 使之略綽排比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동래부(東萊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初一日, 丁巳。 給東萊府渰死人恤典。

5년) 7월 1일(정사) 1번째기사 동래부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베풀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7월 1일(정사)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잠삼과 중국 배와 교역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잠삼(潛蔘) 및 중국 배와 교역하는 폐단을 거듭 금지시키고, 개성 유수(開城留守)와 의주 부윤(義州府尹) 및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의 도백(道伯), 병사(兵使), 수사(水使)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는 대로 붙잡아 우선 참형(斬刑)에 처한 후 계문(啓聞)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請, 申禁潛蔘及唐船交易之弊, 令松、灣及兩西道伯、兵水使隨現隨捉先斬後啓事。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7월 2일(무오) 1번째기사 종묘와 영녕전의 추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二日。 詣仁政殿, 親傳宗廟、永寧殿秋享大祭香祝。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7월 15일(신미)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칠석제를 행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十五日。 御春塘臺, 行七夕製。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7월 18일(갑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7월 24일(경진) 1번째기사 《삼반예식》을 반포하다	전교하기를, “《삼반예식(三班禮式)》 1,000건(件)을 지방은 팔도(八道)와 사도(四都),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읍(邑)과 진(鎭)에, 중앙은 대신 이하의 모든 관리들과 각 관청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四日。 敎曰: “《三班禮式》一千件, 外而八道、四都、監兵營、邑、鎭, 內而大臣以下百官與各司, 頒給。”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8월 4일(경인) 2번째기사 동래부의 일본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실은 배 2척 가운데 한 척이 파손되었다고 보고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이문(移文)을 보니, ‘동래부(東萊府)의 일본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실은 배 2척이 충주목(忠州牧) 시내에 이르러 한 척이 돌에 부딪쳐 파손됨으로써 실었던 물품은 모두 물에 잠기고, 감관(監官) 장환혁(張煥赫)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대궐에 바치는 물건들을 실은 배가 파손되어 침몰된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봉(監封)하여 올려 보낸 전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로(姜浩)는 엄히 추고(推考)할 것이며, 진상을 담당하는 훈도(訓導)는 본도에서 법에 따라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卽接公忠監司申檍移文, 則 ‘東萊府日本進上船二隻, 至忠州牧溪, 一隻觸石破碎, 所載物種, 沒數水沈。 監官張煥赫, 溺水致死’云矣。 莫重進上物種之船敗沈水, 極爲驚悚。 監封上送之前, 東萊府使姜浩, 從重推考。 進上次知訓導, 請令本道照法嚴勘。”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1일(정사) 2번째기사 미증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바치도록 윤허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미증미(未拯米)를 거두어들이는 일에 대해 초기(草記)로써 윤허를 받고 한성부(漢城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포흠한 여러 놈들이 모두 망하여 전혀 받아들일 방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5년을 한정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되도록 빨리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일을 끌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기는 하나 차라리 잃어버린 셈 치고 특별히 5년 동안 상정가(詳定價)의 예로 대전(代錢)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하라. 그리고 매년 연말마다 바친 것이 얼마인가를 그때그때 계문할 것이니 꼭 정한 기간 내에 제대로 다 바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戶曹啓: “未拯米收刷事, 草記蒙允, 文移漢城府。 而‘所逋諸漢, 擧皆蕩敗, 萬無收捧之方, 不容不限五年排捧’云矣。 更加嚴飭, 從速督納, 何如?” 敎曰: “延拖時日, 雖極無嚴, 第以寧失之義, 特許五年詳定例, 代錢排捧。 而每於年終, 以所納之爲幾許, 這這啓聞, 期於趁限準捧, 可也。”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4일(경신) 2번째기사 경기 감사 유치선이 삭녕군의 좁쌀과 잡곡을 상정가로 대납하도록 청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을 소견하였다. 유치선이 아뢰기를, “경기 방어의 중요성은 다른 도에 비해 더욱 특별한데, 오랫동안 태평스럽게 지내온 터라 비상시를 대비할 무기들이 모두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감시와 방어에서 걸핏하면 허술하다고 근심하였는데 다행히도 내탕금(內帑金)을 다시 내려주시어 무기를 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해의 여러 고을들에서 무기를 갖추는 일이 지금 한창 상의되고 있으나 바닷가의 백성들은 오로지 고기그물이나 엮고 고기잡이만을 할 뿐 포를 발사하고 활 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기가 있다고 해도 사용할 사	召見京畿監司兪致善。 致善曰: “畿輔捍衛之重, 比他尤別。 而日久昇平, 陰雨之具, 一切掃如。 訶察防守, 輒患疎虞, 何幸帑金再下, 修葺有命。 沿海諸邑武備, 今方爛商。 而海民專事結網打魚, 發砲開弓, 莫辨爲何。 雖有其器, 措用無人, 詰戎之政, 豈容若是? 臣營旣有都試, 今創火砲科, 施以賞資, 恐合奬勸。 事係變通, 令廟

	람이 없으니 군정(軍政)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감영(監營)에는 이미 도시(都試)23) 가 있으니 지금 화포과(火砲科)를 새로 설치하여 상자(賞資)를 베푸는 것이 정사를 장려하는 데 합당할 듯합니다. 일이 변통에 관련된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삭녕군(朔寧郡)은 서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두 가지 조세는 좁쌀과 잡곡입니다. 그런데 48개의 험한 여울이 있으니 물이 얕은 곳을 따라 배를 몰고 간다는 것이 형편상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정공(正供)24) 을 상정(詳定)하는 것이 비록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 임시변통을 해 준다면 조정에서 백성들을 돌봐주는 은택이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잡곡은 시용(時用)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차라리 쌓아두고 그저 묵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때에 대책을 강구하여 임시변통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는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堂稟處, 何如?” 允之。 又曰: “朔寧郡僻在西北, 兩稅則小米與雜穀, 而有四十八灘之險, 淺水行舟, 勢實蔑由。 正供詳定, 縱非經法, 或許權宜, 卽朝家軫民之澤也。 第伏念雜穀無補於時用, 與其積置而徒歸陳仍, 毋寧及時而克講變通。 特許以詳定例代納之意, 令廟堂稟處, 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9일(을축) 8번째기사 강화도 군량은 연안과 배천에 있는 공곡을 변통해 쓰도록 하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 군량은 송도(松都)의 유수영에 있는 곡식을 수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고을의 공곡(公穀)을 추이에 따라 수송하도록 하고, 순무진(巡撫陣)의 군량은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부근 고을 중에서 잘 헤아려 수송하되 석수(石數)의 다과(多寡)는 순무영(巡撫營)의 통지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沁都軍飼, 以松營穀輸送, 而以延安、白川公穀, 推移輸送。 巡撫陣軍糧, 令畿伯附近邑中, 量宜輸送。 石數多寡, 待巡撫營知委擧行, 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10일(병인) 9번째기사 순무영과 강화도에 군량 운반하는 방법을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순무영(巡撫營)과 강화도(江華島)의 군량(軍糧)을 방금 초기(草記)하여 구획(區劃)하였습니다. 운송을 총괄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송도(松都)는 경력(經歷)이, 경기(京畿)와 해서(海西)는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이 운량관(運糧官)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巡撫營及沁都軍糧, 才已草記區劃矣。 不可無領運之人, 松都則經歷; 京畿、海西則各其邑守令, 仍差運糧官, 使之星火擧行, 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12일(무진) 4번째기사 중국 선박과 호응하여 쌀을 팔아먹은 문해룡 등을 효수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승휘(朴承輝)가, ‘중국선박과 서로 호응하여 몰래 쌀을 팔아먹은 죄인 문해룡(文海龍)과 강여택(姜汝宅) 등을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켰습니다.’라고 아뢰었다.	黃海監司朴承輝以“唐舶和應潛賣米物罪人文海龍、姜汝宅等, 梟警”啓。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0일(병자)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장녕전의 어진을 봉심하고 작헌례를 행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장녕전(長寧殿)에 이봉(移奉)한 어진(御眞)을 봉심(奉審)하고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이어 남묘(南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二十日。 詣永禧殿, 奉審長寧殿移奉御眞, 行酌獻禮。 仍詣南廟, 行奠酌禮。
고종 3권, 3년(1866		南殿酌獻禮時都提調以下, 施賞有差。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0일(병자) 2번째기사 남전에 작헌례를 행할 때의 도제조 이하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남전(南殿)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贊禮) 한계원(韓啓源), 예방 승지(禮房承旨) 송겸수(宋謙洙), 집례(執禮) 조용하(趙用夏), 대축(大祝) 남일우(南一遇)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贊禮韓啓源、禮房承旨宋謙洙、執禮趙用夏、大祝南一愚, 竝加資。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0일(병자) 3번째기사 남묘에 작헌례를 행할 때의 예방 승지 정기회 등에게 가자하다	남묘(南廟)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정기회(鄭基會)와 대축(大祝) 조경호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南廟奠酌禮時禮房承旨鄭基會、大祝趙慶鎬, 竝加資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2일(무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3일(기묘) 2번째기사 군량곡으로 연안과 배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 정운익(鄭雲翼)이 군향곡(軍餉穀) 300석을 떼줄 것을 아뢰었습니다.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두 고을의 공곡(公穀)을 이미 강화도(江華島)에 운반해가도록 하였는데 강화 유수가 아직 부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議政府啓: “統禦使鄭雲翼, 請劃軍餉穀三百石矣。 延安、白川兩邑公穀, 已令運送於沁都, 而沁留姑未赴任。 且有松都穀劃給者, 先以延、白兩邑穀中, 準此數火速輸致于喬桐之意。 請

천의 곡식을 강화도로 운반해 가도록 하다	송도(松都)에 있는 곡식을 획급(劃給)하기로 한 것은 먼저 연안과 배천 두 고을의 곡식 중에서 이 수량 만큼 속히 교동(喬桐)에 옮겨 가려는 뜻이니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게 분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分付海伯處。”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9월 28일(갑신) 6번째기사 구성의 백성들이 군영에 바치는 것을 5년 동안 더 연기해 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관서(關西) 위유사(慰諭使)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장계(狀啓)에, ‘구성(龜城)은 을사년(1845) 큰 수재를 겪은 뒤 순무영(巡撫營)과 병영(兵營)에 바치는 것을 특별히 20년간 뒤로 기한을 물려주었으며 올해에도 또 5년 동안 바치는 기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칙사(勅使)를 지공(支供)할 때마다 호(戶)와 결(結)에 따라 거두어서 쓰는 것이 수만 냥(兩)이 됩니다. 이번에도 칙사의 지공을 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하면 고을과 백성에 대한 폐해가 완전히 없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두 군영에 바치는 것을 10년간 다시 뒤로 물리는 문제와, 칙사의 접대 비용을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별도로 바로 잡는 일 등은 모두 백성들의 소원인데 근거가 있으니 모두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지난번에 감사(監司)의 보고에 근거하여 바치는 기한을 5년간 뒤로 물리도록 윤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에 또 당한 수재로 거의 탕진되어서 특별히 혜택을 베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시 5년간 더 연기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칙사 접대 비용 문제는 장계의 내용에 이미 확실한 사항이 없으니 다시 감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와 위유사(慰諭使) 조병식(趙秉式)이 올	議政府啓: “卽見關西慰諭使趙秉式狀啓, 則‘龜城乙巳巨浸後, 巡兵營所納, 特許二十年停退矣。 今年又爲五年退限, 而每當支勅, 以戶以結, 動費數萬矣。 今此支勅, 又當斂民乃已, 則邑弊民瘼, 恐無復完之日。 兩營所納, 限十年更爲停退, 勅需排斂之別樣矯捄, 皆有民願之可據。 竝請令廟堂稟處’矣。 頃因道啓, 已許五年退限。 而今秋水災, 又經一番滄桑矣。 不可無拔例曲施之擧, 更展五年之限。 勅需事, 狀辭中旣無指的, 更令道臣, 從長啓聞何如?”允之。 又啓: “卽見平安監司朴珪壽, 慰諭使趙秉式狀啓, 則以爲: ‘博川等邑, 漂頹戶別恤典所用五千九百餘兩, 以京司上納中會減, 而成川覆沙之永無田形者, 三百八十一結

	린 장계(狀啓)에 의하면, '박천(博川) 등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들을 특별히 휼전(恤典)하는 데에 소용되는 5,900여 냥은 중앙 관청에 바치는 돈 가운데서 회감(會減)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를 입고서 토사에 매몰되어 밭의 모양조차 아주 없어진 밭 381결(結) 24부(負) 4속(束)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량을 나누어 재해지로 정해주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품처해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유(慰諭)하는 일은 지금 끝났으며 고향을 떠난 백성들도 거의 제 고향에 안착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휼전하는 조목에 대해서는 중앙 관청에 바치는 것 가운데서 수량대로 회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전답 380여 결 중 물에 휩쓸려서 황무지가 된 곳은 특별히 3년간 면세(免稅)시켜 줄 것이며 토사만 덮인 곳은 단지 당해 년만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四負四束, 特許分數災頉事, 請令廟堂稟處'矣。 慰諭之擧, 今纔告訖, 蕩析之民, 庶可安奠矣。 別恤典條, 以京納中依數會減, 被災田畓三百八十餘結中成川浦落處, 特許限三年停稅。覆沙處, 只令當年許頉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3일(무자) 1번째기사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문묘(文廟)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거행하고 이어 춘당대(春塘臺)에서 알성 문무과(謁聖文武科)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고영석(高永錫) 등 3명을 뽑고, 무과에서는 이정필(李正弼) 등 257명을 뽑았다.	初三日。 詣文廟, 親行酌獻禮。 仍御春塘臺, 行謁聖文武科。 文取高永錫等三人, 武取李正弼等二百五十七人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4일(기축) 1번째기사 황해 수사 오하영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수사(黃海水使) 오하영(吳夏泳)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군영(軍營)이 있는 고을의 민호는 겨우 2,000호 밖에 안 되는데 환미(還米)의 총수는 2만여 석(石)에 이르므로 가산을 탕진하고 생업을 폐하게 되어 장차 고을이 텅텅	初四日。 議政府啓: "卽見黃海水使吳夏泳所報, 則以爲: '營下民戶, 僅二千戶, 糶糴都總, 乃至二萬餘石, 蕩産傾業, 邑將墟矣。 及今紓力之策, 無如減糶。 就本營貿銀錢, 每年八百五十

군영의 환미를 감해 주도록 청하다	비게 될 형편입니다. 지금에 와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로는 환미(還米)를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본 군영에서 매년 은(銀)을 사들이는 데 쓰는 돈이 850냥(兩)인데 10년을 기한으로 해서 사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좁쌀 240여 석으로 바꾸어 마련하여 군영의 지출에 쓰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수군(水軍)들의 군량을 보관하고 있는 각 읍에서 모곡(耗穀)을 없애고 본곡만 세워두게 하고 군영이 있는 고을 백성들의 환미(還米)를 매년 아주 면제시켜 준다면 2,400여 석은 10년 사이에 스스로 탕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포 무사(追捕武士) 20명은 요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간의 군량에서 모곡 2,200여 석을 가지고 원래의 지출 2,000석을 계산하여 덜면 나머지 200석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96석은 추포 무사에게 매달 6두(斗)씩 요(料)로 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100여 석은 본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방 방어를 튼튼히 하는 데는 군사들을 양성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水使)의 계책이 진실로 이치에 맞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그가 보고한 내용대로 자세히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윤허하고 본부에 보고한 다음 그에 준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兩, 特許限十年停貿, 換作小米二百四十餘石, 用爲營中支放。 水軍糧所在各邑, 停耗立本, 而營下民還, 每年永蠲, 則二千四百餘石, 自可蕩減於十年之間。 且追捕武士二十名, 全無料代。 以一年軍糧耗二千二百餘石, 計其元支放二千餘石, 剩餘二百餘石中九十六石, 追捕武士, 每朔以六斗設料, 一百餘石則爲添本'爲辭矣。 邊圉之固, 莫先於養士訓民。 而帥臣措劃, 儘有規度。 請竝依報辭許施, 昭詳成節目, 報本府遵行。"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7일(임진) 7번째기사 선봉 이용희가 적에게 빼앗겼다 되찾은 세미	순무영(巡撫營)에서 아뢰기를, "선봉(先鋒)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6일에 올린 급보에 의하면,「갑곶진(甲串津) 주변에서 빼앗겼던 조운미(漕運米)를 민가에 옮겨다 둔 것과 배 안에 그냥 남겨둔 것들을 다시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나루 주변의 민가에 옮겨다 보관한 것이 699석(石)이며 연안(沿岸)에 매놓은 배 가운데 남겨둔 것이 395석	巡撫營啓: "卽見先鋒李容熙今初六日馳報, 則'甲串津邊向日見奪漕運米之移置於民家及船中遺在者, 更爲詳細考閱, 則移置於津邊民家者, 六百九十九

에 대해 보고하다	이며 소금이 5석이었는데 해당 선주(船主) 최성재(崔成在)한테 봉하여 맡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조세(租稅)를 바치는 곡식과 관계되는 만큼 역시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石, 遺在於掛岸船中者, 三百九十五石, 鹽五石則該船主崔成在處封授’云矣。 係是稅穀, 亦令廟堂稟處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18일(계묘) 1번째기사 서양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서양 오랑캐들이 전후로 소란을 피우면서 매번 교역을 하자고 말하는데,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서양 물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때문에 연석에서 아뢰고 연석에서 신칙하여 일체 금단한 것이다. 지금 금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느 때인들 급선무가 아니겠는가마는, 목전의 사세로 보면 더욱 엄히 막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변방의 신하들이 과연 이를 잘 받들어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삼강(三江)을 수색해서 적발된 자가 있으면 의주부(義州府)에서 먼저 벤 뒤에 아뢰라. 이와 같이 신칙한 뒤에 만에 하나 어물거리며 눈감아 주고 수수방관한다면 의주 부윤(義州府尹)도 엄중한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분부(分付)하게 하라.” 하였다.	十八日。 敎曰: “洋夷之前後膠擾, 輒擧交易爲言, 槪以我國之用洋貨而然此。 所以筵奏筵飭, 一切禁斷者也。 今欲禁止, 何時不急先務, 而目下事勢, 尤不容不嚴防乃已。 未知邊臣, 果能對揚否乎。 三江搜驗, 如有現發者, 自灣府先斬後啓。 如是申飭之後, 萬有一仏泄闔眼袖手, 灣尹亦難免重究, 令廟堂措辭分付。”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20일(을사) 2번째기사 서양 물품이 흘러 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서양 물품을 금지하는 일은 얼마 전에 경연에서 아뢰어 의주(義州)에 행회(行會)하였는데 어제 내린 전교(傳敎)는 또 다시 매우 엄격했으니 응당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잘 받드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議政府啓: “以洋貨禁斷事, 間已筵稟行會於灣府, 昨下傳敎。 又復截嚴, 固知有著念對揚之效。 而聞‘洋物之從萊府流出, 亦自不少’云。 其所禁止,

오는 동래부에 공문을 보내어 서양 물품을 금지하도록 하다	데 서양 물품이 동래부(東萊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또한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금지시키는데 응당 차이가 없어야 하는 만큼 똑같이 해부에 관문(關問)으로 신칙하여 특별히 조사하고 살펴서 감히 전과 같이 서로 교역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먼저 목을 베고 나중에 보고하게 하며, 만약 혹시라도 덮어둔 사실이 보고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사(府使)를 엄하게 논감(論勘)하겠다는 뜻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宜無異同。 一體關飭於該府, 另爲探察, 俾無敢如前交買。 若有犯者, 先斬後啓。 苟或掩覆, 有所入聞, 則該府使從重論勘之意, 嚴飭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30일(을묘) 3번째기사 함경 감사 김유연이 명천의 연진에 표류해 온 외국인에 대해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를 보니, '명천(明川)의 연진(困津)에 표류해 온 외국인 2명과 선창진(船蒼津)에 표류해 온 외국인 3명에게 자세히 내막을 물어보았더니, 모두 개시(開市)했을 때에 무역을 하던 청나라 사람들로서 풍랑을 만나 표류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보호해 주고 먹여 주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절차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류해 온 사람들을 육지에 내리게 하고 고을로 들여온 것이 비록 후하게 돌봐주는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경솔한 행동임을 면할 수 없으니, 해당 부사(府使) 이낙희(李樂熙)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임지(任地)에서 배에서 내리게 하고 저 사람들을 이끌어 고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변방의 정사로 헤아려 볼 때 매우 경솔한 행동입니다만, 먼 곳의 사람들을 후대해야 하는 의리로 볼 때 우선 구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니 해당 부사의 죄상은 용서하고, 저 사람들을 수로나 육로로 돌려보내는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며,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공급하는 등의 절차는 모두 착실하게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류해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議政府啓: "卽見咸鏡監司金有淵狀啓, 則'明川困津漂到異樣人二名, 船蒼津漂到異樣人三名, 詳細問情, 則俱是開市時交易淸人之漂風者也。 守護饋養, 而還送之節, 請令廟堂稟處。 令漂人下陸入邑, 雖出優恤, 未免輕率, 該府使李樂熙罪狀, 令攸司稟處矣。 任他下船, 率彼入邑, 揆以邊政, 極涉疎忽, 柔遠之義, 宜先賙恤, 該府使罪狀分揀。 彼人之從水從陸, 依其願, 衣袴供饋等節, 竝令著實擧行。 而漂人還送之水陸質問, 例也, 今此狀本, 甚是模糊。 請該道臣推考。" 允之。

	때에 수로로 보낼 것인가 육로로 보낼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규례인데, 지금 이 장계는 아주 모호합니다. 해당 도신(道臣)를 추고(推考)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1월 1일(병진) 1번째기사 경모궁의 동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一日, 丙辰。 詣仁政殿, 親傳景慕宮冬享大祭香祝。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1월 4일(기미) 6번째기사 갑곶진과 조강진의 소금과 물고기 등을 진무영에서 주관하도록 하다	또 아뢰기를, “갑곶진(甲串津)과 조강진(祖江津)에서 오는 물고기, 소금, 곡식은 통영(統營)의 규례대로 진무영(鎭撫營)에서 주관하여 수세(收稅)해서 지방(支放)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魚鹽穀物之從甲串及祖江來者, 依統營例, 自鎭撫營主管收稅, 以補支放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1월 10일(을축) 3번째기사 옹진 수영에서 새로 떼준 삼세 가운데 일	또 아뢰기를, “파주(坡州)는 비단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연해의 포구들에서 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때에 계엄(戒嚴)을 타읍(他邑)보다 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쇠잔한 지대여서 군제(軍制)가 매우 허술합니다. 옹진 수영(瓮津水營)에 새로 떼준 삼세(蔘稅) 중 300근(斤)을 본	又啓: “坡州, 不第爲兩西要衝而已, 沿浦不遠之地。 此時戒嚴, 尤倍他邑, 而本是殘局, 軍制甚疏虞。 甕津水營新付蔘稅中三百斤, 移劃本牧, 俾有以講究備禦之方。 防禦穀切勿移用之意,

부를 파주에 획급하도록 하다	목(牧)에 이획(移劃)하여 방어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곡(防禦穀)은 절대로 다른 데 유용하여 쓰지 말 것을 경기(京畿)의 감영(監營)에 분부하여 정식(定式)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分付畿營, 使之定式施行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2월 14일(기해) 3번째기사 경기 감사 유치선이 장계를 올려 환곡의 관리를 잘하게 하도록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장계(狀啓)에, '환곡(還穀)을 다 받아들인 다음 각종 용하(用下)를 제감(除減)하였습니다. 올해 가을의 군향(軍餉) 및 대전(代錢)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써 각종 곡식이 모곡(耗穀)까지 합쳐 실지 수량이 미(米)는 3만여 석(石) 남짓, 태(太) 3,470여 석, 모(麰) 1,060여 석이었는데 전부 찧어서 보관하여 임시 비용에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쓸 모조(耗條)는 본 감영에서 무슨 무슨 항목에 쓸 돈 3만 냥(兩)을 골고루 분배하여 구획(區劃)하고, 올 가을에 돈으로 대신 받을 5,800냥의 돈과 함께 규례대로 도로 나누어주어 내년 가을에 가서 쌀을 사들이는 데 쓰도록 하며, 그 나머지는 대장에 올라 있는 총 수량에 통합하여 내후년부터 절반은 보관하고 절반은 나누어주는 것을 해마다 정상적인 규례로 하게 할 것입니다. 총융청(總戎廳)과 수원(水原), 광주(廣州), 개성(開城) 등 네 관청의 곡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모비(耗費)가 돈으로 합치면 4,400여 냥 남짓인데, 매년 본 감영의 세입(歲入) 중 구획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네 관청의 곡식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자를 늘여서 호조(戶曹) 곡식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3만 포(包)나 되는 곡식을 전부 찧어서 보관하는 것은 실로 위급한 경우에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兪致善狀啓, 以爲: '還穀畢糴後, 除減各樣用下。 今秋, 軍餉及代錢收捧條則各穀竝耗實數, 米爲三萬餘石零; 太爲三千四百七十餘石零; 麰爲一千六十餘石零, 竝全數椿留, 以俟不恒之資。 至於明年應用耗條, 則以本營某樣措辦錢三萬兩, 均排區劃, 竝與今秋代捧錢五千八百兩, 如例還分, 待明秋責糴用於應下。 以其剩餘, 統合元總, 自再明年半留、半分, 歲以爲常。 總廳水原、廣州、開城四衙門穀則自明年竝耗費, 合錢四千四百餘兩零, 每於本營歲入中區劃, 以爲恒式。 各邑所在四衙穀, 逐年滋耗, 陞作戶曹穀事, 請令廟堂稟處' 矣。 三萬包之全數椿留, 實爲緩急之備。 而自明年應用耗條, 已有所措辦均派者, 則一年、二年可見經遠之策。 竝與四衙門穀, 而依狀請許施。 大抵

	대처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명년부터 모조에 쓸 몫에 대하여 이미 대책을 취하여 균등하게 나누어주도록 하였으니 1, 2년이면 그것이 과연 앞날을 생각한 계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관청의 곡식과 함께 다같이 계(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대체로 환곡(還穀)에 대한 보관 관리는 비단 수령(守令)의 책임뿐만 아니라 역시 도신(道臣)이 어떻게 단속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에 많고 저쪽에 적다고 하여 혹 옮겨가고 옮겨오도록 허락한다면 아전(衙前)들이 쉽게 농간을 부려 폐단의 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봄에 환미(還米)를 내주고 가을에 환미를 받을 때에 이전(移轉)하지 못하도록 하며, 혹 부득이 많은 것을 덜어 적은 것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도신이 사실대로 보고한 다음 시행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정식(定式)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감영에서 석 달에 한 번씩 편보(褊補)들을 위임해 보내어 조사 검열하고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했거나 축난 것을 차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이후에 본 고을에 대한 적간(摘奸)에서 발각되는 경우, 해당 수령은 엄하게 감처(勘處)함을 그칠 수 없으며, 도신 역시 잘 신칙하지 못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還穀之典守, 不但爲守令之責, 亦在道臣操束之如何。 若以此多、彼少, 或許移去、移來, 則吏奸易生, 弊源可滋。 從今以往, 春糶秋糴, 毋令移轉, 設有不得不裒益之時, 道臣據實狀聞後, 施行之意, 著爲定式。 繼自巡營, 間三朔委送褊裨, 査閱報來。 而若或指虛爲實, 以欠爲完, 現發於日後本府摘奸, 則該守令重勘, 在所不已, 而道臣亦難免不飭之失。 以此申飭何如?” 允之。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2월 23일(무신) 2번째기사 북병영의 공물 녹용과	내의원(內醫院)에 바치고 있는 북병영(北兵營)의 녹용과 무산(茂山)의 녹용 및 사향을 내년부터 다같이 덜어서 면제시켜 주며, 심약관(審藥官)도 철폐함으로써 함경북도(咸鏡北道)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폐단을 덜어주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命藥院所捧北兵營鹿茸、茂山鹿茸及麝香, 自明年竝蠲蕩, 審藥革罷, 以紓北民痼瘼。

무산의 녹용 및 사향을 면제시켜 주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2월 26일(신해)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춘향 대제를 행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六日。 詣仁政殿, 行宗廟春享大祭受誓戒。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2월 29일(갑인)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사직단에 기곡 대제를 행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에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九日。 詣仁政殿, 行社稷祈穀大祭受誓戒。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월 1일(병진) 4번째기사 노인들과 유신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과 유신(儒臣)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이어 존문(存問)하도록 하였다.	賜老人及儒賢歲饌, 仍令存問。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월 2일(정사) 2번째기사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약원(藥院)이 입진(入診)을 행하였다. 살쩍에 부스럼이 나서 청진(請診)하였기 때문이다. 의관(醫官) 이경년(李慶年)이 아뢰기를, “맥박이 좌우 삼부(三部)가 고르게 뛰었습니다.”	, 行藥院入診。 以鬢腫請診也。 醫官李慶年奏: “脈候左右三部, 調均矣。” 都提調柳厚祚謂醫官曰: “當以何藥附治乎?” 慶年曰: “當歸膏、臘脂膏, 最

중희당에서 약원이 입진을 행하고 청진하다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유후조(柳厚祚)가 의관에게 말하기를, “무슨 약을 붙여서 치료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경년이 아뢰기를, “당귀고(當歸膏)와 납지고(臘脂膏)가 가장 긴요합니다.” 하자, 유후조가 아뢰기를, “이 두 약을 붙여서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내(大內)에서 치료할 것이니, 굳이 다시 청진할 것 없다.” 하였다.	緊矣。” 厚祚曰: “以此二藥, 附治何如?” 敎曰: “自內治之矣。 不必更爲請診也。”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월 3일(무오) 1번째기사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 약원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다	약원(藥院)에서 구두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어제에 비하여 조금 나았으니 경 등은 입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初三日。 藥院口啓。 批曰: “比昨稍勝, 卿等不必入侍。”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월 5일(경신) 1번째기사 약원에서 병문안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	전교하기를, “종기 난 곳이 거의 아물어 차도가 있으니 약원(藥院)에서 구두로 문안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	初五日。 敎曰: “腫處幾至完合, 快有勝度。 藥院口啓問安, 置之。”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議政府啓: “北關支放穀之輸納海倉,

6년) 1월 20일(을해) 3번째기사 북관의 환곡을 본곡만 그들이 살고 있는 창고에 바치게 하다	“북관(北關)에서 지방(支放)하는 곡식을 해창(海倉)에 실어다 바치는 것이 바로 육진(六鎭)의 백성들의 견디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그러나 해영(該營)의 지방의 수요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군량미로 회계한 것 안에 있는 곡식을 반을 나누어 주고 취한 모곡(耗穀) 가운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500석(石)을 특별히 획부(劃付)하여 한결같이 그 지방의 규정에 따라서 작전(作錢)하되, 혹시라도 어기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비용은 본영에서 일체 담당하여 환곡(還穀)을 내는 백성들을 영원히 침해하지 말게 해 환곡을 내는 백성들은 단지 본곡(本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창고에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순영과 병영(兵營) 및 각 해당 읍에 비치해 두고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旣六鎭民切骨之瘼。 而該營支放之需, 亦不可不念。 就軍餉會內穀半分, 耗中折半一千五百石特爲劃付, 一從土式作錢。 毋或違越輸運之費, 自本營一切擔當, 永勿侵責於還民。 還民則只以本穀, 納於所居之倉。 以此意成節目, 置之巡兵營及各該邑, 永久遵行事, 行會何如?” 允之。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3월 17일(신미) 1번째기사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전배하다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가서 전배(展拜)하고 중궁전(中宮殿)도 함께 가서 예를 행하였으며 경복궁(景福宮)에 들러 각 전각(殿閣)을 짓는 곳을 관람하였다.	十七日。 詣儲慶宮、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中宮殿同詣行禮。 歷臨景福宮, 觀覽各殿閣役所。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5월 1일(계축) 3번째기사 경기 감사 이의익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의 장계(狀啓)를 보니, 비축해둔 환곡(還穀) 가운데에서 절반을 떼내어 곤궁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3만 2,170여 포(包)의 전량을 비축해 두도록 한 것은 실로 먼 앞날의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李宜翼狀請, 椿留還穀中。 限折半分給窮民矣。 三萬二千一百七十餘包之全數椿留, 寔出於經遠之圖。 而昨年防秋, 民力已

환곡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다	정사를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나, 작년 변경 방어 때 백성들의 힘이 이미 줄어들었고 궁한 여름철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 창고의 곡식이 밑천이 될 만합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적당하게 헤아려 나누어 주어서 모곡(耗穀)을 제하고 개색(改色)하도록 하소서. 나누어 주고 남겨둘 때 간사한 폐단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특별히 단속해 살피게 함으로써 실지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게 하는 동시에 가을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는 실제대로 봉납하게 한 후 계문(啓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絀, 窮夏艱食, 倉粟可資。 依狀請量宜派給, 以爲除耗改色之地。 而分留之際, 奸弊易生, 令道臣另加操察, 俾得以實惠下究, 秋糴時, 從實準捧後啓聞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5월 15일(정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전배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이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展拜。 仍詣仁政殿, 親傳景慕宮夏享大祭香祝。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5월 15일(정묘) 4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첫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5월 17일(기사)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할 때의 총재관(總裁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당상(堂上)인 행 대호군(行大護軍) 남병길(南秉吉)에게 가자(加資)	《六典條例》纂輯時總裁官以下, 施賞有差。 堂上行大護軍南秉吉, 加資。

2번째기사 《육전조례》를 편찬할 때의 총재관 이하에게 시상하다	하였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5월 18일(경오) 6번째기사 용산강의 저자도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행하다	용산강(龍山江)의 저자도(楮子島)에서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7월 14일(을축) 1번째기사 동래부에서 대차왜가 올 것이라고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狀啓)를 보니,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의 수본(手本)을 낱낱이 들어서 이르기를, ‘관수왜(館守倭)의 말에 의하면 관백(關白)이 저군(儲君)을 세운 경사를 고하기 위해 대차왜(大差倭)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접위관(接慰官)과 차비역관(差備譯官) 등을 미리 차출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연향(宴享)할 때 내려줄 예단(禮單)과 잡물(雜物)은 해조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의 접위관과 차비역관을 모두 전례대로 차출하여 내려보내고 예단을 마련하는 등의 일은 또한 해조와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규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四日。 議政府啓:“卽見東萊府使鄭顯德狀啓, 則枚擧訓、別等手本, 以爲:‘館守員言「關白立儲, 告慶大差員匪久出來」, 京接慰官及差備譯官等, 預爲差出事, 令廟堂稟處, 所贈宴、禮單、雜物, 令該曹照例磨鍊’爲辭矣。京接慰官及差備譯官, 竝依前例差出下送。 禮單磨鍊等事, 亦令該曹該院, 按式擧行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7월 18일(기사)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璿源殿, 行茶禮。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8월 15일(을미) 4번째기사 풍덕의 조세, 전세, 대동미를 5년 동안 절감시켜 주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의 보고를 보니, ‘풍덕(豐德)이 그 전에 송영(松營)에 속하여 있을 때는 풍흉에 관계없이 전답의 결(結)마다 모두 8냥씩 마감(磨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조세를 본색(本色)으로 바치도록 백성들에게 독촉한다면 결마다 거의 20냥에 가까울 것이고 흉년이 든 해에는 응당 그보다 더하게 될 것이니, 실결(實結)에 따라 조세를 내는 것을 한결같이 장단(長湍)의 전례대로 논에서는 결당 16냥, 밭에서는 결당 15냥으로 하는 것으로 길이 작정(酌定)해 주소서. 그리고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도 죽산(竹山) 등지의 전례대로 상정(詳定)으로 갖추어 바치며 면세(免稅) 및 각양(各樣)의 복호(復戶)도 예전의 예대로 8냥으로 마련(磨鍊)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읍을 설치한 초기인 만큼 응당 특별한 규례를 베푸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니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卽見京畿監司李宜翼所報, 則以爲: ‘豐德曾屬松營時, 無論豐歉, 田畓每結, 竝以八兩式磨勘矣。 今以兩稅本色, 責納於民, 則每結殆近二十兩。 歉年亦當加數, 實結出賦, 一依長湍例, 畓每結十六兩, 田每結十五兩, 永爲酌定。 田稅與大同, 亦依竹山, 等例, 以詳定備納。 免稅及各樣復戶, 依舊例八兩磨鍊, 則庶可比排云矣。 今當設邑之初, 宜有拔例之擧。 請限五年, 依報施行。” 允之。
고종 4권, 4년(1867		十六日。 詣德興大院君、全溪大院君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8월 16일(병신) 1번째기사 덕흥 대원군과 전계 대원군의 사우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운현궁에 문안하다	덕흥 대원군(德興大阮君)과 전계 대원군(全溪大阮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지냈다. 이어 운현궁(雲峴宮)에 문안하였다.	祠宇, 行奠酌禮, 仍覲雲峴宮。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8월 29일(기유) 1번째기사 목릉, 유릉, 경릉에 나아가 친제하다	목릉(穆陵), 유릉(綏陵), 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二十九日。 詣穆陵、綏陵、景陵, 親祭。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0월 3일(임오) 2번째기사 종묘, 영녕전의 동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詣仁政殿, 親傳宗廟、永寧殿冬享大祭香祝。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2월 11일(경인) 1번째기사 공충도의 올해까지의	공충도(公忠道)의 각종 환미(還米)를 모두 올해의 것까지 합하여 이자를 덜어주며 이미 바친 것은 제외하고 단지 바치지 못한 것에 한하여 상정(詳定)하여 대전(代錢)할 것을 명하였다. 농사가 흉년이 든 것과 관련하여 도신(道臣)의 장계(狀啓)가 있었기 때문이다.	十一日。 命公忠道各樣還總, 竝今年耗, 除却已捧, 只就未捧者, 詳定代錢。 以農形失稔, 有道臣狀請也。

환미 이자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2월 15일(갑오) 2번째기사 새로 설치한 궁방에는 토지없이 획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나라의 경비는 사람의 진액(津液)에 비교할 수 있다. 경비가 거덜이 나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진액이 마르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호조(戶曹)에서는 결총(結總)이 한 번 절수(折受)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도로 조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경비를 미봉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분명하게 하지 못한 이전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 설치한 궁방(宮房)에서 절수하는 것을 법전대로 토지 없이 획급(劃給)하고, 부모가 다 죽은 다음 도로 조세를 물리도록 하라. 만약 영원히 폐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게 되면, 해당 관청의 관리가 반드시 쟁집(爭執)하여 부당성을 복계(覆啓)하여 만 년의 법식(法式)으로 삼으라. 그리고 원래 각 궁방에서 옮겨 사들인 결총(結總)과 경신년(1860)에 이정(釐正)할 때 궁방 토지에 대하여 모두 하나하나 조세를 도로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호조에 분부하라.”	敎曰: “國之經用, 比於人之津液。 經用匱乏, 國何以爲國; 津液枯渴, 人何以爲人? 度支結總, 一入於折受, 則不復還稅, 因此而經用無排備之望。 竟至民斂之境, 民亦何以聊生? 昧爽以前勿論, 繼自今新設宮房折受, 依法典無土劃給, 待親盡還稅。 如或有永勿罷之之命, 有司之臣必爭執覆逆, 以爲萬年法式。 而流來各宮之移買結總, 與庚申釐正時宮結, 竝令一一還稅事, 分付戶曹。”
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2월 30일(기유) 5번째기사 각도의 재결을 수량대로 잡아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1만 5,875결(結)에 대해 특별히 획급(劃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	議政府以‘各道災結一萬五千八百七十五結, 特許準劃’啓。

	孝太皇帝實錄) 제4권 끝】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월 1일(경술)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월 7일(병진) 3번째기사 경상도 연해 고을의 포량미를 폐지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경상도(慶尙道) 연해 여러 고을의 포량(砲糧)이라는 명색은 옛날에는 물론 뜻이 있어서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잇속을 노리는 구멍이 되어버려 허다한 폐단을 낳고 있어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올해부터 영영 없애버려 연해 고을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라고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敎曰: “慶尙一道沿海諸邑砲糧名色, 古雖有意設施, 今則便作利竇, 許多生弊, 以至難保云。 自今年爲始, 永爲革罷, 以安沿海之民事, 自廟堂行會。”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월 7일(병진) 4번째기사 제주의 진자곡 3,000석을 구획하여 보내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이 보고한 것을 보니, ‘제주(濟州)의 진자곡(賑資穀) 5,000석(石)을 구획(區劃)하여 운반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연해 고을들이 모두 재해를 입어 백성들의 힘으로 맡아 해결할 수 없으니 특별히 사세를 생각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섬의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딱하기는 하지만 본 도의 백성들의 힘도 응당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행회(行會)한 5,000석 가운데 도내(道內)의 어떤 곡식이건 3,000석에 한하여 구획하여 제때에 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徐相鼎所報, 則以爲: ‘濟州賑資穀五千石, 當爲區劃發運, 而沿邑擧皆災荒, 民力無以充排, 特軫事勢, 某樣通變’爲辭矣。 該島民情, 雖極可悶, 本道民力, 亦所當念。 前此行會五千石中, 以道內某樣穀, 限三千石區劃, 以爲趁時裝發何如?” 允之。

	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월 10일(기미) 2번째기사 금산 군수 유치윤, 유학 이병룡 등이 쌀을 바쳐 의창을 만들다	경상 전 감사(慶尙前監司) 이삼현(李參鉉)의 장계(狀啓)에, ‘금산 군수(金山郡守) 유치윤(柳致潤)과 유학(幼學) 이병룡(李炳龍) 등은 자기 녹봉을 덜어 내고 의연금을 내어 쌀을 사들여 쌓아 놓고 의창(義倉)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진주 전 첨사(晉州前僉使) 정환승(鄭煥升) 등은 마음을 같이하고 자원하여 바쳐서 향곡(餉穀)을 보태게 하였습니다. 모두 가상하니 표상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금산군수 유치윤이 솔선하여 녹봉을 덜어내어 의창을 설치하고 정환승은 삼촌과 조카가 의연금을 내어 장만하여 들인 향곡의 수량이 1,000포(包)나 되며 고을 선비 이병룡도 의연금을 내어 사들이는 것을 도왔으니, 모두 아주 가상하다. 해당 군수 유치윤은 더 나은 부사(府使)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먼저 의망(擬望)하여 들일 것이며, 전 첨사 정환승은 특별히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락하며, 유학 이병룡과 정철기(鄭喆基)는 모두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향곡을 맡아 지키는 방도로 말하면 오직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곡물은 다른 것과 차이가 있으니 묘당에 낱낱이 보고하여 조적(糶糴)하고 받아두는 방도에 대해 규정을 세워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慶尙前監司李參鉉狀啓: “金山君守柳致潤、幼學李炳龍等, 捐廩出義, 納米儲積, 名曰‘義倉’, 晉州前僉使鄭煥升等, 同心原納, 俾補餉穀。 俱爲嘉尙, 褒賞之典, 令廟堂稟處”事。 敎曰: “金山郡守柳致潤之躬先捐廩, 義倉設施; 鄭煥升, 叔姪之出義, 辦納餉穀, 數爲千包; 邑士李炳龍出義助納, 竝萬萬嘉尙。 該郡守柳致潤, 待優窠府使, 隨先擬入; 前僉使鄭煥升, 特許防禦履歷; 幼學李炳龍、鄭喆基, 竝初仕調用。 至於餉穀典守之道, 惟在監、兵營措處之如何。 此穀, 與他有異, 枚報廟堂, 糶糴捧留之道, 定式施行。”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월 11일(경신)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의 포량(砲糧)을 영영 없애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해 고을의 백성들의 일을 만리 밖에서도 섬돌 앞에 있듯이 환히 헤아리시니, 덕스러	十一日。 議政府啓: “嶺南砲糧永爲革罷事, 命下矣。 沿邑民事, 階前萬里,

경상도 연해 고을의 포량미를 폐지한 것을 취소하도록 아뢰다	운 생각이 간곡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니 실로 흠앙하고 찬송하여 마지않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포량은 원래 군수에 중요한 것이니, 조치하여 급대(給代)해 주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혜청(宣惠廳)이 구관(句管)하고 있는 환곡(還穀)의 모조(耗條) 가운데에서 원 수량대로 본색(本色)으로 지급하고 저치조(儲置條)는 절대 거론하지 말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춘조(春操)에 대하여 품계(稟啓)한 것이 지금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군사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에서 먼저 힘쓸 일인데, 지금은 사전의 방비책을 더욱 잘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봄이 되거든 품지(稟旨)하여 거행(擧行)하라고 이미 작년 가을에 행회하였으니, 또 다시 중지하는 것은 너무 고식적이라는 한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무기와 배에는 아직도 공역을 끝내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군사를 징발하여 습조(習操)에 나가는 것을 실로 행할 수 없을 염려가 있습니다. 각도(各道)와 제도(諸都)의 수조(水操)와 육조(陸操) 및 순력(巡歷)과 순점(巡點)은 모두 우선 정지하되,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에 모아 점고하면서 만약 마음먹고 조련한다면 이것은 실지 습조를 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며, 제방이 있는 곳으로 옮겨 역사를 시키는 것도 군사와 농사를 서로 의지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모두 관례를 따르지 말고 실효가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각종 도시(都試)와 정퇴한 것은 전례를 살펴서 합쳐 설행하라고 분부할 것입니다. 진무영(鎭撫營) 및 통영(統營)의 무기와 갑옷, 배는 차례로 완비하여 추조(秋操)의 예대로 각각 그 앞바다에 설행하고, 주사(舟司)에 있는 새로 만든 전선(戰船)은 제때에 강화도(江華島)에 내려 보내어 습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德念之懇惻, 恩施之曠絶, 實不勝欽仰攢頌之至。 而第念砲糧自是軍需攸重, 則不可無措劃給代之方。 以惠廳句管還耗條中, 依原數本色上下, 儲置條則切勿擧論之意, 行會何如?” 允之。 又啓:“諸道春操稟啓, 今已齊到矣。 詰戎有國先務, 而此時, 備豫之方, 尤不容不修擧後已。 況待春稟旨擧行, 旣有昨秋行會, 則又復停擱, 甚涉姑息之歎。 而第念軍器船隻尙有力役之未竣者, 徵發赴操, 實有行不得之慮, 各道、諸都水·陸操及巡歷、巡點, 竝姑停止。 官、鎭門聚點, 苟能著意操鍊, 此與行操無異。 堤堰處移役, 亦兵、農相寓之義也。 竝使之毋循例套, 期有實效。 各樣都試與停退條, 按例合設之意, 分付。 至於鎭撫營及統營兵甲舸艦, 次第完備, 依秋操例, 各其前洋設行。 舟司所在新造戰船, 趁期下送于沁都, 以爲操習之地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3월 1일(기유) 2번째기사 유생 염상명 등이 장의군을 만들고 군량을 마련하였기에 부직하도록 하다	진무사(鎭撫使) 이장렴(李章濂)의 장계(狀啓)에, '유생(儒生) 염상명(廉相明), 강영회(姜英會), 구석권(具錫權) 등은 충신과 공신의 후손들을 모아가지고 장의군(壯義軍)이라고 칭하고 군량(軍糧)을 자체로 마련하여 매일 연습하고 있으니, 그 충성을 다하는 정성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본래 충신과 공신의 후예로서 이번에 또 의리를 장려하는 일을 하였으니, 실로 가상하다. 염상명 등 3인을 충훈부(忠勳府)와 충의위(忠義衛)로 하여금 자리가 나는 대로 차례로 부직(付職)하게 하라."	鎭撫使李章濂狀啓: "儒生廉相明、姜英會、具錫權等募聚忠勳後裔, 稱以'壯義軍', 自備軍糧, 課日鍊習。 效忠之誠, 令廟堂稟處"事。 敎曰: "本以忠勳之裔, 今又奬義, 實爲嘉尙。 廉相明等三人, 令勳府、忠義衛, 待窠次第付職。"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3월 24일(임신)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를 행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四日。 詣仁政殿, 行宗廟夏享大祭受誓戒。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윤4월 2일(기유) 2번째기사 이양선이 달아났으므로 계엄을 풀어 농사일을 하게 하라고 하	과차(科次)를 마친 다음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서양 배가 지금 이미 멀리 달아나 형체도 없다고 합니다. 각 처에 있는 방수군병을 모두 계엄을 풀어 돌아가 농사일을 하게 하라고 각 해당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科次訖, 領議政金炳學曰: "洋舶今旣遠遁無形云。 各處防守軍兵, 竝爲解嚴, 使之歸農事, 分付各該道帥臣何如?" 允之。

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윤4월 21일(무진) 4번째기사 선천부의 화재에 휼전을 베풀고 환곡을 탕감시켜 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장계(狀啓)한 선천부(宣川府) 민가에서 불이 난 문제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좋은 쪽으로 품처(稟處)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민가가 불에 타고 관청 건물에까지 미쳤는데 그 수가 이렇게 많으니 너무나 놀랍고 참혹합니다. 특별히 근심하시는 덕스런 뜻이 애틋하니, 감영과 관가는 조처를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의 휼전(恤典) 외에 특별 휼전을 베풀어 전례에 따라 제급(題給)하되 화재를 당한 집에서 집을 짓는 자금은 공전(公錢) 가운데서 등급을 나누어 획급(劃給)하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지고 있던 환곡(還穀)과 신포(身布)는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수령(守令)은 이 하교를 가지고 하나하나 위로하고 깨우쳐주어 각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관청 건물을 수리하고 공적인 물건을 장만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잘 헤아려서 적절히 조치한 뒤에 그 거행 상황을 등문(登聞)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以平安監司狀啓, 宣川府民家失火事, 自廟堂從長稟處事, 命下矣。 民家之被燒, 公廨之延及, 厥數此多, 極爲驚慘。 特爲優恤德意懇惻, 營邑對揚, 宜不容少緩。 原恤典外, 別恤典照例題給; 災戶結構之資, 以公錢中, 分等劃給; 爛死人身還布, 竝蕩減。 而該守令將此辭敎, 面面慰諭, 俾各安堵。 官廨修葺、公物辦備之節, 令本道爛加商確, 量宜措劃後, 形止登聞之意, 行會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5월 13일(기축) 1번째기사 경모궁에서 하향 대제를 행하다	경모궁(景慕宮)에서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十三日。 行景慕宮夏享大祭。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4일(경술) 1번째기사 한산군의 물에 빠진 대동미 중 건지지 못한 것을 상정가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보고를 보니, ‘한산군(韓山郡)에서 물에 빠진 대동미(大同米)는 즉시 개색(改色)하여 상납(上納)해야 할 것인데 선주(船主)는 법에 의하여 사형되었고 사공(沙工)과 곁꾼［格軍］은 모두 삯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며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모두 가난하여 그 많은 곡식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증미(拯米) 309석(石)은 모두 열미(劣米)이니 개색하도록 하고 미증미(未拯米) 1,025석은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의 법 취지에서 볼 때 실로 물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해읍(該邑)의 사세(事勢)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보고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四日。 議政府啓: “卽見公忠監司閔致庠所報, 則‘韓山郡致敗大同米, 卽當改色上納, 而船主旣已伏法矣。 沙格皆是傭賃, 監色無非貧殘, 許多穀物, 措辦無路。 拯米三百九石, 竝劣米, 使之改色, 未拯米一千二十五石零, 許令詳定代納’爲辭矣。 正供法意, 固難低昂, 而該邑事勢, 不可不念。 特依報請施行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16일(임술) 1번째기사 장단의 정공을 다시 현물로 상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보고를 보니, ‘장단(長湍)은 궁방(宮房)의 결세(結稅)가 많기 때문에 원래 조세를 내야 할 토지는 1,100여 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官)에서 상정(詳定)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그에 따라 줄어드니 각 항목의 수용(需用)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자년(1864)에 대동세(大同稅)를 영원히 대전(代錢)하도록 정하고 그것을 도결(都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전(免稅田) 500여 결을 타읍(他邑)으로 이송(移送)하고 또 조사하여 찾아낸 결도 있고 해서 정공(正供)을 넉넉히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十六日。 議政府啓: “卽見戶、惠廳所報, 則‘長湍以宮結夥多之致, 元應稅不過爲一千一百餘結。 官詳定收捧, 亦隨而減, 不能當各項需用矣。 曩在甲子稅、大同。 永定代錢, 作爲都結。 而今則免稅五百餘結, 移送他邑, 又有査得之結, 正供足可本色備納’爲辭矣。 正供之詳定代納, 本非經法, 而該邑結總, 今旣有裕矣。 依前以本色上納, 分付何如?” 允之。 又啓:

	정공을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법이 아니며 또한 해읍(該邑)의 결총(結總)이 이제 넉넉해졌으니 이전대로 본색으로 상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수사(黃海水使) 정지현(鄭志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배지 군관(陪持軍官)이 거행하는 것은 다른 군교(軍校)와 구별이 있는데도 원래 공로에 보상할 바탕이 없으니 의당 공로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연(長淵)의 금사사(金沙寺)에는 단지 한 명의 승장(僧將)이 있을 뿐이고 군량과 무기 같은 것도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 자벽(自辟)의 자리로 만들고 그 행영(行營)과 본 영의 배지 군관의 노고에 따라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금사진 별장(金沙鎭別將)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출(差出)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영의 규례대로 전최(殿最)를 하고 임기는 30달로 정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해방(海防)의 장소로 새로 창설한 곳과는 다르니 설치하고 절제(節制)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卽見黃海水使鄭志鉉狀啓, 則‘陪持軍官擧行, 與他軍校有別, 而元無酬賴之資, 宜有效勞之窠。 本營所管長淵金沙寺, 只存一箇僧將, 軍餉、軍器, 萬不成樣。 自今以後, 作爲自辟窠, 從其行、本營陪持勤勞, 報兵曹, 以金沙鎭別將, 擬望差出。 依他鎭例, 殿最瓜限, 以三十朔爲定事, 請令廟堂稟處’矣。 此亦海防去處, 而其與新創有異, 設置節制之方,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18일(갑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행하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18일(갑자) 5번째기사 연해 고을의 포량미를 혁파하고 유리한 쪽으로 획급하도록 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오취선(吳取善)의 장계(狀啓)에, “연해 여러 고을의 포량미(砲糧米)를 혁파(革罷)하고 유리한 쪽으로 떼주는 문제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혁파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조획(措劃)하여 급대(給代)할 때에는 도리어 그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게 되었으니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慶尙監司吳取善狀啓: “沿海諸邑砲糧, 革罷, 從長劃下事, 請令廟堂稟處。” 敎曰: “當初革罷, 寔出爲民之意, 而今於措劃給代之際, 反不如仍舊之爲愈。 使之依前擧行。”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23일(기사) 1번째기사 재해를 입은 제주의 세 고을에 환곡을 탕감해 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읍(邑)에서 진휼을 실시한 것이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전미(移轉米) 3,000석(石)은 응당 갚아야 할 곡식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뒤에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전례대로 바치라고 독촉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특별히 상정(詳定)하는 예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정(賑政)이 차차 끝나서 온 섬의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게 된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전곡(移轉穀)을 본색(本色)으로 바치라고 독촉한다면, 현재 백성의 사정으로는 또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의 예로 대납(代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온 섬의 백성들이 기근의 우환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니 애태우던 중에 천만	二十三日。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李後善狀啓, 則‘三邑設賑, 方纔告畢, 而移轉米三千石, 係是當報之穀。 災餘民情。 勢難如例責捧, 特依詳定例, 代錢備納事, 請令廟堂稟旨’矣。 賑政次第告竣, 全島免有捐瘠, 誠爲之萬幸。 第其移轉穀之本色督責, 此時民情, 亦有所行之不得者矣。 依狀請, 許令詳定代納, 分付何如?” 敎曰: “闔島生靈, 免得捐瘠之患, 憧憧之餘, 爲之萬幸。 而災餘民情, 何用常例? 移轉穀, 特令蕩減, 以示朝家眷眷之意。”

	다행이다. 재해 후의 백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찌 상례(常例)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전곡은 특별히 탕감시켜 조정에서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6월 25일(신미) 1번째기사 공주목의 대동선을 침몰시킨 죄인들의 원곡 징수가 지체되므로 효수하는 형벌을 시행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옥구현(沃溝縣)에 갇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공주목(公州牧)의 대동선(大同船)을 가라앉힌 죄인들의 일로 인해, 애초에는 원곡(原穀)을 징수하라고 한 처분을 내렸는데 사실 그 행적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전혀 바치지 않고 그저 형기가 찼다는 사실로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계문(啓聞)하면서 원적지의 고을로 이송(移送)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생각하는 것이 아주 경솔하기 때문에 도신(道臣)을 문비(問備)하고 해당 고을 수령은 품처(稟處)하도록 이미 본 청에서 계청(啓請)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더 줄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것을 한결같이 조령(朝令)에 따라 엄하게 독촉하여 받지 않는다면 조선(漕船)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무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훗날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본 곡을 독촉하여 징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 듯하니, 본 청에서 상정(詳定)하여 대봉(代捧)하도록 윤허하여 되도록 빨리 준납(準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핑계대면서 여전히 지체시킨다면, 가두어 놓고 있는 뱃놈들을 효수(梟首)하는 형벌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며 도신과 수령도 엄하게 경책(警責)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	二十五日。 議政府啓: “卽因沃溝縣囚, 推公州牧大同船致敗罪人等事。 當初, 原穀徵捧之處分, 實由跡涉故敗而然。 則于今三年之間, 一無所捧, 乃以限滿刑準, 邑而報營, 營而啓聞, 至請移送原籍官。 揆以事體, 果甚稽忽, 道臣問備, 該倅稟處, 卽有本廳啓請而允下者。 今不必架疊, 而此而不一遵朝令嚴加督捧, 漕船作奸之輩, 將何所畏戢? 而來後流弊, 亦不可勝言矣。 第其年久之後, 本穀責徵, 似有所難便。 以本廳詳定, 許令代捧, 使之從速準納。 而若或一向推託, 依舊愆滯, 在囚船漢, 直施梟警之律, 道臣守令, 亦難免從重論警。 以此意嚴飭, 行會何如?” 允之。

	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7월 2일(정축) 2번째기사 《삼반예식》을 인출하여 반사하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문무관들의 체통(體統)의 화평과 이정(釐正)을 위하여 《삼반예식(三班禮式)》을 인출(印出)하여 반사(頒賜)하였다. 그러나 문관이 무관을 대하는 태도와 무관이 문관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자세하지 못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균등하고 공평한 내용으로 간행하여 이렇게 또 다시 반사한다. 이전에 내려 보낸 책의 내용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한결같이 이 법식을 따라 서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힘쓰라. 이것이 바로 조상(朝象)이고 나라의 보배이다. 옛 대궐을 중건하고 조정의 체계를 복구하고 이정하는 것에 나의 뜻이 있으니, 조정 신료(臣僚)들은 아무쪼록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向以文武體統之和平釐正, 印出《三班禮式》而頒賜矣。 以文對武、以武對文之間, 略有未詳戛戛處, 更刊均平, 玆又頒賜。 前下冊子, 竝勿施, 一遵此式, 務相和平。 此爲朝象也、國瑞也。 舊闕重建, 朝體之復舊釐正, 予意有在。 在廷臣僚, 庶幾諒悉。”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5일(기유)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경모궁의 추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五日。 詣勤政殿, 親傳景慕宮秋享大祭香祝。
고종 5권, 5년(1868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禮曹判書金世均疏略: “健元陵、崇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5일(기유) 2번째기사 건원릉 등에 친제하는 의식 절차를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건원릉(健元陵)·숭릉(崇陵)·수릉(綏陵)·경릉(景陵)에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이 있어서 이미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셨으니, 의주(儀註) 역시 마땅히 수정하여 들여야 합니다. 신은 이에 대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구구한 어리석은 견해를 삼가 올립니다. 삼가 《예조 등록(禮曹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친히 제사를 지내고 전알(展謁)하는 데 대한 의주에는 오로지 전교한 선후에 의거하며 능침(陵寢)의 서차(序次)에 따라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식(典式)으로 인해 그러는 것이기는 하나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절에 관한 막중한 일이어서 감히 갑작스럽게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이 상소를 가지고 시임대신과 원임대신에게 하문(下問)하여 온당한 쪽으로 귀결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의 체모로 볼 때 과연 매우 온당치 못하니, 대신들에게 하문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규례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陵、綏陵、景陵, 親祭有命, 節目纔已啓下, 儀註亦當修正以入矣。 臣於是竊有區區愚見之冒昧仰陳者。 謹考臣曹謄錄, 則親祭展謁之儀, 惟以傳敎先後, 不以陵寢序次。 而書之者, 雖緣典式攸在, 揆以事體, 似涉未安。 而禮節莫重, 不敢遽議。 伏乞聖明將臣此章, 下詢時原任大臣, 務歸至當, 恐合事宜。” 批曰: “其在事體, 果甚未安。 不必詢問, 依此定典。”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7일(신해) 2번째기사 경기의 환곡을 나누어 주는 시기를 매년 7, 8월로 할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연전에 기내(畿內)의 환곡(還穀)에 관한 장부를 이정(釐正)한 뒤 환곡을 분류(分留)하는 법을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당년에 반을 남겨둔 곡식은 바로 지난 가을에 받아들인 것이며, 내년 봄에 장차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에 쥐나 참새가 까먹는 것과 습기에 썩는 것이 자연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7, 8월 사이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상례를 만들 경우에는, 환곡을 타먹는 백성들의 입	議政府啓: “年前畿內還簿釐正後, 分留之法, 至今遵行。 而第念當年半留之穀, 卽前秋所糴而明春將分者也。 首尾三載之間, 自不無雀鼠之所耗、霧露之所傷矣。 每於七八月之交, 預爲分給, 歲以爲常, 則在還民不爲無惠、在朝家陰雨之備, 亦無疏虞之慮。 以

	장에서는 혜택이 없지 않을 것이고, 화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정의 방책에 있어서도 역시 허술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此著式施行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9일(계축)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10일(갑인) 1번째기사 동관왕묘에 전배하고 전작례를 행하다	수릉(綏陵)의 재실(齋室)에서 환궁하다가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두루 전배하고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初十日。 自綏陵齋室還宮, 歷拜東關王廟, 行奠酌禮。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18일(임술) 1번째기사 《성학십도》를 그린 병풍을 진상하다	진강(進講)을 마쳤다. 시독관(侍讀官) 이만기(李晩耆)가 아뢰기를, “신이 한 달 전에 홍문관(弘文館)에 임명되었는데, 삼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그린 병풍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본관에 오랫동안 보관하여 오던 것이 지금 없어서 단지 책자만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신의 선조인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찬하여 선묘조(宣廟朝) 무진년(1568)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예지로써 성인의 학문에 대한 근원을 깊이 탐구하시어 이와 같이 옛날의 유물을 찾으시니, 신은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의 족형인 전 정언	十八日。 進講。 訖, 侍讀官李晩耆曰: “臣於月前持被玉署, 伏聞有《聖學十圖》屛進御之命, 而本館舊藏今無所存, 只進冊子。 是圖卽臣先祖文純公臣滉所撰進於宣廟朝戊辰。 而今我殿下, 睿智天縱, 深究聖學之源, 有此

	(前正言) 이만형(李晩瀅)의 집에 마침 옛날 병풍 한 벌이 있어서 시골에서 가져와 성상께 올리기를 원하므로, 이에 감히 올립니다." 하니,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윤병정(尹秉鼎)이 아뢰기를, "문순공 이황의 별호가 바로 퇴계(退溪)인데, 이 유신(儒臣)이 그 후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병풍을 즉시 들여오라." 하였다.	詢訪古蹟, 臣不勝欽仰之至。 臣族兄前正言臣晩瀅家, 適有古屛一件, 自鄕輸來, 願備進覽而敢進矣。" 同經筵尹秉鼎曰: "李文純別號卽退溪, 而此儒臣爲其孫矣。" 敎曰: "屛帖, 卽爲進入也。"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8월 30일(갑술) 3번째기사 어염세를 화포군의 요미로 사용하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에, '산행 포수(山行砲手) 100명(名)을 뽑아 화포군(火砲軍)에 명단을 올린 다음, 어장(漁場)에서 거두는 사사로운 세금을 모두 끌어 모아 요미(料米)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새로 제도를 창설하는데 관계되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치하고 분배하는 방도에 대하여 삼군부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교하기를, '각도 연안의 어장과 염전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고 이를 군고에 붙여서 폐단을 없앤 갑자년(1864)에 내린 대왕대비의 염교(簾敎)가 얼마나 엄절하였던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혁파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사사로이 세금을 걷고 있으니, 이러고서도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사사로이 거두는 세금을 끌어 모아서 포병을 창설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으로, 변경의 방비가 이로부터 튼튼해질 것이다. 사사로이 걷는 세금을 군고에 붙이는 방도와 포병을 설치하는 절차를 속히 삼군부에서 잘 품처	三軍府啓: "以黃海監司曺錫輿狀啓, '山行砲手一百名, 錄籍火砲軍, 以漁基私稅, 査括付料。 而事係創始, 有難擅便, 其設置分排之方, 令三軍府稟處'事, 敎曰: '各道沿海, 魚鹽之革其私稅, 付之軍庫捄弊, 甲子簾敎, 何等截嚴? 而尙此不革, 晏然私稅, 此謂國有法綱乎? 今此收其稅, 創設砲兵, 萬萬得當。 邊圉從此可固, 其所付稅之道、設砲之節, 亟令三軍府從長稟處'事, 命下矣。 海防疏虞, 莫此地若, 又莫此時若矣。 今其選兵習砲, 厚厥衣食者, 固圉園邊, 緩急可恃。 而接

	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바다 방비가 소홀하기가 이곳만한 데가 없고, 또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뽑아서 총 쏘는 법을 연습시키면서 의복과 양식을 풍족하게 지급해주는 것은, 참으로 변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미 달리 조처할 방도가 없으니, 어장과 염전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획부(劃付)하는 것이 실로 양쪽이 모두 편한 방도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갑자년에 내린 대왕대비의 염교는 상처받은 자를 돌보듯이 백성을 돌보는 대왕대비의 거룩한 뜻에서 특별히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해 지나는 사이에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져, 위로는 나라의 비용에 보탬이 되지 않고 또 아래로는 백성들의 힘이 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이를 시종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비록 각궁(各宮)과 각사(各司)를 놓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한갓 사소한 이익만을 생각하고 많은 폐단을 끼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세력에 빌붙어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니, 통분스럽기 그지없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궁(宮) 어떤 사(司)이건 논할 것 없이 모두 다 조사해 낸 다음 포수들에게 주는 밑천으로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넘겨주는 등의 일은, 본도의 감영에게 상세히 분배하고 별도로 절목(節目)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계문(啓聞)하여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濟之節, 旣無從他措處之道, 則魚鹽私稅之就此劃付, 實爲兩便之方。 而第伏念甲子簾敎, 特出於如傷若保之聖念也。 一年二年, 弊復如前, 旣不得上補國用、又不能下展民力, 則分憂之地, 終始掩置者, 亦甚慨然。 雖以各宮、各司言之, 徒爲些少見利, 罔念許多貽害, 畢竟民國事計, 奚益之有乎? 此必是憑託慫慂而然, 痛惋之極, 寧欲無言。 無論某官、某司, 凡於此等去處, 一竝査括, 付之砲軍料食之資。 其設置軍伍, 徵付稅額, 使本道監營, 消詳分排, 另成節目, 以爲啓聞遵行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初十日。 召見大臣、禮堂。 領議政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10일(갑신) 1번째기사 대신들이 대왕대비의 환갑을 맞아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도록 청하다	대신(大臣)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예조의 당상을 데리고 와서 대기하라는 하교를 받들었는데, 이는 전례(典禮)에 관한 일인 듯하여 아랫사람의 마음에 경축하는 생각이 미리 간절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금년은 바로 동조 전하(東朝殿下)의 환갑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존호(尊號)를 올리고 잔을 드리는 것은 예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큰 전례에 대해서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까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정성을 다해 우러러 여쭙고자 하기에 경들을 소견하여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자성(慈聖)의 큰 덕은 옛날 훌륭한 왕후들 가운데서도 드물기 때문에 대소 신민들이 모두 흠송(欽誦)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짓달에 여러 번 정청(庭請)을 하였으나 끝내 윤허 받지 못하여, 아랫사람들의 구구한 마음에 아직까지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장수하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 동조 전하께서는 큰 덕을 지니시어 이미 장수를 하였으니, 응당 그에 맞는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존호를 올리고 음식을 드리는 절차는 실로 성상의 효성을 더욱 빛내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니, 자전의 마음을 돌려서 윤허를 받아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즉시 동조 전하께 입품(入稟)하겠다. 경들은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다. 이어 내정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보좌(寶座)에 앉았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례에 대하여 과연 마지못해 따른다는 분부를 받으셨습니까?”	金炳學曰: “伏承率禮堂來待之下敎。 似是典禮之事, 而下情豫切慶祝矣。” 敎曰: “今年, 卽東朝殿下周甲之慶年也。 揚徽稱觴, 在禮則然, 而大典之未蒙允許, 尙今悵缺。 方欲積誠仰達, 故召見卿等, 議之矣。” 炳學曰: “慈聖之大德, 古昔哲后之所罕有, 大小臣民之所欽誦也。 前年亞歲, 屢煩庭籲, 而竟未蒙俞音, 區區下情, 至今悵缺矣。 夫大德, 必得其壽、必得其名。 猗, 我東朝之大德, 已得其壽, 則宜得其名矣。 上號進饌之典禮, 實是聖孝之彌光、群情之顒祝, 勉回慈聽, 誕擧縟儀焉。” 敎曰: “當卽入稟東朝矣。 卿等留待。” 仍入內。 少頃, 還御寶座。 炳學曰: “典禮, 果承勉從之敎乎?” 敎曰: “小子岡祝之誠、群情大同之意, 終始盡達, 而以國有大役, 尙此靳許。 下情極爲仰悶矣。” 炳學曰: “上而有光聖孝, 下而克副群情, 卽今日必準乃已之事。 區區顒祝之餘, 未蒙允許, 極爲抑鬱。 臣等退出而當以賓啓仰請矣。” 敎曰: “予亦入稟東朝矣。”

	하니, 하교하기를, “나의 장수를 축원하는 정성과 여러 사람들의 한결같은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으나, 나라에 큰 공사가 있다는 이유로 끝내 윤허하지 않고 계시니, 나의 마음이 몹시 답답하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위로는 전하의 효성을 빛내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부응하는 것이니 만큼, 오늘 반드시 허락을 받아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바라던 끝에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몹시 답답합니다. 신들이 물러가서 빈청에서 아뢰는 것으로 우러러 청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도 동조 전하께 입품하겠다.” 하였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10일(갑신) 2번째기사 빈청에서 대왕대비의 환갑을 맞아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도록 아뢰다	빈청에서 아뢰기를,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지위를 얻고, 반드시 녹을 얻으며, 반드시 이름을 얻고, 반드시 장수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큰 덕이 있으면 지위와 녹과 이름과 장수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우리 태모(太母)께서는 본래부터 큰 덕을 타고나시어, 지난 익종(翼宗)과 헌종(憲宗) 시대에는 태사(太姒)처럼 훌륭하였고 태임(太任)처럼 정숙하시었으며, 성명께서 임어하심에는 요(堯)순(舜)처럼 공을 세우고 현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복록이 모여들었으며 회갑이 돌아왔습니다. 신들이 작년 겨울 동짓달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를 상고하고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서는 경연에서 아뢰고 물러나	賓廳啓: “《思傳》曰: ‘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蓋言有大德, 則位祿名壽, 皆可以必得之矣。 猗, 我太母天縱大德, 粤在翼、憲盛際, 姒徽而任齊, 逮至聖明臨御, 堯勛而舜哲。 諸福畢集, 寶甲重回。 臣等於昨冬亞歲, 稽我家已行之禮, 循擧世大同之情, 進而筵奏、退而賓籲。 而慈衷彌堅於沖挹, 宸孝尤光於承順。 雖不敢更事煩瀆, 而君臣上下, 情極悵缺, 愈久愈切, 迺玆休命, 悠久無疆。

	서는 빈청에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자전의 마음은 겸손한 데서 더욱 굳어지고, 자전의 뜻을 따르는 데서 전하의 효성은 더욱 빛나 비록 감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였으나, 군신 상하의 섭섭한 심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명은 오래도록 끝이 없어서 태모의 회갑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하의 효성스런 마음에서는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에 자전의 공을 아로새겨도 오히려 자전의 성스러운 덕을 천양하기에는 부족하고 넘치도록 술을 따라도 자전의 장수를 비는 데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전께 높이 보답하는 모임이 오직 여기에 있으며, 경축하려고 하는 도리도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서는 선대 왕비들께서 이미 하신 고사가 있으니, 예법이 중하고 의리가 공정하여,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고 백대가 흐른 뒤에 물어도 의혹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손하게 여쭈어 하늘에 닿는 큰 이름을 드러내고 장수를 비는 경사스러운 모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단지 한때에 경사를 축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만대의 정상적인 법도입니다. 태모께서 아무리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사양한다 하더라도, 어찌 우러러 자애로운 생각을 감동시켜서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허락을 내리게 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신들이 경연에서 물러나자마자 충정이 북받치기에, 이에 감히 이렇게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기어이 자성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여 속히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상의 효성이 빛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으나 아직도 윤허하지 않고 계신다. 여러 사람들은 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太母誕彌之辰載邇, 以我殿下愛日之誠, 鏤玉範金, 猶未足以闡聖德; 酌斗稱觴, 猶未足以析聖壽。 而崇報之會, 惟在於是; 飾慶之道, 亦惟在於是矣。 況自有我先后故事, 禮鉅、義正, 質無疑而俟不惑者乎? 殿下以靡極之誠, 愉惋導達, 闡鴻名於摹天, 識慶會於祝岡, 則非但爲一時賁飾之擧, 卽萬世之經常。 太母雖聖不自聖, 讓而不居, 亦豈無仰格止慈之念、俯賜勉從之音乎? 臣等纔從筵退, 衷情轉激, 玆敢聯籲。 伏願殿下務積至誠, 期回慈聽, 亟擧縟儀, 以光聖孝焉。” 批曰: “今方導達, 尙靳俞音。 群情所推, 可諒予心矣。”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10일(갑신) 3번째기사 빈청에서 두 번째로 아뢰다	빈청(賓廳)에서 두 번째 아뢰니, 비답하기를, “나의 심정이 간절한데, 경들이 또 이렇게 연명으로 간청하니, 정성을 다해 우러러 여쭙겠다.” 하였다.	賓廳再啓。 批曰:“小子之情懇, 卿等之聯籲, 又此積誠仰達矣。”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10일(갑신) 5번째기사 목화 농사의 흉년으로 황해도 군포의 5분의 1을 대전하도록 하다	황해도(黃海道) 각 군영에서 바치는 군포는 5분의 1을 대전(代錢)하고, 각사(各事)에 바치는 것은 모두 돈으로 대납하라고 명하였다.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命黃海道各營所納軍布, 五分一代錢, 各司純錢代納。 因綿歉, 政府啓請也。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11일(을유) 1번째기사 영의정 김병학이 대왕대비의 환갑을 축하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아뢰다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백관(白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빈청에서 다시 아뢰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또다시 대궐 뜰에 모두 나와 우러러 아뢰면서 작년에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오늘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떳떳한 도리이며 만물의 한결같은 법칙입니다. 아! 우리 태모의 연세가 60이 되어 경사스러운 회갑날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름다운 날입니다. 부모의 나이를 알고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우리 전하의 지극한 효성으로서 잔치를 성대히 베풀고 공을 밝게 드러내는 전례를 어느 것인들 하지 않으	十一日。 領議政金炳學, 率百官, 庭請啓:“臣等筵奏, 而未蒙允兪, 賓啓, 而尙遲勉回。 今又咸造大庭, 相率仰籲, 以昨年未罄之懷, 爲今日必準之請者, 卽民彝、物則之所同得也。 猗, 我太母, 寶籌誕週, 甲紀慶日, 臨在數月, 此誠千一之嘉會也。 以我聖上知年之孝、愛日之誠, 凡係賁飾顯揚之節, 何典何禮之何所不備? 而前冬臣等之仰請, 淺薄未格, 爲待此日, 復申前請, 是誠君臣上下情與禮之不容已者

	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해 겨울 동짓달에 신들이 우러러 청하면서 정성이 부족하여 자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였기에, 오늘을 기다려 다시금 전에 청한 것을 우러러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군신 상하 모두의 인정과 예의에 있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성 전하의 거룩한 공렬과 깊은 은덕은 비록 날마다 두 글자의 존호를 올리고 시간마다 아홉 번 술잔을 올리는 풍성한 잔치를 차린다 하여도, 오히려 위로는 아름다운 덕을 천양하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장수를 비는 축원에 부응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존호를 옥책(玉冊)에 기록하고 깊은 효성을 술잔에 부친다면, 자전의 덕이 성상의 효성으로 인하여 더욱 드러나고, 성상의 효성이 자전의 윤허로 인하여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입품(入稟)하여 기어이 자전의 뜻을 돌림으로써 속히 밝은 명령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모두 같은 마음을 또다시 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한다는 하교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다.	也。 我慈聖之嵬勳盛烈、深仁厚德, 雖日上二字之隆、時進九爵之豐, 猶不足以上揚德美、下副祈祝。 闡徽烈於玉牒, 寓深誠於瑤觴, 則慈德, 因聖孝而彌著; 聖孝回慈聽而益彰。 伏願更爲入稟, 期於勉循, 亟降明命焉。” 批曰: “大同之情, 又此仰陳, 而尙未蒙允兪之敎矣。”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0월 3일(병오)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 영녕전 동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三日。 詣勤政殿, 親傳宗廟、永寧殿冬享大祭香祝。
고종 5권, 5년(1868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三軍府啓: “卽見議政府草記, 則‘全羅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0월 9일(임자) 3번째기사 내나로도와 외나로도의 솔밭을 사도에 다시 환속시키도록 하다	“방금 의정부(議政府)의 초기(草記)를 보니, ‘전라도(全羅道) 흥양현(興陽縣) 내나로도(內羅老島)와 외나로도(外羅老島)의 솔밭은 본래 사도(蛇渡) 소관이었는데, 지난 기미년(1859)에 녹도(鹿島) 소관인 절이도(折爾島)의 솔밭과 함께 본현의 목장에 이속(移屬)시켰으나 절이도 솔밭은 이미 녹도로 환속(還屬)되었습니다. 한 곳은 도로 찾아갔는데 한 곳은 그렇지 못하니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내나로도와 외나로도의 솔밭도 전처럼 사도에 환속시킬 것을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근일에 솔밭이 전혀 방한(防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저기에 이속했다가 여기에 이속했다가 한 데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끝내는 솔밭 두 글자마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통탄스럽기 그지없어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본진(本鎭) 소관인데 한 곳은 환속하고 한 곳은 환속하지 않은 것이 어떤 속사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대해주는 정사로 보면 변통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사도진(蛇渡鎭)에 환속시켜 마음을 다하여 금지하고 보호하게 하고, 만일 이속한 뒤에 한 그루 한 잎이라도 베어가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진장(鎭將)을 법대로 감단(勘斷)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엄히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道興陽縣內外羅老島松田, 本以蛇渡所管。 往在己未, 竝與鹿島所掌折爾島松田, 移屬本縣牧場, 而折爾島松田, 已爲還屬鹿島矣。 一復一否, 不無向隅之歎, 內外羅老島松田, 依前還屬蛇渡事, 請令三軍府稟處’矣。 近日松田之蕩無防限, 職由於移彼移此而然。 而其究也, 將無松田二字而後已, 痛惋之極, 寧欲無言。 今其本鎭所管之彼復此否, 未知裏許之何居, 而一視之政, 恐合通變。 依狀請, 還屬蛇渡鎭, 俾爲盡心禁護。 而萬一移屬之後, 雖一株一葉, 或有犯斫之弊, 當該鎭將依律勘斷。 以此意嚴加申飭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1월 29일(임인) 1번째기사 여름철에 별비미의 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좌도 암행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정직조(鄭稷朝)의 별단을 보니, ‘첫째는 별비미(別備米)를 절반은 남겨 두고 절반만 나누어 주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움집은 창고와는 달라서 여름 장마를 만나	二十九日。 議政府啓:“卽見全羅左道暗行御史鄭稷朝別單, 則‘其一, 別備米之半留半分, 戒在陰雨。 而土窖與倉庫有異, 夏潦有沾濕之慮, 且新穀未登之時, 雖樂歲, 終不免饑。 半留米,

관이 어려우니 7월에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하다	면 젖을 우려가 있고 햇곡식이 아직 여물기 전에는 설령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끝내 굶주림을 면할 수 없으니, 남겨둔 절반의 쌀을 특별히 7월에 다시 나누어 주어,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주고 한 번에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환곡(還穀)을 나누어 남겨 두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개와 이슬로 음습(陰濕)한 때에는 썩을 우려가 없지 않으니 별단의 말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特於七月更分, 以爲再糶一糴'事也。還穀分留, 所以備陰雨者, 而雨露沾濕之際, 亦不無腐爛之慮。 依單辭, 許施何如?" 允之。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2월 6일(기유) 3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진찬례를 행하다	강녕전(康寧殿)에서 진찬례(進饌禮)를 행하였다.	行進饌禮于康寧殿。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2월 6일(기유) 4번째기사 대왕대비의 생신을 맞아 대신 및 당상들에게 사찬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여러 각신(閣臣), 유신(儒臣) 2품 이상과 6조의 당상(堂上官), 대사간(大司諫)들에게 모두 사찬(賜饌)하도록 명하였다. 대왕대비의 생신날이었기 때문이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宗正卿、諸閣臣、儒臣二品以上、六曹堂上、大司諫, 竝賜饌。 以東朝誕辰也。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十一日。 御康寧殿, 行會酌禮。

7년) 12월 11일(갑인) 1번째기사 강녕전에 나아가 회작례를 행하다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회작례(會酌禮)를 행하였다.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12월 11일(갑인) 2번째기사 진찬을 구관한 종친부의 유사 당상 이하에게 시상하다	진찬(珍饌)을 구관(句管)한 종친부(宗親府)의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進饌句管宗府有司堂上以下, 施賞有差。
고종 6권, 6년(1869 기사 / 청 동치(同治) 8년) 1월 1일(계유) 1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내리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6권】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高宗太皇帝實錄卷之六】 初一日。 癸酉。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1일(정묘) 4번째기사 노인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2일(무진)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와 영녕전의 춘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한 다음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으니, 춘계 전알이었다.	初二日。 詣勤政殿、親傳宗廟、永寧殿春享大祭香、祝。 仍詣宗廟、景慕宮, 展謁。 春謁也。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2일(무진) 2번째기사 인빈, 영빈, 화빈, 희빈, 정빈, 의빈, 영빈 등의 사당의 신주를 옮기다	전교하기를, “친진(親盡)하여 조천(祧遷)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제도이며 역시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왕들의 가법(家法)이다. 그런데 유독 의소묘(懿昭廟)의 사우(祠宇)를 아직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각궁(各宮)에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곳의 별묘(別廟)에 합쳐 봉안(奉安)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인빈 김씨(仁嬪金氏)·영빈 김씨(寧嬪金氏)·화빈 윤씨(和嬪尹氏)의 사우는 경우궁(景祐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고, 희빈 장씨(禧嬪張氏)·정빈 이씨(靖嬪李氏)·영빈 이씨(暎嬪李氏)·의빈 성씨(宜嬪成氏)의 사우는 육상궁(毓祥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며,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안의 별묘에 이봉(移奉)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의식 절차는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처(稟處)하여 거행하게 하라.”	敎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 然而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照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 稟處於大院君前擧行。”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2일(무진)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제수(祭需)의 가미(價米)를 내외(內外)의 사판(祠版)마다 200결(結)을 제급(題給)하기로 하고 친진(親盡)한 뒤에는 다시 거두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정식	敎曰: “祭需價米之每於內外祠版, 爲二百結題給, 親盡後還收, 卽是不易之定式也。 近日則無論內外祠版與單位祠版, 汎稱二百結, 實非經法。 而向

조 귀인 묘의 제사 비용으로 50결을 제급하도록 하다	(定式)이다. 요즘에 와서는 내외의 사판이거나 단위(單位)의 사판이거나 간에 일반적으로 200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당한 법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조 귀인(趙貴人)의 제수로 200결을 지급하였으니 이것도 규례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이 귀인(貴人)의 묘(墓)에 대한 크고 작은 제사는 이미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궁에서 맡아 지내고 있으니, 단지 50결만 우선 제급하도록 하라. 이전부터 잘못 답습해오고 있는 곳은 일체 다시 바로잡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日趙貴人祭需二百結, 亦是謬例。 且此貴人墓大小祭, 旣自全溪大院君宮主之矣, 只以五十結, 姑爲題給。 曾前襲謬處, 一體更爲釐正事, 分付戶曹。”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4일(경오)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사직단의 기곡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기곡 대제(祈穀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四日。 詣勤政殿, 親傳社稷祈穀大祭香祝。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5일(신미) 1번째기사 경수궁의 신주를 묻고 제사 비용으로 주던 돈도 삭감하다	호조에서, ‘제수(祭需)의 가미(價米)를 바로잡는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조 귀인(趙貴人)의 제수조(祭需條)는 삼가 하교에 따라 50결(結)로 마련하였고 의빈방(宜嬪房)과 박 숙의방(朴淑儀房)의 제위조(祭位條)로는 매 신위당 100결로 마련하였으며, 선희궁(宣禧宮)의 제위조도 또한 100결로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아뢰고, 또, ‘각 궁의 결수(結數)를 정리하는 절차를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하니, 「경수궁(慶壽宮)이 이미 친진하여 조천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제사 비용은 이미 경우궁(景祐宮)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제위조 200결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를 내게 하라. 제수가 부족한 데 대한 500냥(兩)도 이제부터는 또한 삭감하여 줄이는 것이 실로 사의에 부합된다.」라고 하였	初五日。 戶曹以“祭需價米釐正事, 命下矣。 趙貴人祭需條, 謹依下敎, 以五十結磨鍊; 宜嬪房、朴淑儀房祭位條, 每位以一百結磨鍊; 而宣禧宮祭位條, 亦以一百結磨鍊”啓。 又以“各宮結數釐正之節, 稟定于大院君前, 則‘慶壽宮已爲親盡, 當祧而不遷。 享需旣自景祐宮擧行, 祭位條二百結, 竝爲出稅。 祭需不足條五百兩, 自今亦爲

	습니다. 모두 이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減省, 實合事宜'爲敎矣。 竝遵此擧行"啓。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7일(계유) 1번째기사 성균관에서 인일제를 설행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진사(進士) 김연수(金演壽)와 유생(幼生) 홍은모(洪殷謨)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初七日。 設人日製于泮宮。 賦, 進士金演壽、幼學洪殷謨, 竝直赴殿試。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월 30일(병신) 3번째기사 100세 된 노인들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100세(歲)인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여 하비(下批)한 자가 31인(人)이다.【강석려(姜碩呂)·강경(姜慶)·김시혁(金時爀)·이이엽(李利燁)·박준후(朴準厚)·강한욱(姜漢郁)·박태혁(朴台爀)·우의달(禹義達)·김경준(金景準)·변삼환(邊三煥)·강두성(姜斗成)·오석기(吳錫箕)·장창익(張昌翼)·장서행(張瑞行)·김정칠(金鼎七)·강주일(姜周一)·김지희(金智熙)·곽치호(郭致壕)·김학규(金學奎)·이지록(李之祿)·최치우(崔致祐)·윤영유(尹永裕)·박성철(朴聖喆)·김상옥(金相玉)·최갑두(崔甲斗)·김사곤(金仕坤)·이지백(李之柏)·남궁관(南宮琯)·박태식(朴泰植)·정희승(鄭喜升)·이사봉(李思鳳)이다.】	百歲老人加資下批者三十一人。【姜碩呂、姜慶、金時爀、李利燁、朴準厚、姜漢郁、朴台爀、禹義達、金景準、邊三煥、姜斗成、吳錫箕、張昌翼、張瑞行、金鼎七、姜周一、金智熙、郭致壕、金學奎、李之祿、崔致祐、尹永裕、朴聖喆、金相玉、崔甲斗、金仕坤、李之柏、南宮琯、朴泰植、鄭喜升、李思鳳。】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2월 9일(을사) 3번째기사 바닷길로 남방 곡식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전곡(移轉穀)을 바닷길로 운반할 때 향축(香祝)을 내려주고 공경히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전례(典禮)입니다. 이번에 남곡(南穀)을 북방으로 운반할 때 향축을 싸서 보내주고 지나는 여러 도(道)에서 제때에 제사를 설행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와 해도(該道)에 분부하소서."	議政府啓: "移轉穀海運時, 降香祝, 虔誠祭海, 自是典禮也。 今番南穀北運時, 賫送香祝裝發, 及所經諸道, 趁期設行之意, 請分付該曹及各該道。" 允之。

북방으로 옮길 때 바다에 제사를 설행하도록 하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3월 13일(기묘) 1번째기사 헌륭원과 건릉에 나아가 친제하고 화녕전에 가서 작헌례를 행하다	현륭원(顯隆園)과 건릉(健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화녕전(華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十三日。 詣顯隆園、健陵, 親祭。 仍詣華寧殿, 行酌獻禮, 還詣行宮。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3월 15일(신사) 1번째기사 화녕전에 나아가 망분향을 행하다	화녕전(華寧殿)에 나아가 망분향(望焚香)을 행하였다.	화녕전(華寧殿)에 나아가 망분향(望焚香)을 행하였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4월 3일(기해) 2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내리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특별히 내렸다.【윤음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에 달려있다. 김을 매고 씨를 뿌리는 농사일은 각각 그 때가 있다. 고지대와 저지대, 건조한 땅과 습한 땅 할 것 없이 모두 마땅함을 잃지 않아야 하니,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 곡식을 심고 길러 풍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라의 으뜸 되는 상서이다.	特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若曰: 國之本在民, 民之本在農。 薦蓑播種, 各有其時, 高下燥濕, 不失其宜, 用底于農殖嘉穀, 迄用康年, 卽有國之上瑞也。 顧今夏節已屆, 田功其亟, 襏襫畚鍤, 時不可失。 咨爾近民之官, 省耕助糧, 巡野勸農, 勤業力作, 各修其事, 屢獲豐穰, 登我至治, 以紓

	돌아보건대, 지금 여름철이 되어 농사일이 바쁘게 되었다. 김매고 밭가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니, 아! 수령(守令)들은 경작하는 것을 살펴 종곡을 보조해 주고 전야(田野)를 돌면서 농사일을 권면하되, 부지런히 힘을 내어 일하게 하라. 각기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면 자주 풍년이 들 것이니, 나를 지치(至治)에 오르게 함으로써 대궐 속에서 마음 놓지 못해 하는 심정을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九重憧憧之意。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4월 13일(기유) 3번째기사 제주에 별비미 6,000냥을 획부하여 입본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제주(濟州)의 진자미(賑資米) 2,000석(石)을 호조(戶曹)의 별비미(別備米)로 획급(劃給)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구획(區劃)하여 입본(立本)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량대로 채워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본곡(本穀)의 모작전(耗作錢) 중에 6,000냥을 획부(劃付)하여 입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徐相鼎所報, 則‘濟州賑資米二千石, 以戶曹別備米劃給者, 趁今區劃, 以爲立本’爲辭矣。 此不容不準充, 後已就本穀耗作錢中, 六千兩劃付, 俾爲立本何如?” 允之。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	初一日, 丙寅。 詣勤政殿, 親傳景慕宮夏享大祭香祝。

9년) 5월 1일(병인)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경모궁의 하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7일(임신) 2번째기사 이승보, 강로를 오례편고 교정청 당상으로 추가하여 차하하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승보(李承輔), 대호군(大護軍) 강로(姜浩)를 《오례편고(五禮便攷)》 교정청 당상(校正廳堂上)의 당상(堂上)으로 추가하여 차하(差下)하였다.	漢城判尹李承輔、大護軍姜浩, 《五禮便攷》校正廳堂上加差下。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7일(임신) 3번째기사 공작미의 연한을 5년 기한으로 연기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을 보니, ‘공작미(公作米)의 연한을 연기해 주기를 청하러 재판원(裁判員)이 나올 때에 지급할 예단(禮單)과 잡물(雜物)을 규례대로 마련하여 들였습니다. 전후에 걸쳐 재판원으로 파견되어 나온 자는 주간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접대를 허락하였던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만, 일이 변경의 정세와 관계되는 만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기한이 찰 때마다 번번이 연기해주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허락했던 것도 먼 지방의 사람을 회유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번에 그들과 오래 끄는 것은 차라리 즉각 처리하는 것보다 못하니, 5년을 기한으로 우선 연기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禮曹啓目, 則‘公作米年限請退。 裁判員出來時所給禮單雜物, 依例磨鍊以入, 而前後派員之裁判出來者, 勿論所幹之何事, 竝許接待, 已有前例。 事係邊情, 令廟堂稟處’事, 批旨允下矣。 限滿輒展, 甚涉無謂, 而前此許施, 亦出柔遠之義。 與其拕久靳持, 毋寧趁卽究竟。 限五年, 姑令展限何如?” 允之。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12일(정축) 1번째기사 기우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고 식년 문무과 방방을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이어 식년 문무과(式年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十二日。 詣勤政殿, 親傳祈雨祭香祝。 仍行式年文武科放榜。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13일(무인) 2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16일(신사) 2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18일(계미) 1번째기사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十八日。 詣勤政殿, 親傳祈雨祭香祝。

근정전에 나아가 기우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19일(갑신) 1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十九日。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20일(을유) 1번째기사 문희묘, 의소묘,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전배하다	문희묘(文禧廟), 의소묘(懿昭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한 다음 육상궁(毓祥宮), 연우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고(故) 충장공(忠壯公) 이복남(李福男)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절개와 의리에 대해서는 열성조(列聖朝)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보답하는 은전(恩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봉사손(奉祀孫)이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마땅히 조정에서 뜻을 보여주는 거조(擧措)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전관(宣傳官)과 내승(內乘) 중에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한 전례(前例)가 이미 많습니다. 무과에 새로 급제(及第)한 이한응(李漢膺)도 이 전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내승을 가설하여 단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례편고(五禮便攷)》의 교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육전조례(六典條例)》도 교정하고 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二十日。 詣文禧廟、懿昭廟, 展拜。 仍詣毓祥宮、延祐宮、宣禧宮, 展拜。 領議政金炳學進前曰: “故忠壯公李福男, 殉國節義, 屢蒙列聖朝崇報之典矣。 今其祀孫登科, 合有朝家示意之擧。 而從前似此之人, 以宣傳官內乘中, 加設單付, 旣多已例。 武科新及第李漢膺, 依此施行何如?” 敎曰: “內乘加設單付可也。” 又敎曰: “《五禮便攷》校正, 今至何境? 而《大典會通》、《六典條例》, 亦爲校正乎?” 炳學曰: “《五禮便攷》, 今方校正。 而《大典會通》、《六典條例》, 亦爲次第補刊矣。” 敎曰: “如有釐正處, 釐正可也。” 又敎曰: “哀慶間, 多有

	“《오례편고》는 지금 한창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회통》, 《육전조례》도 차례로 보완하여 간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바로잡아야 할 곳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애례(哀禮)와 경례(慶禮)의 조항중에 연문(衍文)과 낭비가 많은 것은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대원군(大院君)께 품의(稟議)하여 바로잡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경례는 일찍이 병인년(1866)의 대례(大禮) 때 이미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애례(哀禮)는 겨를이 없어서 비용이 거의 절도가 없었으나 지금 갑자기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세월만 보내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하교는 실로 만대를 운영해 나갈 계책이니, 신이 물러가서 호조 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긴요치 않거나 낭비가 되는 조항은 삼가 일일이 찌를 붙여 호조 판서로 하여금 대원군에게 품정하여 영구히 변치 않는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가 거의 교정이 다 되면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금 한창 교정 중에 있으니,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간행할 때에 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으니, 발문은 영의정이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衍文與浪費者。 戶判稟議于大院君前, 釐正定式可也。” 炳學曰: “慶禮則曾於丙寅大禮時, 已有所約省者。 哀禮則多有未遑, 從以費用之殆無限節。而目下不敢遽然議到, 故不得不荏苒而止。 今此下敎, 實萬世經遠之謨。 臣退與戶判相議, 不緊與浪費條件, 謹當一一付籤, 使戶判稟定于大院君前, 以爲永久金石之典矣。” 敎曰: “《五禮便攷》, 若幾乎校正, 則序跋何以爲之乎?” 炳學曰: “今方校正, 以爲一通文字, 而刊印時當稟定矣。” 敎曰: “序文當親撰以下矣。 跋文, 領議政製進也。” 又敎曰: “從速刊印可也。” 炳學曰: “謹當董飭諸堂, 從速竣役矣。”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속히 간행하도록 하라.”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삼가 당상(堂上)들을 감독하고 신칙하여 속히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22일(정해) 1번째기사 사직단과 북쪽 교외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과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二十二日。 行四次祈雨祭于社稷、北郊。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5월 25일(경인) 1번째기사 종묘에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二十五日。 行五次祈雨祭于宗廟。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6월 2일(정유) 1번째기사 기우제를 정지하고 입추 후에 보사제를 거행하도록 명하다	기우제를 정지하고, 사직단(社稷壇)·북쪽 교외·종묘(宗廟)의 보사제(報謝祭)는 입추(立秋)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啟稟)하였기 때문이다.	初二日。 命祈雨祭停止, 社稷、北郊、宗廟報謝祭, 待立秋擧行。 因禮曹啓稟也。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7월 7일(신미) 1번째기사 성균관에서 칠석제를 행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시(詩)에서 생원(生員) 이근명(李根命)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初七日。 設七夕製于泮宮。 詩, 生員李根命, 直赴殿試。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7월 11일(을해) 1번째기사 제주도의 구제에 빌려 쓴 곡식을 돌려받지 않고 면제해 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事) 조희순(趙羲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고을의 설진(設賑)이 방금 끝났습니다. 이전미(移轉米) 2,000석(石)은 공곡(公穀)이니, 응당 도로 바쳐야 하겠으나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먹을 것이 매번 육지의 곡식을 의지하고 있으니, 본색(本色)으로 수량을 맞추어 바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전(代錢)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휼 정사를 완결한 것은 섬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이전곡(移轉穀)을 본색으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흉년에 지친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재해를 겪은 백성들의 형편으로 어떻게 대봉(代俸)할 수 있겠는가? 무진년(1868)의 예에 따라 특별히 탕감(蕩減)하라.” 하였다.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趙羲純狀啓, 則‘三邑設賑, 方纔告畢, 移轉米二千石, 旣是公穀, 固當還納。 而島中民食, 每藉陸穀, 則有難本色準納。 特許詳定代錢事, 請令廟堂稟處’矣。 賑政告完, 爲島民萬幸。 而第移轉穀之本色責納, 有非歉餘民力之所可辦得。 依狀請詳定代納事, 分付何如?” 敎曰: “災餘民情, 何可代捧? 依戊辰例, 特爲蕩減。”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7월 18일(임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璿源殿, 行茶禮。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7월 19일(계미) 2번째기사 공충도의 저축한 쌀 5,000여 석을 영원히 떼어 각 고을에 배정하여 주다	또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보고를 보니, ‘본도에서 환곡(還穀)을 탕감한 후로 저치이록미(儲置移錄米) 5,090석(石)을 매년 대전(代錢)하여 배결전(排結錢) 중에서 덜어내어 쓰다가 남으면 환곡으로 만들어 이자를 늘이고 모자라면 수량을 나누어 주어 아래에서 갚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내(道內)의 환곡은 작년에 이미 총수량을 정하였으니, 저치미는 응당 올해부터 일정한 양을 정하여 획하(劃下)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변하지 않는 총수량이 있다면 그 중에서 덜어내어 보충하거나 가감할 때에 스스로 수량을 참작하여 쓸 수 있으니, 저치미 5,090석은 영구히 획부(劃付)하여 각 고을에 분배하고 남거나 모자라거나를 막론하고 각 도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각각 자기 고을들에서 조처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할 것을 선혜청(宣惠廳)과 각도(各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卽見公忠監司閔致庠所報, 則‘本道蕩還後, 儲置移錄米五千九十石, 每年代錢, 除出於排結錢中, 用餘則作還長耗, 不足則分數報下。 而道內還穀, 昨年旣已定總, 則儲置米亦當自今年爲始, 恒定劃下’爲辭矣。 有一定不易之總, 則折補加減之際, 自可以酌量用下。 儲置米五千九十石, 永爲劃付, 分排各邑, 毋論有餘不足, 依各道已施之例, 自各其邑措處, 俾爲定式施行事, 分付惠廳及各道何如?” 允之。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7월 21일(을유) 1번째기사 경무대에 나아가 북원 망배례를 행하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북원(北苑)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반열에 참가한 유생들에게 응제를 행하여 전문(箋文)에 진사(進士) 유진학(兪鎭學)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중일각(中日閣)에서 반열에 참가한 무사(武士)에게 시사(試射)를 설행하여 한량(閑良) 천기호(千基鎬)를 직부전시하도록 하였다.	二十一日。 詣景武臺, 行北苑望拜禮。 仍行參班儒生應製。 箋, 進士兪鎭學, 直赴殿試。 設參班武士試射于中日閣, 閑良千基鎬, 直赴殿試。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9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군영의 《등록》과 관청의 《일기》를 모아 《조례》를 만들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있는 각종 홀기(笏記)와 일기(日記), 결속색(結束色)의 거행등록(擧行謄錄), 각 군영의 등록을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추려내어 조례(條例)를 만들어서 상고하기에 편리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宣傳官廳各條笏記與日記、結束色擧行謄錄、各營謄錄, 令三軍府抄成條例, 以爲便考事, 分付。”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9월 22일(을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9월 24일(정해)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동향 대제를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二十四日。 詣勤政殿, 行宗廟冬享大祭受誓戒。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본부의 환향(還餉)을 탕감하거나 중지시킨	鎭撫使鄭岐源以“本府還餉蕩停後, 只捧耗米, 劃下於將士放料矣。 當此大

9년) 윤10월 15일(정축) 3번째기사 진무사 정기원이 흉년을 맞아 선혜청 곡식을 내려 주도록 청하다	후에 그저 모미(耗米)만 받아서 장사(將士)의 급료로 획하(劃下)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흉년이 든 시기에 본색(本色)으로 준봉(準捧)할 길이 전혀 없으니 얼마간이라도 상정가(詳定價)로 대봉(代捧) 한다면 백성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급료를 받는 장사들은 먹을 것이 떨어질 형편이니 부족한 본색을 조획(措劃)할 방책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흉년이 든 이런 때에 사졸(士卒)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더욱 근심스럽다. 선혜청(宣惠廳) 창고에 있는 제류미(除留米) 500석(石)을 특별히 내려 보내어 수용(需用)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無之歲, 萬無本色準捧之路, 以幾分詳定代捧, 則可以少舒民力。 而受料將士, 勢將失哺, 本色不足措劃之策, 請令廟堂稟處"啓。 敎曰: "當此判歉, 士卒之顧頷, 尤爲關念。 惠廳除留庫所在米五百石, 特爲下送, 以爲需用事, 分付。"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윤10월 18일(경진) 2번째기사 흉년으로 인하여 선혜청 곡식을 내려주어 구제하도록 하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올해의 농사가 참혹한 흉년을 당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에 들어서자마자 부황(浮黃)이 심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무리를 지어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안(稅案)에 있는 부족한 결조(結條)와 진자미(賑資米)를 구획(區劃)할 방도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주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번에 계문(啓聞)으로 인하여 획급(劃給)한 것이 있는데도 지금은 백성들의 먹는 것이 어렵고 군수(軍需)도 궁색하다. 해문(海門)의 요충 지대의 군사와 백성들의 사정이 급하여 구제해 줄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은 참으로 근심되고 답답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선혜청(宣惠廳)에 저치된 유고미(留庫米)중에서 1,000석(石)을 특별히 획하(劃下)하고, 구제하고 살려주는 모든 방도에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한 사람도 혜택을 입지 못하는 우환이 없게 하라."	鎭撫使鄭岐源以"今年穡事, 酷被慘歉, 冬序纔深, 已有浮黃之色, 髫白成群, 呼訴賑救。 稅案結條不足及賑資米區劃之方, 請令廟堂稟處"啓。 敎曰: "前纔因啓聞, 有所劃給。 今其民食艱矣, 軍需絀矣, 海門要衝之地, 軍民之情急望哺者, 憂悶之極, 錦玉靡安。 就惠廳儲留庫米中一千石, 特爲劃下, 凡於賙恤接濟之方, 克殫誠力, 期無一夫不獲之患。"

	하였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윤10월 22일(갑신) 5번째기사 선혜청 창고의 쌀을 획하하여 통진 등 8개 고을의 흉년을 구제하도록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올린 장계(狀啓)에, “통진(通津) 등 8읍(邑)이 가뭄 피해를 입은 결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년 봄에 진휼(賑恤)을 설행하여야 하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자미(賑資米)를 특별히 획하(劃下)하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내(畿內)의 몇 개 읍이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밤낮 근심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고 있다. 농사를 망치고 생계를 잃은 저 불쌍한 백성들이 무슨 수로 살아가겠는가? 이번에 곡식을 청한 일은 하루가 급한 문제이니, 선혜청(宣惠廳)에 저치된 유고미(留庫米) 중에서 2,000석(石)을 특별히 획하하여 진휼에 정성을 다해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에 부합되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하라.” 하였다.	京畿監司朴永輔狀啓: “通津等八邑, 偏被旱災, 饑口夥多。 明春設賑, 措辦無術, 販資米特爲劃下事, 請令廟堂稟處。” 敎曰: “自聞畿內幾邑歉荒之報, 蚤夜憂悶, 莫知攸屆。 哀彼失農而失業者, 將何以聊生乎? 今此請穀, 係是一日爲急, 就惠廳儲留庫米中二千石, 特爲劃下, 殫竭賑賙, 克副望哺群情, 俾彼赤子, 咸蒙惠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윤10월 26일(무자) 2번째기사 조경묘, 선원전, 경기전의 제사에 쓰는 향축을 내리는 날을 정	전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선원전(璿源殿)·경기전(慶基殿)에 쓸 향축(香祝)을 배진(陪進)할 때에 간혹 장마를 만나 먼 노정에 제때 닿지 못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사체(事體)가 황송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묘(廟)와 전(殿)에 있는 관리들과 충의군(忠義軍)이 왕래할 때 민읍(民邑)의 주전(廚傳)도 염려스럽다. 이제부터는 조경묘의 1년 동안 초하루와 보름에 쓸 향과 봄가을에 쓸 향축은	- 敎曰: “肇慶廟、璿源殿、慶基殿香祝陪進之時, 或値潦漲, 則程途旣遠, 不無未及之慮, 事體惶悚, 當復何居? 而廟殿官與忠義之往來也, 民邑廚傳, 亦涉可念。 自今爲始, 肇慶廟一年朔望

하다	모두 춘향(春享) 때 함께 전하고, 선원전과 경기전의 1년 동안 초하루와 보름에 쓸 향과 겨울철 제사에 쓸 향축은 모두 납향(臘享) 때에 함께 전하는 일을 분명히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香及春秋香祝, 竝於春享時, 同爲奉傳; 璿源殿、慶基殿一年朔望香及冬節享香祝, 竝於臘享時, 同爲奉傳事, 著爲定式。”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1일(임술) 1번째기사 능침의 계 절차를 《오례편고》의 진설도안으로 검토하다	진강(進講)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각릉(各陵)의 진설도식(陳設圖式)을 모두 보았는가?” 하니, 강관(講官)【《오례편고(五禮便攷)》의 교정 당상(校正堂上)이다.】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능의 진설도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원릉(健元陵)의 진설도식과 태상시(太常寺)의 향의도병(享儀圖屛)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진람도설(進覽圖說)에서 진달하였습니다. 건원릉의 도식은 절향(節享)의 진설과 고유제(告由祭)의 진설이 원래 규모를 다르게 하는데, 태상시 병풍 도안과 태상시 봉진(封進) 규례는 고유제와 절향이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감히 여쭙고 나서 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직 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순조조(純祖朝) 계해년(1803)에 승지(承旨) 박종순(朴鍾淳)이 각릉의 진설이 다르다는 것을 아뢰었는데 그때 좌의정(左議政)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일찍이 정묘(正廟) 때에 태상시 제조(提調)로서 명을 받고 제사 음식의 종류와 제사 의식을 그린 병풍을 만들었으나 미처 간행하여 반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선(承宣)이 아뢴 것에 따라 그 첩책(帖冊)을 거두어다가 모두 참고하여 조사하면 매우 처리하기 쉬울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태상시에 있는 병풍도식 해설을 이미 보았는데,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이 병풍도식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初一日, 壬戌。 進講。 訖, 敎曰: “各陵陳設圖式, 皆見之乎?” 講官【《五禮便攷》校正堂上】 金世均曰: “陵圖式尙有未及來到。 且健元陵陳設圖式與太常享儀圖屛, 有不同, 已陳於進覽圖說矣。 健元陵圖式節享陳設與告由陳設, 元不同規。 而太常屛圖與太常封進之式, 則告由祭與節享同。 此不敢不經稟後敦定, 故姑未得刊印矣。 昔在純祖朝癸亥, 承旨朴鍾淳以各陵陳設不同仰奏, 其時左議政徐龍輔奏曰: ‘曾在正廟朝, 以太常提調承命作享品享儀圖屛, 而未及頒行矣。 依承宣所奏, 收其帖冊, 一竝考校, 似甚易行’云矣。” 敎曰: “固已見有太常屛圖說, 而至今遵行者, 皆依此屛圖式乎?” 世均曰: “健元陵圖式, 則告由祭果品爲二品一爵, 而太常圖屛, 則告由同節享, 果爲四器而三爵。 故問於太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건원릉 도식에는 고유제의 실과류가 두 가지이고 술은 한 잔인데, 태상시의 병풍도식에는 고유제와 절향이 같아서 실과류가 네 가지이고 술은 세 잔입니다. 그래서 태상시의 수복(守僕)과 건원릉의 수복들에게 물어보니, 일체 병풍의 그림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때 연석(筵席)에서 여쭌 데 대하여 순묘(純廟)께서 어떻게 하교하셨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그때 대신(大臣)이 아뢴 것은 윤허를 받았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때 품정(稟定)한 다음에 마땅히 이것에 기준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였고, 이것은 바로 정묘 이후로 행해 온 규식이었으니 이대로 준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간행한 후에는 한건을 삼가 정원(政院)에 바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제사의식 중에서 수저는 어지하여 동쪽에 놓게 되어 있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개인집에서는 서쪽에 놓을 수도 있고, 합설(合設)할 때는 가운데다가 놓기도 하지만, 능침의 진설에서는 《오례의(五禮儀)》를 참고하여 보면 원래 동쪽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常守僕與健元陵守僕輩, 則亦曰一遵圖屛而奉行云矣。” 敎曰: “其時筵稟, 純廟朝何以下敎耶?” 世均曰: “其時大臣所奏, 已蒙允矣。” 敎曰: “其時稟定後, 宜其一遵奉行。 而此是正廟朝以後行之之式, 則以此遵行可也。” 世均曰: “刊印後一件, 謹當呈于政院, 以爲進覽矣。” 敎曰: “享儀中匙楪, 何以在東乎?” 世均曰: “私家則雖或在西, 合設則亦或在中, 而陵寢陳設則謹考《五禮儀》, 原在東矣。”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전교하기를, “열성조(列聖朝)의 세자(世子)나 세손(世孫)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의절(儀	初六日。 敎曰: “列朝世子、世孫事體自別, 而儀節之反遜各宮, 甚有所未

9년) 12월 6일(정묘) 1번째기사 세자와 세손의 무덤을 원으로 높이고 《오례편고》에 싣도록 하다	節)이 도리어 각궁(各宮)보다 하찮게 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묘호(墓號)를 원(園)으로 높이고 수위관(守衛官)을 수봉관(守奉官)으로 고치는 것이 예법 내용에 맞을 듯하거니와, 이 때문에 하교한 것이 있다. 각궁을 원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순강원(順康園)을 본 딴 것이지만 예(禮)에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당시 간절한 생각에 못견뎌 그렇게 한 것이니, 한 때의 임시변통으로 헤아려 볼 점이 있다. 휘경원(徽慶園)에 영(令)과 참봉(參奉)을 두게 한 것은 예법에 크게 어그러지니, 처음에 계하(啓下)한 대로 수봉관이라고 부를 것이고, 육상(毓祥)과 경우(景祐) 두 궁의 제관(祭官)은 저경궁(儲慶宮)과 다르니 일체 높이는 뜻은 아니다. 궁과 원의 제관은 저경궁과 순강원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또한 예제(禮制)에 맞는데, 모두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든 것이다. 예조의 낭청을 보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그리고 예조의 당상(堂上)에게 수의(收議) 하여 들이라. 이번 하교를 《오례편고(五禮便攷)》에 실어서, 다시는 제도를 어겨 원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고 만년토록 법식(法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安。 墓號之陞園, 守衛官之改以守奉官, 似合禮意, 因此而有所下敎者。 各宮稱園, 卽倣順康園, 而於禮未之有也。 此因當時不洎之聖慕而然, 則一時權宜之政, 有可以仰揣。 至若徽慶園設置令、參奉, 大違典禮, 依當初啓下, 以守奉官爲稱。 毓祥、景祐兩宮祭官之與儲慶宮不同者, 有非一體尊奉之意。 宮園祭官, 依儲慶、順康例爲之, 亦禮制而竝承慈敎矣。 遣禮郎, 收議於時原任大臣、禮堂以入。 今此下敎, 載於《五禮便攷》, 更無違制稱園爲萬年法式。"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8일(기사) 1번째기사 《오례편고》의 규범이 어떠한지 묻고 빨리 편찬하도록 명하다	진강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五禮便攷)》의 교정(校正) 사업이 언제 끝나는가?" 하니, 강관(講官)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를 받들면서 여러 당상(堂上官)들은 아래의 일들을 환히 알고 있는데 대하여 황송하게 여기면서 속히 이루려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책의 규례는 어떠한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다섯 가지 예법은 바로 길(吉)·흉(凶)·군(軍)·빈(賓)·가례(家禮)입니다. 우리	初八日。 進講。 訖, 敎曰: "《五禮便攷》校正之役, 何當告竣乎?" 講官金世均曰: "自奉聖敎, 諸堂惶懍洞屬, 期於速就矣。" 敎曰: "其冊規例何如?" 世均曰: "五禮卽吉、凶、軍、賓、嘉, 而我國朝禮節, 始成於《五禮儀》, 而繼有《續五禮儀》。 粤在正廟朝, 命禮曹參議柳義養, 纂輯《春官通考》, 積年成就, 卷帙浩多, 而禮曹

	왕조의 예법은 《오례의(五禮儀)》에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속오례의(續五禮儀)》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묘(正廟) 때에 예조 참의(禮曹參議) 유의양(柳義養)에게 명하여 《춘관통고(春官通攷)》를 편찬하게 한 결과 여러 해가 걸려 권질(卷帙)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조에는 초판 1질이 있었을 뿐입니다.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이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있으면서부터 새로 한 책을 베꼈는데, 이 책에 사실에 대한 도식과 의주(儀註)가 있었습니다. 또 《오례통편(五禮通便)》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저 도설(圖說)과 의주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오례편고》는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교정하였는데, 정묘 이후에 보충한 것이 많았으므로 될수록 간결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에 대한 도안은 강(綱)이 있고 목(目)이 있으며, 도안 설명에서는 보충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경(詩經)》 〈도설(圖說)〉의 규모를 본받아 매 장마다 그 수에 구애되지 않고 그림을 넣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권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지금 보기에는 30권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권질은 적어도 참고하여 증거로 삼기에 충분해야 한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권질이 줄었지만 자세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참고하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될수록 빨리 올려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只有初本一帙矣。 豐恩府院君以禮判, 始爲新謄一本, 而此書有故實圖式儀註。 又有《五禮通編》, 是則惟有圖說儀註。 今玆《五禮便攷》, 參訂諸書而校正也。 正廟朝以後, 多有添入, 期欲至簡且該。 而故實則有綱有目, 至於圖說則添入亦多。 故倣詩書圖說之規, 每張不拘其數而圖畫矣。” 敎曰: “卷帙將爲幾何?” 世均曰: “以今所見, 似爲三十卷內外矣。” 敎曰: “卷帙雖簡, 足可考據乎?” 世均曰: “卷帙雖減, 未嘗不詳備, 且可便易於考據矣。” 敎曰: “從速進覽可也。”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9일(경오)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사직단, 종묘, 영희전, 경모궁의 납향 대제에 쓸 축문을 내려 주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 종묘(宗廟),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의 납향 대제(臘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初九日。 詣勤政殿, 親傳社稷、宗廟、永禧殿、景慕宮臘享大祭香祝。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12일(계유) 1번째기사 수륙 부곡의 비용을 선혜청 곡물을 획급하여 쓰게 하다	교동 방어사(喬桐防禦使) 유찬(柳瓚)이, '수륙 부곡(水陸部曲)의 정원이 많아서 소요되는 지출이 언제나 부족한 것이 걱정입니다. 해결 방도를 특별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듣기에 매우 답답하다. 선혜청(宣惠廳) 창고의 저류미(儲留米) 300석(石)을 특별히 획급(劃給)하여 구제하는 방도로 삼으라."	十二日。 喬桐防禦使柳瓚以"水陸部曲員額旣衆, 支放之需, 每患不贍。措劃之方, 特令廟堂稟處"啓。 敎曰: "聞甚悶然。 惠廳儲留庫米三百石, 特爲劃給, 以爲接濟之道。"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29일(경인) 2번째기사 흉년으로 인해 경흥과 경원에서 축낸 환곡을 특별히 면제해 주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이 올린 장계(狀啓)에, "경흥(慶興) 등 고을에서 유민(流民)들의 환곡(還穀)과 관속(官屬)들이 포흠(逋欠)을 낸 환곡을 특별히 면제하고 기한을 연기할 것이며, 절미(折米)에 대해서는 유민들이 다시 모여들 때까지 특별히 계속 정퇴(停退)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가난한 백성들의 실상을 어느 때인들 걱정하지 않았겠는가? 더구나 계속 흉년이 들어 열 집에서 아홉 집은 비어있으니 그 근심 걱정에 아무리 좋은 옷	咸鏡監司金壽鉉狀啓: "慶興等邑流絶還及官屬逋還, 特爲蠲蕩、停退, 折米流民還集間, 特爲仍停事, 請令廟堂稟處。" 敎曰: "窮蔀民情, 何時不可念? 而況荐値歉荒, 十室九空, 則其所憂悶, 錦玉靡安。 凡於勞來還集之方, 不當以常例論。 阿吾·撫夷兩鎭之昨冬

	과 음식도 편치 않다. 백성들을 다시 모여들게 하는 방도에서는 일반적인 규례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아오(阿吾)·무이(撫夷) 두 진(鎭)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 면제하지 못한 환곡과 경흥에서 유민들의 환곡과 경원(慶源)에서 포흠을 낸 환곡은 장계의 말대로 특별히 면제하고, 기사년(1869)에 정퇴시킨 몫도 그대로 정퇴해줌으로써 현존(現存)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업에 안락할 수 있도록 하여 돌보아주는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未蕩還、慶興流絶還、慶源逋還, 依狀辭, 特爲蠲蕩, 己巳停退條, 亦許仍停, 使見存之民, 得以安其生、樂其業, 副此九重眷眷之至意。”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29일(경인)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경기의 재해입은 토지를 3,000결로 획급하도록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경기(京畿)의 재결(災結) 3,000결(結)을 특별히 숫자를 맞추어 획급(劃給)해 줄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7권 끝】	議政府以“京畿災結三千結, 特許準劃”啓。
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12월 29일(경인) 4번째기사 태복시에서 각 목장의 말의 수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의 말의 수효는 5,646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太僕寺以“各牧場馬畜數爻, 五千六百四十六匹”啓。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1일(신묘) 6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하사하였다.	賜老人歲饌。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1일(신묘) 5번째기사 종회에 대해 옛규례를 회복할 것을 종친부에 명하다	전교하기를, “대소 종회(宗會)에 대해 옛 규례를 회복하도록 종친부(宗親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大小宗會復舊例事, 分付宗府。”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2일(임진)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와 영녕전의 춘향 대제의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이어 종묘에 나가서 전알(展謁)하고, 다음으로 경모궁(景慕宮)에 나가서 전배(展拜)하였다. 봄 참배 때문이다.	初二日。 詣勤政殿, 親傳宗廟、永寧殿春享大祭香祝。 仍詣宗廟, 展謁; 次詣景慕宮, 展拜。 春謁也。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6일(병신) 3번째기사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작년에는 제도(諸道)의 농사가 풍흉이 고르지 않아서, 경기(京畿)에서는 진자	宣惠廳啓: “昨年諸道豐歉不均, 畿甸則至有賑資之請劃, 又有三千結俵災。 湖南舊災, 尙未復總, 湖西之丙申還錄災、乙丑蒙頉災, 爲萬餘結。 參考前

흉년으로 인해 호남과 호서의 토지에 대해 연분의 등급을 낮추게 하다	미(賑資米)를 청하여 획급(劃給)한 일이 있고, 또 3,000결(結)의 표재(俵災)를 받았습니다. 호남(湖南)의 구재(舊災)는 아직 결총(結摠)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호서(湖西)의 병신년(1836)에 다시 기록한 재결(災結)과 을축년(1865)에 탈면(頉免)받은 재결은 1만여 결이나 됩니다. 이전의 결총을 참고하여 보니, 감분(減分)해 준 전례가 이미 많았습니다. 올해의 경기와 호남, 호서에서의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수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감분한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호남, 호서는 구재를 보충할 때까지 계속 감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總, 已多減分之例。 今年京畿、兩湖營官需各樣價, 減分磨鍊, 而兩湖則限舊災充補間, 仍爲減分何如?" 允之。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9일(기해) 2번째기사 친경할 때 세자와 세손은 일곱 번, 재상 이하는 아홉 번 밀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친경(親耕) 때에 전하께서는 다섯 번을 밀고, 종실(宗室)·재신(宰臣)은 일곱 번을 밀며, 여러 판서(判書)들과 대간(臺諫)들은 아홉 번을 미는 것이 바로 옛날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정해년(1767)에는 왕세손(王世孫)은 일곱 번을 미는 예를 행하고, 종재(宗宰) 이하는 모두 아홉 번을 미는 예를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체(事體)로 볼 때 종실 이하 관리들이 미는 횟수를 본조(本曹)에서 감히 관례에 따라서 마련(磨鍊)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와 세손은 규례대로 일곱 번을 미는 예를 행하고, 종재 이하 관리들은 모두 아홉 번을 미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禮曹啓: "親耕時, 殿下五推, 宗室宰臣七推, 諸判書臺諫九推, 乃是古禮。而丁亥年則王世孫行七推禮, 宗宰以下竝行九推禮矣。 到今事體, 宗室以下推數, 自臣曹不敢循例磨鍊, 何以爲之乎? 敢稟。" 敎曰: "世子、世孫, 例行七推之禮; 宗宰以下, 竝行九推事, 定式。"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10일(경자) 1번째기사 각도의 수령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권농하는 책임을 지게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입니다. 제왕들이 몸소 적전(耤田)을 가는 것은 제수(祭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만 백성을 위하여 솔선하여 농사를 중시하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단(農壇)에 친히 제사 지내는 것도 풍년을 비는 의식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한결같이 백성들을 생각하여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영조(英祖)의 고사(故事)를 계술하려고 명령을 내리자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니 신은 우러러 축하하는 지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옥지(玉趾)를 수고로이 하여 쟁기를 잡은 그 중요성이 백성들의 식량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임금처럼 존귀한 분도 오히려 친경하고 있는데, 하물며 미천한 백성들이 편안히 앉아서 경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필시 즐겁게 밭으로 나갈 것이며 이에 또한 추수(秋收)가 있게 될 것이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가난한 백성들이 씨뿌리기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것은 식량이 떨어진 데서 연유하고, 김매기에 힘을 들이지 못하는 것은 식생활이 어려운데서 연유합니다. 만일 농사를 짓는 일에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지금 장리(長吏)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농사(農師), 전준(田畯)입니다. 직접 두렁을 돌아다니면서 고초를 알아보고 땅은 있는데 갈지 못한 자(者)가 있거나 잡초가 있는데도 매지 못하는 자는 식량을 주어 궁핍함을 돕고 어려운 것을 보충하며, 장임(掌任)을 신칙하고 이웃을 타일러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상통하게 하여 제때를 어기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게	初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農者, 天下之大本也。 帝王之躬耕耤田, 所以上供粢盛, 爲萬民先重農厚本, 寔在其中。 而親祀農壇, 亦祈年之禮也。 惟我殿下一念元元, 廼於百有餘年之後, 將以繼述我英廟故事, 成命一下, 朝野欣告, 臣不任欽仰攢祝之至。 而今此親勞玉趾、從事耒耜, 其重在於民天, 而彼下民之觀瞻者, 其將曰: ‘以人主之尊, 而猶且身爲之耕, 況以下民之賤, 安坐而不耕可乎?’ 於是乎人必樂赴南畝, 乃亦有秋, 豈不盛哉? 第念窮蔀民生, 耕種之不得及時者, 由乎乏糧; 耘耔之不能瞻力者, 由乎艱食。 苟其耕斂而無所補助, 則民其疇恃而疇依乎? 今云長吏, 古之農師、田畯也。 躬行阡陌, 悉訪勞苦, 有田而莫之墾者, 有莠而莫之鬪者, 以糧以食, 助其乏而補其艱, 勑其掌任, 諭其隣里, 貧富相資, 有無相須, 不愆其時, 不奪其力, 則民生可安於耕鑿, 邦本可固於盤石矣。 歲首綸音, 已爲頒下, 繼將此奏, 更爲行會於八道、四都, 勿以文具視之, 俾各惕念擧行。

	한다면 백성들의 생업은 농사일에 안착될 것이며 나라의 근본은 반석보다 견고해 질 것입니다. 새해의 윤음(綸音)을 이미 반포하였는데 이어 이 아뢴 내용을 다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빈 종이장으로 보지 말고 각자 유의하여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가 태만한가 하는 것은 절로 덮어버릴 수 없으며 전교(傳敎)를 듣고서도 만일 대양(對揚)의 실적이 없다면 다만 수령에 대하여 엄히 논죄하여 경책할 뿐 아니라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체로 말을 잘 만들어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맹자(孟子)》는 이미 강독(講讀)을 마쳤고 앞으로 《중용(中庸)》을 계속 강독하려고 합니다. 《맹자》의 일곱 편(篇)은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마음을 바로 가지는 데 있고 마음을 바로 가지는 요점은 흩어지려는 마음을 수습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여기에서 필시 몸으로 징험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용》 한 책에 대해서 본다면 거기에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하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한다.' 한 말은 도심(道心)을 이름이요, '선(善)을 가려 굳게 견지한다.' 한 말은 정일(精一)을 이름이요, '군자이면서 때에 따라 그에 적중하게 해야 한다.' 한 말은 집중(執中)을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당요(唐堯), 우순(虞舜), 하우(夏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으로써 구경(九經)의 조목을 두어, 근본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이르러,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규범이 찬연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경의 조목을 서술하고는 실천하는 방도는 오직 하나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성실'이며 '성실'이란 천도인 것입니다. 구경의 도는 모두 임	而其勤其慢, 自當有掩之不得者。 傳聞所及, 萬一無對揚之實, 則非但守宰之從重論警, 不飭之失, 責有所歸, 一體措辭, 申飭何如?" 允之。 又曰: "《鄒經》旣畢講矣, 行將以《思傳》繼之。 而《鄒經》七篇, 遏人欲、存天理也, 其要在正心; 正心之要, 在其收放心。 殿下於此, 其必有體驗心得之效。 而至於《思傳》一書, 則其曰天命、率性, '道心'之謂也; 其曰擇善、固執, '精一'之謂也; 其曰君子時中, '執中'之謂也。 此皆堯、舜、禹相授之心法, 而設爲九經之目。 由本而及於末, 由近而及於遠, 天下國家爲治之規模, 燦然具備矣。 旣敍九經之目, 而繼之曰: '所以行之者, 一。' 蓋一者, 誠也; 誠者, 天道也。 九經之道, 皆本於人主之心。 《大學》所謂'欲正其心, 先誠其意'者, 此也。 臣聞天下之理無窮, 雖聖智有不能盡究者。 故以大舜之生知, 不能不資學問之功, 所謂'好問而好察邇言'者也。 《樂記》曰: '君子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夫學者, 所以明德也; 不明其德, 未有能新其民。 然則天理人欲之分,

	금의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大學)》에서 이른바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뜻을 성실해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신이 듣자니, 천하의 이치는 끝이 없으므로 비록 성스럽고 지혜롭더라도 다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를 타고난 우순(虞舜)도 학문의 힘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른바 '묻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군자가 백성들을 교화하여 옳은 풍속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말미암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문은 덕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덕이 밝지 않으면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리와 인욕의 분별과 하늘이 명한 성을 따르는 도와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룩하려면 학문을 내놓고는 달리 손을 댈 곳이 없을 것이며, 천리를 밝혀 천도를 체득하는 것은 오직 생각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책을 마주해서는 그 뜻을 사색하고 일에 당해서 그 의리를 궁구한다면 성인들의 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체득하게 될 것이니, 학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유익함이 클 것입니다. 신이 감히 옛 사람들이 쓴 글을 모아 엮어서 새해를 맞이하여 권면(勸勉)을 아뢰는 정성을 표시하니 삼가 전하께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것들이 절실한 문제이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100살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은 좋은 세상에서의 훌륭한 조치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음해에 응자(應資)할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을 여러 해당 도에서 일일이 들어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간혹 연말 보고에 빠졌다고 하면서 자손들이 직접 이조(吏曹)에 하소연하여 추후해서 하비(下批)하는 것	天命率性之道, 化民成俗之美, 捨是學, 無他下手處。 而明理造道, 卽惟曰思而已。 臨文而思索其旨, 當事而思究其義, 則其將因其語而得其心, 思之於學, 爲益亦大矣。 臣敢掇拾前人之述, 庸寓新年陳勉之忱, 伏願殿下懋哉!" 敎曰: "所陳切實, 當服膺矣。" 炳學曰: "百歲老人加資, 卽優世盛擧也。 每歲末, 以明年應資者幾人, 自各該道一一枚報, 而或謂以見漏於歲抄, 子孫直訴吏曹, 追後下批者亦多。 其間虛實, 不無相蒙之弊, 至有向來年紀相左之事矣。 朝家恩典, 何等關係? 而不之詳審, 遽然許施者, 大非綜核之政。 自今爲始, 各道報來者, 廟堂許題後, 移送吏曹, 始爲下批之意, 著爲定式何如?" 敎曰: "近來百歲之人, 每政有之, 必是下吏之弄奸。 今此定式甚好, 依所奏施行也。" 炳學曰: "宗正卿、閣臣、儒臣、別軍職、邊禦以上人之守令封箋, 例付之該道差員, 而一邑之所費, 至爲千金之多云。 這間貽弊, 豈無及民之端乎? 臣意則毋論某箋文, 依畿營例, 自承文院繕寫封箋, 以紓一分民邑之力, 恐好。" 敎曰:

	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 허실이 서로 뒤바뀌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번에는 나이가 서로 다른 일까지 있었습니다. 조정의 은전으로 말하면 관계되는 바가 얼마나 중대한데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뜸 시행하도록 윤허하는 것은 치밀하게 속속들이 밝히는 정사와는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각도(各道)에서 보고되어온 것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허락한 다음 이조에 이송(移送)하여야 비로소 하비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근래 100세인 노인이 정사 때마다 있으니, 필시 아전들의 농간일 것이다. 이번에 정식으로 삼는 것이 매우 좋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종정경(宗正卿), 각신(閣臣), 유신(儒臣), 별군직(別軍職), 변방 요새지의 고을 관리 이상인 수령이 봉진하는 전문(箋文)은 으레 해도(該道)의 차원(差員)에게 부쳐 보냅니다. 그런데 한 고을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1,000금(金)에 이르도록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끼치는 폐단이 어찌 백성들에게 미치는 단서가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누구의 전문이든 기영(畿營)의 규례대로 승문원(承文院)에서 필사하여 전문을 봉진함으로써 백성과 고을의 힘이 조금이나마 펴지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기영의 전례가 있고 또 백성과 고을의 폐해가 있다고 하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와 평안 병사(平安兵使)의 임기가 찼음을 보고하는 문건이 벌써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도를 다스리고 군사를 통제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대양(對揚)하여 백성들에 관한 일은 성의를 다하여 돌봐주었고 군사에	“既有畿營之例, 且有民邑之弊, 以此定式可也。” 炳學曰: “箕伯、安梱報滿狀已到矣。 其按藩制梱, 實心對揚, 民事則殫誠存恤, 軍務則盡力修擧, 蔚然聲績, 咸願久留。 平安監司韓啓源、兵使蔡東健, 待箇滿, 加一瓜仍任何如?” 允之。 又曰: “故縣監玄烜, 辛未西警時, 以白衣從事, 差運糧之任, 跋涉海路, 趁期輸納于大陣; 又辦數千包、五十牛, 私賑將卒。 其後酬勞, 不過牧官而止, 而去戊午年間, 辛未軍功人褒贈時, 此人獨爲見漏, 不無向隅之歎矣。 今於天星一周之會, 特爲加階褒贈, 以示朝家之意何如?” 允之。 禮曹判書趙秉昌曰: “英廟己未親耕後, 仍行謁聖而試士; 丁亥親耕親蠶後, 亦爲謁聖而試士。 既有已例, 故敢達矣。” 敎曰: “依己未年例爲之。”

	관한 일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잘 수습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으므로 모두 그냥 유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안 감사 한계원(韓啓源)과 병사(兵使) 채동건(蔡東健)을 임기가 찬 다음에 한 번의 임기를 더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현감(縣監) 현훤(玄煊)은 신미년(1811)에 서경(西警 : 홍경래의 난) 때에 백의로 종사하여 식량 운반을 맡아 바닷길을 넘나들면서 제때에 대부대의 진영(陣營)에 수납하였으며, 또 수천 포대의 식량과 50마리의 소를 마련해 가지고 사적으로 장교와 군사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공로에 대한 갚음으로는 그저 수령으로 임명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오년(1858)에 신미년의 군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포증(褒贈)할 때도 이 사람만이 누락되었으니 한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돌이 되는 때에 특별히 가자하고 포증함으로써 조정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병창(趙秉昌)이 아뢰기를, “영조(英祖) 기미년(1739)에는 친경(親耕)한 후에 알성례(謁聖禮)를 행하고 시사(試士)하였고, 정해년(1767)에는 친경과 친잠(親蠶)을 한 다음에 또한 알성례를 행하고 시사하였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기미년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11일(신축)		十一日。 詣勤政殿, 親傳星壇及元陵忌辰祭香祝。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성단과 원릉의 기제사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성단(星壇)과 원릉(元陵)의 기제사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19일(기유) 1번째기사 북도의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영남에서 쌀을 사서 나누어주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우심읍(尤甚邑)에 대한 진자미(賑資米)는 가을에 받은 곡물 중에서 1만 2,000 석(石)을 획하(劃下)하여 경흥(慶興) 등 3개 고을을 우선 구제하였습니다. 경성(鏡城) 등 5개 고을에 대해서도 진자미를 나누어 주어 구제해야 하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곡식 수량으로는 분배할 방도가 없으니, 다시 본영(本營)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금을 모아 영남(嶺南)의 연읍(沿邑)에서 곡물을 사오려 합니다. 그런데 각종 지출해야 할 비용이 모자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특별히 획급(劃給)해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북로(北路)의 민정(民情)이 봄이 되면 굶주리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형편인데 현재 있는 곡식으로도 나누어 줄 방법이 없다면 영남 열읍에서 사올 비용을 일찍 구획(區劃)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창고에 있는 저류전(儲留錢) 2만 냥(兩)을 특별히 나누어 주어 구제를 바라는 백성들이 진휼(賑恤)의 은전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九日。 議政府啓: “卽見咸鏡監司金壽鉉狀啓, 則‘尤甚邑賑資米, 就秋捧穀中一萬二千石劃下, 慶興等三邑, 先爲救急。 鏡城等五邑, 亦令分賑, 而以若見存穀數, 排比無路。 更自本營, 某樣鳩財, 方營貿穀於嶺南沿邑。 而各項應費, 尙患不敷, 特許別劃事, 請令廟堂稟處’矣。 北路民情之當春頗頷, 事勢之所不免, 而現在之穀, 旣無分排之道, 則嶺沿懋遷之費, 不容不趁卽區劃。 就惠廳儲留庫錢二萬兩, 別爲頒給, 使望哺之民, 得蒙賑恤之惠何如?” 允之。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20일(경술) 1번째기사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二十日。 詣先農壇, 親祭。

선농단에서 친제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월 30일(경신) 4번째기사 100세 된 노인들에게 가자를 명하다	100살 된 노인들에게 가자(加資)를 명(命)하였다.【이근식(李根植), 이동팔(李東八), 육대양(陸對陽), 이우화(李宇華), 조해진(曺海振), 박명곤(朴明坤), 이경순(李景淳), 서용성(徐龍成), 임기락(林基洛), 김효상(金孝相), 이흥갑(李興甲), 조복민(曺復敏), 강석준(姜錫準), 안정득(安廷得), 이창규(李昌奎), 방경효(方慶熇), 김기혁(金箕赫), 유복오(柳福五), 이택린(李宅麟), 김계이(金稽爾), 정학해(丁學海), 주낙순(朱樂淳), 임원철(林元喆), 김기상(金基商), 이광윤(李光允), 오문상(吳文祥), 손운성(孫運成), 이운서(李雲瑞), 이봉재(李鳳在), 이원년(李源年)이다.】	命百歲老人加資。【李根植、李東八、陸對陽、李宇華、曺海振、朴明坤、李景淳、徐龍成、林基洛、金孝相、李興甲、曺復敏、姜錫準、安廷得、李昌奎、方慶熇、金箕赫、柳福五、李宅麟、金繼爾、丁學海、朱樂淳、林元喆、金基商、李光允、吳文祥、孫運成、李雲瑞、李鳳在、李源年】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3월 3일(계사) 1번째기사 경무대에 나아가 대보단에서 제향의 서계의식을 행하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대보단(大報壇) 제향(祭享)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初三日。 詣景武臺, 行大報壇祭享受誓戒。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3월 7일(정유) 2번째기사 융문당에 나아가 대보단 제향의 재숙을 하다	융문당(隆文堂)에 나아가 대보단(大報壇)의 제향(祭享)의 재숙(齋宿)을 하였다.	詣隆文堂, 大報壇祭享, 齋宿。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3월 12일(임인) 3번째기사 충청도 수영에 별포위를, 황해도 오차친에 포수를 두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에 별포위(別砲衛) 25명(名)을 가설(加設)하고, 황해도(黃海道) 오차진(五叉鎭)에 포수(砲手)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三軍府以"忠淸水營, 別砲衛二十五名加設; 黃海道五叉鎭, 砲軍二十名設置"啓。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3월 25일(을묘)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지내는 하향 대제를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하향 대제(夏享大祭)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二十五日。 詣勤政殿, 行宗廟夏享大祭受誓戒。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1일(경인)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경모궁의 하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初一日, 庚寅。 詣勤政殿, 親傳景慕宮夏享大祭香祝。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6일(을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나는 북쪽 지방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실로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근래에 흉년이 거듭 든 관계로 곳곳에서 사람이 죽은 것만 해도 이미 몹시 슬픈	初六日。 敎曰:"予於北路民事, 實有所丙枕靡安者矣。 邇來荐歉之餘, 在在死亡之憂, 已極惻然。 而重以虎嚴之患, 尙今不息, 驚心慘聞, 莫知攸

북쪽 지방의 흉년으로 죽은 사람에게 위안제를 지내게 하다	일인데, 게다가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는 걱정이 아직도 멎지 않고 있으니 마음에 놀랍고 듣기에 참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죽었거나 상한 사람들에게 위안제를 지내주는 것은 주(周) 나라의 제도이다. 재이(災異)를 물리치는 방법도 옛 규례에 있는 일이니, 해당 각 고을로 하여금 별도로 여제(癘祭)를 정성껏 설행하게 하여 이처럼 백성들이 상하지나 않겠는가 걱정하며 보호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屆。 慰祭死傷, 自是周制; 禳祓災異, 亦有故規。 令各其邑, 別癘祭虔誠設行, 副此如傷若保之念。"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17일(병오) 1번째기사 선농단에서 보리 수확을 구경하다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어 늙은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노주례(勞酒禮)를 행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이미 친경(親耕)을 하였는데, 또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는 행사는 대체로 우리 왕조의 옛 규례로써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가을에 풍년들 경사가 있을 것을 오늘 징험할 수 있으니, 온 나라의 백성들치고 누군들 즐거운 기색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절기가 5월로 접어들어 적전(耤田)에 심은 보리가 익으면 임금이 직접 나가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영묘(英廟) 때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칠순의 보령에도 오히려 직접 나가서 거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밭을 가는 의식만 가지고 수확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법상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선대 임금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자성(粢盛)을 공상(供上)하여 만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였으니, 하늘	十七日。 詣先農壇, 觀刈。 仍行勞酒禮於耆民庶人。 引見時原任大臣。 判府事李裕元曰: "旣行親耕, 又此觀刈, 蓋我家古禮, 而俱盛擧也。 有秋之慶, 可徵於今日, 八域民庶, 孰不欣欣有喜色哉?" 領議政金炳學曰: "節屆仲夏, 耤田麥告熟, 親勞玉趾, 誕行觀刈之儀。 是擧也, 始自英廟朝, 七旬寶齡, 猶復親臨而行之。 蓋其耕而不穫, 于禮有缺故耳。 今我殿下, 善繼善述, 于以上供粢盛爲萬民先, 天心之所悅豫, 人情亦此歡祝。 況喜雨周洽, 慰滿三農, 八路之麥, 均如此麥之穰穰遂遂。 繼玆而百穀用成, 乃亦有秋, 臣又攢手而俟之。" 右議政洪淳穆曰: "旣行親耕, 今乃觀刈, 乃終始之盛擧

	이 기뻐하고 사람들도 이에 대해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더구나 반가운 비가 흠뻑 내려 모든 농사가 잘될 수 있게 되고, 팔도(道)의 보리가 모두 이렇게 잘 익었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보리 풍년에 이어 모든 곡식이 잘 될 것이니, 가을에 풍년이 들게 될 것을 신은 또한 손을 맞잡고 고대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미ㅣ 친경을 행하고 지금 또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으니 이것은 처음과 마감을 잘 맺는 훌륭한 일입니다. 농사에 힘쓰는 전하의 마음이 이렇듯 정성스러운 결과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주고 때에 맞게 비가 오고 볕이 나서 보리풍년이 든 것입니다. 이로부터 풍년이 들어 모든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니, 온 나라 농부들의 경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선조(先祖) 때부터 이런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도 거행할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오늘의 행사는 백년 이래에 처음 있는 성대한 의식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나와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고, 마음속으로 농사일이 어렵다는 것을 특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주었으니, 온 나라에 풍년이 들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오늘의 훌륭한 행사에 대해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미루어 양맥(兩麥)이 잘 여물고 온 나라에 똑같이 풍년이 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니, 이것을 바랄 뿐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늙은 백성들 중에 나이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체가(帖加)하려	也。 務本之聖衷, 若是眷眷, 所以天休滋至、雨暘調均致有來牟之穰穰。從玆而迄用康年, 千倉萬廂, 八域農夫之慶, 於斯可占矣。” 敎曰: “粤自先祖, 旣有是擧, 故予亦行之” 炳學曰: “今日之擧, 卽百年來初有盛典也。 親臨觀刈, 聖衷特軫於稼穡之艱難, 天休滋至, 八路之均登, 可占矣。” 淳穆曰: “今日盛擧, 朝野群情, 胥切攢頌矣。” 敎曰: “推此, 而兩麥之豐稔, 八路之均登, 亦可期。 以是爲望也。” 又敎曰: “今此耆民中年七十以上者, 方欲帖加矣。” 炳學曰: “此固優老之盛典, 尤不任欽仰矣。”

	고 한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것은 실로 노인을 우대하는 훌륭한 조치이므로 더욱 공경하여 우러르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17일(병오) 2번째기사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든 것을 축하하다 k	전교하기를, “이번의 훌륭한 행사는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한 일이다. 그리고 때에 맞게 비가 오고 볕이 나서 보리가 풍년이 들었으니, 풍년이 들 징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농사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성들의 고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 있었겠는가? 늙은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첩가(帖加)함으로써 정성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今此盛擧, 卽我列聖朝已行之典也。 且雨暘適時, 來牟[麥牟]受明, 大有上瑞, 推可驗焉。 而予於此, 有以知稼穡艱難矣。 苟非民力之辛苦, 曷以得此? 耆民年七十以上人, 竝帖加, 以示惓惓之意。”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21일(경술) 3번째기사 적전에서 거둔 곡식을 타작하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동자친경전(東耤親耕田)에서 대맥(大麥) 6석(石) 14두(斗), 소맥(小麥) 1석을 타작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奉常寺以“東耤親耕田, 打作大麥六石十四斗、小麥一石”啓。
고종 8권, 8년(1871		敎曰: “‘日前出征諸軍, 分等施賞、又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출전한 군사들에게 은전으로 식량과 무명을 주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전교하기를, “일전에 출정(出征)한 군사들에게 분등(分等)하여 시상하고, 또 돌아갈 때의 식량을 주도록 하교한 일이 있었다. 방금 듣자니, 지방 군사들에게는 돌아갈 때의 먹을 식량만 주고, 서울 군사들에게는 목포(木布)를 제급(題給)하였다고 한다. 지방 군사들에게 목포를 시상하는 것은 바로 상전(賞典)이고, 돌아갈 때의 먹을 식량을 주는 것은 바로 길가는 동안의 노자(路資)이다. 이번에 서울과 지방의 군사가 공(功)은 같은데 시상을 달리 하였으니, 이것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인가? 무부(武府)의 여러 당상(堂上)에 대해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출정하였던 장졸(將卒)들이 지금 이미 철수하여 돌아왔으니,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위문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給回糧’事, 有所下敎矣。 卽聞‘鄕軍, 只給回糧, 京軍, 則木布題給’云。 鄕軍之木布施賞, 卽賞典也; 回糧, 卽路需也; 今此京鄕軍之同功殊賞, 是爲可行之事乎? 武府諸堂, 竝施從重推考。” 又敎曰: “出征將卒, 今已班師矣。 遣宣傳官, 勞問以來。”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5월 28일(정사) 1번째기사 국경을 넘어 중국쪽에 갔다가 돌아온 유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와 북병사(北兵使)가 올린 장계(狀啓)에,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저쪽 땅에 넘어갔던 자들을 차례로 데려왔다.’고 하였다. 애당초 도망쳐 국경을 넘어간 것은 사실 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근년에 도신(道臣)과 수신(帥臣), 수령들이 잘 거느리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잃게 된 것이지, 저들이 즐겨서 한 일이겠는가? 잇달아 흉년을 당하여 관리들이 닦달질하는 독촉을 받아 살아갈 계책마저 궁핍해졌으니, 그들이 금령을 어긴 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일 본심에서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라면 차원(差員)이 데리고 돌아올 때 수많은 비류(匪類)들이 어찌 기꺼이 그를 따라 순순히 올 수 있었겠는가? 그 실상을 따져보면 도리어 가련하니 그들에게 식	二十八日。 敎曰: “卽見北伯、北梱狀啓, 則‘我國人民之犯越彼地者, 次第領回’云。 當初逃越, 實非此民之辜, 由於近年道帥臣與守令之不善導率, 以致失民而然。 是渠輩樂爲之者乎? 連値歉荒, 督於官侵, 生計又乏, 則其所犯禁, 莫知所爲而行之者也。 若以本心故犯, 則一差員之領還, 許多匪類, 豈可肯從而順來乎? 究其情, 則還爲哀矜。 使之分給糧米、各安其業, 無有

	량을 나누어주고 각기 생업에 안착하게 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떠돌아다니며 거처할 곳 없는 한탄이 없게 하라. 중도에서 실종된 30명으로 말하면 필시 겁이 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일을 듣고 만약 혹시 다시 온다면 똑같이 어루만지고 위로하여서 내가 북쪽지방 백성들을 걱정하는 근심을 풀게 하라. 이와 같이 처분한 다음에 또다시 그처럼 불법적인 일이 있게 되면 단연코 마땅히 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리하라. 이런 내용의 전교를 일일이 잘 깨우쳐주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一民流離棲遑之歎。 以中路見失三十名言之, 必是畏怯而然矣。 聞此事, 如或更來, 一體安撫, 以釋予北顧之憂。 如是處分之後, 復或有此等冒犯之事, 斷當依律嚴處矣。 以此辭敎, 一一曉諭事, 廟堂措辭行會”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6월 1일(경신) 4번째기사 복일하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잡지 말고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命祈雨祭, 不卜日, 設行。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1일(기축) 2번째기사 평양을 비롯한 9개 고을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환곡과 군포를 면제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이 ‘평양을 비롯한 9개 고을에서 104명(名)이 물에 빠져죽고 표호(漂戶)와 퇴호(頹戶)가 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열읍(列邑)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죽고 표호나 퇴호가 이렇게 많으니 매우 참담하고 슬픈 일이다. 이 농사철을 당하여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살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상황을 직접 보는 것만 같다. 원래의 휼전(恤典)을 도신이 이미 거행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휼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2만냥(兩)을 내하(內下)하겠다. 그리고 정주 목사(定州牧使) 이근수(李根秀)를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내려가 곳곳을 살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게 하라. 집을 지을 방도와 장사하는 일은 호별로 등급을 나누	平安監司韓啓源以“平壤等九邑, 人命一百四名渰死, 民家二千三戶漂頹”啓。 敎曰: “列邑人命之渰死, 民家之漂頹, 若是夥多, 極爲慘惻。 當此農節, 哀彼赤子, 何以聊生? 失所顚連之狀, 如在目擊。 元恤典, 道臣雖已擧行, 別恤典, 不可不念。 二萬兩錢, 當內下矣。 定州牧使李根秀, 慰諭使差下, 使之到處審察, 面面慰諭。 結構之方、掩埋之節, 逐戶分等以給, 俾

	어 지급해 주어 한 사람도 거처할 곳 없어 떠돌아다니는 폐단을 없게 하고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은 살았을 적에 지고 있던 신포(身布)와 환포(環抱)가 있으면 모두 탕감해 주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無一民棲遑流離之弊。 渰死人如有生前身還布, 竝爲蕩減事, 一體分付。”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2일(경인) 2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추향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詣勤政殿, 親傳宗廟、永寧殿秋享大祭香祝。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3일(신묘) 1번째기사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생기니 영제를 지내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한 번 내리기 시작한 비가 장마로 번져 아직도 개이지 않고 있다. 집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둑이 터지게 될까 이미 걱정스러운데, 농사에 대한 근심을 면할 수 없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편안히 잠이 오지 않는다. 사대문(四大門)에 영제(禜祭)를 지내되, 날을 받지 말고 설행(設行)하라.” 하였다.	初三日。 敎曰: “一雨成霖, 尙未開霽, 漂頹潰決, 已是可憫, 而痒稼之患, 亦所不免。 言念民事, 丙枕靡安。 四門禜祭, 不卜日設行。”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4일(임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初四日。 議政府啓: “卽見兵曹草記啓下者, 因慶尙監司金世鎬狀啓, ‘本營左右列別破陣砲科二人外, 以各邑條加

1번째기사 경상 군영의 포수를 증원하기로 하다	“방금 병조(兵曹)의 초기(草記)에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에 ‘본영(本營)의 좌열 별파진(左列別派陣)과 우열 별파진(右列別派陣)의 포수 몫으로 2인(人)을 할당해주는 외에 각읍(各邑) 몫으로 8인을 가설(加設)하여 도합 10인을 과거의 정원수로 정하고, 각 읍의 별포수(別砲手)는 매번 각기 해당 고을에서 달마다 우등(優等)과 지차(之次)를 뽑아서 보고하게 한 다음 매해 연말에 모두 본영에 모아 함께 시험을 보이는 절차는 도시(都試)의 규례대로 시행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것’을 비준하셨습니다. 함께 모아 시험을 보이고 정원수를 늘이는 것은 충분히 격려하는 정사가 되니, 모두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設八人, 合十人定爲科額, 各邑別砲手, 每自各其邑, 逐朔抄報優等之次, 每年終, 都聚本營合試之節, 依都試施行事, 有旨令廟堂稟處’矣。 合聚加額, 足爲激勸之政, 竝依道啓許施何如?” 允之。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18일(병오)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18일(병오) 2번째기사 현륭원의 제`물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전교하기를, “각 능침(陵寢)의 제물(祭物)은 건원릉(健元陵)의 규례대로 마련하라. 그리고 현륭원(顯隆園)의 고유제(告由祭) 제품(祭品)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은 미처 겨를이 없어서였다. 나물과 개장(芥醬) 외에는 한결같이 능의 고유제 도식(圖式)대로 하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各陵寢祭物, 依健元陵例磨鍊。 而顯隆園告由祭祭品, 尙未釐正, 是未遑也。 菜與芥醬外, 一依陵寢告由祭圖式事, 一體分付。”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22일(경술) 1번째기사 칠석제를 설행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표(表)에서 유학(幼學) 신일영(申一永)과 심동헌(沈東獻), 진사(進士) 조익영(趙翼永)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二十二日。 設七夕製于泮宮。 表, 幼學申一永·沈東獻、進士趙翼永, 竝直赴殿試。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23일(신해) 1번째기사 황주와 봉안의 무너진 민호에 휼전을 베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서원보(徐元輔)가, '황주(黃州)와 봉산(鳳山)의 민가(民家)중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394호(戶)이고 절반 무너진 것이 380호이며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7명(名)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하교하기를, "완전히 무너진 민가가 그렇게 많고 절반 무너진 민가 수도 적지 않다고 하니, 듣기에 몹시 놀랍고 측은하다.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에 빠져죽었다 하니 몹시 참혹하다. 원래의 휼전(恤典) 외에 각별히 더 돌보아줄 것이며 생전에 자신들이 지고 있던 신포(身布)와 환포(環布)가 있으면 모두 탕감해주고 곧 집을 지어 안착시켜서 한 사람도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잘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그리고 절반 무너진 민호에 대하여 돌보아줄 방도에 대해서도 일체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黃海監司徐元輔以"黃州、鳳山民家, 全頹三百九十四戶, 半頹三百八十戶, 渰死人七名"啓。 敎曰: "民家之全頹, 若是夥多, 半頹數又不些, 聞甚驚惻, 七名人之渰死, 尤極慘然。 元恤典外, 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 卽爲結構奠接, 俾無一民失所棲遑之弊事, 廟堂措辭分付。 半頹戶顧恤之方, 亦爲一體關飭。"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7월 25일(계축) 1번째기사 탄신이었기 때문에 2	2품 이상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二十五日。 命二品以上, 賜饌。 以誕辰也。

품 이상 관리들에게 사찬하도록 명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11일(무술) 1번째기사 남쪽 관왕묘에 행차하여 시사를 실시하다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이어 노량사정(鷺梁沙汀)에 행차하여 내삼청(內三廳)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十一日。 詣南關王廟, 行奠酌禮。 仍幸鷺梁沙汀, 行內三廳試射。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12일(기해) 1번째기사 동관왕묘에 나아가 전작례를 거행하고 서북의 별부료 군관의 시사를 실시하다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이어 사아리(沙阿里)에 행차하여 서북(西北)의 별부료 시사(別付料試射)를 행하였다.	十二日。 詣東關王廟, 行奠酌禮。 仍幸沙阿里, 行西北別付料試射。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12일(기해) 3번째기사 동관왕묘에 나아가 전작례를 행하고 서쪽 별부료의 시사를 행하다	동관왕묘(東關王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이어 사아리(沙阿里)에 행차하여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東南關王廟奠酌禮時, 贊禮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尹泰經、大祝權鼎鎬, 加資。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13일(경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22일(기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9월 29일(병진) 3번째기사 목화농사가 흉작이므로 세금을 무명 대신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 김병시(金炳始)의 장계를 보니,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든 상황을 갖추 진달하고 나서, ‘목면으로 상납하는 각 군포(軍布)로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병조 및 각 영문과 각 아문에 바쳐야 할 것을 전부 순전(純錢)으로 대납(代納)하게 하고, 훈련 도감의 포보(砲保)도 일체 순전으로 대납하게 하며,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에서 모시로 바치는 군포도 내년 가을까지 전(錢)으로 대납하게 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군수(軍需)에 관계되는 되는 것을 청할 때마다 대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백성들의 실정에 관계되는 일을 일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병조 및 각 영문은 5분의 1을, 각 아문은 〖전부〗 순전으로 대납하게 하고, 포보는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그냥 두소서. 모시의 대납을 허락하는 것은 사목(事目)에 실려 있는 바가 아니지만, 본색을 이미 마련할 길이 없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金炳始狀啓, 則備陳綿農歉荒之狀, 仍請各軍布以木上納者。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 兵曹及各營門、各衙門, 竝純錢, 訓局砲保, 一體純錢代納, 舒川等七邑苧納軍布, 亦許限明秋以錢代納事, 竝請令廟堂稟處。’ 矣。 軍需攸係, 固不可隨請輒代。 而民情所關, 亦不宜一切靳許。 兵曹及各營, 五分一, 各衙門, 純錢代納, 砲保, 事體不輕, 置之, 苧納許代, 雖非事目所載, 本色旣無其路,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 청 동치(同治) 10년) 11월 18일(갑진) 3번째기사 경상도와 평안도의 두 도의 여러 군에 포군을 두다	삼군부(三軍府)에서, '경상도(慶尙道) 안동부(安東府)에 별파진(別破陣) 50명, 동래부(東萊府)에 친병위 별포수(親兵衛別砲手) 100명과 별기위 별포수(別騎衛別砲手) 50명, 경산현(慶山縣)에 포군(砲軍) 16명, 진보현(眞寶縣)에 별포수(別砲手) 20명, 의흥현(義興縣)에 포수 20명, 전라도(全羅道) 낙안군(樂安郡)에 별무사(別武士) 50명, 광양현(光陽縣)에 포군 3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안현(扶安縣)에는 포군 60명을 신미년(1871) 4월에 설치하였는데, 이번에 또 화포군(火砲軍) 40명을 가설(加設)한 결과 합하여 100명입니다. 평안도(平安道) 영변부(寧邊府)에 별기사(別騎士) 100명, 창성부(昌城府)에 별위사(別衛士) 150명, 강계부(江界府)에 별위사(別衛士) 50명, 성천부(成川府)에 포군 30명, 삭주부(朔州府)에 포군 100명, 숙천부(肅川府)에 포수 30명, 중화부(中和府)에 별위사 50명, 자산부(慈山府)에 포군 10명, 철산부(鐵山府)에 별위사 20명, 함종부(咸從府)에 포수 30명과 흥무사(興武士) 20명, 용천부(龍川府)에 선위사(選衛士) 3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성부(龜城府)에는 난후사(攔後士) 111명을 경오년(1870) 10월에 설치하였는데, 이번에 포수 20명을 가설한 것을 합하면 모두 131명입니다. 개천군(价川郡)에 호위사(虎威士) 30명, 곽산군(郭山郡)에 별위사 30명, 박천군(博川郡)에 포군 20명, 위원군(渭原郡)에 포병 100명, 가산군(嘉山郡)에 포군 20명, 상원군(祥原郡)에 포병 35명, 용강현(龍岡縣)에 별위사 21명, 영유현(永柔縣)에 포수 30명, 순안현(順安縣)에 별위사 25명, 삼등현(三登縣)에 포수 8명, 강서현(江西縣)에 선위사(善衛士) 50명, 태천현(泰川縣)에 별효군 포수(別驍軍砲手) 50명, 은산현(殷山縣)에 장위사(壯衛士) 20명, 동진진(東津鎭)에 의포사(義砲士) 40명, 차령진(車嶺鎭)	三軍府以"慶尙道·安東府, 別破陣五十名; 東萊府, 親兵衛別砲手一百名、別騎衛別砲手五十名; 慶山縣砲軍十六名; 眞寶縣別砲手二十名; 義興縣砲手二十名; 全羅道·樂安郡別武士五十名; 光陽縣砲軍三十名; 扶安縣砲軍六十名: 辛未四月設置火砲軍四十名, 今又加設合一百名; 平安道: 寧邊府別騎士一百名; 昌城府, 別衛士一百五十名; 江界府, 別衛士五十名; 成川府, 砲軍三十名; 朔州府, 砲軍一百名; 肅川府, 砲手三十名; 中和府, 別衛士五十名; 慈山府, 砲軍十名; 鐵山府, 別衛士二十名; 咸從府, 砲手三十名、興武士二十名; 龍川府選衛士三十名; 龜城府, 攔後士一百十一名, 庚午十月設置砲手二十名, 今又加設合一百三十一名; 价川郡, 虎威士三十名; 郭山郡, 別衛士三十名; 博川郡, 砲軍二十名; 渭原郡, 砲兵一百名; 嘉山郡, 砲軍二十名; 祥原郡, 砲兵三十五名; 龍岡縣, 別衛士二十一名; 永柔縣, 砲手三十名; 順安

	에 별포군 15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縣, 別衛士二十五名; 三登縣, 砲手八名; 江西縣, 善衛士五十名; 泰川縣, 別驍軍砲手五十名; 殷山縣, 壯衛士二十名; 東津鎭, 義砲士四十名; 車嶺鎭, 別砲軍十五名, 設置"啓。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월 1일(병술) 5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반포하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반포하였다.	頒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월 1일(병술) 8번째기사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결혼 60돌을 축하하며 잔치 비용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민 판돈녕부사(閔判敦寧府事)【민치구(閔致久)】의 혼인 60주년이 되었다. 나이와 지위가 모두 높아 복록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기쁜 나의 마음을 어찌 형용할 수 있겠는가? 잔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 1,000냥과 쌀 20석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하고, 당일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2등악(二等樂)을 하사하라."	敎曰: "閔判敦寧【致久】 回巹在邇。 年位俱邵, 福祿竝臻, 予小子私心之喜, 曷以形喩? 宴需錢一千兩米二十石, 令度支輸送。 當日遣承旨, 宣醞賜二等樂。"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월 10일(을미) 2번째기사 환곡이 유용되거나 없	--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이 계청(啓請)하여 '육진(六鎭)의 유망(流亡)하였거나 절호(絶戶)된 환곡(還穀) 1만 9,400여 석에 대해서	又啓: "頃因前北伯金壽鉉啓請'六鎭流絶還一萬九千四百餘石, 特下曠絶之澤, 民邑蘇醒間, 姑爲停俸。 諸般捄弊錢三萬六千五百餘兩, 以賑餘錢, 推移給代'云矣, 若以許多流絶, 又添移

어진 경우 그 부담을 백성에게 지우지 못하게 하다	는 특별히 전에 없던 은택을 베풀어 고을이 소생할 때까지 우선은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제반 폐단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돈 3만 6,500여 냥에 대해서는 진휼하고 남은 돈을 옮겨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유망하거나 절호된 민호가 허다하다는 이유로 또 덧붙여 물린다면 그것은 실로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성책(成冊)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徵, 實非懷保之義, 竝依成冊施行何如?" 允之。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월 30일(을묘) 2번째기사 제주에서 200마리 말을 공납했는데 여러 관청에 나누어 주다	제주(濟州)에서 공납한 말 200필 중에서 삼군부(三軍府)에 10필, 수원부(水原府)에 30필, 강화부(江華府)에 46필,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12필, 금위영(禁衛營)에 12필, 어영청(御營廳)에 12필을 제하고 실제 받아들인 것은 73필이었다.	濟州貢馬二百匹中, 三軍府十匹、水原府三十匹、江華府四十六匹、訓局十二匹、禁衛營十二匹、御營廳十二匹除, 實納七十三匹。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2월 1일(을묘) 1번째기사 알성례를 행하기 전에 제물과 제기 등을 살펴보는 절차를 정하다	전교하기를, "영묘조(英廟祖) 경신년(1740)에 문묘(文廟) 석전제(釋奠祭)를 행할 때에는 임시로 동궐(東闕:昌德宮)에 계시다가 제사에 임박해서야 출궁(出宮)하셨으므로 전배(展拜)하고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를 살피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에 출궁하여 문묘(文廟) 안에서 종일 재계(齋戒)하며 있을	初一日, 乙卯。 敎曰:"英廟朝庚申文廟釋奠時, 則時御東闕臨時出宮, 故無展拜省牲省器之節矣。 今番則早朝出宮, 聖廟之內 盡日齋居。 而殊無展拜之禮, 極涉未安。 展拜、省牲、省器之節磨鍊以入事, 分付儀曹。"

	텐데 전배하는 예가 아주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전배하고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절차를 마련하여 들이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2월 10일(갑자) 1번째기사 김병학이 영혜 옹주의 혼례를 검소하게 할 것을 청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은 재용(財用)을 절약하도록 누누이 아뢰었습니다. 대체로 천지가 만들어 내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천지에 달려 있으므로 재용을 절약하는 것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경상(經常)이나 항례(恒例)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푸짐하게 차리고 사치스럽게 허비하는 것들까지 모두 줄인다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절로 백성들에게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혼례를 행할 날짜가 멀지 않았습니다. 옷차림과 그릇 가지들을 검박하게 해야지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례를 검박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복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은 철종(哲宗)께서 한가히 쉬실 때 늘 모셨으므로 들은 것이 있는데, 뒷날 옹주의 혼례는 되도록 검박하게 하여 수백 금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시던 옥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며 지금까지도 흠송(欽誦)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허비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일체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혼례를 검박하게 할 것에 대해서는 벌써 대비전에 말씀을 올렸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매번 행행(行幸)할 때면 액속(掖屬)과 경사(京司)의 하례(下隷)들이 더러 민가에 뛰어들어 토색질하는 폐단을 일으키거나 고을 하례들을 협박하여 약탈	初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臣以節財用事仰奏, 不啻屢矣。 蓋天地所生惟有此數, 不在此則在彼。 故節用爲愛民之實也。 雖經常恒例, 稍屬豐豫侈靡者, 亦皆損略, 則一事二事。 自當有補於民也。 見今永惠翁主吉禮, 行期不遠。 衣飾器用, 宜儉不宜奢。 婚姻之以儉爲貴者, 蓋出惜福之意也。 臣於哲廟常奉淸燕之暇, 有所承聞者。 後日翁主吉禮, 務從儉約, 限以數百金, 玉音在耳, 至今欽誦。 凡於浮冗去處, 一切裁損何如?” 敎曰: “吉禮之儉朴, 已爲仰達于大妃殿矣。” 炳學曰: “每幸行時, 掖屬及京司下隷, 或攔入民家, 侵索作弊, 脅迫邑隷, 攘奪爲事。 先自臣府推治後啓稟, 次知中官別般論罪, 各司各營該掌, 竝當嚴勘。 以此申飭何如?” 允之。 又曰: “鏡城判官李俊永, 以其邑號之私自有諱, 今朝呈遞云矣。 有聲

	을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본 의정부에서 신문하여 다스린 다음 계품(啓稟)하되 차지 중관(次知中官)은 특별히 논죄(論罪)하고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의 해당 담당 관리도 모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준영(李俊永)은 그 읍호(邑號)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휘(忌諱)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아침에 정장(呈狀)하여 체직해 달라고 하였다 합니다. 명성과 치적이 있는 사람을 이 때문에 산관(散官)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 양지 현감(陽智縣監)과 서로 바꾸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績人之因此作散, 亦涉當念。 陽智縣監相換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2월 10일(갑자) 1번째기사 김병학이 영혜 옹주의 혼례를 검소하게 할 것을 청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은 재용(財用)을 절약하도록 누누이 아뢰었습니다. 대체로 천지가 만들어 내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천지에 달려 있으므로 재용을 절약하는 것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경상(經常)이나 항례(恒例)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푸짐하게 차리고 사치스럽게 허비하는 것들까지 모두 줄인다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절로 백성들에게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혼례를 행할 날짜가 멀지 않았습니다. 옷차림과 그릇 가지들을 검박하게 해야지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례를 검박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복을 아끼	初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臣以節財用事仰奏, 不啻屢矣。 蓋天地所生惟有此數, 不在此則在彼。 故節用爲愛民之實也。 雖經常恒例, 稍屬豐豫侈靡者, 亦皆損略, 則一事二事。 自當有補於民也。 見今永惠翁主吉禮, 行期不遠。 衣飾器用, 宜儉不宜奢。 婚姻之以儉爲貴者, 蓋出惜福之意也。 臣於哲廟常奉淸燕之暇, 有所承聞者。 後日翁主吉禮, 務從儉約, 限以數百金, 玉音在耳, 至今欽誦。 凡於浮冗去處, 一切裁損何如?”

	려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은 철종(哲宗)께서 한가히 쉬실 때 늘 모셨으므로 들은 것이 있는데, 뒷날 옹주의 혼례는 되도록 검박하게 하여 수백 금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시던 옥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며 지금까지도 흠송(欽誦)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허비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일체 줄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혼례를 검박하게 할 것에 대해서는 벌써 대비전에 말씀을 올렸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매번 행행(行幸)할 때면 액속(掖屬)과 경사(京司)의 하례(下隷)들이 더러 민가에 뛰어들어 토색질하는 폐단을 일으키거나 고을 하례들을 협박하여 약탈을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본 의정부에서 신문하여 다스린 다음 계품(啓稟)하되 차지 중관(次知中官)은 특별히 논죄(論罪)하고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의 해당 담당 관리도 모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준영(李俊永)은 그 읍호(邑號)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휘(忌諱)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아침에 정장(呈狀)하여 체직해 달라고 하였다 합니다. 명성과 치적이 있는 사람을 이 때문에 산관(散官)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 양지 현감(陽智縣監)과 서로 바꾸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敎曰: "吉禮之儉朴, 已爲仰達于大妃殿矣。" 炳學曰: "每幸行時, 掖屬及京司下隷, 或攔入民家, 侵索作弊, 脅迫邑隷, 攘奪爲事。 先自臣府推治後啓稟, 次知中官別般論罪, 各司各營該掌, 竝當嚴勘。 以此申飭何如?" 允之。 又曰: "鏡城判官李俊永, 以其邑號之私自有諱, 今朝呈遞云矣。 有聲績人之因此作散, 亦涉當念。 陽智縣監相換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3월 6일(경인) 2번째기사 고려 태조의 현릉에 나아가 전작례를 행하다	고려 태조(高麗太祖)의 현릉(顯陵)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詣麗太祖顯陵, 行奠酌禮。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3월 6일(경인) 10번째기사 개성의 70세 이상의 관리와 80세 이상의 백성들에게 쌀과 고기를 제급하게 하다	- 전교하기를, “이곳에 온 이상 어찌 특별히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경내의 나이 70세 이상의 조관(朝官)과 80세 이상의 사인(士人)들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80세 이상의 서인(庶人)은 모두 첩가(帖加)하라. 부내(府內)에 사는 나이 70세 이상 되는 백성들에게는 본부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제급(題給)하게 하라.”	敎曰: “來臨此地, 豈可無別般示意? 境內朝官年七十以上、士人年八十以上, 竝加資。 庶人年八十以上, 竝帖加。 府內居民之年七十以上人, 令本府米肉題給。”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3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봄철에 상납해야 하는 조세와 대동미를 가을에 상납받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봄철에 상납하는 것이 규례이다. 그러나 경기도 일대의 몇몇 고을에는 기근 구제소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때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 올봄의 두 가지 세납은	十三日。 敎曰:“田稅、大同之趁春上納, 此是典式, 而畿甸設賑諸邑矣。 當此時顧頷民情, 不見可想。 今春兩稅, 必於秋成後上納, 以紓民力之意, 分付戶惠廳。”

	꼭 가을에 가서 상납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숨을 돌리게 하라는 내용을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라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4월 13일(병인) 1번째기사 영혜 옹주의 길례를 거행하다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길례(吉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行永惠翁主吉禮。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5월 5일(무자) 1번째기사 태원전에 나아가 단오날에 치제하다	태원전(泰元殿)에 나아가 단오제(端午祭)를 지냈다.	初五日。 詣泰元殿, 行端午祭。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6월 15일(무진) 1번째기사 의주부의 환곡과 가호마다 배정된 쌀을 면제해 주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의 보고를 보니, ‘의주부(義州府)는 연경(燕京)으로 통하는 번잡한 고장으로 환곡(還穀) 외에 또 호배미(戶排米)가 1,489석(石)이나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다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정례(詳定例)로 환곡 1만 4,800여 석을 만들어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 분표(分俵)하고 입본(立本)하여 해마다 이자를 받아 감영에 바치는 호배미의 밑천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틀림없이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보고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니 청한대로 특별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十五日。 議政府啓 : “卽見平安監司韓啓源所報, 則‘灣府以通燕劇地, 糶糴之外, 又有戶排米一千四百八十九石, 民不堪役, 擧懷渙散。 今以詳定例作還, 一萬四千八百餘石分俵。 立本於道內各邑, 歲取其耗, 以爲營納戶排米之需’爲辭矣。 道臣必有斟量民情而然, 依所請特爲許施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6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7월 4일(병술) 1번째기사 영혜 옹주가 졸하다	전교하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병이 심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영혜 옹주가 졸서(卒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영혜 옹주의 상을 당하여 놀랍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몹시 사랑하던 대비전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장차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리겠는가? 영혜 옹주의 상사에 중사(中使)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며 치부(致賻)와 예장(禮葬)을 치르는 등의 일은 해조(該曹)에서 규례를 살펴 거행하게 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내시를 보내어 치조(致弔)하고 치제(致祭)하게 하며,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돈 2,000냥, 초록 비단 5필, 다홍 비단 1필, 남색 비단 4필, 쌀 50석, 무명 3동(同), 베 3동을 영혜 옹주방에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국(金炳國), 부사과(副司果) 이재순(李載純)과 이재덕(李載悳), 전 교관(敎官) 김흥균(金興均)은 모두 대비전에 별입직(別入直)하도록 명하였다.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7월 4일(병술) 1번째기사 영혜 옹주가 졸하다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8월 9일(신유) 1번째기사 진전에서 다례를 지내고 각도의 모곡 상납 문제를 의논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호조 판서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에서 모곡(耗穀)을 상납하는 것은 본조에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납할 때 진성(陳省)을 갖추고 색리(色吏)를 정한 것은 농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왕왕 제때에 바치지 않는 폐단이 있기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면 그때마다 경차인(京差人)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경차인이 무슨 명색인지 알 수 없으나 나라의 법전에도 실려있지 않고 본조에서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과연 누가 내려 보냈으며 누가 내어준 것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나간 일은 굳이 깊이 따지지 말고, 만일 이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날에는 발각되는 대로 내어준 아전과 함께 효수(梟首)하여 경책하는 법을 시행하여 공납을 중하게 하고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들이 호조에서 내려 보낸 자가 아니라면 각 고을에서 어떻게 내주었겠는가? 경차인에 대하여는 그 내막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니, 어느 고을이 그러한가?”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비록 언제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각도에서 간혹 그렇게 한 지는 햇수가 오래되었으므로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엄하게 신칙한 뒤에는 어찌 감히 종전의 버릇을 되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禮畢。 戶曹判書金炳國曰: “各道耗作, 上納臣曹, 厥有定限。 而上納之具陳省定色吏, 所以防其奸也。 伊來往往有愆納之弊, 行關督促, 則輒謂出付京差人。 京差人未知何樣名色, 而國典之所無也, 臣曹之不許也。 此果孰從而下去, 孰從而出給乎? 揆以事體, 寧欲無言。 已往不必追究 如或復踵前習, 隨其現發, 竝與出給下吏, 施以梟警, 重公納嚴國法何如?” 敎曰: “此非戶曹下送者, 則各邑何以出給乎? 京差人不得不採根乃已。 何邑如此乎?” 炳國曰: “雖非恒有之事, 各道或行, 積有年所, 有難一一摘發。 今於嚴飭之下, 焉敢復蹈前習乎?”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十七日。 敎曰: “是年是月, 卽我正宗大王寶齡再回甲也。 追惟往昔, 采增

11년) 9월 17일(무술) 1번째기사 정조의 나이가 두 번째 맞는 회갑이기에 전작례를 거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올해의 이달은 바로 우리 정조 대왕(正祖大王)의 보령이 재회갑(再回甲)을 맞는 때이다. 지난날을 추억하면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니, 이달 22일에 자내(自內)의 예(例)로 친히 진전(眞殿)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이다.” 하였다.	感慕。 當於今二十二日, 自內親行眞殿酌獻禮矣。”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0월 2일(계축) 1번째기사 각 궁방에서 새로 산 논밭에 조세를 면제시키지 말게 하다	각 궁방(宮房)에서 사들인 논밭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지 말도록 명하고, 이어 글을 내려서 그것을 호조(戶曹)에 게판(揭板)하도록 하였다.	初二日。 命各宮房, 買得田畓, 勿許免稅。 仍書下, 使之揭板于戶曹。
고종 9권, 9년(1872 임신 / 청 동치(同治) 11년) 10월 29일(경진) 3번째기사 또 우레가 쳤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로 알고 음식과 음악 등을 줄이다	전교하기를, “이달에는 두 번이나 우레가 진동하였다. 지난번에 보여준 하늘의 경계도 이미 간곡하였는데, 이번에 또 거듭 경계를 보여 경고를 하였으니 마음 가득 두렵고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아! 백성들의 일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나는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했고 나라의 형편은 많이 궁색한데도 나는 넉넉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풍속은 바로잡아 세우지 못하였고 기강도 쇄신하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도 나의 잘못이고 둘째도 나의 잘못이다. 자신을 반성하는 옛 규례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하고 음악을 중지함으로써 하늘의 경고에 조심하는 나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겠다.”	敎曰: “是月也凡再其雷矣。 向來示警, 已是丁寧, 今此垂戒, 不啻申複。 滿心悚懼, 靡所止屆。 嗚呼! 民事多艱, 予莫之懷保; 國計多絀, 予莫之裕足, 風俗則莫之挽回, 紀綱則莫之振刷。 一則寡躬之咎也; 二則寡躬之咎也。 責躬舊例, 不可以應文而置之。 自今日限三日, 避正殿、減膳、撤樂, 庸伸一分懋對之忱。”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1월 1일 (신사) 4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반포하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반포하였다.	頒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1월 1일 (신사) 5번째기사 노인들과 유현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과 유현(儒賢)에게 별세찬(別歲饌)을 하사하였다.	賜老人及儒賢別歲饌。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1월 13일(계사) 1번째기사 불법적으로 소를 잡는 것을 금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도(私屠)를 금지하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맡아 할 일인데 반드시 별도로 신칙한 뒤에야 금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직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가 보습을 끌며 밭을 가는 덕에 쌀알을 먹을 수 있고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다니며 무거운 짐들을 실어나르니, 사람을 위해 이와 같이 쓸모가 큰데 어찌 무고(無故)하게 소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제 삼양(三陽)이 은택을 베풀어 봄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 전염병이 곳곳에서 한창 성하다 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다. 안으로는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에서, 밖으로는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서 규찰하고 금지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로 힘써 규찰하여 감히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기어이 실제 성과가 있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라.”	十三日。 敎曰: “私屠設禁, 法司攸掌, 而必待別飭後始禁者, 此可曰擧職也乎? 引耒中田, 賴以粒食; 服箱四方, 任厥重載; 爲人之用, 有若是焉, 則無故殺牛, 亦豈可行者乎? 顧今三陽布澤, 犂耙將出, 而牛疫在在方熾云。 言念民事, 萬萬悶然。 內而刑漢, 兩司, 外而八道、四都, 未知糾禁之果何如? 而互相勉察, 毋敢悠泛, 期有實效事, 自廟堂行會。”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2월 29일(무인) 2번째기사 대군 이하의 여러 궁방을 설치할 때 은, 쌀, 콩 등을 보내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군(大君) 이하의 여러 궁방(宮房)을 신설(新設)할 때 궁장(宮庄)이 갖추어지기 전에 토지 매입금으로 대전(代錢)할 은자(銀子)와 5년을 기한하여 수송하는 미태(米太) 및 병조(兵曹)에서 고립(雇立)하는 등 제반 진배(進排)할 일들은 이미 운현궁(雲峴宮)의 예(例)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수송하지 말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탁지(度支)의 정례(定例)에 기재하라.” 하였다.	敎曰: “大君以下諸宮新設時, 宮庄未備前, 田土買得代錢銀子與限五年輸送米、太及兵曹雇立等諸般進排事, 已有雲峴宮例。 自今以後, 勿爲輸送事, 定式, 載之於度支定例。”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3월 4일(임오)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에 술잔을 올리는 처소는 강녕전으로 하고 술은 두 잔 올리게 하다	진작소(進爵所)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작(進爵)할 처소는 어느 전각(殿閣)에서 거행하며, 작의 수는 몇 작으로 마련해야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처소는 강녕전(康寧殿)으로 하고, 작 수는 2작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初四日。 進爵所啓: “今此大王大妃殿進爵處所, 以何殿擧行, 而爵數以幾爵磨鍊乎?” 敎曰: “處所以康寧殿爲之, 爵數二爵磨鍊。”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 (同治) 12년) 3월 4일(임오) 2번째기사 대왕대비전에 올리는 술은 대전과 중궁전이 올리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술잔을 올릴 때 제1작은 친상(親喪)할 것이고, 제2작은 중궁전(中宮殿)이 친상(親上)할 것이니, 진작소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今此進爵時, 第一爵親上, 第二爵中宮殿親上矣, 分付進爵所。”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3월 12일(경인) 1번째기사 회작 연회 후 밤연회의 의식절차를 정하다	전교하기를, “다음날 회작(會酌) 한 후 밤 연회 때의 의주(儀註)와 홀기(笏記)는 밤에 진작(進爵)하는 규례를 참작하여 마련해 들이고, 진작소(進爵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올리는 치사(致詞)의 절차는 무신년(1848)의 예(例)에 따라 마련하되, 치사는 본소(本所)에서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十二日。 敎曰: “翌日會酌後夜讌時, 儀註笏記, 參互夜進爵例, 磨鍊以入。 進爵堂郎進致詞之節, 依戊申例磨鍊。 而致詞自本所製進。”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6월 1일(무신) 2번째기사 환곡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곡식을 사는 일을 그만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로 인하여, 본영(本營)에서 쓰고 남은 돈 1만 5,000냥을 저치(儲置)하는 환곡(還穀)으로 만들도록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該道)의 감사(監司) 성이호(成彛鎬)의 보첩(報牒)을 보니, ‘지금 나누어줄 때에 백성들이 모두 돈을 받고 곡식으로 바치기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을 듯하니, 특별히 중지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돈을 나누어주고 곡식으로 바치게 한 것은 고을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일로서 일찍이 감영의 보고에 따라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한 것이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백성들이 받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보고 내용대로 중지시키고 이 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변통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나 고을들이나 두 쪽이 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向因前錦伯所報, 本營役餘錢一萬五千兩, 作爲儲置還事, 有所筵奏行會矣。 卽見該道臣成彛鎬報牒, 則‘今於分給時, 民皆以受錢納穀之難便, 紛聒不已, 恐不可咈其情而强行, 特令還寢’爲辭矣。 當初之錢分穀捧, 爲捄邑弊, 曾因營報筵稟行會者, 則事體不宜銷刻。 而到今民不願受, 不可强行云, 依報辭還寢, 此錢措處之方, 更令道臣從長變通, 以爲民邑兩便何如?” 允之。
고종 10권, 10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初二日。 議政府啓: “豐德復邑後, 稅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윤6월 2일(무인) 1번째기사 풍덕 고을의 조세를 다른 것으로 대납하는 것을 2년 더 연기해 주다	“풍덕(豐德)에 읍(邑)을 다시 설치한 뒤 6년 동안 조세를 대납하도록 허락한 기한이 벌써 찼습니다. 정공(正供)은 중요한 것이어서 다시 더 기한을 연기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監司)의 보고에 이르기를, ‘백성들과 고을의 형편으로 보아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우선 2년 동안 기한을 더 연기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納許代六年之限已滿矣。 正供所重, 不可更許展限。 而道臣報辭旣曰: ‘民邑事勢, 不得不乃爾’云, 姑許二年展限何如?” 允之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7월 16일(임술) 1번째기사 찬비가 계속 내려 농사가 걱정되니 비를 그치는 영제를 지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벼가 익어가는 이때에 동풍이 불면서 찬비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으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실로 걱정스럽다. 사문(四門)에서 지내는 영제(禜祭)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날을 잡지 말고 정성껏 설행(設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十六日。 敎曰: “當此稷秠向熟之時, 東風冷雨, 連日不止, 言念民事, 實爲憂悶。 四門榮祭, 遣重臣不卜日虔誠設行。”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7월 18일(갑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7월 18일(갑자) 2번째기사 비가 그쳤기 때문에	전교하기를, “날씨가 이제 개었는데 영제(禜祭)를 의례적으로 계속 지내는 것은 도리어 번거로운 일이 된다. 보사제(報謝祭)를 이어서 설행(設行)해야 하겠으니 오늘 향(香)을 받아가게 하라.”	敎曰: “日候旣開霽, 榮祭之如例連設, 還涉瀆屑。 報謝祭仍爲設行, 使之今日受香。”

보사제를 지내게 하다	하였다.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7월 25일(신미) 2번째기사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여러 각신(閣臣)과 유신(儒臣) 2품 이상, 육조(六曹),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에게 사찬(賜饌)하였다.	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宗正卿、諸閣臣、儒臣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 賜饌。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9월 13일(무오)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9월 22일(정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9월 23일(무진)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창원부(昌原府)는 방어사 군영(防禦使軍營)으로 승격하였으므로 도시(都試)를 설행하는 것은 다른 도와 다름없이 하여야 할 것이니, 감사(監司)의 장계(狀	二十三日。 議政府啓: “昌原府旣陞防營, 都試設行, 與他道宜無異同。 依道伯狀請許施。 統制使蔡東健以‘固城府綿農判歎’狀請, 兵曹、工曹納軍布,

목화농사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고성부에서 바치는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啓)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통제사(統制使) 채동건(蔡東健)이, '고성부(固城府)에서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라고 장계(狀啓)를 올려 병조(兵曹)와 공조(工曹)에 바치는 군포(軍布)에 대해서는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봉(代捧)하게 하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軍營)에 바치는 보포(保布)는 절반,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바치는 보포는 3분의 1을 특별히 대전(代錢)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그와 같이 어려운 만큼 도내의 각 읍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병조와 각 영에 바치는 군포는 5분의 1을, 공조에 바치는 군포는 지난해의 예대로 순전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며, 포보(砲保)는 사체에 구별이 있으니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竝純錢代捧, 禁御兩營保布折半, 訓局保布限三分一, 特許代錢矣。 民情旣若是窘艱, 依道內各邑已施之例, 兵曹及各營五分一, 工曹依昨年純錢代納, 砲保事體有別, 置之何如?" 竝允之。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10월 25일(경자) 2번째기사 격포에 세미 창고를 짓는 일 때문에 전라 감사 이호준을 다시 잉임시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임기를 연기해 준 기한이 또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격포(格浦)의 조창(漕倉)을 새로 설치하고 위봉성(威鳳城)을 쌓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감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끝을 맺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1년간의 임기를 더 주어 잉임(仍任)시켜 주소서."	議政府啓: "全羅監司李鎬俊展瓜之限, 又在開月。 而格浦漕倉之新設, 威鳳城役之經紀, 不得不使此道臣, 責其終效, 請更加一年仍任。" 允之。
고종 10권, 10년 (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10월 30일(을사)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각 도의 별비미(別備米) 모작전(耗作錢) 16만 8,489냥을 다 바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戶曹以"諸道別備耗作錢十六萬八千四百八十九兩零畢捧"啓。

호조에서 각도의 별비미의 이자로 만든 돈을 바쳤다고 보고하다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12월 30일(갑진) 6번째기사 태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효가 4,998필(匹)이라고 보고하였다. 【고종 통천(高宗統天) 융운 조극(隆運肇極) 돈륜 정성(敦倫正聖) 광의 명공(光義明功) 대덕 요준(大德堯峻) 순휘 우모(舜徽禹謨) 탕경 응명(湯敬應命) 입기 지화(立紀至化) 신열 외훈(神烈巍勳) 홍업 계기(洪業啓基) 선력 건행(宣曆乾行) 곤정 영의(坤定英毅) 홍휴 수강(弘休壽康) 문헌 무장(文憲武章) 인익 정효(仁翼貞孝) 태황제 실록(太皇帝實錄) 제10권 끝】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爻四千九百九十八匹’啓。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1월 18일(임오)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영남의 각 아문에 있는 곡식수량을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영남(嶺南) 소재의 각 아문(衙門)에 있는 곡식 수량을 뽑아내어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들었다. 병인년(1866)과 정묘년(1867)에 따로 마련한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가운데 5만 석을 작전(作錢)하여 올려 보내라고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十八日。 議政府以“嶺南所在各衙門穀數, 抄出別單書入”啓。 敎曰: “旣承慈敎矣。 丙寅、丁卯別備社還中五萬石, 作錢上送事, 自廟堂行會。”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10	전교하기를, “청나라 돈을 폐지할 때에 받았다가 도로 퇴자를 놓은 몫을 그냥 청나라 돈으로 받아들이고, 오부(五部)의 자내(字內) 토지에 대하여 새로 정하여 받던	敎曰: “淸錢革罷之日, 所納還退條, 仍以淸錢收捧, 五部字內田土等處, 新定收稅, 竝令革罷事, 分付戶惠廳及漢

일(계미) 2번째기사 오부의 토지에 새로 정한 조세를 폐지시키다	조세를 받기로 정했던 것도 모두 폐지하도록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크나큰 경사로 중외(中外)의 인심은 아무래도 기뻐하고 있을 것인데, 두 대신이 아직도 교외에 있으니 나도 마음이 쓰인다. 빨리 조정에 나오도록 사관(史官)을 보내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강로(姜浩)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한계원(韓啓源)에게 전유(傳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城府。" 又敎曰: "今此莫大之慶, 中外群情, 必當胥悅。 而兩大臣之尙在郊坰, 予所耿然。 須卽筵朝事, 遣史官傳諭于領府事姜浩、判府事韓啓源。"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14일(정해) 5번째기사 경사를 맞아 공납인과 저자의 사람들에게 쌀을 제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밥과 국을 공납인(貢納人)과 저자 사람들에게 통틀어 공급해 줄 수 없었다. 경술년(1850) 규례대로 우승지(右承旨)가 돈화문(敦化門) 밖에 나가서 공시인(貢市人)과 저자 사람들을 소집해 놓고 공시인에게는 쌀 10석, 저자 사람들에게는 쌀 20석씩을 호조(戶曹)에서 제급(題給)하게 함으로써 함께 경사를 누리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飯羹不能通給貢市人等矣。 依庚戌年例, 右承旨出敦化門外, 招集貢市人, 貢人米十石, 市人米二十石, 令度支題給, 以示同慶之意。"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26일(기해) 1번째기사 조선 건국 480년, 원자의 탄생 등을 축하	전교하기를, "올해는 바로 우리 태조(太祖)께서 왕조(王朝)를 세운 후 여덟 째 회갑(回甲)이 되는 해이다. 옛일을 추모하고 성의를 펴는 것은 인정과 예의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번에 또 원자(元子)가 태어난 경사도 있으니,	二十六日。 敎曰: "是年卽我太祖定鼎之八回甲也。 追舊展誠, 情禮之有不可已。 而今又元良有慶, 當詣南殿, 親行酌獻禮矣。 日字, 來月旬前擇入。" 又敎曰: "皇天惟祖宗, 默佑陰騭, 元良誕生, 其在追遠報先之忱, 宜

하며 남전에서 작헌례를 행하기로 하다	남전(南殿)에 나아가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해야 하겠다. 다음 달 10일 전으로 날을 가려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황천과 조종(祖宗)이 묵묵히 도와준 덕으로 원자가 태어났으니, 옛일을 추모하고 선대에 보답하는 정성에 있어 전헌(奠獻)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다. 다음 달 초하루에 진전(眞殿)에서 거행할 작헌례는 자내(自內)의 예(例) 직접 거행하겠다.” 하였다.	有奠獻之擧。 來初一日, 眞殿酌獻禮, 當自內親行矣。”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28일(신축) 1번째기사 물에서 건져내지 못한 쌀에 대해서도 특별히 탕감조치를 취하다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를 소견(召見)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원자가 태어난 지 21일이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왕세자의 기질이 더욱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과연 빨리 자란다. 자전(慈殿)께서 더욱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증렬미(拯劣米)는 지난번에 처분하였는데 미증미(未拯米)도 일체 견감(蠲減)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미증미를 사격(沙格)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대개 고패(故敗)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니, 자주 견감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二十八日。 召見藥院三提調。 都提調李裕元曰: “元子宮三七載屆, 伏想睿質, 益爲岐嶷矣。” 敎曰: “果夙成矣, 慈殿益加嘉悅, 甚爲喜幸矣。” 又敎曰: “拯劣米向已有處分, 而未拯米一體蠲減, 似好矣。” 裕元曰: “未拯米之徵捧於沙格者, 蓋爲杜故敗之弊也, 不可頻頻許蠲矣。” 敎曰: “如此慶會, 故特爲蕩減, 他時則收捧好矣。向日備忘記中, 添書頒布可也。” 又敎曰: “唐藥材契復舊設行可也。 如此然後日用藥材, 可以繼進矣。” 裕元曰: “此事外論, 皆以爲猝難復設云, 而四千八百兩, 俄承傳敎, 今雖出給, 恐難

	“이와 같이 경사스러운 때이므로 특별히 탕감(蕩減)하는 것이다. 다른 때에는 걷어 들이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의 비망기(備忘記)에다 더 써넣어서 반포하도록 하라.” 하니, 또 하교하기를, “당약재계(唐藥材契)는 종전대로 복구하여 설행(設行)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후에야 일상적으로 쓰는 약재를 계속 바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모두 갑자기 다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4,800냥은 전에 전교(傳敎)를 받았으니 이제 비록 내주더라도 종전대로 진배(進排)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하의 하교를 받았으니 삼가 약원에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될수록 빨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대신이 그 전에 북백(北伯)을 지냈으니 유지의(襦紙衣)의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겠구나.”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유지의는 근년 이래로는 대전(代錢)하여 획급(劃給)하는데 유의(襦衣) 1건(件)에 대하(代下)하는 7냥(兩)입니다. 요즘은 목가(木價)가 점점 내려가서 대하하는 수량보다 도리어 값이 쌉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유지의를 옛 규례대로 내려 보내면 양쪽에서 다 편리할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이 그 전에 만윤(灣尹)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유지의에 대한 문제는 겉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서쪽과 북쪽을 지키는 군	依舊進排矣。 然旣承聖敎, 謹當分付於藥院, 使之擧行矣。” 敎曰: “從速爲之可也。” 仍敎曰: “大臣曾經北伯, 襦紙衣事可以詳知矣。” 裕元曰: “襦紙衣, 近年以來代錢劃給, 而襦衣一件代下, 爲七兩矣。 比來木價稍下, 反歇於代下之數矣。” 敎曰: “襦紙之若復舊例下送, 則可爲兩便矣。” 裕元曰: “臣曾經灣尹, 故詳知矣。 襦紙衣事, 外面雖似不甚關重, 而於西北防守軍, 大爲利益。 雖官屬乾沒, 猶爲邊民之益矣。” 敎曰: “然則復舊例可也。” 裕元曰: “謹當以此分付矣。” 敎曰: “深北亦有別還乎?” 裕元曰: “別還則無之。 開市時有差需穀名色, 而略有其弊矣。” 敎曰: “此得無大弊乎?” 裕元曰: “差需穀之弊, 在於濫下, 而所謂還穀, 不過是黍粟唐米耳麥等屬也。” 敎曰: “我人多潛越而去者云, 得不以還弊故耶?” 裕元曰: “北民犯越, 本非苦於賦役, 專由於耗散之輩, 貪利遷徙而然矣。” 敎曰: “越境有何生涯乎?” 裕元曰: “彼人甚厚, 善爲接濟, 故如是也。” 敎曰: “洪贊燮之疏, 令廟堂稟處者, 將何以裁處乎?

	사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설사 관속(官屬)들이 몽땅 빼앗는다 해도 오히려 변경 백성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렇다면 옛 규례를 복구하도록 하라.”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삼가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먼 북쪽에도 별환(別還)이 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별환은 없고, 개시(開市) 때에 차수곡(差需穀)의 명색이 있는데 폐단이 좀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여기에 큰 폐단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차수곡의 폐단은 곡식을 남하(濫下)하는데 있으며, 이른바 환곡(還穀)은 서(黍)·속(粟)·당미(唐米)·이맥(耳麥)·등속(等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환곡으로 인한 폐단 때문이 아닌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북민(北民)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부역(賦役)에 시달려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흩어져 없어진 무리들이 이익을 탐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此亦士族之裔也, 疏通好矣。” 裕元曰:“庶類亦是士夫之子也。 只當從本家門地, 何可論外黨乎? 此乃我國之俗, 歷代所無之法也。 凡朝廷官人之道, 擇其才器, 不當過加分別, 以致枳塞。 今此鳴冤, 寧或有濫分之望? 而前後朝家處分, 已多從厚許之。 臣意則曾所許通者, 毋論文蔭武, 一竝施行, 恐好矣。” 敎曰:“卿言誠然矣。 竝復舊施行可也。” 又敎曰:“關西文官, 亦有陳疏者矣。” 裕元曰:“此乃分館事也。 所居隔遠, 無由詳知其世閥矣。 近來降調稱冤者, 可十許人云。 此則皆以原分館施行, 恐好矣。” 敎曰:“復其薦, 俾無呼冤可也。” 仍敎曰:“給代別單見之, 則司譯院數爻甚多, 何處用之, 而若是多耶?” 裕元曰:“譯院稅納, 近三十萬兩, 到今與經用無異矣。” 敎曰:“果甚夥多矣。” 裕元曰: “譯院之已納見退於戶曹者, 三萬五千兩, 而譯員輩, 皆以爲抑鬱云矣。” 敎曰:“見退甚抑鬱云, 則此是何處當納之物乎?” 裕元曰:“司譯院捧包稅, 納于戶曹, 以補經費者也。” 敎曰:“其前不入于戶曹, 而因簾敎區劃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저쪽 사람들이 매우 후해서 잘 구호해 주므로 이러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홍찬섭(洪贊燮)의 상소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장차 어떻게 헤아려서 처리할 것인가? 그도 사족(士族)의 후손인 만큼 벼슬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서류(庶類)도 사대부의 자식입니다. 다만 본가(本家)의 문벌(門閥)을 따라야지 무엇 때문에 외가 쪽을 따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서 역대(歷代)에 없던 법입니다. 무릇 조정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그 재주와 기량을 보고 선택해야지 지나치게 구별함으로써 벼슬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에 어찌 혹여 분수에 넘치는 기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전후로 조정의 처분은 이미 대부분 후한 쪽으로 처분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전에 허통(許通)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막론하고 모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옳다. 모두 종전대로 복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니, 또 하교하기를, “관서(關西)의 문관 가운데도 상소를 올린 자가 있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그것은 바로 분관(分館)의 일인데 살고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벌을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근래의 강등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10여 인(人)은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 원래대로 분관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者耶?” 裕元曰: “然矣。” 敎曰: “戶曹當捧, 而何爲見退耶?” 裕元曰: “此雖已納, 以淸錢納, 未及出尺, 故執此退却矣。 旣已見退於戶曹者, 今何可以還捧邪? 民間之言曰: ‘當初淸錢出來, 專由於譯官輩歸咎’, 則尤不可使還捧淸錢, 以致民心之不服矣。 今若以去年司譯院稅納三萬五千兩, 特爲權減事處分, 則於渠爲實惠, 而在事面無礙矣。” 敎曰: “然矣。 譯院所須, 若是其大, 曾所未料也?” 裕元曰: “其簿書繁劇, 無異廟務, 故大臣爲都提調矣。 此錢今若更捧, 勢將分徵於各人處, 便是再徵也。 今此癸酉條除減, 其於經用, 所損亦不少矣。” 敎曰: “苟利於下, 則雖有所損, 何難之有乎?” 裕元曰: “見今科期不遠, 而觀象監生徒, 以爲講冊有難便之端矣。 往年則以《袁天綱》等書試之矣; 近年則以《選擇紀要》爲定故也。 生徒咸願復舊例, 復舊似得便宜矣。” 敎曰: “以《選擇紀要》改定爲數式年乎?” 裕元曰: “不過數年, 而其時提調之所改定也。 旣非舊規, 則及今復舊, 甚爲穩當矣。” 敎曰: “非舊例, 則渠輩

	하니, 하교하기를, “그 추천을 회복해서 억울하다는 호소가 없게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급대(給代)의 별단(別單)을 보니 사역원(司譯院)의 수효가 매우 많은데 어디다 쓰기에 이렇게 많은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사역원의 세납(稅納)이 거의 30만 냥이나 되니 지금까지 경비로 쓴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과연 대단히 많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사역원에서 이미 납부한 것을 호조(戶曹)에서 물리친 것이 3만 5,000냥인데, 역원(譯員)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한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거절당한 것이 몹시 억울하다고 하니, 이것이 어디에 바쳐야 할 물건인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사역원에서 받은 포세(包稅)를 호조에 납부함으로써 경비에 보태는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전에는 호조에 들이지 않았는데 염교(簾敎)로 인하여서 구획(區劃)하는 것인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호조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인가?”	之爲難便, 容或無怪矣。” 【원본】 15책 11권 22장 B면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것은 이미 납부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전(淸錢)으로 납부한 것을 미처 공문(公文)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트집 잡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미 호조에서 거절을 당한 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 받아내겠습니까? 민간(民間)에서 말하기를, ‘애초에 청전이 드나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역관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니, 더욱이 청전을 다시 받아 백성들의 마음을 복종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 지난해 사역원의 세납(稅納) 3만 5,000 냥을 특별히 임시로 탕감하라고 처분한다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혜택이 될 것이고 사체(事體)로 보아서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겠다. 사역원에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일찍이 짐작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문서가 복잡하기는 묘당(廟堂)의 사무와 다름없기 때문에 대신이 도제조(都提調)로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지금 다시 받아낸다면 일의 형세로 보아 장차 각 사람에게 분담하여 징수할 것인데 이는 다시 징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계유년(1873)의 몫을 제감(除減)하면 그 경비에서 보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아랫사람들에게 이롭다면 손해가 있다 한들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지금 과거 기일이 멀지 않았는데 관상감 생도(觀象監生徒)들이 책을 강론(講論)하는 데 편리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해에는 원천강(袁天綱) 등의 책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근년에는 《선택기요(選擇紀要)》로 정했	

	기 때문입니다. 생도들이 모두 옛 규례를 회복할 것을 원하니, 복구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선택기요》를 식년과(式年科)에 보이기로 개정한 지 몇 해나 되는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몇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의 제조가 개정하였습니다. 이미 옛 규례가 아니니, 이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옛 규례가 아닌 만큼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겠다.” 하였다.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癸卯。 詣眞殿, 行酌獻禮。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1일 (계묘) 3번째기사 진전에서 작헌례를 행할 때 찬례 이하 관리에게 시상하다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眞殿酌獻禮時, 贊禮以下, 施賞有差。
고종 11권, 11년		許施海西支放還取用, 以社還耗代錢移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21일(계해) 4번째기사 황해도에 환곡을 쓰고 난 뒤 이자 곡식은 돈으로 내는 것을 허락하다	황해도(黃海道)의 지방(支放)을 환곡(還穀)에서 가져다 쓴 것은 사창(社倉)의 모곡(耗穀)을 쓰고 대전(代錢)으로 옮겨다 채우도록 허락하였다. 도신(道臣)의 장계(狀啓)로 인한 것이다.	充。 因道臣狀啓也。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22일(갑자) 1번째기사 격포의 조창을 혁파하다	격포(格浦) 조창(漕倉)을 혁파하고 세봉(稅捧)은 각 해당 고을에서 운반하라고 명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조사하여 아뢰었기 때문이다.	二十二日。 命格浦漕倉革罷稅捧, 各其邑輸運。 因完伯査啓也。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4월 13일(을축) 2번째기사 양근군의 계유년의 대동미와 조세를 돈을 대신 내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재현(金在顯)의 보고를 보니, ‘양근군(楊根郡)의 계유년(1873) 조(條) 세곡과 대동미(大同米)와 균역청(均役廳)에 바칠 것을 지금 납부하도록 독촉해야 하나, 백성들의 생업이 평소 궁핍하여 본색(本色)으로 바칠 형편이 못 되니, 그전 규례대로 특별히 값을 정하여 대납하게 하여 백성과 고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을 대신 바치도록 청하는 것은 비록 법 밖의 일이기는 하나, 백성들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지난해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허락해야 하겠습니다. 전세(田稅)는 이미 전날에 시행한 바가 아니어서 함께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니,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金在顯所報。 則‘楊根郡癸酉條稅大同田米及均廳所納, 今當責捧, 而生民産業, 素患艱乏, 本色備納, 勢實末由, 依已例, 特許詳定代納, 俾保民邑’爲辭矣。 正供請代, 雖是法外, 爲念民事, 且有已例, 依昨年許施, 田稅旣非前日所施者, 則不宜竝擧, 置之何如?” 允之。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4월 14일(병인) 1번째기사 각 영과 관청에서 해마다 납부하는 쌀, 돈 등을 등록하여 보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각 영과 각 사에서 해마다 받아들이는 쌀, 돈, 무명, 베, 그리고 이래조(移來條), 둔세조(屯稅條) 등 각 조목에 대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상세히 입계하도록 분부하라.”	十四日。 敎曰:“各營、各司每年所納米、錢、木布與移來條屯稅條各條件, 懸錄昭詳入啓事, 分付。”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5월 22일(계해) 3번째기사 호조의 베와 무명이 질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것을 봉상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호조(戶曹)의 포(布)와 목(木)의 품질이 몹시 떨어지니, 이제부터는 품질을 가려서 봉상(捧上)하도록 하라. 만약 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해읍(該邑)의 수령(守令)을 엄하게 감처(勘處)할 것이고 본사(本司)의 당상(堂上)도 단단히 신칙하지 못한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조의 낭청(郎廳)에게 발패(發牌)하여 신칙하고, 선혜청(宣惠廳)과 병조(兵曹)의 낭청도 이런 내용으로 발패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戶曹布、木, 品甚劣下, 自今以後, 擇品捧上。 而若有如前之弊, 則該邑守令, 斷當重勘, 本司堂上, 亦難免失飭之責事。 戶曹郎廳發牌申飭, 宣惠廳、兵曹郎廳, 亦以此意發牌分付。”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5월 25일(병인) 1번째기사 함경도 육진이 조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기한을 연기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명의록(明義錄)》은 일성(日星)처럼 밝고 부월(斧鉞)처럼 대단히 엄하니, 만세토록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번에 내린 처분에서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맞이하여 특별히 죄명을 씻어주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역적 무리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죄명을 말소하는 대상으로 의론할 수 있겠습니까? 대각(臺閣)의 간쟁과 법(法)을 집행하는 관사의 상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백대를 내려갈 공론(公論)입니다. 신들의 정성	二十五日。 次對。 領議政李裕元曰: “《明義錄》一部, 炳如日星, 嚴如斧鉞, 卽萬世不刊之典也。 今此處分, 有以廣慶之會, 特此疏滌之擧。 然此等逆類, 何可擬議於貸罪爻名之中乎? 臺閣之言, 執藝之章, 非不直截, 而尤

	이 성상을 감격시키지 못하고 말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윤허를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신들의 죄입니다. 한 번, 두 번 감히 계속 상소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전에 나와서 어찌 다시 명백히 주장하는 의리를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 허물을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명을 취소함으로써 온 나라에 들끓고 있는 의론을 사라지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당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이미 엊그제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다 말하였으니, 나의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당보(徐堂輔)의 장계(狀啓)를 보니, ‘부령(富寧)과 육진(六鎭)의 여러 고을들의 묵은 전결(田結)과 없어진 배와 염분(鹽盆)에 대해서는 신미년(1871)에 도신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3년 동안 조세(租稅)를 정지하고 진휼하고 남은 전(錢)으로 이자를 받아 급대(給代)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이미 찼지만 유랑민(流浪民)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으니 형편상 실로 내년부터 다시 세를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3년을 연기해서 특별히 세를 정지하고 급대도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육진의 여러 고을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정에서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장계의 내용대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성이호(成彛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사환미(社還米) 5,000석(石)을 우선 가져다 쓰고 입본곡(立本穀)의 문제는 지금 사세로	可畏者, 百世之公論也。 臣等誠未格天, 辭不達意, 不得蒙允, 已是臣等之罪。 一籲再籲, 不敢屢煩者, 或恐貽累於聖德也。 今借方寸之地, 安得無更陳明張之義乎? 聖人之過, 如日月之蝕, 及其更也, 人皆仰之。 伏乞更加三思, 亟寢成命, 俾息一國沸騰之議焉。” 敎曰: “今當廣慶之會, 有所處分, 而已悉於日昨聯箚之批, 庶可諒予之意。” 裕元曰: “卽見咸鏡監司徐堂輔狀啓, 則以爲: ‘富寧及六鎭諸邑陳荒田結, 無亡船盆, 辛未因道臣所啓, 限三年停稅, 以賑餘錢, 取殖給代, 而期限已滿, 流民未集, 自明年復稅, 勢實末由。 更展三年, 特加停稅, 給代則依前施行事, 請令廟堂稟處矣。’ 六鎭諸邑事, 尙不就緖, 朝家之所洞知也。 依狀辭退限何如?” 允之。 又曰: “卽見忠淸監司成彛鎬狀啓, 則以爲: ‘社還米五千石, 姑先取用, 而立本之節, 以今事勢, 三年之內, 恐難準完, 特許加展二年事, 請令廟堂稟處矣。’ 本道事情旣如此, 則三年與五年, 其去不甚相遠。 且道臣必有定見而然。 依狀請, 以五年更爲知委何如?” 允

	보아 3년 안으로 수량을 완전히 맞추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특별히 2년을 더 연장해 주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道)의 사정이 이미 이와 같으니, 3년과 5년은 시간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고 또 도신이 반드시 명확한 견해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5년으로 다시 통지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환곡(還穀)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류(虛留)할 수 없으며 또 나이(挪移)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 변하지 않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류나 나이하는 것 외에도 허다한 농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남(嶺南)에서는 '이무(移貿)한다.'고 하고 호남(湖南)에서는 '가작(加作)한다.'고 하며 해서(海西)에서는 '별작(別作)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발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해서에서는 이 폐단이 조금 중지되었지만 유독 영남만은 아직도 이무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아 주고받을 때마다 뇌물과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중지시키지 못하니, 결국 이익은 하리(下吏)에게 돌아가고 폐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영문(營門)에서는 수에 맞추어 내주지만 고을에서는 반드시 값을 감하여 분급(分給)하기 때문에 '소상정(小詳定)', '소소상정(小小詳定)' 등 부정한 명색(名色)들이 있게 되며, 하리들이 속이는 폐단을 발각할 수 없습니다. 설사 발각한다고 해도 적당히 얼버무려 덮어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분표(分表)하는데, 분표하는 사이와 거두어들이는 날이 달로 계산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환곡(錢換穀)은 이미 법에 벗어난 일인데,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니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나누어 줄 때에 한 번 엄하게 신칙하여 감히 그 사이에서 못된 전례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먼저 영남에 행회(行會)하고 호남과 해서에 대해서도 일체(一體) 통지함으로써 사전(事前)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之。 又曰: "還穀所重自別, 不得虛留, 又不得挪移, 自有金石之典, 而虛留挪移之外, 許多幻弄, 不一其端。 嶺南則曰移貿, 湖南則曰加作, 海西則曰別作。 皆爲厲民之階也。 湖南、海西, 此弊少戢。 惟獨嶺南移貿, 尙不祛其根源, 每於與受之際, 賂囑公行, 莫可止遏, 畢竟利歸於吏, 害歸於民。 營門則雖準數出給, 自邑必減價分給, 有'小詳定'、'小小詳定'等不正名色, 下吏之欺蔽, 無以覺察。 縱或覺察, 因循掩置, 經春及秋, 流伊分俵, 分俵之間, 收捧之日, 月計而無幾。 以錢換穀, 已是法外, 寡給多取, 胡寧忍斯? 今當派分之時, 不可不一番嚴飭, 使不敢作俑於其間。 先爲行會嶺南, 至於湖南、海西, 一體知委, 以爲先事警惕何如?" 敎曰: "各別申飭也。" 裕元曰: "崇儒重道, 列聖朝傳授之法, 而追奬邃學, 闡發幽光, 亦美典也。 贈大司憲成均祭酒李夢奎, 仁宗朝儒賢也。 贅於忠貞公金克成門, 因而師焉。 文穆公金正國, 每論當世學者, 必先數之。 先正臣李珥稱以先生, 撰其狀曰: '天姿曠朗, 氣度高亢,

	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학(道學)을 중시하는 것은 열성조(列聖朝)부터 전수해 오는 법이니, 학문이 깊은 이를 추장(追奬)하여 빛내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증 대사헌성균관 좨주(贈大司憲成均館祭酒) 이몽규(李夢奎)는 인종조(仁宗朝)의 유현(儒賢)으로, 충정공(忠貞公) 김극성(金克成)의 가문에 데릴사위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김극성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문목공(文穆公) 김정국(金正國)은 매번 당대의 학자를 논할 때면 반드시 그를 먼저 꼽았으며,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는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행장을 짓기를, ‘천성(天性)이 광활하고 밝으며 기개와 도량이 고상해서 위협에도 굽혀들지 않고 권세나 이득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홀로 정직한 마음을 품고 우뚝히 서서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졸(卒)하자 방아 찧는 자는 타령을 부르지 않고 농부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한달을 넘었다.’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은 이몽규의 언행을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에 기록하였으며, 나라에서는 후에 그가 거처하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사액(賜額)하였습니다. 그가 학문을 연구하고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와 비슷하였습니다. 고(故) 대사헌 겸 찬선(大司憲兼贊善)이었던 이유태(李惟泰)는 젊어서 선정신 김장생(金長生)을 스승으로 삼아 그 연원(淵源)의 학문을 체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조조(仁祖朝)에 초빙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가 효종조(孝宗朝)에 와서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과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숙묘(肅廟)의 성대한 즈음에 등용되었으니, 군신의 훌륭한 조우와 종사(宗師)로서의 막	威武不能屈, 勢利不能動。 蟬蛻邱園, 皭然不滓, 獨抱幽貞, 特立長往者也。’及卒, 舂不相、農不謳者逾月。 文貞公金堉, 編其言行於《東國名臣錄》, 後賜額于所居之花巖書院。 其究學制行, 與文正公金麟厚相似。 故大司憲兼贊善李惟泰, 少師先正臣金長生, 得淵源之學。 初聘於仁祖朝不就, 逮孝宗朝, 與先正臣宋時烈、宋浚吉, 同爲被徵, 登庸於肅廟盛際, 遭遇之隆, 宗師之重, 照耀簡策, 誠敬。 主性理之學, 正大明《春秋》之義, 稱爲當世人傑。 此兩儒賢, 尙闕易名, 士林齎鬱, 特爲議謚, 似好矣。” 敎曰: “闡幽彰微, 實爲美事, 而有斟量者存, 從當處分矣。” 裕元曰: “故經筵官成近默, 先正臣成渾之後孫也。 學有淵源, 從事誠敬, 所著《孝經附傳》等書, 闡明精義, 丁末一疏, 尤有衛正斥邪之功。 當熙朝聲明之治, 不可無表揚之擧, 超贈正卿祭酒, 仍施節惠之典, 恐好矣。” 敎曰: “此儒臣之特施褒揚, 所奏誠然矣。 從當處分矣。”

	중함이 역사책에 밝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誠敬)은 성리학을 위주로 하였고 정대함은 춘추의 의리를 밝혀서 당대의 걸출한 인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두 유현(儒賢)이 아직 시호(諡號)가 없으므로 사림(士林)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특별히 시호를 의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숨어 있는 인재를 밝히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다. 내가 참작한 것이 있으니,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고 경연관(經筵官) 성근묵(成近默)은 선정신 성혼(成渾)의 후손입니다. 학문에 연원이 있고 성경에 종사하였습니다. 《효경부전(孝經附傳)》등을 저술하여 정밀한 뜻을 밝혔으며, 정미년(1847)에 올린 상소는 더욱이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공을 이루었습니다. 태평 성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천양(闡揚)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계를 뛰어 넘어 정경(正卿)과 좨주(祭酒)에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유신(儒臣) 대하여 특별히 포창하는 것은 아뢴 바가 참으로 옳다.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6월 13일(갑신) 1번째기사 전라 감사 조성교가	대신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성교(趙性敎)의 보고를 보니, ‘청전(淸錢)을 혁파한 뒤에 본영(本營)의 형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급하게 되었으니 사창(社倉)의 쌀 가운데서 5만 석(石)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전(執錢)하여 가져다 쓰되, 상정가(詳定價)로 본전(本錢)을 마련하고 5년에 한하여 모조(耗條)만 받	十三日。 引見大臣。 領議政李裕元曰: “卽見全羅監司趙性敎所報, 則‘淸錢革罷後, 本營事勢, 日甚遑汲, 就社米中五萬石, 待秋成執錢取用, 卽以詳

백성들의 형편상 사창의 곡식을 빌어쓴 후 풍년이 든 후에 갚겠다고 보고를 하다	으며 본곡(本穀)은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채워서 본도(本道)의 결전(結錢) 가운데서 3만 냥(兩) 우선 대하(貸下)하였다가 가을에 맞춰 갖추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변통한 뒤에 각 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법 밖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변통할 방도가 없지 않은데다가 호서(湖西)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도 있는데 유독 해도(該道)에만 안 된다고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5만 석을 가져다 쓰게 하는 사안 및 상정가로 본전을 세우고 모조를 갖추어 바치게 하는 사안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본곡을 풍년이 든 다음에 가서 채워서 바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설사 백성들의 형편이 풀릴 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곡식이 돈으로 변하고 돈이 곡식으로 변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여러 해를 끌고 가는 것은 적법(糴法)에 어긋나는 것이니 요청한 것은 그만두게 하여야 합니다. 결전을 대하하는 것은 비록 그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급박한 사정이니 서너 달에 한하여 이 수량대로 기한을 연장시킨다는 뜻으로 혜청(惠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의사(兩醫司)가 피폐해진 것으로 말하면 다른 관청에 비하여 가장 심하므로 생도들을 보존할 수 없어서 늘 걱정입니다. 사역원(司譯院)의 각청(各廳)과 관상감(觀象監)의 화공(畵工)·서사(書寫)는 각각 연경(燕京)으로 가기 때문에 빈자리가 하나나 혹은 둘씩 있지만, 양의사로 말하면 다만 빈자리 하나를 가지고 순서가 돌아갑니다.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하지만 종종 늙도록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한탄이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돌봐주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몇 해 전에 역원(譯員)과 산원(算員) 자리를 하나 더 가설(加設)한 전례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절사(節使)의 행차가 연경으로 갈 때의 자리 하나를 사역원의 학관청(學官廳)의 규례대로 특별히 획부(劃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定立本, 限五年只納耗條, 本穀待年熟更爲充納, 而本道結錢中, 限三萬兩, 姑先貸下, 趁秋備納爲辭矣。' 錢貨通變後, 各道所請, 無非經法之外。 然此不無闊狹之道。 且有湖西已施之例, 獨於該道, 有難斬持。 五萬石取用及詳定立本耗條備給, 竝依施。 至於本穀之待年豐, 雖曰紓力之計, 穀變爲錢, 錢變爲穀。 又拖多年, 有非糴法, 所請置之。 結錢貸下, 縱無其例, 言念事勢, 足汲西河之水, 限三四朔, 依此數寬限之意, 分付惠廳何如?" 允之。 又曰: "兩醫司之凋殘, 比他最甚, 生徒無以支保, 常所矜念。 而譯院各廳與雲監畫寫, 各有赴燕一窠或兩窠, 至於兩醫司, 則只以一窠輪回。 多年勤勞, 往往有老而未獲之歎, 此合有存恤之道。 且有年前, 譯員、算員加設一窠之例, 從今以後, 節行赴燕一窠, 依譯院學官廳例, 特爲劃付, 似好。 故敢此仰達矣。" 允之。 又曰: "君父之前, 陳生財之說, 極涉未安, 而廣東木靑花出稅, 補於經用, 好矣。" 敎曰: "欲如何用之乎?" 裕元曰: "受置戶惠廳, 有公用則廟堂句檢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하 앞에서 재물을 늘리는 데 대하여 진달하기는 참으로 미안합니다만, 광동목(廣東木)과 청화(靑花)에서 세납(稅納)을 내어 경비에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떻게 쓰려는 것인가?”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받아서 호조와 선혜청에 두었다가 공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묘당(廟堂)에서 주관하여 쓰고 위에서 혹 들여다 쓸 데가 있으면 역시 들여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지금 산림(山林)은 한 명뿐인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임헌회(任憲晦) 1인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갑자년(1864) 이후에 따로 산림을 뽑아 선발한 것이 없다. 근래에 작고(作故)한 산림 중에서 일컬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산림으로서는 조병덕(趙秉悳)이 학문과 덕행에서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시호를 내리도록 아뢴 세 유현(儒賢)들은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用之, 自上或有入用之處, 則亦可以入用矣。” 敎曰: “如是磨鍊, 好矣。” 仍敎曰: “卽今山林, 只爲一人乎?” 裕元曰: “任憲晦一人矣。” 敎曰: “甲子以後, 別無山林之抄選矣。 近來作故山林, 有可稱者乎?” 裕元曰: “近來山林, 趙秉悳學行超異矣。” 敎曰: “向日所奏節惠三儒賢, 果年代久遠之人矣。” 裕元曰: “成近默則近來之人, 而李夢奎、李惟泰卽仁宗朝、肅宗朝名賢。 其子孫微微, 其道學高明, 不能褒揚矣。” 敎曰: “卿所奏三儒賢事, 其時不能準許者, 欲考見其事蹟, 非有他意。 予豈後於慕賢之心也? 今皆依奏施之也。” 裕元曰: “向筵所奏三儒賢褒揚事, 今承下敎。 此, 崇儒重道之盛意也。 臣固欽仰萬萬, 而因此有仰奏者。 故經筵官趙秉悳, 先朝禮遇之山林也。 實學文章爲士林所推重, 尙未蒙恩施, 甚是缺典。 超贈易名, 一體擧行何如?” 允之。 仍敎曰: “訟者, 法司之所係, 而自捕廳或有決處者云。 捕廳, 賊情所係之處也。 於民訟, 有何關也哉?” 裕元曰: “自捕廳或有決處者, 欺人取物, 與官屬輩偸弄公

	사람들이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근묵(成近默)은 최근의 사람이고, 이몽규(李夢奎)·이유태(李惟泰)는 인종조(仁宗朝)와 숙종조(肅宗朝)의 명현(名賢)입니다. 그 자손들이 보잘것없어서 그 도학(道學)은 고명(高明)하지만 드러내어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이 아뢴 세 유현에 대한 일을 그때에 윤허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사적(事蹟)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찌 어진 선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뒤로 하겠는가? 이제는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번에 연석(筵席)에서 아뢴 세 유현을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에 대해 이번에 하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뜻입니다. 신은 참으로 매우 우러러 흠모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아뢸 것이 있습니다. 고 경연관(故經筵官) 조병덕은 선조(先朝)에서 예우한 산림입니다. 실학(實學)과 문장에서 사림(士林)의 존중을 받았으나 아직도 베푸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니 예법상 대단히 흠이 됩니다. 품계를 넘어 추증(追贈)하고 시호를 내리는 일을 일체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송사(訟事)는 법사(法司)에 관계되는 것인데 포청(捕廳)에서 간혹 처결한 것이 있다고 한다. 포청이야 도적에 대한 것을 관계하는 관청이지 백성들의 송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포청에서 혹시 처결하는 것이 있는데 남을 속이고 물건을 가진다거나 관속(官屬)들과 농간을 부려 공곡(公穀)을 훔쳐내는 것은 도적의 정상과 다를 것	穀, 與賊情無異, 或有捕治矣。” 敎曰: “民訟可以申飭也。 判尹民訟, 善爲決處云矣。” 漢城府判尹吳取善曰: “伏承下敎, 極爲惶悚。 臣年老無以堪當, 惟伏望體諒矣。” 敎曰: “此判尹可以久任矣。” 裕元曰: “久任亦可爲之。 曾經數處藩任, 皆善爲之矣。”

	이 없기 때문에 간혹 잡아다 다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백성들이 소송하는 것을 신칙해야 할 것이다. 판윤(判尹)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처결한다고 한다.” 하니,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오취선(吳取善)이 아뢰기를, “전하의 하교를 받들고 보니, 매우 황송합니다. 신은 나이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 삼가 헤아려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판윤은 오랫동안 유임시켜야 하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유임시켜도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곳의 번임(藩任)을 지냈는데 일처리를 모두 잘하였습니다.” 하였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6월 20일(신묘) 1번째기사 인천부에서 큰 거북이를 바치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요즘 무더위가 더욱 심한데 원자궁(元子宮)의 기후(氣候)는 어떻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그동안 수두(水痘)를 앓았는데 꼭 홍역과 같았다.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매우 순탄하였고 지금은 이미 나았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원자궁께서 그동안 수두를 앓았지만 증세가 순탄하여 번거로이 본원(本院)에서 대령(待令)하지 않았는데 약을 쓰지 않고 빨리 회복되었으니 자전(慈殿)의 기쁨과 전하의 기쁨, 모든 사람들의 축원을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삼	二十日。 藥院入診。 都提調李裕元曰: “近日老炎益甚, 元子宮氣候若何?” 敎曰:“間經水痘, 而恰如正痘。自五月爲, 始極其平順, 今已出場矣。” 裕元曰:“元子宮間經水痘, 症候平順, 不煩本院待令, 勿藥遄復。慈聖之嘉悅, 聖心之喜幸, 群情之慶祝, 何可形達乎? 謹稽各殿宮已行之例, 告布之節, 令該曹擇日擧行何如?” 允之。 又曰:“向日公退之時, 聞有仁

	가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이미 시행한 전례를 살펴서 선포하여 알리는 절차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택일(擇日)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공퇴(公退)할 때 들으니 인천부(仁川府)에서 상서로운 거북을 바쳤다고 합니다. 신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과연 드물게 있는 상서(祥瑞)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고시홍(高時鴻)의 상소를 보니 이 일을 가지고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경사를 다채롭게 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우연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 상소문에서 상서롭다고 한 것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거북의 몸뚱이가 대단히 커서 길이가 1장(丈) 남짓하고 너비도 그만하였다. 목을 쭉 뽑으면 2장쯤 되는데 어림짐작으로도 1칸 방에 두 마리의 거북을 넣을 수 없을 정도이다. 거북이가 크다는 말은 옛날에 들었지만 오늘에야 큰 것을 알았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옛날 서응도(瑞應圖)에서는, ‘덕화가 백성들에게 잘 젖어들어 있으면 고기잡거나 사냥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고, 또한 ‘왕도(王道)가 한편으로만 쏠리지 않고 무리 짓지 않으며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여 등용하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상서는 우리 전하의 정사와 교화가 만물에 미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효종조(孝宗朝)에 심양(瀋陽)의 관소(館所)에서 머물러 있을 때 직접 큰 거북	川府來呈瑞龜, 而臣則雖未得見, 果是稀有之祥也。” 敎曰: “昨見高時鴻疏, 則以此事, 至有設科飾慶之請, 而適然之事, 不必如是矣。” 裕元曰: “此疏之稱瑞, 亦無怪矣。” 敎曰: “龜形甚大, 長可一丈有餘, 廣亦如之。 伸頸, 則恰爲二丈許, 而假量一間屋子, 不可容兩龜矣。 龜大之說, 於古聞之, 今始見其大矣。” 裕元曰: “古之《瑞應圖》云: ‘德化湛漬, 漁獵以時則出。’ 又曰: ‘王道無偏無黨, 尊用耆舊則出。’ 今此禎祥, 莫非我殿下治化及物之致矣。” 敎曰: “孝宗朝瀋館住駕時, 親見大龜云矣。” 裕元曰: “果在寧陵誌矣。” 敎曰: “寫字官李每龍有筆名, 而入燕時功勞, 封君云, 然乎?” 裕元曰: “此是丁應泰辨誣奏文時事也。” 敎曰: “入燕時, 此人有所書者耶?” 裕元曰: “辨誣時, 多有疑阻, 昏夜每多書寫, 種種有受困之事。 此人擡眼臨紙, 如雙燭照暎, 不錯一字云事, 載李文忠廷龜文集矣。” 敎曰: “每見古昔盛時, 果多有功之人矣。” 裕元曰: “人物之輩出, 多在於宣廟盛際矣。”

	을 보았다고 한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과연 영릉(寧陵)의 지문(誌文)에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사자관(寫字官) 이해룡(李海龍)이 필명(筆名)이 있어 연경(燕京)으로 들어갔을 때의 공로로 군(君)에 봉해졌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정응태(鄭應泰)의 변무주문(辨誣奏文)을 쓸 때의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연경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무고를 해명할 때 의심으로 저해하는 것이 많아서 매번 어두운 밤에 많이 글을 썼으므로 가끔 곤경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종이를 마주하여 앉으면 마치 쌍촛불을 든 것처럼 영채가 돌았으며 한 자도 틀리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의 문집(文集)에 실려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매번 옛날의 융성하던 때를 보면 과연 공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인재가 배출된 것은 융성하던 선묘(宣廟) 때에 많았습니다.” 하였다.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설행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영의정(領議政)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訖。 領議政李裕元曰: “北漢之設, 在於肅廟朝,

(同治) 13년) 7월 18일(무오) 1번째기사 북한산성에서 필요한 군량을 평창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다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숙종(肅宗) 때에 설치하였는데 그 제도가 굉원(宏遠)하고 규모가 치밀하여 실로 사전에 비어(備禦)하는 곳이며 모민(募民)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군량(軍糧)을 비축하기 위하여 선혜청(宣惠廳)의 평창(平倉)을 창의문(彰義門) 밖에 설치하고 경기(京畿) 아홉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를 육로로 운반하여 그것을 운송하여 바치게 하였습니다. 임신년(1682)에 혁파한 후에 처음에는 읍창(邑倉)에 바치고 다시 경청(京廳)에 수송하여 운반하는 폐단은 도리어 심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풀들이 창고에 꽉 차고 백성들이 사는 것은 소조(蕭條)하여 금탕(金湯)의 중지(重地)가 빈 껍데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아홉 고을에서 바치는 대동미(大同米)와 돈은 종전대로 평창에서 봉납(捧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其制置之宏遠, 規模之縝密, 實爲陰雨備禦之所, 而專以募民爲主。 蓄積爲事, 創惠平倉於彰義門外, 京畿陸運九邑大同米, 使之運納矣。 壬申革罷之後, 初納邑倉, 再輸京廳, 轉運之弊, 反有甚焉。 見今草莽滿倉, 民居蕭條, 使金湯重地便作虛殼, 誠爲可惜。 九邑所納大同米錢, 依前以平倉捧納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7월 18일(무오) 2번째기사 전라 감사 조성교가 제주목에 소의 전염병이 돌아 진상하는 숫자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성교(趙性敎)가, ‘제주목(濟州牧)에 소의 전염병이 돌아 소가 죽기 때문에 제향(祭享)에 진상하는 소를 원래 수효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 계(啓)를 보니, 제주 등 여러 고을에 소의 전염병이 한 해가 지나도록 치성(熾盛)하여 몇 만 마리나 되던 공사(公私)의 가축이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없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대단히 놀랍고 걱정된다. 경작하는 힘은 소를 많이 기르는 데 있지만 경작을 하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구나 여러 고을이 바다 밖에 있는 만큼 무역을 해서 살아갈 밑천이 섬에서 나지 않는다면 가난한 백성들의 황급	全羅監司趙性敎以‘濟州牧疫牛致斃, 祭享牛進上, 未充原數’啓。 敎曰: “卽見此啓, 則‘濟州等諸邑牛疫, 跨年熾盛, 公私幾萬之畜, 餘存無多’云, 聞甚驚慮。 耕作之力, 惟在牛畜之蓄, 而哀彼不耕之民, 何以有秋? 且況諸邑, 處在海外之地, 貿遷資活, 不出島中, 則窮蔀之遑汲, 必當倍蓰。 念其情狀, 安得不惻然? 其慰撫安堵之策, 道臣別般行會於該牧使, 俾無一民失業之弊。 貢牲之排比, 場畜之充補, 姑

	함이 필경 곱절이나 더해질 것이다. 그 정상을 생각하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위로해서 안착시키는 계책을 도신(道臣)이 특별히 해당 목사(牧使)에게 행회(行會)하여 한 명의 백성도 생업을 잃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생(貢生)을 배비(排比)하는 것이나 장축(場畜)을 채우는 일은 우선 전염병이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좋은 쪽으로 조처하라는 뜻으로 일체 행회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도신에게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俟疫氣之稍息, 從長措處之意, 一體行會事, 廟堂措辭, 分付于道臣。”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7월 25일(을축) 1번째기사 생신이었기 때문에 축하를 받고 사찬을 베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축하를 받았다.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사찬(賜饌)을 베풀었다.	二十五日。 御仁政殿, 受賀, 以誕辰也。 仍賜饌。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7월 27일(정묘) 2번째기사 만동묘에 필요한 의장 절차와 제사 규정 등은 시행되던 방식대로 하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성이호(成彛鎬)의 보고를 보니, ‘만동묘(萬東廟)를 중건(重建)한 후 의문(儀文)의 절차(節次), 제향(祭享)의 정식(定式), 제품(祭品)의 기수(器數), 제수(祭需)의 위결(位結)과 의물(儀物)을 새로 갖추고, 제관(祭官)의 공찬(供饌)과 원역(員役)의 요포(料布)에 대해 모두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황묘(皇廟)를 중건한 것은 《춘추(春秋)》의 의리를 다시 강구한 것으로써 성덕(聖德)을 빛나게 하고 백 대 후에도 할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향과 축문에 대한 규정과 제품의 절차를 의조(儀曹)로 하여금 이미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成彛鎬所報, 則‘萬東廟重建後, 儀文節次, 祭享定式, 祭品器數, 祭需位結, 儀物新備及祭官供饌, 員役料布, 竝俟處分’爲辭矣。 皇廟重建, 復講《春秋》之義, 有光聖德, 有辭百世。 而香祝之式, 祭品之節, 令儀曹博攷已行之典, 磨鍊稟處。 至於結數也, 儀物也, 諸般容入也, 令度支依成冊劃送何如?” 允之。

	시행해 온 규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련해서 품처하게 하소서. 결수(結數)와 의물,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성책(成冊)에 의거하여 떼어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8월 2일(임신) 2번째기사 부사과 오인태가 환곡 문제와 공물로 바치는 삼을 마구 걷지 말 것을 청하다	부사과(副司果) 오인태(吳仁泰)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평안도(平安道) 안의 환곡(還穀) 60만 섬을 갑자년(1864)에 탕감(蕩減)해 주고 15년 후로 다시 설정하여 기한(期限)을 정하였으며 매년 6만 섬씩 민호(民戶)에서 거두어 영락한 백성들만 일방적으로 그 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옛날의 환곡을 다시 설치하여 조정과 백성 양쪽이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계(江界)·후창(厚昌)·자성(慈城) 세 고을은 해마다 공삼(貢蔘)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갑절 함부로 거두고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절대로 더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吏胥)의 차임(差任)은 전적으로 청탁을 일삼고 있으며 문서를 혼란시키고 전곡을 농간질하여 그 폐해가 민간에 미치고 있는데, 아전의 임명을 모두 순서대로 한다면 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진술한 제반 조항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쪽을 따라 조처하게 해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과연 상소문의 내용과 같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을 따라 조처하게 하고 도신에게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副司果吳仁泰疏略: “平安道內還穀六十萬石, 甲子年蕩給, 以待十五年, 復設定限, 而每年六萬石, 斂於民戶, 殘小之民, 偏被其害。 令道臣復設舊還, 爲朝野兩便。 且江界、厚昌、慈城三邑, 每年貢蔘, 已有定規。 今倍徙濫捧, 令道臣切勿加捧。 又吏胥差任, 專事圖囑, 眩亂文薄, 幻弄錢穀, 流毒民間。 一從肩次, 此弊自然寢息。 所陳諸條, 請令廟堂從長措處。” 批曰: “果如疏辭, 則合有釐正。 令廟堂從長措劃, 分付道臣。”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8월 15일(을유)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璿源殿, 行茶禮。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9월 10일(기유) 1번째기사 13일에 진전에서 작헌례를 직접 거행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올해의 이달은 바로 영조 대왕(英祖大王)이 탄생하신 지 세 번째 회갑(回甲)이 되는 날이다. 나 소자는 추모하는 마음에 슬픈 생각이 한층 깊어진다. 이번 13일에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자내(自內)의 예로 직접 거행하겠다.” 하였다.	初十日。 敎曰: “是年是月, 卽我英宗大王誕辰三回甲也。 予小子追遠之慕, 冢增愴感。 今十三日, 眞殿酌獻禮, 當自內親行矣。”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9월 13일(임자)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璿源殿, 行酌獻禮。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9월 13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 홍우길(洪祐吉),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희로(李僖魯), 집례	眞殿酌獻禮時, 贊禮以下, 施賞有差。 贊禮洪祐吉、禮房承旨李僖魯、執禮張時杓、典祀官許稷、第二室大祝李

일(임자) 2번째기사 진전에서 작헌례를 행할 때의 찬례 이하의 관리에게 시상하다	(執禮) 장시표(張時杓), 전사관(典祀官) 허직(許稷), 제2실의 대축(大祝) 이근명(李根命)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根命, 竝加資。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9월 18일(정사) 1번째기사 경상 감사 홍훈이 목화농사의 흉년으로 포를 바치는 대신 돈으로 낼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훈(洪玩)의 장계(狀啓)를 보니,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어 어려운 형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각영(各營)과 각 아문(衙門) 군사들의 군포(軍布)와 신포(身布), 악공(樂工)들의 보포(保布)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신 받으며,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포보(砲保)는 3분의 1을 대전(代錢)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본 도의 피해 정상이 막심하다고 하지만 원래 목화 산지인데 어떻게 전부 흉년이 들어 결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兵曹)와 각 영에서 5분의 1을 돈으로, 각사(各司)에서는 순전으로 대납(代納)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숨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포보만은 중요한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만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린 초기(草記)를 보니,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부산 전 훈도(釜山前訓導) 안동준(安東晙)의 죄상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품처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부의 관리를 보내어 즉시 잡아오도록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안동준이 관청 물건을 훔친 문제와 범죄는 이제 벌써 남김없이 폭로되었으니 응당 다시 잡아다가 엄하게 조사하여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빚진 공금은 며칠 안으로 독촉해서 받은 후에 계문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관청 물건을 훔친 것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 또 이렇게 압송해서 올라오면 번거롭게 왕래할 뿐 거두	十八日。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洪玩狀啓, 則‘備陳綿農判歉之狀。 仍請各營各衙門軍身布及樂工保布, 竝以純錢代捧, 訓局砲保, 限三分一代錢事, 令廟堂稟處矣。’ 本道災形, 雖曰溢目, 自是綿産之處, 豈可謂一例判歉乎? 兵曹及各營所納五分一, 各司純錢代納, 以紓民力。 砲保所重自別, 置之何如?” 允之。 又啓: “卽見禁府草記, 則‘因嶺伯狀啓, 釜山前訓導安東晙罪狀, 請令攸司稟處, 而發遣府吏, 卽爲拿來事, 啓下矣。 安東晙所逋與罪犯, 今已掀露無餘, 則固當更爲拿來, 嚴査正罪。 而向旣承所負公錢不日督捧後啓聞之敎矣。 所逋姑未畢捧, 又此押上, 徒煩往來, 無益於收刷。 王府拿來姑徐, 令道臣刻期徵納, 具由登聞何如?” 允之。

	어들이는 데는 무익할 것입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잡아오는 일은 우선 천천히 하고 도신(道臣)을 시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하고 사유를 갖추어 등문(登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9월 22일(신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10월 30일(기해) 3번째기사 암행어사 강문형의 별단에 따라 토지의 측량, 환곡 등의 문제를 바로 잡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강문형(姜文馨)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고을마다 다시 토지를 측량하는 것이 갑자기 하기는 어렵더라도 결수에 따라 바로잡아 허실(虛實)을 구별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측량하여 묵은 밭을 조사하도록 전후로 조칙(朝飭)한 것이 한두 번 있은 것이 아닌데 도무지 실효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옛 규례를 다시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동포(洞布 : 철종(哲宗) 이후 동네에서 바치던 군포(軍布))가 아무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균등하지 못한 현상도 있으니, 가호의 실제 수효에 따라서 될수록 고르게 정하도록 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포의 가호에 대해서는 읍마다 규정이 다른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니 편리한 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議政府啓: “卽見京畿暗行御史姜文馨別單, 則‘其一, 逐邑改量, 雖難遽行, 隨結釐正, 俾虛實區別’事也。 改量査陳, 前後朝飭, 非止一再, 而訖無實效, 良覺慨然。 營邑爛加商確, 申明舊規。 ‘其一, 洞布雖爲矯弊, 而或涉失均, 從其家座實數, 務爲均定’事也。 洞布與家座, 邑規各異, 不可以一概而論, 使之從便釐正。 ‘其一, 糶糴不遵法例, 爲弊多端, 今以社倉之法, 移爲邑倉通行之例’事也。 邑倉自有舊法, 社倉亦有新規, 其在新不創、舊不革之義, 猝難變通, 博採物議而處之。 ‘其一, 畿邑守令, 依他道例, 呈由巡營,

	그 하나는, 조적(糶糴)하는 것을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니, 이번에 사창(社倉)의 법을 읍창(邑倉)에 옮겨서 통행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읍창은 원래 옛 법이 있고 사창도 새로운 규정이 있으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옛날 것을 고치지 않는 뜻으로 볼 때 갑자기 변통하기는 곤란하니 공론을 받아들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경기 고을 수령은 다른 도의 규례에 따라 감영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문건을 첨부하여 이조(吏曹)에 발송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이 관청을 오래도록 비우는 것은 심한 폐단의 근원이 되며 경기의 고을에서는 무상(無常)으로 왕래하는 것이 특별히 고질적인 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첨부하여 발송하는 문제는 이전에 신칙한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불법적으로 도축(屠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받지 말고 모두 다 형장을 쳐서 귀양 보내는 문제입니다. 불법 도살에 대한 금령이 매우 엄하였으나 지방 고을에서는 아예 지키지 않고 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속죄금을 받거나 귀양을 보내는 것이 한 가지 규례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경중을 가려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粘移吏曹’事也。 守令曠官, 最是隳瘝之源, 而畿邑之無常往來, 尤爲痼弊。 粘移一款, 依前飭施行。 ‘其一, 私屠勿許收贖, 一竝刑配’事也。 私庖禁令, 不啻截嚴, 外邑之專事抛置, 極爲可駭。 而罰鍰與編配, 雖是一例, 此亦不可用一切之法, 分輕重酌處事, 分付何如。” 竝允之。
고종 11권, 11년 (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11월 6일(을사) 2번째기사 암행어사 박용대의 별단에 따라 물에 씻겨 나간 토지에 해당하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박용대(朴容大)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진전(陳田)에서 기전(起田)을 각별히 조사하여 밭이 강바닥으로 되었거나 물에 떨어져나간 몫의 조세에 도로 채우는 문제입니다. 본 도의 재해 형편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지만 조정에서 염려하여 재해 면적으로	---------- ---------- ---------- -- 議政府啓: “卽見忠淸右道暗行御史朴

조세의 보충 문제를 의논하다	내려준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전을 조사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의 별단(別單)에 대한 복계(覆啓)에 자세히 있으니, 이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안면도(安眠島)에서 배를 만드는 재목에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군교(軍校)에게 맡기지 말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거행(擧行)한 다음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시행하며, 몰래 나무를 베어낸 자는 형장을 때리고 귀양 보내되 속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재목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반드시 본 도에 의지해야 할 것인데 최근에는 마구 베어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行會)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수선고(修繕庫)를 무엇 때문에 새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소나무 속죄금에 매달려 절도 없이 비용 지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금지한 뜻이 도리어 몰래 소나무를 베어내는 발판으로 될 것이니 암행어사의 논의는 확실한 소견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창고는 혁파(革罷)해 버리고, 몰래 소나무를 베어낸 자는 모두 다 형배(刑配)할 것이며, 나라의 공문에 따라 나무를 벨 때에는 차사원(差使員)을 정해서 보내자는 논의도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감영, 병영, 수영에 분치(分置)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회덕(懷德)의 계유년(1873) 조의 전세에서 세납은 면제하고 기병, 보병, 포병의 군량 등 각종 명색의 무명은 특별히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쌀이건 무명이건 물론하고 다 정식(定式)이 있으므로 감히 위반할 수 없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음성(陰城)의 규례대로 계유년(1873) 조는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함으로써 동일하게 혜택을 입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태안 방어사(泰安防禦使)는 침몰된 배의 쌀을 건지거나 검시 사건	容大別單, 則其一, '舊陳中另執査起, 還充其川浦災'事也。 本道災形, 雖曰極備, 已有朝家之軫念災結, 略有劃下者, 必當均被惠澤。 而至若査起之方, 則悉於左道繡單回啓, 依此施行。 其一, '安眠島船材烙給, 勿任軍校, 定差員擧行後, 報巡營狀聞施行, 偸斫者刑配, 無敢收贖'事也。 材木之取用, 必靠於本島。 而近年濫斫許多, 向有筵稟行會者, 是也。 所謂修繕庫, 未知緣何創置。 專以松贖, 用下無節, 則當初設禁之意, 反作偸松之階, 繡論的有所見。 該庫革罷, 犯斫者一竝刑配。 因京關取斫之時, 定送差員, 此論亦好。 以此成節目, 分置營梱。 其一, '懷德癸酉條田稅稅作免稅, 騎步兵砲糧等, 各樣上納木, 特許代錢'事也。 公納, 毋論米與木邊, 皆有定式, 莫敢違越。 而備言其無柰何之境, 則深知民情而然。 依陰城例, 癸酉條竝許代納, 俾蒙一視之惠。 其一, '泰安防禦使, 除非拯穀檢獄, 勿許擅離'事也。 本府之特設防營, 亶爲海島要衝, 則其緊關可知。 如非不得不軍務面議, 無敢擅離之意, 分付何如?" 允之。

	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자리를 뜨게 하지 말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부에 특별히 방어영을 둔 것은 사실 섬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문제와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면대해서 의논할 군무가 아니라면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다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월 30일 (계사) 1번째기사 백살이 된 노인들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백 세가 된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가평(加平)의 이시진(李時鎭), 해주(海州)의 이회귀(李會龜)와 강문환(姜文煥), 순천(順天)의 김경팔(金敬八), 함흥(咸興)의 문경(文璟), 수원(水原)의 황종문(黃鍾文)이다.】	三十日。 命百歲老人加資。【加平李時鎭、海州李會龜·姜文煥, 順天金敬八、咸興文璟、水原黃鍾文】。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3일 (신미) 1번째기사 좌의정의 환갑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술과 연회비용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좌의정(左議政)의 환갑이 멀지 않았다. 그날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이등악(二等樂)을 보낼 것이며 연회 물품은 탁지(度支)에서 넉넉히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初三日。 敎曰: “左議政回甲不遠。其日遣承旨宣醞, 賜二等樂。 宴需, 令度支從優輸送。”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7일 (을해) 1번째기사 내일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성균관 유생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라. 좌승지(左承旨)와 대사성이 함께 가서 나누어주라.” 하였다.	初七日。 敎曰:“明日館學儒生處, 當頒餻矣。 左承旨與泮長, 偕往頒給。”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8일 (병자) 1번째기사 세자궁의 첫돌이라 모두들 축하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 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정경(宗正卿), 의빈(儀賓), 보양관(輔養官), 유선(諭善), 부(傅), 이사(貳師),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2품 이상,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오늘은 세자궁의 첫돌입니다. 생각건대 성상의 한가득 기쁜 마음과 자성(慈聖)의 기쁨이 참으로 어떠하겠습니까? 경사를 축하하는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지난해보다 더욱 기쁩니다.” 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오늘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은 온 나라가 같습니다. 나라의 형세가 공고해지고 인심이 단합되어 더더욱 끝없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한 해 동안 총명하게 잘 자라 지금 첫 돌을 맞았으니 더욱 공손히 칭송하고 두 손 모아 축복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고, 판부사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신이 세자를 본 지 조금 오래 되었는데 그간 모습과 기상이 점점 영특해지고 살이 오르셨으니 경축하는 심정을 이루 다 형용하여 아뢸 길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初八日。 時原任大臣、閣臣、宗正卿、儀賓、輔養官、諭善、傅、貳師、賓客、春桂坊二品以上承史、同爲入侍。 領府事李裕元曰:“今日卽世子宮初度也。 伏想聖心欣滿, 而慈聖嘉悅, 尤當何如哉? 下情慶祝, 猶有加於昨年矣。” 領敦寧金炳學曰:“今日歡祝, 中外所同, 而國勢鞏固, 人心維繫, 益迓無疆之休矣。” 判府事洪淳穆曰:“周歲之頃, 善就岐嶷, 今當初度, 尤切欽頌攢祝之至矣。” 判府事朴珪壽曰:“臣仰瞻稍久, 伏想其間, 姿象漸就岐嶷, 肌膚益加豐潤。 慶祝之忱, 益無以形容仰達矣。” 左議政李最應曰:“今日忭歡, 果無以形達矣。” 右議政金炳國曰:“國家萬億年無疆之休, 又自今日伊始。 九如之頌, 四重之歌, 天心默佑, 民情歡欣。 慶忭之忱, 不

	“오늘의 기쁨은 과연 형용하여 아뢸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나라의 억만년 끝없는 복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구여(九如)를 읊조리고 사중(四重)을 노래하니 천심(天心)이 묵묵히 돕고 백성들이 기뻐하여, 경축하는 마음은 이루 다 형용하여 아뢸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는 과연 자성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겁다. 아까 하사한 떡은 모두 잘 먹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미 공손히 받아서 다같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첫 돌에 떡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고사(故事)입니다.” 하였다. 좌의정에게 명하여 왕세자를 안고 나가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줄 알고 때로는 팔을 들어 붓을 가지고 장난한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벌써 스스로 놀면서 붓을 가지고 글자를 쓰는 것으로 보아 뒷날 학문을 좋아하리라는 것을 우러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勝形達矣。” 敎曰: “予果以慈聖嘉悅爲喜也。 俄者賜餻, 果皆善啖耶?” 裕元曰: “果已祗受共飽, 而初度設餻卽是故事矣。” 命左議政奉抱王世子而出, 令諸臣竝瞻。 敎曰: “近日則能解呼爺孃, 或扶腕弄筆。” 炳學曰: “已自嬉遊, 弄筆畫字, 他日好學, 可以仰揣矣。”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20일 (무자)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길한 날 좋은 때에 세자를 책봉하는 예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바로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우리나라를 돈독히 도와 경사를 쌓으신 것이다. 위로는 자성(慈聖)께서 기뻐하는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기뻐하는 마	敎曰: “日吉辰良, 冊儲禮成。 此乃皇天祖宗, 篤佑積慶於邦家者也。 上以供慈聖嘉悅之歡, 下以答臣民欣告之心。 仰遵列朝彝典, 不可無識喜之

세자의 책봉식을 맞아 70세 이상의 관리 등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음에 답하기 위하여 우러러 열조(列朝)의 떳떳한 법을 따라 기쁨을 표시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조관(朝官)으로서 70세가 되고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가 되었는데 당상의 품계에 이르기 못한 자들은 모두 한 자급을 더해 주어라. 제도(諸道)의 구환(舊還) 30만 석(石), 공인(貢人)들이 이전에 물지 못한 1만 석, 시민(市民)의 요역(徭役)은 석 달 동안, 반인(泮人)들의 요역은 30일 동안 탕감해 주고, 군전(軍錢), 결전(結錢), 승역세전(僧役稅錢), 공전(貢錢)은 모두 적당히 견감해 주어 경사를 넓히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擧。 朝官年七十、士庶年八十而未至緋玉之陛者, 竝加一資。 諸道舊還三十萬石、貢人舊遺在一萬石, 市民徭役限三朔、泮人徭役限三十日, 蕩減; 軍錢、結錢、僧役稅錢、貢錢, 竝量宜蠲減, 以示廣慶之意。"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3월 12일 (기유) 1번째기사 호조에서 각 관청에 남아 있는 쌀과 돈의 양을 보고하다	호조(戶曹)에서, '각사(各司)에서 바칠 갑술년(1874)의 각종 원공(元貢)에서 〖당년에〗 지출할 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수량이 쌀이 7,744섬, 돈이 1,087냥입니다. 도에 분담해서 마련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十二日。 戶曹以"各司各種甲戌元貢內除用下餘數, 米七千七百四十四石, 錢一千八十七兩。 分道磨鍊, 別單書入"啓。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4월 12일 (무인) 1번째기사 모화관에서 칙사를 맞이하다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를 맞이하였다.	十二日。 詣慕華館, 迎勅。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8월 6일 (경오) 3번째기사 오대산 사고에서 책궤를 엎고 보자기를 도적질해 간 변고가 있다고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 있는 말들은 모두 둔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올가을에 제주(濟州)의 공마(貢馬) 20마리를 수원부(水原府)에서 직접 획송(劃送)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강화도(江華島)는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수량을 정해서 획송하도록 태복시(太僕寺)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보장(保障)의 지역이니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식년(式年)에는 10필(匹), 보통 해에는 5필씩 획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 감사(江原監司) 윤병정(尹秉鼎)의 장계(狀啓)로 강릉(江陵) 오대산(五臺山)의 사고(史庫)에서 생긴 변고에 대하여 묘당에서 품처하라는 유지가 있었습니다. 금궤 석실(金櫃石室)에 보관한 것이면 얼마나 엄한 비밀이기에 이렇듯 전에 없던 변이 있단 말입니까? 경고하는 말로써만 그칠 수 없습니다. 봉심(奉審)하여 고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종친부(宗親府)와 춘추관(春秋館)에서 시급히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 사단(事端)은 전적으로 치도(緇徒)가 번역(番役)을 괴롭게 여기고 오랫동안 감정을 품은 데서부터 생긴 것이며 죄과를 남에게 넘겨씌우려다가 스스로 중한 죄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번에 승려 재명(在明)은 창살을 칼로 베어내고 궤짝을 손으로 뒤지고 붉은 보자기는 도적질해내고 자물쇠는 버렸습니다. 저지른 제반 조목은 극률(極律)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승려 득청(得淸)과 맹흔(孟欣)은 재물을 주고 부역을 면제해준다는 말로 재명을 꾀	

	어서 사주하여 모략을 꾸밀 작정을 하였으니 더욱 음흉합니다. 그 죄상을 따져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도신(道臣)이 결안(結案)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며 그 나머지 승려 재형(在炯)과 도망 중에 있는 자들은 기한을 정해 염탐해서 체포하고 엄형(嚴刑)을 가해서 원배(遠配)해야 할 것입니다. 총섭(總攝)과 승장(僧將) 등은 잘 지켜내지 못하였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똑같이 형배(刑配)하고, 해당 부사는 해부(該府)에서 나감(拿勘)하도록 하고, 사고의 참봉은 본도(本道)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며, 도신이 죄인을 분등(分等)하면서 단지 읍보(邑報)에만 의거하여 논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엄중히 추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고의 중요하기가 어떠한가? 이와 같이 궤를 뒤지고 보자기를 훔쳐가는 변고가 있다니 놀랍고 통분한 생각을 이길 수 없다. 종친부와 춘추관에서 봉심하는 것은 사체에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때에 식사를 공급한다면 폐단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도내(道內)의 찰방(察訪)이 원래 춘추관 벼슬을 겸함(兼銜)한 사람이니 종친부에 정(正)의 자리를 가설(加設)하고 단부(單付)하여 봉심하고서 수리(修理)한 연후에 등문(登聞)하도록 하라. 세 놈이 범한 죄로 말하면 매우 흉악하고도 고약한 것이니 원래 극률로 처단하여야 하겠으나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를 미루어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며, 그 나머지 놈들은 도신이 경중을 구별하여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라. 해당 부사는 나감해야 하겠으나 참작해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보류하여 당분간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12권, 12년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9월 22일 (을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9월 23일 (병진) 1번째기사 조세를 바치치 못한 지역의 감사와 수령을 처벌하게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경사(京司)의 재용이 지금처럼 고갈된 적이 없어 월봉(月俸)의 조달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봄에 연석(筵席)에서 한 신칙이 엄하였고 세곡(稅穀)을 정해진 기한에 수량대로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각 아문(衙門)과 각 영문에서 납부하지 않은 그 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바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탓입니다. 법과 기강이 있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주(羅州)에서는 계유년(1873) 몫만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갑술년(1874) 몫까지 바치지 않아서 만여 석(石)이나 됩니다. 해당 목사(牧使)는 현고(現告)를 받들어 해부(該府)에서 나감(拿勘)하도록 하소서. 영암(靈巖), 임피(臨陂), 공주(公州) 등 세 고을의 수령(守令)들도 현고를 받들어 나감하도록 하소서. 도신(道臣)이 제대로 검찰(檢察)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모두 현고를 받들어 엄하게 추고(推考)하소서. 감색(監色)과 선격(船格)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도신이 구핵(鉤覈)하여 속히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동목(大同木)과 군포(軍布)를 지나치게 지체시킨 자에 대해서는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초출(抄出)해 의금부에 보고하게 해서 논감(論勘)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도신과 수령들이 법의(法意)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납기를 어기는 폐단이 이	二十三日。 次對。 左議政李最應曰: “京司財用匱竭, 莫今日若。 月朔支調, 末由排備。 春間筵飭截嚴, 稅穀定限準納, 而各衙門各營米邊不納厥數太夥。 此非民間未捧, 卽從中弄奸也。 法綱所在, 駭然極矣。 羅州, 非但癸酉未收, 甲戌愆納, 至萬餘石。 該牧使捧現告, 令該府拿勘。 靈巖、臨陂、公州等三邑守令, 亦捧現告拿勘。 道臣之不善檢察, 誰執其咎? 竝捧現告重推, 監色、船格等所犯, 道臣鉤覈, 亟施梟警。 木布過當淹滯者, 各司、各營抄出報府, 以爲論勘之地何如?” 敎曰: “道臣、守宰, 若知法意之重, 則愆納之弊, 如是夥多? 不憚朝令, 極爲駭歎。 依所奏擧行。” 最應曰: “漕倉所屬諸邑之挽近不輸穀而輸錢, 已非法意。 於斯之間, 僞弊滋生, 倉屬色吏, 收捧高價, 或全數乾沒, 遷

	처럼 많겠는가? 조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참으로 놀랍고 한탄스럽다. 아뢴 바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조창(漕倉)에 속한 여러 고을에서 최근 곡식을 수송하지 않고 돈으로 보내는 것만도 벌써 법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 사이에 잘못된 폐단이 점점 불어나 조창에 소속된 색리(色吏)들이 높은 값으로 거둬들이고 혹은 전량을 건몰(乾沒)하기도 합니다. 시일을 지연시키고 조악(粗惡)한 것으로 채우면서 기한을 어기는데, 늑장을 부리며 선적하고 일부러 배를 침몰시키는 일이 도처에서 계속됩니다. 경기의 배가 내려가서 간사한 짓을 하는 것도 한 줄에 꿴 듯이 잇달아 있습니다. 곡식 한 알도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창속(倉屬)과 선격(船格)의 수중에 놀아나니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여러 차례 조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징계하여 그치는 효과가 없으니 놀라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창고를 열고 세곡을 받아들여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내용을 삼도(三道)의 도신들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되 만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에는 즉시 파직시키고 감죄할 것이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신칙해서 감히 그전처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잇따른 동래부(東萊府)의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日本)의 비선(飛船)이 공증사서(公證私書)라고 핑계를 대면서 번개같이 왕래하지 않는 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이 그들에게 곡물을 화매(和賣)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분명히 지적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염려가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정(邊政)에 관련되는 만큼 심상하게 처리해 버릴 수는 없으니, 도신과 수신	延時日, 或充麤劣, 違越定限, 晩裝故敗, 在在相續。 京船下去, 其所做奸, 亦一串相連也。 粒粒辛苦, 皆出於民, 而舞弄於倉屬船格之手, 萬萬痛惋。 屢度朝令之下, 無懲戢之效, 不覺駭歎。 開倉捧穀, 行將不遠, 以此意關飭三道道臣, 如前稽忽, 劃卽罷勘事, 行會何如?” 敎曰: “別般嚴飭, 毋敢如前稽忽也。” 最應曰: “連見萊府謄報, ‘日本飛船, 託以公證私書, 閃忽往來, 殆無虛月。 必是奸細之徒, 和賣穀物之故。 雖無眞的之可執, 難保無慮’云。 有關邊政, 不可尋常處之。 嚴飭道帥臣及沿海守令, 如有現捉者, 卽其地梟警後狀聞何如?” 敎曰: “嚴飭可也。” 最應曰: “卽見灣府狀啓, 則‘禮單卜駄, 混付進香使之行’云。 大抵使臣之入北也, 府尹與書狀官, 眼同首譯, 搜驗各種, 自是職責。 而搜驗不實, 揆法駭然。 該府尹與書狀官, 亟施譴罷, 首譯拿勘何如?” 敎曰: “所奏切當, 而此時迎送之弊, 遠程行役之勞, 竝不可不念。 灣尹書狀官請罷安徐, 首譯亦一體分揀。” 最應曰: “近日百隷怠慢。 向日動駕時, 東西班全

	및 연해의 수령들을 엄하게 신칙하되 만일 현장에서 붙잡히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곧바로 효수하여 경계하도록 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방금 의주부(義州府)의 장계(狀啓)를 보니, ‘예단(禮單)과 복물(卜物)을 진향사(進香使) 편에 뒤섞여 부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신(史臣)들이 청(淸)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부윤(府尹)과 서장관(書狀官)이 수역(首譯)의 입회 하에 각종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본래 그들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실속 있게 하지 못하였으니, 법으로 따져보건대 놀랍습니다. 해당 부윤과 서장관은 속히 견파(譴罷)하고, 수역은 나감(拿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사리에 꼭 맞는다. 그러나 이때에 영송(迎送)에 따른 폐단과 먼 길을 가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주 부윤과 서장관을 파직시키자는 청은 보류하고 수역도 일체 분간(分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요즘 모든 예속(隷屬)들이 태만하여 지난번 동가(動駕)할 때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이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사체(事體)로 볼 때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만약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현고를 받들어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우선 엄하게 신칙함으로써 명령이 퍼지도록 하라.” 하였다.	不成樣, 其在事體, 極涉慨然。 已往雖不追究, 來後又若有闕, 捧現告重勘何如?” 敎曰: “爲先嚴飭, 以爲令申可也。”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 (光緖) 1년) 9월 26일 (기미) 2번째기사 의주 부윤 황종현의 보고에 따라 사신 접대비용으로 은화를 빌려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 부윤(義州府尹) 황종현(黃鍾顯)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 관세청(管稅廳)의 은화(銀貨)를 거의 다 사용하여 당장 이번 진향사(進香使)와 절행(節行)에 공용(公用)할 은의 부족액이 1만 2,000여 냥(兩)인데 마련할 길이 없으니 전례대로 특별히 대하(貸下)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행이 잇달아 은화의 비축이 고갈되었으므로 앞으로 응당 써야 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의 사세(事勢)를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戶曹)에 있는 은화 가운데 1만 2,000냥을 우선 대하해 주었다가 세입(稅入)이 조금 펴지기를 기다려 수량대로 도로 납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義州府尹黃鍾顯所報, 則‘本府管稅廳銀貨, 幾盡用下, 目今進香使及節行, 公用銀不足, 爲一萬二千餘兩, 而容措無路, 依已例特爲貸下’爲辭矣。 使行絡繹, 銀儲告罄, 前頭應用, 莫可措辦。 該府事勢, 不容不另念, 以度支所在銀中一萬二千兩, 姑許貸下, 待稅入稍紓, 準數還納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 (光緖) 1년) 9월 27일 (경신)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동향 대제를 행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행하였다. 서계(誓戒)를 받는 예가 끝나자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반열(班列)의 위의(威儀)에 대하여 신칙한 연석의 하교가 아주 엄하였는데도 오늘 서계 때 반열의 위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기로소(耆老所) 및 실제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3품 이상은 현고(現告)를 받들어 모두 파직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七日。 詣勤政殿, 行宗廟冬享大祭。 受誓戒禮畢。 左議政李最應曰: “班儀申飭, 筵敎截嚴, 今日誓戒, 班儀不成。 寧有如許道理? 耆社及實病實故外, 三品以上捧現告, 請竝施罷職之典。” 允之。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0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11일에 영희전에서 작헌례를 거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선침(仙寢)에 대신을 시켜 대신 전작(奠酌)하여 조금이나마 정례(情禮)를 폈지만 올해의 이 날은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이번 11일에는 마땅히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겠다.” 하였다.	敎曰: “仙寢攝獻, 少伸情禮, 而是年是日, 尤切追慕。 今十一日, 當詣永禧殿, 親行酌獻禮矣。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0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十一日。 詣永禧殿, 行酌獻禮。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0월 11일(갑술) 2번째기사 영희전 작헌례에 참가한 관리에게 시상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고,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강하(趙康夏), 대축(大祝) 김영목(金永穆), 집례(執禮) 박봉빈(朴鳳彬)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永禧殿酌獻禮時都提調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趙康夏、大祝金永穆、執禮朴鳳彬, 竝加資。
고종 12권, 12년 (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2월 18일(신사) 4번째기사 사사로운 도살을 금지시키고 어기는 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사로운 도살을 금지시키고 신칙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도성 안이나 강변이나 교외에서 양반 가문을 빙자하여 도살을 낭자하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법을 관장하고 규찰하는 곳에서 진실로 철저하고 통렬하게 금지하고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처벌했다면, 어찌 이처럼 해이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議政府啓: “私庖禁飭, 前後何如? 而城闉之內, 江郊之間, 憑藉班戶, 宰屠狼藉, 聽聞極爲可駭。 掌法糾察之地, 苟能築底痛禁, 隨現嚴懲, 則寧有若是懈弛之理乎? 刑漢兩司堂上及左右捕將, 竝從重推考, 犯屠諸漢, 這這刑配

귀양보내게 하다	형조와 한성부 두 관아의 당상과 좌우 포도대장을 모두 엄중하게 추고(推考)하고 밀도살을 한 놈들도 하나하나 형배(刑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2월 29일(임진) 2번째기사 사복시에서 각 목장의 말 수효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牧場) 마축(馬畜)의 수효가 5,016필(匹)이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2권 끝】	太僕寺以“各牧場馬畜數五千十六匹”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十二終】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월 1일(계사) 5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월 18일(경술) 2번째기사	총융청(總戎廳)에서, ‘가의 대부(嘉義大夫) 황도원(黃道源)과 출신(出身) 황석원(黃錫源)이 전(錢) 100냥(兩), 백미(白米) 20석(石), 엽초(葉草) 2척(隻)을	總戎廳以“嘉義黃道源、出身黃錫源, 錢文一百兩、白米二十石、葉草二隻, 來納本陣, 願助軍需之意”啓。 時, 紳

황도원과 황석원 등이 군사비용으로 돈과 쌀 등을 바치다	본진(本陣)에 와서 바치면서 군수에 보태기를 바랍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때 신사(紳士)·시민(市民)·이교(吏校)로써 군수(軍需)나 그 밖의 물품을 부대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士、市民、吏校之來納軍需及他物品于軍前者, 多焉。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월 28일 (경신) 5번째기사 찬선 임헌회가 상소하여 고기와 쌀을 준 것을 사양하다	찬선(贊善) 임헌회(任憲晦)가 상소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한 데에 사양하니,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贊善任憲晦陳疏, 辭米肉之頒。 賜優批。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2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삼군부에서 각 도의 포수들에게 식량과 돈을 주었다고 보고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각도(各道)에서 뽑아 올린 포수(砲手) 4,034명(名)과 뒤따라 올려 보내온 포수 784명 등에게 돌아갈 때의 식량과 돈을 그 도리(道里)를 헤아려 10리(里)당 1전(錢)씩 쳐서 도합 2만 6,860냥 4전(錢) 6분(分)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三軍府以"各道招上砲手四千三十四名及追後上來砲手七百八十四名等回糧錢, 計其道里, 每十里一錢, 合爲二萬六千八百六十兩四錢六分, 分給。"啓。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2월 24일 (병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일본에 증정할 물건과 사신들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신사(修信使)는 지금 막 차출(差出)하였습니다. 일본에 증정할 물건과 예단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하여 준비하도록 하며, 사신 일행의 노자도 함께 마련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四日。 議政府啓:"修信使, 纔已差出矣。 彼國贈物與禮單, 令該曹參酌措備, 使行盤纏, 一體磨鍊之意, 分付何如?" 允之。

노자 등에 관하여 아뢰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3월 26일 (무오)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를 지내고 서계를 받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에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六日。 詣勤政殿, 行宗廟夏享大祭受誓戒。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4월 16일 (정축) 2번째기사 기우제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지내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4월 19일 (경진) 1번째기사 두 번째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지내다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十九日。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4월 22일 (계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연이어 거행했지만 비 올 기미는 아직도 묘연하다. 백성들의 정황에 생각이 미치면 하루가 급하니, 세 번째 기우제를 오늘 앞당겨 설행	二十二日。 敎曰:“圭璧連擧, 雨意尙邈。 念及民情, 一日爲急。 三次祈雨祭, 今日進定設行, 當親傳香矣。”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設行)할 것이며 내가 직접 전향(傳香)하겠다.” 하였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4월 22일 (계미) 4번째기사 세 번째 기우제를 남단과 우사단에서 지내다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4월 24일 (을유) 1번째기사 네 번째 기우제를 사직단과 북쪽 교외에서 지내다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사직단(社稷壇)과 북쪽 교외에서 지냈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4월 27일 (무자) 2번째기사 다섯 번째 기우제를 종묘에서 지내다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종묘(宗廟)에서 지냈다.	行五次祈雨祭于宗廟。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初一日, 辛卯。 行六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 漢江沈虎頭。

(光緖) 2년) 5월 1일 (신묘) 1번째기사 여섯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과 목멱산에서 지내다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에서 지내고 한강(漢江)에 호두(虎頭)를 담그는 의식을 행하였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5월 4일 (갑오) 2번째기사 일곱 번째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지내다	일곱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行七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5월 7일 (정유) 1번째기사 여덟 번째 기우제를 남단과 우사단에서 지내다	- 여덟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初七日。 行八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5월 9일 (기해) 1번째기사 사직단에서 특별 기우제를 지내다	특별히 사직단(社稷壇)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初九日。 行別祈雨祭于社稷。
고종 13권, 13년		初二日。 宗廟別祈雨祭, 遣大臣, 設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2일(계해) 1번째기사 종묘의 특별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어 치제하다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行。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5일(병인) 1번째기사 남단의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어 치제하다	남단(南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初五日。 南壇別祈雨祭, 遣大臣, 設行。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8일(기사) 1번째기사 북쪽 교외의 기우제에 종친을 보내어 치제하다	북쪽 교외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종친(宗親)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初八日。 北郊別祈雨祭, 遣宗親, 設行。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11일(임신) 1번째기사 선농단의 기우제에 의빈을 보내어 치제하다	선농단(先農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의빈(儀賓)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十一日。 先農壇別祈雨祭, 遣儀賓, 設行。
고종 13권, 13년		敎曰: “雩祀壇別祈雨祭, 再明日, 遣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12일(계유) 2번째기사 우사단의 기우제에 숭품 각신을 보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우사단(雩祀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는 모레 숭품 각신(崇品閣臣)을 보내어 정성을 다해 설행하라.” 하였다.	崇品閣臣, 虔誠設行。”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12일(계유) 3번째기사 도살 금지령을 어긴 죄인을 놓아준 포도대장을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밀도살에 대한 금령(禁令)이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항간에서는 계속 도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 포도청(捕盜廳)에 특별히 신칙하여 낱낱이 정탐하여 잡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듣건대 좌포도청(左捕盜廳)에서 한 놈을 붙잡았다가 곧바로 풀어주었다고 하니,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처벌과 용서를 결정한 것은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아주 해괴합니다. 좌포장(左捕將) 백낙정(白樂貞)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소서.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말하자면 염탐하고 살피는 정사가 매우 태만하니 두목 포교(捕校)에게 대략 곤(棍)을 치는 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포장(捕將)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어제 밤에는 순찰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래에 법이 점점 해이해지고 조정의 체통이 모두 무너져 전에 없던 폐습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포장(右捕將) 김기석(金箕錫)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는데 곧바로 묘당(廟堂)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용서하였다.	議政府啓: “私屠禁令, 前後何如? 而閭里之間, 一直狼藉云, 故另飭兩捕廳, 使之這這偵捕矣。 聞自左捕廳, 捉得一漢, 旋卽放送, 違拒朝令, 擅自闊狹。 揆以事體, 萬萬駭然。 左捕將白樂貞, 施以譴罷之典。 且以右捕廳言之, 訶察之政, 甚涉慢忽, 頭目捕校, 略施棍治矣。 該捕將, 謂以情蹤難安, 昨夜不爲發巡云。 挽近法綱漸弛, 朝體一壞, 前所未有之習, 乃至於此。 右捕將金箕錫, 亦施譴罷之典何如?” 允之。 旋因廟啓, 分揀。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十六日。 行九次祈雨祭于北郊。

(光緖) 2년) 윤5월 16일(정축) 1번째기사 아홉 번째 기우제를 북교 교외에서 지내다	아홉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북교 교외에서 지냈다.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16일(정축) 2번째기사 도룡농을 놓고 지내는 기우제를 모화관의 연못가에서 3일 동안 지내다	종2품 무신(武臣)을 파견하여 석척 동자(蜥蜴 童子)들이 지내는 기우제(祈雨祭)를 모화관(慕華館)의 연못가에서 3일 동안 지내고 마쳤다.	遣從二品武臣, 蜥蜴童子祈雨設行于慕華館池邊, 三日而止。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21일(임오) 2번째기사 사직단에서 직접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詣社稷, 行別祈雨祭。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22일(계미) 1번째기사 비가 왔으므로 보사제는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마음으로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사직단(社稷壇)에서 빌었는데 규벽(圭璧)을 올려서 아뢰자마자 영험이 메아리와 같아 단비가 쏟아져 밤부터 낮까지 계속되어 삼농(三農)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농사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되었으니, 기우제(祈雨祭)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히 빌어서 비가 온 뒤에 지내는 보사제(報謝祭)를 입추(立秋)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행하는 전례가 있으니 즉시 날을 가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二十二日。 禮曹啓:“聖心憫旱, 親禱社稷, 圭璧纔陳, 靈應如響, 甘霆霈然, 夜以繼晝, 慰滿三農, 民事萬幸。 祈雨祭停止, 親禱得雨後報謝, 不待立秋設行, 旣有已例, 卽爲擇日擧行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22일(계미) 2번째기사 여주목의 전세미와 콩과 대동미 등을 10년 동안 상정값으로 바치도록 하다	여주목(驪州牧)의 전세(田稅)로 바치는 미(米)와 태(太) 도합 900석(石), 대동세(大同稅)로 바치는 미와 태 도합 1,300석을 모두 10년 기한으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고 홍수로 인해서 포락(浦落)된 진결(陳結)은 종전대로 면세(免稅)하도록 명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입시(入侍)하였을 때, 해당 목(牧)은 능침(陵寢)을 받드는 곳이지만 조세가 번잡하고 무거워서 아전(衙前)과 백성들이 모두 곤경에 처하였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命驪州牧田稅米·太合九百石、大同米·太合一千三百石, 竝以限十年詳定代納, 成川浦落陳結, 依舊蠲頃。 因判府事洪淳穆入侍時, 以“該牧陵寢所奉之地, 而供煩賦重, 吏民俱困”爲奏也。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윤5월 22일(계미) 3번째기사 사직단의 기우제에 참석하지 않은 관리들을 견책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제 사직단(社稷壇)에서 친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것은 실로 백성들을 걱정하고 농사를 중시하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보련(步輦)으로 대신하고 시위(侍衛)를 간소하게 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일을 일체 없게 하였는데, 보통의 격식을 훨씬 벗어난 일이니 보고 듣는 사람들치고 누군들 감히 황송해하고 흠탄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달려 나와서 성대하게 공경하는 뜻을 실천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배종(陪從)하는 사람과 참반(參班)이 전혀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고 인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이날의 성대한 의식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편의만을 추구하는 폐습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겠습니까? 사체와 도리로 볼 때 분개스럽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기로소(耆老所) 및 모두가 아는 확실한 병이나 확실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議政府啓: “昨日社壇親行禱雨, 寔由於憂民重農之聖意, 而至若代以步輦, 簡其侍衛, 煩民之事, 一切蠲除, 迥出常格。 瞻聆攸暨, 孰敢不悚惶而欽歎乎? 凡在廷之列者, 宜其濟濟趨造, 思效祗敬之義, 而陪從與參班, 全不成樣, 未滿若而員而止。 苟能怵惕於此日盛擧, 則占便之習, 豈至於是也? 其在事體道理, 不可旦以慨然爲言。 耆社及衆所共知實病實故元在外外, 不參之文蔭武三品以上, 令政院捧現告, 竝施譴罷之典何如?” 允之。

	에 참석하지 않은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3품 이상을 승정원(承政院)을 시켜 현고(現告)를 받게 하고 아울러 견파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2일 (신묘) 2번째기사 완화군 방에 돈과 쌀을 실어보내도록 하다	호조(戶曹)에서, ‘완화군방(完和君房)의 면세전(免稅田) 800결(結)에 대해서 본조(本曹)에서 이미 봉상(捧上)한 전(錢)과 미(米)로 수송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미 522석(石) 12두(斗) 5승(升), 전 2,877냥(兩) 5전(錢) 2분(分)을 본방(本房)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고을의 숫자대로 마련(磨鍊)해서 수송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戶曹以“完和君房免稅結八百結, 自本曹錢米已捧上者輸送事, 命下矣。 米五百二十二石十二斗五升、錢二千八百七十七兩五錢二分, 依本房望呈邑數磨鍊輸送之意。” 啓。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비가 올 때까지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이 가뭄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다시 혹심한가? 지난번에 친히 기우제를 올려 한 차례 비가 오는 신령의 감응을 얻었으나 정성이 완전히 이르지 못하여 두루 흡족하지 못하였고 우리 민정의 다급함을 풀어주지 못하였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한탄스러우며 이어서 걱정스럽고 두렵다. 내가 듣건대 재앙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래한 연유가 있으니 그런 허물을 찾아본다면 어찌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우제를 이제 다시 거행하게 되었는데, 비가 올 때까지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여 대략 수성(修省)하는 도리를 조금이나마 펴고자 한다. 대신들이 혹 이로 인하여 인책하는 소장(疏章)을 올리는 일이 있으면 결코 군신상하가 진심으로 재앙을 물리치는 도리가 아니니, 모름지기 나	初三日。 敎曰:“今玆之旱, 胡爲而若是復酷也? 向日躬禱, 雖得一霈之靈應, 誠未盡格, 不能周洽, 未紓我民情之切急。 自顧慙歎, 繼以憂懼。 予聞災不虛生, 必有所召。 苟執厥咎, 此豈非在予一人乎? 圭璧今旣復擧, 限得雨, 避正殿, 減膳撤樂, 粗伸一分修省之義。 而大臣若或有因此引章之擧, 決非君臣上下以誠弭災之道。 須諒悉予至意。”

	의 지극한 뜻을 꼭 이해하라.” 하였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7일 (병신) 1번째기사 일본 이사관이 오는 날 연회를 베풀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웃 나라의 사신이 도착하면 연회를 베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이번에 이사관(理事官)이 배에서 내리는 날과 배에 오르는 날 관소(館所)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수관(講修官)과 반접관(伴接官)은 응당 참석해야만 하니,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官) 서승보(徐承輔)·남정순(南廷順)으로 하여금 특별히 가서 연회를 베풀어 접대하도록 하고 예조(禮曹)의 세 당상(堂上官)도 연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七日。 議政府啓: “隣使之來到也, 設宴致款, 自有古例。 今番理事官下船上船之日, 不可不設行宴饗於館所矣。 講修官、伴接官, 自當應參, 而政府堂上徐承輔、南廷順, 特令出往接宴, 禮曹三堂上, 亦使之參宴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8일 (정유) 1번째기사 일본 이사관이 오는 날 베푸는 연회장소는 사역원으로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 이사관(理事官)에게 상선연(上船宴)과 하선연(下船宴)을 베푸는 처소를 사역원(司譯院)으로 정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八日。 議政府啓: “日本理事官上下船宴饗處所, 以司譯院爲之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十一日。 命禁釀酒、醪及製飴糖。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11일 (경자) 1번째기사 술과 막걸리를 빚는 것과 엿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다	술과 막걸리를 빚는 것과 엿 만드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아뢰었기 때문이다.	因政府爲防糜穀而啓也。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12일 (신축) 1번째기사 일본 이사관인 외무대승 미야모토 쇼이치를 접견하다	일본의 이사관(理事官)인 외무 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를 접견하고 이어 숭양문(崇陽門) 밖에서 사찬(賜饌)하였다. 〈일본국(日本國)의 비준책(比準冊)〉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가 가지고 왔다.】 보유천우천만세일계제조(保有天佑踐萬世一系帝祚) 대일본국의 황제는 이 글을 널리 알린다.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대대로 우의(友誼)를 두터이 하여 왔다. 이번에 특명전권 판리 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인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부전권 판리 대신(副全權辦理大臣)인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국으로 갔는데 기요다카 등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과 체약한 수호조규(守護條規)를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그것을 읽어보니 조문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마땅히 영원히 준행하여 양국의 친목을 공고히 하라. 신무 천황(神武天皇) 즉위 기원(紀元) 2536년 명치(明治) 9년 3월 22일 동경(東京) 궁중에서 직접 서명하고 옥새를 찍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외무대신(外務大臣)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전교하기를,	十二日。 抗見日本理事官外務大丞宮本小一, 仍賜饌于崇陽門外。 日本國批準冊【理事官宮本小一持來】: “保有天佑踐萬世一系帝祚大日本國皇帝, 以此書宣示。 大日本國與大朝鮮國, 世厚隣交。 玆特命全權辦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副全權辦理大臣議官井上馨, 往朝鮮國, 淸隆等, 將與判中樞府事申櫶、都總府副總管尹滋承所締約之修好條規, 歸奏。 朕閱覽之, 逐款允當, 予批準, 宜永遠遵行, 固兩國親睦。 神武天皇卽位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三月二十二日, 於東京宮中, 親署名, 鈐國璽, 奉勅。 外務大臣寺島宗則。” 敎曰: “判府事申櫶, 往來理事館所, 從便爲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이 이사관(理事官)의 관소에 오가는 것은 편의대로 하라.” 하였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6월 13일 (임인) 1번째기사 일본 이사관이 바치는 물건을 사역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다	반접관(伴接官)이, ‘일본 이사관(理事官)이 진헌한 물종 단자(物種單子)를 사역원(司譯院)으로 하여금 모두 받아들이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十三日。 伴接官以“日本理事官進獻物種單子, 令司譯院一體領納之意。”啓。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8월 11일 (기해) 1번째기사 개성 유수 홍승억이 평안도의 좁쌀 등을 규례대로 획급해 줄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홍승억(洪承億)이 장계로 청하여, ‘본영(本營)에서 관할하던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석(石)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을 전례에 따라 획급(劃給)해 주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지출 경비를 급대(給代)하는 것이 어느덧 연례가 되고 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一日。 議政府啓: “開城留守洪承億狀請, ‘本營句管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依此數劃送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군기시(軍器寺)에서 아뢰기를,	二十四日。 軍器寺啓: “本寺見今儲用罄竭, 支放與公下, 萬無排用之道。

(光緖) 2년) 8월 24일 (임자) 1번째기사 선혜청의 토산물 갑옷 등의 값을 군기시비용으로 쓰도록 하다	“본시(本寺)는 현재 저축해 둔 비용이 고갈되어 지방(支放)과 공하(公下)에 전혀 쓸 방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럴 때에는 선혜청(宣惠廳)에 갑주(甲胄)의 비용으로 저축해 둔 것 중에서 초기(草記)를 올리거나 연석에서 아뢰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 전례대로 별방물(別方物)인 갑주 32부(部)의 비용 가운데서 6부의 비용을 옮겨다 보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在前如此之時, 就惠廳甲胄價儲留中, 或以草記, 或以筵稟取用矣。 依已例, 別方物甲胄三十二部價中六部價, 移來補用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9월 2일 (기미) 1번째기사 지방 고을에서 곡식 반출을 막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듣자니 지방 고을에서 걸핏하면 방곡(防穀)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의리에서 볼 때 어찌 처음부터 중앙과 지방 사이에 피차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사는 마땅히 형편에 맞춰서 그 실정을 균등하게 해야 하니 빨리 편의대로 교역하여 서로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의 사정이 어렵다 하여 외부에 유통하는 것을 막는 도신(道臣)들과 수령들은 특별히 논죄(論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포도청(捕盜廳)에서 곡가(穀價)를 조종하는 것은 도리어 백성들의 소요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일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二日。 議政府啓: “近聞外邑輒多防穀。 揆以共濟之義, 何嘗有中外彼此之別乎? 恤民之政, 惟當順其勢而均其情矣。 亟許從便貿遷, 互資有無。 苟或有持難壅遏, 道臣、守令, 別般論警。 且捕廳之操縱穀價, 反啓擾民, 一體嚴飭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 (光緖) 2년) 9월 2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이 장계(狀啓)를 올려 참혹한 농사 형편	二十一日。 議政府啓: “慶尙監司朴齊寅狀陳農形慘歉, 繼請‘後錄諸條, 竝令政府稟處’爲辭矣。 社還米留庫條八

(무인) 1번째기사 영남 사창의 환곡을 진자로 동래에 준 쌀을 파는 것을 허락하다	을 진술하고, 이어서 뒤에 기록한 여러 조항에 대하여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사환미(社還米)로써 창고에 남아 있는 양이 8만 4,974석(石)인데, 현재 진자(賑資)로 획부(劃付)해서, 하납(下納)하여 유치한 몫에서 3만 석은 시가(時價)대로 팔고 특히 재해가 우심(尤甚)한 고을의 신환(新還)은 상정가(詳定價)로 대봉(代捧)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本色)으로 받겠습니다. 대동포(大同布)는 3분의 1에 한해서 돈으로 대납(代納)하고, 각영(各營)과 각 아문(衙門)에 상납하는 군포(軍布)와 악공 보포(樂工保布)는 분등(分等)하여 돈으로 상납하되, 특히 재해가 우심한 고을에서 대전(代錢)하는 몫은 절반에 한해 기한을 물려주고, 조운선(漕運船)으로 운반하는 각 고을의 궁방 세미(宮房稅米)와 악공 보포는 모두 매 석에 5냥(兩)씩 쳐서 대봉하고, 성향곡(城餉穀)은 절반에 한해 평지의 창고에서 받아서 저장해 두고, 내년 가을에 가서 본소(本所)에 다시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각년(各年)의 증렬미(拯劣米)는 단지 특히 재해가 우심한 고을에만 기한을 물려주고, 바닷가 연안 고을의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는 절반에 한해 기한을 물렸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수량대로 바치게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萬四千九百七十四石零, 劃付賑資, 下納留置條中三萬石, 從時價發賣, 尤甚邑新還, 以詳定代捧, 待明秋還作本色。 大同布限三分一以錢代納, 各營、各衙門上納軍布及樂工保布, 分等以錢上納, 而尤甚邑代錢條, 限折半停退, 漕運邑各宮房稅米及樂工保米, 竝每石五兩式代捧。 城餉限折半捧留平倉, 待明秋還納本所, 各年拯劣米, 只許尤甚邑停退。 沿海邑魚鹽船稅, 限折半停退, 待明秋準納事也, 竝依狀請施行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9월 23일 (경진) 1번째기사 역참과 진의 백성들도 구제하도록 하고 술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내리신 전교(傳敎)를 읽었는데, 재해 입은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글에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을 분획(分劃)하고, 계속해서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명절에 바치는 부채를 면제하라고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조치이며 큰 은혜입니다. 진헌(進獻)하는 물건은 이미 면제하도	二十三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臣於昨日, 伏讀傳敎下者, 爲災民懇惻之念, 溢於辭表。 特頒帑藏之分劃, 繼而有方物膳封節扇之蠲停, 甚盛擧也, 曠惠也。 進獻之需, 旣命蠲除,

빚는 것을 금지하다	록 명령하였으니 조정에 관례로 바치는 부채도 형편상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거기에 드는 물력(物力)을 모두 진자(賑資)에 쓰도록 해당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회정(李會正)의 장계(狀啓)에, 단천(端川), 명천(明川), 경성(鏡城)에서 포락(浦落)된 재결(災結) 95결(結) 14부(負) 9속(束)은 특별히 조세를 정지하도록 허락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토지를 개간하여 원래의 조세 총량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세 고을의 재해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올렸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하여 백징(白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허락하여 3년간 조세를 정지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기한이 되면 원래의 조세 총량을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그전에 외도(外道)에서 진휼할 때 역참(驛站), 목장(牧場), 진(鎭), 보(堡)의 백성들은 매번 고을의 백성들과는 구별되어 제외되었으니, 이들도 다 같이 임금의 땅이고 임금의 백성이거늘 함께 똑같이 취급하여 진휼의 대상으로 뽑지 않는 것이 어찌 차별 없이 베푸는 정사이겠습니까? 세전(歲前)과 세후(歲後)를 막론하고 구제소(救濟所)를 두루 설치하여 모두 구제하여 한 사람도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는 한탄이 없도록 흉년이 든 모든 도(道)에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시골 백성들이 본부(本府)에 와서 송사(訟事)한 것을 보니, 그중에 종종 경사(京司)에서 공문(公文)으로 빚을 징수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빚을 징수하는 문제가 일찍이 각 아문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則朝廷例封扇子, 其在事體, 尤不敢不停止。 以其容入物力, 一竝補用於賑資之意, 分付該道帥臣處何如?” 允之。 又曰: “咸鏡監司李會正狀啓‘端川、明川、鏡城浦落災結九十五結十四負九束, 特許停稅, 待年豐隨起復總事, 請令廟堂稟處’矣。 三邑災形, 已有登啓, 而以若赤立, 難責白徵。 特許限三年停稅, 期準原總事, 分付何如?” 允之。 又曰: “在前外道設賑之時, 驛牧鎭堡之民, 每爲區別於邑民之外, 均是王土王民, 而不與之通同抄付者, 是豈一視之政乎? 毋論歲前歲後凡設賑處, 竝爲賙救, 俾無一夫不獲之歎, 關飭於遇歉諸道何如?” 允之。 又曰: “近見鄉民之來訴臣府者, 其中種種有因京司公文徵債矣。 徵債一款, 何嘗有關於各衙門, 而行此違法之擧乎? 惟其挾雜牟利之徒, 鑽刺舞弄, 專事干囑, 或潛用公錢而勒徵者有之, 或假託公貨而橫侵者有之。 甚至有混入私債, 而肆虐困督之弊, 不一而足。 況今失稔之歲, 懷保之方, 宜倍他時, 而中外供職之臣, 旣不能嚴斥, 乃反爲拘顔生色之資, 法綱日頹, 萬萬寒心。

	짓을 한단 말입니까? 협잡하는 모리배들이 갖가지로 농간을 부리고 청탁질을 일삼아 간혹 몰래 공금을 쓰고는 강제로 받아내는 자가 있으며, 혹은 공물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마구 빼앗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채(私債)를 뒤섞어놓고 마구 괴롭히고 독촉하는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흉년이 든 때에 백성들이 삶을 지탱하는 방도를 다른 때보다 곱절 잘 세워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직임을 수행하는 신하들이 엄하게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안면에 구애되어 생색내는 수단으로 삼아 법도가 날로 무너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다만 듣는 바대로 우러러 아뢰어야 하며 이와 같은 폐습(弊習)이 다시 나타나면 해당 아문의 당상(堂上) 및 도신(道臣)과 수령은 모두 엄하게 처벌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간사한 무리들은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島配)하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각도(各道)에 반포하여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위리안치 죄인(圍籬安置罪人) 정태호(鄭泰好)가 전에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있을 때 횡령한 물건은 형조(刑曹)에게 징수하여 내려 보내라는 내용으로 이미 처분하였습니다. 탐학을 징계하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전하의 뜻은 만 번 우러러 칭송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암행 어사(暗行御史)의 보고에서 횡령한 양을 계산하여 열거한 것이 있으면 그 수량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형조(刑曹)로 하여금 그 가동(家僮)을 가두고 일일이 징수해서 공물(公物)은 관청 창고에 다시 채워 넣고 백성들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정식(定式)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혹심하게 흉년이 든 해에 그만둘 수 없는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금령(禁令)은 있으나 금령의 실효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 금지하는 본의가 있겠습니까? 요즘 듣자니 궁가(宮家)와 양반집들에서는	第當隨所聞仰奏, 而若復有似此之習, 該衙門堂上及道臣守令, 竝難免重勘, 奸細輩嚴刑島配之意, 爲先頒飭于各道何如?” 允之。 又曰: “圍籬安置罪人鄭泰好, 前任海藩時贓汚之物, 令秋曹徵捧下送事, 已有處分矣。 懲貪恤民之聖意, 欽誦萬萬。 從玆以往, 繡啓中如有計贓臚列者, 毋論其多其少, 自秋曹囚其家僮, 一一徵出, 而公貨則還充公庫, 民財則還給民人, 著爲定式, 恐好。” 允之。 又曰: “禁釀一事, 最是荒年不可已之急務。 而有禁之令, 無禁之實, 則安有設禁之本意乎? 近聞宮家班戶, 或有大釀榷利之弊, 莫敢誰何, 任他勿問, 紀綱所在, 誠極駭然。 法司、堂上、左右捕將, 竝從重推考, 毋論宮家與班戶, 到底搜察, 大則草記, 小則自斷, 期於以法從事。 且聞外道邑村之間, 亦多蕩然。 道臣、守令, 果能畏憚朝令, 豈有是也? 當有摘發論勘之擧矣。 先以此意, 關飭諸道何如?” 允之。

	간혹 술을 많이 빚어 이익을 독차지하는 폐해가 있지만, 누구도 감히 따지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있으니 기강으로 볼 때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법사(法司)의 당상(堂上)과 좌우포장(左右捕將)을 무거운 쪽으로 추고(推考)하고, 궁가(宮家)와 양반집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큰 일이면 초기(草記)를 올리고 작은 일이면 자체로 판단하여 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자니 외도(外道)의 읍촌(邑村) 중에는 영락된 곳이 많다고 하는데 도신이나 수령이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적발해서 논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우선 이런 내용으로 각도(各道)에 관문(關文)을 내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0월 6일(계사) 2번째기사 곡물 반출금지를 중지하지 않은 각 도의 감사들을 추궁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방곡(防穀)에 대한 법령을 느슨하게 하는 내용으로 계품(啓稟)하고 행회(行會)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소식이 들리는 것은 외읍(外邑)에서 계속 거절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지역의 장사꾼들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기를 면치 못한다는 소리뿐입니다. 그 즉시 거행하지 않는 여러 도신(道臣)들은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제멋대로 교역을 막아버린 해당 수령은 적발하여 논계(論啓)하고 조율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頃以防穀弛禁事, 啓稟行會, 已至閱月, 而連聞外邑一向牢拒, 遠近商賈, 有錢莫售, 不免徒手空歸云。 其不卽擧行之諸道臣, 姑先重推, 恣意雍遏之該守令, 摘發論啓, 照律重勘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0월 29일(병진) 1번째기사 영남의 별비미 환곡 징수기한을 연장시켜 주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의 보고를 보니, ‘도내 백성들의 정상이 더더욱 급해져 올해 절반만 나눠주도록 된 별비 환곡(別備還穀)은 이미 본미(本米)를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대신할 각종 곡식도 없습니다. 환정(還政)을 헤아려볼 때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도신(道臣)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우십면(尤甚面)은 새 환곡(還穀)을 상정(詳定)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번에 감사가 또 진청(陳請)한 데서 그곳 백성들의 형편이 곤란하다는 것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응당 바쳐야 할 사환곡(社還穀) 가운데서 다만 우심읍으로 하여금 절반에 한해 내년 가을까지 정퇴(停退)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九日。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朴齊寅所報, 則‘道內民情, 轉益遑汲, 今年半分條別備還, 旣無本米之可辦, 亦無各穀之可代者。 揆以還政, 極爲罔措’爲辭矣。 向因道啓, 尤甚邑尤甚面新還, 旣許詳代, 而今此藩臣之又陳請, 益見其民勢之艱絀。 當捧社穀中, 只令尤甚邑, 限折半待明秋停退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1월 4일(신유) 3번째기사 화재로 인하여 음식 가지수를 줄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돌이켜보건대 나는 덕 없는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크나큰 위업을 이어받아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올해에 큰 가뭄으로 결국 흉년의 재난이 이르게 되어 백성들은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관청의 비용은 거덜 났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였다. 게다가 이번 화재의 경고는 어찌하여 이다지도 참혹한가? 순식간에 대궐 안의 전각이 모조리 잿더미가 되니 놀랍고 떨리던 나머지 부끄러워 한탄만 한다. 그리고 하물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거듭 이런 경고를	敎曰: “顧予否德, 叨承丕基, 居常懷惕, 靡所止屆。 今年亢旱, 竟致歉荒之災, 民生顚連, 公用罄匱。 興言及此, 拊心慊忸。 又此回祿之警, 奚爲而如是甚酷也? 頃刻之際, 大內殿閣, 蕩然爲灰燼之地, 驚懍之餘, 繼以慙歎。 又況不幾年而荐遭此警者乎? 仁天之告, 必有所召。 一則寡昧之過也, 二則寡昧之過也。 此雖與法殿有異, 實不敢晏若無事。 自今日減膳三日,

	받게 된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인자한 하늘의 경고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이니, 첫째도 부덕한 나의 잘못 때문이고, 둘째도 부덕한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것이 비록 법전(法殿)과는 다르지만 감히 태연하게 무사한 듯이 할 수는 없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減膳)하여 내가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는 뜻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는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서로 힘쓰도록 권고하여 하늘에 진실로 부응하여야 한다. 무릇 벼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라.” 하였다.	以示予修省之意。 而此正君臣上下惕慮交勉, 以副應天以實之道。 凡百有位, 體予至意。”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1월 27일(갑신) 3번째기사 황해도의 사환미를 이획하고 경기와 해서의 구제곡식으로 행회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원(李載元)이 진자(賑資)를 장계(狀啓)로 청하였습니다. 황해도(黃海道)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중 절미(折米)하여 1만 석(石)을 이획(移劃)하고, 해도(該道)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운반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근을 구제하도록 경기(京畿)와 해서(海西)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京畿監司李載元狀請賑資矣。 以海西社倉還中折米一萬石移劃, 令該道從便輸送, 俾得悉心救饑事, 行會于畿、海兩道臣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2월 6일(임진)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탄신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규장각(奎章閣) 신하,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官), 홍문관(弘文館), 춘계방(春桂坊),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의 관리, 6조와 사헌부(司憲府)	初六日。 時原任大臣、閣臣、奉朝賀、宗親、儀賓、耆社堂上、玉堂、春桂坊、宗正卿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 賜饌。 以東朝誕辰也。

에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및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들에게 사찬(賜饌)하였다. 대왕대비의 탄신이기 때문이다.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2월 19일(을사) 2번째기사 진휼청의 쌀을 내다팔 때의 폐단을 경계하는 명령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진휼청(賑恤廳)의 발매(發賣)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상 가호를 가려 뽑은 것이 정실(精實)하다 하더라도 나누어줄 때 가호(家戶)가 누락되거나, 두량(斗量)이 줄어드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는 담보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실질적인 혜택이 다하도록 하는 뜻이겠는가? 설사 신칙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거행해야 하거늘 만약 이런 폐단이 있다고 들려오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것을 감독한 낭청(郎廳)과 헤아려 준 종들을 비단 각별히 엄중히 다스릴 뿐 아니라, 살피지 못한 당상(堂上官)도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묘당(廟堂)은 즉시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엄히 신칙하여 발매하는 날부터 어느 부(部)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날마다 초기(草記)하라는 뜻도 역시 해청(該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賑廳發賣, 明日爲始云。 抄戶雖曰精實, 分給之際, 家戶之漏落、斗量之欠縮, 難保其必無, 則是豈實惠必究之意哉? 雖無提飭, 必當盡心擧行。 而若或有此等弊端之入聞者, 監分郎官及量給之吏隷, 非但各別重治, 不察之堂上, 亦難免其責。 廟堂卽以此意, 另加嚴飭, 自發賣日, 某部幾口之分給, 逐日草記之意, 亦爲分付該廳。”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2월 21일(정미) 4번째기사 진휼청에서 남부와 북	진휼청(賑恤廳)에서, ‘오늘 남부(南部)와 북부(北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는 미(米) 5두(斗), 중호(中戶)는 4두, 소호(小戶)는 3두, 독호(獨戶)는 2두, 합계 미 712석(石) 5두(斗)를 나누어 주었으며, 초순(初巡)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賑恤廳以“今日南部、北部字內, 大戶米五斗、中戶四斗、小戶三斗、獨戶二斗, 沿江各部中戶各米四斗、獨戶二斗、合米七百十二石五斗分給, 而初巡已畢”啓。

부의 민호에 쌀을 나누어 주었음을 보고하다		
고종 13권, 13년 (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12월 29일(을묘) 1번째기사 경상 감사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물을 주는 일을 정지할 것임을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이, ‘도내에 재해가 우심읍(尤甚邑)과 지차읍(之次邑)의 기민(饑民)을 뽑아 진휼 대장에 올리는 일을 방금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환곡(還穀)을 떼어다 쓸 때면, 창고가 읍내에 있었기 때문에 먼데서 온 굶주린 백성에게 먼저 죽물을 먹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느 고을이나 막론하고 사환미(社還米)를 저축해 둔 것을 창고에서 꺼내어 면(面)마다 각각 설치하였기 때문에 거리가 매우 가까우므로 죽을 먹이는 일은 특별히 정지하게 하소서.’라고 장계(狀啓)로 청하기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진달한 바는 스스로 참작한 것이 있는 만큼 장계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九日。 議政府啓: “慶尙監司朴齊寅, 以‘道內尤甚之次等邑抄飢付賑之節, 今方經紀。 而在前還穀劃用時, 以其倉庫, 在於邑底, 遠來飢民, 先饋粥水。 而今番則毋論某邑, 社米儲置之出窖, 面面各設, 相距至近, 饋粥一款, 特爲停止’事狀請, 令廟堂稟處矣。 道臣所陳, 自有斟量者存, 依狀辭施行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월 1일(정사)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老人)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頒賜老人歲饌。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월 1일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정사) 4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내리다	팔도(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1월 6일 (임술) 2번째기사 금주령에 관하여 곽기락이 상소하다	전 장령(掌令) 곽기락(郭基洛)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금주(禁酒)의 문제는 사실 흉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사와 관련되므로 연석(筵席)에서 두루 하유(下諭)하고 묘당(廟堂)에서 충분히 신칙하였으니 유사(有司)의 신하들은 마땅히 공(公)을 좇아 받들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에는 술독과 술항아리가 서로 접해 있고 세력 있고 부유한 집들은 큰 규모로 술을 빚는 일이 줄지어 있습니다. 간혹 적발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단지 지류(支流)들일 뿐이니 나라의 법이 귀족들에게는 시행되지 않고 유독 천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됩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자면 법령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가을에 금령(禁令)을 만든 이래로 잘 거행하지 못한 법사(法司)의 당상(堂上)은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서 엄히 감처(勘處)하고, 고의로 조종(操縱)한 각 해사(該司)의 이례(吏隷)들은 모두 엄히 형신(刑訊)한 뒤 먼 곳으로 정배(定配)하며 권세있는 집안과 벼슬하는 집안은 나타나는 대로 무겁게 죄를 줌으로써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단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이 한 번 나오면 권세있는 집에서는 누가 감히 어쩌지 못한다고 하면서 먼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법을 능멸하는 죄과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놀랍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진술한 내용이 매우 절실하고 숨김없으니 진실로 가상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前掌令郭基洛疏略: “禁酒一條, 實係救荒之要政, 筵席之敷諭、廟堂之薰飭, 有司之臣, 固宜循公奉行, 而士夫家, 甕罌相接, 豪富戶大釀列肆。 或有現捉者, 是特涓滴之流, 王法不行於貴族, 而獨行於下流乎? 國之爲國, 在乎信法令, 則前秋設禁以來, 不善擧行之法司堂上, 竝捧現告, 施以重勘, 而故意操縱之各該司吏隷, 竝嚴刑遠配, 巨室宦族, 隨現重繩, 以爲不畏法者之戒焉。” 批曰: “非但禁釀, 法令一出, 則豪貴之家, 謂之莫敢誰何, 而先自犯之, 不知自陷於蔑法之科, 寧不駭歎? 所陳甚切實無隱, 極庸嘉尙。 疏辭令廟堂稟處。”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議政府啓: “前掌令郭基洛疏批, 有令

(光緖) 3년) 1월 8일 (갑자) 5번째기사 금주령을 어긴 형조와 한성부 당상들을 추궁하도록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장령(掌令) 곽기락(郭基洛)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한 가지 문제는 예로부터 흉년 구제의 급선무이고 중요한 정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질적인 폐단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명령은 있어도 제대로 서지 않는 데에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까닭을 강구해보면 먼저 세력 있는 높은 집에서부터 제멋대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고서야 항간의 백성들인들 어찌 법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이 상소에서 진술한 것이 현재의 폐단에 절실히 들어맞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답에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였으니 누군들 감히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마음을 바꿔서 잘못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담당한 신하들이 과연 겁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필시 이 지경까지 문란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령(禁令)을 반포한 이후로 법사(法司)의 당상(堂上)들에 대해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 엄히 추고(推考)하고, 이어 각 해사(該司)에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감히 종전처럼 게을리하지 말고 낱낱이 적발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廟堂稟處之命矣。 禁釀一款, 自古救荒之急務也、要政也。 而今之痼瘼, 無論大小去處, 有法不行, 有令不立, 寧不寒心哉? 苟究其由, 先自豪貴之家, 恣行犯科而然。 如是而閭巷小民, 安所畏法而信令乎? 此疏所陳, 切中時弊。 今下批敎, 申複嚴重, 孰敢不懍然而惕然? 不思所以革心改過? 而掌法之臣, 果能不慴、不撓, 則必不蕩然之至此矣。 頒禁以後, 法司堂上, 竝捧現告, 從重推考, 仍飭各該司, 使之悉心擧職, 毋敢如前關隳, 這這摘發, 以法從事之意, 竝爲分付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1월 17일	세자와 사부(師傅)의 상견례(相見禮)를 다경합(多慶閤)에서 행하였다.	十七日。 行王子師傅相見禮于多慶閤。

(계유) 1번째기사 세자와 사부의 상견례를 다경합에서 행하다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월 20일 (병자)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동부와 서부의 자내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동부(東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96호(戶)에 각각 쌀 4두(斗), 소호(小戶) 140호에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1,284호에 각각 쌀 2두, 서부(西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20호에 각각 쌀 5두, 중호 646호에 각각 쌀 4두, 소호 479호에 각각 쌀 3두, 독호 1,056호에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640석(石) 5두(斗)를 분급(分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二十日。 賑恤廳以'東部字內, 中戶九十六戶, 各米四斗, 小戶一百四十戶, 各米三斗, 獨戶一千二百八十四戶, 各米二斗, 西部字內, 大戶二十戶, 各米五斗, 中戶六百四十六戶, 各米四斗, 小戶四百七十九戶, 各米三斗, 獨戶一千五十六戶, 各米二斗, 合米六百四十石五斗分給。'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월 21일 (정축)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남부 자내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남부(南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12호(戶)에 각각 쌀 5두(斗), 중호(中戶) 534호에 각각 쌀 4두, 소호(小戶) 354호에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625호에 각각 쌀 2두, 연강(沿江) 각부(各部)의 중호 19호에 각각 쌀 4두, 소호 1호에 쌀 3두, 독호 1,197호에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465석(石) 11두(斗)를 분급(分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二十一日。 賑恤廳以'南部字內, 大戶十二戶, 各米五斗, 中戶五百三十四戶, 各米四斗, 小戶三百五十四戶, 各米三斗, 獨戶六百二十五戶, 各米二斗, 沿江各部, 中戶十九戶, 各米四斗, 小戶一戶, 米三斗, 獨戶一千一百九十七戶, 各米二斗, 合米四百六十五石十一斗分給。'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월 22일 (무인) 2번째기사 진휼청에서 중부와 북	진휼청(賑恤廳)에서, '중부(中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11호(戶)에는 각각 쌀 4두(斗), 소호(小戶) 113호에는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81호에는 각각 쌀 2두, 북부(北部) 자내의 대호(大戶) 4호에는 각각 쌀 5두씩, 중호 158호에는 각각 쌀 3두씩, 독호 1,351호에는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340석(石) 1두	賑恤廳以'中部字內, 中戶十一戶, 各米四斗, 小戶一百十三戶, 各米三斗, 獨戶八十一戶, 各米二斗, 北部字內, 大戶四戶, 各米五斗, 中戶一百五十八戶, 各米三斗, 獨戶一千三百五十一

부의 자내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斗)를 분급(分給)하였으며 재순(再巡)이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戶, 各米二斗, 合米三百四十石一斗分給。 而再巡已畢。'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2월 2일 (무자) 2번째기사 구휼미를 낸 유학중을 표창하고 경기의 금년도 저치미를 현물로 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장계(狀啓)를 보니, '무주(茂朱)의 선비 유학증(柳鶴增)이 작년 가을부터 굶주리는 백성에게는 식량을 주고 유랑 걸식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먹였으며 또 정조(正租) 1,000석(石)을 내어 진자(賑資)에 보탰으니 논상(論賞)하는 은전(恩典)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식량을 주어 구제하고 죽을 먹여 구원하는 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고, 하물며 또 1,000포(砲)나 자원하여 내서 보탰으니 더욱 매우 가상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당(相當)한 초사(初仕) 자리를 제일 먼저 마련해서 의망하여 나라에서 포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를 더 내려주어 부족분에 배비(排比)하는 형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어 쌀과 돈 4분의 1을 줄이는 조목은 특별히 도로 중지하는 사안에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흉년에 줄여주는 것은 원래 일상적인 규례이지만 본도의 형편을 생각건대 관례(慣例)적으로 획하(劃下)하는 것을 제외하면 장차 조처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환침(還寢)한 전례(前例)가 많으니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이재원의 보고를 보니, '도내(道內)에 현재 남아있는 환미(還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敦相狀啓, 則'茂朱士人柳鶴增, 自昨秋以來, 饑民則給糧, 流丐則饋粥, 且正租一千石, 以補賑資。 論賞之典, 請令廟堂稟處'矣。 給糧而濟之, 饋粥而救之, 已著其到底誠力, 而況又千包之願出捐補, 尤極嘉尙。 令該曹, 相當初仕首先檢擬, 庸示朝家褒賞之意何如?" 允之。 又啓: "卽見京畿監司李載元狀啓, 則'備陳本道儲置加下排比不足之狀, 仍請四分一米錢裁減條, 特許還寢事, 令廟堂稟處'矣。 歉年裁減, 自是恒規, 而第念本道事勢, 除却例劃, 將無以措手。 且曾前還寢, 多有其例,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又啓: "卽見京畿監司李載元所報, 則'道內時留還米之以賑需入用者, 當爲立本, 而以錢以穀措辦無術。 就各邑永劃儲置米一千五百六十石 特以本色劃付, 以爲執錢取用。 外此不足之數, 待賑政就

	米)로서 진자(賑資)에 포함시켜 쓴 것은 마땅히 입본(立本)하여야 할 것인데, 돈이나 곡식을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각읍(各邑)에 저치미(儲置米)로 영구히 획급(劃給)하였던 미(米) 1,560석(石)을 특별히 본색(本色)으로 획부(劃付)하여 돈으로 만들어 가져다가 쓰도록 하고, 이밖에 부족한 수량은 진정(賑政)이 모두 시행된 다음에 다시 조처해서 획하해야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치미는 본도에 이미 떼어주었던 비용과 관련되고 달리 변통할 대책도 없으니 금년조(今年條)를 특별히 본색으로 주도록 허락하여 총량을 채우도록 해도(該道)와 해청(該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緖, 更爲措劃。' 爲辭矣。 儲置米卽係本道已劃之需, 而亦無從他變通之策, 今年條特以本色許付, 俾爲準總事, 分付該道及該廳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2월 8일 (갑오) 1번째기사 대신들에게 사찬하고 이어 소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 의빈(儀賓), 홍문관(弘文館),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6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시임(時任) 및 원임(原任) 사부(師傅)와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사찬(賜饌)하고, 이어 소견(召見)하였다. 세자궁(世子宮)의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初八日。 賜饌于時原任大臣、閣臣、宗親、儀賓、玉堂宗正卿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時原任師·傅、賓客、春·桂坊, 仍召見。 以世子宮誕辰也。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2월 20일 (병오) 2번째기사 진휼청에서 동부와 서부의 자내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동부(東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96호(戶)에는 각각 미(米) 4두(斗), 소호(小戶) 140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1,284호에는 각각 미 2두를 나누어주고, 서부(西部) 자내의 대호(大戶) 21호에는 각각 미 5두, 중호 649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 479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 1,071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643석(石) 11두를 분급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賑恤廳以"東部字內, 中戶九十六戶各米四斗, 小戶一百四十戶各米三斗, 獨戶一千二百八十四戶各米二斗, 西部字內, 大戶二十一戶各米五斗, 中戶六百四十九戶各米四斗, 小戶四百七十九戶各米三斗, 獨戶一千七十一戶各米二斗, 合米六百四十三石十一斗分給。"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2월 21일 (정미)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남부 등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남부(南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13호(戶)에는 각각 미(米) 5두(斗), 중호(中戶) 539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小戶) 354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625호에는 각각 미 2두, 한강 연안의 각부(各部)의 중호 16호에는 각각 미 4두씩, 소호 1호에는 미 3두, 독호 1,196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466석(石) 14두를 분급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二十一日。 賑恤廳以"南部字內, 大戶十三戶各米五斗, 中戶五百三十九戶各米四斗, 小戶三百五十四戶各米三斗, 獨戶六百二十五戶各米二斗, 沿江各部, 中戶十六戶各米四斗, 小戶一戶米三斗, 獨戶一千一百九十六戶各米二斗, 合米四百六十六石十四斗分給。"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2월 22일 (무신)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중부와 북부에서 쌀을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중부(中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16호(戶)에는 각각 미(米) 4두(斗), 소호(小戶) 113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82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분급(分給)하고, 북부(北部) 자내의 대호(大戶) 4호에는 각각 미 5두, 중호 174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 394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 1,335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342석(石) 5두를 분급하였으며, 삼순(三巡)이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二十二日。 賑恤廳以"中部字內, 中戶十六戶各米四斗, 小戶一百十三戶各米三斗, 獨戶八十二戶各米二斗, 北部字內, 大戶四戶各米五斗, 中戶一百七十四戶各米四斗, 小戶三百九十四戶各米三斗, 獨戶一千三百三十五戶各米二斗, 合米三百四十二石五斗分給, 而三巡已畢。"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2월 29일 (을묘) 1번째기사 황해도의 사창곡을 수원과 광주 등에 구제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봄철로 접어든 이후 도하(都下)에서 식량을 마련하기 어려운 근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경기(京畿) 안 여러 곳에서 진휼(賑恤)하고 구제하는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 번갈아가며 답답한 사정을 고하고 있으므로, 지난번에 이미 해서(海西)에 관문(關文)을 띄워 사창곡(社倉穀)의 절미(折米) 2만 석	二十九日。 議政府啓: "開春以後, 都下艱食之憂, 日甚一日, 且畿內諸處賑救之資, 末由措辦, 迭相告悶。 故向已發關海西, 就社倉穀, 折米二萬石, 使之船運以來矣。 待其到泊, 畿營限五千石加劃, 水原、廣州、江華, 各五

물자로 나누어 주도록 하다	(石)을 배로 운반해오게 하였습니다. 그 배가 경기 감영(監營)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5,000석에 한하여 추가로 획하(劃下)하여 수원(水原)·광주(廣州)·강화(江華)에 각각 500석씩 나누어 획하하여 보내고 나머지 1만 3,500석은 선가(船價)로 계감(計減)하여 모두 혜청(惠廳)에 소속시키며 공가(貢價)를 지급하는 것을 참작해서 배급하되, 여러 곳에 나누어 획하하는 일도 역시 해청(該廳)에서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고 이후에 입본(立本)하는 조(條)의 6만 냥(兩)은 본청(本廳)에 상납(上納)하는 돈 중에서 우선 해도(該道)의 유치(留置)하는 양을 제외하고 전말을 본부(本府)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百石分劃以送, 其餘一萬三千五百石, 計減船價, 竝屬惠廳, 參酌排給於貢價上下。 而諸處分劃之節, 亦令該廳句檢擧行, 嗣後立本條六萬兩, 以本廳上納錢中, 姑令除留該道, 形止報府之意, 一體分付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3월 2일 (무오) 1번째기사 감사와 수령들에게 기근구제에 힘쓰도록 신칙하다	전교하기를, "봄은 이미 깊어가고 진정(賑政)은 곧 절반이 끝날 것이니, 이 때가 바로 도신(道臣)과 수령이 갑절이나 힘써야 할 시기이다. 제도(諸道)에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실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으며, 또 길에 쓰러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는가? 굶주린 뒤에 밭을 갈 힘이 있겠으며, 전야(田野)가 황폐해질 우려가 없겠는가? 흉년이 든 때에는 매번 전염병의 기운이 유행하여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병에 걸리는데 이런 근심은 없겠는가? 지금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은 바로 보리농사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봄철이 된 이후로 날씨가 좋아지면 농가의 점괘에 풍년 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비록 조금 안정된 해라도 보릿고개에 백성들의 사정은 황급하지 않을 수 없	初二日。 敎曰: "春序已窮, 賑政將半, 此正道臣、守宰之倍加勵精處也。 未知諸道災民之情, 今至何如, 而果能免溝壑之顚連乎? 亦能免道路之殣仆乎? 饑餓之餘, 力能及於耕作, 而田野無荒廢之患乎? 凶荒之時, 每有輪行之沴氣, 不饑者亦病, 能無此憂乎? 目下民命攸係, 卽麥農也。 姑未知來頭之如何, 而開春以後, 日候調和, 農家之占, 能有大登之喜云乎? 雖少康之年, 窮春民情, 不能無遑汲, 而況今日乎? 雖尋常之事, 凡係民隱, 不能不終始盡誠, 而況賑救乎? 道臣、守宰之盡誠,

	는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평범한 일이라고 해도 모두 백성들의 괴로움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시종 성의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진휼(賑恤)해서 구제하는 일에서는 어떻겠는가? 도신과 수령들이 성의를 다하는 것에 대해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깊은 궁궐에 있으면서 매번 백성들의 허다한 정상(情狀)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속이 탄다. 또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그치지 않으니 묘당(廟堂)은 꼭 이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 진휼을 설치한 도(道)와 도(都)에 다시 신칙하여 향후에 진휼하고 구제하는 정사에 더욱 성의를 다하고 유념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予非不知, 而予深居九重, 每念民情之許多景狀, 不覺中心煩鬱。 又此重言復言而不止, 廟堂須以此意措辭, 更飭于設賑道、都, 向後賑救之政, 使之益加殫竭, 惕念擧行。”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3월 8일 (갑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임시로 봉안하는 어진의 고유제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임시로 봉안하는 어진(御眞)의 고유제(告由祭)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八日。 詣眞殿, 行權安告由茶禮。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3월 9일 (을축)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嬉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初九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3월 19일 (을해)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北苑望拜禮)를 행하였다.	十九日。 詣北苑, 行望拜禮。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5월 1일 (을묘) 1번째기사 경모궁에 나아가 제사에 쓸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고 재숙하다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제사에 쓸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고 재숙(齋宿)하였다.	初一日, 乙卯。 詣景慕宮, 省牲、省器齋宿。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5월 16일 (경오) 2번째기사 경사의 곡식이 바닥났으므로 삼남과 황해도 등에서 매입하여 오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경사(京司)의 지출 밑천이 고갈되었습니다. 하물며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재해로 줄어든 것이 더욱 많습니다. 약간의 공세(供稅)가 비록 기한까지 미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출은 계속하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배로 실어나를 밑천이 없고 서울에서는 나누어줄 곡식이 모자라서 가난한 마을의 정상은 갈수록 부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은 관청이나 개인이나 황급하여 참으로 아침저녁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외도(外道)에서는 보리농사가 곳곳이 풍년이 들었으니 이런 때는 값을 계산하여 곡식을 사는 것이 형세상 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쌀과 좁쌀, 밀과 보리를 막론하고 삼남(三南)과 양서(兩西)에서 각각 1만 석	議政府啓: “近來京司之支調, 到底枵罄。 況値昨秋歉荒, 災減尤爲夥多。 如干供稅, 雖能趁限, 諸般應下, 已患難繼。 而外無湊泊之資, 內乏俵頒之需, 窮蔀景色, 轉益頗頷。 不農、不穡之地, 公私遑汲, 誠有朝不謀夕之歎, 而外道則麥事在在穰穰矣。 迨此時計價買穀, 勢實不難, 毋論大小米與麰麥, 三南、兩西, 各一萬石, 關東五千石, 就某樣公錢中, 斯速貿取, 另擇完固船隻, 隨貿隨載, 星夜發送, 使之

	(石), 관동(關東) 5,000석을 공전(公錢)을 가지고 속히 가서 사 가지고 특별히 아주 견고한 배를 골라서 사들이는 대로 실어 밤낮없이 수송하여 경강(京江)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의 공곡(公穀) 중 만약 옮겨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수량에 준하여 편의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번에 사들이는 절차는 각각 도신(道臣)이 직접 맡아서 검열하고 절대로 아래의 고을들에 위임하지 말도록 하여 폐단이 불어나고 간사한 짓을 용인하는 실마리를 막아야 합니다. 혹시 신칙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신은 중하게 논감(論勘)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抵達于京江。 而道內公穀中, 如有可以推移者, 則許令準此數, 從便轉運。 今玆貿納之節, 各其道臣, 須宜躬執句檢, 切勿委諸下邑, 以杜其滋弊容奸之端, 而若或不遵令飭, 以致玩愒稽忽之境, 則該道臣從重論勘之意, 竝爲行關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5월 26일 (경진) 1번째기사 세곡 상납을 지연시킨 수령을 문책하고 북한산성 별고미를 군비에 충당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 세 조창(漕倉) 중 성당창(聖堂倉) 세선(稅船)이 방금 곡식을 싣고 떠났습니다. 군산창(群山倉), 법성창(法聖倉)에서 이미 받았던 곡식은 잡비까지 아울러 2만여 석(石)인데 오랫동안 쌓아둔 것과 아직 미납(未納)된 것을 같이 지체시키면, 폐단이 생길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밤새도록 나누어 실어서 각기 그 창고 부근의 진장(鎭將)을 특별히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책임지고 출발하게 하며 아직 받지 못한 곡물은 별도로 독촉하여 받아들여 계속 실어 나르게 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세곡의 상납을 지연시킨 전주(全州), 옥구(沃溝), 영광(靈光), 고창(高敞), 네 읍(邑)의 수령을 모두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시	二十六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敦相狀啓, 則'本道三漕倉中, 聖堂稅船, 纔已裝發, 而群山、法聖兩倉已捧之穀, 竝襍費爲二萬餘石, 許久積庤, 與未納者, 同爲停滯, 則不無生弊之端, 先爲罔夜分載, 以各其倉附近鎭將, 別定差員, 使之領發, 未捧穀物, 另加督納, 鱗續裝運事, 請令廟堂稟處'矣。 稅穀愆納之全州、沃溝、靈光、高敞四邑守令。 竝爲先罷黜, 其罪狀令攸司稟處爲辭, 而判付令廟堂稟處事, 命下矣。 漕船之裝發與上納,

	켜 품처하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한 일에 대해 판부(判付)하였습니다. 조운선(漕運船)에 실어서 보내는 것과 상납하는 것은 모두 어길 수 없는 노정(路程)의 기한이 있으니 한 건이라도 혹시 지연시킨다면 죄는 진실로 벗어나기 곤란합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작년 농사형편이 큰 흉년을 면하지 못하여 가난한 마을의 백성들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곡식이 비록 총량에 미치지 못하지만 창고에 쌓아두어 간사한 농간이 생기게 하는 것은 임시변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장계의 요청대로 특별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운반을 지체시키지 말며, 받아들이지 못한 수량은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뒤따라 실어 올려 보내도록 하소서. 지금 진휼 정사가 겨우 끝나고 조운선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아직 마감하지 못한 이러한 시기에 많은 수령들이 교체되는 것은 백성과 고을에 폐단을 더할 우려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네 고을의 수령을 파면시켜 잡아오는 것은 특별히 그만두고 모두 죄를 진 채로 일을 보게 하며 다시는 감히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총융청(總戎廳)의 보고를 보니, '북한 산성(北漢山城) 별고미(別庫米) 300석(石)은 바로 신미년(1871)에 개색(改色)하여 창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흉년을 당하여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쌓아둔 것이 오래되어 썩어가니, 애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산성에 있는 군사와 군영 군사들에게 요미(料米)를 나누어 주는데 쓰게 하고 원래의 요미가 지급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수량만큼 옮겨다 채우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산성에 저축한 군량은 원래 중한 것으로써 본래 빌려주는 것을 번갈아 의논	俱有莫越之程限, 則一或愆淹, 罪固難逭。 而第念昨年年形。 不免大歉, 窮蔀民力, 到底艱絀, 已捧之穀, 雖未準總, 與其庤倉, 而生其奸弄, 莫若從權, 而圖其方便, 依狀請別定差員, 毋滯運納, 未捧之數, 刻期董督, 踵後輸上。 而見今賑政纔撤, 漕捧未勘, 際此而多倅遞易, 恐有民邑添弊之慮, 上項四邑守令罷拿, 特爲安徐, 竝令戴罪擧行, 更毋敢一毫稽忽之意, 嚴飭行會何如?" 允之。 又啓: "卽見總戎廳所報, 則 '北漢山城別庫米三百石, 卽辛未年改色入庫者。 而今當大無, 民情頗頷, 積置旣久, 陳腐可惜。 以此先爲排用於城卒及營軍放料之資, 待其原料上下, 如數移充'爲辭矣。 山城儲餉, 本有所重, 固不當遞議許貸, 而封樁歲久, 便作等棄。 況當歉荒, 士卒失哺, 不可但以悶隘言, 依所報特爲取用, 以爲排給之地, 向後準充之節, 毋敢遷延之意, 分付該廳何如?" 允之。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두면 버리게 되고 더구나 흉년을 만나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답답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보고한 대로 특별히 가져다 배급(排給)하되 후에 수량대로 채우는 것을 감히 지체시키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청(該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6월 26일 (경술) 2번째기사 고의로 조운선을 파선시킨 감관, 색리, 사공들을 신문하여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희눌(李熙訥)의 등보(謄報)를 보니, 호남(湖南) 성당창(聖堂倉)의 조선(漕船) 6척이 서산(瑞山)의 안면도(安眠島) 부근에서 파선(破船)되고 4척은 홍주(洪州) 원산도(元山島) 부근에서 파선되었다고 합니다. 10척의 조선이 일시에 파선되어 〖싣고 있던 것을〗 썩히는 것은 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설령 배가 큰 바다에 있어서 사나운 풍랑이 뜻밖에 나왔다 하더라도 사공과 곁꾼〔格軍〕들의 진실과 허위를 오히려 헤아리기 어려운데 이번의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산도에서 점검하는 날 비 때문에 지체되었으니, 포구에 정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를 운항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은 미리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데 모여 정박하고 있던 배들이 일제히 풍랑에 휩쓸려 미처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게다가 담당 아전(衙前)과 사공, 곁꾼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뭍에 내렸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배가 뒤집힌 뒤에 운봉 감관(雲峰監官)이 까닭 없이 도망쳐 숨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범죄의 진상이 저절로 드러났음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건져낸 곡식도 또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議政府啓: “卽見忠淸水使李熙訥謄報, 則‘湖南聖堂倉漕船六隻, 致敗於瑞山安眠島境, 四隻致敗於洪州元山境’云矣。 十隻漕船之一時臭載, 卽前所未有之變也。 設令船在大洋, 獰風怒濤, 出於不虞之地, 沙、格輩之情僞, 猶所難測, 而至於今番事之可疑可訝者, 誠非一二端矣。 元山逢點之日, 爲雨所滯, 旣泊港浦之穩便, 豫料刺船之不利, 則作綜留碇之船隻, 一齊簸盪, 措手不及者, 其或近理乎? 且其色吏、沙·格之稱病下陸, 已涉駭歎。 況船覆之後, 雲峰監官之無緣逃躲, 抑何故也? 眞贓之自露, 卽此可執, 而所謂鉤拯之穀物, 亦未免零星而止。 此若尋常處斷, 國法漕政, 更無可講之所, 而其何以遏絶無窮之弊乎? 致敗監·色、沙·格, 竝與逃躲及稱病諸漢, 關飭錦

	이런 일을 심상하게 처단한다면 나라의 법과 조선(漕船)에 대한 정사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없으니 끝없는 폐단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파선시킨 감관(監官), 색리(色吏), 사공, 곁꾼과 도망쳐 숨은 자와 아프다고 핑계한 여러 놈들을 모두 충청 감영(忠淸監營)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여 잡아다가 엄하게 형장(刑杖)치면서 샅샅이 따지고, 간사한 짓을 한 몇 놈은 수영(水營)에 압송하여 파선시킨 지경에서 효수(梟首)한 후에 치계(馳啓)하게 하고 운반을 책임진 차사원(差使員)과 호송한 차사원(差使員)은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니 격식을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해부(該部)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고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소서. 호송한 지방 진장(鎭將)과 망을 본 장교와 아전들도 또한 수영으로 하여금 엄히 곤장 쳐서 징계하게 하소서. 대체로 조선은 원래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여(黎)'자(字) 배를 임대했다고 하는 것에서 조운 규정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짐이 무겁다고 하여 이 배 저 배로 옮겨 실었으니 이러는 사이에 어찌 농간하는 자취가 없겠습니까? 그 곡절을 호남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논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營, 捉致嚴刑盤覈, 作奸幾漢, 押送水營, 卽於臭載境上, 梟示後馳啓, 領運差使員, 護送差使員, 不可但以溺職言, 待具格狀聞, 令該府拿問重勘, 護送地方鎭將及候望校吏等, 亦令水營, 爲先嚴棍懲礪。 大抵漕船, 自有定額, 而今此黎字船之賃代云者, 非但有違漕規, 謂以卜重, 移載於此船彼船, 於斯之際, 安得無容奸之跡乎? 其委折令湖南道臣斯速査聞, 以爲論勘之地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7월 2일 (을묘) 1번째기사 진찬은 다시 명령이 있기를 기다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진찬(進饌)에 아직도 성의를 펼치지 않는 것은 대왕대비전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이다. 다행히 지금 가을에 들어섰고 날짜도 이미 정했으니 정례(情禮)를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성(慈聖)께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지극한 뜻에다가 또 이처럼 흉년이 든 해에는 절대로 이렇게 큰 잔치를 거행할 수 없다고 하시니, 정중하고 간곡하심이 작년 겨울의 하교보다 더하	初二日。 敎曰: "進饌之尙未展誠, 卽因承順而然矣。 幸今秋序已屆, 吉日已涓, 庶可以少伸情禮。 而慈聖撝謙之至意, 又以如此歉荒之歲, 決不可有此豫大之擧。 鄭重懇惻, 不啻如昨冬之下敎, 仰勉屢煩, 衷誨愈切。 予小子區區悶鬱之忱, 雖無以形諭, 惟當以

	다. 여러 번 우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분부가 더욱 절절하였다. 나 소자(小子)의 구구하고 답답한 심정은 비록 형용할 수는 없지만 오직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을 우러러 따라야 마땅하니 또 웃어른의 명령을 순순히 받드는 도리에서 진찬하는 절차는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해조(該曹)에서 진찬의 날을 택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仰體撝謙, 又爲承順之道, 進饌之節, 更待下敎。” 【因該曹進饌日推擇啓, 有是命。】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7월 18일 (신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行茶禮。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8월 7일 (기축) 1번째기사 종묘에 나아가 전알하고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임금이 종묘(宗廟)에 가서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가서 전배(展拜)하였는데, 추알(秋謁)이었다. 그 길로 무위소(武衛所) 신영(新營)에 가서 일내금군(一內禁軍)에게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初七日。 詣宗廟, 展謁, 景慕宮展拜。 秋謁也。 仍御武衛新營, 行一內禁軍試射。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8월 9일 (신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행하다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8월 14일 (병신) 2번째기사 세곡 상납이 지연되는 것을 남쪽 세 도의 감사들에게 신칙하여 독촉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계속 세곡(稅穀)이 지연되는 사안을 가지고 연석(宴席)에서 아뢰고서 공문으로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가을도 반이나 지났지만 당도한 배는 거의 없습니다. 도신(道臣)과 수령들이 나라의 법을 어렵게 여기고서 감독하고 살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삼남(三南)의 감사들에게 신칙하여 속히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되 행여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는 잘못이 있으면 별도의 논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連以稅穀愆淹事, 筵奏關飭, 非止一再, 而秋序已半, 到泊無幾。 道臣、守令, 苟能畏憚董察, 安有是也? 更爲申飭於三南監司處, 使之火速督納, 而或有一直玩愒之弊, 別般論勘, 在所不免。 請竝以此意分付。”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8월 20일 (임인) 1번째기사 둔감의 폐단과 소나무 채벌 폐단 등에 관하여 이최응이 아뢰다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근래에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를 보니 올여름에 공주(公州) 등의 고을에서 전토(田土)가 개울로 들어가 묵혀버린 것이 2,300여 결(結)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또다시 새로 급박하게 밀려드니 강 연안과 개천 주변의 전지로서 영영 묵히고 농사를 포기한 결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실로 뜻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전정(田政)은 속이기 쉽고 아전(衙前)들의 수작을 알기 어려우니 어떠하겠습니까. 고을에서 보고한 것과 감영(監營)에서 탐지한 것이 완전히 부합되어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로는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지	二十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近見錦伯所報, 則‘今夏公州等邑田土之入於川浦者, 爲二千三百餘結’云矣。 宿水未退, 新漲又急, 沿江傍川之地, 永廢全棄之數, 至於此多, 實是料外。 況田政之易眩, 吏奸之難知者乎? 邑報營探, 十分脗合, 果無差爽, 則猶可矣。 而苟或不然, 上而不補國計, 下而莫恤民隱, 則其責安歸, 其咎孰執? 目下秋事告登, 在在可喜。 似此之歲, 檢災之節, 尤不可少忽, 而非但湖西, 他省亦然。 先自報槪之初,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게 되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그 잘못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가을 농사가 풍년들었으니 기쁘지만 이러한 해에도 재해를 살피는 일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호서(湖西)뿐 아니라 다른 도(道)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체적인 실정을 보고하는 처음부터 여러 고을에 엄칙(嚴飭)하여 샅샅이 적발하여 꼭 정밀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 각 도 도신(道臣)들에게 일체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외(京外)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에서 세(稅)를 거두어들이는 일에서는 원래 정해진 총량이 있으니, 그 원래의 수량 내에서 으레 바치는 양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둔감(屯監)에게 주는데 이것이면 그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른바 둔감이 위협하여 토색질 하는 것이 한정없으니, 나라의 법과 기강에서 따져보면 참으로 놀랍고 고약한 짓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털끝만치라도 정해진 총수 외에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둔감의 그런 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일일이 엄하게 형장(刑杖)쳐서 원배(遠配)할 것이며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는 도신과 수령(守令)은 각별히 논죄하도록 일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소나무 목재에 대한 정사가 문란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경의 요충지나 섬을 막론하고 여러 곳의 봉산(封山)은 바로 조정에서 수백년 동안 정성과 노력을 들여 가꾸고 보호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공용(公用)이라고 핑계대면서 공문을 가져다 맡기	嚴飭列邑, 築底摘察, 必精毋濫之意, 一體行會諸道道臣何如?" 允之。 又曰: "京外各衙門屯土收稅之節, 自有定總。 而就原數之內, 除却例納, 以其零餘, 付之屯監, 此足爲渠輩沾漑之資矣。 挽近以來, 所謂屯監, 威脅勒討, 罔有限節。 揆以法綱, 誠極駭惡。 從今以後, 復或有一毫濫收於定總之外, 則該屯監隨其現發, 邑報于巡營, 營報于臣府, 這這嚴刑遠配, 而掩置不報之道臣守令, 各別論勘事, 一體申飭何如?" 允之。 又曰: "挽近松政之蕩然, 固已萬萬寒心。 而無論關隘、海島, 封山諸處, 乃是朝家幾百年勤念勞力, 長養擁護者也。 惟其蔑法牟利之徒, 憑託公用, 往付公文, 恣意斫伐, 殆無紀極。 山麓則不免汰覆之患, 畦塍則亦被湮廢之害, 而宮室之材, 船艦之需, 將無處可藉, 是豈細憂也哉? 如有不得不公用者, 量其株數, 遵其舊規, 先爲關由廟堂後施行。 萬一違式襲謬, 至於入聞, 則別般論警, 在所難免。 以此意竝爲申飭於各司、各營及諸道何如?" 允之。 又曰: "頃以憑藉公貨, 勒徵私債之弊, 一切禁斷

	고는 제멋대로 베어내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사태가 날 근심을 면치 못하고 논둑이나 밭둑도 역시 토사에 매몰되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궁실을 지을 목재나 배를 건조할 재목도 마련할 데가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소한 우려이겠습니까. 만약 어쩔 수 없이 관청에서 쓸 것이 있다면 그루 수를 헤아려 옛 규정을 따라서 먼저 묘당(廟堂)에 보고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하고 옛날의 잘못을 답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날에는 특별히 논책(論責)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각사(各司), 각영(各營)과 각도(各道)에 아울러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공화(公貨)라고 핑계대고 사채(私債)를 강제로 받아내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겠다는 뜻으로 연석에서 아뢰고서 행회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런 폐습이 성행하는데 근거 있는 소문일 뿐만 아니라 시골의 백성들이 달려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렇게 침탈을 당한 일입니다. 경외(京外)의 간사한 무리들이 잇속만 추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니 그들에게 나라 재물과 개인 재물의 경중을 들어서 책망할 나위도 못됩니다. 청탁만 하면 들어주고, 공문에 서명하여 주면서 마치 규례대로 수응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사리에 어긋남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 종종 제멋대로 공전(公錢)을 떼어다 쓰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바치기 어렵게 되면 결국 미봉책으로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여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니 체면을 손상시키고 원성을 사는 것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사(有司)의 신하를 특별히 신칙하여 재정의 관할과 출납을 곱절 엄격하게 하고 역시 각 도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이러한 공문을 가지고 와서 맡기는 자가 있으면 경인(京人)이건 향인(鄕人)이건 막론하고 곧바로 잡아가두고 이름을 지적해서 치보(馳報)하여 원래의 공문을 점련(粘連)하여	之意, 筵奏行會矣。 近年此習之狼藉, 不但傳聞之有據, 且見鄕民奔走訴冤者, 滔滔是此等橫侵之事也。 京外奸細之輩, 惟利是趨, 自不覺陷於罪辜, 固不足責之以公私輕重。 而乃其干囑則聽施之, 公文則署給之, 有若按例酬應者然, 事理之乖宜, 已無可言。 且其中種種有擅劃公錢者, 而竟至於難捧, 則遂以彌縫之計, 行此移徵之擧, 其爲損體而取怨, 尤當如何哉? 繼自今, 另飭有司之臣, 典守出納, 倍加謹嚴, 而亦爲關飭諸道, 若有似此公文之來付者, 不論京人、鄕人, 直爲捉囚, 指名馳報, 而原公文粘連上送, 以爲各別査處之地何如?” 敎曰: “以此事前後申飭, 果何如乎? 中外之不念國法與民情, 聽施奸細輩圖囑, 是豈可行之事? 另加嚴飭, 俾有實效於無辜之鄕民。” 最應曰: “北道陵官, 仕滿九十朔後, 始爲內遷, 故衰老潛郞, 無故準職者, 殆幾希矣。 物議之因此齎鬱, 積有年所。 而崇仁、崇靈、崇德、崇義四殿官之朔數變通, 至有已許之恩典。 況本道陵寢, 尤有所重者乎? 臣意則仕滿以六十朔施行, 俾伸向隅之歎, 恐合振

	올려 보냄으로써 각별히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앞뒤로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중외(中外)에서 나라의 법과 백성들의 정상은 생각지 않고 간사한 무리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있으니 이 어찌 할 짓이란 말인가.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무고한 향민(鄕民)들에게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능관(陵官)은 사수(仕數)가 90달이 찬 뒤에야 비로소 경관직(京官職)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늙어서야 낭관이 되니 탈없이 준직(準職)까지 오르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론이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한 지 여러 해 됩니다. 숭인전(崇仁殿), 숭령전(崇靈殿), 숭덕전(崇德殿), 숭의전(崇義殿)의 4전의 관원들의 사수에 대한 변통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의 은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본도(本道)의 능침(陵寢)은 더욱 소중하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사수(仕數)가 60달에 차면 경관직(京官職)으로 옮겨서 승진에서 소외되었다는 탄식을 해소시키는 것이 적체된 정사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4전(殿)의 관리들의 근무 기한에 대한 계산은 이미 변통하였는데 더구나 북도에 있는 능관(陵官)이야 더 말할 게 있는가. 막힌 승진을 해소시키는 정사일 뿐 아니라 실로 사체(事體)상 당연한 것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淹之政。” 敎曰: “四殿官計仕, 旣已變通, 況於北道陵官乎? 非但爲疏鬱之政, 實係事體之當然。 依所奏爲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10월 6일 (정해) 2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탄신일에 진찬연회를 차려 올리는 일을 진선소에서 관할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자전(慈殿)의 분부를 연이어 받게 되어, 경사를 기리는 의식을 아직까지 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간절한 마음을 대궐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 올리고 간청하여 비로소 허락받았다. 정례(情禮)로 보아 경사스러움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지금 또다시 탄신일(誕辰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더욱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는 12월 6일에는 마땅히 진찬(進饌)을 거행하여 내가 송축드리는 마음을 펴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진찬때에 제반 거행하는 절차는 본소(本所)에서 전담하도록 하라.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은 자전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지방에서 여령(女伶)을 올려 보내는 일은 지시하지 말라.” 하였다.	敎曰: “連承慈敎, 飾喜之節, 尙未展誠。 間以區區下懷, 自內屢煩仰請, 始蒙允許。 情禮慶幸, 曷有其極? 而誕辰之月, 今又在邇, 尤不勝慶祝。 來十二月初六日, 當進饌, 以伸祈頌之忱矣。” 又敎曰: “今番進饌時, 諸般擧行, 令本所專管爲之。 凡係張大之事, 有非所以仰體慈衷之意, 外方女伶, 勿爲知委。”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 (光緖) 3년) 10월 7일 (무자) 3번째기사 전라도의 목화가 흉년이므로 병조와 각 영에 돈으로 일부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장계(狀啓)를 보니, 목화 농사가 참담하게 흉년들었다고 하면서 산골 고을의 대동목(大同木)의 전량을 돈으로 납부하고 각 고을에서 바치는 훈국 포보(訓局布保)와 병조(兵曹), 각 군문(軍門), 각 아문(衙門)의 번포(番布)를 완전히 돈으로 바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목화의 성질이 비록 습기를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한 번 장마를 겪는 것은 사실 해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화 농사가 흉년들었다고는 하지만 전 도가 모두 흉년들었다는 것도 역시 이치상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피차간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敦相狀啓, 則‘以綿農慘歉之致, 請山邑大同木全數代錢, 各邑訓局砲保及兵曹各軍門、各衙門番布, 竝純錢代捧事, 令廟堂稟處’矣。 綿性雖曰惡濕, 一番經潦, 固常年之所不免也。 綿農雖曰失稔, 全省同歉, 亦當理之所不究也。 毋論彼此優劣之如何, 何可以一例請代乎? 然而民情攸關, 有難防塞。 依他道已施

	에 우열의 상태를 거론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은 예로 대전(代錢)을 청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실정과 관계되니 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도에서 이미 시행한 예에 따라 병조와 각 영에는 5분의 1을 대전하고 각사(各司)에는 전량을 돈으로 바치며 대동(大同)과 같은 정식 조세와 포보(砲保)와 같은 중요한 비용은 모두 쉽게 의논할 수 없으니 본색(本色)의 수량대로 바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之例, 兵曹及各營, 五分一代錢, 各司純錢, 至若大同正賦也, 砲保重需也, 俱不當容易議到, 以本色準納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0월 7일 (무자) 1번째기사 김보현 등을 진찬소 당상에 임명하다	전교하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보현(金輔鉉),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자덕(尹滋悳), 대호군(大護軍) 김병시(金炳始),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조영하(趙寧夏), 대호군(大護軍) 조성하(趙成夏)를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으로 삼으라.” 하였다.	初七日。 敎曰:“工曹判書金輔鉉、京畿監司尹滋悳、大護軍金炳始、知三軍府事趙寧夏、大護軍趙成夏, 進饌所堂上差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0월 11일(임진) 1번째기사 민겸호를 진찬소 당상에 임명하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겸호(閔謙鎬)를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으로 추가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兵曹判書閔謙鎬, 進饌所堂上加差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0월 15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十五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臣以稅穀愆拖之弊奏達, 非止一再, 批敎不翅截嚴。 而外邑之淹延, 自成

일(병신) 1번째기사 세곡 상납이 지연되는 폐단에 관하여 이최응이 아뢰다	“신이 세곡(稅穀)이 지연되는 폐단에 대해서 전하에게 아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전하의 비답도 매우 준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방 고을에서 시일을 끌며 지연시키는 것은 본래의 못된 습속이니 중앙 관청의 독촉이 하찮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또 다시 닥쳐왔는데도 조정의 명령은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서 그러는 것입니까, 노정(路程)의 기한을 정한 법은 사실 따를 만한 것이 못된다고 여겨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럴 리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監司)나 수령의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흉년이라 백성들의 물력(物力)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과 같다면 그전에 참혹한 흉년이 들었을 때 좁쌀과 마사(麻絲) 등의 물자로 상납했던 일은 전부 탕감을 거론할 바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몇 백 년 동안 기미(1859)년과 갑술년(1874)처럼 참혹한 흉년은 없었지만 재해로 감해준 것 외에 응당 바쳐야 할 조세는 역시 일포(一包)나 일단(一端)도 지체시킨 것이 없었으니 옛날에 감사나 수령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흉년에 백성들의 물력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첫째는 수령들이 시세에 편승하여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전(衙前)들이 중간에서 횡령하고 농간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허물은 먼저 도신(道臣)에게 있으니 삼남(三南)의 감사들에게 모두 감봉하는 법을 적용하고 그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논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도 내가 명령한 법의(法意)에 속하는데 내가 명령한 법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구휼하는 근본이다. 도신과 수령들이 어찌 이런 의리를 몰라서 그렇게 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套習, 京司之催督, 遂歸弁髦。 過夏涉秋, 冬序又屆, 朝家命令, 其無足顧憚而然乎? 程限法意, 固無足恪遵而然乎? 不然則安有是理? 今之爲按藩守土之職者, 輒曰‘歉歲, 民力莫之奈何。’ 苟如其言, 則曾前慘凶之時, 凡粟米、麻絲事上之需, 一竝蕩之蠲之, 無所擧論乎? 幾百年來, 未有如己、甲之慘凶。 而除却災減之外, 當納稅賦, 亦未有一包一端之遺滯者。 古之爲按藩守土之職者, 果不恤歉歲民力, 而乃如是耶? 一則令長之乘時玩愒也, 二則吏屬之從中偸弄也。 失飭之咎, 先在道臣。 三南監司, 竝施越俸之典, 隨其擧行之如何, 更爲論勘何如?” 敎曰: “恤民亦命令法意中事, 則順命令明法意, 乃恤民之本也。 道臣、守宰, 豈不知此義而然歟? 依所奏爲之。” 最應曰: “財賦衙門蓄儲之空枵, 莫今日若, 而重之前歲大無, 諸道俵災, 至於十二萬餘結之多。 稅舶之達于京師者, 隨以大蹙, 而意外臭載, 又爲夥數。 如此極艱之會, 益不覺茫然失圖矣。 今秋雖幸豐熟, 冬春頒放之資, 其將於何著手乎? 言念國計、民食, 萬萬悶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재정을 맡은 아문(衙門)의 저축이 지금처럼 텅 빈 적이 없습니다. 전년에는 큰 흉년까지 겹쳐서 각 도(道)에 표재(俵災)한 것이 많게는 12만여 결이나 되어서 서울에 도착하는 세곡선(稅穀船)이 그에 따라서 크게 줄어들었고 뜻밖에 파선(破船)된 것이 또한 많습니다. 이처럼 매우 곤란한 때에는 더욱 망연자실하여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올가을은 다행히 풍년이 들었지만 겨울과 봄 동안 급료로 나누어줄 밑천은 장차 어떻게 손을 쓴단 말입니까. 나라 재정과 백성들의 양식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부득이 지방에 있는 사창곡(社倉穀) 가운데서 삼남과 황해도(黃海道)에 각각 2만 석(石), 경기(京畿)에서 1만 석을 방금 배분하여 정해서 바치도록 지시했으니 차례로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나누어 주어 지출에 보충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돌이켜보건대 지금 민생이 곤란한 연유가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물며 각 도에서 큰 흉년을 이제 막 겪어서 곤궁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근년의 결가(結價)에 대해 말하자면 연석에서 여쭌 다음 행회(行會)를 근엄하게 했는데도 수령은 실상을 조사하여 삭감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속(吏屬)들은 그저 긁어 들일 생각만 하여 지나치게 거두며 그 명목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숱한 폐해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하는 말이 생겨나고 있으니 법과 기강으로 따져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선 감사(監司)부터 특별히 단속시키고 엄하게 경고하여 정신차리게 한 다음에야 이러한 잘못된 폐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결가(結價)를 도신들이 충분히 참작하여 정확하게 따져서 정해준 후에 규례대로 성책(成冊)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올려 보내 증빙 자료로 삼고 규정을 어기는	隘。 不得已以外道社穀中, 三南、海西各二萬石, 京畿一萬石, 纔有排定知委, 待其次第到泊, 分劃於戶、惠衙門, 俾爲牽補支用之地何如?” 允之。又曰: “顧今生民困瘁, 其端固不一, 而況諸路才經大荒, 殿屎者尙未就蘇, 寧不可矜乎哉? 第以近年結價言之, 筵稟行會, 旣勤且嚴, 而守宰則不念査減, 吏屬則惟意浚剝, 濫收加斂, 數目繁多。 由是而衆瘼滋, 由是而群言興, 法綱所在, 誠極駭歎。 先自按察之地, 別般檢束, 嚴加警勵, 然後此等謬弊, 可以革祛。 列邑所報結價, 道臣十分參酌精略, 定給後依例修成冊, 上送本府, 以爲憑處, 而如有踰越之邑, 則該守令直請重勘何如?” 敎曰: “出於民自有定數, 而結政若是淆濫, 則民將何以聊生乎? 另加嚴飭, 期有實效可也。” 最應曰: “各道鎭營之設置, 亶爲戢捕之政, 而近聞‘種種有公貨私債徵捧之弊’云。 此何關於鎭營之事, 而敢行法外之擧乎? 如係當徵而當捧者, 則營與邑之間, 豈無可處之道? 而自鎭營濫杖毒刑, 如治盜賊, 侵族及隣, 不有餘地, 一經推捉, 蕩析乃已, 此非干和之端

	고을이 있으면 해당 수령은 곧바로 중벌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래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결가(結價)에 관한 정사가 이렇게 엉망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각 도에 진영(鎭營)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도적을 막는 정사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근래에 듣자니 공물(公物)을 가지고 사채(私債)를 놓아서 이자를 받는 폐단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영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감히 법을 벗어난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징수하거나 바쳐야 할 것이라면 진영과 고을에서 어찌 처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영에서 마구 매질하고 모진 형벌을 가하기를 마치 도적을 다루듯이 하며 친족과 이웃을 침해하여 조금도 여지가 없으며 한 번 잡혀가는 사건을 겪으면 집안 재산이 거덜나고 마니 이것이 화기(和氣)를 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당 영장(營將)은 낱낱이 적발하여 우선 파면시키고 난 후에 잡아들이는 처벌을 적용하고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도신도 역시 특별히 논죄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도에 엄칙(嚴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도적을 막는 임무를 맡고서 제멋대로 재물을 거두어들인 것만으로도 매우 통탄할 일이니 백성들이 받은 해독이야 어떠하겠는가. 특별히 신칙하여 죄상을 적발해서 중죄로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난가을 흉년이 있은 뒤로 올해는 농사가 잘되어 쌀값이 좀 낮아졌지만 마을에서 도둑질하고 저잣거리에서 약탈하는 짓은 지난겨울이나 올봄보다 더 심하니 무슨 연유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경외(京外)에서 염탐하여 잡아내는	乎? 該營將這這摘發, 施以先罷後拿之典, 而匿不以聞之道臣, 亦爲別般論勘事, 嚴飭諸道何如?” 敎曰: “以戢盜之職, 恣行徵捧, 已極痛歎。 而民生之受毒, 當如何也? 別般申飭, 摘發重勘可也。” 最應曰: “昨秋歉荒之餘, 穡事登稔, 米直稍低, 而閭里之竊發, 場市之刦掠, 殆有甚於昨冬今春者, 抑何故也? 此專由於京外訶捕之嚴不嚴如何耳。 左右捕將, 除拜未幾, 姑先另飭, 使之別加譏捉, 亦以此意, 行會諸道, 毋敢有縱弛之歎, 而營將中其慢不擧職者, 劃卽啓聞重勘何如?” 敎曰: “各別操飭可也。”

	일이 엄한가 엄하지 않는가에 연유할 뿐입니다. 좌우포도 대장(左右捕盜大將)을 임명한 지 얼마되지 않으니 우선은 특별히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염탐해서 잡아내게 하고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각 도에 행회(行會)하여 감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탄식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장 가운데서 태만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는 즉시 계문(啓聞)하여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고종 14권, 14년(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0월 23일(갑진) 1번째기사 반접관 홍우창이 일본 사신이 서계를 바친 후 연회를 차렸다고 보고하다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이, ‘일본사신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직접 서계(書契)를 바치기 위하여 수원(隨員) 6명, 종자(從者) 1명을 데리고 예조(禮曹)에 들어가서 서계를 바친 후에 신이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와 함께 곧이어 하선(下船)과 관련한 연회를 베풀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二十三日。 伴接官洪祐昌以“日使花房義質, 躬呈書契次, 率隨員六人從者一名, 入去禮曹, 書契呈納後, 臣與義質, 仍行下船宴享”啓。
고종 14권, 14년(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1월 17일(무진) 2번째기사 일본 사신이 물품 단자를 바치고 당일로 출발하다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이,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임금에게 바친 물품 단자(單子)를 사역원(司譯院)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운현궁(雲峴宮)에 바치는 물품 단자도 함께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하나부사 요시타다가 거느린 수원(隨員) 8인, 해군 소위(少尉) 1인이 오늘	伴接官洪祐昌以“日本公使花房義質進獻物種單子, 令司譯院領納, 進呈雲峴宮物種單子, 亦令一體領納。” 啓。又以“花房義質率隨員八人, 海軍小尉一人, 今日卯時離發。” 啓。

	묘시(卯時)에 떠나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통명전에서 진찬을 거행하다	통명전(通明殿)에서 진찬(進饌)을 거행하였다. 【상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소차(小次)에 들어갔고, 세자는 쌍동계(雙童髻), 공정책(空頂幘)에 곤룡포 차림으로 소차에 들어갔으며, 왕비는 머리꾸미개를 하고 적의(翟衣) 차림으로 소차에 들어갔고, 대왕대비 전하는 머리꾸미개를 하고 적의 차림으로 대차(大次)에 들어갔다. 시간이 되자 여집사(女執事)가 세자에게 소차에서 나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설 것을 청하였고, 여관(女官)은 왕비(王妃)에게 소차에서 나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설 것을 청하였다. 여집사는 상에게 소차에서 나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설 것을 청하였으며, 상의(尙儀)는 대왕대비 전하에게 대차에서 나올 것을 청하였다. 음악이 연주되자 상궁(尙宮)이 앞에서 인도하여 어좌(御座)로 올라갔으며 상과 왕비, 세자가 네 번 절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대원군(大院君)과 부대부인(府大夫人)은 네 번 절하는 예를 거행하였고, 좌우 명부(左右命婦)와 종친(宗親), 의빈(儀賓), 척신(戚臣),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과 낭청(郞廳)이 네 번 절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절하는 의식이 끝나자 여집사가 휘건(揮巾 : 음식을 먹을 때 앞에 두르는 치마)을 담은 함(函)을 상 앞에 올리니 상이 함을 받아서 다시 여집사에게 주었다. 상식(尙食)이 넘겨받아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 자리 앞에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자 음식상을 올리고 숟가락과 접시를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자 여집사가 상에게 꽃을 올렸고 여관은 왕비에게 꽃을 올렸다. 여집사가 세자에게 꽃을 올리고, 여집사가 대원군(大院君)에게 꽃을 드리고, 전식(典飾)은 부대부인에게 꽃을 드렸다. 그리고 좌우 명부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에게 꽃	初六日。 行進饌于通明殿。【上具翼善冠·袞龍袍, 入小次; 王世子具雙童髻·空頂幘·袞龍袍, 入小次; 王妃加首飾、具翟衣, 入小次; 大王大妃殿加首飾、具翟衣, 入大次。 時至, 女執事請王世子, 出次, 入詣拜位, 北向立; 女官請王妃, 出次, 入詣拜位, 北向立; 女執事請上出次, 入詣拜位, 北向立; 尙儀請大王大妃殿, 出次。 樂作, 尙宮前導陞座, 上及王妃、王世子行四拜禮。大院君、府大夫人行四拜禮, 左右命婦及宗親、儀賓、戚臣、進饌所堂·郞行四拜。 禮訖, 女執事奉揮巾函, 進于上前, 上受函, 還授女執事。 尙食傳捧, 跪進于大王大妃座前。 樂作, 進饌案, 進匙楪。 樂作, 女執事進花于上, 女官進花于王妃, 女執事進花于王世子, 女執事呈花于大院君, 典飾呈花于府大夫人。 頒左右命婦、宗親、儀賓、戚臣、進饌所堂·郞花。 上跪進大王大妃殿第一爵, 進味數致詞, 女執事奉致詞, 北向跪讀展箋。 女執事進

	을 나누어 주었다. 상이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 전하에게 첫 번째 잔을 올리고 몇 가지 찬과 치사(致詞)를 올리자, 여집사가 치사를 받들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자 전문(箋文)을 펼쳐 들고 여집사가 전안(箋案) 남쪽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었다. 다 읽자 음악이 연주되고 대왕대비 전하가 잔을 들었다. 상식(尙食)이 빈 잔을 받들었다. 상궁이 선교(宣敎)하기를, "잔을 드는 때를 전하와 같이 하소서."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자 염수(鹽水)와 소선탕(小膳湯), 대선탕(大膳湯), 만두를 올렸다. 음악이 멎자 왕비가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 전하에게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몇 가지 찬과 치사를 올렸다. 여관이 치사를 받들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었다. 다 읽자 음악이 연주되고 대왕대비 전하가 잔을 들었다. 상식이 빈 잔을 받자 상궁이 선교하기를, "잔을 드는 때를 왕비와 같이 하소서."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자 상식이 대왕대비 전하에게 차를 드렸다. 음악이 멎자 세자가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 전하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고 몇 가지 찬과 치사를 올렸다. 여집사가 치사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자 전문을 펼쳐 들고 여집사가 전안 남쪽에 나가 꿇어앉아 읽었다. 다 읽자 음악이 연주되고 대왕대비 전하가 잔을 들었다. 상식이 빈 잔을 받자 상궁이 선교하기를, "잔을 드는 때를 세자와 같이 하소서."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여집사가 휘건을 받들어 상 앞에 올렸고, 여관이 휘건을 받들어 왕비 앞에 올렸으며, 여집사가 휘건을 받들어 세자 앞에 올렸다. 여집사가 음식상을 상 앞에 올렸고, 여관이 음식상을 왕비 앞에 올렸으며, 여집사가 음식상을 세자 앞에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고 상과 왕비, 세자 이하가 세 번 머리를 조아리며 만세를 부르고 절차대로 네 번 절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여집사가 휘건을 대원군과 부대부인 앞에 펼쳐 드리고 음식상을 놓고 숟가락과 접시를 놓았고, 전선(典膳)이 좌우 명부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에게 음식상을 차렸다. 음악이 연주되고 여집사가 술을 따라 대왕대비에게 올렸다. 대왕대비 전하는 그것을 받아서 상식에게	當箋案南, 北向跪讀。 訖, 樂作, 大王大妃殿擧爵。尙食受虛爵, 尙宮宣敎曰: "稱觴之辰, 與殿下同之。" 樂作, 進鹽水及小膳湯、大膳、進味數致詞。 女官奉致詞, 北向跪讀。 訖, 樂作, 大王大妃殿擧爵。 尙食受虛爵, 尙宮宣敎曰: "稱觴之辰, 與王妃同之。" 樂作, 尙食進茶于大王大妃殿。 樂止, 王世子跪進大王大妃殿第三爵, 進味數致詞。 女執事奉致詞, 北向跪讀展箋。 女執事進當箋案南, 北向跪讀。 訖, 樂作, 大王大妃殿擧爵。 尙食受虛爵, 尙宮宣敎曰: "稱觴之辰, 與王世子同之。" 樂作, 女執事捧揮巾, 進上前;女官捧揮巾, 進王妃前; 女執事捧揮巾, 進王世子前。 女執事進饌案于上前; 女官進饌案于王妃前; 女執事進饌案于王世子前。 樂作, 上及王妃、王世子以下, 三叩頭山呼行四拜禮如儀。 樂作, 女執事展揮巾于大院君、府大夫人前, 設饌卓、匙楪, 典膳宣左右命婦及宗親、儀賓、戚臣、進饌所堂·郞饌卓。 樂作, 女執事酌酒, 進于大王大妃殿, 大王大妃殿受之以授尙食, 尙食傳于上, 上受爵擧飮。 女

	주었고 상식이 상에게 전하니 상이 잔을 받아 마셨다. 여집사가 몇 가지 찬과 탕, 만두, 차, 별행과(別行果)를 임금에게 올리자 여관(女官)이 왕비 앞에 나아가서 모두 위의 의식절차 대로 하였다. 여집사가 세자 앞에 올리는 것도 모두 위의 의식절차와 같이 하였다. 여집사가 대원군, 부대부인, 좌우 명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에게 술잔을 올렸다. 상식이 대왕대비 전하의 음식상과 휘건을 물렸고, 여집사가 상의 음식상과 휘건을 물렸으며, 여관이 왕비의 음식상과 휘건을 물렸고, 여집사가 세자의 음식상과 휘건을 물렸다. 이를 마치자 여집사가 대원군, 부대부인, 좌우 명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의 음식상을 물렸다. 이를 마치자 상과 왕비, 세자에게 제자리로 갈 것을 청하였으며 또 대원군, 부대부인, 좌우 명부, 종친, 의빈, 척신, 진찬소 당상과 낭청에게도 절하는 자리에 나가 네 번 절할 것을 청하였다. 상궁이 탑전(榻前)에 나가서 꿇어앉아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었다. 대왕대비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대차에 들어가고 여집사들이 치사함(致詞函)과 전문함(箋文函)을 들고 순서대로 꿇어앉아 임금 앞에 올리니 상이 그것을 받고는 공손히 받들고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여관들이 치사함과 전문함을 들고 꿇어앉아 왕비 앞에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절차대로 하였다. 여집사들이 치사함과 전문함을 들고 순서대로 꿇어앉아 세자 앞에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절차대로 하였다.】	執事進味數及饅頭茶, 別行果于上, 訖, 女官進于王妃前, 竝如上儀。 女執事進于王世子前, 竝如上儀。 女執事行酒于大院君、府大夫人、尙食退大王大妃殿饌案及揮巾, 女執事退上饌案及揮巾, 女官退王妃饌案及揮巾, 女執事退王世子饌案及揮巾訖。 女執事撤大院君、府大夫人、又請大院君、府大夫人、左右命婦、竝行四拜禮。 尙宮進榻前, 跪啓禮畢。 大王大妃殿降座, 入大次, 女執事奉致詞箋文函, 以次跪進于上前, 上受之, 命敬陪以入。 女官奉致詞函, 跪進于王妃前, 竝如上儀。 女執事奉致詞箋文函, 以次跪進于王世子前, 竝如上儀。】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6일 (병술) 2번째기사 통명전에서 밤에 진찬례를 거행하다	통명전(通明殿)에서 밤에 진찬례(進饌禮)를 거행하였다. 【상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에 꽃을 꽂았다. 시간이 되자 여집사(女執事)가 청하니 상이 소차(小次)에서 나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섰다. 상궁(尙宮)이 청하니 대왕대비 전하가 대차(大次)에서 나왔	行夜進饌禮于通明殿。【上具翼善冠、袞龍袍, 揷花。 時至, 女執事請上出次, 入詣拜位, 北向立。 尙宮請大王大妃殿出次。 樂作, 尙宮前導陞座。 上行四拜禮。 訖, 女執事捧揮巾函, 尙食傳捧, 跪進于大王大妃座前。

	다. 음악이 연주되자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니 상이 어좌(御座)로 올라갔다. 상이 네 번 절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절이 끝나고 여집사가 휘건함(揮巾函)을 드리자 상식(尙食)이 넘겨받아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자리 앞에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자 음식상을 올리고 숟가락과 접시를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자 임금이 꿇어앉아 대왕대비 전하에게 잔과 치사(致詞)를 올렸다. 여집사가 치사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었다. 다 읽자 집박(執拍)하는 여집사가 노래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왔다. 음악이 연주되고 대왕대비 전하가 잔을 들었다. 상식이 빈 잔을 받자 음악이 그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나갔다. 상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절차대로 만세를 불렀다. 음악이 연주되자 상식이 대왕대비 자리 앞에 탕을 올렸고, 여집사는 상 앞에 휘건을 올렸으며 음식 소반을 올리고 숟가락과 접시를 올렸다. 이것이 끝나자 상식이 대왕대비 자리 앞에 차를 올렸으며 여집사는 상 앞에 차를 올렸다. 음악이 연주되고 상식이 반찬과 숟가락, 접시, 휘건을 물렸으며, 여집사가 음식 소반과 숟가락, 접시, 휘건을 물렸다. 이것이 끝나자 상에게 자리에 들어가 네 번 절할 것을 청하였다. 상궁이 탑전에 나가 꿇어앉아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었다.】	樂作, 進饌案、進匙楪。樂作, 上跪進大王大王殿爵, 致詞。 女執事奉致詞, 北向跪讀。 訖, 執拍女執事引歌者, 就坐。 樂作, 大王大妃殿擧爵。 尙食受虛爵, 樂止, 歌者出。 上三叩頭山呼如儀。 樂作, 尙食進湯于大王大妃座前, 女執事進揮巾于上前, 進饌盤、進匙楪、女執事進茶于上前。 樂作, 尙食退御饌及匙楪、揮巾, 女執事退饌盤及匙楪、揮巾訖。 請上就位, 行四拜禮。 尙宮進搨前, 跪啓禮畢。】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6일 (병술) 3번째기사 대신들에게 사찬하고 꽃을 나누어 주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와 승지(承旨), 사관(史官), 규장각(奎章閣) 신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2품(品) 이상 관리,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꽃을 나누어 주었다.	賜饌、頒花于時原任大臣、奉朝賀、承·史、閣臣、玉堂、春桂坊、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
고종 14권, 14년		二十九日。 議政府啓:“卽見京畿監司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29일(기유) 1번째기사 일본 사신 행차 때 연로의 역참의 접대 비용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자덕(尹滋悳)이 신보한 것을 보니, ‘전날 일본 사신의 행차 때 연로(沿路)의 주요 역참(驛站)과 접응(接應)한 각 고을의 비용은 애초에 조획(措劃)하지 않았으므로 임시로 끌어다 쓴 것이 모두 공화(公貨)를 시급히 마련한 것인데, 그 액수는 7,000냥(兩)이나 됩니다. 제때에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本道) 각 고을에 영구히 획급(劃給)한 저치미(儲置米) 가운데서 1,000석(石)을 본색(本色)으로 획정하여 내려서 형편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고 드는 물량도 조획한 것이 없으니 형편상 반드시 공화를 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지금 갚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치미 가운데서 편할 대로 가져다 쓴 근래의 전례가 많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尹滋悳所報, 則‘向日日使之行, 沿路主站, 與出待各邑諸般供億之費, 初無措劃, 其所塗抹, 無非時急公貨, 而其數至爲七千兩之多, 不得不趁卽措辦, 就本道各邑永劃儲置米中一千石, 以本色劃下, 以爲方便措處之地’爲辭矣。日使接應之節, 旣無定規, 容入物力之數, 亦無措劃, 其勢也必至於擅挪公貨, 則此不容不趁今報勘。 而儲置米中, 從便取用, 多有近例, 依所請施行何如?” 允之。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30일(경술) 2번째기사 사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말의 수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牧場)에서 기르고 있는 말은 5,165마리〔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五千一百六十五匹。’ 啓。
고종 14권, 14년 (1877 정축 / 청 광서(光緖) 3년) 12월 30		議政府以‘各道災結三千五百六十二結, 特許準劃’啓。

일(경술)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각 도의 재해 결수가 3,562결인데 그대로 획급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해 결수(災害結數)가 3,562결인데 특별히 그대로 떼 주소서.'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 실록(實錄) 제14권 끝】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월 9일(기미) 2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이 혼례를 치른 지 60년이 되므로 축하하는 의식을 대신들과 논의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공조(工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올해가 바로 우리 자전(慈殿)이 혼례를 치른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나의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작년 동지(冬至)에 아울러 거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이 큰 경사를 겸해서 치를 필요가 없고 응당 구별되어야 할 경사이기 때문에 오늘 경(卿) 등을 불러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영부사(領府使) 이유원(李裕元) 등이 아뢰기를, "대왕대비 전하의 결혼 60돌 경사는 원래 우리나라의 예법에 있으니 널리 알리는 의식을 따로 거행하는 것은 전하의 효성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지금의 하교에 대하여 신은 참으로 끝없이 우러르게 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올해가 바로 우리 자전이 혼례를 치른 지 60년이 되는 경사로운 해이다. 나의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경사를 치르는 절차는 원래 법전에 있으나 시일을 앞당겨 경사를 축하하는 것도 역시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으니	引見時原任臣、工禮堂。 敎曰:"今年卽我慈聖殿下舟梁六十年也。 予小子歡忭之忱, 曷有其極? 昨年亞歲, 欲爲竝擧, 而如此莫大之慶, 不必兼行, 宜有所別爲稱慶, 故今召卿等議之矣。" 領府事李裕元等曰: "東朝殿下舟梁六十年稱慶, 自有我家禮, 別行告布, 尤有光於聖孝。 今者下敎, 臣不勝欽仰萬萬矣。" 敎曰: "今年卽我慈聖殿下舟梁回甲之慶年也。 予小子歡忭之忱, 曷有其極? 飾慶之節, 自有彝典, 而前期稱慶, 亦有已行之禮, 昨冬亞歲, 竊欲竝稱識喜矣。 第念慶會連疊, 如此罕有之大慶, 不可不另爲稱賀, 故已自內仰稟, 而今日召見大臣、禮堂, 僉辭

	지난겨울 동지(冬至)에 삼가 함께 경축하고 기쁨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만 이처럼 드물게 있는 큰 경사는 따로 축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대궐 안에서 우러러 문의하였고 오늘은 대신들과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을 불러들여 만났는데 모두들 의견이 같다. 대왕대비 전하의 결혼 60돌을 선포하는 절차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달 안으로 거행하도록 하며, 진하일(陳賀日)에는 마땅히 표리(表裏)를 직접 올려 변변치 못한 성의나마 보여드릴 것이다.”	惟同。 大王大妃殿舟梁六十年告布之節, 令儀曹, 今月內擧行, 陳賀日, 當親進表裏, 以伸區區之誠。”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월 25일 (을해)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결혼 60돌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리고 사령을 반포하다	상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대왕대비 전하의 결혼 60돌을 맞아 치사(致詞)와 전문(箋文) 및 표리(表裏)를 직접 올리고, 이어 관리들의 축하를 받은 다음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로 성인이 계셔 이루신 공적이 원대하니 정월에 큰 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함을 정해 혼례를 치러 그 빛이 드러나더니 어느덧 결혼 60돌을 맞이하셨다. 이것은 500년 역사에 드문 경사이니 어찌 온 나라에 반포하는 의식을 늦출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大王大妃) 전하께서는 너그러운 자태에 단정하고 깨끗한 덕을 지녔으며 슬기로운 여인으로서 선왕의 배필이 되어 나라가 어진 왕비의 풍교(風敎)를 받게 되었고 문왕(文王)의 어머니와 같은 덕으로 훌륭한 자손을 두었으니 백세토록 자손의 번성을 칭송하는 노래가 퍼지게 되었다. 존귀해진 뒤에도 근면하고 부유해진 뒤에도 검박하여 그 아름다움은 역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하고 조용하면서도 방정하여 여인으로서 정사를 도왔다.	二十五日。 詣仁政殿, 親上大王大妃殿舟梁六十年稱慶致詞、箋文、表裏, 仍受賀, 頒赦。 敎文若曰: “上有聖所成者遠, 迓鴻祺於三陽, 文定祥不顯其光, 屆鳳曆於六紀。 斯乃五百年罕有之慶, 詎緩三千里播告之儀? 恭惟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大王大妃殿下, 博厚含弘之姿、端莊純粹之德, 聖女爲聖人聖配, 二南被樛木之風, 文母有文子文孫, 百世衍瓜瓞之頌。 已貴能勤、已富能儉, 彤管播徽; 至柔而剛、至靜而方, 黃裳協吉。 修《女則》而儆簪珥, 夙著唐良佐懿規; 臨母儀而躬練綈, 采仰漢明德隆範。 顧沖

	여인의 법도를 닦아 비녀와 귀고리 등의 사치를 경계하여 일찍이 당(唐) 나라의 양좌(良佐)인 문덕(文德) 황후처럼 아름다운 규범을 드러내었으며 어머니로서의 의범에 있어선 몸소 명주를 짰던 한(漢) 나라 명덕(明德) 황후의 성대한 전범을 본받았다. 돌이켜보건대 어린 내가 왕업을 이어받은 것은 어머니가 보살피고 도와주는 은덕에 힘입은 것이었다. 좋은 점괘를 얻자 어려운 나라 형편을 바로잡고 왕업을 빛내도록 해 주셨으며 자손을 위한 훌륭한 계책을 마련하여 나라의 방책을 도우셨다. 선왕을 생각하여 과인을 도우셨으니 아, 그 지극한 덕은 하늘과 같이 크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하늘에 국운이 영원하길 기원하셨으니 아, 신묘한 교화가 온 나라에 두루 미쳤도다. 열다섯 번이나 존호를 더 올렸으나 뛰어난 공로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였는데 자손에까지 미치게 된 경사를 돈독히 하여 네 차례나 거듭 그 덕을 칭송하니 기쁜 마음으로 온화하고 단아한 예악(禮樂)의 정사를 일찍 성취하게 되었다. 사직(社稷)은 결국 신령하게 장수하신 당신에 힘입어 패옥 소리 같은 교화가 크고 멀리 퍼지게 되었고,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보살펴 주시어 당신의 옥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위대하도다, 자성께서 편안한을 누리게 된 시기로다! 진실되도다, 하늘의 온갖 복록이 모여드는 기회로다! 당신께서 큰 복으로 받으신 수(壽)는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아홉째인 오복(五福)의 하나요, 태어나신 해를 헤아려 보니 13달이 든 윤년 정월이었다. 단군께서 강림하신 저옹(著雍 : 십간(十干)의 무(戊)의 고갑자)의 해와 일치하니 상서로운 무(戊)의 천간(天干)이 천년에나 한 번 있는 천운으로 돌아오고, 천황씨(天皇氏)가 일어나 다스리신 섭제격(攝提格 : 십이지(十二支)의 인(寅)의 고갑자)의 해와 부합하니 인간이 태어나는 지지(地支)인 인(寅)의 지지를 맞이하여 1만 8천 년의	藐承艱大之緖, 賴慈聖垂保佑之恩。 龜兆橫庚, 整綴旒而奠丕業; 燕謨翼子, 抗裘冕而翊洪圖。 思先君勖寡人, 猗至德與天同大; 誠小民祈永命, 緊神化率土普均。 揚顯稱而十五加隆, 仰難名於巍蕩; 篤餘慶而四重騰頌, 欣夙就於溫文。 社稷終賴靈長, 璜聲弘遠; 祖宗默垂眷棐, 璿度康疆。 大哉! 地寧得一之期; 允矣! 天祿遒百之會。 受玆介而九五, 福曰壽; 撫于辰而十三, 月爲正。 叶檀君降著雍之年, 吉戊回千一之運; 符天皇起攝提之歲, 生寅開萬八之休。 猗瑤筭稀齡之已踰, 迺舟梁初載之將屆。 緬嬀汭觀型之盛, 天工夙贊萬幾; 想洽陽作合之時, 星紀恰周六十。 瑞婺臨太微之座, 自天用其休申; 大璋稽親迎之文, 明年又是舊甲。 肆頤期方祝於慈極, 況節文自有於我家。 瑤觴旣稱於誕辰, 尙非忱之未罄; 玉牒荐颺於諏日, 亦晙禮之已行。 寸心報暉, 竊幸嘉會之連湊; 大斗祈耇, 若爲彝典之式遵。 第懿衷恒存於巽謙, 而繁儀益戒於豐豫, 在承意養志之道, 敢不盡誠? 顧扑手蹈足之倫, 思與同慶, 玆循中外顒祝之願, 誕

	아름다운 경사가 열리게 되었다. 아, 보령이 이미 희년(稀年)을 넘기고 혼례를 치르셨던 구갑(舊甲)이 장차 이르려 한다. 요(堯)임금 같은 어머니의 훌륭한 본보기를 이어 온갖 복잡한 정사를 도왔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60년이 된다. 상서로운 별이 태미(太微) 자리에 임하니 하늘에서부터 그 복이 펴져 내린 것이고 큰 옥홀에 새겨진 친영(親迎)의 글을 상고하니 내년이 바로 구갑(舊甲)인 것이다. 이에 대왕대비에게 두드러지게 축하를 올려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전부터 이런 예식이 있었던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탄신일에 이미 옥배를 올려 축수는 하였으나 하찮은 정성을 다 펴진 못하였으며, 책문(冊文)을 올리는 성대한 의식을 좋은 날을 골라 이미 진행하였다. 하잘것없는 정성이나마 봄볕 같은 자성의 은혜에 보답코자 하던 참에 다행히도 좋은 때를 만나게 되었기에 큰 말로 술을 따라 당신의 장수를 기원하니, 마치 영원히 변치 않는 법도를 본받아 준행한 것같다. 다만 대왕대비께서 늘 겸손하여 성대한 의식을 못하도록 미리 경계하시니, 뜻을 받들어 봉양하는 도리에 있어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는 무리들이 이 경사를 함께 할 것을 생각하였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따라 온 강토에 알리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종묘(宗廟)에서 궁전으로 오가면서 이미 공경하게 제사를 지냈으니 모든 지역에 있는 죄인들에게 사면령(大免令)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의사를 체현하여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알리고 봄철에 순응하여 은덕을 온 나라에 베푸는 것이다. 이달 25일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서 사형 죄인 이하는 모두 용서해 준다. 아, 탁월한 아름다운 도를 지니시고 드러나지 않게 두루 크게 은택을 내리시어 팔순(八旬)의 경지를 열며 많은 복을 받으시니, 그 덕이 해와 달 그리고 송백(松柏)과 같이 장수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한 달에 세 번 축하 의식을	擧上下告布之儀。 自廟徂宮, 旣牲玉之祗薦; 率濱環域, 又鷄竿之特宣。 體天道於好生, 渙汗誕誥; 順春令而布德, 解澤旁流。 自本月二十五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於戲! 卓越徽猷、潛周景貺, 啓八旬而多受繁祉, 如日月松柏之罄無不宜。 在一朔而三擧賀儀, 自帝王、后妃以來未有盛。故玆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李源命製】

	거행하는 것은 제왕과 후비가 있은 이래로 있지 않았던 성대한 의식이다. 그래서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하였다.【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원명(李源命)이 지었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월 27일 (정축) 2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결혼 60돌을 경축하는 경과는 초시를 면제하고 정시와 합쳐서 거행하도록 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 전하(殿下)의 결혼 60돌을 경축하는 경과(慶科)는 초시(初試)를 면제하고 정시(庭試)를 보이되 이번의 정시와 합쳐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조처는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大王大妃殿舟梁六十年, 稱慶慶科, 命以除初試庭試, 合設於今番庭試。 因禮曹啓也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3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진찬의궤》의 수정은 모두 《을묘 정리 의궤》에 의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수정은 《을묘 정리 의궤(乙卯整理儀軌)》에 의거대로 하라.” 하였다.	十三日。 敎曰: “《進饌儀軌》修正, 一依乙卯整理儀軌規例, 爲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3일 (임자) 1번째기사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근래에 세곡(稅穀)이 지체되는 것은 바로 기강이 진작되지 못해서이고 또한 태만이 풍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병자년	初三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挽近稅穀之拖滯, 卽紀綱之不振也、亦怠慢之成習也。 今之言者, 動輒以丙歲大荒, 雖爲話柄, 昨秋年穀, 幸占

영의정 이최응이 세곡 상납이 지연되는 것 등에 관하여 아뢰다	(1876)에 큰 흉년이 든 것을 거론합니다. 그것이 비록 이야깃거리가 되긴 합니다만, 작년 가을에는 다행히 큰 풍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이 납부하지 않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전(衙前)들이 크게 농간을 부리고 관리들도 역시 유용하고 또 뱃놈들이 훔쳐내는 정상이 못하는 짓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신구곡(新舊穀)이 모두 지체되어 완전히 기한이 무시된단 말입니까?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내리시고 아뢰어 신칙한 것이 전후에 이어졌는데도 갈수록 더 지체시키면서 못들은 척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허물을 돌려야 합니까? 죄가 아전들에게 있다면 수령이 법에서 살펴 참작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만일 죄가 수령들에게 있다면 감사(監司)된 자가 사실에 근거하여 논감(論勘)하면 될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꺼려서 자세히 살펴 해당되는 죄로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삼남(三南)의 도신(道臣)을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이런 내용을 성화같이 행회(行會)하여 그들의 근만(勤慢)을 살펴 다시 각별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재부(財賦)를 담당하는 아문(衙門)에서 외획(外劃)하는 것이 공공의 재화가 축나는 큰 폐단의 구멍이니, 이제부터는 일체 금단하며 오류를 답습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당상(堂上)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일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조세를 바치는 일을 가지고 전후에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도 결국 형식적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이 한 가지 문제를 미루어보아도 기강이 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놀랍고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모두 아뢴 대로 하고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헌영(李헌永)의 서계(書啓)에서 개성 전 유수	大有, 則民必無不納之理。 而吏多舞弄, 官亦挪換, 且船漢輩之偸犯情節, 殆無所不至矣。 於斯三者, 若無是也, 奚由而新舊竝淹, 頓無程限乎? 筵敎奏飭, 前後相續, 而去益稽延, 褒如充耳, 咎將屬誰? 苟罪在於吏屬, 則其爲守令者, 按法而酌處, 可也; 苟罪在於守令, 則任其藩司者, 據實而論勘, 可也。 於斯二者, 何顧、何憚, 而不之猛察, 以其罪罪之乎? 三南道臣, 姑先從重推考, 以此星火行會, 觀其勤慢, 更爲各別規警。 而近來財賦衙門之外劃, 大是公貨愆欠之弊竇也。 從今以往, 一切禁斷, 而若有襲謬之入聞, 則當該堂上, 難免其責之意, 一體提飭何如?” 敎曰: “以供稅事, 前後董飭果何如? 而竟歸文具而止, 推此一款, 可見紀綱之無地可立。 思之及此, 寧不駭歎? 竝依所奏爲之, 別般嚴飭, 可也。” 最應曰: “因京畿暗行御史李헌永書啓, 臚列開城前留守洪承億有難免不禁之失, 而守臣體重, 令廟堂稟處事, 吏曹粘目, 啓下矣。 率非其人, 失之不察, 責備之地, 豈可無警? 前留守洪承億, 施以罷職之典。 至於卞在成則渠以幺

	(開城前留守) 홍승억(洪承億)이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열거하면서 수신(守臣)의 체모가 중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조(吏曹)의 점목(粘目)이 계하(啓下)되었습니다. 적임자가 아닌데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두루 책려해야 할 입장에서 어찌 경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 유수 홍승억에게 파직(罷職)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변재성(卞在成)으로 말하자면, 그는 보잘 것 없는 일개 편비(褊裨)인데 비장(裨將)의 의무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상관의 총명을 가리는 버릇만 일삼아 공화(公貨)를 가로채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는데 그 수량이 만여 금(金)이 넘습니다. 불량하게 불법을 자행하였으니,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유사(攸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보잘것없는 일개 편비가 제멋대로 약탈한 것이 이와 같이 많다니 몹시 통분한 일이다. 아뢴 대로 각별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麽一裨, 罔念佐幕之義, 專事蔽聰之習, 乾沒公貨、攘奪民財, 其數恰過萬有餘金。 無良、不法, 寧敢乃爾? 令攸司查實定罪何如?" 敎曰: "幺麽一褊裨之恣行攘奪, 如是夥多, 事甚痛惋。依所奏各別查處, 可也。"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12일 (신유) 1번째기사 대비전에게 좁쌀미음을 달여 드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비 전하께 1냥 중의 인삼을 넣은 좁쌀미음을 달여 들이라." 하였다.	十二日。 敎曰: "大妃殿進御一兩重人蔘粟米飮, 煎入。"
고종 15권, 15년		大妃殿昇遐。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12일 (신유) 2번째기사 대비전께서 승하하다	대비 전하(大妃殿下)께서 승하(昇遐)하였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약원에서 죽과 미음을 들 것을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구두로 아뢰기를, “죽과 미음을 드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망극하다.” 하였다.	十四日。 藥院口啓: “進粥飮。” 敎曰: “罔極。”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15일 (갑자) 2번째기사 약원에서 죽을 들 것을 구두로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죽을 드실 것을 구두로 아뢰었다. 이어 다시 아뢰었으나 하교하기를, “망극하다.” 하였다.	藥院口啓: “進粥飮。” 仍再啓。 敎曰: “罔極。”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5월 16일 (을축) 1번째기사 약원에서 죽을 들 것을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口啓)에, “죽과 미음을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막힌 슬픔이 갈수록 더한 것을 무엇에 비기겠는가? 죽과 미음은 억지로라도 들겠다.” 하였다.	十六日。 藥院口啓: “進粥飮。” 敎曰: “哀隕罔極, 去益何諭? 粥飮當勉進矣。”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7일 (병인) 3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口啓)에,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복(成服)이 어느덧 지났건만 갈수록 망극해진다. 이런 때에 어떻게 상선을 들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	藥院口啓, 請復膳。 敎曰: “成服奄過, 益復罔極。 此時何可進常膳乎? 勿爲煩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상선을 회복하도록 의계를 올리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도승지(都承旨) 한경원(韓敬源), 좌승지(左承旨) 민영익(閔泳翊), 우승지(右承旨) 박용대(朴容大),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성균(金性均), 우부승지(右副承旨) 이헌영(李씨永), 동부승지(同副承旨) 홍대중(洪大重)이다.】‘빨리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망극한 일이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하였다.	院議啓【都承旨韓敬源、左承旨閔泳翊、右承旨朴容大、左副承旨金性均、右副承旨李씨永、同副承旨洪大重】, 請亟復常膳。 敎曰: “罔極。 此非言此之時也。”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3번째기사 홍문관에서 상선을 회복하도록 차자를 올리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행 부제학(行副提學) 이순익(李淳翼), 응교(應敎) 조창하(趙昌夏), 부응교(副應敎) 이교하(李敎夏), 교리(校理) 윤정구(尹定求)·백규수(白奎洙), 부교리(副校理) 민영규(閔泳奎)·남숙희(南肅熙), 수찬(修撰) 고운정(高雲뀌), 부수찬(副修撰) 윤승구(尹升求)·정원화(鄭元和), 정자(正字) 민영환(閔泳煥)이다.】‘빨리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	玉堂聯箚【行副提學李淳翼、應敎趙昌夏、副應敎李敎夏、校理尹定求·白奎洙、副校理閔泳奎·南肅熙、修撰高雲뀌、副修撰尹升求·鄭元和、正字閔泳煥】, 請亟復常膳。 敎曰: “何以言於此時乎?”

다	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때에 말하는가?” 하였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4번째기사 빈청에서 상선을 회복하도록 청하다	빈청(賓廳)에서, ‘빨리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때에 상선을 회복하라는 청을 들으니 망극함이 더욱 심해진다. 경(卿)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賓廳啓, 請亟復常膳。 敎曰: “此時聞復膳之請, 罔極愈切。 卿等勿煩。”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5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상찬을 회복하도록 청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재차 의계(議啓)를 올려, ‘상찬(常饌)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院議再啓, 請復常饌。 批曰: “不允。”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6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하도록 청하다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卿)들과 빈청(賓廳)의 계청(啓請)이 번갈아 간절하게 그치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따르려고 생각한다.”	藥院口啓, 請復膳。 敎曰: “卿等與賓廳之啓迭懇未已, 當思勉從矣。”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빈청(賓廳)에서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卿)들이 이렇듯 간절하게 청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賓廳再啓。 敎曰: “卿等之懇迫如是, 不得已勉從。”

(光緖) 4년) 5월 18일 (정묘) 7번째기사 상선을 회복하겠다고 하다	하였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5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목화농사 흉년이 가장 심한 곳은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작년 가을 삼남(三南)에서 목화 흉년이 제일 심하여 응당 바쳐야 할 세목(稅木)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도신(道臣)의 보고가 연이어 올라와 하나같이 답답하다고 말하니, 조정에서 진휼(軫恤)하는 정사에서 어떻게 평상시의 규례만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우심읍(尤甚邑)의 경우 병자년(1876)과 정축년(1877) 조(條)로 아직 바치지 못한 두 해의 세목은 특별히 편리한 대로 돈으로 대신 내도록 허락함으로써 백성과 고을에서 숨을 돌릴 방도로 삼게 하고, 이미 본색(本色)으로 바친 것은 각읍(各邑)에 엄하게 신칙하여 속히 실어다 바치도록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게 모두 각별히 말을 만들어 통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九日。 議政府啓:“昨秋三南, 最被綿歉, 當納稅木, 末由措辦, 道報連至, 一辭告悶, 朝家軫恤之政, 豈可膠守常例乎? 孰其尤甚邑, 丙子、丁丑條未納兩稅木邊, 特許從便代錢, 以爲民邑紓力之道。 已捧以本色者, 嚴飭各邑, 卽速輸納之意, 令戶惠衙門竝各別措辭, 知委何如?”允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 (光緖) 4년) 6월 1일 (기묘)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전과 조전의 조상식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初一日, 己卯。 詣殯殿, 行朔奠、朝奠, 朝上食。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6월 15일 (계사)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강도의 우환과 세곡 운반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발생하는 우환이 곳곳에 있어 듣기에 놀라운데 여염집이 밀집된 곳에도 심지어 보통이 아닌 도적의 변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포도청(捕盜廳)에서 항상 엄하게 살피고 막았다면 어떻게 이런 변이 있겠습니까?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은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고을로 말하면 총을 쏘는 명화적(明火賊)들이 모여들어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재화를 빼앗아 저자가 비어있게 되는 때가 많고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그저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나드는 좀도적에 비길 바가 아니니, 각기 해당 고을에서 철저히 염탐한 후에 포군(砲軍)을 동원하여 기필코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특별히 신칙하였는데도 혹시라도 허송세월하면서 체포하지 못하면 중죄를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각 해당 도(道)의 감사(監司)들에게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곡(稅穀)을 실어 운반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몹시 중하며 경강선(京江船)과 집주선(執籌船)은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全羅道)의 첫 번째 조운선이 아직 내려가지 않은 고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운선은 장차 언제 납부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 당상(舟司堂上)은 신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도영장(都領將)은 해사(該司)에서 엄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도록 하며, 날짜를 끌면서 출발하지 않은 뱃놈들은 일일이 조사 적발하여 각별히 엄하게 죄를 주고, 아직 내려가지 않은 곳에는 빨리 점검해서 보내라고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京外竊發之患, 在在驚聞, 閭閻叢集之中, 甚至有非常偸盜之變。 兩捕廳苟能恒嚴訶戢, 安有是也? 左右捕將, 竝從重推考。 以外邑言之, 明火放砲之賊, 聚徒成群, 殺人掠財, 場市多至空廢, 民情大致繹騷。 此非如干穿窬之可比矣。 自各該邑, 到底偵探後, 調發砲軍, 期於殄滅。 而如是另飭之下, 若或有忨愒失捕, 則難免重勘之意, 請分付各該道臣。” 允之。 又啓: “稅穀裝運, 事體甚重, 京船執籌, 期限自在。 而卽聞兩湖初運船, 尙多有未下去之邑云。 然則其再運者, 將了納於那時乎? 舟司堂上, 難免不飭之失, 施以重推之典。 都領將令該司嚴棍懲勵, 逗遛不發之船漢, 這這查摘, 各別痛繩, 而未下去處, 火速點送之意, 另飭何如?” 允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7월 29일 (정축) 1번째기사 전염병이 심했던 부안현에 조세를 쌀 대신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전 감사(全羅前監司) 이돈상(李敦相)의 보고를 보니, ‘부안현(扶安縣)은 병자년(1876)의 참담한 흉년과 정축년(1877)의 혹독한 전염병이 팔도에서 제일 심하였는데 지금 조세를 재촉하면 형세상 장차 백성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내의 유랑하여 없어진 가호(家戶)를 뽑아보니 토지는 772결 남짓이고 쌀은 1,427석 남짓 됩니다. 아직 아문(衙門)에 바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고 특별히 상정(詳定)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현의 경내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한 보고는 들리는 소문과 정말로 부합됩니다. 불모(不毛)의 땅에서 조세를 강제로 거둔다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거듭 남기게 되는 것이니, 나라에서 돌봐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각 아문에 미납한 쌀 1,400여 석은 특별히 상정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해서 점차로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몇 해 전에 중앙과 지방에서 조세를 신설한 것이 폐해가 되자 특별히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려 온 나라 백성들이 거의 생업에 안착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의 별단을 보니, 내수사(內需司)의 전령(傳令)에 따라 어염세(魚鹽稅) 등을 신설하였는데 균역청(均役廳)에서 원래 받던 것에 비하여 세 배나 많기 때문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생업에 안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도 수사(水使)가 보고한 바를 보니, 내수사의 공문으로 인하여 비인(庇仁)의 송두리(松頭里)와 합전(蛤田)의 소나무를 모조리 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라 감영(全羅監營)에서 보고	二十九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卽見全羅前監司李敦相所報, 則‘扶安縣丙子慘歉, 丁丑毒瘥, 爲八域之最尤甚, 今若責稅, 則勢將無民。 境內流亡絶戶抄出, 則結, 爲七百七十二結零; 米, 爲一千四百二十七石零。 而未納衙門, 區別修報, 特許詳定代捧’爲辭矣。 該縣之局弊、民散所報, 誠符所聞。 强責不毛之稅, 重貽切骨之冤, 則甚非朝家懷恤之政。 各衙門未納, 米一千四百餘石, 特許詳定代納, 以爲漸次牽補事, 分付該道臣何如?” 允之。 又曰: “年前以中外新設收稅之爲弊, 特下革罷之命, 環域蒼生, 庶幾安業而資生矣。 向見湖西右道繡單, 則‘因內需司傳令, 新設魚鹽等稅, 比諸均廳元納, 爲三倍之多, 居民不得安業’云。 連見該道水使所報, 則‘因內需司公文, 庇仁之松頭里及蛤田松木, 盡欲斫伐’云。 又見完營所報, 則‘羅州之榮山·濟倉兩浦魚鹽、雜物, 稱以內司差人, 持圖署下來, 都賈收稅’云

	한 바를 보니, 나주(羅州)의 영산(榮山)과 제창(濟倉) 두 포구의 생선과 소금을 비롯한 잡물을 내수사의 차인(差人)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圖書)를 가지고 내려와 도고(都賈)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갔다고 합니다. 산림과 하천에서 나는 이득을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각기 소출에 따라 모두 원래 정한 세액이 있고 관할하는 아문이 모두 있는데, 무슨 새어나갈 공간이 다시 있어서 세금을 징수한단 말입니까? 지금 억지로 집행해서 불법으로 거두어가는 자들은 걸핏하면 '어공(御供)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중요한 것을 빙자하려는 계책이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속이는 말입니다. 어찌 이러한 나라의 체모가 있으며 이러한 법강(法綱)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황급한 정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사에서 설사 지방 고을에 통지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매 관문마다 발문(跋文)을 다는 것은 본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관문을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명령을 전하는 것은 또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하나가 해괴하고 망령되어 지극히 무엄합니다. 해당 관청의 차지 중관(次知中官)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벌하고, 그 밖의 여러 도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으면 이른바 공문에 첨부하여 본부(本府)에 치보(馳報)하여 조사해서 처리하게 하며 이른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잡아다 엄한 형벌을 주고 먼 곳에 귀양 보낸 후 상황을 아뢰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만약 의정부의 발문이 없으면 일체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불법으로 세를 거두고 지나치게 징수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도처에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각별히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矣。 山林川澤之利, 不與民共之, 則民其何依而何賴乎? 於海於陸, 各隨所出, 皆有元定之稅額、皆有句管之衙門, 則更有何遺漏空間, 可征、可徵者乎? 今其勒執而橫斂之者, 輒曰: '御供所需。' 此則藉重之計也; 又曰: '民願所在。' 此則瞞告之說也。 寧有如許國體、如許法綱乎? 民情之遑汲, 可以想知。 自內司設有知委外邑之事, 先報政府, 自政府懸跋枚關, 本有式例。 而初不關由, 擅自傳令, 抑有何據? 節節駭妄, 無嚴極矣。 該司次知中官, 令該府拿問處之。 外他諸道, 若有似此等事, 所謂公文粘連, 馳報于臣府, 以爲査處。 所謂幹事人, 一一捉致, 嚴刑遠配後, 形止修啓。 而此後如無政府跋辭, 一切勿施事, 竝爲關飭何如?" 敎曰: "橫稅濫徵之爲害於民, 在在如是, 則民何以聊生乎? 各別關飭可也。" 最應曰: "顧今民邑事勢之不逮, 何道不然? 而矧玆畿內, 纔經歉荒, 又當大役, 不得不用煩民力。 則較常時, 雖十倍顧念, 恐有疲弊難支之慮矣。 先自山陵結所, 以至靭路所經, 諸凡策應之際, 各有分辦之邑。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돌이켜 보건대 지금 백성들의 곤란한 형편은 어느 도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기 기내(畿內)는 갓 흉년을 겪은 데다 큰 역사(役事)까지 당하여 민력(民力)을 번다하게 쓰지 않을 수 없으니, 평상시에 비하여 비록 열 배로 마음을 쓰더라도 피폐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산릉(山陵)의 결소(結所)로부터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책응(責應)할 때 각각 분담하여 준비하는 고을이 있는데, 중간에서 토색질하고 이것을 기회로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있으면 마침내 그 피해가 반드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일을 거행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지만 사체(事體)에서 황송함이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부에서 따로 사람을 파견하여 적발하고 감찰하여 액속(掖屬)이나 궁속(宮屬)이나 각 관청의 하인과 각 영(營)의 군졸을 막론하고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먼 곳에 귀양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영(畿營)에서 별도로 단속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의정부에 보고하여 증거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심상하게 단속할 일이 아니다. 아뢴 대로 특별히 금지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토호(土豪)들이 무단(武斷)을 행사하는 습속은 전후에 금지하도록 신칙한 것이 진실로 한이 없었는데, 강제로 침해하고 함부로 토색질하며 일반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혀서 살림이 거덜난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다니, 소문에 들리는 내용이 대단히 놀랍고 해괴합니다. 법강(法綱)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신이 아뢴 바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에 반포(頒布)하여 일일이 적발해서 아뢰게 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	如或有從中誅求, 夤緣侵漁之端, 則止竟其害, 必歸於民。 而擧行之葛藤, 猶屬餘事, 事體之惶悚, 倘復如何? 自臣府別遣摘察, 毋論掖屬、宮屬、各司徒隷、各營軍卒, 隨其現發, 嚴刑遠配。 亦自畿營各別糾檢, 有無形止, 這這修報政府, 以爲憑處何如?” 敎曰: “此不可尋常操束。 依所奏別般禁飭可也。” 最應曰: “土豪武斷之習, 前後禁飭, 固何限? 而勒侵橫徵, 殘害平民, 蕩析相續, 末由奠保, 傳聞所及, 多有驚駭。 揆諸法綱, 萬萬寒心。 將臣所奏, 頒示京外, 一一摘發登啓, 切勿饒貸何如?” 敎曰: “此專由於紀綱之不嚴也。 另爲分付, 使之期於摘發, 可也。”

	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기강이 엄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특별히 분부하여 기필코 적발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8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영의정 이최응이 풍덕과 인천 등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할 것을 청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자덕(尹滋悳)이 보고한 바를 보니, 풍덕(豐德)의 부세(賦稅)와 인천(仁川)·부평(富坪)·통진(通津)의 대동미(大同米)를 다시 기한을 연장하고 돈으로 대신 바칠 것을 청하였습니다. 다만 풍덕은 읍(邑)으로 회복된 나머지 끌어다 보충하기가 아직도 곤란하고, 인천은 영(營)으로 승격된 후에 배정하여 획급하는 것이 많이 모자라며, 부평과 통진은 포군(砲軍)을 설치할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일반 규정대로 본색(本色)으로 받아낸다면 경기 연안 요충지의 각종 급료는 장차 마련할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풍덕 한 부(府)의 부세와 인천 등 세 고을의 대동미는 3년 정도 기한을 연기하여 상정(詳定)해서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영광 군수(靈光郡守) 박제교(朴齊敎)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열거하여 말하기를, ‘병자년(1876)의 대흉은 읍을 설치한 뒤 처음 당한 일로 도내(道內)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게다가 전염병까지 겹쳐서 대부분 유망(流亡)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상납을 규정대로 독촉한다면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모두 흩어져 고을이 장차 텅 비게 될 것이니, 해당 군(郡)의 병자년 세미(稅米)에서 유망한 사람들의 몫	二十七日。 次對。 領議政李最應曰: “卽見京畿監司尹滋悳所報, 則‘請豐德賦稅與仁川、富平、通津大同, 更加展限, 以錢代納矣。’第念豐德則復邑之餘, 牽補尙艱; 仁川則陞營之後, 排劃多缺; 富平、通津則設砲之資, 措辦無術。 今若責之常例, 準以本色, 則畿沿要衝各項餼料, 其將無可靠、可藉之地矣。 豐德一府賦稅、仁川等三邑大同, 限三年展限, 詳定代納何如?” 允之。 又曰: “卽見全羅監司李敦相所報, 則‘枚擧靈光郡守朴齊敎牒呈以爲: 「丙子大歉, 卽設邑後初有, 一省中最甚, 而重之以癘疫, 流亡居多。 各項上納, 如例督責, 則餘民盡散, 邑將空虛。 該郡丙子稅米, 流亡條九百餘石, 特爲蠲蕩, 未收條一千餘石, 詳定代捧」爲辭矣。 本郡遑汲之狀, 與扶安互相

	인 900여 석을 특별히 탕감하고 아직 거두지 못한 1,000여 석은 상정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 군의 황급한 정상은 부안과 서로 같은데, 개간하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강제로 거두어들인단 말입니까?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에 있어서는 일반 규정만을 고집할 수 없으니, 부안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대로 병자년 조의 미납된 조세미(租稅米)는 모두 상정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이 보고한 바를 보니, '도내 갑산(甲山) 땅의 혜산(惠山)·운총(雲寵) 두 진(鎭)은 저쪽 땅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요충지로서 다른 곳에 비하여 더욱 구별됩니다. 그러나 몇 개의 진속(鎭屬)들이 피폐하고 약해서 이미 의지할 자산이 없습니다. 혜산진은 본사(本社) 중에서 본부(本府)의 환민(還民) 21호 및 토지 188결을 본 진에 떼어 주어 환곡(還穀)의 모조(耗條)와 결세를 모두 거두어서 포군(砲軍)을 설치하여 급료를 주고, 운총진은 본 사 중에서 본 부의 환민(還民) 102호를 본 진에 떼어 주어 진속으로 창감(倉監)·색고(色庫)를 차출하여 규례대로 조적(糶糴)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환곡은 비록 본 부에서 관할하지만 전적으로 본 진에 속하게 하여서 포군을 설치하여 급료를 주게 한다면 영락된 진이 조금 소생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진(主鎭)인 고을은 하루아침에 두 가지를 잃게 되니,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는 근년 이래로 공한지로서 개간된 땅과 호적 외에 더 늘어난 호구가 모두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니, 어느 곳이나 샅샅이 조사하여 참작해서 세를 받아 양사(兩社)에서 부족되는 것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보현(金輔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부 공도	甲乙, 其何以苛斂於不墾之土而强督乎? 其在朝家懷保之義, 有不可膠守恒式, 依扶安已施之例, 丙子條未納稅米, 竝許詳代何如?'" 允之。 又曰: "卽見咸鏡監司金世均所報, 則以爲: '道內甲山地惠山、雲寵兩鎭, 與彼地只隔一帶水, 其爲要衝, 比他尤別, 而幾箇鎭屬, 疲殘孤弱, 旣無聊賴之資。 惠山鎭則以本社中本府還民二十一戶及田結一百八十八結, 劃付本鎭, 還耗與結納, 竝取之而設砲、放料, 雲寵鎭則以本社中本府還戶一百二戶, 劃付本鎭, 以鎭屬差出倉監、色庫, 依例糶糴。 而還穀雖管於本府, 任賴全屬於本鎭, 俾爲設砲、放料, 則殘鎭有稍蘇之望。 而第其主鎭邑之一朝兩失, 不可不念。 該府之近年以來, 閒曠墾闢之地、藉外添增之戶, 皆是免賦、免稅者也。 逐處查櫛, 參量執稅, 俾充兩社虧欠'爲辭矣。 依報許施何如?" 允之。 又曰: "卽見廣州留守金輔鉉狀啓, 則以爲: '本府公都會解額, 歲不過三人, 而水原、開城, 每年取額爲八人, 則其在揆文之政, 宜無彼此之異同。 依水原、開城例, 冀蒙一視之澤

	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이 일 년에 세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수원(水原)과 개성(開城)은 해마다 뽑는 인원이 여덟 사람이니, 문치(文治)를 장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마땅히 피차간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과 개성의 규례대로 똑같이 돌보아주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부(府)는 중요한 곳으로서 모든 제도를 두는 데에 있어서 진실로 화성(華城)이나 개성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다만 공도회의 액수가 두 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경내의 많은 선비들이 울분을 품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수(留守)가 진술한 바를 허락하여 이제부터 두 도(都)의 규례대로 시취(試取)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도(濟州道)는 먼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조정의 관심이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文官)은 괴원(槐院)까지 허락하고 있으나 무관(武官)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비단 먼 곳의 사람들이 원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균등하게 대해 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이후에는 그곳의 지위와 문벌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순서를 뛰어넘어 선전관으로 추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전조(銓曹) 및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분부하게 해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등지에 돈대(墩臺)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으면 본소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니, 강화(江華)에 비교하면 더욱 요충지가 될 것이다. 진(鎭)을 창설하고 돈대를 설치하여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늘 인천(仁川)을 경유하여 오는데, 이 고을은 서울과 가깝습니다. 지금은 비록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되었지만 기타 관액(關阨)의 어	事, 請令廟堂稟處矣。' 是府重地也。凡厥制置, 固無遜乎華城、開城。 而第惟都會之額, 未居兩府之半, 闔境多士之齎菀, 亦無怪矣。 特許守臣所陳, 從今以往, 依兩都例, 試取八額, 著式施行何如?" 允之。 又曰: "濟州一島, 僻在層溟之外, 朝家眷念, 視他有別。文官, 則旣許槐院; 而武官, 則不許宣薦者, 非徒遠人之懷菀, 寔非均一之政。 此後則擇其有地閥人, 許越宣薦之意, 請分付銓曹及宣傳官廳。" 允之。 仍敎曰: "仁川、富平等地, 有墩臺可設之處。 自本所有所經略, 而較諸江華, 尤爲要衝。 創鎭設墩, 以爲防守之節, 好矣。" 最應曰: "異船之來, 每由仁川, 而此邑密邇京洛。 今雖陞爲防禦之營, 其他關阨之口, 不可不設鎭、堡, 益爲陰雨之策矣。" 敎曰: "昔在英廟朝時, 曾有長山島創鎭之事矣。" 最應曰: "英廟朝, 旣有此事, 而今又行之, 豈不爲繼述之美事乎?" 敎曰: "仁川、富平地, 自本所創設墩臺事, 御將似應聞之矣。" 御營大將申正熙曰: "臣爲別將時, 已聞之矣。" 敎曰: "已自本所, 句管此事,

	귀에 진(鎭)과 보(堡)를 설치하여 사전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영조(英祖) 때 일찍이 장산도(長山島)에 진(鎭)을 설치한 일이 있었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영조 때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설치한다면 어찌 그것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인천과 부평 땅에 본 소에서 돈대를 창설하는 일은 어영 대장(御營大將)이 응당 들었을 것이다.” 하니, 어영 대장 신정희(申正熙)가 아뢰기를, “신이 별장(別將)으로 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미 본 소에서 이 일을 관할하기로 하였는데 어영 대장이 이미 별장을 지냈고 본래 시임과 원임의 구별이 없으니, 비록 대장의 임무를 맡기는 하였지만 편할 대로 오갈 것이며 며칠 안으로 내려가서 형편을 헤아려보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것은 관방(關防)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로서 이미 어영 대장에게 맡겼으니, 모든 제도의 설치를 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훗날 상벌(賞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강화 돈대에 대한 일은 어영 대장의 부친이 진무사(鎭撫使)로 있을 때 잘 만들어 설치하였으니, 어영 대장도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한 해 동안의 급료와 군사 제도도 장차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而御將旣經別將, 本無時原任之別, 則雖帶將任, 從便往來, 而日間下去, 商度形便也。” 最應曰: “此係關防重事, 旣任御將, 則凡屬制置, 使之終始責成, 以爲後日賞罰之地, 恐好矣。” 敎曰: “然矣。 江華墩臺事, 御將之父, 爲鎭撫使時, 善爲制置, 御將亦當善做此事矣。” 最應曰: “一年餼料與軍制, 亦將講究, 恐好矣。” 敎曰: “此則尙未晩也, 臨時變通, 亦可也。” 左議政金炳國, 乞賜體諒。 敎曰: “鼎席旣備, 倚賴益重。 卿勿巽讓, 惟以民國爲念。”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때에 가서 변통해도 될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사퇴를 윤허하여 줄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세 정승의 자리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의지하는 바가 더욱 무겁다. 경은 겸손하게 사양하지 말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9월 19일 (을축) 2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종전대로 회복할 것을 청하다	내의원(內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올리어 속히 상선(常膳)을 회복하라고 명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인봉(因封 : 인산(因山))이 문득 지나고나니 더 슬퍼진다. 이런 때에 어떻게 상선을 먹는단 말인가? 경(卿) 등은 이해하라.” 하였다.	藥院口啓, 請亟命復膳。 批曰: “因封奄過, 益復罔極。 此時何可常膳乎? 卿等諒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9월 20일 (병인) 1번째기사 약원에서 세 번째로 상선의 회복을 청하다	내의원(內醫院)에서 세 번째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경(卿) 등의 간절함이 이렇게 진지하니 마지못해 따르겠다.” 하였다.	二十日。 藥院三啓。 批曰: “卿等之懇, 若是切摯, 當勉從矣。”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1월 7일	시임 대신(時任大臣)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규장각(奎章閣) 신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	命時原任大臣、閣臣、承史、玉堂、春桂坊、賜饌。 仍引見時原任大臣。 承候入侍也。 敎曰: “東宮入學, 今自

(임자) 2번째기사 대신들과 규장각 신하 등에게 사찬하라고 명하다	翊衛司)의 관리들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 및 원임 대신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문안하기 위하여 입시(入侍)하였던 것이다. 하교하기를, “동궁(東宮)의 입학은 지금 자내(自內)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왕대비께서 가르치고 나도 옆에서 가르쳐주어 몇 편씩 읽게 되었다.”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 이유원(李裕元) 등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훌륭한 일은 우리나라가 억만 년 무궁할 경사입니다. 신 등은 기쁜 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內伊始, 而東朝提勸, 予亦傍敎, 至讀數遍矣。” 領府事李裕元等曰: “今日盛擧, 我東方萬億年無疆之休。 臣等不任攢祝之忱。”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1월 20일(을축) 1번째기사 충청 감사 이명응의 장계에 따라 공주와 신창 등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병자년(1876)의 참혹한 흉년 이후에 공주(公州)와 신창(新昌) 두 고을의 을해년(1875)과 병자년의 세미(稅米)를 아직도 납부하지 못한 것을 사실 본색(本色)으로 납부하도록 질책할 수도 없습니다. 공주목(公州牧)의 병자년 조의 대동미(大同米)와 위미태(位米太)의 원래 상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 2,590여 석(石)과 신창현(新昌縣)의 을해년 조의 대동미로서 아직 받지 못한 쌀 290여 석, 위태(位太) 70여 석을 특별히 소상정(小詳定)으로 대납(代納)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을 몇 년씩 지체시키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한 것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호서(湖西)의 50여 개 고을 가운데에서 감사(監司)가 꼭 이 두 고을만 뽑아 보고한 것에서 거기가 가장 심하게 영락되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정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은 여러 법례로 따져볼 때 더욱 거론할	二十日。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李明應狀啓, 則‘丙子慘歉以後, 公州、新昌兩邑乙亥丙子稅米之尙在未納者, 實無以本色責納。 公州牧丙子條大同米及位米太元上納二千五百九十餘石、新昌縣乙亥條大同未收米二百九十餘石·位太七十餘石, 特許小詳定代納事, 請令廟堂稟處矣。’ 正供之積年淹滯, 大非事體攸重。 而湖西五十餘州之內, 道臣必於此兩邑而拈出登聞者, 其最弊弊之狀, 可以想到矣。 然而小詳定代納, 揆諸法例, 尤不當擧論。 公州則元納中限折半, 以元詳定

	수 없는 것입니다. 공주는 원래 바쳐야 되는 것 가운데에서 절반을 원상정(元詳定)으로 납부하게 하고 신창은 마을이 이미 쇠잔해지고 납부할 수량도 많지 않으니 모두 원상정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근필(李根弼)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의 영일현(迎日縣)에서 양안(量案)을 고치는 것이 이제야 비로소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래 장부는 도합 3,334결(結) 38부(負) 7속(束)인데, 그 안에서 진전(陳田)과 잡탈전(雜頉田) 1,299결 92부 2속을 제하고 시기전(時起田)이 2,034결 46부 5속이니, 기유년(1849)의 양전(量田)에 비하여 211결 52부 8속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양안을 적용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양전은 나라의 큰 정사에 관련되므로 경비가 남고 모자라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백성의 고락(苦樂)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전과 기전(起田)을 구별하고 경계를 바로잡았으니, 해당 고을의 일은 참으로 다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청한 대로 새 양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백낙연(白樂淵)의 장계를 보니, ‘본도(本島)의 세 고을이 큰 흉년을 거듭 당하여 백성들의 형편이 황급하니 우선 굶주리는 집을 찾아 12월부터 시작하여 보리 수확을 할 때까지 돌아가며 구제 대상을 뽑아내면 소요되는 환미(還米)가 2만 740석 남짓 됩니다. 올가을에 받아야 할 곡식이 1만 1,248석 남짓인데 모두 재해가 극심한 고을에서 받아들일 환곡으로서 형편상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량을 바치는 기일을 늦춘다면 하환(夏還)으로서 창고에 남겨둔 것이 겨우 1만 6,214석 남짓이고, 추환(秋還)을 늦춤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조(耗條)와 배분하는 부족분을 합하면	許施, 新昌則局旣殘小, 數且無多, 竝以元詳定許施何如?” 允之。 又啓: “卽見慶尙監司李根弼狀啓, 則‘道內迎日縣改量, 今纔了畢。 而元帳付合爲三千三百三十四結三十八負七束內, 陳雜頉一千二百九十九結九十二負二束, 除之, 時起爲二千三十四結四十六負五束。 比己酉量田, 加爲二百十一結五十二負八束。 而自今爲始, 以新量行用, 請令廟堂稟處矣。’ 量田有國大政也。 經費之贏絀, 在乎此; 民生之休戚, 係乎此。 此而能區別陳起, 經界就正, 該邑事誠爲之可幸。 依道臣所請, 以新量案施行何如?” 允之。 又啓: “卽見濟州牧使白樂淵狀啓, 則‘本島三邑年形, 荐遭大饑, 民情遑汲, 先從飢戶, 自十二月爲始, 限麥秋排巡抄付, 則容入還米, 爲二萬七百四十石零。 而今秋當捧穀一萬一千二百四十八石零, 俱是尤甚等所受之還, 勢難責捧, 不得已盡數停退, 則夏還捧留, 只爲一萬六千二百十四石零矣。 秋還停退耗條及排巡不足, 合爲五千六百五十一石零, 而自本營雖卽如干措劃, 荐饑之餘, 事勢罔措。 沿邑所在某樣穀中,

	5,651석 남짓 되는데, 본 영에서 비록 즉시 조치를 취한다 해도 거듭 흉년이 든 뒤끝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연해 고을에 있는 어떤 명색의 곡식으로든 절미(折米)를 3,000석에 한하여 좋은 쌀로 획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외롭게 섬 하나가 먼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 농사가 거듭 흉년들어 백성들의 목숨이 거의 다하였으니, 나라에서 구제하는 정사에 있어 배로 곡식을 실어다 먹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도의 연해 고을에 소재한 사환미(社還米) 가운데에서 2,000석에 한하여 차사원(差使員)을 정해서 속히 운반하여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折米限三千石, 以精實米劃給事, 請令廟堂稟處矣。' 孤絶一島, 隔在重溟, 穡事荐歉, 民命近止, 其在朝家惠恤之政, 不容不船粟往哺。 就本道沿邑所在社還米中, 限二千石, 定差員斯速運送, 無至一民捐瘠之患何如?" 允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2월 6일 (신사) 3번째기사 황해도 장산 이북의 고을들에서 거두지 못한 콩은 돈으로 대봉하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장산(長山) 이북의 황주(黃州) 등 11개 고을에서 조세로 납부하는 콩은 매년 돈으로 대봉(代捧)한 다음 도내에서 사서 상납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사서 바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벌써 얼음이 얼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돈으로 직접 바쳐 서울에서 사서 쓴 전례가 많이 있으니,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대봉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거두지 못한 콩도 역시 돈으로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戶曹啓: "黃海道長山以北黃州等十一邑稅太, 每年以錢代捧, 貿取於道內而上納矣。 尙未貿納, 今已氷塞。 在前多有以錢直納, 自京貿用之例, 今亦依此代捧, 而舊未收太, 亦以錢督納何如?" 允之。
고종 15권, 15년 (1878 무인 / 청 광서(光緖) 4년) 12월 29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도 목장(牧場)에서 기르는 말의 수효는 5,122필(匹)	二十九日。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五千一百二十二匹"啓。

일(갑진) 1번째기사 사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월 1일 (을사) 2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결혼 60돌과 관련하여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표리(表裏)를 직접 올렸는데, 주량회갑(舟梁回甲)을 칭경(稱慶)하기 위해서였다. 축하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는데,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대비(大王大妃)께서 이런 큰 복을 받아 친영(親迎)하신 지 60돌이 되었으므로 음력 정월 설날에 궁궐에서 하례를 드렸으니, 이것은 실로 500년간의 드문 경사로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삼가 생각건대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大王大妃) 전하께서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태상 황후(太上皇后)라는 존귀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경헌공(景獻公)·문익공(文翼公)·효문공(孝文公)·충경공(忠敬公)이 쌓아온 덕이 발하여 무진년(1808)에 태어나셨고 얌전하고 조용한 품성은 군자의 좋은 배필로서 익종(翼宗)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중화(重華)의 덕이 요제(堯帝)와 맞아 이른 아침 닭이 울기 전부터 잠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왕을 경각시켰고, 용감한 아들을 낳으니, 이는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에 응함이었다.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받들 때에는 엄숙하면서도 유순하였고 시부모를 받들 때에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였다. 숨은 공로는 역사책에 빛나고 어머니로서의 도리에다 군사(君師)의 역할까지 겸하였다. 마지 못해 선인후(宣仁后)처럼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여 나라 형편을 태산(泰山)과 반석처럼 튼튼히 만들었고	詣仁政殿, 親上表裏于大王大妃殿。以舟梁回甲稱慶也。 受賀, 頒赦。 敎文若曰: “王母受玆介福, 周親迎初載復回, 攝提貞于孟陬, 漢長樂元日晉賀。 是誠五百年廣慶, 聊與億兆民共懽。 恭惟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大王大妃殿下, 天佑我東、地尊太上。 獻翼孝忠之積德所發, 降檀木戊辰; 幽閑貞靜之君子好逑, 娶塗山癸甲。 重華協于堯帝, 每獻警於匪鷄蠅聲; 維莘篤生武王, 是爲應於關雎麟趾。 副禕薦豆, 在宗宮而慤著愛存; 右箴施馨, 適舅姑則婉容愉色。 肆陰功有光史冊, 而母道又兼君師。 勉御宣仁后簾帷, 措國勢於泰山磐石; 遠邁女媧氏鍊補, 訖聲敎於漸海被沙。 至柔而動、至靜而方, 坤元資生萬物; 所存者神、所過者化, 仁政先施四窮。 逮夫釋勞於儀鸞、尤仰貽謨於翼燕。 凡諸政令損益, 携之示之、面命之。

	옛날 오색(五色)의 돌을 달구어 하늘을 기운 여와씨(女媧氏)보다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성교(聲敎)가 먼 바닷가에까지 퍼졌다. 지극히 유순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지극히 얌전하면서도 방정하여 땅처럼 만물을 낳는 바탕이 되셨으니, 생각을 품으면 신령스럽게 이루어지고 지나는 곳마다 감화시켰다. 어진 정사를 의지할 곳 없는 곤궁한 백성에게 먼저 베풀었고 대왕대비전에서 지내게 되신 후에 후손들에게 훌륭한 계책을 남겨주었다. 모든 정령(政令)의 손익(損益)에 대한 것이면 이끌어 보여주시고 면전에서 타이르셨으며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일거일동(一擧一動)을 돌봐주셨다. 달이 다시 차고 바다가 다시 윤택해 지니 독실한 경사는 선행을 쌓은 데에서 근본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끄떡없으니 태평성대도 대왕대비의 덕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위에 거룩한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행복이 이룩되었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라에 교화를 펴는 날 장수를 축원하여 큰 잔을 올리니, 남극(南極)에는 노인성(老人星)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산처럼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노니 장수함이 오복(五福)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바닷속의 신선처럼 장수를 누리시니 연세가 72세이시다. 그리하여 묘년(卯年)과 인년(寅年)에 상서로움을 맞게 되었고 정년(丁年)과 갑년(甲年)에 주량 회갑(舟梁回甲)을 맞게 된 것이다. 아홉 가지 열 가지의 의식으로 친히 향주머니를 매어주던 왕실의 옛 의식을 상상할 수 있고, 일 년 360일이 다시 시작되자 명당(明堂)의 새 달력을 상고하게 되었다. 생각건대 대왕대비는 하늘의 복을 만년토록 끝없이 받으실 것이므로 부모의 연세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기쁘다. 좋은 때를 만났으니 이제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본래 이런 전례가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산과 바다와 같은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올해의 이달에 축하하는 예식을 마련하려는 것이니, 이는 예절이 그러한 것이다. 청대(靑臺)에서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시던 그날은	若其起居節宣, 拊我育我顧復我。 月重輪、海重潤, 篤慶實基於善餘; 雨不破、風不鳴, 太平亦由於厚載。 所以上有聖成者, 式克今日休至子。 將寸心報暉, 東方舒化國之日, 酌大斗祈耇, 南極耀老人之星。 岡陵作朋, 壽曰一於五福; 海屋添筭, 歲有二於七旬。 方階蓂維卯建寅, 猗舟梁適丁先甲。 九十縭親結, 想京室之舊儀; 三百朞復週, 按明堂之新曆。 惟大母受天之祜, 於萬無疆; 在小子知年之誠, 則一以喜。 遇嘉會而將擧賁飾, 況我家之自有節文。 偏荷德於如海如山, 欲報靡極; 先祝嘏於是歲是月, 其禮節卽然。 靑臺屆嬪嫣之期, 欣瞻六五位元吉; 彤庭備呼嵩之典, 思效萬一分微忱。 以時則三陽泰回; 是慶也四方咸賀。 魯壽母耆爾艾爾, 每年願似今年; 箕極民會其歸其, 獨樂不如衆樂。 徧群黎而爲爾德; 覃惠澤而欲竝生。 日月恒升, 拚蒼杓而迓祉; 雷雨渙解, 沛丹綸而滌瑕。 自本月初一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於戲! 星紀重新, 女史增耀。 君止仁、父止慈、子止孝, 一國攸興; 穀用成、民用

	육오위(六五位)의 길함을 우러러 볼 수 있었고, 동정(彤庭)에서 만세 부르는 의식을 갖추는 오늘은 보잘 것 없는 정성을 만 분의 일이라도 보이려는 것이다. 계절로 말하면 화창한 봄날이고 경사로 보면 온 나라가 축하하고 있다. 노후(魯侯)가 어머니의 장수를 빌었던 것처럼 매년 올해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 백성들이 모두 모여드니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은 더욱더 즐겁다. 모두에게 은덕을 베푸셨기에 그 혜택 속에서 다같이 살려는 것이다. 해와 달이 항상 떠오름에 별자리가 정월을 가리키니 새로운 복을 맞이하고, 소나기로 모든 것을 씻어주듯 죄명을 벗겨주는 교서를 내리는 바이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형(死刑) 죄수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풀어 주라. 아! 60돌이 다시 돌아오니 여사(女史)가 더욱 빛난다. 임금이 인자하고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면 온 나라가 흥기하게 될 것이며,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법을 따르고 가정이 편안하다면 온갖 복이 다 모여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명령하는 것이니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章、家用康, 百祿是總。 故玆敎示, 想宜知悉。”【藝文提學金在顯製】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월 1일 (을사) 3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월 1일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을사) 5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월 1일 (을사) 6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내려 보내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려 보냈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월 15일 (기미)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2월 12일 (병술) 2번째기사 조창선을 세내어 실어 바칠 것을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근필(李根弼)이, ‘본 도 조창선(漕倉船) 중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29척이나 되는데, 근래 봉산(封山)은 벌거숭이가 되버리고 약간의 소나무 재목은 모두 깊은 산꼭대기에 있으므로 찍어서 실어나르는 경비가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주(船主)에게만 전적으로 책임 지울 수도 없고, 또한 백성들에게 징렴(徵斂)하기도 어렵고 보니, 읍보(邑報)나 민장(民狀)에서는 모두 배를 세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선(漕船) 중에서 이미 공역(工役)을 시작한 것 외에는 개조하는 일을 우선 정지하고 나선(羅船)이나 혹은 지토선(地土船)을 편한 대로 세내어 실어 나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議政府啓: “慶尙監司李根弼以‘本道漕倉船之不得不改造者, 爲二十九隻。 而挽近封山童濯, 若干松材, 俱在於窮山絶頂。 斫伐輸運之費, 無有限節, 此不可專責船主, 亦難徵斂衆民。 而邑報、民狀, 咸願賃船, 上項漕船之已爲始役者外, 改造一款, 姑爲停止, 以羅船或地土船, 從便賃載’爲辭矣。 船材則旣夥見無斫取之地、工役則甚繁將有徵斂之弊, 而民邑之願又如此, 則不容無從權通變之道。 就漕船之始役

	배에 필요한 재목은 많은데 현재 베어 올 곳은 없고, 공역은 매우 번다하여 장차 징렴해야 할 폐단이 있으며, 민읍(民邑)의 소원이 또 이와 같으니, 임시 방편으로 통변(通變)의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중에서 공역을 시작한 것 외에는 개조하는 일을 우선 논하지 말도록 하고, 보고한 대로 배를 세내어 실어다 바치도록 허락하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者外, 修造之節, 姑令勿論, 依所報許以賃船裝納, 俾不至愆越當限之意, 關飭於該道道臣處何如?” 允之。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3월 1일 (을사) 1번째기사 익종 대왕의 관례날 선원전에서 작헌례를 친행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연초(年初)의 경례(慶禮)에서 정성을 조금 펴기는 하였으나 나의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이달 20일은 바로 돌아가신 우리 익종 대왕(翼宗大王)께서 관례(冠禮)를 올린 지 60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 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행하여 걷잡을 수 없는 심정을 표하고자 한다.” 하였다.	初一日, 乙巳。 敎曰:“歲首慶禮, 粗伸誠忱, 而予小子孺慕尤切。 今月二十日, 卽我翼考冠禮舊甲若日也。 是日當親行酌獻禮於璿源殿, 以寓靡逮之忱。”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3월 3일 (정미)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三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敎曰:“璿源殿酌獻禮, 隔日矣。 東宮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3월 19일(계해) 3번째기사 선원전 작헌례를 자내의 예로 직접 거행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선원전(璿源殿) 작헌례(酌獻禮)가 하루 남았다. 동궁(東宮)이 지금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인정과 예의로 보아 섭섭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시행한 전례도 있으니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및 상례(相禮)는 대령하라.” 하였다.	今雖沖年, 情禮悵然。 且有已行之例, 當自內親行矣。 春桂坊及相禮, 待令。”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3월 20일(갑자)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日。 詣璿源殿, 行酌獻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3월 20일(갑자) 2번째기사 진전의 작헌례를 행할 때의 관리들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진전(眞殿)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김보현(金輔鉉),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창희(金昌熙), 제5실 대축(第五室大祝) 오익영(吳益泳), 예모관(禮貌官) 민영상(閔泳商), 상례(相禮) 이수만(李秀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命眞殿酌獻禮時, 贊禮金輔鉉、禮房承旨金昌熙、第五室大祝吳益泳、禮貌官閔泳商、相禮李秀萬, 竝加資。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윤3월 13일(병술)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인천 부사(仁川府使) 임백현(林百鉉)의 보고를 보니, ‘본 부는 방영(防	十三日。 議政府啓: “卽見仁川府使林百鉉所報, 則‘本府陞爲防營後, 舟橋

인천부의 급료를 주는 비용은 부근 고을에서 포량미와 잡비까지 합쳐서 이획하여 충당할 것을 윤허하다	營)으로 승격된 뒤 주교사(舟橋司)의 쌀 500석(石)을 매년 이획(移劃)하여 지방(支放)하는 비용으로 삼았습니다만 이는 한때만 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매번 지방이 정지되곤 합니다. 강화영(江華營)의 포량미(砲糧米) 500석(石)을 취해서 인천(仁川), 부평(富平), 시흥(始興), 안산(安山), 과천(果川), 김포(金浦), 양천(陽川) 등 읍에서 바치는 것을 모두 잡비로 구획(區劃)하여 본 부로 직접 획급하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부(該府)는 해문(海門)의 요충지이고 또 방어사(防禦使), 절제사(節制使)를 창설한 곳이니 조정에서 진념(軫念)하는 것이 그전보다 갑절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사미(舟司米)를 실어가기 곤란한 것이 과연 보고한 내용과 같다면 특별히 청한 바에 따라 위에서 말한 부근 고을에 있는 포량미(砲糧米)로써 이 수량만큼 모두 잡비로 획급하라는 내용으로 강화 유수(江華留守)와 본도의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부(東萊府)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 공사(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지금 장차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기(京畿) 바다의 만(灣)에 가서 수심을 측량한 후에 강화(江華)를 경유해서 곧바로 서울로 가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접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몇 년 전 그들이 머물 때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지럽게 모여든 것은 이미 극도로 수치스러웠는데, 하물며 모래와 돌을 던져 일부러 소란을 일으킬 단서를 만들기까지 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저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어찌 먼저 잘못하면 스스로 수모를 받게 된다는 의리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통과하는 길에서 다시 혹시라도 이와 같	司米五百石, 每年移劃, 以爲支放之需。 而此非一時輸來者, 則非但浮費之夥多, 每致放下之停闕。 就沁營砲糧米五百石, 以仁川、富平、始興、安山、果川、金浦、陽川等邑所納, 竝雜費區劃, 使之直劃本府事, 定式施行'爲辭矣。 該府以海門要衝, 又創防禦節制, 則朝家軫念, 有倍曩時。 而舟司米輸致之難便, 果有如報辭者。 特依所請, 以上項附近邑砲糧, 準此數竝雜費劃給之意, 分付江華留守及本道道臣處何如?" 允之。 又啓: "卽見萊府狀啓謄報, 則'日本公使花房義質, 今將向往忠淸、全羅、京畿海灣, 測水後由江華, 仍向京城'云矣。 凡干接應之節, 豫爲備待, 務存誠信。 而第以年前去留時言之, 我人之指點雜遝, 已極貽羞。 況至有投之沙石, 故生惹鬧之端。 雖彼鄕曲愚蚩之氓, 豈不念先失自侮之義乎? 今番則彼人下碇與經過之路, 復或有似此之習, 卽其地梟示。 不飭之地方官, 先罷後拿之意, 一一謄布於沿海諸邑事, 嚴飭行會于各該道守臣處何如?" 允之。

	은 버릇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효시(梟示)할 것이며, 신칙(申飭)하지 못한 지방관은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나문(拿問)한다는 내용을 연해(沿海)의 제읍(諸邑)에 일일이 선포할 것을 해당 감사(監司)와 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윤3월 15일(무자)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4월 15일(무오)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4월 27일(경오) 1번째기사 일본 공사에게 하선 연회를 거행하였다고 보고하다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이,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가 서계(書契)를 예조(禮曹)에 정납(呈納)하였으며, 이어 하선(下船) 연회를 거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二十七日。 伴接官洪祐昌以“日本代理公使花房義質, 書契呈納禮曹, 仍行下船宴享。”啓。
고종 16권, 16년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으며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	初一日, 甲戌。 詣孝徽殿, 行朔祭,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5월 1일 (갑술)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삭제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였다.	仍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5월 10일 (계미)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5월 11일 (갑신)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드리다	임금이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드리고 이어 홍화문(弘化門) 안에 들어가서 연주(練主)가 안으로 들어올 때 지영(祗迎)하였다.	十一日。 詣孝徽殿, 行朝上食、晝茶禮、夕上食。 仍詣弘化門內, 練主內入時祗迎。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6월 15일 (정사)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6월 18일 (경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8월 9일 (경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8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9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표범을 잡은 군사에게 시상하다	총융청(摠戎廳)에서, '범의 피해가 있어 사냥하겠다고 이미 아뢰었는데, 이달 초하루에 표범 1마리를 잡았으므로 범을 잡은 군사에게는 전례를 상고해서 상을 주고, 그대로 사냥을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初二日。 總戎廳以"虎患行獵事, 已有啓稟。 而本月初一日捉得豹一頭, 捉虎軍考例施賞, 仍爲行獵。" 啓。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光緖) 5년) 9월 22일 (임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10월 1일 (경자)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庚子。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10월 12일(신해)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二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11월 1일 (경오)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임금이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庚午。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 (光緖) 5년) 12월 29일(무진) 5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결(災結) 1만 2,466결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議政府以"各道災結一萬二千四百六十六結, 特許準劃。" 啓。

각 도의 재결 1만 2,466결을 준획하도록 허가하다	]	
고종 16권, 16년 (1879 기묘 / 청 광서(光緖) 5년) 12월 29일(무진) 6번째기사 사복시에서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의 말의 수효가 5,248필(匹)이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6권 끝】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爻五千二百四十八匹”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十六終】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월 12일(경진) 2번째기사 완화군의 상사에 필요한 물품을 전례대로 보내라고 명하다	호조(戶曹)에서, ‘이번 완화군(完和君)의 상사(喪事)에 필단(疋緞), 미포(米布)를 연령군(延齡君)의 전례대로 보내라고 명을 내리셨는데,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으나 참고될 만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칠(全漆)과 매칠(每漆)을 각각 5승(升), 각 색 비단 10필(疋), 돈 5,000냥(兩), 백미(白米) 50석(石), 포목(布木) 각 5동(同)씩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	戶曹以“今此完和君喪, 疋緞米布, 依延齡君例輸送事命下。 而謹稽謄錄, 無可考。 何以爲之?” 啓。 敎曰: “全漆、每漆各五升, 各色緞十疋, 錢文五千兩, 白米五十石, 木布各五同, 輸送。”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월 30일	100세 된 노인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비답을 내렸다.【이한수(李翰修), 최규익(崔奎翼), 유인(儒人) 임씨(任氏), 조윤경(曺崙敬), 유영묵(柳永默)이다.】	百歲老人加資下批。【李翰修、崔奎翼、孺人林氏、曺胤敬、柳永默】

(무술) 5번째기사 100세 된 노인에게 가자하라고 비답을 내리다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2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봉조하(奉朝賀)·종친(宗親)·의빈(儀賓)·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빈객(賓客)·종정경(宗正卿)·육조(六曹)와 사헌부(司憲府) 및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 2품 이상의 관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왕세자(王世子)의 탄일(誕日)이기 때문이다	初八日。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時原任閣臣、賓客、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以王世子誕辰也。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2월 11일 (기유) 4번째기사 중국 어선 38척이 방도, 건도, 말도의 세 섬 앞바다에 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막도록 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이, '정월 21일 만경 현령(萬頃縣令) 백남리(白南离), 고군산 첨사(古群山僉使) 김응섭(金應燮)의 연명 보고에, 중국 어선 38척(隻)이 방도(防島), 건도(件島), 말도(末島) 세 섬의 앞바다에 와 촘촘한 그물을 널리 치고서 고기 잡는 길을 막아 우리 백성들의 어업이 저절로 낭패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난잡한 무리들을 금지하고 방어하는 등의 일을 주의하여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全羅監司沈履澤以爲: "正月二十一日, 萬頃縣令白南离、古群山僉使金應燮聯報 中國漁船三十八隻, 來泊於防件末三島前洋。 廣張數罟, 遮絶漁路。 我民漁業, 自歸狼狽。 而禁雜防守等節, 著意擧行。" 啓。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4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례를 행하다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1일 (무진)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삭제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戊辰。 詣孝徽殿, 行朔祭晝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5일 (임신)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단오제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단오제(端午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五日。 詣孝徽殿, 行端午祭晝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10일 (정축)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孝徽殿, 行晝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11일 (무인)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 석상식을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十一日。 詣孝徽殿, 行朝上食, 晝茶禮, 夕上食。

올리다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상제와 별다례를 지내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상제(祥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十二日。 詣孝徽殿, 行祥祭別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5월 15일 (임오) 2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망제와 별다례를 지내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詣孝徽殿, 行望祭別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6월 1일 (정유)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삭제와 별다례를 지내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初一日, 丁酉。 詣孝徽殿, 行朔祭別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6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망제와 별다례를 지내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十五日。 詣孝徽殿, 行望祭別茶禮。
고종 17권, 17년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6월 18일 (갑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7월 5일 (신미) 1번째기사 효휘전에 나아가 고동가제를 행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였다. 이어 종묘(宗廟)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를 살펴보고서 재숙(齋宿)하였다.	初五日。 詣孝徽殿, 行告動駕祭。 仍詣宗廟, 省牲省器, 齋宿。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7월 6일 (임신) 1번째기사 종묘의 추향 대제 겸 철인 왕후의 부묘 대제를 행하다	종묘(宗廟)의 추향 대제(秋享大祭) 겸 철인 왕후(哲仁王后)의 부묘 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初六日。 行宗廟秋享大祭兼哲仁王后祔廟大祭。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7월 18일 (갑신) 1번째기사 선원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璿源殿, 行茶禮。
고종 17권, 17년	-	二十五日。 時原任大臣、閣臣、奉朝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7월 25일(신묘) 1번째기사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에게 사찬(賜饌)하였다. 탄신일(誕辰日)이었기 때문이다.	賀、宗親、儀賓、玉堂、春桂坊、宗正卿、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 賜饌。 以誕辰也。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8월 9일(을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였다. 부(賦)에서 〖거수(居首)한〗 생원(生員) 서재후(徐載厚)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酌獻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御春塘臺, 行日次儒生殿講。 以製代講, 賦生員徐載厚, 直赴殿試。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8월 9일(을사) 2번째기사 진전의 작헌례를 행할 때의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진전(眞殿)의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 김병덕(金炳德),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준영(趙準永), 예모관(禮貌官) 김영철(金永哲), 상례(相禮) 심상학(沈相學)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眞殿酌獻禮時, 贊禮以下, 施賞有差。 贊禮金炳德、禮房承旨趙準永、禮貌官金永哲、相禮沈相學, 竝加資。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光緖) 6년) 8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9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 연우궁(延祐宮), 선희궁(宣嬉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初六日。 詣永禧殿, 行酌獻禮。 仍詣儲慶宮、毓祥宮、延祐宮、宣禧宮, 展拜。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9월 13일 (무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9월 22일 (정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光緖) 6년) 12월 1일	전교하기를,	初一日, 甲午。 敎曰: “今月二十一日, 大院君晬辰也。 予小子欣祝之私, 無以爲喩。 宴需錢一萬兩、鼎紬三

(갑오) 1번째기사 대원군의 생신 잔치에 쓸 물건을 보내주도록 명하다	“이달 21일은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므로, 나 소자(小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잔치에 쓸 돈 1만 냥(兩), 정주(鼎紬) 3동(同), 목포(木布) 각 10동(同), 백미(白米) 100석(石), 점미(粘米) 30석, 진말(眞末) 10석, 진유(眞油) 30두(斗), 백청(白淸) 30두를 탁지(度支)로 하여금 본궁(本宮)에 실어 보내게 하고 악공(樂工)은 이원(梨園)을 시켜 거행하게 하라. 이날 본궁에서 뵐 것이다.” 하였다.	同、木布各十同、白米一百石、粘米三十石、眞末十石、眞油三十斗、白淸三十斗, 令度支輸送本宮。 樂工, 令梨園擧行。 伊日當覲於本宮矣。”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2월 13일(병오) 1번째기사 선혜청의 쌀 6,000석 정도를 즉시 해조로 이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탁지(度支)의 경비가 모자란 것이 이미 걱정스러운 형편인데, 미(米) 쪽이 더욱 고갈되어 연말에 응당 내려주어야 할 것을 안배하여 처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쌀 가운데서 6,000석(石)에 한하여 즉시 해조(該曹)로 이획(移劃)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병사(黃海兵使) 오진영(吳晉泳)의 장계(狀啓)를 보니, ‘황주 목사(黃州牧使) 민두호(閔斗鎬)가 녹봉 5,000여 금(金)을 희사하여 무기를 수리하였으므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로 볼 때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이 우수한 업적을 드러내었으니 참으로 이미 가상한데다 무기를 수선하는 것으로 말하면 성의를 다하고 부지런히 하여 조정의 신칙을 잘 받들어 행하였으며, 정비한 것에 흠이 없고 가장 먼저 끝마쳤으니 보답하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十三日。 議政府啓: “度支經費之艱絀, 已所憂憫, 而米邊尤爲告匱, 臨歲應下, 末由排比云。 就惠廳所在米中, 限六千石, 卽爲移劃該曹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黃海兵使吳晉泳狀啓, 則‘黃州牧使閔斗鎬捐廩五千餘金, 繕補軍器。 其在激勸之道, 合有褒賞之典事, 請令廟堂稟處’矣。 該守令之優著聲績, 固已可嘉, 而至若軍械之繕補, 到底誠勤, 對揚朝飭, 整備無缺, 首先告訖, 不可無酬賞之典, 特爲加資何如?” 允之。 又啓: “因前掌令金瓊上疏批旨, 安邊府京人徵捧事, 道臣査啓, 啓下本府矣。 取見狀

	“전 장령(前掌令) 김경(金瓊)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안변부(安邊府)에서 서울 사람이 징수한 일에 대하여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본부(本府)에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장계 내용을 가져다 보니 진술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사람이 폐단을 끼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증명할 만한 공문(公文)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사실에 근거해 재량하여 처리해서 때맞추어 금지시키지 못하고 특명(特命)으로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살펴보는 것입니까? 또 조사한 문건으로 말하더라도 체제에 결함이 있으니,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월봉(越俸)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그 잡된 무리들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감단(勘斷)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辭, 則其與疏陳, 殆無異焉。 然則京人之貽弊, 灼然可知。 設有公文之憑驗, 何不據實裁處, 趁時禁止, 而始乃覺察於特命行査之後乎? 且以査本言之, 有欠體段, 該道臣施以越俸之典, 其乖雜之類。 令本道照法勘斷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2월 28일(신유) 3번째기사 이찬식이 북방 환곡의 과중함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전적(典籍) 이찬식(李燦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북방은 바로 주(周) 나라의 빈기(豳岐)나 한(漢) 나라의 풍패(豐沛)처럼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왕업(王業)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에 나라를 세우고부터 열성조(列聖朝)에 이르기까지 앞날을 대비한 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큰 은혜가 다른 도(道)에 비해 갑절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화살을 차고 말을 달리는 용사들은 모두 끓는 물이나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용맹이 있으며 경학(經學)에 힘쓴 지식계층들은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의리가 있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에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길러 주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덕화가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근과 호표(虎豹) 같은 산짐승의 재변으로 인하여 열 집에	典籍李燦植疏。略: 北方卽我家岐周、豐沛也。 粤自立國以來, 式至列朝, 經遠之制置、字恤之洪造, 比他省, 倍有加焉。 故帶箭靺韋者, 皆有赴湯蹈火之勇, 劬經衿紳者, 皆有忠君悌長之義, 寔賴國家休養生息呴濡德化之所及。 而挽近以來, 饑饉虎豹之災, 十室九空。 南道則轉而之兩西、關東, 深北則至有越境犯科者, 此曷故焉? 民戶則比前全減, 而糶

	아홉 집은 비었습니다. 남도(南道)의 경우는 양서(兩西)나 관동(關東) 지방으로 떠나가고 북쪽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 죄를 범하는 자까지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이겠습니까? 민호(民戶)는 전에 비해 완전히 줄어들었는데도 환곡(還穀)은 전에 비해 더욱 불어나 한 해 내내 애써 농사지어도 조세로 바치고 나면 그만입니다. 가을에 현창(縣倉)에 바치는 것은 알곡이었는데 봄이 되어 환곡을 받은 것은 쭉정이뿐이니, 이것이 참새나 쥐가 축낸 것이겠습니까? 기러기나 따오기가 채간 것이겠습니까? 신은 실로 알 수 없습니다만 육진(六鎭)으로 말하면, 접때 안무사(按撫使) 김유연(金有淵)이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본전(本錢)은 그대로 두고 모조(耗條)만 취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고 아전들의 농간이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온 도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는 또한 육진의 전례에 따라 본전은 그대로 두고 모조만 취하는 것이 바로 북쪽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관방(關防)의 이해(利害)로 말하면 철령(鐵嶺)은 안변(安邊)의 초입에 끼어 있어서 육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남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성진(城津)은 길주(吉州)의 바다 어귀에 위치하여 수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사방의 선박들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철령은 한 사람이 관문(關文)을 지키면 만 명이 뚫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진장(鎭將)을 두어서 방어하고 기찰하는 방도를 견고히 해야 하고, 성진은 바로 산을 등지고 바다를 면해 있어 천연요새의 형세를 이루었으니 군부(郡府)로 승격시켜 변연(邊沿)을 방비하는 계책을 중히 해야 합니다. 지략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합사(合辭)하여 모두 옳다고 하니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재결(裁決)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성진의 폐단이 일어나는 근원에 대하여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길주목(吉州牧)에서 진(鎭)까지의 거리는 90리로, 평지에 군영을 설치하였다가 갑자기	糴比前滋夥, 終歲力作, 輸租而止。 秋納縣倉, 頗有實粒, 及春分糶, 只是空殼。 此乃雀鼠之壯耗耶? 雁鶩之舞弄耶? 臣實不知。 而至於六鎭, 則曩因安撫使臣金有淵所達, 臥本取耗, 以圖便宜, 民肩少息, 吏奸莫售。 目下一省救瘼之道, 亦依六鎭例, 臥本取耗, 乃是北民之大惠也。 且以關防利害言之, 鐵嶺介於安邊初境, 爲陸路吭扼, 故南北之人, 必由於此。 城津處於吉州海口, 爲水路要衝, 故四方之船, 必過乎此。 鐵嶺是'一夫當關, 萬夫莫開'之地, 宜置鎭將, 以壯捍禦譏訶之方; 城津乃'背山面海, 天設金湯'之勢, 宜陞郡府, 以重邊沿保障之略。 智者之見, 合辭皆是, 伏惟聖裁之如何? 臣請以城津弊源略陳之。 吉牧距鎭九十里, 平地設營, 猝有海警, 無土無民之鎭將, 措手不得, 何暇受其節制而應其緩急乎? 是其可憂之甚者。 而鎭民又有切骨之瘼者, 役於州, 役於鎭, 無名之稅、無例之役, 歲加月增。 不幾年所, 城津一域, 無人乃已, 豈以如彼保障重地棄而空虛乎? 大抵國之有關防, 將以備不虞也。 平常閒曠之

	바다에서 변고가 있게 되면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 진장이 손을 쓰지 못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절제(節制)를 받아서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겠습니까? 이것이 몹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진(鎭)의 백성들에게는 또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있습니다. 주(州)와 진에서 부역하며 명목 없는 세(稅)와 전례도 없는 부역이 해마다 더해가고 달마다 증가되어, 몇 년 못 가서 성진 한 지역은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이 같은 국방의 요충지를 버려두어 텅 비게 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나라에 관방이 있는 것은 장차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 이해에 무관한 널찍하게 비어 있는 곳에 오히려 이처럼 관문을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하물며 온 도의 요충지이고 큰 바다의 중심에 해당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진은 뒤쪽으로 세 고개와 아홉 구비의 험고함을 등지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망망한 대해를 대하고 있으니, 이 요충지에 의거해서 군부를 설치하면 한 도 안의 산과 바다의 요충지로서 이보다 나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력(萬曆) 갑인년(1614)에 관찰사(觀察使) 최관(崔瓘)이 건의하여 본진(本鎭)에 방영(防營)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숙종(肅宗) 신사년(1701)에 와서 또 도신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다시 방영을 설치하였다가 갑오년(1714)에 이르러 길주로 군영을 옮겼는데, 당시에 묘당에서 따져보아 응당 살펴볼 만한 이해(利害)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방영을 옮겨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갑자기 의논해서는 안 되지만, 본진의 경계를 나누어 읍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방도가 있습니다. 길주의 9사(社) 마을 안에 서이사(西二社), 서초사(西初社), 다초사(多初社)가 진에서 가장 가까우니, 그 3사를 나누어 붙이고 또 단천(端川)의 이하사(利下社)를 본진에 붙이면 본진의 지방은 합해서 4사가 되고 전결(田結)은 1,700여 결이며 환호(還戶)는 3,200여 호이니, 읍이 비록 작더라도 변경은 더욱 견	地, 無關於利害, 猶此設關而防禦, 況全省之咽喉、大海之腹心乎? 城津背負三嶺九阨之險固, 前對滄波萬頃之漭瀁。 據此要衝而設置郡府, 則一省中山海要衝, 莫過於此。 是故萬曆甲寅, 觀察使臣崔瓘建白, 設防營於本鎭, 其後五年而廢。 至肅廟辛巳, 又因道臣啓請, 復設防營。 逮甲午, 移營吉州。 當時廟筭, 應有利害之可審而然也。 防營之移設, 今不可遽議, 而但以本鎭分界陞邑, 置以守令, 則自有道理。 吉州九社之內, 西二、西初、多初三社, 最近於鎭矣。 分其三社付之, 且以端川之利下社付本鎭, 則本鎭地方合爲四社。 田結一千七百餘結, 還戶三千二百餘戶, 邑雖少, 邊境增固。 而凡設置校宮、客舍等節, 民願樂赴, 不費公貨, 不日可成。 臣豈敢一毫誣罔也? 卽使鐵嶺設鎭而備山盜, 城津陞邑而防海寇, 臥還息民, 犯越自返, 則關北全省之億萬生靈, 拯濟於魚喁之中矣。 德政速於置郵, 陽春回於寒谷, 赴湯蹈火之人, 其勇自倍, 忠君悌長之士, 其義益勵。 我東方億萬年無疆之休, 亶在於斯。 伏願殿下少垂察焉。

	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鄕校)와 객사(客舍)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부역(賦役)을 하여 공화(公貨)를 쓰지 않고도 빠른 시일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즉시 철령에 진을 설치하여 산도적을 방비하게 하고 성진을 읍으로 승격시켜서 해구(海寇)를 방어하게 하며, 환곡의 수봉(收捧)을 보류해서 백성들을 쉬게 하여 국경을 넘어간 자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한다면 관북(關北) 온 도의 억조 창생이 죽어가는 속에서 구제될 것입니다. 덕정(德政)이 역마(驛馬)보다 빨리 퍼지고 양춘(陽春)이 추운 골짜기에 되돌아오면, 끓는 물이나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용기 있는 자들은 그 용기가 스스로 배가될 것이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선비들은 그 의리가 더욱 진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억만년토록 무궁한 복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조금 굽어 살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批曰: “疏辭, 令廟堂稟處。”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2월 30일(계해) 1번째기사 각 도의 재결 700결을 준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700결(結)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三十日。 議政府以“各道災害結七百結, 特許準劃。” 啓。
고종 17권, 17년 (1880 경진 / 청 광서		太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 五千三百三十八匹。” 啓。

(光緖) 6년) 12월 30일(계해) 2번째기사 태복시에서 각 도의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5,338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7권 끝】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1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내리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1월 1일 (갑자)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100세 된 노인으로서 가자(加資)하라고 하비(下批)를 받은 자는 5인이었다.	

(光緖) 7년) 1월 29일 (임진) 4번째기사 100세 된 노인들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윤정규(尹正奎), 김경상(金慶相), 최수환(崔壽煥), 최덕현(崔悳鉉), 유복호(柳福浩)이다.】	百歲老人, 加資。 下批者五人。【尹正奎、金慶相、崔壽煥、崔悳鉉、柳福浩】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3월 2일 (갑자) 2번째기사 훈련 도감에서 소나무를 심은 것을 보고하다	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본국(本局)에서 나눠주어 중앙과 지방의 여러 산에 보태어 심은 소나무는 7만 5,700그루입니다.'라고 아뢰었다.	訓鍊都監以"本局分授內外山諸處松木補植七萬五千七百株。" 啓。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3월 25일 (정해)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를 지내고 서계를 받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五日。 詣仁政殿, 行宗廟夏享大祭受誓戒。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4월 3일 (갑오) 1번째기사 태묘에서 하향 대제를 행하다	태묘(太廟)에서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였다.	初三日。 行太廟夏享大祭。
고종 18권, 18년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6월 18일 (무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6월 28일 (무오) 1번째기사 모화관에 나아가 칙사를 접견하다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접견하였다.	二十八日。 詣館所, 接見勅使。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7월 17일 (정축) 2번째기사 관서의 소미 2만 석의 올해 모조를 해서에 소재한 병인 별비곡의 올해 모조로 획송하게 하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경하(趙敬夏)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이 구관(句管)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石)의 올해 모조(耗條) 2,000석을 전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어느덧 연례(年例)로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소재(所在)한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올해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趙敬夏所報, 則‘本營句管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依此數劃送何如?” 允之。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7월 18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무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7월 25일 (을유) 1번째기사 탄신일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봉조하(奉朝賀), 통리아문(統理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시임 빈객(時任賓客),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게 사찬(賜饌)하였다.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二十五日。 命:“時原任大臣、閣臣、奉朝賀、統理衙門堂郎、宗親、儀賓、宗正卿、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玉堂、時任賓、客春桂坊, 賜饌。” 以誕辰也。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윤7월 11일(신축) 1번째기사 제주에서 공마를 바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 107필을 들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十一日。 司僕寺以“濟州入貢馬一百七匹”啓。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8월 8일 (정묘) 2번째기사 전라도 낙안군 대동선의 곡물을 이양선에게 약탈당하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가, ‘방금 소근 첨사(所斤僉使) 맹희원(孟喜元)의 첩보(牒報)를 보니, 「이달 12일에 두 개의 돛을 단 이양선(異樣船) 2척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전라도(全羅道) 낙안군(樂安郡)의 대동선(大同船)의 곡식 몇 석(石)을 약탈해 가지고 갔습니다. 13일에 첨사가 해군(該郡)에 급히 가서 대동선이 옮겨 정박해 있는 가야항리(加也項里)에 해당 배의 곡물을 살펴보니, 남아 있는 것이 319석이고 약탈 당한 것이 82석이었습니다. 그러므	忠淸監司李承五以“卽接所斤僉使孟喜元牒報, 則以爲:‘今月十二日, 異樣二帆船兩隻, 自西而來, 全羅道樂安郡大同船穀幾許石, 掠奪以去。 而十三日, 僉使馳往該郡, 大同船移泊之加也項里該船穀物卸下, 則所存爲三百十九石, 而其所見奪, 爲八十二石。 故該船色吏李佐永、船主金大之、沙工金順瑞

	로 해당 배의 색리(色吏) 이좌영(李佐永), 선주(船主) 김대지(金大之), 사공 김순서(金順瑞) 등을 우선 해당 이임(里任)에게 보수(保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모양이 어떠하고, 저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떠한지를 애초에 지적하여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의 색리와 사공 및 곁꾼〔格軍〕, 호송 감색(護送監色)을 모두 잡아와 엄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지방관인 태안 부사(泰安府使)에게 관문을 띄워 신칙하였습니다. 해당 부사 구석조(具奭祖)의 첩보(牒報) 내에, 「선주(船主)는 약탈당한 후로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 병이 되어 한창 몹시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색리와 호송 감관 등이 고한 바 내에 『해군의 대동미(大同米)를 싣고 올라오는 길에 이달 12일 소근진(所斤鎭)의 가야항(加也項)에 도착하니 뜻밖에 저들의 배가 서쪽으로부터 조선(漕船)이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하여 좌우로 포위하고, 이어서 조선을 저들 배 2척 사이에 몰아넣고 쇠밧줄로 단단히 결박하고는 거의 100명이 일제히 뛰어올라 총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미포(米包)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형세상 서로 대적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본진의 호송선이 와서 구원하여 색리와 사공 등 9명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약탈당한 쌀이 82석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느 나라 사람의 배인지는 비록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배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물과 고물이 조금 높아서 형태가 마치 가죽신 같은 것이 등주(登州)와 내주(萊州) 등지의 오랑캐 배와 비슷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사 형세가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배의 색리와 사공 및 곁꾼, 호송 감색 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니 모두 엄하게 과치(科治)해야 합니다. 소근 첨사는 사체(事體)로 볼 때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의 영(營)에서 엄히 곤(棍)을 쳐서 징계할 생각입니다. 세곡(稅穀)을 호송하여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변란이 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나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평상시에 신칙하지 못한 신	等, 姑爲保授該里任處'云。 而船樣如何, 彼人形貌如何, 初無指的之告, 故同船色吏、沙·格及護送監色, 竝爲捉來嚴査以報之意, 發關申飭于地方官泰安府使處矣。 該府使具奭祖牒報內, '船主段自經被掠後, 驚怯爲祟, 方在重痛。' 色吏及護送監官等所告內, '該郡大同米運載上來路, 今月十二日, 到所斤鎭加也項, 則不意彼船自西來到漕船所住處, 左右擁立, 仍以鐵索堅, 縛漕船於彼船兩隻之間, 近百名一齊躍上, 放砲揮劍, 奪取米包。 而矣等勢不相敵, 幸賴本鎭護送船之來救, 色吏、沙工等九名, 僅免死傷, 見奪則爲八十二石矣。 彼我言語不通, 則何國人船, 雖不可指的, 觀其船樣, 則頭尾稍高, 形如發莫鞋樣, 似是登州、萊州等地胡船'矣。 縱緣勢之不敵, 該船色吏、沙·格及護送監色等, 不可仍置, 竝爲從重科治; 所斤僉使, 事體所在, 有難全恕, 故自臣營, 嚴棍懲勵計料。 稅穀護運, 何等愼重? 而不圖意外之變, 出於臣所部之內, 常時失飭, 臣亦不勝惶恐待罪"啓。 敎曰: "勿待罪。"

	도 역시 황공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8월 9일 (무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8월 15일 (갑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8월 24일 (계미)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칠석제를 행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二十四日。 御春塘臺, 行七夕製。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8월 25일 (갑신) 1번째기사 대납 기한이 찬 고을에 대해 가을부터 본색으로 내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사(京司)의 경비가 매우 군색한 것이 진실로 오늘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기내(畿內)의 여러 고을의 공세(貢稅)를 몇 해째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한 것은 비록 고을 형세와 백성들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만부득이해서 그러한 것이기는 하나, 상부(常賦)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미 기한이 찬 고을은 올 가을부터 본색(本色)으로 내도록 요구하고 기한이 차지 않은 고을은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규례대로 수납하되 다시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아직 기한이 차지 않은 고을도 일체 수납하라.” 하였다	二十五日。 議政府啓:“京司經費之到底窘絀, 誠莫今日若。 而畿內諸邑貢稅之年來許代, 縱由邑勢、民情之萬不獲已而然, 常賦之課歲告蹙, 有不可不念。 就其中已限滿者, 自今秋以本色責出, 未限滿者, 待限滿依例收納, 而更勿以展限煩請之意, 分付何如?” 允之。 仍敎曰: “未限滿邑, 一體收納。”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8월 26일 (을유) 1번째기사 종묘에 나아가 전알하고 이어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다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추알(秋謁)이었다.	二十六日。 詣宗廟, 展謁, 仍詣景慕宮, 展拜。 秋謁也。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9월 20일 (기유) 1번째기사	-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의 장계(狀啓)를 보니, 목화농사가	二十日。 議政府啓:“卽見慶尙監司尹滋承狀啓, 則備陳綿農判歉之狀, 仍請各軍門所納布及樂工保布, 竝以純錢代捧, 訓局保布, 限五分四代錢事, 令廟

경상도의 목화농사가 흉년이 들다	완전히 흉년든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각 군문(軍門)에 바치는 포(布)와 악공(樂工)의 보포(保布)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봉(代捧)하고,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보포는 5분의 4만 돈으로 대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본도의 목화 농사가 바람과 홍수로 손상되었더라도 전해 듣기로는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뒤섞어서 흉작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실정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의 것은 5분의 1을 대봉하도록 허락하고, 각사(各司)의 것은 순전으로 시행하되, 훈련 도감의 보포는 사체(事體)가 남다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堂稟處矣。 本道綿農, 縱爲風澇之痒損, 而傳聞所及, 自有優遜之各殊, 則何可混歸之判歉乎? 民情攸關, 有不可不念。 兵曹各營五分一許代, 各司純錢施行, 訓保事體自別, 置之何如?" 允之。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9월 20일 (기유) 2번째기사 덕원부의 일본인 거주지 표계 안에 있는 논밭의 조세를 견감해 주라고 명하다	덕원부(德源府)의 일본인 거주지 표계(標界) 안에 있는 논밭 4결(結) 81부(負) 5속(束)과 속전(續田) 4결 38부 4속은 올해부터 조세를 견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命德源府日本人居留地標界內田畓四結八十一負五束, 續田四結三十八負四束, 自今年蠲稅。 因北伯狀請, 政府覆啓也。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光緖) 7년) 9월 22일 (신해) 1번째기사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9월 26일 (을묘) 4번째기사 태묘의 동향 대제를 섭행하도록 하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연명 차자(聯名箚子)에,【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최응(李最應),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섭행(攝行)하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時原任大臣聯箚,【領敦寧洪淳穆、領府事李最應、左議政金炳國】 請太廟冬享大祭攝行。 賜批勉從。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12월 23일(신사) 3번째기사 가례 때 드는 비용을 각 관청에서 구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 판서 김병시가 아뢴 것을 보니, 가례에 들 비용 12만 냥(兩)에 한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구획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돈 9만 냥, 훈련원(訓練院),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3영(營)의 돈 각각 6,000냥, 병조(兵曹)의 돈 5,000냥, 총융청(摠戎廳)의 돈 4,000냥, 사복시(司僕寺)의 돈 3,000냥을 획송(劃送)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戶曹判書金炳始所奏, 則‘嘉禮所需錢, 限十二萬兩, 令廟堂區劃’爲辭矣。 就惠廳錢九萬兩、訓·禁·御三營錢各六千兩、兵曹錢五千兩、總廳錢四千兩、司僕寺錢三千兩, 劃送入用何如?” 允之。
고종 18권, 18년 (1881 신사 / 청 광서 (光緖) 7년) 12월 28일(병술) 1번째기사 군산창의 허류곡을 10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라 전 감사(全羅前監司) 심이택(沈履澤)의 보고를 보니, ‘군산창(群山倉)의 허류곡(虛留穀)이 4,809석(石)인데 날마다 엄하게 독촉하여 그동	二十八日。 議政府啓: “向見全羅前監司沈履澤所報, 則‘群山倉虛留穀四千八百九石, 而課日嚴督, 其間所納, 僅一百五十石矣。 幾箇漕卒, 不能資活, 一自收逋之後, 擧懷荷擔。 且債主輩

년에 한하여 분납할 것을 윤허하다	안 받아들인 것이 겨우 150석입니다. 몇 명의 조졸(漕卒)이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 번 체납 분을 거둬들인 뒤로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채주(債主)들이 미봉책으로 처리해 오던 빚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여 도리어 포흠(逋欠)이 나고 말아 마침내 파산할 지경입니다. 지금 만약 규례대로 독촉하여 추징하게 되면 세곡은 다 받아들일 기약이 없고 창고는 소생할 가망이 없게 되니, 위의 채주와 사공 등이 납부할 것을 특별히 대납하게 하고 10년에 한하여 분납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특별히 4년에 한하여 돈으로 대신 분납하게 하되 매년 거두어들인 상황을 그때그때 치보(馳報)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許多責應之彌縫者, 未及推捧, 轉成已逋, 竟致蕩敗。 今若如例責納, 則稅無可完之期, 倉無復蘇之望, 上項債主、沙工等所納, 特爲許代, 限十年排納'爲辭矣。 特許限四年, 代錢排納, 而每歲收捧形止, 隨卽馳報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월 1일 (무자) 5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월 1일 (무자) 6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내리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十九日。 行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光緖) 8년) 4월 19일 (갑술) 1번째기사 삼각산 등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4월 22일 (정축) 2번째기사 용산강 저자도에서 재차 기우제를 지내다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재차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4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二十五日。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4월 28일 (계미) 1번째기사 사직단과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二十八日。 行四次祈雨祭于社稷北郊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일	종묘(宗廟)에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五次祈雨祭于宗廟。

(병술) 3번째기사 종묘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4일 (기축) 5번째기사 삼각산과 목멱산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한강(漢江)에 호두(虎頭)를 빠뜨렸다.	行六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7일 (임진) 2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일곱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일곱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七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0일 (을미)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다	북원(北苑)으로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한 다음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參班儒生)들과 무인(武人)들을 시취(試取)하였다.	初十日。 詣北苑, 行望拜禮。 仍御春塘臺, 試取參班儒武。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0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여덟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八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을미) 5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여덟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3일 (무술) 2번째기사 북쪽 교외에서 아홉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북쪽 교외에서 아홉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九次祈雨祭于北郊。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특별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줄곧 가뭄이 들어 농사가 재해를 받고 있다. 재변은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로 과궁(寡躬)이 경천 휼민(敬天恤民)하지 못하여 이런 좋지 못한 기후가 이른 것이니,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끄럽고 걱정스러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정성껏 지내게 하라. 향축(香祝)은 의당 친히 전하겠다.” 하였다.	敎曰: “一直暵乾, 民穡受災。 災不虛生, 寔由寡躬, 不能敬天而恤民, 致此愆候, 自顧慙悶, 曷以爲言? 社稷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虔誠設行。 香祝, 當親傳矣。”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7일 (임인) 2번째기사 현륭원 기신제에 대신	전교하기를, “현륭원(顯隆園) 기신제(忌辰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顯隆園忌辰祭, 遣大臣攝行。”

을 보내어 섭행하게 하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8일 (계묘) 2번째기사 사직단에서 특별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行別祈雨祭于社稷。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19일 (갑진) 1번째기사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어제 단비가 내렸으나 얼마 오지 않고 곧바로 갰으므로 농사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더욱 그지없다. 종묘(宗廟)에서 지내는 기우제(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정성껏 지내게 하라. 향축(香祝)은 의당 친히 전하겠다.” 하였다	十九日。 敎曰:“昨日甘霈, 未洽而旋霽, 言念穡事, 渴悶尤切。 宗廟祈雨祭, 再明日, 遣大臣虔誠設行。 香祝當親傳矣。”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21일 (병오) 3번째기사 종묘에서 특별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行別祈雨祭于宗廟。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5월 24일 (기유) 3번째기사	남단(南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行別祈雨祭于南壇。

남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5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북쪽 교외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북쪽 교외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二十七日。 行別祈雨祭于北郊。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6월 1일 (을묘) 1번째기사 선농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선농단(先農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初一日, 乙卯。 行別祈雨祭于先農壇。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6월 4일 (무오) 1번째기사 우사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우사단(雩祀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初四日。 行別祈雨祭于雩祀壇。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6월 5일 (기미) 5번째기사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行別祈雨祭于社稷。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6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인천부의 대동미 이자를 해읍에 넘겨주도록 하다	인천부(仁川府)의 대동미(大同米)는 신사년(1881) 몫부터 시작하여 상정(詳定) 몫으로 쳐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해읍(該邑)에 넘겨주라고 명하였다. 해읍이 방어사(防禦使) 군영(軍營)으로 승격되면서부터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민력(民力)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해도(該道)의 감사(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요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命仁川府大同米, 自辛巳條爲始, 詳定取剩, 仍付該邑。 以該邑自陞防營以後, 凡百尙爾草創, 民力轉益艱窘, 有該道臣狀請政府覆啓也。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6월 11일 (을축) 6번째기사 비가 왔으므로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거행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안타까이 가물던 끝에 단비가 흡족하게 왔으니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기우제(祈雨祭)는 정지하고, 보사제(報謝祭)는 공제(公除) 이후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憫旱之餘, 甘霈優洽, 誠切萬幸。 祈雨祭停止, 報謝之節, 待公除後擧行何如?” 允之。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8월 6일 (기미) 3번째기사 익종의 탄신일이므로 작헌례를 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이달 9일은 바로 우리 익종(翼宗)의 탄신일이고, 연이어 중궁전(中宮殿)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의식이 있으니, 고유제(告由祭)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날에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해야할 것이고, 동궁(東宮)도 따라서 나아가 예를 행해야 할 것이다. 백관(百官)은 참석하라.” 하였다.	敎曰: “今月初九日卽我翼考誕辰也。 屬有中宮殿迎還之儀, 不可無告由。 當於伊日, 詣眞殿, 行酌獻禮, 而東宮亦當隨詣行禮矣。 百官入參。”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8월 9일 (임술) 5번째기사 법성창의 추쇄하지 못한 세곡을 상정가로 대납하도록 명하다	법성창(法聖倉)의 기묘년(1879)과 경진년(1880)의 세곡(稅穀)에서 허류(虛留)된 채 아직 추쇄(推刷)하지 못한 몫인 8,000여 석(石)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본창(本倉)의 사세로서는 실로 전부 추쇄하기는 어렵고, 경사(京司)의 재정이 몹시 군색하여 묘당(廟堂)의 계사(啓辭)가 있었기 때문이다.	命法聖倉己卯、庚辰稅穀虛留未刷條八千餘石, 特許詳定代納。 以本倉事勢, 實難盡刷, 京司經用, 萬分窘急, 有廟啓也。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8월 26일 (기묘) 1번째기사 해서에 있는 병인년의 별비곡의 모조를 2,000석 획송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홍순형(洪淳馨)이, ‘본영(本營)이 구관(句管)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石)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을 규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곧 연례(年例)로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조를 이 수량에 맞추어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六日。 議政府啓: “開城留守洪淳馨, 以本營句管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準此數劃送何如?” 允之。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9월 10일 (계사) 1번째기사 홍순목 등이 성상의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요즘 성상(星象)이 경계를 보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로 관통되어 그 반응이 형체에 대한 그림자나 소리에 대한 메아리보다도 더 빠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진실로 잘못이 없다면 하늘에서 어찌 꾸	初十日。 次對。 領議政洪淳穆曰: “邇來星象告警, 甚可懼也。 天人一理, 捷於影響。 人事苟無所失, 天道豈有其謫乎? 惟我殿下, 自經涌洞之擾, 憂危一念, 夙夜慥慥, 求過於無過

이변과 대동미 횡령 등의 문제에 관하여 아뢰다	짖는 경고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연속되는 소란스러운 사변을 겪은 뒤부터는 오직 근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밤낮 잘못이 없는 속에서 독실하게 잘못을 찾으며 바른말을 듣기 좋아하였고 사람들의 좋은 점을 취하여 마치 막혔던 강물을 터놓듯이 하려고 생각하였으니, 옛날 어진 임금들의 훌륭한 정사인들 어찌 이보다 능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훌륭한 임금은 있으나 훌륭한 신하가 없는 탓으로 그 도리를 도와주지 못하여 위로는 큰 교화가 펴지지 못하고 아래로는 지극한 혜택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정사가 뜻대로 되지 못한 결과 이런 재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변을 없애는 방도로는 어진 신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신처럼 재능이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한 자는 마땅히 속히 내쳐서 벼슬자리가 비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령(政令)에 관련된 것은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도와주며 원대한 계책을 세우는 데 힘쓰고 대궐과 관청이 한 몸이 되어 동요하지도 말며 태산 반석같이 사물을 휘어잡아 사람들의 마음이 성을 이루듯 단합시킨다면, 기강이 절로 서고 풍속이 순박한 곳으로 돌아설 것이며 화기(和氣)가 사방에 들이차 하나로 화합될 것이니, 어찌 형혹성(熒惑星)이 삼사(三舍)만 물러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경성(景星)과 경사스러운 구름이 나타나 재앙을 상서로운 것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찰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재변을 막는 방도는 실제 행동으로 응하는 데 있다. 오늘 진달한 의견은 자신을 반성하는 요점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근래 외읍(外邑)의 세정(稅政)이 전혀 법과 기강이 없습니다. 세곡(稅穀)을 경강 선주(京江船主)에게 넘겨주고 확인 문건만 받으면 해당 고을에서는 이미	之中, 樂聞昌言, 取人以爲善, 思欲若決江河, 雖古聖王隆盛之治, 曷以過此? 特有君無臣, 贊襄不得其道, 大化未敷於上, 至澤莫究於下, 治不徯志, 致此災咎爲。 今消弭之術, 莫先於與賢共國。 如臣之匪才冒據, 宜亟斥黜, 俾天工無曠。 而凡係一政一令, 明良相須, 務要遠者大者, 宮府一體, 勿撓勿動, 鎭物如泰山盤石, 衆心成城, 則紀綱自立, 風俗回淳, 和氣周遍, 薰蒸融液, 奚止於三舍之退? 將見景星慶雲, 轉災爲祥。 伏願穆然澄省焉。” 敎曰: “弭災之道, 在於應之以實。 今此所陳, 無非修省之要, 可不佩服也?” 淳穆曰: “近來外邑稅政, 蕩無法紀矣。 交付稅穀於京船主, 纔受勘合, 則該邑便謂已納, 更不省察。 及當解由之出, 以已受勘合, 呈狀該司, 無所爲拘, 當初法意, 固如是乎? 所以船主輩幻弄, 歲滋月增, 引此郡之穀, 充彼州之納。 雖逋負如山, 姑幸目下免罪。 無嚴無憚, 寧不痛惡哉? 自今隨現用律, 莫越成法, 而爲守宰地, 亦毋蹈如前謬習, 必準納該司, 受尺文考, 還于本道伯然後, 始可無礙於解由。

	바친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해유(解由)를 낼 때를 당해서는 이미 확인 문건을 받은 것으로 해사(該司)에 정장(呈狀)하며 아무 구애하는 바가 없으니, 당초의 법의가 본디 이러했겠습니까? 이런 결과로 하여 선주(船主)들의 농간이 해마다 더 심해져서 이 고을의 곡식을 끌어다가 저 고을의 상납에 채워 넣습니다. 이에 횡령한 것이 산처럼 많아도 그 당장에서는 우선 죄를 면하게 됩니다. 이렇듯 존엄성이 없고 꺼리는 바가 없으니 어찌 몹시 증오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드러나는 대로 법조문을 적용하여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수령(守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전날의 그릇된 버릇을 답습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수량대로 해사에 바치고 확인 문건을 받아서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에게 확인하여 돌려보낸 뒤에야 비로소 지장이 없게 해유에 대한 승인 문건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세를 바치는 고을에 공문으로 신칙하도록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도신(道臣)에게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먼저 확인문건을 받은 다음에 자문(尺文)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세정(稅政)의 중요한 규정이다. 진달한 대로 집행하여 꼭 실제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의 보고를 보니, ‘죽산(竹山)과 양지(陽智)의 결세(結稅)가 점점 체납되고 각종 상납도 모두 포흠(逋欠)이 되었습니다. 신사년(1881) 몫부터 조세와 대동미(大同米)는 4년 동안을 기한하여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게 하되 매해 나눠서 포흠을 보충하게 하고, 전후하여 포흠낸 수괴(首魁)들은 응당 법조문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달포 전에 이 고을 경계를 지날 때 이 두 고을의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	以此關頗飭稅納邑之意, 分付兩湖道臣何如?” 敎曰: “先捧勘合, 後考尺文, 乃稅政之要法。 依所奏方之, 期有實效可也。” 淳穆曰: “京畿監司洪祐昌報, 以‘竹山、陽智兩邑結稅, 駸駸積欠, 各樣上納, 盡成逋藪。 自辛巳, 條稅大同, 限四年詳定代納, 使之排年充逋, 前後逋魁, 從當按法處之’爲辭矣。 臣於月前過境時, 槪聞此兩巴難支之事勢也。 流來積逋, 淸刷無術。 殘局牽補, 殆至邑不爲邑。 與其徒擁虛簿, 無所些益於公, 不若從輕磨勘, 俾有懷保之方。 依所請, 限四年詳, 代排納。 而旣有此寬典, 則負逋諸漢, 令道臣嚴査施律, 以懲後弊何如?” 敎曰: “詳代排納, 依所奏爲之。 犯逋諸漢, 嚴査施律, 斷不可已也。” 淳穆曰: “畿伯又以‘長湍、坡州兩邑虛結, 特蒙限十年停稅之澤。 而今已限滿, 還起無處, 年來潦漲, 反添汰落, 白地責徵, 在所不忍。 長湍府舊汰落畓結七十九結四十五負六束, 新汰洛畓結九結六十五負六束, 坡州牧畓結八十六結一負五束。 竝加限十年停稅’爲辭矣。 今此兩陳結之虛徵, 旣係民間切骨之

	에 대해서 대체로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쌓인 포흠을 청산할 방도가 없어 쇠잔한 형편에서 이리저리 끌어다 메워나가다 보니 고을은 고을의 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公)에 아무런 도움도 없는 빈 장부만 안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가벼운 쪽을 따라 마감(磨勘)하여 백성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방도가 있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요청한 대로 4년 동안을 기한하여 상정가로 쳐서 대납하게 하되, 매해 나눠서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그러운 조치가 취해진 조건에서는 포흠을 낸 놈들은 도신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형률을 시행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상정가로 대납하게 하되 매해 나눠서 바치게 할 것에 대한 문제는 아뢴 대로 하라. 포흠을 낸 놈들을 엄하게 조사하여 형률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또 보고하기를, ‘장단(長湍)과 파주(坡州)의 허결(虛結)을 특별히 10년 동안 조세를 중지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기한이 찼으나 환기(還起)한 곳은 없고 몇 해째 홍수가 나서 도리어 사태(沙汰)가 나 백지(白地)가 더 많아졌기에 차마 책징(責徵)할 수 없습니다. 장단부(長湍府)에서 그전에 사태가 난 답결(畓結) 79결(結) 45부(負) 6속(束)과 새로 사태가 난 답결 9결 65부 6속, 파주목(坡州牧)의 답결 86결 1부 5속에 대해서 모두 10년 동안 더 기한을 늘려 조세를 바치는 것을 중지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고을의 진결(陳結)에서 생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기한하여 조세를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은 이미 다 찼지만 아직 개흙땅이 생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요청하는 것이니, 이는 부득이한 데서	瘼, 限十年停稅者。 而雖已限滿, 未有泥生處。 故如是更請, 蓋出於不得已也。 民隱攸關, 不可不顧恤。 依狀請復展五年之限何如?” 允之。 又曰: “江原監司南廷益謄報以‘高城楡岾寺三千餘間, 盡入回祿, 空名帖依已例成給, 以爲修葺事, 請令廟堂稟處’矣。 此乃千年古刹, 而域內名山眉目也, 忽被回祿蕩燼間架, 若是夥多。 而係是不得不重建, 則事鉅力綿, 合施存恤。 空名帖限五百張, 依乾鳳例成給, 以補修葺之資, 而亦自本道, 另加顧助, 俾許多緇徒, 不至渙散何如?” 允之。 又曰: “武庫所管月課銃藥, 頒送於三南、西北, 年例也。 而各該道之未及推去者, 向來騷擾, 庫儲盡被蕩失。 顧今事力, 無以措辦, 竝姑停止, 待明年條受去之意, 分付道臣何如?” 允之。 又曰: “前監役金炳昌、田愚、柳道性、李象弼、安鍾悳、兪鎭泰, 飭躬修行, 可合進用。 爲先六品職調用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左議政金炳國曰: “臣於是日, 復以是職是病, 冒登是筵, 非第聞者怪而見者駭。 臣亦自怪自駭, 自不知何以能趨詣於九重之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의 숨은 고통과 관계되므로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狀啓)의 요청대로 다시 5년 동안 더 연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 감사(江原監司) 남정익(南廷益)의 등보(謄報)에, ‘고성(高城)에 있는 유점사(楡岾寺) 3,000여 간(間)이 몽땅 화재를 당하였으니 공명첩(空名帖)을 전례대로 만들어 주어 수리하는 데 비용에 보태 쓰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천년의 고찰로서 역내(域內)의 아름다운 명산인데 갑자기 화재를 입어 타버린 칸 수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공사는 방대하고 재력은 딸리는 것만큼 응당 돌보아주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공명첩을 500장으로 한정하여 건봉사(乾鳳寺)의 예에 따라 만들어 줌으로써 개건하는 데 드는 비용에 보태 쓰게 하는 동시에 본 도에서도 따로 돌보아주어 많은 중들이 흩어져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기고에서 관할하고 있는 월별 과제로 들어온 총약(銃藥)을 삼남(三南)과 서북(西北) 지방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해도(該道)에서 미처 찾아가지 못한 것들은 창고에 저축하여 두었던 것인데 지난번 서울의 소요로 몽땅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의 힘으로서는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우선은 모두 중지하였다가 내년까지 몫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받아가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감역(前監役) 김병창(金炳昌)·전우(田愚)·유도성(柳道性)·이상필(李象弼)·안종덕(安鍾悳)·유진태(兪鎭泰)는 자신을 수양했으니 등용하는데 적합할 만 합니다. 우선 6품직에 조용(調用)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	深。 跪敷於咫尺之前, 蓋由乎感激殊遇, 怵畏義分, 遂忘是職之萬不堪, 是病之萬難强, 只欲報殊遇於一日, 伸義分於一日也。 且欲望仁覆之天, 監燭若是駭怪, 矜之悶之, 必不俟終日鞶褫也。 至若承弼之非其才, 匡濟之無其術, 反涉自任者然, 有不敢覦縷。 惟伏冀生成之澤而已。” 敎曰: “企竚之餘, 幡然簉朝, 子心充然。 愼節非不奉慮。 而臥閤將攝, 自當漸次康復。 惟暨元輔, 協心同力, 佑予一人, 以濟時艱, 是所區區之望也。” 炳國曰: “日前下臣之諭, 以民生困瘁, 天災示警, 辭旨懇懇, 有足以感動于民, 孚格于天, 臣誠欽仰萬萬。 而蓋民者, 蚩蚩在下, 天者, 高高在上, 有若不相與焉。 惟聖王, 以民爲天。 故書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目下生靈之多困, 其必由不安其堵而然也, 乾緯之告異, 亦必由不安其次而然也。 書又曰: ‘庶民惟星。’ 此所以有警於民, 則必示於星也。 我聖上丙枕靡安, 憧憧焉恐懼, 而荐降惻怛之綸, 思聞消弭之策, 其策匪在於他, 只在於安民而已。 噫! 民之不安者久矣, 今

	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이 벼슬에 다시 등용되어 병을 무릅쓰고 이 연석(宴席)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비단 듣는 자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보는 자들이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신 또한 어떻게 깊은 대궐에 달려 나와 전하의 앞에 꿇어앉아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나친 대우에 감격하고 의리와 명분으로 놓고 보아 겁이 났던 나머지, 이 직책은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이 병은 참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단 하루라도 남다른 우대에 보답을 하고 단 하루라도 의리와 명분을 지키려고 한 데서부터 기인하였을 것입니다. 또 어지신 전하께서 이와 같이 놀랍고 괴이해 하는 것을 환히 살펴서 가엽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도 채 지나가기 전에 체직시키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임금을 도울 만한 재능도 없고 시국 형편을 바로잡고 수습해 나갈 재능도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도리어 자임(自任)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기에 감히 누누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살려 주시는 은택을 바랄 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몹시 기다리던 끝에 선뜻 마음을 바꿔 조정에 나오니, 나의 마음이 흡족하다. 병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閤)에 누워서 일을 보면서 몸조심을 하면 점차 회복될 것이다. 영의정(領議政)과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나 한 사람을 도와 현행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일전에 신에게 내린 유시(諭示)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하늘이 재앙으로 경고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 더할 나위 없이 간곡하였으니, 충분히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므로 신은 참으로 천만번	到于極, 駸駸然騷訛胥動, 流離相續, 正宜勞徠之撫恤之, 拯諸溝壑, 置諸衽席, 無使一夫, 不得其安也。 民安則邦亦寧矣。 邦寧則必將見熒惑之徒, 而反爲景星之瑞矣。 臣方丐免之不暇, 何敢妄有陳贅? 而此係遇災急先之務, 殿下念哉。” 敎曰: “遇災條省, 莫過於安民。 今此所奏, 如是懇摯, 當服膺而自勉矣。”

	우러러 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아득한 아래에 있고 하늘은 높디높은 위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오직 성스러운 임금만은 백성을 하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상서(尙書)》에,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데 따라 보고, 우리 백성들이 듣는 데 따라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많은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은 필시 그들이 안주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며, 하늘이 재앙으로 경고를 보이는 것도 필시 절기의 순차가 불안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서(尙書)》에 또, '백성들은 별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별들을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몹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고 간절한 윤음을 거듭 내리고는 재변을 없앨 방책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한 방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아, 백성들이 안정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극도에 이르러 근거 없이 소요스러운 소문에 점점 더 빨리 술렁대어 고장을 뜨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응당 위로하며 불러들이고 구원하여 제대로 생활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안착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백성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면 나라도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면 반드시 형혹성(熒惑星)은 사라지고 도리어 경성(景星)이 나타나는 상서로운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지금 사임을 청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망령되이 딴 문제를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재변을 당하였을 때 서둘러야 할 급선무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재변을 당하여 수성(修省)하는 것은 백성을 안주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지금 아뢴 의견이 이와 같이 간곡하고 정성스러우니, 가슴에 새겨두고 스스로 힘쓰겠다."	

	하였다.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9월 13일 (병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이어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仍詣宗廟, 展謁, 景慕宮, 展拜。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9월 14일 (정유) 2번째기사 삼남 지방의 곡식을 수로로 운반하는 일에 관하여 이경권이 상소하다	유학(幼學) 이경권(李敬權)이 상소하여, 경기(京畿)지방은 여러 달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삼남(三南)지방은 풍년이 들었으니, 얼음이 얼어붙기 전에 그곳의 곡식을 수로로 운반하여 쌓아둠으로써 도하(都下)에 공급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기지방이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으니 실로 염려스럽다. 곡식을 옮기는 방책도 흉년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였다.	幼學李敬權疏請京畿多月亢旱, 而三南豐稔, 宜於氷合之前, 漕轉備儲, 以給都下。 批曰:“畿內旱歉, 實爲可悶。 移粟之策, 亦荒政之一法也。”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 (光緖) 8년) 9월 22일 (을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0월 7일 (경신) 2번째기사 인원 왕후의 명릉에 작헌례를 섭행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달은 바로 우리 인원 성모(仁元聖母)께서 가례(嘉禮)를 치르신 지 예순 돌이 되는 달이다. 지난날을 추억하면 슬픔과 사모의 정이 더욱 간절해진다. 오는 13일 명릉(明陵)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라.” 하였다.	敎曰: “是年是月, 卽我仁元聖母舟梁舊甲也。 追惟往昔, 冢切愴慕。 今十三日明陵, 遣大臣, 攝行酌獻禮。”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1월 19일(신축) 9번째기사 석탄을 이용하도록 양진화가 상소하다	유학(幼學) 양진화(梁鎭華)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석탄이라는 것은 값이 싸고 용도가 넓으며, 중국과 서양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석탄은 평양(平壤)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하늘과 땅이 우리의 종사(宗社)와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복입니다. 이름은 탄(炭)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용 가치는 금은 주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의견은 참으로 시세의 요구에 부합되니, 시험해 보게 하겠다.” 하였다.	幼學梁鎭華疏略: “石炭爲物, 價廉用博, 中國、泰西。 以作日用之物。 而必致富强者此也。 石炭産於平壤, 則皇大后土。 報佑我宗社生靈之福乎。 名雖炭, 其功不可與金銀殊玉, 同日而語矣。” 批曰: “所陳實合時宜。 當令試用也。”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2월 5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議政府啓: “各貢契受價與各衙門散料

(정사) 5번째기사 공계에 줄 돈을 각 도의 환곡으로 변통하도록 하다	“각 공계(貢契)에서 받을 값과 각 아문(衙門)에 차하하지 못한 산료미(散料米)에 대해서 묘당(廟堂)에서 모조(某條)의 전(錢) 가운데서 30만 냥(兩)에 한하여 우선 조처하여 획급(劃給)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축이 바닥나서 변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京畿),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에 있는 사환곡(社還穀)을 합하면 6만 4,000여 석(石)인데 그것을 작전(作錢)하도록 허락하고,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기일을 정해놓고 받아들여 적절히 나누어 줄 절차에 대해서는 연전(年前)의 규례대로 각별히 말을 잘 만들어 즉시 해도(該道)에 관문(關文)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米未下者, 自廟堂就某樣錢中, 限三十萬兩, 爲先措劃事, 命下矣。 今玆儲蓄空枵, 變通未易。 就京畿、湖西、湖南、嶺南所在社還穀合六萬四千餘石, 許令作錢。 而自戶、惠廳, 定限收捧, 量宜俵給之節, 依年前例, 另爲措辭, 卽速發關於該道何如?” 允之。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2월 20일(임신) 2번째기사 경우궁의 작헌례를 친행할 것임을 하교하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달은 바로 경우궁(景祐宮)의 기신(忌辰) 구갑(舊甲)이다. 옛날을 추억하니 흠모의 마음이 더욱 절절하다. 26일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행(親行)하겠다.” 하였다.	敎曰: “是年是月, 卽景祐宮忌辰舊甲也。 追惟往昔, 感慕罔切。 二十六日, 當親行酌獻禮矣。”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2월 22일(갑술) 1번째기사 여주의 조세를 10년 동안 돈으로 대납하게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을 소견(召見)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여주(驪州)는 두 능침(陵寢)을 봉안(奉安)한 곳으로서 양주(楊洲)와 광주(廣州)의 전례대로 대전(代錢)으로 세납(稅納)하게 하였는데, 그 법이 시행된 지 오래인데도 간혹 본색(本色)으로 납세하게 하였기 때문에 끝내 완결을 짓지	二十二日。 召見領議政洪淳穆。 淳穆曰: “驪州, 以兩陵寢尊奉之地, 依楊廣例, 代錢稅納, 施行旣久, 而間或本色出稅, 故終未成完局矣。 此邑以

하다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신의 집안이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고향이므로 백성들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가서 머물렀다가 돌아와 그것을 아뢰어서 연한을 두어 옛 제도를 복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작곡(作穀)하여 읍(邑)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흉년든 형편을 직접 보았는데 민정(民情)이 대단히 불쌍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다시 10년 기한으로 대전하게 하여 조정에서 주휼(賙恤)하는 은택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臣家楸鄉, 稔知其民瘼。 而七年前往留而歸, 奏之以限年復舊。 乃於昨年, 還作穀納邑。 今番之行, 目見歉歲, 民情極爲矜悶。 臣意則更作代錢, 十年展限, 俾宣朝家賙恤之澤何如?” 允之。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2월 26일(무인) 1번째기사 경우궁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二十六日。 詣景祐宮, 行酌獻禮。
고종 19권, 19년 (1882 임오 / 청 광서(光緖) 8년) 12월 26일(무인) 2번째기사 작헌례 때의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작헌례(酌獻禮) 때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정태호(鄭泰好), 대축(大祝) 민영소(閔泳韶)에게 가자(加資)하였다.	酌獻禮時贊禮以下, 施賞有差。 禮房承旨鄭泰好、大祝閑泳韶, 加資。
高宗 20卷, 20年 (1883 癸未 / 청 광서(光緖) 9年) 1月 1日(癸未) 2번째기사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내려 보내다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월 1일 (계미) 4번째기사 노인에게 의자와 식물을 반사하다	노인에게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반사(頒賜)하였다.	頒賜老人衣資食物。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월 2일 (갑신) 1번째기사 인왕산 밑에서 표범을 잡은 장졸들에게 시상하도록 하다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서, '삼청동(三淸洞) 북창(北倉) 근처에 호환(虎患)이 있다고 하여 포수를 보내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유시(酉時) 경에 인왕산(仁王山) 밑에서 작은 표범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가 이것을 봉진(奉進)합니다. 범을 잡은 장졸(將卒)들에게 각 해영(該營)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시상(施賞)하고 이어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初二日。 禁衛營、御營廳以"三淸洞北倉近處有虎患, 發遣砲手, 使之搜獵矣, 今日西時量仁旺山下, 小豹一頭捉得。 故謹此封進。 而捉虎將卒, 自各該營考例施賞, 仍爲行獵。" 啓。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사직의 기곡 대제에 쓸 향축을 친전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의 기곡 대제(祈穀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八日。 詣仁政殿, 親傳社稷祈穀大祭香祝。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	二十九日。 詣儲慶宮、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

(光緖) 9년) 1월 29일 (신해) 1번째기사 저경궁, 육상궁, 연우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청(淸) 나라 부대에 들러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을 접견하였다.	禮。 歷臨淸陣, 接見提督吳長慶。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1월 29일 (신해) 3번째기사 전라 감사 조강하가 장수와 영광 등지의 포흠된 환곡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전 감사(全羅前監司) 조강하(趙康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한 대로 본도(本道)에 이전부터 내려온 포흠(逋欠)을 청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받아 낼 곳이 없는 것을 찾아내고 돈과 쌀의 실제 수량과 처음 포흠한 연조(年條)를 구별하여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올려 보냅니다. 탕감하는 문제는 자의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군산창(群山倉)에서 무인년(1878) 이전과 기묘년(1879)의 허류(虛留) 곡식을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게 되면 바치지 못한 돈이 모두 3만 8,722냥인데 10년 사이에 배당하며, 성당창(聖堂倉)의 기묘년 허류 곡식이 7,427석인데 역시 군산창의 예에 따라 특별히 상정가로 대납하도록 허락하고, 무인년 이전 것을 아울러 상정가로 대납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연조에 따라 배당하고 독촉하여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열읍(列邑)의 곡부(穀簿)에서 포흠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남김없이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수(長水)의 포흠된 환곡(還穀) 가운데 임자년(1852)과 갑인년(1854) 몫은 무엇 때문에 임술년(1862)의 탕감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오년(1870)과 임신년(1872)의 몫을 한데 섞어 기록해 놓고 아무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광(靈光)에서 선혜청(宣	議政府啓: “卽見全羅前監司趙康夏狀啓, 則‘謹依筵奏行會本道, 流來逋負, 期圖淸刷, 而拈出其指徵無處者, 錢米實數、始逋年條區別, 修成冊上送。 蠲蕩一款, 不敢擅便。 群山倉戊寅以上及己卯虛留穀, 詳代錢, 合未納三萬八千七百二十二兩, 限十年排納。 聖堂倉己卯條虛留穀, 七千四百二十七石, 亦依群山例, 特許詳代, 竝與戊寅條以上, 詳定代錢, 而使之排年督納事, 請令廟堂稟處’矣。 査櫛列邑逋簿之際, 其必築底無遺。 而長水還逋中壬子、甲寅條, 胡爲不入於壬戌蠲蕩乎? 此固未可知也。 庚午、壬申條一槪混錄, 無所區別。 而至於靈光惠均兩廳辛巳詳代條與海南丁、戊兩年稅穀, 指徵無處者, 年條不久, 竝更加詳覈, 使之從速登聞。 漕倉事勢之窒礙, 在所當念。 群山各年詳定代錢條, 特許限十年排納; 聖堂己卯虛留穀, 亦依

	惠廳)과 균역청(均役廳)의 것을 신사년(1881)에 상정가로 대납하게 된 몫과 해남(海南)의 정축년(1877)과 무인년(1878) 두 해의 세곡은 받아 낼 곳이 없는데, 이것은 햇수도 오래지 않은 만큼 모두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하루 빨리 보고하게 하소서. 조운창(漕運倉)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응당 생각하여야 합니다. 군산창의 각 연조에 상정가로 대납할 몫은 특별히 10년 동안에 배당하여 납부하게 하고, 성당창의 기묘년 허류 곡식도 군산창의 상정가 대납 규례에 따라 집행하게 하며, 무인년 이전의 몫도 아울러 같은 원칙에서 배당하여 납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群山詳代例, 許施, 竝與戊寅以上條。一體排納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1월 29일 (신해) 4번째기사 100세 된 노인들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100세가 된 노인에게 가자(加資)하라고 하비(下批)하였다.【강주환(姜周煥), 도언배(都彦培), 윤창규(尹昌逵)이다.】	百歲老人加資, 下批。【姜周煥, 都彦培, 尹昌逵。】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2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사창의 환곡 가격을 보고하지 않은 감사들을 추궁하도록 하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가격을 보고하도록 호조(戶曹)에서 공문을 발송한 지 이미 몇 달 되었지만 아직 아무 보고도 없습니다. 지금 재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일의 체계로 보아 과연 어떠합니까? 삼남(三南)의 도신(道臣)들을 모두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一日, 壬子。 議政府啓:"以社還價錢修報事, 自戶曹發關, 已至幾朔, 尙今寥寥無聞。 顧今經用之艱絀, 如是淹滯者, 其於事體, 果何如乎? 三南道臣, 竝施重推之典何如?" 允之。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2월 8일 (기미) 1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에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빈객(時任賓客)과 원임 빈객(原任賓客), 각신(閣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내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에게 사찬(賜饌)하도록 명하였다. 세자(世子)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初八日。 命賜饌于時原任大臣、奉朝賀、時原任賓客、閣臣、春桂坊、內外衙門堂·郞、宗親、儀賓、宗正卿、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承、史、玉堂。 以王世子誕辰也。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3월 1일 (신사) 1번째기사 고부군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호남(湖南) 고부군(古阜郡)의 대동미(大同米) 401석(石)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돈으로 대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 고을의 조세 운반선이 침몰되었다는 도신(道臣)의 보고와 관련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初一日, 辛巳。 命湖南古阜郡大同米四百一石, 特許詳代。 以該郡稅船, 荐遭致敗。 政府因道報啓請也。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3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대보단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 본 다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 본 다음 재숙(齋宿)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고(故) 충렬공(忠烈公) 오달제(吳達濟)의 봉사손(奉祀孫)이 벼슬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어 향불 올리는 것이 적막하니 그날의 허전한 감회를 생각하면 응	初二日。 詣大報壇, 省牲省器後, 齋宿。 領議政洪淳穆曰:“故忠烈公吳達濟祀孫, 落職旣久。 香火寂寥, 是日曠感, 合有示意之擧。 以甄復首先檢擬之意, 分付銓曹何如?”允之。

음 재숙하다	당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견복(吳甄復)을 우선 검의(檢擬)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3월 10일 (경인) 1번째기사 경희궁의 염초를 굽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병조(兵曹)에서, ‘경희궁(慶熙宮)의 염초를 굽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初十日。 兵曹以“慶熙宮煮硝所, 失火”啓。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4월 5일 (을묘) 3번째기사 무위영에서 관할하던 전, 미, 목, 포 등을 친군영에 공급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전에 무위영(武衛營)에서 관할하던 전(錢), 미(米), 목(木), 포(布) 등을 양향청(糧餉廳)에 넘겨주고, 친군영(親軍營)에 공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前武衛營所管錢、米、木、布等, 付之糧餉廳, 以爲覘軍營接濟之需事, 分付。”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4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 진위, 교하, 연천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진위(振威), 교하(交河), 연천(漣川) 등 세 고을의 민력(民力)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위현에서 균역청(均役廳)과 선혜청(宣惠廳)에 바칠 4년 조(條)의 쌀과 콩, 교하군에서 균역청에 바칠 2년 조의 쌀과 콩, 연천현에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金弘集所報, 則備陳振威、交河、漣川等三邑, 民力難辨之狀, 仍‘請振威縣均惠廳納四年條米、太, 交河郡均廳納兩年條米、

도록 하다	서 호조(戶曹)와 선혜청에 바칠 3년 조의 쌀과 콩을 각각 해당 연도에 바친 값으로 특별히 편리한 대로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흉년에 백성들의 실정이 어려운데, 하물며 궁핍한 여름을 당하였으니 만일 여러 해를 두고 바치지 못한 것을 본색으로 봉입(捧入)하게 한다면 쇠잔한 힘으로 끌어다 보충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매우 많지는 않으니 보고한 대로 모두 대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太, 漣川縣戶惠廳納三年條米、太, 以各年所捧價, 特許從便代納'爲辭矣。歉歲民情, 況當窮夏, 若責捧多年未納之本色, 殘局事力, 尤難牽補。 且厥數不至甚夥, 請依所報, 竝許代納。" 允之。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5월 14일 (계사) 2번째기사 홍순목 등이 육상궁에 작헌례를 친행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 등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육상궁(毓祥宮)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진행하겠다는 명을 중지하여 주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서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다.	領議政洪淳穆、左議政金炳國、右議政金炳德聯箚, 請寢毓祥宮酌獻禮親行之命。 賜批勉從。 仍命遣大臣攝行。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5월 18일 (정유) 1번째기사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과 목멱산 등에서 지내다	1차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十八日。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5월 21일 (경자) 2번째기사 두 번째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지내다	2차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5월 24일 (계묘) 2번째기사 세 번째 기우제를 남단과 우사단에서 지내다	3차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5월 27일 (병오) 2번째기사 네 번째 기우제를 북교와 사직단에서 지내다	4차 기우제(祈雨祭)를 북교(北郊)와 사직단(社稷壇)에서 지냈다.	行四次祈雨祭于北郊、社稷。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6월 4일 (임자) 1번째기사 기우제 헌관들을 각별	전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여러 번 지냈으나 비가 아직 흡족하게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할 때 답답한 심정을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6차 기우제는 날	初四日。 敎曰:“主璧屢蔵。 靈雨尙未周洽, 言念民事, 渴悶何喩? 六次祈雨祭不卜日設行。 獻官正一品塡差, 諸執事亦各別擇差事, 分付。”

히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명하다	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 헌관(獻官)은 정1품으로 전차(塡差)하고, 여러 집사들도 각별히 선택하여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6월 7일 (을묘) 1번째기사 사직단에 지내는 특별 기우제에 대신을 보내어 성의껏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재해를 입고 있다. 흉년이 드는 것은 내가 덕이 없는 탓이니 부끄럽고 답답하기 그지없어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경건하고 성실하게 설행하라.” 하였다.	初七日。 敎曰: “暵乾大甚, 農稼受災。 極無之咎, 良由否德。 慙歎憂悶, 靡能自寧。 社稷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虔誠設行。”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6월 10일 (무오) 3번째기사 종묘의 특별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단비가 내리다가 아직 흡족하지 않은데 도로 개어버렸다. 갈망하던 끝이라 더욱 걱정스럽다.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경건하고 성실하게 설행하라.” 하였다.	敎曰: “甘雨旣始, 未洽旋霽。 渴望之餘, 憂悶轉甚。 宗廟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虔誠設行。”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7월 18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병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8월 9일 (병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8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進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8월 20일 (정묘) 3번째기사 구휼을 하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에 관하여 구건희가 상소하다	전 정언(前正言) 구건희(具健喜)가 상소하여 구휼을 하고 술을 금지하고 사창(社倉)을 수리하고 민보(民堡)를 축조할 것에 대하여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前正言具健喜疏陳行賑政、禁酒醪、修社倉、築民堡。 批曰: “所陳諸條, 令廟堂稟處。”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전교하기를,	

(光緖) 9년) 8월 23일 (경오) 1번째기사 관서에 있는 성향미 2만 섬을 영남에 주고 돈 1만 냥을 주어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다	“전번에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의 여러 고을에 흉년이 혹심하게 들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니 진자미(賑資米)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생각하면 나의 백성들은 설사 좋은 세월을 만나 곡식을 실어 들이는 기쁨이 있을 때에도 탐관오리의 박해와 부역(賦役)의 징수로 마침내 쌀독이 바닥나니 고생하고도 아무런 저축이 없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이 전에 없는 큰 재난을 당한 데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안착할 집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구덩이에 쓰러지고 있다. 지금 인자한 하늘이 이렇게 경고하니, 누구의 허물이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보니 잠자고 밥 먹어도 달지가 않다. 관서(關西)에 있는 성향미(城餉米) 2만 석(石)을 이획(移劃)하여 편리할 대로 운반하게 하고 내탕전(內帑錢) 1만 냥을 특별히 내려 보내어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도록, 모두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관문으로 양도(兩道)의 도신(道臣)에게 보내어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敎曰: “向見嶺伯狀啓, 則道內諸邑, 歉荒偏酷, 無望有秋, 至請賑資矣。 念我赤子, 雖逢樂歲, 有稌黍籌車之喜, 貪汙之剝割、賦役之徵索, 竟使甁罌甑石, 勞苦無儲。 況値此六無, 莫能奠安厥居, 呼號顚連溝壑。 當前仁天, 若是示警, 誰任其咎、誰任其責? 一念及此, 寢食靡甘。 關西城餉米二萬石, 移劃, 使之從便裝運。 內帑錢一萬兩, 特爲頒下, 以爲賑資事, 竝自廟堂措辭, 關飭于兩道道臣。”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 (光緖) 9년) 9월 8일 (정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성향곡 1만 석을 우선 영남에 이송하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김영수(金永壽)의 장계(狀啓)를 보니, ‘성향곡(城餉穀)을 옮겨가는 문제는 영남(嶺南) 도신(道臣)과 의논하여 거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남아 있는 성향곡은 5만 석(石)이지만 각읍(各邑)의 산성(山城)에 흩어져 있으므로, 먼 포구에 실어 나르자면 그 형세가 곤란합니다. 강 연안의 가까운 고을들에서 사서 운반할 생각이지만,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갑자기 일찍 내린 서리의 피해를 당하여 추수를 끝내지 못하였으니, 많	初八日。 議政府啓: “卽見平安監司金永壽狀啓, 則‘城餉穀移運之節, 與嶺南道臣, 商議擧行。 而城餉穀之留庫五萬石, 散在各邑山城, 遠浦馱運, 其勢末由。 就沿江近邑, 換貿裝運計料, 而年形失稔, 暴加早霜, 秋穫未畢, 多數貿取, 則穀價刁騰, 民情遑汲。 恐不及於該道設賑之時, 量宜蠲減, 及時便運之節, 請令廟堂稟處’矣。 餉穀二

	은 수량을 사들이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백성들이 황급해 할 것이고, 해도(該道)에서도 구휼할 때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적당히 견감(蠲減)하여 제때에 편하게 수송하는 절차를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향곡 2만 포(包)를 특별히 획급한 것은 실로 경상도(慶尙道)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전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도신의 장계에서 줄여달라고 청한 것도 농사 형편과 백성들의 정황이 부득이한 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께 구제하는 의리로 볼 때 억지로 독촉하여 수량대로 싣게 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1만 석을 이송하되 지연되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萬包之特劃, 寔出於憫恤嶺民之聖念, 而今此道啓請減, 亦由年形、民情之萬不獲已而然也。 其在共濟之義, 有難强督而準載, 姑先限一萬石移運, 毋至有遲延之歎事, 行會何如?" 允之。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9월 13일 (임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9월 22일 (신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0권, 20년		

(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9월 28일(정사) 1번째기사 육상궁, 연우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이어 연우궁(延祐宮)과 선희궁(宣嬉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八日。 詣毓祥宮, 展拜。 仍詣延祐宮、宣禧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10월 21일(무진) 2번째기사 작헌례를 행할 때의 찬례 이하에게 시상하다	북묘(北廟)에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 윤자승(尹滋承), 예방 승지(禮房承旨) 신헌구(申獻求), 예모관(禮貌官) 민응식(閔應植), 집례(執禮) 오인영(吳麟泳), 대축(大祝) 송세헌(宋世憲), 상례(相禮) 남정철(南廷哲)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北廟奠酌禮時, 贊禮以下, 施賞有差。 贊禮尹滋承、禮房承旨申獻求、禮貌官閔應植、執禮吳麟泳、大祝宋世憲、相禮南廷哲, 竝加資。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월 1일(정축) 3번째기사 노인에게 세찬을 내리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賜老人歲饌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월 1일(정축) 4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내리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네 유수도(留守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2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나주 등의 환곡의 폐단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암행 어사(暗行御史)의 단자(單子)와 관련하여, 나주(羅州) 등 10개 고을의 묵힌 토지［陳結］에서 억울하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감사(監司) 김성근(金聲根)의 보고를 보니, ‘병자년(1876)과 정축년(1877)의 큰 흉년을 겪은 뒤에 백성들이 흩어져가고 토지가 황폐화되어 열 고을의 진결(陳結)에서 백징(白徵)하는 실상이니 실로 남도(南道)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面)과 이(里)에 배정하여 강제로 조세를 독촉하면 앞으로 백성들도 조세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 것이니, 5년 기한으로 조세 감면을 허락하고 몇 년에 걸쳐 배분하여 거두어서 총수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그 가운데 조사하여 집계한 총수가 1,500여 결이니, 실제 나머지 진결은 5,000여 결이 넘습니다. 이것은 응당 참작하여 돌봐주어야 할 것이니 위에서 말한 나주(羅州) 등 열 고을의 진결 5,960여 결 안에서 3,000결은 특별히 3년을 기한으로 조세 감면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 권세 있는 토호(土豪)들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특별히 살펴 금지하며, 가난하여 원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실제형편에 따라 감면시켜 주겠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 기전(起田)을 조사하는 규정이 형식적이 되어버려 막중한 전세(田稅)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실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각 고을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반드시 원총(元總)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初二日, 議政府啓: “頃因繡單, 羅州等十邑陳結之冤徵者, 從實修啓之意, 覆啓行會矣。 卽見該監司金聲根所報, 則‘丙、丁大無之後, 民散土荒, 十邑陳結, 白徵之狀, 實是南民切骨之瘼。 若勒排面里, 强督稅賦, 則勢將民與稅俱失而已。 限五年許令蠲稅, 排年復總’爲辭矣。 第伏念其中査執之總, 爲一千五百餘結, 實餘陳結, 至過半萬之數矣。 此合有參酌軫恤, 上項羅州等十邑陳結五千九百六十餘結內, 三千結, 特許限三年減稅。 凡權豪之欺冒者, 別般察禁, 貧殘之冤矜者, 從實蠲除。 而且近來査起之規, 便歸文具, 莫重壤賦, 課歲告蹙, 揆諸事體, 良庸慨歎。 請嚴飭列邑, 期復原總。”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2월 8일 (갑인) 1번째기사 왕세자의 열 번째 탄신일을 대신들과 함께 축하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왕세자(王世子)의 탄신에 승후(承候)하였기 때문이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동궁 저하(東宮邸下)의 춘추가 이미 10세를 넘었고 오늘 또 다시 생신을 맞이하니 전하(殿下)의 마음이 기쁘실 것으로 생각되오니 여러 사람들이 더욱 경축하는 바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매번 이 날을 맞을 때마다 기쁨이 비길 데가 없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기쁘다.” 하였다.	初八日。 召見時原任大臣。 以王世子誕辰承候也。 左議政金炳國曰:“東宮邸下, 睿齡已踰十歲。 今日又値生辰, 聖心伏想嘉悅, 群情益切慶祝矣。” 敎曰:“每當此日, 嘉悅無比。而今年則尤倍於前矣。”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2월 8일 (갑인) 2번째기사 시임대신과 원임 대신 등의 관리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閣臣), 빈객(賓客),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내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官)과 낭청(郎廳), 종정경(宗正卿), 6조(六曹)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 2품 이상,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과 시강원(侍講院)의 관리들에게 음식을 내렸다.	命時原任大臣、閣臣、賓客、奉朝賀、宗親、儀賓、內外衙門堂郎、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柱坊, 竝賜饌。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3월 6일 (신사) 5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의 보고를 보니, 충주 목사(忠州牧使) 민응식(閔應植)이 아뢰기를, ‘본 고을에 획정된 강화(江華)의 포량미(砲糧	議政府啓:“卽見忠淸監司朴齊寬所報, 則‘忠州牧使閔應植以爲「本邑所劃沁都砲糧米六千石, 勢將以道內各邑劃來, 而轉輸爲難, 易致支放之失時。 以本

의정부에서 강화영의 군량미에 관하여 아뢰다	米) 6,000섬을 형편상 장차 도내 각 고을에서 획급하여 가져와야 하는데, 실어오기가 곤란하니 제때에 지출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본 고을에서 거둔 대동미(大同米), 전세미(田稅米), 결작미(結作米) 가운데 6,000섬을 포량으로 제때에 수용(需用)하고, 원래 포량으로 바칠 것을 바꾸어 바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운수하기 곤란한 것이 과연 도신(道臣)이 보고한 것과 같으니 고을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편리한 대로 포량으로 나누어 쓰고, 포량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그 수량만큼 계산하여 바꾸어 바치는 것이 참으로 편리한 방법이니 이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州所納大同米、田稅米、結作米中六千石, 及時需用, 以砲糧移納」'爲辭矣。 運輸之難, 果如道報, 以邑捧而從便排用, 以砲糧而計數換納, 誠爲方便。 請依此施行。"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3월 24일(기해)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대제를 지내고 서계를 받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二十四日。 詣仁政殿, 行太廟夏享大祭受誓戒。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3일(정미) 1번째기사 종묘의 하향 대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初三日。 行太廟夏享大祭。
고종 21권, 21년		初五日。 詣儲慶宮、毓祥宮、延祐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5일(기유) 1번째기사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宮、宣禧宮, 展拜。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4월 28일(임신) 2번째기사 강릉 등의 군포와 충주의 대동미 등을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사(京司)에 납부하는 군포(軍布)는 원래 넉넉하지 못한데, 지난해에 강릉(江陵) 등 9개 고을에서 납부하는 군포가 대전(代錢) 중에 들어갔습니다. 각 아문(衙門)에서 응당 쓰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 거의 다 떨어져서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친군영(親軍營), 병조(兵曹)의 각 군문(軍門)에 상납하는 군포는 한결같이 신미년(1871)에 정한 규정대로 4분의 1은 돈으로 대신 바치고 그 외는 모두 본색(本色)으로 바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의 보고를 보니, ‘충주(忠州)는 폐해가 많고 흉년이 계속 든 데다가 관원도 자주 교체되어 공납(公納)이 지체되었고 또 부족하기까지 하여 본곡(本穀)을 준봉(準捧)할 방법이 과연 없습니다. 신사년(1881) 조와 임오년(1882) 조의 대동미(大同米), 수미(收米), 위미(位米) 등 도합 1,480석 남짓과 콩 134석 남짓을 특별히 상정(詳定)하여 돈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사체가 본래 중대한 만큼 진실로 감히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나, 다만 고을의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본색으로 마련하여 바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청한 대로 특별히 상정하여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고 빨리 청산하라고 분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京司所納布, 自來不贍, 而年前江陵等九邑納布, 入於代錢中矣。 各衙門之不得不應用者, 擧皆枵絀, 戶惠廳、親軍營、兵曹各軍門上納布, 一依辛未定式, 四分一代錢外, 竝以本色責捧之意, 分付何如?” 又啓: “卽見忠淸監司朴齊寬所報, 則‘忠州, 弊局荐歉, 官亦數遞, 公納稽援, 且致欠縮, 本穀準捧, 果無其道。 辛巳、壬午條大同未收米、位米, 合一千四百八十石零, 太一百三十四石零, 特許詳定代納’爲辭矣。 正供事體, 本有攸重, 固不敢遽議。 而第念邑勢、民情之難以本色責辦, 依所請特許詳代, 趁速淸帳之意, 分付何如?” 竝允之。 又啓: “捕廳在囚罪人呂春實、朴順乭, 軍擾時, 樂禍幸亂, 逢人輒殺。 究厥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는 죄인 여춘실(呂春實)과 박순돌(朴順乭)은 군사들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화란(禍亂)을 즐기여 다행으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였으니, 그 정상을 따져보면 만 번 죽여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情踪。 萬戮難贖, 竝出付軍門, 梟警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경모궁에 나아가 하향 대제를 지내다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十三日。 行景慕宮夏享大祭。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사복시에서 남양, 장봉, 인천 등 세 목장의 농경지를 해당 아문에 획부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경기(京畿) 연해의 해방영(海防營) 둔전(屯田) 에 대한 일은 의정부(議政府)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남양(南陽), 장봉(長峯), 인천(仁川) 세 곳에 있는 목장 개간지를 해당 아문(衙門)에 획부(劃付)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司僕寺以“畿沿海防屯田事, 因政府回啓, 南陽、長峯、仁川三處牧場起墾之地, 劃付該衙門之意”啓。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윤5월 8	-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初八日。 承政院啓: “太祖高皇帝忌辰日, 若値閏五月, 則親行望拜禮, 以閏五月取稟事, 曾有定式矣。 今初十日,

일(신해) 1번째기사 북원에서 망배례를 진행하도록 하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忌辰)이 만약 윤 5월에 있게 되면 친히 행하는 망배례(望拜禮)를 윤 5월에 취품(取稟)한다는 것으로 일찍이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10일 친히 행하는 망배례를 어떻게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원(北苑)에서 망배례를 친히 행하겠다.” 하였다.	親行望拜禮, 何以爲之? 敢稟。” 敎曰:“北苑望拜禮, 當親行矣。”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윤5월 10일(계축) 1번째기사 북원에서 망배례를 행하고 이어 춘당대에서 참반 유생 무인에게 응제를 행하다	-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 무인(武人)에게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北苑, 行望拜禮。 仍御春塘臺, 行參班儒武應製。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6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進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陪參。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7월 18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일(경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7월 21일(계해) 1번째기사 북원에서 망배례를 행하고 춘당대에서 참반 유생의 응제를 설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二十一日。 詣北苑, 行望拜禮。 王世子陪參。 仍御春塘臺, 行參班儒生應製。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7월 28일(경오) 3번째기사 황해도 일대의 중국 어선들을 증명에 의거하여 조사하도록 하다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해금(海禁)이 해제되면서 황해도(黃海道) 일대에 중국 어선들이 무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청에서 면밀히 검사하지 않는다면 무허가 선박까지 마구 드나들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포구의 무지한 백성들이 혹시 사단을 빚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백령 첨사(白翎僉使) 현승운(玄昇運)을 검찰관(檢察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우리나라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에 대하여 증명서에 따라 검사하는 한편 포구의 백성들을 단속하여 장정(章程)을 위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統理軍國衙門啓: “近年海禁已開, 黃海一帶之間, 中國漁船, 往來無常。 若無自官稽查, 則不但眞僞之混淆, 且無知浦民, 或有滋事之慮。 白翎僉使玄昇運, 檢察官差下, 中國漁船之來泊者, 按票稽查, 檢飭浦民, 無違章程, 以爲先事防範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陪參。

(光緖) 10년) 8월 9일 (경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8월 15일(병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進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陪參。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8월 18일(기축) 3번째기사 구휼사업을 도와준 금산 군수 등을 표창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진휼을 마치고 올린 장계(狀啓)와 별단(別單)을 보니, 진휼을 도와 준 고을인 선산 부사(善山府使) 조준구(趙駿九)에 대하여 응당 승서(陞敍)하여 조용(調用)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 금산 군수(金山郡守) 윤전(尹淃), 청하 현감(淸河縣監) 민치헌(閔致憲), 안기 찰방(安奇察訪) 안윤명(安潤明)에게는 아마(兒馬)를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 각읍(各邑)에서 사진(私賑)한 사람 가운데 선산(善山)의 전 사용(前司勇) 박도환(朴道煥)은 상당직(相當職)에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吏曹啓: “觀此慶尙監司趙康夏量畢賑狀啓及別單, 則‘補賑邑善山府使趙駿九, 似當施以陞敍調用之典, 金山郡守尹淃、淸河縣監閔致憲、安奇察訪安潤明, 當施以兒馬賜給之典。’各邑私賑人中, 善山前司勇朴道煥, 相當職調用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 (光緖) 10년) 8월 21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아문의 쌀 변리가 원래 넉넉하지 못한데다가	議政府啓: “戶惠衙門米邊, 自來不敷, 而挽近歲入, 尤爲減縮, 各項應下, 因此積滯, 竟至莫可收拾之境。 第念畿

일(임진) 3번째기사 여주와 풍덕 등의 고을 세곡을 호조와 선혜청의 경비로 보충하게 하다	근래에는 한 해의 수입이 더욱 줄어든 관계로 각 항목의 지출이 이로 인해서 적체되어 마침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전(畿甸) 몇 고을에서 기한을 한정해서 돈으로 대봉(代捧)하게 한 것이 부득이한 정사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당장 경비가 이처럼 궁색하다면 어찌 변통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여주(驪州), 풍덕(豐德), 죽산(竹山), 포천(抱川), 삭녕(朔寧), 양지(陽智) 등 고을에서 바치는 세곡(稅穀)에 대하여 기한을 한정하지 말고 모두 다 갑신년(1884)부터 전례대로 본색(本色)으로 받아들여 조금이나마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甸幾邑之限年代捧, 雖出於萬不得已之政, 而目下經費, 若是窘絀, 豈可無通變之道乎? 驪州、豐德、竹山、抱川、朔寧、陽智等邑所納稅穀, 不待限年, 竝自甲申, 依前以本色收納, 以爲一分牽補之地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8월 24일(을미) 2번째기사 개성 유수영에서 해서에 있는 병인년 별비곡의 모조를 획급하도록 하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헌직(李憲稙)의 보고를 보니, ‘본 영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서(關西)의 좁쌀 2만 섬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섬을 규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은 곧 매년의 규례가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李憲稙所報, 則‘本營句管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依此數劃送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9월 13일(갑인) 1번째기사	진전(進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陪參。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9월 16일(정사) 1번째기사 금, 은 등의 광산 채취를 장내사에서 주관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다섯 가지 금속인 금(金), 은(銀), 동(銅), 철(鐵), 연(鉛)은 바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광물로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히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광산을 개발하여 채취하는 일을 장내사(掌內司)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단속하여 영원히 금지시키되, 국(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등의 문제는 군국아문(軍國衙門)에서 절목을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十六日。 敎曰:“五金乃山澤之利, 而有補於贍民裕國者也。 開鑛採取, 自掌內司專管句檢, 冒奸之弊, 永行禁斷。 而設局置官等節, 令軍國衙門節目磨鍊以入。”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9월 18일(기미) 2번째기사 도성의 쌀 사정이 어려우므로 각 도에 쌀을 사 보내도록 신칙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 때에 도성의 쌀 사정이 매우 어려워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여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 몇 만 백성들이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제로(諸路)에서 힘써 운반해 오는 것인데, 근래에 열읍(列邑)에서 문득 모두 숨겨 두고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장사꾼들의 판로가 끊어졌으니,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삼현령(三懸鈴)으로 경기(京畿)와 해서(海西), 삼남(三南)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빨리 편리한 대로 사게 하되, 만약에 형식적인 문구(文具)로만 여기면서 여전히 막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령(守令)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들일 것이며, 단속하지 못한 도신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바	議政府啓:“見今冬節將屆, 都下米穀極艱, 有錢莫售, 景色遑汲。 幾萬生靈之所藉以爲命者, 專靠諸路之懋遷, 而近來列邑, 輒皆閉藏, 罔念共濟之意, 京外商賈, 販賣路絶, 揆諸事理, 寧容若是? 爲先三懸鈴關飭於京畿、海西、三南, 亟令從便許貿, 而萬一有認若文具, 如前防遏之弊, 則該守令先罷後拿, 不飭之道臣, 難免別般規警, 一體分付何如?” 允之。 仍敎曰:“請

	르게 경계하도록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쌀을 사서 곡식을 옮기는 것을 청하는 것은 옛날의 정사인데 어떻게 막도록 놔둘 수 있겠는가? 특별히 말을 만들어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실효가 나타나도록 하라.” 하였다.	糴移粟, 古之政也。 何可任其防遏乎? 別般措辭關飭, 俾有實效可也。”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9월 20일(신유) 1번째기사 도성에 곡식 유입을 막는 일과 당오전의 변통을 엄금하도록 하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전에 내린 묘당(廟堂)의 계품(啓稟)에 대한 비답을 이미 보았을 것이다. 요즘 도성의 곡식 값이 뛰어올라서 백성들의 사정이 날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외도(外道)에서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아서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딱하고 답답하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어제의 비지(批旨)는 이미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법제(法制)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한 도(道)를 관할하고 수령(守令)은 한 지역을 관할하므로 수령은 한 고을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혹 한 지역의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한 도를 골고루 살펴보므로 오히려 막는 것을 풀어놓자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관문으로 신칙한 뒤이니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몇 만의 백성들이 두터운 실제 혜택을 골고루 입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은 바로 공적인 곡식과 사적인 곡식이 모두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경기(京畿), 호서(湖西), 해서(海西)는 다 풍년이 들었으나 양남(兩南)은 몇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	二十日。 藥院入診。 敎曰: “日前廟啓之批, 似已見之。 而挽近都下穀價翔貴, 民情日益遑汲, 此或因外道防穀而不得流通之故也。 念之及此, 甚庸悶沓矣。” 右議政沈舜澤曰: “日昨批敎, 已爲行會。 而所謂防穀, 法制之所未有也。 監司管轄一省, 守令管轄一境, 故守令爲一邑之民, 或防一境之穀。 然監司則均視一省, 尙欲疏防。 況今關飭之後, 必當悉心對揚, 將使京外幾萬生靈, 均被實惠厚澤。 而京師卽公私穀都會之地。 且今年形所聞, 京畿、湖西、海西, 皆登稔, 而兩南之幾郡邑, 不無失稔。 統計諸路, 未謂歉歲, 而幾日以前, 都下市廛, 至於米

	로(諸路)를 통틀어 따져보면 흉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는 도성의 시전(市廛)에서 곡식을 매매하기 어렵게 되어 모든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황급하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이내로 쌀장사꾼들이 점차 모여들고 쌀 시장도 열어서 비록 전처럼 많이 쌓아 놓고 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안심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당오전(當五錢)은 절대로 변통시킬 수 없으나 사적으로 주조하는 것은 기필코 금지시키고야 말겠다. 백성들이 무지하여 점점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필경 간사한 무리들이 통용할 것에 대한 명령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사적으로 주조할 계책을 실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들은 비단 명백히 타일러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혹 이 기회를 타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통탄할 일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간사한 무리들이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監司)들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가령 허다한 수령 가운데 간혹 이런 비방을 듣는 자가 있다면 물론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지만 어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무지한 백성들이 조정의 명령을 믿지 않는 것은 주로 풍속이 예전만 못하여 세상 만사가 믿음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어떻게 주조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통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변통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타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이 하나의 신(信) 자를 하늘의 운행이나 네 계절처럼 믿게 된다면 어찌 금지시켜	穀之難以賣買, 凡民情景, 極其遑汲。 數日以來, 米商稍集, 米市亦開, 雖未有如前日之山積, 較諸已往, 可謂安堵, 萬萬多幸矣。" 敎曰: "當五是萬無變通之理, 而私鑄則必禁乃已。 小民無知, 轉生騷訛, 必因奸細輩希覬通用之令, 欲售私鑄之計也。 道臣、守宰, 非但不能明諭而息訛, 兼或有因此而要利者, 聞甚痛惋矣。" 舜澤曰: "小民騷訛, 奸細希覬, 果如聖敎, 而至於按道之臣, 寧有是也? 假使許多守宰中, 或有得此謗者, 固行冀州按事, 而豈有不能自治而治人之理乎? 大抵無知小民之不信朝令者, 職由於習俗之不如古, 而天下萬事無信不立, 何況禁鑄與通行乎? 今此萬無變通之理。 雖不可家喩而戶說, 惟此一信字如天行四時, 則何患乎當禁而不禁, 何患乎當通而不通? 然自然之信, 其效遠而久; 使然之信, 其效近而暫。 顧今上下之間, 務使京外大小民, 有信而無疑, 則穀價自然而平, 錢幣自然而通矣。"

	야 할 것을 금지시키지 못할까 근심하고, 어찌 통용시켜야 할 것을 통용시키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연히 믿게 되는 것은 그 효과가 멀리 가고 오래 가지만 시켜서 믿게 되는 것은 그 효과가 가깝고 잠시입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위아래에서 힘써서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곡식 값은 자연히 안정되고 화폐는 자연히 통용될 것입니다.” 하였다.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9월 21일(임술) 2번째기사 대부, 영종 두 목장을 없애고 말들을 각 군문에 나누어 소속시키다	기연해방아문(畿沿海防衙門)에서 아뢰기를, “대부(大阜)의 여러 섬은 일찍이 목장 관리에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없애서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섬의 토지와 백성들은 모두 다 호적을 나누어 영종(永宗)과 법성(法聖)을 단독 진영으로 만든 것처럼 하고 부세를 거둔 것은 군사 비용에 넘겨 변경 방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大阜), 영종(永宗) 두 목장에 지금 남아 있는 말은 태반이 병이 들어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미 관할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衙門)에서 나누어 가지도록 허락하여 타거나 짐을 싣게 하여 쓸 수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알맞은 일일 것 같습니다.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얼마 뒤에 의정부(議政府)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畿沿海防衙門啓: “大阜諸島, 曾屬牧官, 今已革罷, 方置鎭設防, 則該島土地民人, 竝分籍, 如永宗、法聖之爲獨鎭, 所收賦稅, 付之軍需, 邊備可以增固。 且大阜、永宗兩牧場, 現存馬匹, 太半玄黃, 日就耗失, 旣無所管。 與其等棄寧許京外各軍門分取騎卜, 以無用資實用, 恐合事宜。 令廟堂稟處何如?” 允之。 尋, 因政府覆啓, 依施。
고종 21권, 21년		初八日。 許施關西各邑火田稅, 四分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0월 8일(기묘) 1번째기사 관서 각 읍의 화전세를 감면시켜 주다	관서(關西) 각읍(各邑) 화전세(火田稅)의 4분의 1을 임시로 감면해 주고 진전(陳田)을 환기(還起)하거나 더 일군 것을 총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의 징수를 중지하도록 허락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로 인하여 복계(覆啓) 하였기 때문이다.	一權減, 陳田還加起執總, 停免。 以政府因該道臣狀請而覆啓也。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0월 8일(기묘) 2번째기사 남관의 곡식으로 함경도의 흉년을 구휼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정기회(鄭基會)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에서 조적(糶糴)을 이미 영원히 정지하였고, 신설한 사환(社還)은 명색으로만 분류(分留)했지 실제로 쌓아 놓은 것이 없는데 또 흉년을 만나 거두어들일 수 없으므로 진자(賑資)를 마련해 낼 계책(計策)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부황이 났으니, 그 정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도(本道)에 이미 창고를 열고 내어줄 곡식이 없는데다가 이웃 도(道)에도 옮겨 올 곡식의 재원이 없으니, 조정에서 아파하는 뜻으로 볼 때 어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관(南關) 각읍(各邑)의 저류전(儲留錢) 가운데서 적당하게 획급(劃給)해 주어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죽은 우려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咸鏡監司鄭基會狀啓以‘道內糶糴, 旣爲永停, 新設社還, 則名雖分留, 實無積儲, 又値歉荒, 莫可收捧, 賑資辦出, 全沒計策’事也。 歲乃告歉, 民情頗頷, 言念景色, 誠極矜憐。 本道旣無發倉之需, 隣省亦乏移粟之資, 其在朝家若恫之義, 豈忍坐視不救乎? 就南關各邑儲留錢中, 量宜措劃, 俾免有窮莩捐瘠之患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0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용인 현령(龍仁縣令) 박응종(朴應鍾)을 우선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고,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十二日。 議政府啓: “龍仁縣令朴應鍾, 姑令戴罪擧行, 惠廳所納,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正賦所重, 顧何如, 而擅自代捧, 延拖歲年, 妄率可駭。

용인의 대동미도 대봉한 이상 수납하라고 해청과 해도에 분부하도록 하다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바치는 부세(賦稅)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데 제멋대로 대봉(代捧)하고 기한을 1년이나 지연시켰으니 망녕되고 경솔함이 놀랄 만합니다. 도신(道臣)이 감죄(勘罪)해 주기를 청한 것은 사체(事體)상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의 이 특지(特旨)는 실로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진념한 데서 그런 것입니다. 임오년(1882) 분의 대동미(大同米)로 말하자면 이미 흉년으로 인하여 대봉한 이상 이대로 수납(收納)하라고 해청(該廳)과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道臣請勘, 事體之不容已者, 而今玆特旨, 寔由軫念, 數遞而然也。 至若壬午條大同, 旣因歉而代捧, 則依此收納之意, 分付該廳該道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1월 13일(계축) 1번째기사 삼남과 해서의 목화 농사의 흉년으로 시가로 거두어 들이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남(三南)과 해서(海西) 지방은 올해 목화 농사가 모두 흉년이 들어 각항(各項)의 목(木)을 본색(本色)으로 독촉해서 바치게 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연이은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비록 이미 수량을 나누어서 대납(代納)할 것을 허락하였지만, 당장에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사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및 병조(兵曹)의 각 영(各營)에 바쳐야 할 갑신년(1884) 몫 가운데서 꼭 써야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時價)로 거두어들이도록 각 해당 아문(衙門) 및 제도(諸道)의 도신들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중국 흠차 대신(欽差大臣)의 행차는 사체(事體)가 각별하니 영접관(迎接官) 박정양(朴定陽)을 지금 우선 감하(減下)하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종묵(閔種默)을 영접사(迎接使)에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十三日。 議政府啓:“三南、海西, 今年綿農, 擧被歉荒, 各項木邊, 實難以本色責納。 故連因道啓, 雖已分數許代, 而目下恤民之政, 莫急於此。戶、惠、廳兵曹各營所納甲申條, 不得不應用外, 竝以時價收捧事, 分付各該衙門及諸道道臣何如?” 又啓:“今此中國欽差大臣之行, 事體尤別。 迎接官朴定陽今姑減下, 以漢城府判尹閔種默, 迎接使差下何如?” 又啓: “卽聞‘俄國船, 以我國有事, 來泊濟物浦’云。 不可無勞問之擧, 令仁川監理事務洪淳學, 卽速專往, 以爲致意何如?” 竝允之。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들으니, 러시아 배가 우리나라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제물포(濟物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문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인천 감리 사무(仁川監理事務) 홍순학(洪淳學)으로 하여금 속히 가서 성의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1월 18일(무오) 1번째기사 소나무 벌채를 엄금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소나무의 채벌을 금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더구나 도성(都城)의 사산(四山)에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은 중요함이 더욱 각별하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미련하고 완악한 무리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마구 채벌하니, 듣기만 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약에 각영(各營)의 자내(字內)에서 철저히 규찰하여 적간하였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해이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잘 신칙하지 못한 해당 장신(將臣)들은 모두 현고(現告)를 바치게 하고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각별히 살피고 금하여 적발하는 대로 조율(照律)하여 엄히 다스리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八日。 議政府啓:“松禁, 國之大政也。 況都城四山之培植長養, 所重尤別者乎? 挽近愚頑之類, 不畏法令, 狼藉犯斫, 聽聞攸及, 萬萬驚駭。 苟自各其營宇內, 築底糾摘, 則寧有若是蕩弛之理乎? 失飭之該將臣, 竝捧現告, 施以重推之典, 嗣後則各別察禁隨其現發, 照律嚴繩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1월 23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응식(閔應植)의 장계(狀啓)를 보니, ‘병대(兵隊)	議政府啓:“卽見平安監司閔應植狀啓, 則‘兵隊一千二百名爲先抄擇, 而營下親衛士與陪持軍官, 各部不緊將官, 一

일(계해) 2번째기사 긴요치 않은 장관들에게 주던 요미를 군사를 양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다	1,200명을 우선 가려 뽑으려고 하는데, 영(營) 휘하의 친위사(親衛士)와 배지군관(陪持軍官), 각부(各部)의 긴요치 않은 장관(將官)들을 모두 해임시켜 그들에게 주던 요미(料米) 3,640석(石) 남짓과 전(錢) 2만 9,079냥(兩)을 군수(軍需)에 획부(劃付)하고, 배지(陪持)의 일은 전례대로 군뢰(軍牢)로 거행할 것입니다. 각읍(各邑)의 포군(砲軍)은 가능한 만큼 혁파하고 그들에게 주던 요미를 취해서 비용을 보충하고, 열읍(列邑)에서 납부한 월과전(月課錢) 6,966냥 남짓도 획하(劃下)하여 군기(軍器)를 만들고 수선하는 자금으로 쓰게 할 것입니다. 강계(江界)·자성(慈城)·후창(厚昌) 등 3개 고을에서 받은 기사년(1869)의 가결전(加結錢) 1만 9,653냥 남짓은 본래 항구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또 동진진(東津鎭)이 혁파되어 그곳에 지방(支放)하던 미(米) 493석 남짓과 전 3,917냥 남짓을 모두 상항(上項)의 강계 등 고을의 가결전과 함께 군사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옮길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여러 조항을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므로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 만큼 다시 더 헤아려서 이후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竝罷遣, 以其料米三千六百四十石零, 錢二萬九千七十九兩零, 劃付軍需。 而陪持之役, 依前以軍牢擧行。 各邑砲軍, 隨其可革, 取料補用, 列邑所納月課錢六千九百六十六兩零, 亦爲劃下, 俾作軍器造繕之資。 江界、慈城、厚昌等三邑所受, 己巳加結錢一萬九千六百五十三兩零, 本非恒定之物, 且東津鎭革罷, 其支放米四百九十三石零, 錢三千九百十七兩零, 竝與上項江界等邑加結錢, 移作養兵之需事, 請令廟堂稟處'矣。 諸條通變, 事係愼重, 有難猝乍詳到, 更加商酌, 從後稟處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2월 8일(무인) 6번째기사 공주 등 4개 고을의 세곡을 각 년의 시가대로 수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이 보고한 것을 보니, '공주(公州)·은진(恩津)·연기(燕岐)·태안(泰安) 등 4개 고을에서 5년 조(條)의 바치지 못한 세곡(稅穀)은 점차적으로 폐단이 쌓여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폐단이 극도에 이른 만큼 응당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 바치지 못한 쌀과 콩을 특별히 각년(各年)의 시가대로 수납하도록 허락하여 소생하는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朴齊寬所報, 則'公州、恩津、燕岐、泰安等四邑, 五年條未納稅穀, 積弊漸次, 未得拔本。 弊到極處, 合有變通。 未納米太, 特許以各年時價收納, 得蒙蘇完之澤'爲辭矣。 供賦攸重, 固難低昂, 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부(供賦)는 중요한 일인 만큼 진실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 도에서 보고한 것을 참작하고 저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은택을 크게 베풀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위에서 말한 쌀과 콩을 요청한 대로 당시의 시가대로 받도록 허락하시고, 계미년(1883) 조의 경우는 본색(本色)으로 수납(輸納)하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參諸道報, 念彼民情, 苟非曠施, 莫可整敍。 上項米太, 依所請, 許以時價收捧。 至若癸未條, 則以本色輸納之意, 請行會。"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2월 24일(갑오) 3번째기사 강화 군영에 자원하여 물품을 바친 백성들을 표창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호(趙秉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의 병정(兵丁)으로서 경진(京陣)에 나와 영하(營下)의 장사(將士)들과 함께 각처(各處)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부(本府)의 백성들이 돈과 재물을 바쳐 비용을 보태 주기도 하고 소, 물고기, 미역을 바쳐 군사들을 먹이기도 하니, 이런 때에 와서 의로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물품을 바치는 것은 매우 가상합니다. 각인(各人)에게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병사의 노고를 염려해서 이처럼 돈과 재물을 자원하여 도와주고 있으니 그 의기가 참으로 가상합니다. 각인에게 모두 해영(該營)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헤아려 시상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의 장계(狀啓)를 보니, '갑술년(1874) 태봉(胎封) 때에 연로(沿路)의 결성(結城) 등 여섯 고을에 대하여 구재원징조(舊災冤徵條) 336결(結) 6부(負)를 특별히 10년 간 정세(停稅)하였습	議政府啓: "卽見江華留守趙秉鎬狀啓, 則'本營兵丁赴于京陣, 與營下將士, 把守各處者, 本府人民, 或納錢財而助需, 或納牛隻、魚藿而饋軍, 迨此時出義願納, 事甚嘉尙。 各人褒賞之典, 請令廟堂稟處'矣。 爲念兵士之勞苦, 有此錢物之願助, 其所出義, 誠爲嘉尙。 各人, 竝令該營請量宜施賞。" 允之。 又啓: "卽見忠淸監司朴齊寬狀啓, 則'甲戌胎封時, 沿路結城等六邑舊災冤徵條, 三百三十六結六負, 特蒙十年停稅。 限年已過, 而地無寸墾, 人多流亡, 徒擁結簿, 遍徵族隣。 上項六邑蒙頉結, 特許更展十年之限, 使各該邑著力勸耕, 隨起執卜事, 請令廟堂稟處'矣。 限滿而輒請更展, 揆以國

	니다. 기한은 이미 지났는데 땅은 한 치도 개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떠나가서 그저 결부(結簿)만 가지고 친족과 이웃에게 두루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섯 고을에 대하여 탈결(頉結)로 잡아주어 특별히 다시 더 10년을 연장하여 정세하여, 각 해읍(該邑)으로 하여금 착실히 경작하도록 장려하고 기경(起耕)하는 대로 집복(執卜)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찼는데 다시 기한을 연장하여 주도록 청하는 것은 국결(國結)의 중요한 측면으로 헤아려볼 때 원래 논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읍(畿邑)은 조정에서 진념하는 것이 다른 곳과는 달라서 시종 돌봐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특별히 5년을 기한으로 정세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結所重, 固難議到。 而第此幾邑之朝家軫念, 與他有異, 不可無終始懷恤。特許限五年停稅何如?" 允之。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2월 30일(경자) 4번째기사 태복시에서 각 도의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도(各道) 목장의 마축(馬畜)의 수효가 4,947필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太僕以"各道牧場馬畜數爻四千九百四十七匹"啓。
고종 21권, 21년 (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12월 30일(경자) 5번째기사 각 도의 재결을 수량에 맞춰 획급하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5,650결(結)을 특별히 수량에 맞춰 획급(劃給)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	議政府以"各道災結五千六百五十結, 特許準劃"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一終】

	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1권 끝】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월 8일 (무신) 1번째기사 흉년이 든 함경도의 백성들을 구휼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북도 안무사(咸鏡北道按撫使) 조병직(趙秉稷)의 장계(狀啓)를 보니, 10개 고을 백성들의 황급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진달하고 나서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쌀 5만 석(石)을 이획(移劃)하여 설진(設賑)하는 사안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관북(關北)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아주 근심스럽습니다. 영남과 호남에 만일 이속(移屬)할 만한 곡식이 있다면 함께 구제하는 의리로 볼 때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번에 연분(年分)을 복계(覆啓)하여 개시(開市)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참작하여 구휼하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으니, 비록 이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라도 구휼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안무사가 열읍(列邑)의 수재(守宰)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어 저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죽을 근심을 면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八日。 議政府啓:“卽見咸鏡北道按撫使趙秉稷狀啓, 則備陳十州民情皇汲之狀, 仍請嶺、湖米限五萬石移劃設賑事, 請令廟堂稟處矣。 昨秋關北穡事告歉, 言念民情, 極庸憂悶。 嶺、湖之間, 苟可有移粟之資, 則揆以共濟之義, 何所靳惜? 而向於年分覆啓, 以開市所需錢參酌賙賑之意, 有所知委者, 雖知此數之不敷, 而亦爲幾分拯救而然也。 按撫之臣與列邑守宰, 築底講究, 悉心助恤, 俾彼元元得免捐瘠之患事, 分付何如?”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월 10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議政府啓: “現今軍需告絀, 誠爲可悶。 就海西社還米中, 限五千石火速船運之意, 知委於該道臣何如?” 允

일(경술) 2번째기사 해서의 사환미 5000석으로 군비에 충당하게 하다	“지금 군수(軍需) 물자가 떨어져 참으로 근심스러우니, 해서(海西)의 사환미(社還米) 가운데 5,000석(石)에 한하여 빨리 배로 운반하여 오도록 해당 도신(道臣)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之。
고종 22권,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월 18일(무오) 1번째기사 창덕궁에 나아가 열성의 어진을 경복궁 선원전에 배봉하고 이어 작헌례를 행하다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열성(列聖)의 어진(御眞)을 경복궁(景福宮) 선원전(璿源殿)에 배봉(陪奉)하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昌德宮, 陪奉列聖御眞于景福宮、璿源殿。 仍行酌獻禮。
고종 22권,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2월 9일(기묘) 1번째기사 전라도의 거두지 못한 세곡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보고를 보니, ‘법성창(法聖倉)에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곡식 가운데 기묘년(1879), 경진년(1880), 계미년(1883) 3년 동안 거두지 못한 미태(米太)가 도합 3,263석(石) 남짓이고, 기묘년(1879)과 경진년(1880) 2년 동안 허류(虛留)한 것이 만석에 가까운데, 청장(淸帳)한 뒤에 해창(該倉)의 형편이 점점 극한 지경에 다다라서 세금을 완납할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군산(群山)과 성당(聖堂)에 이미 허락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위 항목의 거두지 못한 미태는 특별히 상대(詳代)를 허락하여 10년을 기한으로 나누어 바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	初九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金聲根所報, 則‘法聖倉、戶曹、惠廳納, 己卯、庚辰、癸未三年未收米太, 合爲三千二百六十三石零, 而己、庚兩年虛留, 近萬石。 淸帳以後, 該倉事勢, 轉至弩末, 稅無可完之期。 且有群山、聖堂已許之例, 上項未收米太, 特許詳代, 限十年排納’爲辭矣。 挽近漕倉之弊敗難支, 已所悶念。 而近萬包

	니다. 요즘 조창(漕倉)이 바닥나서 지탱하기가 어려워 이미 딱한 형편에 놓여있으나, 만 포(包) 가까이 축난 것을 독촉하여 찾아낸 뒤에는 형편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수습할 방도가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다른 조창의 전례도 있으니, 똑같이 혜택을 베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창에서 거두지 못한 미태를 상대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5년에 한하여 나누어 봉납하도록 해당 각 아문(衙門)과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虛欠督刷之後, 勢到竿頭, 塗抹無術。 既有他倉之例, 合施一視之惠。 該倉未收米太, 特許詳代, 限五年排捧事, 分付各該衙門及該道臣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2월 8일 (무인) 1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에 대신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종정경(宗正卿),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2품 이상, 승지(承旨)와 한림(翰林),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동궁(東宮)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다.	初八日。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時原任閣臣、賓客、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賜饌。 以東宮誕辰也。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2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전라도의 거두지 못한 세곡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보고를 보니, '법성창(法聖倉)에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곡식 가운데 기묘년(1879), 경진년(1880), 계미년(1883) 3년 동안 거두지 못한 미태(米太)가 도합 3,263석(石) 남짓이고, 기묘년(1879)과 경진년(1880) 2년 동안 허류(虛留)한 것이 만석에 가까운데, 청장(淸帳)한 뒤에 해창(該倉)의 형편이 점점 극한 지경에 다	初九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金聲根所報, 則'法聖倉、戶曹、惠廳納, 己卯、庚辰、癸未三年未收米太, 合爲三千二百六十三石零, 而己、庚兩年虛留, 近萬石。 淸帳以後, 該倉事勢, 轉至弩末, 稅無可完之期。 且有群山、聖堂已許之例, 上項未收米太, 特

	다라서 세금을 완납할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군산(群山)과 성당(聖堂)에 이미 허락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위 항목의 거두지 못한 미태는 특별히 상대(詳代)를 허락하여 10년을 기한으로 나누어 바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조창(漕倉)이 바닥나서 지탱하기가 어려워 이미 딱한 형편에 놓여있으나, 만 포(包) 가까이 축난 것을 독촉하여 찾아낸 뒤에는 형편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수습할 방도가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다른 조창의 전례도 있으니, 똑같이 혜택을 베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창에서 거두지 못한 미태를 상대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5년에 한하여 나누어 봉납하도록 해당 각 아문(衙門)과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許詳代, 限十年排納'爲辭矣。 挽近漕倉之弊敗難支, 已所悶念。 而近萬包虛欠督刷之後, 勢到竿頭, 塗抹無術。 旣有他倉之例, 合施一視之惠。 該倉未收米太, 特許詳代, 限五年排捧事, 分付各該衙門及該道臣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3월 15일(갑인)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永禧殿, 行酌獻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3월 19일(무오)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난 다음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문안하였다. 하교하기를, "《존주록(尊周錄)》에 올라 있는 사람의 자손 가운데서 반열에 참석하지 못	十九日。 詣北苑, 行望拜禮。 王世子隨詣, 行禮。 禮畢, 領議政沈舜澤問候, 訖。 敎曰: "《尊周錄》所載人子

	한 사람이 또한 많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잘못된 일이다. 올해 5월부터는 반열에 참석시키고 시험에 응시하게 하라."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예조(禮曹)로 하여금 뽑아서 아뢰어 반열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뒤이어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와 무사(武士)의 시사(試射)를 설행하였다. 명(銘)에서 진사(進士) 김익수(金翊洙)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무과(武科)에서 한량(閑良) 김선규(金善圭) 등 39명을 뽑았다.	孫中, 不得參班者亦多云。 此乃欠事也。 自今五月爲始, 使之參班赴試也。" 舜澤曰: "令禮曹抄出以啓, 使之參班矣。" 仍御景武臺, 行參班儒武應試。 銘, 進士金翊洙, 直赴殿試。 武取閑良金善圭等三十九人。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4월 30일(무술) 1번째기사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嬉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三十日。 詣儲慶宮、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5월 7일(을사) 2번째기사 함경도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경작하는 것을 금지시킨 함경북도 안무사가 대죄하다	함경북도 안무사(咸鏡北道按撫使)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혼춘(琿春)의 승판(承辦)이 조회(照會)한 것으로 인하여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는 경작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후의 문건에 여지없이 상세히 적어 보냈는데, 조사하고 심리하기 전에 갑자기 먼저 경작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농막(農幕)을 불태우며 백성들을 내쫓았습니다. 신이 안무사(按撫使)의 직책에 있으면서 경계를 확정하고 백성들을 안착시키지 못하여 이렇게 분분하게 만들었으니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咸鏡北道按撫使趙秉稷啓: "因琿春承辦照會, 定界前不可禁耕之意, 前後文憑, 纖悉無餘。 而不待査審, 遽先禁耕, 燒毁農幕, 抵逐人民。 臣職在按撫, 不能定界安民, 致此紛紜, 惶恐待罪事。" 敎曰: "勿待罪。"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5월 10일(무신)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는데,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뒤이어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반열에 참가한 유생(儒生)과 무관(武官)에게 응제(應製)와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北苑, 行望拜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御景武臺, 行參班儒武應製試射。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5월 11일(기유) 1번째기사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가뭄이 갈수록 혹심하여 모내기철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다. 농사에 대하여 생각하면 몹시 답답하니,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가릴 것 없이 정성스럽게 지내도록 하라.”	十一日。 敎曰: “亢旱轉甚, 秧節已過, 尙靳一霈。 言念穡事, 極爲憂悶。 祈雨祭, 不卜日虔誠設行。”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5월 13일(신해) 1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지냈다	十三日。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16일(갑인) 1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十六日。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19일(정사) 2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22일(경신) 1번째기사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북쪽 교외에서 지냈다.	二十二日。 行四次祈雨祭于北郊。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25일(계해) 3번째기사 종묘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종묘(宗廟)에서 지냈다.	行五次祈雨祭于宗廟。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26 일(갑자) 1번째기사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낼 때 헌관을 숭품으로 채워 임명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 단비가 오기 시작하다가 곧 멎어서 또다시 가뭄을 걱정하게 되었으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더욱 애가 타고 안타깝다. 6차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가리지 말고 내일 향(香)을 받도록 하며, 헌관(獻官)은 숭품(崇品)으로 채워 차임하고 여러 집사들도 특별히 택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六日。 敎曰:“昨日甘澍, 旣始旋止, 又復惜乾。 言念穡事, 轉益渴悶。 六次祈雨祭, 不卜日, 明日受香, 獻官以崇品塡差, 諸執事亦另擇事, 分付。”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28 일(병인) 1번째기사 삼각산 등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호두(虎頭)를 담그고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二十八日。 行六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沈虎頭。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5월 29 일(정묘) 5번째기사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기우제를 형세를 관망한 뒤에 지내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이미 1촌(寸) 넘게 내렸고 지금은 비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는데다가 때때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이 기세를 이어 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인데, 연이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번독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기우제(祈雨祭)는 우선 형세를 관망한 뒤에 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昨日甘澍旣過寸餘, 見今濃雲四布, 有時霏微, 繼此霈然, 方切顒望。 恐涉瀆褻。 祈雨祭, 姑爲觀勢, 擧行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6월 4일 (신미) 1번째기사 비가 왔으므로 삼각산 등에서 보사제를 날을 가려 설행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기우제(祈雨祭)는 형세를 살펴서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흠뻑 내리고 그 뒤에도 또 연일 비가 와서 농부들의 마음이 놓이게 되었으니 농사에 크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중지하였는데 6차례 공경히 빈 뒤에 신령의 감응이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제(報謝祭)를 지내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지내는 보사제를 입추(立秋)가 지난 뒤에 날을 가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四日。 禮曹啓:“祈雨祭, 觀勢擧行事, 啓下矣。 日前甘澍霑潤之餘, 又得連日之雨, 庶慰三農, 民事萬幸。 祈雨祭, 仍爲停止, 而六次虔禱後, 靈應旣在三日之內, 當有報謝之節。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待立秋後, 擇日設行何如?”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6월 18일(을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陪參。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7월 4일 (경자) 2번째기사 나주, 함평, 해남, 흥양의 대동미 등에 관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영신(尹榮信)의 장계(狀啓)를 보니, ‘나주목(羅州牧)은 기묘년(1879)·경진년(1880)·신사년(1881)에 바치지 못한 미태(米太)가 선가(船價)까지 도합 8,739석(石) 남짓인데 상정가(詳定假)로 쳐서 돈으로 대	議政府啓:“卽見全羅監司尹榮信狀啓, 則以爲:‘羅州牧, 己、庚、辛未納米太竝船價, 合八千七百三十九石零, 以詳定代納。 咸平郡, 己、庚、辛、壬、癸賃船逋及吏逋民未收竝船價, 米三千三百四十五石零, 太九百五十三石

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납(代納)하게 하고, 함평군(咸平郡)은 기묘년·경진년·신사년·임오년(1882)·계미년(1883)에 밀린 배삯과 이서(吏胥)가 포흠(逋欠)한 것, 백성에게서 거두지 못한 것과 선가를 합치면 미(米)는 3,345석 남짓이고 태(太)는 953석 남짓인데 각년(各年)의 시가(時價)로 쳐서 미는 매 석당 15냥(兩), 태는 매 석당 10냥씩 대신 돈으로 대납하게 하며, 해남현(海南縣)은 기묘년·경진년·신사년 3년간 백성들이 바쳐야 할 몫과 창색(倉色)·감관(監官)·이서(吏胥)·장교(將校)·노비(奴婢)가 포흠한 것과 선가를 합치면 미가 도합 4,018석 남짓인데 매 석당 9냥씩 대납하도록 허락하고, 흥양현(興陽縣)은 기묘년·경진년·신사년·임오년·계미년에 거두지 못한 미태가 선가와 합치면 도합 3,547석 남짓인데 상정가로 쳐서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백성들과 고을을 보호하게 해 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네고을은 여러 번 흉년이 들어서 곤궁한 민호(民戶)가 대부분이니, 거두지 못한 것과 이서가 포흠한 것, 밀린 배삯이 한 해 두 해 쌓여서 청산할 기약이 없어 여러 공부(貢賦)의 중요성에서 헤아려보면 어찌 송구스럽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도신(道臣)의 장계와 어사(御史)의 논계(論啓)를 참작하건대 만약 특별히 변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납(貢納)을 완결짓고 고을의 고질적인 폐단을 수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차라리 세수(稅收)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돌보아주는 행정을 시행해야 할 때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零, 以各年時價, 米每石十五兩, 太每石十兩式代納。 海南縣, 己、庚、辛三年民納條及倉監、吏、校、奴逋竝船價, 米合四千十八石零, 每石九兩式許代。 興陽縣, 己、庚、辛、壬、癸未收米太竝船價, 合三千五百四十七石零, 以詳定許代。 以保民邑事, 竝請令廟堂稟處'矣。 蓋此四邑, 屢經歉荒, 擧多窮戶。 未收及吏逋、船欠, 一年二年, 淸帳無期。 揆諸貢賦攸重, 豈不萬萬悚悶乎? 參酌道啓、繡論, 則苟不別般通變, 將無以完公納而捄邑瘼矣。 到今事勢, 合施寧失之政, 竝特依狀請施行事, 行會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初七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尹榮信狀啓, 則以爲: '羅州壬、癸兩年

(光緖) 11년) 7월 7일 (계묘) 1번째기사 나주의 거두지 못한 조세 등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영신(尹榮信)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나주(羅州)는 임오년(1882)·계미년(1883) 2년 몫으로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것 및 이속(移屬)과 빌린 배의 선주(船主)가 포흠(逋欠)한 미태(米太)가 도합 1만 6,373석(石) 남짓인데, 이것은 당년(當年)에 바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병자년(1876)·정축년(1877)의 대흉년이 있은 뒤에 새로 바칠 분량으로 이전에 납부할 분량을 미봉(彌縫)하다 보니 자연히 오늘날까지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본색(本色)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면 그동안에 바친 것은 겨우 만여 석 밖에 안 되는데, 흉년 뒤의 조세 행정에서 옛날 세곡(稅穀)과 올해의 세곡을 그 형편상 한꺼번에 독촉하여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임오년·계미년 2년 몫 가운데서 이속과 백성에게서 거두지 못한 미(米) 5,071석 남짓과 태(太) 490석 남짓을 올봄의 조세 가격대로 미는 매 석당 25냥(兩), 태는 매 석당 13냥으로 치고 임오년조의 밀린 배삯으로 미 1,586석 남짓과 태 232석 남짓을 그 당시의 시가(時價)대로 미는 매 석당 15냥, 태는 매 석당 8냥으로 쳐서 특별히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것을 허락해 주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호남의 큰 고을로서 지역이 가장 넓고 크므로 그에 따라 조세 총액이 많은데 흉년이 거듭 들다보니 차츰차츰 세금이 밀리게 된 것입니다. 도신의 계사가 여러 번 오고 어사의 조사도 자세하며 해당 목사(牧使)가 정성들여 징수한 것도 많으니 기묘년·경진년·신사년의 3년조를 돈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밖에 임오년·계미년의 2년조도 청한 대로 특별히 대납하게 하여 빨리 청산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윤영신이 올린 장계를 보니, ‘병자년·정축년의 흉년을 겪은 뒤에 조정에서 보호하는 방도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세를 바칠 백	條民未收及吏屬、賃船主欠逋米太, 合爲一萬六千三百七十三石零, 而此非當年未納, 自丙、丁大歉之後, 以其新捧, 彌縫舊納, 自致今日之愆滯。 而就其中, 拈出其本色可捧者, 其間所捧, 僅爲萬餘石。 而歉餘稅政, 新舊竝督, 其勢末由。 壬、癸兩年條中吏民未收, 米五千七十一石零, 太四百九十石零, 依今春稅價, 米每石二十五兩, 太每石十三兩, 壬午條船逋, 米一千五百八十六石零, 太二百三十二石零, 依其時價, 米每石十五兩, 太每石八兩, 特爲許代事, 請令廟堂稟處’矣。 本州, 湖南雄邑也。 幅員最大, 稅總隨夥, 而荐値歉荒, 駸駸然漸致拖淹矣。 道啓累至, 繡査且詳, 該牧使之悉心徵刷, 又且夥然。 己、庚、辛三年條許代外, 壬、癸兩年條, 亦依所請, 特爲代納, 亟圖淸帳之意,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全羅監司尹榮信狀啓, 則‘丙丁歉荒之後, 朝家懷保之方, 靡有不擧。 而納稅之民, 流亡居多, 如干存戶, 疲弊蕩竭。 況又船逋、吏逋, 課載添數, 船逋之無以拔本者, 必使吏徵, 吏屬之無以準納者,

	성들 가운데 유망(流亡)한 사람이 많고 약간 남아 있는 가호들은 집안이 몰락하고 거덜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선주가 포흠하고 이속이 포흠한 몫의 분량까지 더 첨가되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선주가 포흠한 것으로서 완전히 거두지 못한 분량은 이속에게서 징수하고 이속이 수량대로 바치지 못한 것은 또한 수령의 급료에서 덜어내어 곤궁한 가호에서 부득불 받아야 할 것과 합쳐서 지금 청산을 도모하고 있는데, 바치지 못한 옛날 조세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임피현(臨陂縣)의 정축년(1877)·기묘년(1879)·경진년(1880)·임오년(1882)조로 도합 미 752석 남짓, 태 152석 남짓, 부안현(扶安縣)의 기묘년·신사년(1881)·임오년조로 도합 미 1,832석 남짓, 태 156석 남짓, 김제군(金提郡)의 경진년·신사년조로 도합 미 608석 남짓, 무장현(茂長縣)의 신사년·임오년·계미년조로 도합 미 1,536석 남짓, 정읍현(井邑縣)의 무인년(1878)·기묘년·임오년·계미년조로 도합 미 514석 남짓, 태 36석 남짓, 진도부(珍島府)의 임오년·계미년조로 도합 미 504석 남짓, 무안현(務安縣)의 기묘년·경진년·임오년조로 도합 미 2,161석 남짓, 태 334석 남짓은 올봄 조세 가격으로 참작하여 미는 매 석당 15냥, 태는 매 석당 10냥씩 특별히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공부(貢賦)의 법의(法意)가 중대하고 엄하니 청하는 대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7개 고을로 말하면 고을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해서 지탱하기 곤란하니 특별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빨리 마감을 짓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 강원 감사(前江原監司) 민치서(閔致序)가 올린 장계를 보니, '원주(原州) 민란(民亂)의 사계(査啓)에 있는 죄인 장봉기(張鵬基)가 지난달 20일 밤에 쇄장(鎖匠)과 함께 도망하였으므로 각 읍진(邑鎭)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	亦或官捐, 竝與窮戶之不得不當捧者, 方圖淸帳, 而舊稅未納, 駸駸有尾大難掉之患。 臨陂縣, 丁丑、己卯、庚辰、壬午條合, 米七百五十二石零, 太一百五十二石零; 扶安縣, 己卯、辛巳、壬午條合, 米一千八百三十二石零, 太一百五十六石零; 金堤郡, 庚辰、辛巳條合, 米六百八石零; 茂長縣, 辛巳、壬午、癸未條合, 米一千五百三十六石零; 井邑縣, 戊寅、己卯、壬午、癸未條合, 米五百十四石零, 太三十六石零; 珍島府, 壬午、癸未條合, 米五百四石零; 務安縣, 己卯、庚辰、壬午條合, 米二千一百六十一石零, 太三百三十四石零。 參酌今春稅價, 米每石十五兩, 太每石十兩, 特爲許代事, 請令廟堂稟處'矣。 貢賦法意, 旣重且嚴, 固不當隨請輒施。 而第此七邑, 邑勢、民情, 遑汲難支, 特依狀請許代, 趁速告勘事, 行會何如?" 允之。 又啓: "卽見前江原監司閔致序狀啓, 則'原州民鬧査啓罪人張鵬基, 去月二十日夜, 與鎖匠同爲逃躲, 嚴飭各邑鎭, 使之刻期跟捕。 而該判官李鶴年, 雖曰莅任屬耳, 不可仍置, 其罪

	한 내에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관(判官) 이학년(李鶴年)은 설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 그 죄상에 대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계하(啓下)한 중죄수(重罪囚)를 잘 지키지 않아서 심지어 도망가게 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니 아주 놀랍고 해괴한 일입니다. 해당 수령에 대한 도신의 장계에서 이미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이제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도신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만약 사전에 엄하게 단속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미 교체되었다고 하여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강원 전 감사(江原前監司) 민치서에게 함추(緘推)하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죄인을 체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특별히 신칙하여 기어이 잡아내고 이전에 행회한 대로 거행한 뒤에 치문(馳聞)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狀, 令攸司稟處'矣。 啓下重囚, 不善監守, 至於逃失, 事未前有, 萬萬驚駭。 該守令道啓 旣請令攸司稟處, 今無更論。 雖以道臣言之, 苟能先事嚴束, 安有是也? 不可以已遞而勿問, 江原前監司閔致序, 施以緘推之典。 罪人跟捕之節, 十分另飭, 期於斯得, 依前行會, 擧行後馳聞事, 分付何如?" 允之。 【원본】 26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7월 7일 (계묘) 2번째기사 내무부에서 군량을 확보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현재 군량이 고갈되게 되었으니 만약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형편상 앞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남(三南)에서 이전에 거두지 못한 몫을 대전(代錢)한 조(條) 가운데서 적당하게 헤아려 쌀로 바꾸어 지방(支放)을 이어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친군영(親軍營)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內務府啓: "目下籌餉, 到底枵絀, 苟不豫先講究, 勢將無處措辦。 三南舊未收代錢條中, 量宜貿米, 以繼支放之意, 分付親軍營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內務府啓: "目下籌餉, 到底枵絀, 苟不豫先講究, 勢將無處措辦。 三南舊

(光緖) 11년) 7월 7일 (계묘) 2번째기사 내무부에서 군량을 확보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현재 군량이 고갈되게 되었으니 만약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형편상 앞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남(三南)에서 이전에 거두지 못한 몫을 대전(代錢)한 조(條) 가운데서 적당하게 헤아려 쌀로 바꾸어 지방(支放)을 이어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친군영(親軍營)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未收代錢條中, 量宜貿米, 以繼支放之意, 分付親軍營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7월 18일(갑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7월 20일(병진) 2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보사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보사제(報謝祭)를 지냈다.	行報謝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 (光緖) 11년) 7월 22일(무오) 1번째기사 성균관에서 칠석제를 설행하다	칠석제(七夕製)를 성균관(成均館)에서 설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윤창섭(尹昌燮), 생원(生員) 조형하(趙衡夏)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二十二日。 設七夕製于泮宮。 詩, 幼學尹昌燮、生員趙衡夏, 竝直赴殿試。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7월 22일(무오) 4번째기사 해서 사창의 환곡미를 친군영에 실어오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막 군수미(軍需米)를 사들이는 일에 대하여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아직도 충분치 못할 우려가 있으니 해서(海西) 사창(社倉)의 환곡미(還穀米) 가운데서 6,000석(石)을 한정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미리 각 고을에 배정해서 반드시 얼음이 얼기 전에 친군영(親軍營)에 실어오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內務府啓: “才以軍需米貿取事, 啓稟蒙允。 而猶有不敷之慮, 就海西社還米中, 限六千石, 令道臣豫先排定各邑, 必於氷泊前輸納親軍營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8월 7일(계유) 2번째기사 보성군과 낙안군 등의 거두지 못한 쌀과 콩을 돈으로 바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윤영신(尹榮信)의 장계(狀啓)를 보니, ‘각 연도에 거두지 못한 쌀과 콩을 이제 만약 본색(本色)으로 독촉하여 바치게 하면 형편상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깨끗이 청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성군(寶城郡)의 정축년(1877)·기묘년(1879)·신사년(1881) 조(條)인 쌀과 콩이 도합 1,091석 남짓, 순천부(順天府)의 기묘년(1879)·경진년(1880) 조인 쌀이 도합 254석 남짓, 낙안군(樂安郡)의 임오년(1882) 조인 쌀 105석, 능주목(綾州牧)의 기묘년(1879) 조인 쌀 72석 남짓, 여산부(礪山府)의 계미년(1883) 조인 쌀과 콩 721석 남짓을 모두 쌀은 매 석당 15냥, 콩은 매 석당 10냥으로 쳐서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하며, 옥구현(沃溝縣)의 신사년(1881)·임오년(1882)·계미년(1883)·갑신년(1884) 조인 쌀 61석 남짓을 매 석당 25냥씩으로 쳐서 특별히 대납하도록 허락할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근원을 따진다면 병인년(1866)·정묘년(1867)의 큰 흉년을 겪은 뒤로 혹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尹榮信狀啓, 則‘各年未收米太, 今若以本色責納, 則事勢難辦, 恐不得一新淸帳。 寶城郡丁丑己卯辛巳條合, 米太一千九十一石零; 順天府己卯、庚辰條合, 米二百五十四石零; 樂安郡壬午條, 米一百五石; 綾州牧己卯條, 米七十二石零; 礪山府癸未條, 米太七百二十一石零。 竝以米每石十五兩, 太每石十兩許代。 沃溝縣辛巳壬午癸未甲申條, 米六十一石零, 每石以二十五兩, 特爲許代事, 請令廟堂稟處’矣。 苟究源委, 則自經丙丁大荒, 或因民力之艱辦, 或致船逋而流亡, 畢竟有官捐、吏徵。 而若其本色則末由責出, 特依其所陳, 許令代

	은 백성들의 힘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혹은 선포(船逋)를 당해 유망(流亡)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필경 고을 관청에서 경비를 덜어내고 아전(衙前)에게 징수하게 된 것일 수 있는데, 만약 본색으로 바치게 한다면 독촉해서 내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특별히 진술한 대로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보고를 보니, '각 연도의 쌀과 콩은 사공(沙工)들이 많은 수량을 횡령하여 이처럼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여러 놈들을 지금 특별히 신칙하여 기찰하고 체포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 본색으로 바치라고 강요하게 되면 장차 세월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풍현(玄風縣)의 임오년(1882) 조인 쌀과 콩 362석 남짓, 사천현(泗川縣)의 신사년(1881)·임오년(1882) 양년조(兩年條)인 쌀 1,377석, 밀양부(密陽府)의 기묘년(1879)·신사년(1881)·임오년(1882) 조인 쌀과 콩 3,299석 남짓을 모두 다 특별히 상정례(詳定例)에 의거하여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며, 횡령한 여러 놈들은 법조문대로 감죄(勘罪)하여 처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세 고을에서 거두지 못한 쌀과 콩이 자그마치 5,000포(包)가 넘는데, 모두 각 연도에 사공(沙工)들이 횡령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니, 정공(正供)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엄하게 기찰해서 잡아다가 법조문에 따라 처리하게 할 것이지만 이제 만약 일체를 본색에 준하여 거둔다면 백성들과 고을이 형편상 필경 보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신(道臣)이 이렇게 진술하고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보고한 대로 상정례에 의거하여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경상 좌수사(前慶尙左水使) 김인호(金寅浩)는 지난번 전최(殿最)를 봉하여	納何如?" 允之。 又啓: "卽見慶尙監司南一祐所報, 則'各年米太, 沙工輩夥數犯逋, 至此積滯。 在逃諸漢, 今方另飭譏捕。 而此若强責本色, 則將不免積費歲月。 玄風縣壬午條, 米太三百六十二石零; 泗川縣辛巳、壬午兩年條, 米一千三百七十七石; 密陽府己卯、辛巳、壬午條米太三千二百九十九石零。 竝特許詳代。 犯逋諸漢, 依律勘處'爲辭矣。 三邑未收米太, 至過五千包之多, 而都歸各年沙工輩之犯逋。 揆以正供攸重, 萬萬驚惋。 在逃諸漢, 嚴加譏捉, 按法處之。 而今若一切以本色準徵, 則民邑事勢, 必致難保。 所以有道臣之如是陳請者也。 竝依所報許令詳代何如?" 允之。 又啓: "前慶尙左水使金寅浩, 向日殿最封啓, 以管下鎭將姓名相左事, 該曹之草記論罷。 自是格例所在, 而此帥臣莅任未幾, 聲績優著。 非但軍民之惜去, 第今極備之餘, 迎送立弊, 亦所當念。 特爲仍任, 庸責終效何如?" 允之。

	올리면서 관하(管下) 진영장(鎭營將)의 이름을 틀리게 쓴 문제로 인하여 해조(該曹)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파직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규례이기는 하지만 이 수신(帥臣)으로 말하면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고 현저한 공적도 있습니다. 비단 군사와 백성들이 그가 가는 것을 애석해할 뿐 아니라 지금 큰물이 진 뒤에 맞이하고 보내는 데에서 생기는 폐단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대로 유임시켜 끝까지 성과를 거두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8월 9일 (을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지냈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8월 13일(기묘) 1번째기사 건청궁에 나가서 봉조하 김상현의 사전을 받고 사찬하도록 명하다	건청궁(乾淸宮)에 나아가서 봉조하(奉朝賀) 김상현(金尙鉉)이 올린 사전(謝箋)을 받은 다음 사찬(賜饌)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이 치사(致仕)하니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다.” 하니, 김상현이 아뢰기를, “신은 물러가려고 하면서 전하에 대한 충성심을 누를 길 없어 감히 진달드립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요(堯)·순(舜)같은 덕을 가지고 요·순같은 정사를 하고 있지만, 지극히 고명하고 중용(中庸)의 도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학업에 힘쓰	十三日。 御乾淸宮, 受奉朝賀金尙鉉進謝箋。 仍命賜饌, 敎曰: “卿之致仕, 予心甚以爲悵缺。” 尙鉉曰: “臣將退矣。 芹曝之忱, 不能自已, 敢此仰陳。 我殿下以堯、舜之德爲堯、舜之治, 若夫極高明而道中庸, 寔在乎學。 務時敏, 無或間斷, 然後俯而導迪春宮, 日就溫文, 允爲宗社萬億年无疆之休也。 惟殿下懋哉! 懋哉!” 敎

	고 시세(時勢)에 민첩하기를 중단이 없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아래로 세자(世子)를 인도하여 날로 학문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억만 년 무궁한 복으로 될 것입니다. 전하는 힘쓰고 힘쓰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술한 것이 참으로 절실한 문제이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曰: “所陳, 眞箇切實。 當體念矣。”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8월 15일(신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8월 24일(경인) 2번째기사 개성 유수영에 황해도의 곡식 모곡을 획급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 개성 유수(前開城留守) 조준영(趙準永)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관할하는 평안도(平安道)의 좁쌀 2만 석에 대한 올해의 모곡(耗穀) 2,000석을 전례대로 획급(劃給)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출하는 비용을 다른 데에서 돌려주는 것이 곧 연례로 되었으니, 황해도(黃海道)에 있는, 병인년(1866)에 특별히 마련하여 둔 곡식의 모곡(耗穀)을 이 수량대로 떼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開城前留守趙準永所報, 則‘本營句管關西小米二萬石, 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依此數劃送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9월 13일(무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9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9월 27일(임술) 2번째기사 충청도의 바치지 못한 미태와 목변을 돈으로 바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상훈(沈相薰)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道) 안의 각읍(各邑)에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미태(米太)와 목변(木邊)을 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청한 조항에 관해, 일체 어사(御史)가 마련한 대로 마땅히 납부해야 할 수효를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별도로 어사를 파견한 것은 바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묵은 것을 말끔히 추쇄(推刷)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본색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작하여 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허락해 준 뒤에야 공화(公貨)를 청산할 수 있으며 고을 형편도 마땅히 조금 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도에서 성책하여 보고한 대로 납부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卽見忠淸監司沈相薰狀啓, 則‘道內各邑舊未納米、太與木邊請代條, 一依御史磨鍊, 當納數爻, 成冊上送, 請令廟堂稟處’矣。 朝家之另派繡衣, 寔由於淸刷舊納之意。 而若其本色難辦者, 則不容不參許代, 然後公貨可以告勘, 邑勢亦當稍紓, 特依道報成冊收納事, 行會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0월 6일(신미) 3번째기사 흉년 때문에 평안도 감영의 겨울에 입방하여 습조하는 것을 중지시키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남정철(南廷哲)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작대군(作隊軍) 좌우열 군병들이 해마다 돌아가며 겨울 석달 동안 입방(入防)하여 습조(習操)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형편이 흉년을 면치 못하고 군오(軍伍)는 아직도 궐액(闕額)이 많은데 노자와 양식을 사가지고 다니는 것은 다만 폐해만 있을 뿐이니, 근래의 규례대로 정지하거나 면제하도록 내무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윤번(輪番)으로 방어도 하고 조습하는 일은 원래 규례이기는 하지만 흉년에 백성들의 사정도 돌봐주어야 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지하거나 면제할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內務府啓: “卽見平安監司南廷哲狀啓, 則‘本營作隊, 左右列軍兵, 逐年輪回, 冬三朔入防習操, 自是已例。 而年形旣未免歉, 軍伍尙多闕額, 行資留糧, 徒貽其弊, 依近例停免事, 請令內務府稟處’矣。 輪防操習, 自是式例, 而儉歲民情, 合有軫恤, 依狀請停免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0월 9일(갑술) 1번째기사 충청도의 합록곡으로써 가을에 받을 몫과 모곡의 곡물을 대전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상훈(沈相薰)이 농사가 흉년든 것과 관련하여 도(道) 안의 합록곡(合錄穀)으로서 올 가을에 받게 되어 있는 몫과 모곡(耗穀)으로 더 받는 곡물을 대전(代錢)할 것을 명년 가을을 기한으로 하여 절반을 정퇴(停退)해 줄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금년은 심한 수해를 입은 뒤끝인데 농사를 망친 가난한 백성들에게 규례대로	初九日。 議政府啓: “忠淸監司沈相薰, 以‘穡事告歉, 狀請道內合錄穀今秋當捧條, 竝與耗代錢, 限明秋折半停退事, 請令廟堂稟處’矣。 今年極備之餘, 窮蔀失農之類, 按式督納, 實係行不得之政也。 耗條外, 只令本穀, 限折半停退何如?” 允之。

	독촉해서 납부하게 한다는 것은 실행하지 못할 정사입니다. 모조(耗條) 이외에 단지 본 곡식만을 절반에 한하여 정퇴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0월 20일(을유) 1번째기사 외읍에서 올리는 전문을 신미년의 정식대로 올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외읍(外邑)에서 올리는 전문(箋文)을 지금부터 시작하여 신미년(1871)의 정식(定式)대로 지어서 올릴 것을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日。 敎曰: “外邑箋文, 自今爲始, 依辛未定式製進事, 分付。”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0월 20일(을유) 2번째기사 충청도의 목화가 흉년이므로 군포를 3분의 1을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상훈(沈相薰)이 다시 목화 농사가 참혹하게 흉작인 상황을 진달하고 나서, 도내(道內)의 각 군포(軍布)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모두 순전히 돈으로 대납하게 할 것을 다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민정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마땅히 극진하게 돌봐주어야 할 것이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에서 특별히 3분의 1을 대납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忠淸監司沈相薰, 復陳綿農慘歉之狀, 仍請‘道內各軍布, 自今年十月, 至明年九月, 竝以純錢代納事, 更令廟堂稟處’矣。 民情攸關, 合有曲軫, 兵曹各營, 特以三分一代納, 知委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1월 3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민영환(閔泳煥)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영의 군수	丙務府啓: “卽見開城留守閔泳煥所報, 則‘本營軍需所用時急, 江華砲糧中三千石以營貿例劃給’爲辭矣。 抄兵鍊

일(정유) 5번째기사 개성 유수영의 군사비로 강화의 포군 군량미로 보충하도록 하다	에 쓸 것이 시급하니 강화(江華)의 포량(砲糧) 중에 3,000석을 영무례(營貿例)에 따라 획급(劃給)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병사를 뽑아 기예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미 명을 받들어 이루었으니 희료(餼料)에 충당할 것을 속히 조처하여 처리하고 보고한 말에 따라 이 수량만큼 편리한 대로 사와서 보태어 쓰도록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藝, 旣奉成命, 餼料所需, 宜亟措辦。依報辭, 準此數從便貿來, 以爲補用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2월 8일(임신) 1번째기사 경상도의 공전으로 곡식을 사서 김해 등을 구휼하고 인천부에 도시를 복설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제관(朴齊寬)의 장계(狀啓)를 보니, '인천부(仁川府)를 일찍이 을해년(1875)에 승격시켜 방어영(防禦營)으로 만들고 별효사(別驍士)와 포군(砲軍)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매해 가을마다 무과 도시(武科都試)를 설행하였는데, 방어영이 감하(減下)한 뒤로 도시(都試)도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방어영의 명호(名號)는 없지만 모든 절제(節制)에 관계되는 것을 동래(東萊)와 덕원(德源)의 체례(體例)로 시행하고 있으니 마땅히 군교(軍校)의 도시(都試)가 있어야 합니다. 별효사와 포군이 아직 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 규례대로 다시 설행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방어영의 명호는 비록 이미 감하되었으나 바다 연안의 변경은 중요한 지역이니 군사들을 고무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를 전례대로 설행하여 위로하는 방도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상훈(沈相薰)의 장계를 보니, '도내(道內) 평택(平澤)과 직산(稷山) 두 고을의 진결(陳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준 것이 이제 이미 만기가 되었으나 토지가 없는데 원통하게 물게 되었으니 실로 딱합	初八日。 議政府啓:"卽見京畿監司朴齊寬狀啓, 則以爲'仁川府, 曾於乙亥, 陞作防營, 備置別驍士及砲軍, 武科都試, 每秋設行矣, 防營減下後, 都試亦爲廢擱。 而今雖無防營之名號, 凡干節制, 以東萊、德源體例施行, 則宜有軍校都試, 而別驍士、砲軍, 尙在案付, 依舊例復設事, 請令廟堂稟處'矣。 防禦之號, 雖已減下, 沿邊重地, 靺韋之士, 不可無奬勸, 都試依已例設行, 俾爲慰悅之方何如?" 允之。 又啓:"卽見忠淸監司沈相薰狀啓, 則'道內平澤、稷山兩邑陳結蠲稅, 今已限滿, 而無土冤徵, 實爲憫然。 平澤縣己卯川浦, 甲申還起條, 十結九十七負四束; 稷山縣庚辰蒙頉條中, 二百四十一結二十二負, 更展五年停稅事, 請令廟堂稟處'矣。 限滿而輒又煩請, 壤賦

	니다. 평택현(平澤縣)의 기묘년(1879)에 홍수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토지를 갑신년(1884)에 다시 일군 몫인 10결(結) 97부(負) 4속(束)과 직산현(稷山縣)의 경진년(1880)에 사고로 잡아준 몫 가운데서 241결 22부를 다시 5년간 조세를 감면해 주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찼는데 갑자기 또 번거롭게 청하니 토지세는 중요한 만큼 참으로 의논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두 고을은 가장 작은 현(縣)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백징(白徵)을 물리는 것이 이미 이렇게 원통한 일로 되고 있으니 회유하고 보호하는 뜻에서 마땅히 감면시켜주고 돌봐주는 정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3년을 한정하여 조세를 감면시켜주어 그 기간에 원 총량을 보충할 뜻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를 보니, '올해 농사에 대해 온 도(道)를 전체적으로 논하면 모두 흉년을 면치 못하였는데, 가장 더욱 심한 곳은 김해(金海) 등 11개 고을입니다. 구휼에 필요한 쌀 2만 섬을 특별히 여유 있는 각 도에 배정하여 얼음이 풀린 뒤에 배로 운반하게 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 도는 이미 창고에서 낼 물자가 없으며 이웃 도에서도 넘겨줄 만한 곡식이 없는 형편을 생각하면 근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 내의 공납전(公納錢) 가운데서 10만 냥을 한정하여 특별히 떼어 주어 편리한 대로 곡식을 사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적당히 나누어 주게 하고 혹 때를 놓쳐 굶어죽는 우환이 없게 할 일을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도 위유사(慶尙道慰諭使) 신태관(申泰寬)의 장계를 보니, '수재(水災)를 입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성상의 유지를 전달하고 골고루 휼전(恤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한 고을과 진영(鎭營)에 대한 구휼	攸重, 固難議到, 而兩邑以蕞爾小縣, 窮蔀白徵, 旣如是可冤, 則其在懷保之義, 合有蠲恤之政。 特許限三年減稅, 期充元總之意, 申飭何如?" 允之。 又啓: "卽見慶尙監司南一祐狀啓, 則'今年穡事, 統論全省, 俱不能免歉, 而最尤甚金海等十一邑賑資米, 限二萬石, 特爲分排於有裕之諸道, 使之待解氷船運事, 請令廟堂稟處'矣。 本省旣無發倉之需, 隣道且乏移粟之資, 言念事勢, 萬萬憂隘。 就道內公納錢, 限十萬兩, 特爲劃下, 使之從便貿穀, 精抄飢口, 量宜排巡, 毋或有失時顚連之患事, 行會何如?" 允之。 又啓: "卽見慶尙道慰諭使申泰寬狀啓, 則'被災諸邑, 遍行宣諭, 派給恤典, 而尤甚邑鎭請賑減稅等節, 竝令廟堂稟處'矣。 今年嶠南巨浸, 挽近罕覩之災也。 溫綸荐降, 惠恤備摯, 惟彼棲遑漂沒之類, 擧皆感戴若恫之德意矣。 災結與賑資, 因首啓, 方次第劃下, 外他窮蔀寬紓之政, 亦皆隨請許施, 今玆狀辭, 別無更論, 以此分付何如?" 允之。 又啓: "慶尙監司南一祐復陳穡事歉荒之狀, 仍請'不足災三萬八百十七結二十九負,

	과 조세 감면 등의 절차는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경상도(慶尙道)에서 발생한 홍수는 근년에 보기 드문 수재입니다. 온화한 윤음이 거듭 내리고 은혜로운 규휼이 지극하여 집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옥체가 아픈 듯 돌보시는 덕의(德意)에 모두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전답의 재난과 진휼하는 자금을 수계(首啓)에 따라 차례로 획급하고, 그밖에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너그러운 정사도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이번의 장계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것이 별로 없으므로 이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 남일우는 농사가 흉년든 상황을 다시 진술하고 이어서 부족되는 재해 면적 3만 817결 29부를 특별히 기준대로 획급하는 일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도신이 이처럼 부지런히 진계(陳啓)하였으니, '차라리 임금의 재화를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더라도 백성들에게서 가렴(加斂)하는 신하는 두지 않겠다.'는 정사의 취지로 보아 시종 극진하게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2,000결을 한정해서 다시 더 획급하여 즉시 나누어주고 조안(租案)을 수정하여 지체시키지 말도록 할 일에 대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特許準劃, 令廟堂稟處'矣。 道臣陳啓, 若是申勤, 揆以寧失之政, 不容不終始曲軫, 限二千結, 更爲加劃, 使之卽速俵給, 租案修正, 毋至遲淹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2월 14일(무인)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지난	十四日。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南一祐狀啓, 則'向伏奉年分回啓關文, 尤甚邑諸般公納, 三分一限明秋停退。而其中巨濟一境, 實無粒穀見收, 勢將

경상 감사가 을유년의 조세와 대동미 등을 연기해 줄 것을 청하다	번의 연분 장계에 대하여 회계한 관문(關文)을 받았는데 더욱 심한 고을의 제반 공납(公納) 가운데서 3분의 1을 내년 가을까지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제도(巨濟島)는 실제로 거두어들일 만한 곡식이 없어서 앞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와야 할 형편이니 마련해서 바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을유년(1885) 몫의 각 아문의 조세와 대동미(大同米)와 콩을 내년 가을까지 특별히 연기하여 주소서. 그 뿐만 아니라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에 대해서 이미 돈으로 대신 받을 것에 대한 처분이 있었으나 그 고을로 말하면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조차도 곤란합니다. 그러니 통영(統營)이 관할하는 환곡의 이자를 돈으로 만들어 바치는 것도 똑같이 내년 가을까지 연기하여 줄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을은 바다 가운데 있는 외딴섬으로서 올해 농사가 재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온 경내의 황급한 정상이 감사(監司)의 보고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구휼 사업을 벌인 10개 고을 중에서도 가장 더욱 심합니다. 정공(正供)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곧바로 토의할 수는 없으나 만약 큰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고을의 일이 앞으로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을유년(1885) 몫의 각종 조세, 대동미와 콩을 특별히 내년 가을까지 연기하여 주고 통영이 관할하는 환곡의 이자를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것도 똑같이 연기하여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貿米於陸地, 而萬無辦納之道。 乙酉條各衙門稅大同米太, 限明秋特許停退。 且還餉雖已承代捧之處分, 該邑則以錢代納, 亦所難强。 統營所管還耗作錢, 一體限明秋停退事, 請令廟堂稟處'矣。 該邑以海中孤島, 今年穡事, 無災不備。 闔境遑汲之狀, 觀於道啓, 有不忍言, 而設賑十餘邑中最尤甚者也。 正供攸重, 不可遽議。 而苟無曠絶之惠, 民邑事將不知何所止屆。 乙酉條各樣稅大同米太, 特許限明秋停退, 統營所管還耗代錢, 一體停退之意, 分付該道道帥臣何如?" 允之。
고종 22권, 22년 (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12월 30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도(道) 목장의 마축(馬畜) 수가 4,864마리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司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 四千八百六十四匹" 啓。

일(갑오) 2번째기사 사복시에서 각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의 수를 보고하다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월 1일 (을미)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께서 80세가 된 것을 축하하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3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축하드리는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올렸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80살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축하하였다. 이어서 축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했는데, 교서(敎書)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대비께서 큰 경사를 맞이해 해주(海籌)를 더해 올해 80살이 되시니, 지함(芝函)으로 송축함에 정월 초하루에 산호(山呼)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어찌 팔도(八道)에 알려 모든 백성들에게 두루 은덕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현정 휘안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大王大妃) 전하는 왕비로서의 덕과 천품을 지니셨다. 성녀(聖女)로서 성인의 배필이 되시어 가만히 우리 영고(寧考:익종(翼宗))를 도와 대리청정하셨으며, 순원 황후(純元王后)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마치 태사(太姒)가 태임(太任)의 뒤를 이은 것처럼 하셨으니, 나라가 이에 힘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三】 初一日, 乙未。 詣勤政殿, 上致詞箋文、表裏于大王大妃殿。 王世子隨詣, 行禮。 以將躋八旬稱慶也。 仍受賀、頒赦。 敎文若曰: 萱闈迓慶, 添海籌於來歲八旬, 芝函頌休, 騰山呼於正月上日, 庸亶告於八域, 徧爲德於群黎? 恭惟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大王大妃殿下, 厚坤德貞, 慈天仁覆。 密贊我寧考代聽, 以聖女而郛配聖人, 遹追純元后徽音, 若太姒之嗣太任, 國以永賴, 四載抗裘冕之尊, 史不勝書, 群生被帡幪之化。 顧小子承艱大之業, 自初服荷庇護之恩。 惟撫育眷愛之仁, 偏蒙寒暑節宣之貽念, 亦義方敎誨之道, 每在晨昏省定之奉歡。 元良膺四重之歌, 莫非餘慶攸曁, 長樂致千乘之養, 猶懷報德將何。 迨歲籥方屆於三元, 伊遐籌將躋於八耋, 允矣天與長而

	입어 4년간 지존의 위엄이 높아질 수 있었고 역사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공로로 백성들은 크게 보호해 주는 교화를 입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렵게 이룩한 큰 위업을 이어받아 초기부터 비호해 주시는 은덕을 받았다.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는 어진 마음으로 추울세라 더울세라 건강을 돌봐주셨으며, 또한 옳게 가르쳐 주는 도리로 매번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받는 기쁨을 누리셨다. 세자(世子)는 사중(四重)의 기쁨을 받았으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대비께 이미 천승(千乘)의 봉양을 다하였으나 나는 아직도 장차 그 덕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세월은 바야흐로 정월 초하루가 되어 대비의 보령이 80살이 되시니, 실로 하늘과 더불어 길고 땅과 더불어 장구히 대운수가 펴지는 것으로 마치 반달이 만월이 되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끊임없다. 우리 혜경궁(惠慶宮)의 계유년(1813) 때의 성대한 의식에 부합되는데, 왕실 계보［玉牒］를 상고해보면 경사로운 술년(戌年)이 올해이며 옛날 영조(英祖) 때의 임진년(1772) 옛 예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왕대비의 궁전을 쳐다보면 효자는 날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게 된다. 이것은 실로 억만년 끝없는 경사이고 또한 구오(九五)의 수복(壽福)을 누리는 시기이다. 그래서 구구한 생각이 끝이 없는데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두렵다. 천년의 봄과 천년의 가을토록 만수하시기를 축원하게 된다. 오늘의 아름다운 경사에 이르러 천명을 받게 된 것은 실상 하늘이 보존해 준 덕으로서 우리 집안에도 예가 있으므로 응당 왕후가 거처하는 흔정(昕庭)에서 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겸손하신 대왕대비의 뜻에 순종해 비록 풍정 연회(豐呈宴會)는 뒤로 미루었지만 좋은 경사가 삼양(三陽)이 회복되는 세수(歲首)에 있는데 어떻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천고에 없는 훌륭한 의식으로 백성들과 더불어 경축하고자 생각한다.	地與久, 其命用申, 譬之月如恒而日如升, 方進不已。 符我惠慶宮癸酉盛典, 稽玉牒而景戌今年, 想昔英廟朝壬辰舊儀, 瞻璇閨而孝子愛日, 此誠萬億年無疆之慶, 抑亦九五福嚮用之期。 寸草之心無窮, 一則以喜, 一則以懼, 南楨之壽是祝, 千歲爲春, 千歲爲秋。 式至今日休, 祐命實荷於天保, 亦有我家禮, 彝典宜擧於昕庭。 慈旨是順於沖謙, 縱緩豐呈之涓吉, 嘉會載屆於回泰, 詎無賁號之揚徽? 肆當曠千古威儀, 乃思與百姓同慶。 草木皆有以自樂。 漢詔克寬, 松柏無不爾或承, 周祜有秩。 覃恩廣惠, 天地之德曰生, 蕩垢滌瑕, 雷雨之作爲解, 自本月一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咸宥除之。 於戲! 王母受玆介, 得其祿而得其名, 翼子詒厥謨, 俾爾昌而俾爾熾。 騰遐祝於南山、北斗, 囿晟化於壽域春臺, 故玆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尹滋承製。】

	한(漢)나라에서 너그러운 명령을 내리니 초목도 모두 기뻐했으며 주(周)나라에서 큰 복을 내려주니 소나무, 잣나무도 무성하게 되었다. 천지와 같은 큰 은덕을 베풀어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고 풀어 주도록 할 것이니, 이달 1일 새벽 이전에 범한 각종 죄 가운데서 사형죄 이하는 모두 용서해 주도록 하라. 아! 대비께 큰 복을 받아 그런 복록과 명예를 얻었으니, 자손에게 계책을 남겨주시어 더욱 융성하게 하셨다. 멀리 남산과 북두칠성에 축원해 온 나라를 즐겁게 오래 사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시하는 것이니 다들 잘 알았으리라 여긴다." 하였다.【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윤자승(尹滋承)이 지은 것이다.】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월 1일 (을미)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의복감과 음식물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의복감과 음식물을 내렸다.	賜老人衣資、食物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월 1일 (을미) 4번째기사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내리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		二十一日。 承文院啓: "卽見中國來咨, 以爲'使臣所帶襁包, 均照章程, 量

(光緖) 12년) 1월 21일(을묘) 1번째기사 중국에서 수출 인삼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기에 그에 대한 회답 자문을 보내기로 하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중국에서 온 자문(咨文)을 보니, ‘사신이 가지고 오는 인삼에 대해서는 모두 장정(章程)을 살펴 헤아려 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돌봐주는 뜻을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특례(特例)에 관계되는 만큼 의당 사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회답 자문을 지어서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予免稅, 以示體恤’云矣。 徵稅蠲減, 係是特例, 則宜有稱謝之擧, 撰出回咨, 以爲入送何如?” 允之。
고종 23권, 23년(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2월 6일(경오) 1번째기사 경기도의 각종 값을 선혜청에서 재감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제관(朴齊寬)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의 저치미(儲置米)를 본색(本色)으로 획급(劃給)하던 것을 기사년(1869)부터 매 석(石)당 대전(代錢)으로 단지 5냥만을 지급하여 군색한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지금 선혜청(宣惠廳)에서 계하(啓下) 받은 것에 따라 각종 값을 전례대로 재감(裁減)한다는 관문(關文)을 보내왔는데, 그렇게 되면 본영(本營)의 꼭 써야 할 비용과 각읍(各邑)의 진배(進拜)에 대하여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지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을 만나 감분(減分)하는 것이 비록 일정한 규례이기는 하지만, 본도의 사세가 요즘 더욱 쪼들리는 데다 또 규례대로 획급하던 것까지 없앤다면 앞으로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계를 올려 청한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六日。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朴齊寬狀啓, 則‘本道儲置米之本色區劃者, 自己巳, 每石代錢, 只給五兩, 其所窘迫, 比前愈甚, 而今因惠廳啓下發關, 各樣價, 依已例裁減。 本營應用及各邑進排, 無以措手, 特許還寢事, 請令廟堂稟處’矣。 遇歉減分, 雖是常規, 本道事勢, 近益凋瘵, 而又除例劃, 則將無以容措, 依狀請還寢何如?” 允之。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 (光緖) 12년) 2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이기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등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내외 아문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종정경(宗正卿),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 2품 이상의 관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왕세자(王世子)의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初八日。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時原任閣臣、賓客、內外衙門堂郎、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賜饌。 以王世子誕辰也。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 (光緖) 12년) 3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관용미를 대납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하납(下納)을 혁파(革罷)한 뒤에도 동래부(東萊府)의 각항의 응하(應下)를 그만둘 수 없어서 이미 참작하여 조치하고 획정하였으니, 모든 공비(公費)에 관계되는 것을 거의 배비(排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관용미(官用米) 1,590여 석(石)은 응당 전체 수량을 거두어 경사(京司)로 올려보내야 하겠으나, 변방 고을의 형편도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하니, 갑신년(1884) 조부터 590여 석은 증미(拯米)의 예에 따라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고 1,000석은 하납을 하는 작전(作錢)의 예에 따라 선혜청(宣惠廳)에 올려보내라고 해도(該道)와 해부(該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下納革罷之後, 萊府各項應下, 不可停闕, 已有參酌措劃, 凡干公費, 庶可排比矣。 其中官用米一千五百九十餘石, 固當全數收上于京司, 而邊邑事勢, 亦合軫念, 自甲申條爲始, 五百九十餘石, 依拯米例, 許令代納, 一千石依下納作錢例, 上送惠廳之意, 分付該道該府何如?” 允之。
고종 23권, 23년		十九日。 詣北苑, 行望拜禮。 王世子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3월 19일(임자)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서 참반 유생(參班儒生)에게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명(銘)에 유학(幼學) 이준용(李埈鎔)과 송병학(宋秉學)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隨詣, 行禮。 設參班儒生應製于勤政殿。 銘, 幼學李埈鎔、宋秉學, 竝直赴殿試。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3월 27일(경신)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6월 18일(경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6월 23일(을유) 1번째기사 전염병으로 인해 별려제를 지낼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전염병이 더욱 성하여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딱하다고 걱정스럽다. 별려제(別厲祭)를 날을 잡을 것 없이 다시 정성스럽게 지내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敎曰: “‘乖沴益熾, 死亡相續’云, 言念民情, 萬萬憂悶。 別厲祭, 不卜日, 更爲虔誠設行事, 分付該曹。”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7월 18일(기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8월 9일(기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8월 15일(을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9월 9일(기해) 1번째기사 경무대에 나아가 칠석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세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初九日。 御景武臺, 王世子侍座, 行七夕製

제를 행하다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9월 13일(계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9월 22일(임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0월 14일(계유)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중국 배의 물건을 빼앗은 도적을 붙잡을 것에 대하여 아뢰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선근(金善根)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石)에 대한 올해의 모곡(耗穀) 2,000석을 전례대로 획급(劃給)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은 곧 연례(年例)가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곡(耗穀)을 이 수량대로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남정철(南廷哲)과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이종승(李鍾承)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선천부(宣川府) 신미도(身彌島) 고라치포(古羅峙浦) 갯가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 중국배 2척(隻) 안에 있던 물건을 전부 탈취하고 배를 불태워버린 이인복(李仁卜)과 김일호(金一浩)를 엄하게 신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金善根所報, 則‘本營關西小米二萬石今年耗條二千石, 依例劃給’爲辭矣。 支放給代, 便成年例, 以海西所在丙寅別備穀耗條, 依此數劃送何如?” 允之。 又啓: “卽見平安監司南廷哲、兵使李鍾承狀啓, 則‘宣川府身彌島古羅峙浦邊來泊中國船兩隻中汁物沒數奪取、燒燼船隻之李仁卜、金一浩, 當爲嚴覈。 而旣在逃避, 今方刻期跟捕。 符同作變之尊位鄭學元等九名, 牢囚該府, 以待朝家

	문해야 하겠는데,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기한을 정해놓고 뒤를 밟아 체포하게 하게 하였으며, 한통속이 되어 변고를 일으킨 존위(尊位) 정학원(鄭學元) 등 9명은 해부(該府)의 옥에 가두어놓고 조정(朝廷)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개를 해 주고 군말 없이 사고팔고 하다가 나중에는 약탈하고 또 불태워버렸으니, 변경 방비가 허술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인심이 사납고 완악한 것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인복과 김일호는 바로 큰 괴수인데 모두 다 도망쳤으니 몹시 통분할 일입니다. 각 진영에 엄격히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염탐하여 체포하고 그 경위를 급히 아뢰도록 하며, 갇혀 있는 여러 놈들은 위의 두 놈을 체포한 다음에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處分'云矣。 始也紹介而旣和賣, 終焉刦奪而又燒燼, 邊禁之踈虞, 已無可言; 人心之兇頑, 胡至此極? 李仁卜、金一浩, 卽是渠魁, 而俱爲逃躲, 萬萬痛惋。 嚴飭各鎭營, 刻期訶捉, 形止馳聞; 在囚諸漢, 待上項兩漢就捕後, 酌處何如?" 允之。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0월 22일(신사) 1번째기사 진찬할 때 치사와 전문을 지어 바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진찬(進饌)할 때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을 마땅히 직접 지어 내려보낼 것이다. 동궁의 치사와 전문은 우빈객(右賓客)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하며, 중궁전(中宮殿) 및 빈궁(嬪宮)의 치사는 내각(內閣)의 제학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할 것이고, 좌명부(左命婦)와 우명부(右命婦)·종친(宗親)·의빈(儀賓)·척신(戚臣)들의 치사는 다 내각에서 지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二日。 敎曰:"今番進饌時, 致詞箋文, 當親撰以下。 東宮致詞箋文, 令右賓客製進; 中宮殿暨嬪宮致詞, 令內閣提學製進; 左右命婦、宗親、儀賓、戚臣致詞, 竝令內閣製進。"
고종 23권, 23년		二十四日。 命協辦內務府事閔泳煥,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0월 24일(계미) 1번째기사 민영환을 진찬소 당상에 임명하다	협판 내무 부사(協辦內務府事) 민영환(閔泳煥)을 진찬소 당상(進饌所堂上)으로 추가하여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進饌所堂上加差下。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1월 10일(기해) 2번째기사 진찬하는 절차를 미루다	전교하기를, “이미 자전(慈殿)의 전교를 받았다. 진찬(進饌)하는 날짜를 오는 정월 보름 사이로 다시 택일하여 들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진찬하는 일은 기한을 이미 뒤로 물렸지만 오는 12월 6일에 치사(致詞)·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직접 올리는 절차는 이전에 하교한 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敎曰: “旣承慈敎矣。 進饌日字, 以來正月望間, 更爲擇入。” 又敎曰: “進饌雖已退定, 來十二月初六日致詞箋文、表裏親上之節, 依前下敎磨鍊。”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1월 11일(경자)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육의전 시민들이 물건을 바칠 때의 폐단을 줄일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육의전(六矣廛) 시민(市民)들이 물품을 바치는 것이 방대하고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많은 정상에 대해서는, 이미 병폐를 물었을 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올렸고 또한 누차 본부(本府)에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시민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본래 각별했는데, 요즘 물가가 날로 더욱 올라가서 내려준 것을 시가(市價)와 비교해보면 이미 몇 배나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이 해마다 쌓이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덜나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은	議政府啓: “立廛市民等, 以其進排浩大、誅求繁多之狀, 旣呈詢瘼所懷, 且有屢訴本府矣。 朝家之軫恤市民, 由來自別, 而挽近物價, 日益勺騰, 以其所下, 較諸市直, 已不啻幾倍落本。 而況應受之未受者, 課歲積疊? 蕩敗難支, 卽必至之勢也, 寧不萬萬矜悶乎? 從今以往, 凡諸進排, 令度支一遵定例, 可減者減之, 可捄者捄之, 而未受之價, 斯速上下, 討索之弊, 嚴加禁斷,

	필연의 형세입니다. 그러니 어찌 천만 딱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일체 물품을 바칠 때에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한결같이 규례를 따르게 하여, 줄일 만한 것은 줄이고 바로잡을 만한 것은 바로잡으며, 받지 못한 값은 빨리 관청에서 내어주도록 하고 토색질하는 폐단을 엄격히 금지시켜서 생업에 안착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민들의 곤란한 정상은 항상 긍휼히 여겨야 할 바인데, 만일 규정 외에 더 바칠 것을 요구한다면 더욱 어떻게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가령 진공(進供)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원래 기한이 있는 만큼 혹시라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정식(定式) 외에 더 쓰는 것은 반드시 시가에 따라서 제급(題給)하며, 빙자하여 토색질하는 폐단은 엄격히 신칙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라. 이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라." 하였다.	俾爲安業奉公何如?" 敎曰: "市民艱絀之狀, 恒所矜恤, 而如或有科外責應, 尤何可支保乎? 雖以進供言之, 自有年限, 毋或違越, 定式外加用, 則必從時價題給, 憑藉徵索之弊, 嚴飭禁斷, 以此成節目施行。"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2월 6일(갑자) 3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탄일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사찬하라고 명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종친(宗親)·의빈(儀賓), 시원임 각신(閣臣), 빈객(賓客), 내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 종정경(宗正卿), 기로사 당상(耆老社堂上), 2품 이상, 승사(承史), 홍문관,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대왕대비전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儀賓、時原任閣臣、賓客、內外衙門堂郎、六曹、兩司長官、宗正卿、耆社堂上、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賜饌。 以大王大妃殿誕辰也。
고종 23권, 23년 (1886 병술 / 청 광서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災結) 9,532결(結)을 특별히 준획(準	

(光緖) 12년) 12월 29일(정해) 6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각 도의 재결을 준획해 주다	劃)해 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3권 끝】	議政府以“各道災結九千五百三十二結, 特許準劃”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三終】]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1월 1일 (기축)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께서 80세가 된 것을 경축하여 치사와 전문을 올리고 사면을 반포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4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대왕대비전의 보령(寶齡)이 팔순이 되는 것을 경축하는 치사(致詞)와 전문(箋文)을 친히 올렸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진하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천명(天命)으로 유구한 역사를 누려 정월 초하루의 가절(佳節)에 끝없이 이어지는 국운을 맞이하였도다. 해마다 오늘 같기를 원하면서 팔순이 되시는 대왕대비께 성대한 의식을 올리고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의 기뻐하는 마음을 미루어 교서를 내린 바이다. 생각건대 우리 대왕대비의 훌륭한 규범은 진실로 옛날 명철한 황후들의 훌륭한 법을 따르셨으니 이 땅에 억만 년 나라의 터전을 연 것은 상서로움이 하우(夏禹)가 도산(塗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四】 初一日, 己丑。 詣勤政殿, 親上大王大妃寶齡八旬稱慶致詞箋文。 王世子陪參。 仍受賀、頒赦。 敎文若曰: “今天其命歷年, 迓綿籙於三始令節, 每歲願如此日, 擧縟儀於八旬慈齡。 爰推一團胥欣, 庸敷十行明誥。 洪惟我太母懿範, 允邁古哲后令猷。 靑邱啓萬億之邦基, 祥叶塗山癸甲; 黃河膺千一之聖運, 降符檀君戊辰。 以坤元配乾元, 至哉! 資生而資始; 惟母道兼君道, 猗歟! 止仁而止慈。 顧寡昧偏荷洪私, 而覆庇式自沖歲。 其在起居飮食, 拳拳乎顧復恩勤, 凡於政令施爲, 諄諄然提命敎誨。 三載位抗裘冕, 奠鴻業於磐石泰山, 兆民化被幈幪, 暨

	山)의 여인에게 장가들어 계갑년에 아들을 본 것에 부합되고, 황하(黃河)가 천 번에 한 번 있을 훌륭한 운수를 받은 것은 무진년(1868)에 단군(檀君)이 내려오심과 부합된다. 왕비의 덕을 지니고 임금의 배필이 되었으니 지극하도다. 모든 복이 이로부터 시작되고 이로부터 생기게 되었도다. 모후(母后)의 도리에 군자의 도리를 겸하셨으니 훌륭하도다.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인자하시다. 돌아보건대 과인은 특별히 큰 사랑을 입어 어린 나이 때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 일상 생활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은혜로 감싸주셨으며, 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순순(順順)히 이끌어주며 가르쳐 주셨다. 3년 동안 수렴청정으로 임금의 위업을 태산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만백성이 교화를 입어 그 혜택이 멀고 궁벽한 지방에까지 미쳤다. 지금 연세가 매우 높지만 옥체가 더욱 강건하시기를 우러러 바란다. 지년(知年)의 기쁨이 바야흐로 깊어지니 세월은 다시 새해가 되었으며 애일(愛日)의 정성이 더욱 간절하니, 봄빛은 길이 영훤당(靈萱堂)에 머무르게 되어 두텁고 많은 복이 무강(無疆)하게 될 것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요, 큰 덕을 좋아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다. 생각건대 이날 만세 삼창을 하는 성대한 예식은 바로 우리 나라에 두 번 있는 아름다운 경사이다. 지극한 덕은 멀리 선후(宣后)를 따르셨으니 진실로 순(舜)요(堯)가 될 수 있고, 장수하는 것은 혜경궁(惠敬宮)을 따르셨으니 명예와 지위를 겸하여 얻으셨다. 풍정연희(豐呈燕喜)는 이미 대왕대비전의 하교를 받들어 조금 늦추었고 축하드리는 이장(彛章)으로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을 바치는 행사를 먼저 거행하니 어찌 뭇 신하들만 송축할 뿐이겠는가? 온 나라가 다같이 기뻐할 것이다. 온화한 기운이 북당(北堂)에 어리니 큰 잔을 들어 만수 축원하고 상서로운 채색 구름이 남극성(南極星)을 드러내니 정성을 담아 보답하는 마음이다. 여러	厖休於遐陬窮澨。 玆當寶筭之極邵, 益仰玉度之彌康。 知年之喜方深, 歲色載回於祥英; 愛日之誠斯切, 春暉長駐於靈萱。 單厚之多福無疆, 自今伊始; 攸好之大德爲本, 在古亦稀。 惟是日三呼盛儀, 寔我家再有休慶。 至德遠邁於宣后, 允矣爲舜爲堯; 遐籌式追於惠宮, 兼之得名、得位。 豐呈燕喜, 旣承慈敎而少遲, 晉賀彝章, 粗伸微忱之先擧。 奚啻群僚之善頌? 思與帀域而同歡。 協氣疑於北堂, 大斗祈耇; 瑞彩呈於南極, 寸草報心。 皆自樂群生, 手之舞、足之蹈, 宜其遐君子, 月如恒日如升。 旣璇閨之獻篚, 又昕庭之宣綍, 自本月初一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於戲! 俾昌、俾熾, 興孝、興仁。 囿一世於化域春臺, 與爾咸乂, 迓百祥於太和元氣, 同我升平。” 【藝文提學鄭海崙製。】 仍傳宗廟春享大祭香祝, 仍詣宗廟、永寧殿展謁, 親上翼宗大王追上尊號冊寶。

	사람들이 모두 춤추며 좋아하니 응당 멀리 떨어져 있는 군자들도 달이 둥글어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항승(恒升)하리라. 이미 대왕대비전에 폐백을 드렸고 또 대궐에서 교서를 반포하니,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에 범한 각종 범죄 중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라. 아, 번창하고 흥성하게 하여 효(孝)에 흥기하고 인(仁)에 흥기하니 온 세상이 교화되는 지역에 들어 너희들과 함께 다스려지고 태화(太和)의 원기(元氣)에서 온갖 상서로움을 맞이하여 나와 함께 태평해지리라." 하였다【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정해륜(鄭海崙)이 지었다.】 이어 종묘(宗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고,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가서 전알(展謁)하였으며 익종 대왕(翼宗大王)에게 추상 존호(追上尊號)와 옥책문(玉冊文)·금보(金寶)을 친히 올렸다.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월 1일 (기축)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의복과 음식물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의복감과 음식물을 내렸다.	賜老人衣資、食物。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월 1일 (기축) 4번째기사 팔도와 사도에 권농 윤음을 내리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월 4일 (임진)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공납을 지체시킨 충주 등의 수령을 파직시킬 것을 그만둘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 공납(公納)을 지체한 일과 관련하여 병조(兵曹)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충주(忠州)·청주(淸州)·태인(泰仁) 세 고을 수령과 충청 병사(忠淸兵使), 전라 병사(全羅兵使)를 모두 파직시킬 것을 청했습니다. 해조(該曹)에서 처벌을 논한 것은 일의 체모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관리를 영송(迎送)하게 되면 폐단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 특별히 보류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명을 지닌 채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되 상납분 중 올려다 바칠 것을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서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신칙하고, 청주(淸州)의 전 수령은 그 사이 이미 내직(內職)으로 옮겨졌으니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初四日。 議政府啓: “向以公納愆滯事, 因兵曹草記, 忠州、淸州、泰仁三邑守令, 兩湖兵梱, 竝爲請罷矣。 該曹論勘, 事體當然, 而此時迎送, 恐有添弊之慮, 竝特爲安徐, 使之戴罪擧行, 上納未收, 刻期督刷之意申飭。 而淸州前倅, 間已內遷, 請置之。”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월 15일(계묘) 1번째기사 세자빈궁의 관례를 행하다	세자빈궁(世子嬪宮)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行世子嬪宮冠禮。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월 27일(을묘) 1번째기사 만경전에 나아가 대왕대비전에게 진찬례를	만경전(萬慶殿)에 가서 대왕대비전께 진찬례(進饌禮)를 행하였다.【상(上)이 제1작(爵)을 올리고 중궁전(中宮殿)이 제2작을 올리며, 왕세자(王世子)가 제3작을 올리고, 왕세자빈(世子嬪)이 제4작을 올리며, 명부(命婦)의 반수(班首)가 제5작을 올렸다.】음식 몇 가지와 치사(致詞)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二十七日。 詣萬慶殿, 行進饌禮于大王大妃殿【上進第一爵, 中宮殿進第二爵, 王世子進第三爵, 世子嬪進第四爵, 命婦班首進第五爵。】。 進味數、致詞。 樂作, 頒花。 又行夜進饌禮。

행하다	꽃을 나누어 주었다. 또 야진찬례(夜進饌禮)를 행하였다.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2월 8일 (병인) 2번째기사 해당 관리들에게 사찬하도록 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규장각(奎章閣)·봉조하(奉朝賀)·종친(宗親)·의빈(儀賓)·종정경(宗正卿), 내무부(內務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육조(六曹),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 2품 이상에게 모두 음식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命時原任大臣、閣臣、奉朝賀、宗親、儀賓、宗正卿、內務府堂郎、六曹·兩司長官、承史、玉堂、春·桂坊、二品以上, 竝賜饌。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2월 28일(병술) 2번째기사 내무부에서 세곡의 전운에 대해 단속할 것을 아뢰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세곡(稅穀)의 전운(轉運)은 중대하니 인천항(仁川港)에 정박하고 짐을 부칠 때 미리 단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운국 낭청(轉運局郎廳)이 윤번(輪番)으로 감봉(監捧)하고, 겨울철 이후에는 호조 참판(戶曹參判)과 참의(參議)가 또한 윤번으로 감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內務府啓: “稅穀轉運, 固有所重, 而仁港泊卸之際, 不容無豫先檢束。 自春至秋, 則轉運郎廳, 輪回監捧, 冬節以後, 則戶曹參判、參議, 亦爲輪回監捧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4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九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윤4월 22일(기유) 2번째기사 가뭄이 계속 되어 기우제를 지낼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요즘 가뭄이 오래도록 계속 되어 익어가는 보리와 이앙(移秧)하지 못한 벼가 다 말라가는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하루가 다급하니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받지 말고 공경히 지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近暵頗久, 將熟之麥、未移之秧, 俱未免枯損, 言念民事, 其所憂悶, 一日爲急。 祈雨祭不卜日, 虔誠設行事分付。”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윤4월 24일(신해) 3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 첫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윤4월 27일(갑인) 2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1일 (정사) 1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初一日。 丁巳。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4일 (경신) 1번째기사 사직단과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사직단(社稷壇)과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初四日。 行四次祈雨祭于社稷、北郊。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7일 (계해) 1번째기사 종묘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初七日。 行五次祈雨祭于宗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8일 (갑자) 2번째기사 여섯 번째 기우제를 날을 받지 말고 지내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감응이 더디니 백성들의 농사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루가 급하니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받지 말고 지내되 내일 향을 받아가는 헌관(獻官)은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하고 제사절차를 거드는 여러 관리들도 특별히 선발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圭璧連擧, 冥應尙遲, 言念民穡, 憧憧憂悶。 日急一日, 六次祈雨祭, 不卜日。 明日受香, 獻官以崇品塡差, 諸執事亦另擇事分付。”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5월 10일(병인) 2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 여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行六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5월 11일(정묘) 1번째기사 사직단에 따로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계속 비가 올듯하면서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절기가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일이 더욱 급하게 되었다. 사직단(社稷壇)에 따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되 대신을 보내서 공경스럽게 설행하라.” 하였다.	十一日。 敎曰: “連有雨意, 一霈尙靳, 節序漸晩, 民事愈急。 社稷別祈雨祭, 遣大臣虔誠設行。”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5월 14일(경오) 2번째기사 종묘에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천벽(薦璧)이 일곱 차례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가망이 더욱 막연하니 농사일과 백성들의 사정이 갈수록 더욱 딱하다. 종묘(宗廟)에 특별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되 대신을 보내서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敎曰: “薦璧已過七次, 而雨意愈邈, 穡事、民情, 去益渴悶。 宗廟別祈雨祭, 遣大臣虔誠設行。”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16일(임신) 1번째기사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특별히 종묘(宗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十六日。 行別祈雨祭于宗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17일(계유) 3번째기사 남쪽 제단에 별기우제를 지낼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봄에는 절기와 어긋나게 정도로 춥고 여름에는 또 지나치게 가물어서 농사일을 망쳤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불타는 것 같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음식을 드는 것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남쪽 제단에 모레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내되, 대신을 보내서 정성껏 설행하라. 제문은 문임(文任)으로 짓게 하라. 향과 축문은 직접 내주겠다.” 하였다.	敎曰: “春已乖寒、夏又亢旱, 穡事之卒痒, 民情之如惔。 念之到此, 錦玉何安? 南壇別祈雨祭再明日, 遣大臣虔誠設行。 祭文令文任撰出。 香祝當親傳矣。”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18일(갑술) 2번째기사 남쪽 제단에 지내기로 한 별기우제를 중지하라고 명하다	남쪽 제단에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내기로 한 것을 중지하라고 하교하였다. 비가 밤새 억수로 퍼부었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계품(啓稟)한 것이다.	命南壇別祈雨祭, 停止。 甘霈連夜注下, 有承政院啓稟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5월 20	종묘(宗廟)에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낸 헌관(獻官) 이하에 차등을 두어 시상	宗廟別祈雨祭獻官以下, 施賞有差。

일(병자) 2번째기사 종묘에 별기우제를 지낸 헌관 이하에게 시상하다	하였다.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7월 6일 (신유) 2번째기사 선혜청에서 대동미를 실은 임선의 파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영광군수(靈光郡守) 이호철(李鎬喆)의 첩정(牒呈)에 의하면, 5월 26일 함평(咸平)의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임선(賃船) 1척이 본 영광군의 어의도(於義島) 앞바다에서 파손되었는데 감합(勘合)문서는 가져다 상고해 보니, 선혜청에 바치는 병술조(丙戌條) 대동미(大同米) 461석(石)과 위태(位太) 33석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제대로 건져내기는 했지만 배가 가라앉은 곳으로부터 곡식을 실어 보낸 고을과의 거리가 하룻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대로 해당 현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곡물을 바꾸어서 상납할 작정입니다. 이 배에 짐을 실은 것이 윤(閏) 4월 10일인데 싣고 떠난 상태에 대해 애당초 감영(監營)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조운법(漕運法)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해당 현감(縣監) 윤자선(尹滋善)이 직무를 태만히 한 죄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으니 아울러 해당 선혜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짐 실은 배가 가라앉은 곳이 고을로부터 불과 하루 노정 밖에 안 되면 곡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바치는 것이 바로 법에 있으니 응당 이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 세곡(稅穀)을 실어 떠나보낸 실태를 고을에서 감영에 보고하면, 감영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은 규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평에서는 곡식을 실어 떠나보낸 일을 애초에 감영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宣惠廳啓: “卽見全羅監司李憲稙狀啓, 則以爲: ‘靈光郡守李鎬喆牒呈內, 五月二十六日, 咸平大同賃船一隻, 致敗於本郡於義島前洋。 而取考勘合, 則丙戌條惠廳納大同米四百六十一石、位太三十三石。 今旣準拯, 而自臭載所, 距穀主邑, 不過一日程。 故依定式關飭該縣, 使之改色上納計料。 此船裝載, 在於閏四月初十日, 而裝發形止, 初不報營, 忽有此臭載之報, 揆以漕法, 萬萬可駭。 該縣監尹滋善溺職之罪, 不可仍置, 竝令該廳稟處’爲辭矣。 臭載所之距邑, 不過一日程, 則穀物之改色以納, 卽是典式所在, 自當依此擧行。 而凡稅穀之裝發形止, 邑以報營、營以修啓, 法例卽然者也。 今此咸平穀之裝發, 初不報營, 則該倅論罪, 自營卽斷, 有何不可? 而乃止於令該廳稟處者, 事體失當, 誠極未安。 該道臣請施以推考之典。 該縣監論罪

	그 수령에게 논죄하는 것을 감영에서 직접 결단하여도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선혜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데서 그친 것은 사체상 참으로 매우 온당치 못하니 해당 감사를 추고하는 벌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해당 현감의 죄를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一款, 令道臣更爲登聞之意, 行會何如?"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7월 8일 (계해) 1번째기사 헌종 대왕의 1주갑 탄신일에 진전에서 작헌례를 친행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달 18일에 진전(眞殿)에서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진행하는데 동궁(東宮)도 따라가 의식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관리들도 참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1주갑(周甲)탄신일이기 때문이다.	初八日。 敎曰:"今十八日眞殿, 當親行酌獻禮, 而東宮亦當隨詣行禮矣。百官入參。" 憲宗大王回甲誕辰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7월 18일(계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서 작헌례를 행하였다. 세자도 따라가 예식을 진행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도성 근교에 불량한 놈들이 무리를 지어 칼을 빼들고 재물을 노략질하니 이 무슨 큰 변괴입니까? 전후에 신칙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여간 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맡은 관리들이 순전히 태만하고 소홀히 하여 더욱 늘어나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처럼 심한 때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릉(溫陵)의 재실(齋室)의 입직관리가 쓰는 물건을 도적질하는 일까지 있었	十八日。 詣眞殿, 行酌獻禮。 王世子隨詣, 行禮。 禮訖, 領議政沈舜澤曰:"輦轂之下、郊坰之近, 不逞群聚, 操刃攘財, 是誠何許變怪? 而前後飭敎, 不翅申嚴, 掌禁之臣, 專事稽忽, 有熾無熄, 莫甚於近日。 至有溫陵齋室入直官服用之攘竊而極矣。 此又古今所未有之變怪, 而肅敬之地, 尤極驚悚。令畿營嚴束各鎭營, 定限譏察, 期於斯

	으니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나 지금이나 있어본 적이 없는 변괴로서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곳에서 있었던 일이니 더욱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경기 감영(京畿監營)을 시켜 각 진영(鎭營)을 엄격히 단속하여 기한을 정해서 기찰하고, 꼭 체포해서 보고한 뒤에 법조문을 적용하게 하되 혹 기한을 어기거나 명령에 대해 태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장(鎭將)을 먼저 파면시켜 놓고 후에 잡아들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울 것입니다.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은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도처에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도 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조정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해당 포도대장에게 우선 감봉하는 벌을 시행하는 동시에 염탐하여 근절하는 방도에 대해 똑같이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도적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전후에 신칙한 것이 얼마나 준엄했는가? 그런데도 내탐하는 것에 태만하여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곳에서 이런 전에 없던 변고가 있었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묘당(廟堂)을 시켜 다시 중앙과 지방에 특별히 신칙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得, 啓聞後用律。 若或愆限、慢令, 則該營將先罷後拿事, 行會。 左右捕廳, 將焉用之? 在在可驚。 未聞就捕, 朝令不行, 胡至此極? 該捕將竝姑先施以越俸之典, 詗拿勦戢之方, 一體嚴飭何如?" 允之。 仍敎曰: "勦盜之前後申飭, 何等截嚴? 而漫漶於詗察, 肅敬之地, 有此無前之變, 聞甚駭然。 令廟堂更加另飭於京外, 期有實效, 可也。"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8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행하다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8월 15 일(기해)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8월 16 일(경자) 4번째기사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하사하다	제주(濟州)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하사하였다.	頒耽羅貢馬。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8월 17 일(신축) 1번째기사 일본의 전복을 따던 배 6척이 제주 모슬포에 정박하여 약탈을 행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과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원택(沈遠澤)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가파도(加波島)에서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모슬포(摹瑟浦)에 와서 정박하고 일본 선원들이 제멋대로 상륙하여 촌락에 뛰어 들어와서는 닭, 돼지를 약탈했고 칼을 빼들고 집주인 이만송(李晩松)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으며, 본 모슬포 백성들인 김성만(金成萬), 정종무(鄭宗武), 이흥복(李興福) 등도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배에 탔던 40여 명이 달려나와서 본 모슬포의 기찰장(譏察將) 문재욱(文在旭)을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의 증표를 받아내고는 즉시 그 섬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十七日。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憲稙、濟州牧使沈遠澤狀啓, 則以爲: ‘加波島採鰒之日本船六隻, 來泊于摹瑟浦, 任自下陸, 突入村家, 剽奪鷄豬, 拔刀毆打家主李晩松, 卽爲致命。 浦民金成萬、鄭宗武、李興福等, 亦被毆打。 而彼船中四十餘名, 來脅本浦譏察將文才旭, 抑捧相和之證標, 旋卽還往該島’云矣。 攘鷄、奪豬, 已極乖常, 拔刀戕人, 是何惡習? 償命一款, 公法自在, 令交涉衙門商辦於日本公

	닭과 돼지를 노략질한 것도 지극히 도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칼을 뽑아들고 사람을 찔렀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약한 버릇입니까. 목숨을 배상하는 문제는 원래 공법(公法)에 있으니 교섭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일본 공사와 협상하여 빨리 합당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使, 以爲斯速了當何如?"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9월 13일(정묘)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9월 15일(기사)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조세와 대동미의 포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보고한 것을 보니, 군산진 첨사(群山鎭僉使) 민영국(閔泳國)이 보낸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고 나서 아뢰기를, '본 군산창(群山倉)의 사공(沙工) 등이 조세와 대동미(大同米)를 포흠(逋欠)한 문제와 관문을 계하한 것으로 인하여, 포흠을 범한 근본 원인과 받아낼 방략을 지금 철저히 엄하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는 도사공(都沙工) 차두후(車斗厚)는 그 자신은 선혜청(宣惠廳)에 바쳐야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관청에서 쓴 빚을 갚을 때와 수량을 분배하여 배에 실을 때 이놈이 시종 주관하지 않은 적이 없는 만큼 일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특별히 해당 진영(鎭營)에 도로 가두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憲稙所報, 則枚擧群山鎭僉使閔泳國牒呈, 以爲: '本倉沙工等稅、大同欠逋事, 因啓下關, 犯逋根由, 徵刷方略, 今方築底嚴覈。 而捕廳在囚都沙工車斗厚, 雖無渠所當納, 廳用償債也、分數裝穀也, 莫非此漢之始終主管, 則不得不一體質問。 行査間, 特令還囚該鎭'爲辭矣。 都沙工卽渠頭領, 而各船裝穀、諸般用費, 俱是此漢之所主張。 則今於鉤覈之場, 這間肯綮, 非渠無以詳質。 捕

	도사공은 바로 그들의 두령으로서 각 배에 곡식을 포장하여 실은 것과 여러 가지 경비를 쓴 것은 모두 이놈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핵하는 마당에서 그 동안의 주요 내막에 대해 그가 아니면 자세히 질문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포도청에 갇혀 있는 차두후를 압송하여 경기 감영(京畿監營)에 넘겨 장교(將校)를 지정하여 해당 군산창(群山倉)에 압송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포흠한 곡식을 빨리 숫자대로 충당한 뒤에 그 실태를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廳在囚車斗厚, 出付畿營, 定將校押送于該倉, 築底行査, 欠逋之穀, 斯速準充後, 形止登聞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0월 1일(갑신) 1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종묘의 동향 대제를 지내고 서계를 받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初一日。 甲申。 詣勤政殿, 行宗廟冬享大祭受誓戒。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0월 4일(정해) 2번째기사 중궁전의 환후가 편치 않음으로 약원에서 의관을 데리고 입진하여 탕약을 결정할 것을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중궁전(中宮殿)의 환후가 편치 않다고 하니 의관(醫官)을 데리고 입진(入診)하여 탕약을 토의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의관(醫官)만 입진하라.” 하였다. 두 번 세 번 아뢰어 본 내의원(內醫院)에서 함께 당직을 설 것을 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다가 네 번째 아뢰어서야 윤허하였다.	藥院啓: “伏聞中宮殿有靡寧之節, 請率醫官入診, 議定湯劑。” 批曰: “只醫官入診。” 再啓、三啓, 請竝直本院, 竝不許。 四啓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10월 26일(기유) 3번째기사 사흘 동안 상선을 줄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겨울 기후가 지나치게 따뜻하여 이것만도 이미 어그러진 것인데 또 이렇게 굉장한 우레 소리가 바로 만물이 폐장(閉藏)하는 시기에 들리니, 혁연(赫然)히 경고하는 것에 어찌 연유가 없겠는가? 돌이켜 반성하니 허물은 실상 나에게 있다.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점점 떨쳐 일어나지 못하며 풍속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게 변해가고 있으며, 나라의 재정은 고갈되어 지탱할 대책이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태도 돌봐 줄 방도가 없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이 돌보아 주는 뜻을 잘 받들지 못한 것이다. 하늘은 아득하지만 보고 듣는 것이 메아리처럼 빨라서 이처럼 면전에서 마주 대하여 일깨우듯 정성스러우시니 정사를 더 잘하여 하늘의 인자한 마음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사흘 동안 상선을 줄여 조금이나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하였다.	敎曰: “冬候過暄, 已是乖盭, 又此轟殷之聲, 乃在閉藏之時, 赫然示警, 豈無所由? 反顧循省, 咎實在予。 紀綱之頹墮, 漸至不振; 謠俗之澆訛, 日趨益下。 國計艱匱, 支調沒策; 民生困瘁, 懷保昧方, 皆不能對越天眷者也。 穹蒼玄遠, 而視聽如響, 諄諄若提耳而面命, 政宜猛加惕厲, 思所以仰答上天仁愛之心矣。 自今日減膳三日, 庸伸予一分敬畏之忱。”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 (光緖) 13년) 11월 14일(정묘)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통진부의 포량미를 강화진 심영에 바치게 할 것을 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의 보고를 보니, ‘통진부(通津府)에서 심영(沁營)으로 포량미(砲糧米)를 바칠 때는 애당초 운반비를 별도로 구획한 적이 없었는데, 부평(富平) 해방영(海防營)에 이속(移屬)되자 선잡비미(船雜費米) 8홉〔合〕씩을 민간에서 더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해영(該營)이 서울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金明鎭所報, 則‘通津府砲糧米納于沁營時, 初無運費之區別, 及其移屬富平海防營時, 船雜費米八合式, 加斂民間。 又因該營之移設京中, 各樣所費, 從以滋多, 勢將更加徵斂, 而亦不無民怨。 依前還付沁營, 海防營所納, 從便移劃於近畿

뢰다	로 이설된 것 때문에 각종 비용이 따라서 불어나 앞으로 더 많이 징수해야 할 형편이 되었으니 또한 백성들의 원망이 없지 않습니다. 이전대로 심영(沁營)에 다시 소속시키고, 해방영(海防營)에 바치던 것은 편의대로 가까운 경기의 다른 고을에 이획(移劃)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잡비를 계속 더 징수하는 것은 백성과 고을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변통하는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통진부(通津府)의 포량미(砲糧米)를 올해부터 전처럼 심영(沁營)에 도로 보내고 해방영(海防營)에 바치던 것은 그 수량을 계산해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고을로 바꾸어 지정하도록 해도와 해영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他邑'爲辭矣。 雜費之荐加徵斂, 果係民邑難支之瘼, 則不容無變通之道。本府砲糧, 自今年條爲始, 依前還送于沁營。 而海防營所納, 量其石數, 以距京便近邑換定之意, 分付該道、該營何如?" 允之。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2월 30일(임자)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각 도의 재결을 특별히 준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결(災結) 1만 4,311결(結)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議政府以"各道災結一萬四千三百十一結, 特許準劃"啓。
고종 24권, 24년 (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2월 30일(임자) 4번째기사 태복시에서 말의 수효를 보고하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의 말 수효가 5,031필(匹)이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高宗統天) 융운 조극(隆運肇極) 돈륜 정성(敦倫正聖) 광의 명공(光義明功) 대덕 요준(大德堯峻) 순휘 우모(舜徽禹謨) 탕경 응명(湯敬應命) 입기 지화(立紀至化) 신열 외훈(神烈巍勳) 홍업 계기(洪業啓基) 선력 건행(宣曆乾行) 곤정 영의(坤定英毅) 홍휴 수강(弘休壽康) 문헌 무장(文憲武章) 인익 정	太僕寺以"各牧場馬畜數爻五千三十一匹"啓。

	효(仁翼貞孝) 태황제 실록(太皇帝實錄) 제24권 끝】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1월 2일 (갑인) 3번째기사 응자노인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응자노인(應資老人)에게 하비(下批)하였는데, 100살 되는 사람은 오구석(吳九錫) 등 8명이었다.	應資老人下批。 百歲者吳九錫等八人。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2월 3일 (을유) 4번째기사 대신 등에게 사찬하다	대신(大臣), 기로소(耆老所) 당상, 승지(承旨), 사관(史官), 규장각(奎章閣) 신하, 여러 시위(侍衛), 시관(試官)에게 사찬(賜饌)하였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2월 8일 (경인) 4번째기사 동궁의 탄신일에 관리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빈객(賓客), 아문의 당상과 낭청, 종정경(宗正卿), 육조,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 2품 이상, 승지(承旨), 사관(史官), 홍문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들에게 사찬(賜饌)하였다. 동궁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賜饌于時原任大臣、奉朝賀、宗親、時原任閣臣、賓客、內外衙門堂郎、宗正卿、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 以東宮誕辰也。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2월 15일(정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서연관(書筵官) 박성양(朴性陽)이 올해 80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니 더욱 우러러 보게 된다. 호조(戶曹)에서 옷감과 음식을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고, 지방관을 보내서 문안함으로써 예우하는 뜻을 보이도록	十五日。 敎曰:“書筵官朴性陽, 今年爲八耋云。 齒、德之尊, 尤切嚮往, 令度支衣資、食物, 優數輸送。 遣地方官存問, 以示禮遇之意。”

박성양에게 옷감과 음식을 보내 예우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다	하라.” 하였다.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3월 10일(신유)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이어 저경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初十日。 詣永禧殿, 行酌獻禮。 仍詣儲慶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3월 16일(정묘)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六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4월 2일(계미) 1번째기사 종묘와 영녕전에 나아가 전알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핀 후 경숙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핀 후 경숙(經宿)하였다. 왕세자가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고 경숙하였다.	初二日。 詣宗廟、永寧殿, 展謁。 仍省牲、省器後經宿。 王世子隨詣, 行禮, 經宿。

하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5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고 제기 등을 살핀 후에 경숙하다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제사에 쓸 짐승과 제기를 살펴 본 후 경숙(經宿)하였다. 왕세자가 따라가 예를 행하고 경숙하였다.	初一日, 壬子。 詣景慕宮, 展拜, 仍省牲、省器後, 經宿。 王世子隨詣, 行禮, 經宿。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5월 17일(무진) 2번째기사 북쪽의 환자에 대해 환곡을 면제하고 바친 사람에게는 돌려 주어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의 상소로 인한 비지(批旨)에, ‘경계로 정하는 문제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6진(六鎭)은 모두 관북(關北)의 중요한 지대로서 본래 척박한 곳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근년에 여러 차례 경계를 정하느라 왕래한 후에 한층 더 영락되어 더욱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측은해지니 돌봐주고 보호하는 도리에서 볼 때 전례를 뛰어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6읍(六邑)의 환자〔還上〕를 특별히 면제해 주어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북양 대신(北洋大臣)에게 이자(移咨)하였으니 회답을 기다려 조처(措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쪽의 환자에 대해서는 성상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특별 명령으로 면제해 주었으니 덕음(德音)이 미치는 바에 지극한 감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안무사(按撫使)에게 행회(行會)하여 삼가 비지를 한문과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방곡(坊曲)에 게시하여 각각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미 바친 사람	議政府啓: “因勘界使李重夏上疏批旨內, ‘勘界事, 令廟堂稟處。 六鎭俱以關北重地, 素稱貧瘠。 而比年累經勘界, 往來之後, 一倍蕩殘, 益無以支存云。 言念民情, 不覺惻然。 其在懷保之道, 不可無拔例之擧。 六邑還上, 特爲蠲給, 以示朝家撫綏軫恤之意’事命下矣。 勘界一款, 頃已移咨北洋, 待回覆, 當有措處。 至若北還事, 聖念垂惻, 特命蠲給, 德意攸暨, 不任感戴之至。 今方行會於按撫使, 謹將批旨, 眞諺翻謄, 揭示坊里, 俾各知悉。 而設有已捧者, 這這還給, 毋或有從中相蒙之弊, 擧行形止, 卽爲馳聞事, 分付何如?” 允之。

	이 있으면 낱낱이 돌려주어 도중에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거행되는 정황을 즉시 치문(馳聞)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5월 24일(을해) 1번째기사 첫 번째 기우제를 날을 받지 말고 지내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요즘 비록 비가 좀 내리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날이 개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흠뻑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夏至)가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 철이 점점 늦어지니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된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는 날짜를 받지 말고 경건한 태도로 정성스럽게 설행할 일을 의조(儀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四日。 敎曰: "邇來雖有鋤浥之潤, 旋卽開霽, 尙靳一霈。 夏至已過, 秧節漸晩。 言念民事, 誠切憂悶。 初次祈雨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分付儀曹。"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5월 26일(정축) 3번째기사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行初次祈雨祭于三角山、木覓山、漢江。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5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二十九日。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6월 1일 (신사) 2번째기사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낸 후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도 보사제를 꼭 같이 설행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규벽(奎璧)78) 을 재차 거행하니 신령이 감응하여 곧 흡족하게 비가 내려 삼농(三農)79) 을 넉넉히 만족시키니 갈망하던 끝에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우제(祈雨祭)는 정지하고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의 보사제(報謝祭)는 전례대로 입추(立秋)를 기다려 택일(擇日)하여 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는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후 3일 안에 오기 시작했으니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의 보사제(報謝祭)도 꼭 같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圭璧再擧, 靈應斯捷, 一雨優洽, 三農慰滿, 渴望之餘, 萬萬喜幸。 祈雨祭仍爲停止, 龍山江楮子島報謝祭, 依已例, 待立秋, 擇日設行。 而今番之雨, 旣始於初次行事後三日之內,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一體設行何如?” 允之。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6월 18일(무술)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다. 왕세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8월 1일 (경진) 2번째기사	시임 및 원임 각신(閣臣), 승지(承旨),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내무부(內務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에게 사찬(賜饌)하였다.	賜饌時原任閣臣、承史、玉堂、內務府堂郎。

시임 각신과 원임 각신, 승지 등에게 사찬하다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8월 7일(병술) 3번째기사 흥완 군부인의 초상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다	전교하기를, “흥완 군부인(興完君夫人)의 초상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보내서 상주를 위로하고 오도록 하며, 각종 비단 5필(匹), 전칠(全漆) 1두(斗), 목(木)과 포(布) 각 5동(同), 돈 1,000냥, 쌀 30석(石)을 특별히 실어 보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興完君夫人喪, 遣左副承旨恤孤以來, 各色緞五疋、全漆一斗、木布各五同、錢一千兩、米三十石, 別爲輸送事, 分付。”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9월 21일(기사) 2번째기사 경상도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청한 세곡을 계미년에 실행한 전례를 참작하여 획급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명진(金明鎭)이, 본 도의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진휼을 설행하여 구제하는 조치를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하면서 올린 장계(狀啓)에, ‘내무부(內務府)의 관문으로 인하여 남겨 놓은 정해년(1887)의 세미(稅米) 3만 석 중에서 처분하고, 상납전(上納錢) 중에서 30만 냥에 한하여 획급해 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교남(嶠南)이 근래에 거듭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미 근심스러웠는데, 올해의 가뭄은 또한 옛날에 보기 드문 것이었으므로 농사는 마침내 흉작이고 백성들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여 도신(道臣)이 분등(分等)하는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계(馳啓)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 도에는 풀어 놓을 만한 창고도 없고, 이웃의 도에도 옮겨올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미년(1883)에 이미 실행한 전례를 참작하여	議政府啓: “慶尙監司金明鎭以‘本道年形被旱判歉, 設賑救濟, 不容暫緩, 狀請丁亥稅米, 因內務府關三萬石留置條中, 冀蒙處分。 上納錢中, 限三十萬兩劃下事, 令廟堂稟處’矣。 嶠南之邇來荐歉, 已屬憂念。 而今年亢暵, 殆亦罕古所未有。 穡事卒痒, 民命近止, 道臣所以不待分等, 先爲馳啓者也。 第念本道旣無可發之倉, 隣省且乏可移之粟。 參互癸未已例, 就道內公納錢中, 限三十萬兩劃下, 以爲辦穀救饑, 毋至有仳離之患。 若乃所請之稅穀正

	도내의 공납전(公納錢) 가운데서 30만 냥에 한하여 획급해 주어 곡식을 마련하여 기근을 구제해서 마을을 떠나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계에서 청한 세곡(稅穀)은 중요한 정공(正供)인 만큼 경솔하게 논의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아울러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 김명진이, 목화 농사가 참혹하게 흉년이 든 상황을 아뢴 장계에, '각영(各營)과 각 아문(衙門)에 상납하는 군포(軍布)와 악공보포(樂工保布)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신 바치고 친군영(親軍營)에 바치는 포보포(砲保布)는 5분의 4에 한하여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문제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京營)의 형편을 보면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어 요구대로 윤허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조(兵曹)와 각 영에는 4분의 1에 한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하고 각사(各司)에 상납하는 포를 돈으로 모두 대납하는 것과 포보(砲保)는 사체가 더욱 각별하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부안(扶安) 등 36개 고을과 진(鎭)의 농사가 흉년든 정상을 낱낱이 진달하면서 올린 장계에, '각 군문(軍門)에 바칠 돈과 면포를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고, 관서(關西)의 산성양향미(山城糧餉米) 3만 석을 특별히 획급해 주고, 대소의 백성들 가운데서 만약 곡식을 희사하여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守令)의 초사(初仕) 자리에 일반적인 규례와 순서를 무시하고 발탁하여 등용하도록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올해의 심한 재해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실 분등(災實分等)을 하기	供攸重, 有難輕議, 竝以此分付何如?" 允之。 又啓: "慶尙監司金明鎭以'綿農慘歉, 狀請各營、各衙門上納軍布及樂工保布, 竝以純錢代捧。 親軍營納砲保布, 限五分四, 許令代錢事, 請令廟堂稟處'矣。 第今京營事勢, 到底匱空, 有難隨請準施。 兵曹各營, 限四分一, 許代各司純錢。 至若砲保, 事體尤別, 置之何如?" 允之。 又啓。 "全羅監司李憲稙, 備陳扶安等三十六邑鎭農形判歉之狀, 狀請'各軍門所納錢木, 限明秋姑爲停退, 關西城餉米三萬石, 特爲劃下, 大小民中, 如有出義捐救者, 守令初仕, 勿拘常格, 不次擢用事, 竝請令廟堂稟處'矣。 今年蘊隆之災, 縱有淺深之別, 而災實分等之前, 道啓中三十六邑鎭之拈出告悶, 可推民情之遑汲矣。 荒歲恤民, 何所靳惜? 而軍需之以木、以錢, 一竝許停, 誠有所甚難愼者。 參互嶠南例, 兵曹各營限四分一, 許代砲保, 所重自別, 置之。 設賑救活, 最係急務, 豫究措辦, 若無可議。 且關西餉總, 現存無多, 實難强責。 就道內公納錢中, 限三十萬兩劃下, 使之從便貿穀, 以爲量

	도 전에 도신의 장계에서 36개 읍과 진을 지적해서 근심스런 상황을 보고한 것을 보면 백성들의 정상이 황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마는 군수용으로 쓰는 면포와 돈을 일체 정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참으로 몹시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니, 교남(嶠南)의 전례를 참작해서 병조 각 영에 바치는 것은 4분의 1에 한하여 대납하도록 허락하고 포보는 각별히 중요하니 그만두소서. 진휼을 실시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만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논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서의 산성양향미 총량도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으니 사실 억지로 요구하기도 곤란하므로, 도내의 공납전(公納錢) 가운데서 30만 냥에 한하여 획급해 주어 편리한 대로 곡식을 사서 적당히 배당하여 빨리 구제할 방도를 찾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적을 없애는 일로 엄하게 거듭 신칙했고 이미 포도대장(捕盜大將)을 논경(論警)하는 거조까지 있었으나 줄곧 게을리하여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욱 횡행하여, 대낮에 길을 막고 마구 물건을 빼앗는가 하면 야밤에 문을 부수고 얼굴을 드러내 놓고 강도질을 하는데, 때때로 수십 명까지 모여 들어 거의 없는 날이 없이 마을이 소란합니다. 그 종적과 소굴에 대하여 탐문하고 기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유독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법과 기강을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만약 알고도 일부러 놓아 준다거나 현장에서 붙잡고도 숨겨준다면, 이것은 결국 도적을 가르쳐서 그 악행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래서야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비록 상사(上司)의 노비나 각 영의 군사들에 대해서도 기찰하여 잡은 후에 그 소속에 가서 명단에서 지우고 법대로 처리할 것이며, 만일 도적	宜排巡, 亟圖拯濟之方何如?" 允之。 又啓: "以戢盜事, 操飭申嚴, 曾有捕將論警之擧。 而一向仫泄, 不惟不卽寢熄, 乃反轉益橫恣, 白晝剪逕, 狼藉剽刦, 昏夜叩門, 露面明火, 無賴之群聚, 或多至數十, 而閭里騷然, 殆無日無之, 則其蹤跡根窩, 獨於訶察之地, 不聞不知乎? 揆以法紀, 駭歎極矣。 苟或見知而故縱之, 現捉而揜護之, 則是適足以誨其盜而養其惡矣。 如是而法何可施? 其自今, 雖上司皂隷、各營兵額, 隨譏隨捉後, 卽其地進來除案, 如法處置。 如或有賊漢之族屬及朋類, 怙强倚勢, 勒奪而作挐者, 一竝治以治盜之律。 而今此申飭之後, 又復如前玩愒, 則當該捕將, 不可尋常論警而止。 惕厲擧行, 刻期逮捕事, 分付何如?" 敎曰: "苟如是也, 安有設置捕廳之本意乎? 依所奏嚴飭, 雖掖隷, 如有譏捉者, 無礙推治, 一邊入稟事, 左右捕將發牌聽傳敎。"

	의 족속이나 친구로서 그들의 강한 세력을 믿고 강제로 빼앗고 난동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일체 도적을 다스리는 형률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번에 신칙한 뒤에도 또 종전처럼 태만하면 해당 포도대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경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집행하고 기일을 정하여 체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이와 같다면 포도청(捕盜廳)을 설치한 본의(本意)가 어디 있겠는가? 아뢴 대로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대궐 안의 하인이라 하더라도 만일 기찰 중에 잡힌 자가 있으면 구애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한편 입품(入稟)하도록 좌우변포도대장에게 패를 보내어 전교를 듣게 하라.” 하였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9월 28일(병자) 3번째기사 충청도 목화 농사의 흉년으로 군포를 모시로 상납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민영상(閔泳商)이 목화 농사가 흉년든 정상을 구체적으로 진달한 장계에서, ‘도내(道內) 각읍(各邑) 군포(軍布)에서 면포로 상납하는 몫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병조(兵曹)의 각 아문(衙門)에 내는 것은 3분의 2를 대납하고, 친군영(親軍營)에 내는 포보(砲保)는 절반을 대납하게 하며,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의 각종 군포에서 모시로 상납하는 것도 내년 가을까지 대납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목화 농사가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건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양남(兩南)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영(京營)의 군수품이 완전히 고갈된 형편에서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議政府啓: “忠淸監司閔泳商, 備陳綿農失稔之狀, 仍請‘道內各邑軍布,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 兵曹各衙門三分二代納; 親軍營砲保, 限折半代納;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亦許限明秋代納事, 令廟堂稟處’矣。 綿農之因旱被損, 勢所不免, 而較諸兩南, 頗有勝焉。 矧今京營軍需之十分枵罄者乎? 然而窮蔀事勢, 不容不存恤。 兵曹各營, 限五分一, 許代各司純錢, 砲保所重尤別, 置之, 七邑苧布, 依所請代納何如?” 允之。

	그러나 흉년든 백성들의 형편을 돌봐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에 대해서는 5분의 1까지 대납을 허락하고 각사(各司)에는 모두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보는 특별히 중한 것인 만큼 그만두고 7개 고을은 청한 대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9월 30일(무인) 3번째기사 대왕대비전에게 진찬하는 예식의 제반 의식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말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게 진찬(進饌)하는 예식을 가을에 거행하겠다는 뜻을 지난번에 명하였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나라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코 풍성하게 거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왕대비의 간곡한 교지를 여러 번 받았으니 인정으로나 예의로나 매우 섭섭하지만 부모의 뜻을 받드는 도리로 볼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반 의식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말도록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東朝進饌之節, 秋間擧行之意, 向有成命。 而以今民憂國計之艱絀, 決不可行豫大之擧, 屢承慈敎之諄諄, 情禮雖極缺然, 其在養志之道, 不可不將順。 諸般儀節, 姑勿磨鍊事, 分付各該司。"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10월 5일(계미) 2번째기사 졸한 흥완군 부인의 장례에 예장 물품을 후하게 실어 보내도록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졸(卒)한 흥완군 부인(興完君夫人)의 장례에 예장(禮葬) 물품을 더 실어 보냈더니, 본가에서 말하기를, '연이어 더 실어 보내라고 한 하교를 받으니 은명(恩命)이 지극히 황송하기는 하지만, 유언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서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戶曹啓: "卒興完君夫人喪禮葬, 更爲輸送, 則本家以爲: '連伏承更爲輸送之下敎, 恩命雖極感惶, 遺意未忍孤負, 又不敢祗受'云。 何以爲之? 敢啓。" 敎曰: "遺意如此, 葬需從厚輸送。"

하다	하니, 하교하기를, “유언이 이러하지만 장례에 쓸 물건은 후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11월 20일(정묘) 1번째기사 대왕대비전의 탄신달이 가까워져 치사와 전문, 표리를 올리다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연세가 많아질수록 장수를 축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더욱이 경사를 축하할 해를 만나고 또 탄신달까지 가까워오니 기쁜 마음으로 칭송하고 축원하는 나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오는 12월 6일에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직접 대왕대비전께 올리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절선(節扇)을 이미 바치지 말게 했지만, 남쪽 백성들에 대한 근심이 더욱 심하니 무릇 폐단을 줄이고 백성을 돌보는 방도에 대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심읍(尤甚邑)에서는 삭선(朔膳)과 절일방물(節日方物)과 물선(物膳)을 명년 가을까지 바치지 말게 하여라. 각 전(殿)과 궁(宮)에 달마다 명절마다 바치는 물선도 이미 대왕대비의 하교를 받았으니 역시 일체로 바치는 것을 중지하여 백성들을 돌봐 주는 뜻을 보이도록 묘당(廟堂)에서 삼남(三南)의 도신(道臣)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日。 敎曰:“慈聖寶齡彌卲, 愈切岡陵之祝。 而且値飾慶之年, 又近誕彌之月, 予小子歡忭頌禱之忱, 曷有其極? 當於來十二月初六日, 親上致詞箋文、表裏于大王大妃殿矣。” 又敎曰:“節扇旣令停封, 而南顧之憂虞方劇, 凡所以省弊存恤之道, 何所靳惜? 尤甚邑, 朔膳、節日方物物膳, 限明秋, 勿爲封進。 各殿、宮朔節物膳, 旣承慈敎, 亦一體停捧, 以示爲民眷眷之意事, 自廟堂知委於三南道臣處。”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11월 22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남쪽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전하(殿下)는 몹시 근심하면	二十二日。 議政府啓:“南民告饑, 宸念憂勤, 荐降特旨, 惻怛懇摯。 至有方物膳、封節扇之蠲停, 此固深軫窮蔀

일(기사) 1번째기사 남쪽 백성들의 기근에 대해 방물과 물선, 절선을 면제하여 재해를 잡아주다	서 거듭 특지(特旨)를 내려 간곡하게 걱정을 했으며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그리고 절선(節扇)까지 면제해 주었으니 이것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깊이 관심을 돌리고 베푼 크나 큰 혜택입니다. 은혜로운 명령이 일단 나가자 온 지역이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영(營)에서 구제하고 재해를 잡아주는 등의 일과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 주고 숨을 돌리게 하는 여러 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방금 차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중요한 진상물품을 특별히 면제하게 했으니 조정에 관례로 바치는 부채도 모두 다 아울러 중지하지 않고서야 전하가 두려워하는 훌륭한 뜻을 우러러 체득하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실제 수량을 가지고 구제물자에 보충하여 쓰도록 각 해도(該道)의 수신(帥臣)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之闔澤曠惠也。 恩言一播, 帀域咸頌。 若其營賑頒災等節, 恤隱舒力諸條, 纔已次第行會。 而莫重進獻, 特令蠲除, 則朝廷例封扇子, 曷敢不一竝停止, 仰體我若恫之盛意乎? 以其容入實數, 俾補賑資事, 分付各該道帥臣何如?” 允之。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11월 24일(신미) 1번째기사 거문도의 농사가 흉년이므로 조세를 상정가로 대신 바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거문도 첨사(巨文島僉使) 신석효(申錫孝)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거문도의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 섬은 저 사람들이 무덤 자리로 차지했기 때문에 섬 백성들이 더는 밭을 일굴 것이 없습니다. 정해년(1887) 몫으로 군자감(軍資監)에 납부할 전세미(田稅米) 1두(斗) 남짓,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할 콩 10석(石) 남짓, 친군영(親軍營)에 납부할 결작미(結作米) 2석 남짓,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대동미(大同米) 30석 남짓을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며 무자년(1888) 몫의 전답(田畓) 가운데서 옛 섬과 진대전(鎭代田) 17결(結) 1부(負)를 영원히 진전(陳田)으로 탕감하고 현재 있는 전(田) 21결 5부 5속, 답(畓) 34부 9속은 5년 동안 조세를	二十四日。 議政府啓:“全羅監司李憲稙, 枚擧巨文島僉使申錫孝牒呈, 以爲:‘島農慘歉, 民無相資, 公稅之責徵末由。 且古島旣因彼人占塚, 更無島民起墾。 丁亥條軍資監納田稅米一斗零、廣興倉納太十石零、親軍營納結作米二石零、宣惠廳納大同米三十石零, 以詳定代納, 戊子條田畓中古島及鎭垈田十七結一負, 永爲陳減在, 田二十一結五負五束、畓三十四負九束, 限五年停稅’爲辭矣。 民物自來蕭索, 鎭樣見方草創, 而重以島農告歉, 際此徵

	물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물건이 원래 보잘것없고 진(鎭)의 모양이 한창 갖추어지고 있는 판에 섬의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들었으니 이런 때 독촉해서 징수하기는 형편상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것이니 돌봐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관청에 바칠 정해년 몫의 쌀과 콩을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신 바치게 하고 무덤이 차지한 곳과 진대전은 영원히 진전(陳田)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전답에서는 우선 3년 동안 조세를 받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토를 개간하도록 신칙하여 제때에 총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督, 勢所難行。 民隱攸關, 不可不恤。 各衙門納丁亥條米太, 特許詳代, 占塚處與鎭垈田, 以永陳施行, 餘外田畓, 姑令限三年停稅, 而另飭勸墾, 趁限復總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11월 29일(병자) 2번째기사 경기 감사가 도 안의 저치미를 본색으로 본영에 획급하여 환곡을 만들 것을 청한 보고를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오준영(吳俊泳)의 보고를 보니, '도(道) 안의 환곡(還穀) 총수량이 본래 넉넉지 못하여 원곡(元穀)을 침범해서 쓰고 해마다 환곡을 만들어 수량을 채워 넣었는데 무인년부터 환곡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환곡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각종 수요를 장차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도 안의 각 읍에 저치미(儲置米) 1,560석에 대하여 을해년(1875)과 정축년(1877)의 규례대로 명년 봄 몫을 본색(本色)으로 본영(本營)에 획급해 주어 돈으로 계산해서 환곡을 만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기 내의 환곡 문서가 원래 영성(零星)하지만 지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그 형편은 필시 본색을 떼어내게 되고, 본색을 대신 채워 넣지 못하면 해마다 하는 지출을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저치미(儲置米)를 본색으로 획급해 주는 것은 이미 옛 규례이고 또 그런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吳俊泳所報, 則'道內還總, 本自不敷, 犯用元穀, 逐年作還充數。 而自戊寅作還, 仍不擧論, 不出數年, 必無還穀乃已。 各項需用, 將何責應乎? 道內各邑儲置米一千五百六十石, 依乙亥、丁丑例, 明春條, 以本色劃付本營, 使之執錢作穀'爲辭矣。 畿內糴簿, 元來零星, 而不得不應下如式, 則其勢也, 至於割本, 割本而無所充代, 則課年支用, 於何措辦? 儲置之本色劃付, 旣是舊規, 且有其例, 特依報辭施行何如?" 允之。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5권, 25년(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12월 20일(정유) 2번째기사 친군영에서 상납이 지체된 쌀과 돈 등을 엄격하게 독촉하여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다	친군영(親軍營)에서 아뢰기를, “본영(本營)에 대한 상납이 지체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하여 관문(關文)으로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각 해읍(該邑)에서는 전부 홀시하면서 그저 태만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 되었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상납을 끝마칠 날이 없습니다. 만약 군수(軍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전에 신칙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상납이 지체되겠습니까? 상납하지 못한 가운데서 쌀은 300석(石), 돈은 3,000냥(兩), 목(木)은 10동(同) 이상입니다. 나주(羅州)에서는 을유년(1885) 몫의 삼수미(三手米)와 넘겨준 대동미(大同米), 정해년(1887) 몫의 넘겨준 대동미를 남평(南平)에서는 을유년, 병술년(1886), 정해년 조(條)의 삼수미를, 영암(靈巖)에서는 을유년 조의 삼수미를, 흥양(興陽)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미를, 보성(寶城)에서는 을유년 조의 삼수미, 병술년의 조의 넘겨준 대동미(大同米)를, 충주(忠州)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미, 포량미(砲糧米), 결작미(結作米)를, 청도(淸道)에서는 을유년, 병술년, 정해년 조의 삼수미를, 순흥(順興)에서는 을유년, 병술년 조로서 급대(給代)한 면포를, 평산(平山)에서는 병술년, 정해년 조의 삼수전(三手錢)과 무자년(1888)년 조의 포보목(砲保木)을, 안악(安岳)에서는 임오년(1882) 조의 삼수전(三手錢)과 무자년 조의 포보목을, 황해 병영(黃海兵營)에서는 정해년 조의 삼수전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령(守令)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응당 바쳐야 할 연조(年條)에 따라 구별하여 조사 확인하고 우선 파출(罷黜)하게 하며,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죄를 주게 해	親軍營啓: “以本營上納愆滯事, 前後關督, 不啻一再。 而自各該邑, 一視弁髦, 徒事漫漶, 今至年終, 尙多未納, 畢刷無期。 若念軍需所重, 先事董飭, 則愆納之夥多, 豈至於此境乎? 未納中, 米三百石、錢三千兩、木十同以上。 羅州乙酉條三手米, 移劃大同米, 丁亥條移劃大同米, 南平乙酉、丙戌、丁亥條三手米, 靈巖乙酉條三手米, 興陽丁亥條三手米, 寶城乙酉條三手米, 丙戌條移劃大同米, 忠州丁亥條三手米, 砲糧米結作米, 淸道乙酉、丙戌、丁亥條三手木, 順興乙酉、丙戌條給代木, 平山丙戌、丁亥條三手錢, 戊子條砲保木, 安岳壬午條三手錢, 戊子條砲保木, 黃海兵營丁亥條三手錢, 未納之當該守令, 令道帥臣, 隨其當納年條, 區別査覈, 竝爲先罷黜, 令該府拿問勘處。 其餘未滿此數之邑, 亦令各該道臣, 一一考尺, 別般嚴督, 限三朔內畢勘。 如過此限, 一體論勘之意, 星火知委何如?” 允之。

	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 숫자가 차지 않는 읍도 각 해당 도신이 일일이 물건을 확인하여 특별히 엄하게 독촉하여 석달 안에 다 마무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기한이 지나면 일체 죄를 논하도록 성화(星火)같이 지위(知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光緖) 14년) 12월 28일(을사) 1번째기사 폐해를 입은 청주의 쌀과 콩을 특별히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통어사(統禦使) 민응식(閔應植)의 보고를 보니, ‘청주(淸州)는 폐해가 우심한 고을로서 전부터 내려오는 부족한 수량과 받아 낼 곳이 없는 수량이 많은바 정공(正供)과 군수(軍需)가 이 때문에 지체되어 을유년(1885)과 병술년(1886) 두 해의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균역청(均役廳)에 바치지 못한 쌀 2,467석(石) 남짓과 콩 580석(石) 남짓을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본 고을은 근래에 영락된 형편이어서 만약 특별히 돌봐주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읍(邑)이 장차 보존되기 곤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통어사(統禦使)는 통제가 새로 시작되는 초기인 만큼 철저히 청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상의 바치지 못한 쌀과 콩을 보고한 내용대로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감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八日。 議政府啓: “卽見統禦使閔應植所報, 則‘淸州以劇弊之邑, 由來不足與指徵無處者其數夥然, 正供、軍需, 因此愆滯, 乙酉、丙戌兩年戶惠、均廳未納米二千四百五十七石零、太五百八十石零, 特許詳定代納’爲辭矣。 本州近成弊局, 苟非別般顧恤, 民與邑將有難保之慮。 況今統禦使節制新創之初, 不容不築底淸帳。 上項未納米太, 依報辭特許詳代, 使之告勘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司僕寺以“各道牧場馬畜數五千一百六十四匹”啓。

(光緖) 14년) 12월 29일(병오) 2번째기사 사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 말 수효를 보고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도의 목장 말 수효는 5,164마리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12월 29일(병오) 1번째기사 한성부에서 인구수를 보고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인구수를 보고하였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 그리고 제주(濟州) 등 세 읍에 모두 원 호수(元戶數)는 158만 4,794호인데, 남자는 337만 7,559구(口)이고 여자는 327만 2,518구이다. 남녀를 합하면 665만 77구이다.	二十九日。 京兆獻民數。 五部、八道及濟州等三邑, 都元戶一百五十八萬四千七百九十四戶, 男三百三十七萬七千五百五十九口、女三百二十七萬二千五百十八口, 男女竝六百六十五萬七十七口。
고종 25권, 25년 (1888 무자 / 청 광서 (光緖) 14년) 12월 29일(병오) 3번째기사 각 도의 재결을 특별히 급재해 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에 재결(災結) 14만 1,100결(結)을 특별히 급재(給災)해 주었다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5권 끝】	議政府"以各道災結十四萬一千一百結, 特許準劃"啓。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光緖) 15년) 1월 1일(정미) 2번째기사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려 보냈다.	下勸農綸音于八道、四都。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내려 보내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월 1일 (정미) 3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리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렸다.	賜老人衣資、食物。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월 7일 (계축) 3번째기사 무안과 전주의 조세 면제와 삼도의 진결에 대한 백지징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의 보고를 보니, ‘무안(務安)과 전주(全州) 두 읍(邑)의 진결(陳結)에 대한 조세를 특별히 면제한 것이 이제는 기한이 찼으며, 삼도(三島)의 진결(陳結)은 아직 일구지 못하고 있고 한재(旱災)가 혹심한 형편이므로 백지징세(白地徵稅)하는 것을 응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무안현(務安縣)의 병술년(1886)과 정해년(1887) 몫의 진결(陳結) 590결(結) 9부(負)와 경진년에 없어져버린 전주부(全州府)의 토지 230결 10부와 삼도의 진전(陳田) 54결 7부에 대하여서는 무자년(1888)부터 조세를 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읍의 진전(陳田)에 대하여서는 여러 해 동안 조세를 감면했으니 이것은 벌써 전에 없던 법인데 이제 다시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폐(陳廢)한 땅에 경작을 권할 수도 없는데다가 더구나 작년에는 가뭄이 혹심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도의 진결로 말하면 먼 곳의 영락된 백성들에게 백지징세(白地徵稅)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니 모두 특별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憲稙所報, 則‘務安、全州兩邑陳結, 特蒙蠲稅, 今旣限滿, 三島陳結起墾末由, 旱災孔酷, 白地徵稅, 在所當念。 上項務安縣丙丁陳結五百九十結九負、全州府庚辰無亡結二百三十結十負、三島陳結五十四結七負, 自戊子減稅’爲辭矣。 兩邑陳結之年久蠲賦, 已是曠典, 則今不當更許展限, 而陳廢之地, 勸耕末由。 況昨年暵憂孔棘, 窮蔀頗頷, 不忍想到。 且以三島陳結言之, 遐澨殘氓, 白徵可矜。 竝特依報請許施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월 15일(신유) 1번째기사 경상도의 혹심한 재해 상황을 감안하여 1000결을 가획하여 감해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명진(金明鎭)이 올린 상소의 비답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전지(傳旨)가 있었습니다. 그 상소의 원본을 가져다 보니, 작년에 재해 상황이 혹심한 상태를 자세히 진달하고 이어 재해를 당한 면적만큼 조세를 감해 주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해에 묘당에서 여러 차례 회답하여 감해 준 것이 어찌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며 또 어찌 나라의 재정을 짐작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도신(道臣)이 한 번 아뢰고 두 번 아뢰고도 이와 같이 간절히 상소를 올려 호소했으니, 특별히 아래 백성들을 돕는 의리를 베풀어 1,000결(結)을 가획(加劃)하여 빨리 감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五日。 議政府啓: “慶尙監司金明鎭疏批有旨, 令廟堂稟處矣。 取見其疏本, 則備陳昨年災形孔酷之狀, 仍請‘見減災準數劃下’事也。 歲前廟覆之連次所劃, 豈無憫恤於民隱? 亦豈無斟酌於國計? 而道臣之一啓、再啓, 至於疏籲, 如是懇到。 特推益下之義, 限一千結加劃, 使之斯速俵散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2월 6일(임오) 4번째기사 전라 감사가 삭감을 받고도 상정가로 대신 상납할 것을 청하자 1,000결의 재해지를 더 급재해 주도록 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묘당(廟堂)에서 현재 사정을 참작하고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재해를 당한 백성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상태를 자세히 진달하고, 이어 부족한 재해지 5만 9,630결(結)에 대한 세납을 상정가(詳定價)로 대신 돈으로 바치게 하여 주도록 청했습니다. 본 도에 기근이 들자 전하(殿下)께서 걱정을 하면서 구제할 물자를 특별히 획급해 준 것이라든가, 바치는 공물을	議政府啓: “全羅監司李憲稙上疏批旨, 自廟堂參酌時宜而稟處事, 命下矣。 取見疏本, 則備陳災民難保之狀, 仍請‘不足災五萬九千六百三十結所納詳定代錢’事也。 本省告饑, 宸念憂勤, 賑需之另劃、進供之特蠲、稅賦之許代、災結之優頒, 迥出常格, 恩施普洽, 朝家之軫恤南民, 可謂靡不用極。

다	특별히 면제한 것이라든가, 조세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것이라든가, 재해지를 넉넉히 잡아준 것은 상격(常格)을 멀리 벗어나서 은혜를 널리 베푼 것이니 조정에서 남도(南道) 백성을 깊이 걱정하는 데서 방법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도에서 상소를 올려 재해지로 잡아줄 것을 청하고 조정에서 다시 헤아려 적당히 감해 준 것이야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삭감을 받고서도 상정가로 대신 상납할 것을 청하는 것은 지나간 규례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훗날의 폐단과 크게 관계되는 것인 만큼 도신(道臣)이 걱정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묘당에서도 경솔히 윤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정가로 대신 바치게 하는 문제는 사실 논의할 문제가 아닌 만큼 그전에 급재(給災)해 준 재해지 외에 1,000결의 재해지를 특별히 더 급재해 주어 빨리 배정한 후에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而大抵道啓請災, 廟覆量減, 豈無所以而然也? 至若見削而直請詳代, 非但往例無據, 大是後弊攸關, 道臣之所不宜煩悶也、廟堂之所不宜輕許也。 詳代一款, 實非可議。 前劃災外一千結, 特爲加劃, 使之急速排俵後, 啓聞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2월 8일 (갑신) 4번째기사 세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신하들에게 사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및 원임 규장각(奎章閣) 관리, 빈객(賓客), 종친(宗親), 종정경(宗正卿), 안팎 아문(衙門)의 당상(堂上官)과 낭관(郎官), 육조와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장관, 2품 이상 관리,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관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들에게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세자(世子)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命時原任大臣、奉朝賀、時原任閣臣、賓客、宗親、宗正卿、內外衙門堂郎、六曹·兩司長官、二品以上、承史、玉堂、春桂坊賜饌。 以東宮誕辰也。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十九日。 議政府啓: “卽見黃海監司趙秉轍狀啓, 則‘長山以南、以北各邑稅

(光緖) 15년) 2월 29일(을사) 1번째기사 장산 이남과 이북 각 고을의 세납을 현물로 바치라고 하였으나 폐단에 관계되므로 대전으로 바치게 하다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병철(趙秉轍)의 장계(狀啓)를 보니, ‘장산(長山) 이남과 이북 각 고을의 세납은 모두 현물로 바치라는 선혜청(宣惠廳)의 행회(行會)가 있었으나, 배로 운반하기 매우 어렵고 백성들의 폐단에 크게 관계되므로 대전(代錢)으로 바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현물로 바치는 것은 원래 종전부터 내려오는 규정이고, 대납(代納)은 단지 임시변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산 이북은 배로 운반하기 매우 어렵고 이남은 풍년이 드는 해가 언제나 드물기 때문에 쌀 대신 돈으로 바쳐온 지 오래입니다. 나라의 재정이 비록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사정도 보살펴 주어야 하는 만큼 해청(該廳)과 해도(該道)가 공문을 주고받아 현재 형편을 참작하여 될수록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納, 竝本色上納事, 有惠廳行會。 而船運極艱, 大關民弊, 以代錢上納事, 請令廟堂稟處’矣。 本色自是舊式, 代納特其權宜。 然長山以北則海運孔難, 以南則豐稔恒罕, 所以以錢代米, 行之久矣。 國計縱有攸重, 民情亦合可恤。 令該廳往復該道, 參酌時宜, 務歸方便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5월 7일(임자) 1번째기사 기한이 지났는데도 조세를 바치는 않은 고을에 대해 한 달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바치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세곡(稅穀)을 대납(代納)하게 한 것은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숨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무(移貿)해다가 반방(頒放)하는 것도 시급한 일인 만큼 기타 공납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방 고을에서 조세를 바치는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도 전혀 바치지 않은 고을이 많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법의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정공(正供)은 사체가 쌀과 돈이 같습니다. 바치는 대로 조선(漕船)에 실어 보내는 규례대로 곡식 수량을 조목별로 진달하고 돈으로 대납한다는 것을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하여, 근면하고 태만한 상황을 상고하는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선 경상(慶尙), 전라(全羅)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해야	初七日。 戶曹啓: “稅穀之許以代納, 爲災民紓力, 而移貿頒放, 亦係時急, 則與他公納有別。 外邑捧稅, 期限已過, 尙多全不納之邑。 苟有一分法綱, 豈至於此乎? 正供事體, 米與錢一也。 隨其畢捧, 依稅船裝發例, 條陳穀數, 以錢代納, 論理狀聞, 以爲考勤慢之意, 爲先分付於嶺、湖兩道道臣, 使之嚴飭各邑, 定限一朔, 趁期督刷, 上納何如?” 允之。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고을에 엄격히 신칙해서 한 달 기한을 정하고 제때에 독촉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5월 10일(을묘) 1번째기사 북원에 나아가 망배례를 행하고 왕세자가 예를 행하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했는데,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 근정전(勤政殿)에 가서 경모궁(景慕宮)에 지내는 하향 대제(夏享大祭)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했다.	初十日。 詣北苑, 行望拜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詣勤政殿, 親傳景慕宮夏享大祭及祈雨祭香祝。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5월 14일(기미) 1번째기사 전라도, 경상도에서 전에 거두지 못한 세납 중 쌀과 콩을 대납하도록 하다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에서 세납 중 그전에 거두지 못한 쌀과 콩을 대납(代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윤허하였다. 두 도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를 했기 때문이다.	十四日。 許施湖南、嶺南稅納舊未收米太代納之請。 因兩道道臣狀請, 政府覈啓也。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5월 14일(기미) 2번째기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두번째 기우제를 지내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行再次祈雨祭于龍山江楮子島。

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光緖) 15년) 5월 17일(임술) 1번째기사 남단과 우사단에서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내다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十七日。 行三次祈雨祭于南壇、雩祀壇。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光緖) 15년) 5월 23일(무진) 2번째기사 네 번째 기우제는 날을 받지 말고 지내도록 통지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날마다 비가 올 듯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으니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받지 말고 오는 25일에 북쪽 교외에는 재상(宰相)을 보내고, 사직단(社稷壇)에는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경건하게 지내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連有雨意, 尙靳一霈。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五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光緖) 15년) 6월 18일(임진)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十八日。 詣眞殿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 (光緖) 15년) 7월 18일(임술) 1번째기사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을 인견(引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引見時原任大臣。 領議政沈舜澤曰: “《東宮日錄》與《書筵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대신들을 인견하여 《동궁일록》과 《서연일기》를 검열하여 찬수하도록 하다	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동궁일록(東宮日錄)》과 《서연일기(書筵日記)》는 모두 소중한 것인 만큼 대조 검열하여 찬수(纂修)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학식이 있고 필재(筆才)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당 관직을 설치하여 그 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직명(職名)은 전서관(典書官)이라고 부르고 춘방(春坊)에서 재주를 시험하게 하여 계하(啓下)하고, 출근 일수를 계산하고 천전(遷轉)하는 등의 절차는 적절히 헤아려 마련하여 절목을 만들고,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日記》, 俱有所重, 不可無照檢, 纂修之人, 另揀有文識筆藝者。 設其官而掌其事, 實合事宜, 職名以典書官爲稱。 令春坊試藝啓下, 其計仕遷轉等節, 商酌磨鍊成節目, 稟旨擧行, 恐好矣。”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8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일기청을 설치하여 《승정원일기》를 편찬하고 당상과 낭청에게 사무를 분장하게 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가 따라 나아가, 행례(行禮)하고 마쳤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지방 각 도의 각 고을에서 진상(進上)하는 약재는 그 토산에 따라 월령(月令)이 있는데, 감봉(監封)하는 사체의 중요함이 더욱 특별하므로 편리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변통하는 데 합당할 것입니다. 충청도(忠淸道)에서 봉진(封進)하는 약재 중에서 좌도(左道)의 27개 고을의 월령 약재는 올가을부터 모두 통어영(統禦營)에 이속하여 봉진을 도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일을 해영(該營)과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편찬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아뢴 바 있으나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訖。 領議政沈舜澤曰: “外道列邑之藥材進上, 隨其土産, 自有月令, 而監封事體, 所重尤別, 量度便宜, 允合變通。 湖西所封藥材中, 左道二十七邑月令藥材, 自今秋爲始, 竝移屬於統禦營, 使之專管封進事, 分付該營該道何如?” 允之。 又曰: “《政院日記》纂輯事, 曾有所仰奏, 而迄今未遑矣。 卷帙旣多, 蒐錄甚繁, 不容不設廳專管, 依已例, 以日記廳爲稱, 堂郎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가 많고 수록할 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청(廳)을 설치하고 전적으로 관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한 규례대로 일기청(日記廳)이라 칭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差出)한 후에 날마다 사진(仕進)하여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差出後, 使之逐日仕進, 分掌擧行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8월 15일(무자)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예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6권,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8월 30일(계묘) 1번째기사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나아가 전배하다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三十日。 詣毓祥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 展拜。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6권,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9월 21일(갑자)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돌이켜 보건대 지금 민사(民事)와 국계(國計)에 곤란한 일은 많고 지탱할 방법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물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벼슬자리에 있는 모든	二十一日。 敎曰:“顧今民國事計之有百艱虞, 無一支持。 固不待予言, 而凡厥在位之所當稔悉者也。 此蓋由予否德, 治不從欲。 而亦未聞有以拯救

요미와 군량의 지급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하다	사람들은 마땅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로 정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곤란을 수습하고 나의 근심을 누그러뜨릴 방책으로 나의 마음을 개발시켜 주는 말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이 또한 한탄을 자아내는 일이다. 가령 당장 긴급한 것으로 말하더라도, 요미(料米)를 주지 못한 지 오래이고 군량도 부족하여 잠시도 느긋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단지 방법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계속 편안히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절로 한심스럽다.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양향청(糧餉廳)의 당상(堂上)과 장수들은 묘당(廟堂)에서 회의하여 알맞게 나누어주고 접제(接濟)할 방도를 마련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강구하여 좋은 쪽으로 품처(稟處)하면 내가 응당 받아들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공납(公納)이 지체되는 것이 요즘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누차 번거롭게 신칙하였지만 하나같이 대충대충 하거나 시일을 끄는 것만 일삼으니 이것이 무슨 사체인가? 한두 해만 조금 넘기면 곧바로 미수하지 못한 구곡(舊穀)이라고 구실을 삼아서 곧 대납(代納)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정퇴(停退)를 청하고 있다. 아무리 사정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정이 점점 궁색해 진다는 점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구나 그렇게 지체된 것은 꼭 민간에서 받지 못했거나 아전들이 축낸 것뿐만 아니라 관장(官長)이 포흠(逋欠)한 것임을 알겠다. 농간을 부리는 것도 부족하여 횡령까지 하니, 이런 간악한 폐단을 안찰하는 지위에서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만일 알고서도 덮어 둔다면 이것이 어떻게 횡령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지금 다시 기한을 정할 필요없이 우선 어느 고을에서 바치지 못한 까닭은 무	裕紓之策, 而開發予衷, 此又所興歎者也。 雖以目下急切言之, 頒廩之久闕, 籌餉之見乏, 尤不可斯須翫愒者, 則只諉之沒策, 而一向恬視可乎? 思之及此, 不覺寒心。 戶、惠、餉堂將臣, 自廟堂會議, 具支調接濟之方, 瀾商講究, 而從長稟處, 予當採納而敷施。" 又敎曰: "公納之愆滯, 未有甚於近日。 屢煩提飭, 一以漫漶捱過爲主, 是何事體? 稍過一二年, 輒諉之舊未收, 仍請許代或停退。 雖若爲民邑事勢, 獨不念國計之漸絀乎? 且況其所淹滯, 必知非民間, 未收非吏逋則乃官逋也。 幻弄之不足, 又從以乾沒, 此等奸弊, 按察之地, 豈有不知之理? 若知之而掩置, 是何異於犯逋乎? 今不必更爲定限, 爲先以某邑未納之緣何委折, 這這查覈, 卽速消詳啓聞之意, 自廟堂罔夜關飭於各該道道臣處, 毋或有如前翫愒。" 又敎曰: "土豪武斷之前後飭禁, 不啻申嚴, 而近來京外聽聞, 在在可駭。 名在朝籍, 恣行非理, 恬不知愧, 稱之士族藉以爲勢, 曾不畏法, 是豈飭躬操行之所可爲? 而求索侵漁, 無所不至, 小民無辜, 將何以堪? 其令內

	슨 곡절인지를 모두 조사하여 즉시 소상하게 계문(啓聞)하라고 묘당에서 밤낮 없이 각 해당 도의 감사(監司)들에게 관칙(關飭)하여 이전처럼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토호의 무단(武斷)에 대하여 전후에 신칙하여 금지한 것이 여간 엄하지 않았으나 근래에 중앙과 지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마다 경악할 만한 일들뿐이다. 이름을 조적(朝籍)에 두고서 비리를 자행하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사족(士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세를 부리면서 버젓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자신을 통제하고 행실을 다잡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갖은 토색질과 침해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무고한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중앙에서는 법사(法司)에서, 지방에서는 수령(守令)들이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적발하여 즉시 의정부(議政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여 법으로 처단하되, 혹시 사적인 인정에 끌려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도이므로 힘써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묘당에서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금령으로 잡기(雜技)를 엄하게 막는 것은 사민(四民)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본업에 근면하여 자기 힘으로 먹게 하며, 게으르고 편안히 살면서 거짓 술수에 힘써 요행수로 이득을 노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런 폐단이 매우 심하여 건달과 무뢰배들이 남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아 한순간에 남의 집을 망하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강탈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도적이 성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연유하니 심히 통탄스럽다. 법사(法司)의 당상(堂上)과 좌우변포도대장(左右邊捕盜大將)들은 그들을 일일	而法司, 外而邑倅, 隨聞摘發, 卽報政府, 亦報巡營, 斷之以律, 毋或拘私而茹吐。 此亦爲民祛害之一端, 惕勵擧行事, 自廟堂嚴加操飭。” 又敎曰: “國禁之嚴防雜技, 欲使四民, 各勤其業, 以食其力, 無令惰怠逸處, 務作詐僞, 以射徼倖之利也。 邇來此弊尤甚, 遊手無賴之騙人取財者, 一日之頃, 每至蕩敗人家, 幾何其不類於剽奪, 而偸竊之興, 亦未嘗不由於此, 甚可痛駭矣。 法司堂上、左右捕將, 其各這這搜捕, 毋或寬貸照法嚴繩。” 又敎曰: “比年以來, 申飭戢盜者屢, 而不惟不能禁止, 乃反翫愒, 養其惡習, 馴致於縱恣陸梁。 京外匪類之嘯聚豪橫者, 莫敢誰何。 閭里爲之騷擾, 道路或多梗塞, 至有狼藉於輦轂之下, 此曷故也? 矧今年穀登稔, 民情稍可舒泰。 而無賴之徒, 旣異饑寒之所驅, 又非穿踰之可比, 肆然而無所顧忌, 遭之者必至蕩析, 豈直爻象之可駭? 亦係民生之難支。 此專在譏訶之責, 而或憚其氣焰, 或慮其黨與, 跡面俱露, 窩穴可尋, 而仍置勿問, 又何故也? 所以有向者廟飭, 而日來傳聞, 又復驚駭, 朝令每歸

	이 수색하여 잡되, 관대하게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근년 이래로 도적을 막으라고 신칙한 것이 여러 차례인데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는 일없이 세월만 보내며 악습(惡習)을 길러 제멋대로 날뛰게 만들었다. 중앙과 지방에서 비적(匪賊) 무리들이 모여 횡포를 부리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 소요가 일어나고 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는 도성 안에서까지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인가? 더구나 올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런데 무뢰배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도둑이 된 무리와도 다르고, 또 담을 뚫거나 담장을 뛰어넘는 좀도둑에 비교할 것도 아니어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날뛰니 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고 길에 나앉게 되니 어찌 해괴한 현상일 뿐이겠는가? 백성들이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염탐하는 관리들에게 있는데 그들의 기세에 눌리거나 그 패거리들이 두려워서, 형적도 다 드러났고 소굴도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문제삼지 않으니 또한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지난날에 조정에서 신칙했던 것인데 요즘 전하는 말을 듣고서 또다시 놀라게 된다. 조정의 명을 매번 형식적으로 여겨서 그런 것인가? 이는 법의 기강이 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을 두려워하는가? 도적을 두려워하는가? 법을 두려워한다면 도적이 없어질 것이고 도적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법이 무시되는 것인데 법이 무시된다면 그것을 어찌 나라라고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포도청(捕盜廳)의 소속이나 각 군영의 병사, 각 궁, 각 사, 양반집	之文具而然乎? 此由法紀不嚴之故也。 其將畏法乎? 畏盜乎? 謂法可畏, 則將無盜矣; 謂盜可畏, 則是無法也。 無法其何以爲國乎? 其自今無論捕屬及各營兵額、各宮·各司·班家徒隷, 顯有其跡, 捉之勿疑, 如或有該屬之執頉作鬧者, 一竝捉致, 治以治盜之律。 鄉外則非但討捕之任。 爲其官守者, 亦可曰不聞不知乎? 各其境內, 其或有盜不捕及隱匿不發者, 道師臣必卽擧實論啓, 以爲勘處亦惟在信賞必罰。 善能譏捕者之厚賞, 不能戢治者之重罰, 著爲令, 必遵無違。 竝將此意, 令廟堂嚴加操飭於兩捕廳及各該道。”

	의 하인을 물론하고 정황이 뚜렷하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체포할 것이며, 만일 해당 관청 소속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함께 잡아다가 도적을 다스리는 법으로 다스리라. 지방에서는 비단 토포사(討捕使)의 직임에 있는 관원뿐만 아니라 수령된 자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각각 자기 경내에 도적이 있어도 체포하지 않거나 숨겨두고 적발하지 않는 사람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반드시 사실대로 거론하고 논계(論啓)하여 감처(勘處)하도록 하라. 이러한 일은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데 달려 있다. 잘 기찰하여 체포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을 주고, 금지시키고 다스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한 벌을 준다는 것이 법령에 밝혀져 있으니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 어기지 말라. 아울러 이런 내용으로 묘당에서 좌우포도청(左右邊捕盜廳)과 각 해당 도에 엄히 조칙(操飭)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9월 22일(을축)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절제없는 사치에 대해 논의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전교했는데, 도적이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사실은 엄하게 기찰하여 체포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 만일 법의 기강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는가? 묘당(廟堂)에서 특별히 신칙하여야 하겠다. 대체로 도적이 준동하는 것은 절제없는 사치에 원인이 있었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의복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데, 계속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항심(恒心)이 없어질 것이며 나중에는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굴게	二十二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訖。 仍召見時原任大臣。 敎曰: “昨以五件事有傳敎, 而雖以竊發言之, 實由於譏捕之不嚴。 苟有法綱, 豈敢如此? 自廟堂另加申飭。 大抵竊發, 未嘗不由於奢侈之無節, 貴賤衣服, 不可辨別, 若此不已, 必無恒心。 而遂至於放辟而無所憚矣。 朝廷之上, 自有品秩, 尊卑服用, 宜別等

	될 것이다. 조정에는 원래 품질(品秩)이 있으니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른 옷차림에서도 마땅히 등급이 구별되어야 하거늘, 난잡하고 분에 넘치게 차림새를 하는 폐단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이제 만일 자질구레한 절목으로 특별히 금지한다면 도리어 더 소란스러운 폐단이 생길 것 같으니 오직 《대전(大典)》에 따라 지키고 어기지 않는다면 규율이 강화되고 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거듭 강조하고 경계하고 신칙하여 나의 신하와 백성들이 옛 습속을 철저히 고치고 유신(維新)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어제 내린 전교가 이미 매우 엄했는데 이제 또다시 성교(聖敎)를 직접 들으니, 이것은 모두 신이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라서 황공하기 그지없어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적을 금지하는 근본은 과연 사치를 금지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복의 문장(文章)에 귀천의 구별이 있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니 《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한다면 민간에서 소란이 없을 것이며 나라의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물러가서 절목으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각 고을의 아전들이 경사(京司)에 상납할 때 정비(情費)가 너무 많다. 감생절목(減省節目)에서 정한 것과 그전에 규례로 정한 것을 아울러 중첩해서 징수하며, 심한 경우에는 정해진 비용을 온전히 내지 않으면 짐을 돌려보내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 갖은 폐단이 모두 일어난다. 고을에서 횡령하는 액수도 이 때문에 많아지며 나라의 재정도 이 때문에 궁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령(守令)을 자주 교체하는 데에 허물을 돌리는데, 이것이 어찌 수령을 자주 교체하기 때문만이겠는가?	級, 而淆雜猥濫之弊, 未有甚於此時, 寧不痛歎。 今若以細瑣節目, 另設禁防, 反恐有滋擾之弊, 惟《大典》遵而無違, 則庶乎爲振綱立法。 自廟堂申明警飭, 俾我臣民, 痛革舊習, 咸與維新也。” 領議政沈舜澤曰: “昨下傳敎, 已是嚴切, 今又躬聆聖敎, 此皆臣不職之罪, 萬萬惶恐, 不知所以仰達。 而戢盜之本, 果莫先於禁奢。 至於衣服之文章貴賤, 自古伊然, 若援《大典》而禁之, 則閭巷無擾, 國法可行。 謹當退以節目仰奏矣。” 敎曰: “近日各邑吏之上納京司, 情費過濫。 減省節目, 與曾前定式, 竝爲疊徵, 甚至全數不納, 還駄而回程, 如是之際, 百弊俱作。 邑逋由是而夥多, 國用由是而窘絀。 而今之言者, 皆歸咎於守令之數遞, 此豈但爲守令數遞之故耶? 雖以政目言之, 設有特敎之或違政格, 銓臣何不覆逆, 予何嘗使之勿言乎? 廟堂亦須知悉此意而另飭也。” 舜澤曰: “階前萬里, 無微不燭, 孰不欽頌。 況有司之臣, 苟聆今日飭敎, 各其惕勵, 庶有實效。 而臣於平日, 不能董率, 至勤宸念, 尤極惶悚矣。” 敎曰: “各邑上

	비록 정목(政目)으로 말하더라도 설사 특교(特敎)가 혹시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전신(銓臣)들이 어째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가? 내가 언제 말하지 못하게 했던가? 묘당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뜻을 알고 특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심순택이 아뢰기를, “궁궐에서 먼 고을의 사소한 일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누군들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담당하는 신하들이 오늘의 칙교(飭敎)를 듣는다면 각각 삼가고 힘써서 실효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평소에 잘 감독하고 이끌지 못하여 전하께서 염려까지 하게 되었으니 더욱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각 고을의 상납분의 미수액을 이미 도신(道臣)에게 실태를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였는데, 미수의 원인을 기어이 밝혀내어 각자에게 해당되는 벌을 주고 결코 조금도 용서하지 않은 다음에야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하고 독려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효가 없으면 규율이 더욱 해이해져서 태연하게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되니, 이번에 묘당에서도 철저히 징계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이제 막 공문을 띄웠으니 각 도에서 보고하는 대로 가볍든 무겁든 간에 처분을 받들어 논경(論警)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에 백성들이 곤궁한 것은 전적으로 수령(守令)들이 탐학한 것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녹봉받는 것만 우선시하고 공납(公納)은 뒷전으로 미루어 언제나 지체하니 늘 통탄스럽다.”	納未收, 旣使道臣査實狀聞矣。 其未收所以然, 期於摘發, 各罪其罪, 斷不少貸然後, 可以懲一勵百也。 雖曰懲勵, 止意無實, 法紀益弛, 恬不知畏, 今番則廟堂亦以大懲創爲心也。” 舜澤曰: “纔已行會各道, 隨啓聞輕重之間, 承處分論警矣。” 敎曰: “近日生民之困悴, 專由於守令之貪汙。 而且不畏法令, 惟以廩俸爲先, 公納爲後, 每每愆滯, 常所痛歎矣。” 舜澤曰: “愆納之弊, 果或多出於此, 而爲守令者, 亦豈盡然? 苟能先公後私, 則必不至如此之甚。 而將於愆納査照, 自當隨現定罪矣。” 敎曰: “近日雜技盛行, 閭里市井, 多有蕩産, 且京外之土豪武斷, 橫恣侵虐, 無所忌憚, 聽聞日駭。 此皆不畏國法之故也。 國法行然後朝廷尊矣, 朝廷不尊則國不可爲國。 而今朝廷命令, 可謂不出闕門, 誠極寒心矣。” 又敎曰: “近日風俗渝薄, 朝體蕩弛, 奉朝令遵廟飭, 全無畏憚, 視同尋常, 此何道理? 此何紀綱? 且聞諸臣, 各於其室, 徒自歔欷憂歎, 若職事不擧, 則輒歸之上, 而若初無干涉者然。 何嘗有各職其職, 開發予衷者乎?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조세 납부를 지체하는 폐단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지만 어찌 수령으로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겠습니까? 만일 공(公)을 우선시하고 사(私)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반드시 이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납 지체에 대하여 조사하여 드러나는 대로 정죄(定罪)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잡기가 성행하여 마을과 시정(市井)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토호들이 무단으로 침탈을 자행하면서 거리낌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날마다 들려오니 경악스럽다. 이것은 모두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의 법이 시행된 다음에야 조정이 존중되는데, 조정이 존중되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명령이 대궐문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겠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즘 풍속이 투박하고 조정의 위신이 다 무너져서 조정의 명과 의정부(議政府)의 신칙을 받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심상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이며 이것이 무슨 기강인가? 그리고 듣건대 여러 신하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한숨이나 쉬고 탄식이나 하면서, 직무가 거행되지 않으면 곧 책임을 위에 전가하고 마치 애초에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언제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거행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 준 적이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신하들은 응당 잘 알아두라. 나는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5백 년 왕업을 이어 받았는데 과인에 이르러 모든 법도를 태만하게 처리함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부지중에 두렵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전하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신은 더욱 황송하여 아뢸 말이 없습니다.”	今諸臣在此矣, 自當諒悉。 而肆予纘承我太祖大王五百年丕丕基, 至于寡躬, 百度之怠慢, 何至於此? 不覺惕然有懼也。” 舜澤曰: “聖敎至此, 臣尤惶懍, 無辭可達矣。”

	하였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0월 7일(기묘) 5번째기사 전 교리 임원상이 사치를 억제하는 것과 검박한 생활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전 교리(前校理) 임원상(林爰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진전(眞殿)에 다례를 행할 때 사치를 억제하고 검박한 생활을 숭상하라는 내용으로 애통한 조서를 반포하면서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한 사람도 보완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이 없다고 하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성조께서 마련한 제도가 이제 와서 허물어져 점점 수습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데,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는 신하들이 그것을 명백히 다스리고 고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니 나라에 인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한다.’라고 했고 전(傳)에 이르기를, ‘인재가 있으면 정사가 거행된다.’ 했고, ‘인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인심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했으며, 또 이르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지 못하겠는가?’ 했습니다. 임금이 인재를 얻으면 재능에 맞게 일을 시키고 예우하며 임무를 분담하여 성과를 이룩하게 하며, 상을 줄 때는 친하지 않다고 해서 빼놓지 말고 벌을 줄 때는 가깝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사가 이룩되고 제도가 정해진 다음에는 임금이 위에서 편안하고 신하들은 아래에서 수고하며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에 대한 네 벼리가 펼쳐지게 되고 모든 법도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잠깐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일 뿐이니 그것을 어찌 반드시 경지가 높아서 시행하기 어려운 데서 찾겠습니까? 지금 폐단마다 바로잡지 못한 정사는 물론 일일이 손꼽아 열거할 수 없으니 마치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지만, 위에서 절약을 숭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밖의 것은 다 하나를 들면 셋을 돌이키게 되고 벼릿줄을 들면 그물코가 펼쳐지듯이 될 것입니다.	前校理林爰相疏略: 伏聞眞殿茶禮時, 以抑奢崇儉, 渙發哀痛之詔, 至有大小臣僚, 一無拾補納約爲敎云云。 列聖朝制作, 今爲隳壞, 駸駸然莫可收拾, 而君臣上下, 不念所以修明更張之道, 可謂國有人乎? 經曰: “天工人其代之”, 傳曰: “人存政擧”, 又曰: “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又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人主旣得人矣, 則器使之禮遇之, 分任責成, 賞不遺遠, 罰不阿近。 及其治成制定也, 君逸於上, 臣勞於下, 四維旣張, 百度惟貞, 特轉移間事耳, 何必求諸高遠難行者哉? 目今弊弊不振之政, 固不可僂指枚擧, 有若莫可下手者然, 而自上旣有崇儉之念, 則餘皆擧一而反三, 綱擧而目張矣。 何以言之? 侈風一祛, 則財用不節而自節, 土木之役, 電燈之費, 祈禱之需, 自爾消磨淨盡矣。 不寶遠物, 所寶惟賢, 則諸國知我國之視渠物如糞土, 當自爾逡退, 師我之不暇矣。 然則宮禁肅靜, 朝野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치스런 기풍이 일단 제거되면, 경비를 애써 절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절약될 것이니 토목공사, 전등설치비용, 기도에 드는 비용이 자연히 깨끗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온 물건을 보배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물건을 썩은 흙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고는 응당 스스로 물러가서 우리를 본받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궁금(宮禁)이 엄숙하게 되고 조정과 재야(在野)의 기풍이 깨끗하게 되며, 불순한 학문이 단절되고 도적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명백한 실효이고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을 가려 차출하는 것, 관방(官方)과 자격(資格)에서 옛 법을 따르는 것, 과거와 과시(課試)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역시 차례로 진작(振作)될 것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말하자면 30년에 한 번씩 다시 양전(量田)하는 것은 나라의 공통된 법인데 이 정사가 거행되지 않은 지 지금 몇 백 년이 되었습니다. 경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방을 쌓는 것은 관개에 편리하게 하려고 한 일인데 제언사(堤堰司)가 혁파된 이후 각 궁가들이 함부로 차지하지 않는 고을이 없으며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도 관청에 소속시켜 각 고을에서 해마다 수축하고 그 세를 받게 한다면 해마다 바치는 정공(正供)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군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양복을 입고 서양의 군사기예를 배우는 것은 심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일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군사들이 그들과 뒤섞여 그들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경우에도 구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술책에 빠진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옛날로 돌이키는 것이 급선무입	淸明, 左道斷絶, 盜賊屛息。 玆豈非崇儉愛民之明效大驗耶? 若爾則方伯守令之擇差也, 官方資格之循古也, 科擧課試之公平也, 亦當次第振作矣。 至於田土, 三十年一改量, 有國之通典也。 此政不擧, 幾百年于玆, 則經用之不敷, 實由於此矣。 堤堰卽利於灌漑者也, 堤堰司革罷以後, 各宮家冒占, 無邑無之, 而利歸於私, 是亦可以屬公, 使各邑年年修築而收其稅, 則此與惟正之供無異者也。 至於軍制, 則我軍之着洋服習洋技, 甚無謂也。 脫有不幸, 與彼交戰, 則我軍與彼淆雜, 雖逃入其中, 莫可分曉, 此安知非墮其術中耶? 此復舊之急先務也。 至於鼓鑄典圜局, 初年所鑄, 差强爲用矣。 近者無非入水不沈, 隨手破碎, 名曰當五, 實則一葉也。 物價之刁騰, 生民之困瘁, 良以此也。 臣愚以爲到今革罷, 有難遽議, 自今以一分錢施行, 加鑄葉錢通行之, 則雖或有弊上生弊之慮, 恐非今日之名存而實無也。 伏乞聖明旁通幽隱, 下酌民言, 隨弊修補, 先王朝良法美意之久廢不擧者, 以時變通之, 則少無欠於向日之暫壞矣。

	니다. 동전 주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국(典圜局)에서 초기에 주조한 것은 꽤 강하여 쓸 만하였으나, 요즘에 만들어진 것은 너무 얇아서 물에 들어가도 잠기지도 않고 손만 닿으면 부서지며 명목적인 가치는 엽전의 5배에 해당하지만 실제 가치는 엽전과 동일하니 물가가 치솟고 백성들이 곤궁한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신의 견해로는 지금에 와서 혁파하는 것에 대하여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지만, 이제부터 엽전 한 푼 가치의 돈으로 사용하되 엽전을 더 주조해서 통용한다면, 설사 폐단 위에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명목적 가치만 있고 실제 가치가 없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감추어진 폐해를 널리 알아보고 아래로 백성들의 말을 참작하며, 폐단이 생기는 대로 고쳐서 조종(祖宗)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오랫동안 폐지되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때에 맞게 변통한다면, 지난날에 잠시 허물어졌던 일도 전혀 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적합한 인재를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재를 얻는 것이 어려운 듯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이제 높은 관리 이하부터 아래로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되 그 재능과 기량이 모두 합당하면 상을 주어 장려하고 적임자가 아니면 처벌하여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감추지 않을 것이고 초야에는 버려진 현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골에 묻혀 있던 선비들이 모두 달려와서 힘을 다하여 왕조에 서기를 원한 다음에 하나하나 임금의 마음으로 가려 두었다가, 그것을 재능에 따라 구별하여 위로는 임금을 돕게 하고 아래로는 세자를 받들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바로잡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방도는 이	《易》曰: "窮則變、變則通", 此皆得人然後事也。 得人似難而實易。 今使九卿下至庶僚, 各擧所知其才器俱當者, 則賞賜以奬之, 非其人則誅罰而警之。 則嘉言罔伏, 野無遺賢。 草茅遺逸, 擧皆奔走效力, 願立王朝然後, 一一簡在帝心, 區以別之, 上以之輔導聖躬, 下以之翼戴春宮, 修齊治平之道是矣。 顧今傷痛而憂懼者, 有難疏擧, 而特以日月之明, 暫爲雲翳也。 惟殿下懋哉。 夫國家, 大器也, 至寶也。 凡人之得一器一寶而傳之于子孫, 申申詔勖, 惟恐其典守者之不得其人, 或至失墜虧傷。 況國家寶器, 何等重大之物, 付諸不知輔相之道爲何如者? 至於唾可治腫, 捫鼻而伴食, 不能自任以天下之重, 只有患得患失之心, 此臣所以爲殿下得人難易之誦也。 不讀書不經事若伊人, 靦然擔夯大任, 若固有之者, 儘不知爲國家之爲何件物也。 此臣所以痛恨不已, 繼之以握拳透瓜, 嚼齒穿頰者也, 此實在廷臣僚之罪也。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가슴 아프고 걱정스러운 일을 상소에 다 열거하기가 어려우나 단지 해와 달의 밝은 빛이 잠깐 구름에 가려졌을 뿐이니 오직 전하가 애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나라는 큰 기물이며 지극한 보배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개의 기물이나 한 개의 보물을 얻어도 자손에게 물려주고 거듭 훈계하면서 그것을 맡아 지킬 적임자가 아니어서 혹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나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물며 나라라고 하는 보기(寶器)는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그런데도 정승(政丞)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심지어 침〔唾〕으로도 종기를 고칠 수 있건만 코나 문지르며 공밥이나 먹으면서 천하의 중임으로 자임하지 못하고 그저 벼슬의 득실만 근심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이 전하께서 적임자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일에 대한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큰 임무를 맡아서 마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모두 나라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이 계속 통탄스럽게 여기면서 손톱이 살을 뚫고 나오도록 주먹을 꽉 쥐고 이가 뺨을 뚫도록 입을 꽉 다무는 까닭입니다. 이는 실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1월 15일(정사) 1번째기사 군량이 모자라므로 해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현재 군량이 모자라는데 달리 조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해서(海西)의 사환(社還)의 남아 있는 것 중에서 5,000석만 각읍(各邑)에 나누어 배당하고, 겨	十五日。 內務府啓: “現今兵餉告絀, 無他容措之道, 就海西社還餘在中, 限五千石, 量宜分排於各邑, 而冬候尙暄, 火速輸納于親軍營事, 分付何如?” 允之。

서의 사환의 남아있는 중에서 각 읍에 배당하도록 하다	울 날씨가 아직 따뜻하니 시급히 친군영(親軍營)에 실어다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1월 20일(임술) 2번째기사 삼남 연해 등지의 외국 상선과 어선의 폐단에 대해 부호 김정근을 사검관으로 파견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삼남(三南)의 연해(沿海) 등지에서 외국의 상선(商船)과 어선이 몰래 빠져나가려고 꾀하여 제정된 장정(章程)을 어깁니다. 그런데 지방의 관리가 금지하지 못하여 폐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법을 세워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호군(副護軍) 김정근(金禎根)을 특별히 사검관(査檢官)으로 정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 보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 “三南沿海等地, 外國之商舶漁船, 潛駛圖漏, 違犯定章, 地方官吏, 莫有禁制, 致滋流弊, 此不容不派員稽察, 設法防範。副護軍金禎根, 另定査檢官, 不日下送, 以爲禁辦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1월 29일(신미) 4번째기사 중궁전의 보령이 만40세가 되었으므로 고포하고 경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중궁전의 보령(寶齡)이 만40세가 되었으니 고포(告布)하고 경축하는 절차를 의조(儀曹)에서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中宮殿寶齡, 恰滿四旬, 告布稱慶之節, 令儀曹磨鍊。”
고종 26권, 26년		初五日。 賓廳議啓: “英宗大王廟號望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2월 5일(병자) 1번째기사 빈청에서 영종 대왕과 정성 왕후, 정순 왕후의 망단자를 의계하다	빈청(賓廳)에서 영종 대왕(英宗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望單子)를 영조(英祖)로,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정문 선무 희경 현효(正文宣武熙敬顯孝)로, 존호 망단자(尊號望單子)를 중화 융도 숙장 창훈(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원렬(元烈)로,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정현(正顯)으로 의계(議啓)하였다.	‘英祖’, 諡號望‘正文宣武熙敬顯孝’, 尊號望‘中和隆道肅莊彰勳’, 貞聖王后尊號望‘元烈’, 貞純王后尊號望‘正顯’。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2월 16일(정해) 1번째기사 무이만호를 혁파하고 백성과 돈, 쌀을 이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감리경흥통상사무(監理慶興通商事務) 김우현(金禹鉉)의 보고를 보니, ‘본 고을을 경장(更張)할 때에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로 뜻을 보여주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덕원(德源)의 전례대로 본부(本府) 경내에 사는 선비와 무사 중에서 해마다 공도회(公都會)에 입격시킬 1인과 무과 1인을 뽑아 가자(加資)할 사람까지 합쳐서 3과(窠)를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하여 방목 끝에 붙여 계문(啓聞)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멀리 변방에 사는 선비와 무사들에 대해서는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정사를 시행해야 하고 또 덕원의 전례도 있으니, 문예(文藝)는 매년 가을에 한 사람을 뽑아서 공도회 방목의 끝에 붙이고, 무기(武技)는 우등 두 사람을 뽑아서 1과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1과는 가자하여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안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안무사(安撫使) 남정순(南廷順)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흥부(慶興府)는 성첩(城堞)과 관청 건물이 곳곳이 허물어졌는데, 이제 고을을 옮기려고 하지만 모두 원하지 않으므로 예전 터에 그대로 관청 건물을 중건(重建)하고 성첩	十六日。 議政府啓:“見監理慶興通商事務金禹鉉所報, 則‘本邑更張之時, 使民安接之方, 不容不示意, 依德源例, 本府境內儒武中, 每年取公都會入格一人、武科一人、加資三窠, 修報按撫營, 付之榜末, 以爲啓聞’爲辭矣。 遐陬儒武, 合施慰悅之政, 而且有德源已例, 文藝則每年秋取一人, 付之公都會, 武技則取優等二人, 一窠直赴, 一窠加資, 報兵曹施行之意, 分付按撫使何如?” 允之。 又啓:“卽見按撫使南廷順狀啓, 則‘慶興府城堞公廨, 隨處頹圮, 今欲移邑, 擧懷不願, 仍舊基重建衙舍, 改築城堞。 而時値冬沍, 使之待開春始役, 慶源、鍾城、穩城等處津民一百六十八戶。 移屬該邑, 西水羅等三鎭中, 撫夷萬戶革罷, 以其鎭民

	을 고쳐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니 초봄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경원(慶源), 종성(鍾城), 온성(穩城) 등의 나루터에 사는 백성 168호를 이 고을에 이속시키며 서수라(西水羅) 등 3개 진(鎭) 가운데 무이 만호(撫夷萬戶)를 혁파하고 그 진의 백성과 돈, 쌀도 이획(移劃)하도록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해읍(該邑)의 중요성은 원래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 나라의 국경이 교차된 곳인 만큼 무릇 백성들을 돌보고 미리 대비하는 방도를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락한 상태는 날마다 더 심해져 관청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아전들과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지금은 고을이 고을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도 모르게 걱정하며 탄식하게 되어 이 때문에 지난날 관문(關文)으로 신칙한 것입니다. 고을을 옮기는 문제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과연 억지로 행하기 어려우니, 예전 그대로 중건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봄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소서. 이웃의 가까운 고을의 나루터에 사는 민호들을 이속시키고 무이 만호를 혁파하는 문제는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민호와 돈과 쌀은 적당히 조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及錢米, 亦爲移劃事, 竝請令廟堂稟處'矣。 該邑所重自別, 且有三國交界, 凡厥恤民豫備之道, 固當靡不用極。 而凋敗之樣, 日甚一日, 衙廨盡頹, 吏民皆散, 今至邑不爲邑之境。 言念及此, 不覺憂歎, 所以有向日關飭者也。 移邑一款, 民所不願, 則果難强行, 仍舊重建之節, 豫爲料理, 待春始役。 隣近邑鎭戶之移屬, 撫夷萬戶之革罷, 竝依狀請許施, 以其民戶錢米, 量宜措處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 26권, 26년 (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2월 30일(신축) 1번째기사 각 도의 재결을 1만 6,786결로 비준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의 재결(災結)을 1만 6,786결(結)로 특별히 비준하여 급재(給災)해 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三十日。 議政府以"各道災結一萬六千七百八十六結, 特許準劃"啓。 【高宗太皇帝實錄卷之二十六終】

급재해 주도록 하다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6권 끝】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3월 2일(신미) 2번째기사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및 기사 당상을 인견하고 음식을 하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인견(引見)하고 음식을 하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전하의 효성에 감응되어 동조 전하(東朝殿下)의 옥체가 빨리 회복되었으니, 무릇 오늘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 고하면서 모두 만수무강의 복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효도를 장려하는 어진 정사를 미루어 경사를 기념하는 분부를 크게 베풀어 장차 온 나라와 함께하고자 은혜를 베풀고 널리 경축하기 위하여 기신(耆臣)을 부르고 기로 유생(儒生)에게 시험을 보이시니, 이것은 실로 더없이 큰 길상(吉祥)이고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시려는 생각입니다. 신들이 몸소 이 모임을 보게 되었으므로 더욱더 기쁘고 송축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길이길이 장수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내 마음의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引見時原任大臣及耆社堂上, 賜饌。 領議政沈舜澤曰: “聖孝所感, 東朝殿下玉度, 遄臻康復, 凡今日宇內含生, 欣欣胥告, 咸祝萬壽無疆之福。 我殿下特推錫類之仁, 誕宣識喜之敎, 將與一國而覃恩廣慶, 召耆臣而試耆儒, 此誠莫大之吉祥, 同樂之宸念也。 臣等躬覩斯會, 益切忭頌, 拜獻松柏岡陵之祝矣。” 敎曰: “予心歡祝, 何以形喩?”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0일(기미) 1번째기사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죽과 미음을 드십시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二十日。 藥院口啓: “請進粥飮。” 敎曰: “罔極。”

약원에서 죽과 미음을 들기를 청하다	“망극하다.” 하였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0일(기미) 2번째기사 대행 대왕대비의 영상을 재궁에 안치하고 빈소를 만들다	인시(寅時)에 대행 대왕대비(大行大王大妃)의 영상(靈床)을 태원전(泰元殿)에 이봉(移奉)하고, 오시(午時)에 대렴(大斂)을 하였으며, 신시(申時)에 재궁(梓宮)에 안치하고 빈소(殯所)를 만들었다. 아울러 제사를 지냈다.	寅時, 大行大王大妃靈床, 移奉于泰元殿; 午時, 大斂; 申時, 奉下梓宮, 成殯, 竝設奠。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0일(기미) 4번째기사 입관한 다음의 보 문양을 그려서 씌우는 것에 대해 각 년의 전례대로 하라고 명하다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아뢰기를, “입관(入棺)한 다음에는 보(黼) 문양을 그려서 씌우는데 《상례보편(喪禮補編)》에는 단지 분을 칠하여 채색한다고 기록되었으며, 각년(各年)의 등록(謄錄)을 보면 당분(唐粉), 이청(二靑), 삼청(三靑), 니금(泥金), 니은(泥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하니, 각 년의 전례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殯殿都監啓: “正入棺衣畫黼, 《補編》只以粉彩載錄, 而取考各年謄錄, 則用唐粉、二靑、三靑、泥金、泥銀矣, 今番則何以爲之?” 敎: “以依各年例爲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1일(경신) 1번째기사 약원에서 다시 죽과 미음을 들 것을 청하	약원(藥院)에서 다시 아뢰기를, “죽과 미음을 드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망극하다.” 하였다.	二十一日。 藥院再啓: “請進粥飮。” 敎曰: “罔極。”

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4월 22일(신유) 8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우부승지(右副承旨) 이중하(李重夏),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희원(李喜元)이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망극한 상황에서 이처럼 번거로운 청을 듣고 싶지가 않다." 하였다.	院議啓【右副承旨李重夏、同副承旨李喜元】:"請復膳。" 批曰:"罔極之中, 不欲聞此等煩請矣。"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4월 22일(신유) 9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문득 성복(成服)을 하고 나니 애통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이런 때에 상선을 회복하라고 청하는 것은 듣고 싶지가 않다." 하였다. 재차 계사(啓辭)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앞서의 비답을 통해서 잘 알았을 것이니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	藥院口啓:"請復膳。" 批曰:"成服奄過, 慟霣彌切, 此時常膳之請進, 不欲聞之也。" 再啓。 批曰:"前批可諒悉, 勿爲煩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4월 23일(임술) 4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藥院口啓:"請復膳。" 再啓。 竝不允。

할 것을 청하다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3일(임술) 6번째기사 홍문관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부제학(副提學) 김석진(金奭鎭), 응교(應敎) 정규회(丁奎會), 부응교(副應敎) 신정균(申政均), 교리(校理) 이범찬(李範贊), 이승구(李承九), 부교리(副校理) 김경규(金敬圭)·이해창(李海昌),수찬(修撰) 오춘영(吳春泳)·이윤재(李允在), 부수찬(副修撰) 공재범(孔在範), 박사(博士) 민영찬(閔泳瓚), 정자(正字) 민병한(閔丙漢)이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玉堂聯箚【副提學金奭鎭、應敎丁奎會, 副應敎申政均, 校理李範贊、李承九, 副校理金敬圭、李海昌, 修撰吳春泳、李允在, 副修撰孔在範, 博士閔泳贊, 正字閔丙漢】: "請復膳。" 賜批不允。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4월 24일(계해) 1번째기사 빈청에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빈청(賓廳)에서 연명 계사(聯名啓辭)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매번 경들의 간곡한 청을 볼 때마다 심히 완고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양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재차 계사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아무리 이렇게 계속 간곡히 청하더라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이것 역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3차 계사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비록 이렇게 간곡히 고하고 나 또한 경들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으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서로 되풀이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	二十四日。 賓廳聯啓:"請復膳。"批曰: "每見卿等之懇, 尤覺冥頑之甚, 宜其有見諒也。" 再啓, 批曰: "卿等雖如是懇懇不已。 所難强抑者, 情事也, 勿復煩請。 亦所厚望。" 三啓, 批曰: "卿等雖以此告懇, 予亦有復于卿等而苦企者, 勿復以不欲聞之說相聞也。"

	하였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4월 26일(을축) 1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간절히 제기하고 빈계(賓啓)에서 요청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따를 생각을 해야 하겠다." 하였다.	二十六日。 藥院口啓:"請復膳。"批曰: "卿等之懇, 賓啓之請, 迄可休矣。 不得已, 當思勉從矣。"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4월 26일(을축) 2번째기사 빈청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빈청(賓廳)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간곡히 재촉하면서 윤허를 받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으므로 할 수 없이 억지로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것은 변함이 없다." 하였다.	賓廳議啓:"請復膳。"批曰:"卿等之懇迫, 有若不得請則不止者, 雖不得已勉從, 不安於心則自如矣。"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1일(기사)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제,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 조전(朝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己巳。 詣殯殿, 行朔奠、朝奠、晝茶禮。

조전,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1일 (기사) 2번째기사 오늘 주다례를 행할 때에 백관은 참가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주다례(晝茶禮)를 행할 때에 백관(百官)은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敎曰: “今日晝茶禮, 百官入參。”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5일 (계유)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단오제 겸 조전을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단오제(端午祭) 겸 조전(朝奠)을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五日。 詣殯殿, 行端午祭兼朝奠, 仍行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7일 (을해)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산릉 도감 및 국장 도감에서 쓸 미태를 규례대로 획송하라고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산릉 도감(山陵都監) 및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쓸 미태(米太)를 규례대로 획송(劃送)하라고 명하였다.【산릉도감에는 친군영(親軍營)과 진휼청(賑恤廳)의 미(米) 각각 250석(石),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목(木) 각각 10동, 총어영(總禦營)의 목 20동(同)을 획송하고, 국장도감에는 친군영과 진휼청의 미 300석, 호조와 선혜청의 목 각각 15동을 획송하였다.】	初七日。 因政府啓: “請山陵都監及國葬都監需用米太, 命依例劃送【山陵都監, 親軍營、賑廳米各二百五十石, 戶兵曹、惠廳木各十同, 總禦營木二十同; 國葬都監, 親軍營、賑廳米三百石, 戶、惠廳木各十五同】。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5월 16일(갑신) 1번째기사 영여가 떠날 때 산릉에 갈 것이므로 제반 의식 절차를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아! 나 소자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성 전하(慈聖殿下)의 살뜰하고도 은정 깊은 보살핌을 받아온 지 이제 30년이 되어 오는데 만 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망극한 슬픔을 당했으니 종사(終事)의 모든 절차에는 정성을 다하려고 한다. 설사 예(禮)에 없는 것이라도 인정에 따라 의리를 발현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예에 있는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영여(靈轝)가 떠날 때에는 산릉(山陵)에 따라가 조금이나마 애도의 정을 풀 것이니 제반 의식 절차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十六日。 敎曰:“嗚呼! 予小子, 粤自沖歲, 蒙被我慈聖恩勤顧復之私, 于今垂三十載, 蔑有萬一之仰報。 而遽當此罔極之痛, 凡於終事之節, 欲效忱誠者。 雖無於禮者, 亦可以因情起義, 況於禮有之乎? 靈轝進發時, 當隨詣山陵, 少伸哀慕之忱, 諸般儀節, 令該曹照例磨鍊。”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5월 20일(무자)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할 때 백관에게 참석하라고 명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백관(百官)에게 참석하라 명하였다. 공제(公除)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二十日。 詣殯殿, 行晝茶禮, 命百官入參。 公除翌日也。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5월 25일(계사)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五日。 詣殯殿, 行晝茶禮。

를 행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27일(을미)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5월 29일(정유)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고 재궁 앞에 가서 봉심한 다음 총호사와 빈전도감 제조를 인견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설행하고 이어 재궁(梓宮) 앞에 가서 소리 내어 울고 봉심(奉審)한 다음에 총호사(總護使)와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를 인견(引見)하였다. 재궁 전체에 가칠(加漆)한 후에 문안을 했기 때문이다.	二十九日。 詣殯殿, 行晝茶禮。 仍詣梓宮前哭泣奉審訖。 引見總護使、殯殿提調。 梓宮全體加漆後問候也。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6월 1일(기해)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제와 조전,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조전(朝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己亥。 詣殯殿, 行朔奠、朝奠、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6월 3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三日。 詣殯殿, 行晝茶禮。

(신축)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6월 5일 (계묘) 1번째기사 내일 상 자를 쓴 뒤에 지내는 별다례는 백관이 참가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상(上) 자(字)를 쓴 뒤에 별다례(別茶禮)는 백관(百官)이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初五日。 敎曰: “明日書上字後別茶禮, 百官入參。”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6월 11일(기유) 1번째기사 대전의 탄일이므로 발인 전 대행 대왕대비전에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방물을 봉진할 것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오는 7월 25일은 대전(大殿)의 탄일(誕日)로서 빈전(殯殿)에서 발인(發引)을 하기 전인데, 그 전에는 이런 경우에 대행 대왕대비전(大行大王大妃殿)에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방물(方物)을 살아 있을 때의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一日。 禮曹啓: “來七月二十五日, 大殿誕日, 在於殯殿發引之前, 而在前如此之時, 大行大王大妃殿諸道方物, 像生時例而封進矣, 今亦依此擧行何如?”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6월 15일(계축)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망제를 조전과 겸하여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조전(朝奠)과 겸하여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殯殿, 行望祭, 兼行朝奠, 仍行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6월 29일(정묘) 5번째기사 산릉에 3년 동안 제사에 쓸 고기값으로 1만 냥을 대궐에서 내려 보내다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에 3년 동안 제사에 쓸 고기값으로 1만 냥을 대궐에서 내려 보내고, 양주목(楊州牧)에서 진배(進排)하던 시탄(柴炭)은 정사년(1857)의 규례대로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진배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山陵三年內祭享肉種價, 一萬兩內下矣, 令楊州牧進排柴炭, 依丁巳年例, 畿營進排事分付。”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7월 1일(기사)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삭제, 조전,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 조전(朝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己巳。 詣殯殿, 行朔奠、朝奠、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7월 7일(을해)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조전과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初七日。 詣殯殿, 行朝奠、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7월 12일(경진) 1번째기사	빈전(殯殿)에 나아가 친히 진향(進香)하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二日。 詣殯殿, 親進香, 仍行晝茶禮。

빈전에 나아가 진향하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7월 15일(계미) 2번째기사 산릉도감에서 공사의 물자가 떨어졌으므로 친군영, 호조, 선혜청에서 쌀과 무명을 획송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본 도감에 이미 떼 준 쌀과 무명［木］을 다 쓰고 남은 것이 없는데, 응당 지출해야 할 허다한 경비를 계속 댈 길이 없으니 쌀과 무명을 더 획하(劃下)하소서.’ 하였습니다. 공사는 복잡한데 물자는 다 떨어졌으니 친군영(親軍營),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에서 쌀을 각각 100석(石), 호조(戶曹)에서 무명 3동(同), 선혜청에서 무명 2동을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山陵都監所報, 則‘本都監已劃米木, 用盡無餘, 許多應下, 塗抹無路, 米木更爲劃下’爲辭矣。 工役旁午, 物力告罄, 親軍營、戶曹、惠廳米各一百石, 戶曹木三同, 惠廳木二同, 劃送何如?”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7일(갑진) 1번째기사 효모전에서 지내는 제사의 의식 절차에서 왕세자의 아헌의 예절을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효모전(孝慕殿)에 지내는 초우제(初虞祭)로부터 졸곡제(卒哭祭)까지와 사시(四時)·납향(臘享)·속절(俗節)의 제사, 삭제(朔祭), 망제(望祭)를 친히 행하는 의식 절차를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왕세자(王世子)의 아헌(亞獻)의 예절을 규례대로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初七日。 禮曹啓: “孝慕殿自初虞至卒哭祭及四時、臘享、俗節、朔望親行儀節, 今當磨鍊, 而王世子亞獻禮節, 依例磨鍊乎?” 敎曰: “依例磨鍊。”
고종 27권, 27년		十三日。 命畿營因山時各驛人馬留京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13일(경술) 1번째기사 인산 때 각 역의 사람과 말이 먹을 양식과 먹이를 더 획급해주라고 명하다	인산(因山) 때 각역(各驛)의 사람과 말이 서울에 머물면서 먹을 양식과 말 먹이로 쌀과 콩을 각각 20석(石)씩 특별히 더 획급해주라고 경기 감영(京畿監營)에 명하였다. 감사(監司)가 보고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糧料米、太各二十石, 特許加劃。 因道臣報請, 政府覆啓也。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15일(임자)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망전, 조전,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전(望奠)과 조전(朝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殯殿, 行望奠、朝奠、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18일(을묘) 2번째기사 호조에서 대상 날까지 쓸 시탄과 채소에 대해 정사년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별단에 써서 들이고 계하하기를 기다려 선혜청에서 값을 주도록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전례(前例)를 가져다가 상고하니, 산릉에 현궁(玄宮)을 묻은 날부터 대상(大祥) 날까지 조석(朝夕)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에 쓸 시탄(柴炭)과 채소를 본 조에서 마련하여 계하(啓下) 받은 후, 선혜청(宣惠廳)에서 계품(啓稟)하여 값을 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정탈(定奪)하고 한결같이 정사년(1857)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되 계하하기를 기다려 선혜청으로 하여금 규례를 상고하여 값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봉상시(奉常寺)와 사옹원(司饔院)에서 관리하는 사포계(司圃契)·내자계(內資契)·공인계(貢人契)와 하인들에게 나누어 줄 한 가지 조항도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戶曹啓: “取考前例, 則山陵自下玄宮日至大祥日, 朝夕上食、晝茶禮所用柴炭菜物, 自本曹磨鍊啓下後, 自宣惠廳啓稟給價矣。 今亦依定奪, 一從丁巳年例磨鍊, 別單書入, 而待啓下, 令宣惠廳考例結價。 奉常寺及司饔院所管司圃契、內資契、貢入契與下人等處分結一款, 請亦令依例擧行。”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8월 21일(무오) 2번째기사 산릉도감에 획급한 쌀이 떨어졌으므로 선혜청에서 쌀 50석을 더 획급하여 보내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본 도감에 이미 획급한 쌀은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어 허다하게 지급해야 할 것들을 메꾸어 나가기가 사실 어려우니, 쌀 100석(石)을 다시 획급하여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큰 역사(役事)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앞서 획급한 것이 또 이렇게 떨어졌으니, 선혜청(宣惠廳) 쌀 50석을 더 획급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山陵都監所報, 則‘本都監已劃米, 用盡無餘, 許多應下, 果難塗抹, 米一百石, 更爲劃下’爲辭矣。 大役今幾垂訖, 前劃又此告罄, 惠廳米五十石, 加劃以送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8월 25일(임술) 1번째기사 산릉 공역에 내탕전 60만 냥을 내려 보내어 적당히 나누어 쓰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산릉의 공역(工役)이 방대하여 탁지부(度支部)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많은데, 복정(卜定)을 이미 정지하였고 공물(貢物)도 군색한 형편이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60만 냥을 내려 보내어 적당히 나누어 쓰도록 분부하도록 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산릉 결소(結所)에 많은 물건을 바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말이 들린다. 경기(京畿) 백성들의 공억(供億)에 따른 폐단을 염려하여 내탕전 5만 냥을 특별히 획급하여 내려주니, 적당히 분배하여 백성들의 힘을 펼 수 있도록 기백(畿伯)과 양목(楊牧)에게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五日。 敎曰: “今番山陵工役浩汗, 度支之責應且多, 而卜定旣停, 貢勢亦窘。 特下內帑錢六十萬兩, 量宜排用事, 分付。” 又敎曰: “山陵結所許多進排, 聞甚艱窘。 爲念畿民供億之弊, 內帑錢五萬兩, 特爲劃下, 量宜排用, 以紓民力事, 分付畿伯、楊牧處。”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26일(계해)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二十六日。 詣殯殿, 行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8월 28일(을축) 1번째기사 빈전에 나아가 빈전을 여는 제사를 지내고 찬궁을 연 후에 조전을 행하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빈전(殯奠)을 여는 제사를 지내고 찬궁(欑宮)을 연 후에 조전(祖奠)을 행하였다.	八日。 詣殯殿, 行啓殯奠。 啓欑宮後, 行祖奠。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1일(무진)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삭전, 조상식,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初一日。 戊辰。 詣孝慕殿, 行朔祭、朝上食、晝茶禮。 王世行亞獻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약원(藥院)에서 상선(常膳)을 회복할 것을 청하여 구두로 아뢰니, 윤허하지 않	藥院口啓, 請復膳。 不允。

(光緖) 16년) 9월 2일 (기사) 2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9월 4일 (신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삼우제를 지내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삼우제(三虞祭)를 지냈다. 왕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初四日。 詣孝慕殿, 行三虞祭。 王世子行亞獻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9월 4일 (신미) 2번째기사 약원에서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다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口啓)에, “상선(常膳)을 회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재차 계사(啓辭)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애통한 심정은 원래 끝이 없으나 걱정하고 아끼는 정성을 또한 어찌 헤아리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슬픈 정황 속에서 고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더없이 미련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藥院口啓, 請復膳。 不允。 再啓, 批曰: “慟慕之情事, 自有無窮, 而憂愛之忱誠, 亦豈不諒? 且不欲以細節堅持於哀遑中, 玆以勉從, 尤不覺頑然之甚矣。”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9월 6일	효모전(孝慕殿)에서 사우제(四虞祭)를 지냈다.	初六日。 行孝慕殿四虞祭。

(계유) 1번째기사 효모전에서 사우제를 지내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9일 (병자)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 겸 구일제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 겸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初九日。 詣孝慕殿, 行晝茶禮, 兼九日別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10일(정축) 1번째기사 효모전에서 육우제를 지내다	효모전(孝慕殿)에서 육우제(六虞祭)를 지냈다.	初十日。 行孝慕殿六虞祭。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13일(경진)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졸곡제와 주다례 겸 별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졸곡제(卒哭祭)와 주다례(晝茶禮) 겸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十三日。 詣孝慕殿, 行卒哭祭、晝茶禮、兼別茶禮。 王世子行亞獻禮。
고종 27권, 27년		十五日。 詣孝慕殿, 行晝茶禮。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15일(임오)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16일(계미) 1번째기사 익종 대왕의 주갑이 되는 연월에 진전에 작헌례를 친행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아, 올해 5월은 곧 우리 익종(翼宗)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주갑(周甲)이 되는 연월(年月)이다. 나 소자가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마는 지금 엄청난 불행을 당한 중에 예법에 구애되어 선침(先寢)에 전알(展謁)하지 못했으니, 옛날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이 더욱 다시 끝이 없다. 28일에 진전(眞殿)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여 미치지 못한 정성을 조금이나마 풀어야 하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 국휼(國恤) 때에 총호사(總護使)가 전후로 애를 쓰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니 격외(格外)의 은전(恩典)이 없을 수 없다. 특별히 표피(豹皮) 1령(令)을 내려 나의 뜻을 표시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十六日。 敎曰:“嗚呼! 今年五月卽我翼考上賓之周甲年月也。 予小子追遠感慕, 曷有其極? 而方在巨創之中, 禮制有拘, 未得展謁先寢, 舊痛今哀, 益復罔涯。 當於二十八日, 親行酌獻禮于眞殿, 小伸不洎之忱矣。” 又敎曰:“今番國恤時總護使之前後勞勩, 殫竭誠力, 不可無格外之典, 特賜豹皮一令, 以表予意, 自承政院傳送。”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9월 26일(계사) 3번째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칙사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접견하고 다과례(茶果禮)를 행하였다.	御勤政殿, 接見勅使, 行茶果禮。

를 접견하고 다과례를 행하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9월 28 일(을미) 1번째기사 진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한 다음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다음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는데,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二十八日。 詣眞殿, 行酌獻禮。 仍詣孝慕殿, 行晝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10월 6 일(임인) 1번째기사 광주부에는 강으로 된 면적을 조사하여 수량대로 덜어주도록 하다	광주부(廣州府)에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강(江)으로 된 면적을 조사하여 채워 넣지 못한 106결(結) 5부(負)를 수량대로 덜어주며, 평안도(平安道) 각읍(各邑)과 각진(各鎭)의 장부에 오르지 않은 화전(火田)은 4분의 1을 임시로 감면하고, 진전(陳田)과 화전을 도로 더 일군 것은 모조리 계산하여 면제하는 것을 중지하며, 충청도(忠淸道)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에서는 모시〔苧〕를 대전(代錢)으로 바치는 것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윤허한다고 하교하였다. 해당 각 도의 수신(守臣)들이 장계로 청한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었다.	初六日。 命廣州府流來成川査括未充結一百六結五負, 準劃; 平安道各邑鎭帳外火田, 四分一權減, 陳田、火田還加起執總, 停免; 忠淸道舒川等七邑苧納代錢, 竝爲許施。 因各該道守臣狀請, 政府覆啓也。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10월 6 일(임인) 2번째기사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황해 병사(黃海兵使) 민영기(閔泳綺)가 보고한 것을 보니, ‘수영패(隨營	內務府啓: “卽見黃海兵使閔泳綺所報, 則以爲‘隨營牌入防, 多年停番之餘, 責以徵赴, 則邑勢民情, 必致罔措, 依已例停番, 毋論元保軍每名二兩式, 收

원군과 보군에게 각각 2냥 씩 군포 값을 거두어 장정을 고용하게 하다	牌)를 방어에 내 보내고 여러 해 동안 번(番)드는 것을 중지하던 끝에 불러서 가도록 독촉한다면, 고을 형편과 백성들의 실정으로 보아 반드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니, 지나간 예대로 번 드는 것을 중지하고 원군(元軍)과 보군(保軍)을 막론하고 매 명당 2냥 씩 군포(軍布) 값을 거두어 장정을 고용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군포를 거두는 것은 원래 옛 제도가 아니고 장정을 고용하는 것도 요즘의 예입니다. 면밀하게 하는 뜻으로 보면 심히 허술하지만 임시변통으로서 그것을 시행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는 만큼 우선 보고 내용대로 윤허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布雇丁'爲辭矣。 收布原非古制, 雇丁亦是近例。 揆以綢繆之義, 甚涉疎虞, 而權宜行之, 已多年所, 姑令依報辭許施何如?"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0월 8일(갑진)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동향 대제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지낸 다음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初八日。 詣孝慕殿, 行冬享大祭, 仍行晝茶禮。 王世子行亞獻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0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대신들이 병이 회복된 것과 관련하여 경사 때 연회를 베푸는 일을 아뢰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김병시(金炳始), 우의정(右議政) 조병세(趙秉世)이다.】 "이번에 병이 나으신 기쁨은 종사(宗社)의 한없는 복이며, 신하된 자로서는 경사 때 연회를 베푸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연이어 시행해야 할 일이 쌓여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 이제 이렇게 청하는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十六日。 時原任大臣聯箚【領議政沈舜澤、判府事金弘集·金炳始、右議政趙秉世】 略:"今番乃瘳之慶卽宗社無疆之福, 爲臣子者, 飾喜之擧, 靡不用極。 而連値事會, 尙爾仍循, 今玆之請, 尙云晩矣。 三慶咸湊, 百祿益遒,

	세 가지 경사가 다 합하여지고 모든 복이 더욱 모여들게 되었으니, 어찌 위로 열조(列朝)에게 고하고 아래로 온 나라에 선포하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지극한 간청을 따라서 간절한 바람에 부응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청은 내 마음이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이런 때에 그런 일은 논의할 겨를도 없다. 그러나 만나서 청하고 계속 글로 간청하면서 윤허를 얻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을 작정이고, 또 여러 날 서로 고집하는 것도 번쇄한 일이니, 비록 부득이하게 억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내 마음은 편치가 않다.” 하였다.	烏可無上告列祖、下布八域之擧也? 伏願特循至懇, 以副顒若之望焉。”批曰:“今此之請, 予意所不欲爲。 此時之所未暇議。 而以面以疏, 懇懇不已, 有若不得請不止, 曠日相持, 亦係煩屑, 雖不得已勉從, 於予心有不安矣。”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0월 17일(계축) 3번째기사 경축하는 명칭은 대전, 중궁전, 세자궁의 병환이 회복된 세 경사를 합하여 축하한다라고 부르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하여 억지로 따른다는 비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널리 알리고 축하하는 행사는 합설(合設)하여 거행하고, 경축하는 명칭은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 세자궁의 병환이 회복된 세 가지 경사를 합하여 축하한다.’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묘(宗廟)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며, 축하할 좋은 날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추택(推擇)하게 하였는데, 오는 11월 3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날로 정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禮曹啓: “因時原任大臣聯箚, 旣伏承勉從之批旨矣。 告布陳賀, 當爲合設擧行, 慶名以‘大殿、中宮殿、世子宮患候平復, 合三慶’稱號何如?” 允之。 又啓: “告廟頒敎陳賀吉日, 令日官推擇, 來十一月初三日爲吉云。” 敎曰: “以此日定行。”

	하였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11월 8일(갑술) 2번째기사 대전과 중궁전, 동궁의 환후가 회복된 경사와 관련하여 과거를 설행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 동궁(東宮)의 환후가 회복된 경사와 관련하여 이미 종묘(宗廟)에 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으니,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바로 응당 시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숙종(肅宗) 경인년(1710)과 순조(純祖) 임술년(1802), 당저(當宁) 을유년(1885)의 예에 따라 증광시(增廣試)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啓: “今此三殿宮患候平復之慶, 旣已告廟頒赦, 設科取士, 乃是應行之典。 依肅宗庚寅、純祖壬戌、當宁乙酉之例, 以增廣磨鍊何如?” 允之。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11월 11일(정축)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동지제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동지제(冬至祭)를 지낸 다음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十一日, 詣孝慕殿, 行冬至祭, 仍行晝茶禮。 王世子行亞獻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 (光緖) 16년) 12월 1일(병신) 3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고 석상식을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詣孝慕殿, 行晝茶禮, 夕上食。 王世子隨詣, 行禮。

올리다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2월 2일(정유) 1번째기사 6일 효모전에 작헌례를 거행할 때 백관들이 참석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슬피 사모하는 정이 끝이 없는 가운데 이달이 되었으니 원통한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달 6일 효모전(孝慕殿)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거행할 것이니 백관(白官)들은 참석하도록 하라.” 하였다.	初二日。 敎曰:“哀慕靡逮之中, 是月已屆, 慟冤何極? 今初六日, 孝慕殿當親行酌獻禮矣。 百官入參。”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2월 6일(신축)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존호를 추상하는 데 따른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이어 작헌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는 데 따른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조상식(朝上食)와 주다례(晝茶禮) 및 석상식(夕上食)을 올리는 것을 모두 친히 행하였다.	初六日。 詣孝慕殿, 上追上尊號冊寶。 仍行酌獻禮。 王世子隨詣, 行禮。 朝上食、晝茶禮、夕上食, 竝親行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2월 12일(정미)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납향대제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납향 대제(臘享大祭)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二日。 詣孝慕殿, 行臘享大祭。 仍行晝茶禮。

고종 27권, 27년 (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2월 15일(경술) 1번째기사 효모전에 나아가 주다례를 행하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十五日。 詣孝慕殿, 行晝茶禮。